

발간등록번호

G000CC1-2018-108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미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비전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 평가기관

핵심가치

국민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균형, 열린 전문성





# 목차

*Contents*

## 제 1 부 총 론

<b>제1장</b>	<b>건강보험제도</b>	<b>3</b>
	I. 사회보장 .....	5
	II. 건강보장 .....	9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	19
<b>제2장</b>	<b>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b>	<b>29</b>
	I.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	31
	II.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35
	II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7
<b>제3장</b>	<b>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b>	<b>73</b>
	I. 설립과정 .....	75
	II. 주요 기능 및 역할 .....	80

## 제 2 부 급여범위 설정 및 지불제도 운영

<b>제1장</b>	<b>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b>	<b>87</b>
	I. 의료행위 .....	89
	II. 치료재료 .....	121
	III. 약제 .....	137
<b>제2장</b>	<b>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b>	<b>155</b>
	I. 급여기준 및 급여기준 관리(행위, 치료재료) .....	157
	II. 약제 급여기준 관리 .....	169
	III. 근거기반보건의료(EBH) .....	180
<b>제3장</b>	<b>포괄수가제도</b>	<b>191</b>
	I.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	193
	II.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	199
	III. 요양병원 수가제도 .....	206
	IV.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제도 .....	212
<b>제4장</b>	<b>의료분류체계</b>	<b>217</b>
	I. 질병분류체계 .....	219
	II. 환자분류체계 .....	231
	III. 분류체계 전산서비스 .....	250
<b>제5장</b>	<b>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b>	<b>255</b>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요 .....	257
	II.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성과 .....	260
	III. 2017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264

## 제 3 부 심 사 및 평 가

<b>제1장</b>	<b>요양급여비용의 심사</b>	<b>271</b>
	I. 심사의 개요 .....	273
	II. 심사 방법 .....	279
	III. 사전 예방 사업 .....	293
	IV. 권리구제 .....	308
	V.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318
<b>제2장</b>	<b>수탁심사</b>	<b>327</b>
	I. 의료급여비용 심사 .....	329
	II. 보훈진료비 심사 .....	349
	III.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심사 .....	354
	IV.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운영 .....	358
	V.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366
	VI. 입원적정성 심사 .....	378
<b>제3장</b>	<b>현지조사</b>	<b>385</b>
	I. 현지조사 개요 .....	387
	II. 현지조사 업무절차 .....	390
	III. 부당·거짓청구 개념 및 사례 .....	406
	IV. 자율점검 .....	408
<b>제4장</b>	<b>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b>	<b>417</b>
	I. 적정성 평가 개요 .....	419
	II. 평가개념 및 범위 .....	431
	III. 평가의 절차와 방법 .....	435
	IV. 평가결과 활용 .....	445
	V.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	458
	VI.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	466

<b>제5장</b>	<b>고객서비스 제공</b>	473
	I.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신청) .....	475
	II. 국민대상서비스 .....	482
	III. 정보공개제도 .....	499
	IV. 대국민 통계정보 서비스 .....	504
	V.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	509
	VI. 의약품 사용정보 공개 및 제공 .....	516

제 4 부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관리

<b>제1장</b>	<b>보건의료자원 관리</b>	<b>525</b>
	I. 요양기관 현황 관리 .....	527
	II. 요양기관 장비 관리 .....	533
	III.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등 운영 .....	546
	IV.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568
	V. 전문병원 지정·평가 .....	577
<b>제2장</b>	<b>의약품유통정보관리</b>	<b>587</b>
	I.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	589
	II.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등 유통정보 관리 .....	595
	III.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일련번호 제도 운영 .....	603
	IV.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	608
	V.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 .....	612
	VI.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	618
<b>제3장</b>	<b>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b>	<b>623</b>
	I.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개요 .....	625
	II.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	629
<b>제4장</b>	<b>ICT 서비스 운영</b>	<b>643</b>
	I. 정보시스템 소개 .....	645
	II. 심사시스템 운영 .....	652
	III. 포털시스템 운영 .....	669
	IV. 업무시스템 운영 .....	681
	V.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	711
	VI.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719
	VII. 정보자원 운영 .....	725
	VIII. 정보보호 운영 .....	746

# 표목차

## Table Contents

표1.1-1 진료비 지불방식의 종류 .....	14
표1.1-2 국민건강보험(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 비교 .....	18
표1.1-3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25
표1.1-4 연도별 보험료부과액 및 적용인구 1인당 월 보험료 현황 .....	26
표1.1-5 총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7년) .....	26
표1.1-6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변화 추이 .....	27
표1.1-7 제외국 건강보험 사례 비교 .....	28
표2.1-1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신청 비교 .....	98
표2.1-2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	99
표2.1-3 행위·치료재료의 결정·조정과 신의료기술 평가와의 비교 .....	101
표2.1-4 2018년도 적용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103
표2.1-5 요양급여비용의 체계 및 구성 .....	104
표2.1-6 의료행위비용 개발 상세 업무절차 .....	107
표2.1-7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별 추진과제 .....	109
표2.1-8 직접 진료비용 자료 구축 현황(2017년 기준) .....	114
표2.1-9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	124
표2.1-10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	124
표2.1-11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	125
표2.1-12 연도별 재평가 대상 대분류군 공고 현황 .....	130
표2.1-13 경제성 평가 유형 .....	141
표2.1-14 대체조제가능 품목의 증가 추이 .....	144
표2.1-15 퇴장방지의약품 현황 .....	146
표2.2-1 심사지침·심의사례·심사사례 비교 .....	159
표2.2-2 EBH평가 보고서 유형 .....	183
표2.2-3 EBRM에 따른 임상연구문헌의 범주 .....	189
표2.3-1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간 및 대상 질병군 .....	194
표2.3-2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	200
표2.3-3 각 환자군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방식 .....	202
표2.3-4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을 구성하는 포괄 및 비포괄의 대상 항목 .....	203

표2.4-1 분류 단계별 항목수 .....	221
표2.4-2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현황 .....	229
표2.4-3 환자분류체계 종류 .....	232
표2.4-4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	236
표2.4-5 KDRG 코드 구조 .....	238
표2.4-6 KOPG 코드 구조 .....	240
표2.4-7 KRPG 코드 구조 .....	242
표2.4-8 KDRG-KM 코드 구조 .....	244
표2.4-9 KOPG-KM 코드 구조 .....	246
표2.4-10 588 분류체계 코드 구조 .....	248
표2.4-11 환자분류체계 활용 분야 .....	249
표3.1-1 분야별 적용 현황 .....	283
표3.1-2 연도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현황 .....	307
표3.1-3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307
표3.2-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비교 .....	334
표3.2-2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 범위 .....	339
표3.2-3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	341
표3.2-4 의료급여종별 본인일부 부담금 .....	344
표3.2-5 정신질환 정액수가 산정기준 .....	347
표3.2-6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및 적용기간 .....	347
표3.2-7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비교 .....	352
표3.2-8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	355
표3.2-9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	356
표3.2-10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절차 .....	357
표3.2-11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	369
표3.2-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필수 제출자료 .....	374
표3.3-1 현지조사 업무정지기간 처분기준 .....	401
표3.4-1 연도별 신규평가 항목 .....	425
표3.4-2 2018년 평가항목 .....	426
표3.4-3 평가 의사결정 시스템 .....	428
표3.4-4 6개영역 18개 목표 현황 .....	429
표3.4-5 2017년도 평가대상기관 및 자료수집 대상 등 .....	438
표3.4-6 가감지급사업 추진경과 .....	445
표3.4-7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단계 .....	447
표3.4-8 가감지급 항목 추진 현황 .....	448
표3.4-9 평가항목별 가감 산정 기준 .....	448
표3.4-10 평가항목별 가감지급 내역 .....	449

표3.4-11 질 향상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	457
표3.4-12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	459
표3.4-13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수가 .....	460
표3.4-14 의료질평가 절차 .....	461
표3.4-15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	462
표3.4-16 평가 영역 및 지표별 가중치 .....	463
표3.4-17 등급화 기준 .....	464
표3.4-18 전문병원 등급화 기준 .....	465
표3.4-19 요양기관별 장려금 산출 .....	468
표3.5-1 진료비확인 사후관리 점검체계 .....	481
표3.5-2 연도별 콘텐츠 개발현황 .....	484
표3.5-3 연도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편내용 .....	487
표3.5-4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항목(207항목) .....	490
표3.5-5 2018년 수술진료비용 및 평균입원일수 공개항목 .....	495
표3.5-6 2018년 특정진료 실시기관 공개항목(25항목) .....	497
표3.5-7 심사평가원 국가승인통계 현황 .....	505
표3.5-8 주요 통계간행물 현황 .....	506
표4.1-1 요양기관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530
표4.1-2 상급종합병원 지정_질병군별 분류기준 .....	570
표4.1-3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 및 가중치 .....	571
표4.1-4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	572
표4.1-5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의료서비스 수준) .....	572
표4.1-6 전문병원 지정 분야 .....	578
표4.2-1 ATC코드 구분 .....	591
표4.2-2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현황 .....	593
표4.2-3 연도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현황 .....	593
표4.2-4 연도별 의약품 업체별 공급현황 .....	593
표4.2-5 의약품 표준코드 구성 체계 .....	595
표4.2-6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운영 주요경과 .....	599
표4.2-7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약사법」) .....	615
표4.2-8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2(「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615
표4.3-1 DUR 대상 의약품 현황 .....	628
표4.3-2 DUR 점검절차 .....	630
표4.3-3 처방·조제 사유 내용별 코드 .....	632
표4.3-4 DUR 참여 현황(1개월) .....	637



# 그림목차

## Figure Contents

그림1.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21
그림1.1-2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체계 .....	22
그림1.2-1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의 관리운동도 .....	34
그림1.3-1 심사평가원 설립배경의 이해 .....	79
그림1.3-2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흐름도 .....	81
그림2.1-1 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 절차 .....	89
그림2.1-2 기존기술 여부 확인제도 도입배경 .....	90
그림2.1-3 기존기술여부 확인 절차 .....	91
그림2.1-4 행위·치료재료의 결정·조정신청 절차 .....	95
그림2.1-5 실무검토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	97
그림2.1-6 의료행위 등재 현황 .....	105
그림2.1-7 의료행위비용 직권조정 개념도 .....	106
그림2.1-8 의료행위비용 신설·개정 업무 흐름도 .....	107
그림2.1-9 진료수가 발자취 .....	108
그림2.1-10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	110
그림2.1-11 2차 개정 직접비용자료 구축 위한 임상전문가패널 운영 구조 .....	112
그림2.1-12 행위정의기술서(예시) .....	113
그림2.1-13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 산출 모형 .....	116
그림2.1-14 상대가치점수 개정절차 .....	117
그림2.1-15 2차 개정 결과의 단계적 도입(예시) .....	117
그림2.1-16 상대가치 조회 시스템 화면(예시) .....	118
그림2.1-17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처리절차 .....	123
그림2.1-18 치료재료 재평가 업무처리절차 .....	129
그림2.1-19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업무 흐름도 .....	132
그림2.1-20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업무처리 절차 .....	133
그림2.1-21 약제 등재 업무 흐름도 .....	139
그림2.1-2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업무 흐름도 .....	148
그림2.1-23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급여정지 및 제외 업무절차 .....	151
그림2.2-1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범위 .....	159

그림2.2-2 세부사항 고시 관련 심사평가원의 업무 검토 흐름도 .....	160
그림2.2-3 심사지침 설정 업무 흐름도 .....	162
그림2.2-4 일반약제 급여기준 관리 업무 흐름도 .....	170
그림2.2-5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흐름도 .....	172
그림2.2-6 항암제 약제급여기준 업무 흐름도 .....	175
그림2.2-7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사용승인 업무 흐름도 .....	178
그림2.2-8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체계 흐름도 .....	182
그림2.2-9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 .....	184
그림2.2-10 EBRM에 따른 임상연구문헌 검색 및 활용과정 흐름도 .....	187
그림2.4-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구조 .....	222
그림2.4-2 상병마스터 구축·관리 흐름도 .....	224
그림2.4-3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흐름도 .....	228
그림2.4-4 KDRG 발전 과정 .....	234
그림2.4-5 KDRG 분류 모형 .....	235
그림2.4-6 KDRG 분류체계 검토과정(예시) .....	237
그림2.4-7 KOPG 분류 모형 .....	240
그림2.4-8 KRPG 분류 모형 .....	242
그림2.4-9 KDRG-KM 분류 모형 .....	244
그림2.4-10 KOPG-KM 분류 모형 .....	246
그림2.4-11 588 분류체계 분류 모형 .....	247
그림2.4-12 환자분류체계 개정 업무 수행 절차 .....	248
그림2.4-13 질병분류체계 관련 화면 .....	252
그림2.4-14 환자분류체계 관련 화면 .....	253
그림2.4-15 재활환자분류체계 환자평가표 화면 .....	254
그림2.5-1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	264
그림2.5-2 비급여 유형(기준, 등재 등) .....	265
그림2.5-3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비교 .....	265
그림3.1-1 보험급여 원칙과 심사의 균형성 .....	274
그림3.1-2 심사 주체의 변화 .....	275
그림3.1-3 심사방법의 발전 .....	275
그림3.1-4 심사 업무 흐름도 .....	278
그림3.1-5 진료비심사 지역별 관장 .....	279
그림3.1-6 접수 후 수정·보완 서비스 처리절차 .....	280
그림3.1-7 전산심사 업무 흐름도 .....	281
그림3.1-8 심사금액 결정 및 결과통보 업무 흐름도 .....	289
그림3.1-9 심사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	292
그림3.1-10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294

그림3.1-11 심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294
그림3.1-12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실행체계 .....	295
그림3.1-13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세부 실행 절차 .....	296
그림3.1-14 지표연동자율개선 (서면)안내문 .....	297
그림3.1-15 다양한 정보제공 내용 .....	298
그림3.1-16 지표연동자율개선 웹 안내문 .....	299
그림3.1-17 지표연동자율개선 안내문의 관리지표 통보내역 .....	300
그림3.1-18 지표연동자율개선제 WEB 서비스 상세 내역 .....	301
그림3.1-19 접수 전 사전점검 처리절차 .....	303
그림3.1-20 선별집중심사 개요 .....	304
그림3.1-21 단계별 관리 내용 .....	305
그림3.1-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 체계 .....	320
그림3.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 체계 구성의 시스템화 .....	321
그림3.1-24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흐름 .....	324
그림3.2-1 의료급여의 운영체계 .....	332
그림3.2-2 의료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 흐름도 .....	333
그림3.2-3 의료급여의 단계별 절차 .....	335
그림3.2-4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 및 재의뢰 절차도 .....	340
그림3.2-5 자격관리시스템 구성도 .....	343
그림3.2-6 보훈병원 청구·심사·지급업무 흐름도 .....	351
그림3.2-7 위탁병원 및 약국 청구·심사·지급업무 흐름도 .....	352
그림3.2-8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절차도 .....	357
그림3.2-9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업무 절차도 .....	359
그림3.2-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업무 흐름도 .....	376
그림3.2-11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가 자문단 체계도 .....	377
그림3.2-12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흐름도 .....	381
그림3.2-13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처리 절차 .....	382
그림3.3-1 현지조사 업무 흐름도 .....	390
그림3.3-2 현지조사 자율점검 추진절차 .....	409
그림3.3-3 자율점검 사후관리 체계도 .....	416
그림3.4-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	421
그림3.4-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발전 단계 .....	422
그림3.4-3 평가후보항목 선정체계도 .....	435
그림3.4-4 평가후보항목 선정 프로세스 .....	435
그림3.4-5 평가 수행 절차 .....	437
그림3.4-6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 .....	439
그림3.4-7 웹을 이용한 평가자료수집방법 .....	440

그림3.4-8 EMR 등을 연계한 자료수집방법,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441
그림3.4-9 적정성 평가 결과의 활용	444
그림3.4-10 가감지급 시범사업 모형(2007년 하반기~2010년)	447
그림3.4-11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금액 산정 방법	453
그림3.4-12 질 향상(QI) 지원사업 구성	454
그림3.4-13 QI 컨설팅 수행 절차	456
그림3.4-1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업무 흐름도	470
그림3.4-15 그린처방의원 선정 및 업무 흐름도	471
그림3.5-1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흐름도	477
그림3.5-2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절차	478
그림3.5-3 효율적인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 및 운영 프로세스	483
그림3.5-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관리 업무 흐름도	487
그림3.5-5 BizNet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수집 화면	492
그림3.5-6 비급여진료비정보 홈페이지 화면	493
그림3.5-7 비급여진료비정보 모바일앱 화면	493
그림3.5-8 수술별 진료비 안내 홈페이지 화면	495
그림3.5-9 수술별 진료비 안내 모바일앱 화면	496
그림3.5-10 특정진료 실시기관 안내 홈페이지 화면	497
그림3.5-11 특정진료 실시기관 안내 모바일앱 화면	498
그림3.5-12 정보공개 서비스 유형	499
그림3.5-13 청구서 처리 절차도	500
그림3.5-14 통계정보제공 서비스 유형	506
그림3.5-15 의료통계정보 메뉴 화면	507
그림3.5-16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업무 체계도	509
그림3.5-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업무 흐름도	511
그림3.5-18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여부 확인 절차	511
그림3.5-19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512
그림3.5-20 내방을 통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지원 절차	513
그림3.5-21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지원 절차	513
그림3.5-22 의약품 사용정보 공개 업무 흐름도	519
그림4.1-1 요양기관 기호부여 등 업무 흐름도	528
그림4.1-2 일반장비 관리체계	535
그림4.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체계	535
그림4.1-4 특수 의료장비 관리체계	536
그림4.1-5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관리체계	537
그림4.1-6 상급종합병원 지정절차	574
그림4.1-7 의료기관 재정립 정책 방향 및 전문병원 사업추진체계	578

그림4.1-8 전문병원 지정·평가 절차	582
그림4.2-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흐름도	592
그림4.2-2 의약품 유통 구조	594
그림4.2-3 의약품 RFID의 구성	596
그림4.2-4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업무 흐름도	597
그림4.2-5 GTIN-13 번호체계	598
그림4.2-6 GS1-128 번호체계	599
그림4.2-7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602
그림4.2-8 의약품 공급내역관리 업무 흐름도	604
그림4.2-9 의약품 일련번호 등 정보보고 서식	606
그림4.2-10 의약품유통정보관리 흐름도	608
그림4.2-11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업무 절차	609
그림4.2-12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절차	613
그림4.2-13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620
그림4.2-14 구입약가 사후관리 처리 단계	622
그림4.3-1 DUR 점검 흐름도	631
그림4.3-2 DUR 업무처리 절차	631
그림4.3-3 DUR 표준 팝업창 화면	632
그림4.3-4 DUR 알리미 흐름도	638
그림4.3-5 한혈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 흐름도	639
그림4.3-6 감염병 관련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처리 흐름도	640
그림4.3-7 '내가 먹는 약! 한국에 서비스' 국민 이용방법	641
그림4.3-8 '내가 먹는 약! 한국에 서비스' 요양기관 이용방법	642
그림4.4-1 정보시스템 발전사	647
그림4.4-2 심사시스템 업무 흐름도	652
그림4.4-3 청구명세서 접수 업무 흐름도	653
그림4.4-4 진료비 청구방법 변천사	670
그림4.4-5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업무 흐름도	670
그림4.4-6 요양기관 사용자 화면	671
그림4.4-7 청구파일 서식조회	672
그림4.4-8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이용신청 절차	674
그림4.4-9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설치방법	674
그림4.4-10 요양기관업무포털 메뉴구성도	678
그림4.4-11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679
그림4.4-12 그간의 DW 구축 경과	682
그림4.4-13 DW포털 메인화면	685
그림4.4-14 DW 시스템 구성	687

그림4.4-15 HiraNet 화면구성 .....	688
그림4.4-16 기관운영 시스템 구성도 .....	695
그림4.4-17 DW 비즈넷 시스템 구성도 .....	701
그림4.4-18 히라톡톡 메뉴 구성 .....	708
그림4.4-19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	715
그림4.4-20 신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	716
그림4.4-21 기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	717
그림4.4-22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주요 서비스 내용 및 흐름도 .....	721
그림4.4-23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	724
그림4.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자원 구성 및 흐름 .....	726
그림4.4-25 WEB/WAS 업무절차 구조도 .....	729
그림4.4-26 재해복구센터 정보시스템 구성도 .....	733
그림4.4-27 재해복구 절차 .....	734
그림4.4-28 장애대응센터 정보시스템 구성도 .....	735
그림4.4-29 장애대응 절차 .....	736
그림4.4-30 ITSM 운영방법(PDCA) .....	738
그림4.4-31 데이터 표준화의 의미 .....	739
그림4.4-32 데이터 표준화 절차 .....	740
그림4.4-33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순환 모형 .....	741
그림4.4-34 HIRA 표준프레임워크 .....	742
그림4.4-35 절차별 수행 내역 .....	743
그림4.4-36 절차별 가이드 .....	744
그림4.4-37 개발환경 구성도 및 배포절차 .....	744
그림4.4-38 정보보호 3원칙 .....	746
그림4.4-39 심사평가원 정보보호 조직 .....	748
그림4.4-40 보안단계별 정보보호 조치내역 .....	749

# 제 1 부

## 총 론

제1장 건강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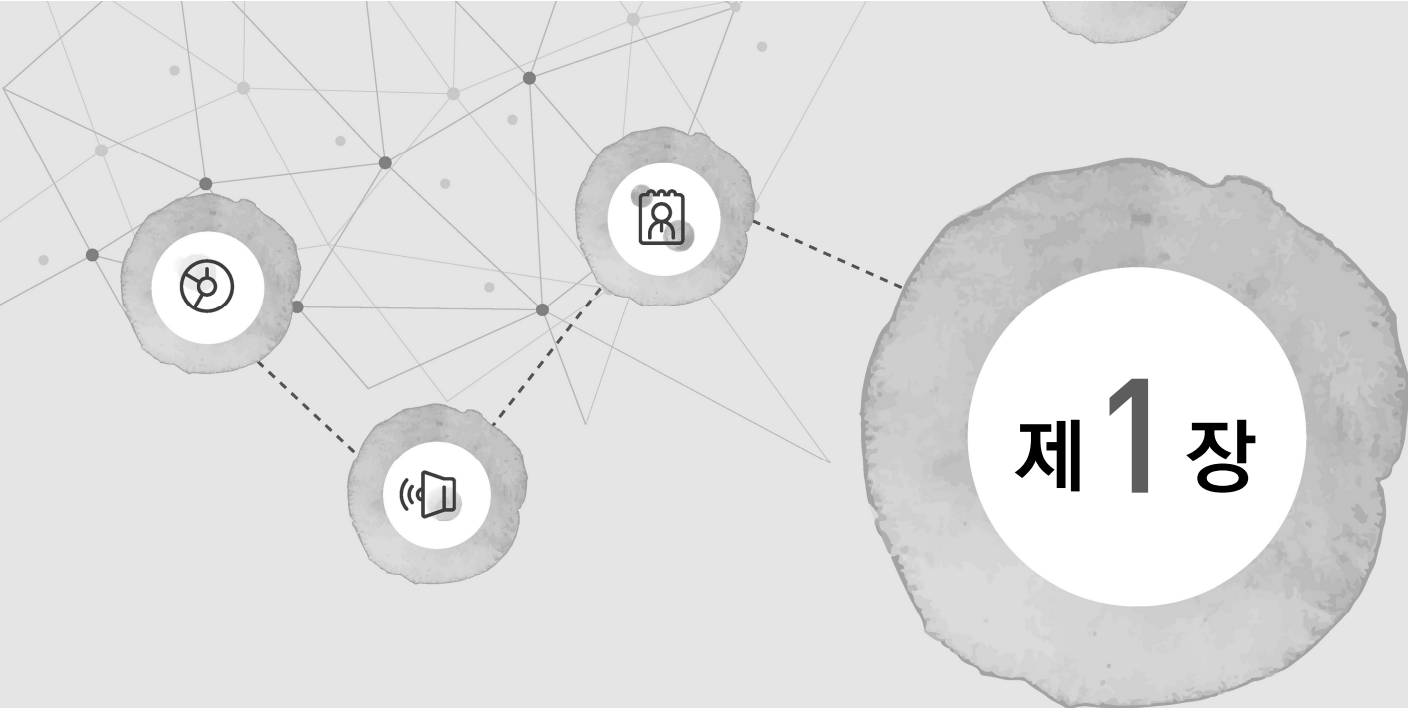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제3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 건강보험제도

- I. 사회보장
- II. 건강보장
-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 제1장

# 건강보험제도<sup>1</sup>

작성자 : 주 - 김영미  
부 - 유수연

## I

## 사회보장

### 1

### 의의

#### 가. 사회보장 개념의 등장과 전개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과 하부제도가 구상(構想)되고 현실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sup>2</sup>

193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보험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구제대책 중심 제도를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형태이던 사회보장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게 된 것은 1940년대 이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각종 구상과 추진계획이 만들어졌고, 이는 1945년 유엔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실제 범위와 방법 등은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보장을 인권과 함께 부여되는 적극적인 권리(즉, 국가의 의무)로 보는 입장과 국가의 전략적인 사회투자로 보는 입장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1 제1장의 내용은 주로 아래의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1.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8.

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13.

3. 찰스 노만드 외,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옮김.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4.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정보.(<http://www.ssc.go.kr/menu/info/info030101.tiles>, 2018년 9월 접속)

5.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list.php?term\\_word](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list.php?term_word), 2018년 9월 접속)

2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효시라는 주장과 1920년대 이전 유럽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함.(김창엽, 2018)

## 나.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은 social security의 번역어로서, security의 어원은 ‘불안을 없앤다’라는 의미이다. 즉, social security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불안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항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영국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예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뜻하며...”

-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

### 3)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련해주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장치(public measures)”

- 《사회보장 입문(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1984.

---

## 2

## 한국의 사회보장

---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며, 이후 1980년 8차 개헌된 제5공화국 헌법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사회안전망<sup>3</sup>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sup>4</sup>

## 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법률의 규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일차적 목적은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기본적인 경제보장 및 의료보장을 하는 것이지만, 보험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연관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에 일정한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사회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요양 등을 위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 및 산업재해 등 근로관계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3 제3조(정의)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 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에는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으며,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 다.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및 관련 복지제도

사회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은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법체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이 있다.

## II

건강보장<sup>5</sup>

## 1

## 건강보장의 개념

건강보장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제도로서, 일차적으로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개인 부담능력의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고, 이차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의료비 보장(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건강보장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주요 제도이다.

과거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 보장의 역할을 하는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에서,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이 등장했다.

## 2

## 건강보장과 급여

건강보장에서 급여(benefit)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현물급여(benefit-in-kind)와 현금급여(cash benefit)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은 예방·치료·재활 등과 같이 직접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sup>6</sup>

건강보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것은 급여가 목표로 하는 표적집단(targeted group)에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장 급여의 목표라면, 환자가 다른 곳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급여보다 직접적으로 현물급여(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부분 국가의 건강보장제도에서 현물급여의 비중이 더 큰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현물급여 중심의 제도는 현금급여 중심의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이 2000년에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의의에 맞추어 본 장의 제목을 변경함.

6 보건복지부. 정책-건강보험-보험급여.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 2018년 9월 접속)

## 가. 기능상의 특성

현물급여 중심의 건강보장제도는 다른 사회서비스나 복지제도와 다르게 최저수준의 보장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강보장의 목표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에 최적의 수준이어야 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필요가 없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특성상 적정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은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로 인한 더 큰 재정지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건강보장은 최소보장의 원칙보다는 보건교육, 예방,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적정 급여수준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 나. 급여관리의 특성

현물급여 중심의 건강보장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급여관리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건강보장의 급여관리는 ①급여 제공 방법(전달체계)의 설계, ②급여 이용의 관리, ③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의 관리로 이루어진다.

### 1) 급여 제공 방법의 설계

건강보장의 주 급여대상이 현물급여인 의료서비스이므로 제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건강보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지리적으로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2) 급여 이용의 관리

건강보장의 급여이용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이용관리는 주로 이용자(환자)에 대한 개입으로 이루어지며, 공급자(의료관계자)는 지불방식의 설계 및 개선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다(overuse), 과소(underuse), 과오(misuse)를 모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과소 이용과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과다이용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재정적 위험을 막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이용자 일부 부담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가) 정액부담(co-payment)

이용자가 의료를 이용하는 시점에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액 부담은 가벼운 질환의 이용자 부담을 크게 하고, 중증 질환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진료비 계산 등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가벼운 질환임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전체 비용이 정액부담 보다 훨씬 큰 경우 이용자 부담 효과가 미미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 나) 정률부담(co-insurance)

이용자가 진료비 총액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액부담과는 반대로 소액 진료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고액 진료비 이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단점이 있다. 정률 부담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용자 부담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다) 일정액 전액 이용자 부담(deductible)

민간 보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제(控除)방식으로, 일정액 이하의 진료비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일정액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연(年)단위로 일정 한도를 정하여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한계를 지나치게 높이면 건강보장 제도로서의 의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 라) 급여 상한제(limit)

건강보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정해두고, 이 총액을 넘는 경우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관리자로서는 최대 지출을 예상할 수 있어 재정추계도 쉽고, 가장 강력한 재정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한을 넘는 고액 진료비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하여 공적 건강보장체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마) 이용자 부담 상한제

이용자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특정 기간 동안(주로 연간) 이용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일본·타이완 등 이용자 부담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 3)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

건강보장을 위한 현물급여의 제공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진료의 대가를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진료보수 지불제도이다. 진료보수 지불제도는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면서도, 보상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강도와 수준이 달라지는 등 건강보장 재정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급여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 국가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불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는 다음과 같다.

#### 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의(일차의료제공자) 보다는, 위중하거나 진료시간이 길고 특별한 기술이나 치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을 다루는 전문의의 보수지급에 더 적합하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인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제공자 유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인데, 제공자는 청구절차와 비용이 들고, 국가나 보험자는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제공자와 지불자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 나) 포괄수가제(Case-payment)

포괄수가제는 개개의 치료행위를 단위로 하지 않고 환자가 어떤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입원일수와 질병의 정도(중등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DRG, Diagnosis Related Group)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질병군별로 입원환자의 의료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행위별 보상의 단점인 서비스 제공 증가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나, 투입자원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빠르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 다) 인두제(Capitation)

인두제는 환자의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맡고 있는 주민 수에다 1인당 단가인 일정금액을 곱하여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이 의사를 선택하고 등록을 마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 또는 국가로부터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행정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증가 억제가 쉽다.

인두제는 의료제공자와 환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차의료 제공자에게 적합하다.

#### 라) 봉급제(Salary)

봉급제란 의료인 각자의 근무경력, 기술수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미리 보수수준을 결정하고, 서비스의 양이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월 1회 또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같은 공영의료체계 또는 의료기관 등 조직에 속한 의료인에게 적용된다.

#### 마) 총액계약제(Global-budget)

총액계약제는 보험자(보험자단체)와 의료인단체 간에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에 의해 전체 예산의 크기를 결정하고 전체 예산을 개별공급자에게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공급자단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진료비 지불방식의 종류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1.1-1 진료비 지불방식의 종류

지불제도	개념	장점	단점
행위별 수가제	의사가 제공한 의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li> <li>-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용이하여 제도 수용성 및 임상연구 발전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총량 관리 어려움</li> <li>- 수가구조가 복잡하여 청구오류, 부당청구의 개연성 높음</li> <li>- 진료비 청구·심사 등 관리업무 복잡</li> </ul>
포괄수가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 향상</li> <li>- 국민이 부담하는 진료비용 감소</li> <li>-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li> <li>- 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과의 마찰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보다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 가능성</li> <li>- 신의료기술 등의 도입 지연</li> </ul>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대안적 모델 - 포괄지불방식과 행위별 지불방식을 병행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서비스를 행위별수가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입원환자에게 적용 가능</li> <li>- 행위별 보상방식 병행으로 질병군 포괄수가에 비해 의료계 수용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보상 항목으로 전이·과잉진료 우려</li> <li>- 실제보다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 우려</li> </ul>
인두제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사전에 결정·지급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지불의 관리운영 편리</li> <li>- 진료비용의 사전예측 가능</li> <li>- 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 의료, 공중보건 등에 노력</li> <li>- 국민의료비 억제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들의 과소진료 우려</li> <li>- 중증질환환자 등록기피 발생 우려</li> <li>-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 지연</li> </ul>
봉급제	의료인의 근무경력, 기술수준, 근무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진료 예방</li> <li>- 진료수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가 적어 의료의 질 향상에 소극적</li> <li>- 관료화, 형식화로 의료의 질 저하 우려</li> </ul>
총액계약제	일정 기간동안 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비용을 사전에 계약하여 지불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진료, 과잉청구 시비 감소</li> <li>- 의료비 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li> <li>-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li> <li>- 진료비 심사·조정 관련 공급자 불만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자, 의료단체간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음</li> <li>- 진료과목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배분 어려움</li> <li>- 신의료기술 도입 및 질 향상 동기 저하 우려</li> </ul>
일당진료비 (일당 정액제)	내원(입원)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기간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요양병원 입원, 보건기관 외래,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완화의료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기관과의 마찰 감소</li> <li>- 진료비 청구방법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진료 우려</li> <li>- 의료의 다양성 반영이 제한적임</li> </ul>

### 가. 국가 제도 이전의 건강보장

근대적인 건강보장 제도의 출발지인 유럽에서는 건강보장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빈민구제 관점의 질병치료와 의료제공 노력이 존재하였다.

영국에서는 구빈법(1601년) 이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중세 봉건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빈민구제 차원에서 의료인에게 진료비를 지불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17, 18세기부터 국가가 의사를 고용해서 농민과 빈곤층에게 의료를 제공했고, 헝가리는 15세기부터 지방정부가 의사를 고용하여 빈민을 치료하던 전통이 있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이었던 러시아도 국가가 기초의료를 제공해 왔다.

한편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질병위험을 분산하려는 상호부조 활동은 17세기 이후부터 활발해졌다. 산업혁명 시기 공장이나 농장의 근로자에게 질병은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이다. 17세기 말 피고용인의 상호부조인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이나 독일의 직능별 구제기금(relief fund), 이러한 조합들의 지역연합체인 19세기의 건강관리연맹 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나. 국가 제도로서의 건강보장

현재와 같은 국가 제도로서의 건강보장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걸쳐 그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크게 북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주도 모형과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사회보험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독일의 사회건강보험 도입과 확산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건강보장 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독일에서 사회보험 제도는 새롭게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상호공제조합금고 등 사회적 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산업화의 영향으로 국가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는데,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지고 위험분산과 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규모의 노동자 증가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형의 건강보험제도는 이후 유럽 여러나라로 확산되어 나갔다. 오스트리아(1887년), 노르웨이(1902년), 영국(1910년), 프랑스(1921년)를 비롯하여 193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사회보험 형태의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초기의 건강보험제도는 병원 중심의 기술 집약적 현대 의료가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더 강했으며, 이런 특성은 일부 국가의 상병수당 제도로 남아 있다.

식민지에서 비교적 일찍 독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가적 수준의 건강보장체계를 일찍 도입하였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19세기 말부터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브라질(1923년), 칠레(1924년), 멕시코(1925년), 에콰도르(1935년), 페루(1936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920년대 이후 본격적인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1926년 일본이 임금노동자 중심의 건강보험을 실시하였고, 대만은 1950년대 노공보험(勞公保險)을 시작으로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사회보험형태의 건강보장제도 도입이 법제화되었으나, 임의가입 형태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은 1977년이다.

미국은 사회 전반에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활발했던 1900년대 초와 1930년 대공황 시기 두 번에 걸쳐 건강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익단체들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하였다. 공적 건강보장제도 도입이 실패하는 사이 민간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으며, 기업 대상의 민간 단체보험을 통한 집단 의료보장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 2)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로의 전환

1905년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사회개혁정책의 하나로 1911년 강제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영국 국민보험은 독일형 사회보험과 다르게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만 포함하였고, 임금에 관계없이 균일각출(flat system)하며, 강제적 운영이 아닌 자치 경영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증증도와 관계없는 제한적인 급여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며, 2만여 개나 되는 개별조합에 대한 관리도 불가능하였고, 자율 운영체제인 조합들이 건강한 노동자만 가입시키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재정 위기가 나타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전반적인 체계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1944년 《국가공영의료체계(A 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백서는 조세로 재정을 조달하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있던 중 노동당의 총선 승리로 상황이 역전된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보건부장관 비번(Bevan)은 당국의 통제 대신 병원의 국유화와 일반의의 독립된 계약자 지위 보장, 전문의의 자비부담 및 민간보험 환자 진료를 보장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하여 1946년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입법화에 성공한다. 사회보험형태로 의료비의 재원을 조달하는 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조세를 재원으로 무상진료를 보장하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로의 전환은, 이후 새롭게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거나 제도를 개혁하려는 국가에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based) 또는 조세(tax based)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건강보장제도의 유형

건강보장제도의 분류는 그 목적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OECD의 경우 사회적 형평(social equality)과 환자주권(patient sovereignty)의 정도에 따라 ①국가공영의료체계, ②사회보험, ③민간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장이 복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인 ①자유주의, ②보수적 또는 조합주의, ③사회민주주의 복지체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기준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것이며, 앞서 살펴본 독일식의 국민건강보험(NHI)과 영국식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구분도 재원조달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보험제도에서 개편한 국가보건서비스를 건강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장제도로서 비스마르크(Bismarck)형 건강보장이라고도 한다. 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NHI방식을 운영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 2)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버리지(Beveridge)형 건강보장이라고도 한다.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국유화 되어있고, 대체로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이 낮은 무료의료(free medical care)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형 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표.1.1-2 국민건강보험(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 비교

구분	국민건강보험(NHI)	국가보건서비스(NHS)
기본이념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국민자는 별도 구분)	- 전국민 일괄 적용(집단구분 없음)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 산정방법	-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	-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행위별수가제 -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채택국가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 영국, 스웨덴, 이태리, 캐나다 등
국민의료비	-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보험료형평성	- 보험자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가능 -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 우려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 (선진국)(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료서비스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의료의 질 저하 초래 - 입원대기환자 급증 -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연대의식	-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함	-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관리운영	- 보험자중심 자율운영 (대표기구를 통한 가입자의 조합운영 참여보장) - 직접 관리운영비 소요(보험료 징수 등)	- 정부기관 직접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 (보험료 징수비용이 조세관리비용으로 전가)



## Ⅲ

## 국민건강보험제도

## 1

##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sup>7</sup>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 2

## 특성

## 가. 강제가입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강제 가입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또한 임의가입으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 나.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보험료를 납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방식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강보험의 특징이다. 강제 가입인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국가 또는 보험관리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 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민간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적계약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7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종류와 정도, 급여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 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 마. 책임주체는 국가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설계하고, 운영·관리해야한다.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특성상 전체 국민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강제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바.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 3

## 연혁과 근거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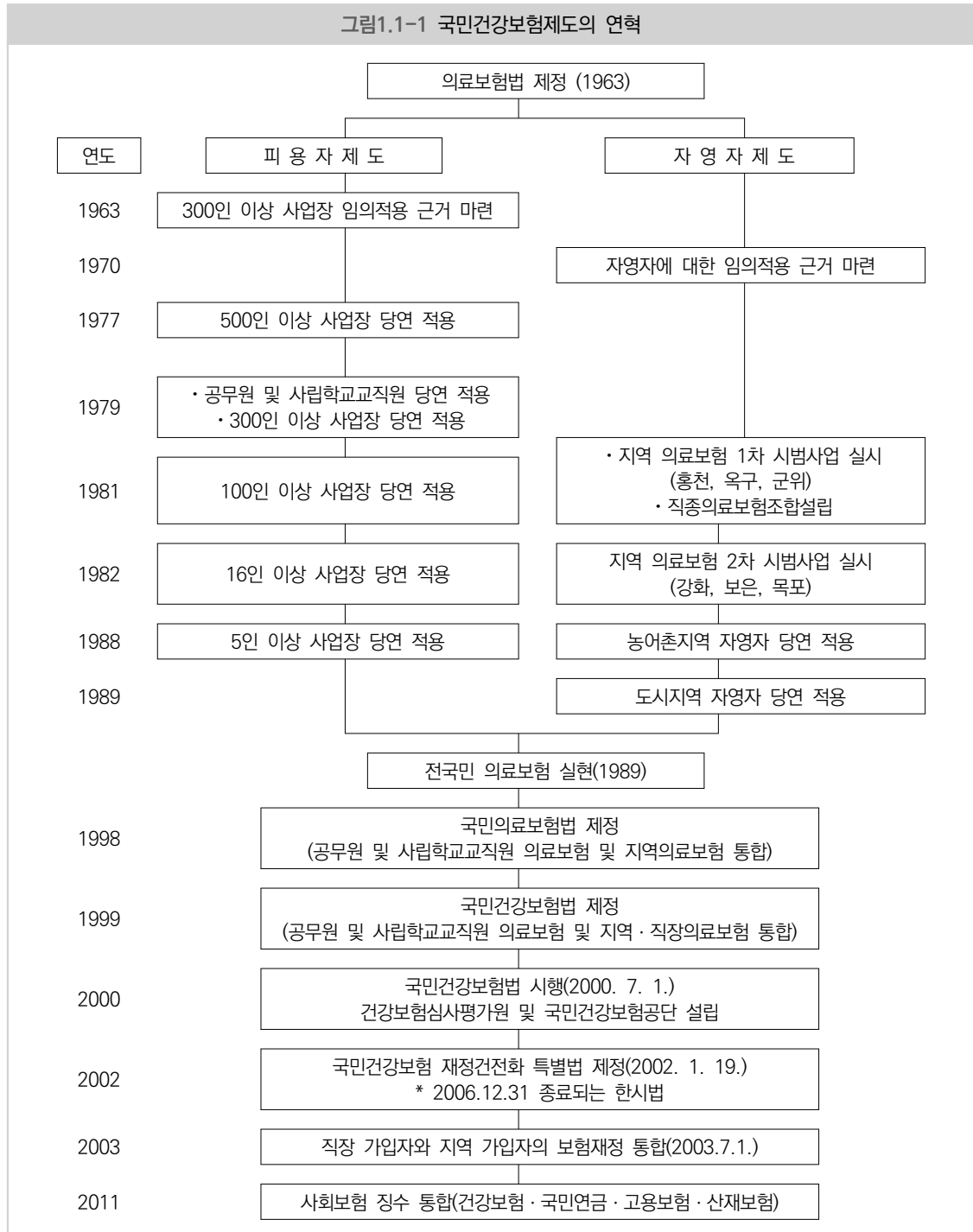
---

### 가. 제도의 주요 연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의료보험법’에서 출발하였으며, 1977년 당연적용으로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일부 대형 사업장과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다가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9년 도시와 농촌 자영자가 모두 포함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12월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었다. 1998년 12월 「국민

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의료 보험 조직이 통합되고 2003년 7월 직장·지역 가입자 재정이 통합되면서 완전한 단일보험체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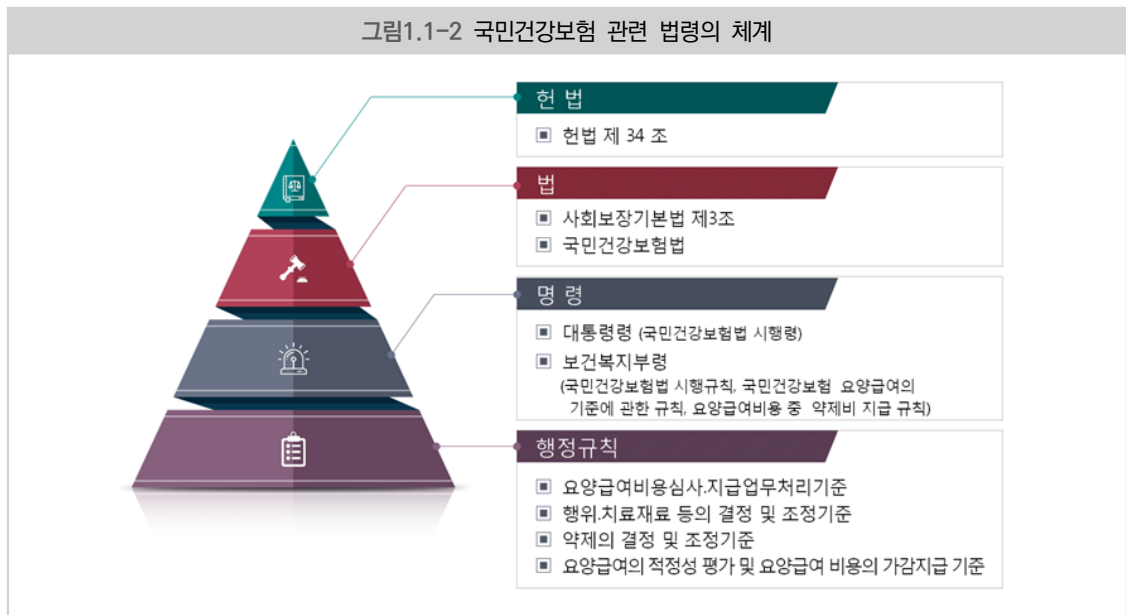


## 나. 근거법령 체계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실시목적, 관장부서,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의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 4

##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보험자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7월에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탄생하였다.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모두 질병 등의 발생을 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은 상병 자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비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단순한 상병 등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부상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개념이다.

## 나. 보험재정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 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피보험자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 다.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나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명시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장제41조).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그 결과를 요양기관과 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심사·지급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건강검진은 자각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예방행위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 보건사업이다.

## 라.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제도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정률부담제를 기본으로 하여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여 환자가 부담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진료비에 대하여 정액부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마. 관리기구

국민건강보험의 관리기구로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심사·평가·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및 심사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의 협조 및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하고 있다.

## 5

## 운영현황

### 가. 가입자 현황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427천명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941천명으로 97.2%를 점유하였고, 의료급여 적용 인구는 1,486천 명으로 2.8%의 점유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95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직장 가입자는 36,899천 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72.4%를 점유한다. 지역가입자는 14,042천 명으로 2013년

보다 942천명 감소하였다.

부양률은 직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자격 취득 증가, 비정규직의 자격 취득 증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에 따라 감소추세이고, 지역은 핵가족화에 따라 분가 세대가 늘어나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2013년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률은 1.40명 이었으나 2017년 말에는 1.19명으로 0.21명 줄었다.

표1.1-3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천 세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의료보장(a+b)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건강보험(a)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직장	소계	35,006	35,602	36,225	36,675	36,899
	- 가입자	14,606	15,141	15,760	16,338	16,830
	- 피부양자	20,400	20,461	20,645	20,337	20,069
	부양률(명)	1.40	1.35	1.31	1.24	1.19
지역	가입자	14,984	14,715	14,265	14,089	14,042
	세대수	7,709	7,749	7,653	7,665	7,786
	세대원	8,304	8,060	7,758	7,607	7,501
	부양률(명)	1.08	1.04	1.01	0.99	0.96
의료급여(b)		1,459	1,441	1,544	1,509	1,4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주요통계. <표 II-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나. 보험료 현황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하고,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보유 유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다.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50조 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 전체 보험료 중 직장보험료는 42조 4,486억 원(84.2%), 지역보험료는 7조 9,683억 원(15.8%)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48,152원 이었고, 직장은 48,266원, 지역은 47,847원 이었다.

표1.1-4 연도별 보험료부과액 및 적용인구 1인당 월 보험료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험료(억원)	390,319	415,938	443,298	475,931	504,168
- 직장	318,751	343,865	369,548	399,446	424,486
- 지역	71,568	72,073	73,750	76,485	79,682
세대당 월보험료(원)	87,417	90,806	94,040	98,128	101,178
- 직장	92,565	97,046	100,510	104,507	107,449
- 지역	77,783	78,629	80,876	84,531	87,458
1인당 월보험료 (원)	38,622	40,819	43,003	45,763	48,152
- 직장	38,239	40,816	43,085	45,874	48,266
- 지역	39,503	40,825	42,798	45,473	47,847

주 :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본인(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주요통계.

〈표Ⅲ-1.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표Ⅲ-3.연도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현황〉

#### 다. 총진료비 및 보험급여비 현황

심사일 기준 2017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보험급여비 포함)는 전년대비 7.68% 증가한 696,271억 원이다. 입원진료비는 25조 1,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하였으며, 외래진료비는 29조 1,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1% 증가, 약국비용은 15조 2,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5% 증가하였다.

표1.1-5 총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7년)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총계	내원일수	1,446,386	1,476,961	1,474,260	1,524,353	1,539,475	(0.99)	
	요양급여비용	507,426	545,275	580,170	646,623	696,271	(7.68)	
	급여비	380,272	409,323	434,518	484,116	520,595	(7.54)	
의료 기관	계	내원일수	965,235	989,074	989,597	1,022,801	1,033,612	(1.06)
		요양급여비용	388,738	420,270	449,220	503,667	543,383	(7.89)
		급여비	294,370	318,771	339,765	380,679	409,961	(7.69)
	입원	입원일수	123,220	130,075	133,863	141,499	142,049	(0.39)
		요양급여비용	177,279	190,576	207,099	237,429	251,824	(6.06)
		급여비	145,019	156,039	169,420	194,348	205,690	(5.84)



표1.1-5 총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7년)(계속)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의료 기관	내원일수	842,015	858,999	855,734	881,302	891,563	(1.16)
	요양급여비용	211,459	229,694	242,121	266,238	291,559	(9.51)
	급여비	149,351	162,732	170,345	186,331	204,271	(9.63)
약국	방문일수	481,151	487,887	484,663	501,552	505,863	(0.86)
	요양급여비용	118,688	125,005	130,950	142,956	152,888	(6.95)
	급여비	85,902	90,552	94,753	103,437	110,634	(6.9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lt;표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gt;

표1.1-6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억원,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인인구 (구성비)	5,740 (11.5)	6,005 (11.9)	6,569 (13.2)	6,445 (12.7)	6,806 (13.4)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구성비	34.5	35.5	36.8	38.0	39.0
노인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175,283 -	193,551 (10.42)	213,615 (10.37)	245,643 (14.99)	271,357 (10.47)

주 : 인구수는 건강보험적용대상자 기준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lt;표12. 노인진료비&gt;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점유율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 노인 진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노인진료비는 27조 1,357억 원으로 총진료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추세도 전년 대비 10.47%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7.68%)보다 높다.

## 6

## 제외국 사례

주요국의 의료보장 유형, 보험적용 대상, 보험자, 급여유형, 급여비용 지불방식 및 비용심사 등에 관한 사례비교는 표1.1-7과 같다.

표1.1-7 제외국 건강보험 사례 비교

구분 \ 국가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미국
의료보장 유형	NHS	SHI (다(多)보험자)	SHI (다(多)보험자)	NHI (단일 보험자)	혼합형 (공공 + 민간영역)
보험적용 대상	전 국민	전 국민에게 공적 또는 민간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sup>8</sup>	전 국민	전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care : 65세 이상 국민, 65세미만 장애 및 특정만성질환자</li> <li>• Medicaid : 빈곤층</li> </ul>
보험자	정부 (보건성 본부)	질병금고 (132개 : 2014년 기준)	보험국(총괄) · 전국건강보험협회 · 건강보험조합 · 공제조합 · 그 외	중앙건강보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care : 연방 정부산하기관</li> <li>• Medicaid : 주정부 산하기관</li> </ul>
급여방식	현물, 현금급여	현물, 현금급여	현물,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물급여
비용 지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의료 : 총액 계약 +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인센티브제</li> <li>• 이차의료 : 비용 수량에 의한 계약(PbR)<sup>9</sup> + 총액계약 + 건강 비용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문별총액관리제 의원 : 행위별 수가제(EBM)<sup>10</sup></li> <li>• 병원 : 포괄수가 (G-DRG)</li> <li>• 약제 : 의사개별 처방약제비 총액 관리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 행위별수가</li> <li>• 병원 : 행위별수가, 포괄수가(DP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예산제 하 지역별 · 부문별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 성과지불 보상제도 일부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ca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서비스 : 포괄수가제</li> <li>• 외래서비스<sup>11</sup> : 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행위별수가제</li> </ul> </li> <li>• Medica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서비스 :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비용상한제</li> <li>• 외래서비스 : 행위별수가제, 인두제</li> </ul> </li> </ul>
비용 심사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건강보험조합 <sup>12</sup> / 보험의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li> <li>• 국민건강보험 단체인협회</li> </ul>	중앙건강보험서	CMS 업무를 위탁 받은 심사기관 (Contractors)
수가계약 방식	NHS와 영국 의사 협회의 계약	부문별 공급자 협회와 건강보험 조합연합 계약	중앙사회보험의료 협회와의 자문을 받아 후생노동성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전민건강보험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 복리부에서 최종 공표	공급자와 보험자 단위 개별계약 (연방정부단위에서 진료비 상한선, DRG 기준 설정)

- 8 2014년 기준 약 8천만의 인구 중 7천만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9 PbR(Payment by Result)은 DRGs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건료자원의 그룹을 설정한 뒤 그룹별 가격을 설정하여 병원의 활동량, 병원소재지의 가중치를 곱하여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임.
- 10 EBM(Einheitlicher Bewertungsmaßstab für ärztliche Leistungen)은 통합가치척도를 의미함.
- 11 Medicare의 외래진료비 지불은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RBRVS)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외래 서비스는 CMS에 의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률(SGR)을 토대로 한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그 비용이 조정됨.
- 12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단(MDK)에 세부심사 의뢰, 경제성 및 질 평가 실시



# 제2장

##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 I.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 II.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II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 I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작성자 : 법규송무부 주 - 정다운  
부 - 이정훈

### 1

#### 체계 및 성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헌법 재판소 결정, 93헌가14, 1995.7.21.), 국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의 종류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회보장법률 중 사회보험법 체계에 속하며, 전 국민 의무가입·보험료 강제 부과 및 요양기관 강제적용 등 각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법원리의 적용이 제한되는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나 가입형태를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면이 있었고, 당시의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았으며, 그 시행령 또한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1976년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977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때가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1977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1981년에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988년 1월과 1989년 7월에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됨으로써 명실 공히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될 때마다 수백 개의 조합으로 관리·운영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각 조합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 보험법」이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을 근거로 의료보험 통합관리운영기구인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99년에는 지역·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체계 모두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제정되어 동 법률을 근거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가 의약학적·비용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단과 별도의 관리운영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 평가원”이라 한다)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 3

## 건강보험사업 운영 주체

## 가. 구 의료보험법에서의 의료보험사업 운영주체

구 「의료보험법」에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이 관장 하였으나 그 실시주체는 보험자(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로서, 보험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보험자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험자를 대신하여 의료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보험자의 부수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관련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 보험자는 당해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구 「의료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 심사권한을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 연합회에 심사를 위탁하였다.

## 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건강보험사업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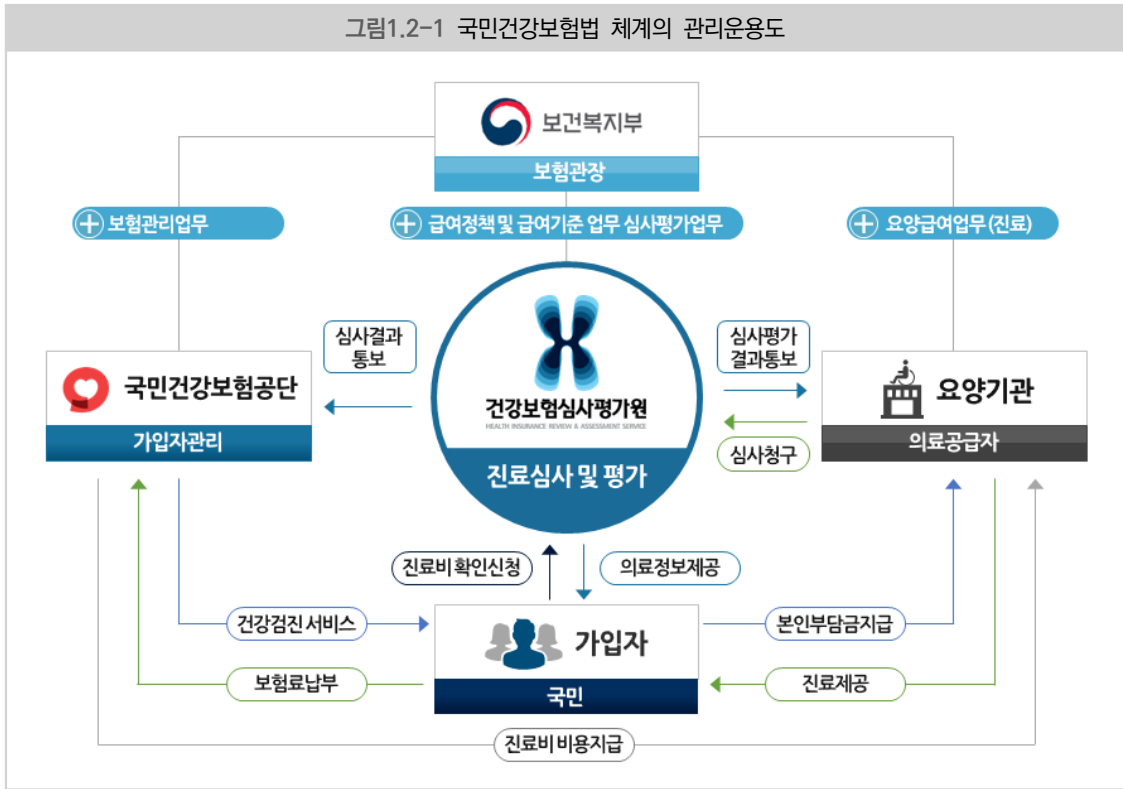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운영주체로 가입자 등에 대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을 각각 건강보험 관리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보험법」에서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은 요양기관 지정·취소권한과 심사 권한 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바, 심사평가원·공단 및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상 부여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가입자 등을 관리하는 공단과의 사이에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업 관리운영주체와 관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구 「의료보험법」과 다른 점은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1.2-1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의 관리운동도





## II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1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규정은 당해 법령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원인을 국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하며, 당해 보험급여 원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 입법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1조의 목적규정은 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로써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의 일환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1차 목적은 보험급여의 실시에 있고, 1차 목적의 달성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2차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2차 목적달성은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 2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건강보험사업’은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업무의 구체적 실현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가 이를 관장하며 건강보험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결정권(법 제45조제3항), 보험급여 범위 등 요양급여 기준의 결정권(법 제41조제3항) 등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결정권한을 관장자인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사업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입자·요양기관 및 공단 등 건강보험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관련정책을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최고의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여 두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 4

##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자

## 제5조(적용 대상 등)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특히 강제적용 방식의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상 중요한 문제로서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건강보험의 기본골격 및 체계를 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할 때는 가입하지 않고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할 때 가입하는 이른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로 하는 것이 보험재정안정과 위험분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적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자 제외)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란 보험자인 공단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자기명의로 건강보험관계가 성립된 자를 말하며, 민간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주체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동시에 보험료 부담과 납부의무를 진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7.2월 개정)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 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과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통상 ‘보험자’라 함은 ‘보험사업의 실시주체’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및 그 운영결과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를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관장자이며 건강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과 그 시행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주관 내지 관장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단이 보험자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나누어 지원하는 이원화 된 구조이며, 건강보험사업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상향되었다.

행위·치료재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며(네거티브 방식), 약제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포지티브 방식). 반면, 비급여대상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의미하며,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학기술과 관련 산업의 지속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 및 약제, 치료재료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이나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진찰·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새로운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새로 개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없더라도 대체가능한 진료·치료방법이 없거나 환자의 진료·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선별급여라 함은 행위·치료재료·약제의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민건강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를 지정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치료효과, 비용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 등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요양급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는 서면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조사·현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급여평가위원회를 두며, 급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이나,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이하 ‘조건부 선별급여’라 함)를 실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조건에는 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 의료인의 정원 및 자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환자의 요건 및 기준,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어 있다.

조건부 선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요양기관은 해당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 해당 선별급여와 대체가능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실시 현황,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만일, 요양기관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성격·결과 또는 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해당 조건부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 9

## 요양기관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요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기관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증진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직접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편 또는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요양기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요양기관 확보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간주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0

## 비용의 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 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2.>

## 가. 본인일부부담제의 도입취지

본인일부부담제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급여비용의 전액을 비용지급 주체인 공단이 부담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보험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남·수진(의료쇼핑 등)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병약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반복된 보험급여로 보험재정 압박을 받을 경우, 보험료 일괄 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의 집단적 수지균형을 유지한다면 고소득의 건강한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간 공동체의식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험위험을 가입자가 받은 급여의 액수, 횟수 등에 연관시켜 보험재정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지불로 인하여 초래된 보험위험의 평준화를 사후에 어느 정도 보완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인일부부담제가 남·수진 및 보험재정 악화 방지, 사회보험의 공동체 의식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가 곤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본인부담 수준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건강보험의 주어진 구체적 여건, 즉, 보험재정의 압박정도, 가입자의 수진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본인일부부담제의 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규정에 의하여 입원 또는 외래별, 요양기관 종별·소재지별, 의약분업예외환자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별표2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과 요양 병원 환자에 대한 비용, 본인부담 면제대상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대상은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입원진료의 경우)·나목(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 장비를 이용한 경우) 및 다목(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과 제2호 (질병군 진료의 경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률을 달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장관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하여 산정특례 대상 및 본인일부부담률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여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11

## 요양급여비용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가. 요양급여비용의 개념**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급여비용의 개념 구분에 있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와 제49조의 요양비, 제50조의 부가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제51조의 장애인보장구, 제52조의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1) 계약제 도입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의약계 요구대로 반영하여 가입자·정부·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측면보다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수령 주체가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계약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2) 계약제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는 사회법의 영역으로서, 비록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지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계약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공단·요양기관 및 심사평가원은 고시된 계약내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위반하더라도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단이 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행정쟁송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요양기관이 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통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에 정하는 것 이외에 계약의 효과 또한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사회법이라는 지위와 계약의 법적효과가 계약당사자 이외의 국민에게 미치며, 그러한 효과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방법·효과를 정하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3) 계약의 내용(「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개정 2017.3.20.>

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되, 이 경우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 간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4) 독립적 검토절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에 따라 치료재료·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상세한 평가근거를 해당 치료재료·약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자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공단 및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재료·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한 평가근거의 통보,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 독립적 검토 절차, 독립적 검토의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2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

####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의 분리

구 「의료보험법」에서 지급주체인 의료보험조합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고, 보험자 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보험조합의 심사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심사결과의 공정

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주체와 지급주체를 분리하여 심사권한은 심사평가원에, 지급권한은 공단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심사권한을 심사평가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독립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지급주체인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심사내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되,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에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같음함으로써 심사·지급 분리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방지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은 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기준

### 1) 심사의 개념

‘심사’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실제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사에는 비용 산정의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가 타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2)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적·비용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같은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 관련 ‘사실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요양급여에 따른 ‘사실관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요양급여가 실제 행하여졌는지 그리고 청구된 내용과 동일하게 행위·약제·치료재료가 실시 또는 사용되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심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법령상 심사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방·투여 약제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세부사항 역시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3) 심사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내역만으로는 요양급여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요양기관에 보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면 적정심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후단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배경**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무엇보다 그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부내역을 알기 어렵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확인사항은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설사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어 요양기관과 환자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진료를 받은 자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전문기관인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이를 입법화하였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적정산정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요양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구속하는 이른바 ‘처분성’을 갖게 되었다.

**나.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부담한 비용이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고, 확인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불한 비용은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권 소멸 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14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입취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실시한 행위의 각 항목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다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의료자원의 낭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오히려 특정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제공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가 잘못 제공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이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수가를 받는 의료서비스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시술자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 나. 내용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다.

### 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가. 설립배경

19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정부와 의료보험 수요자인 국민간의 여러 해묵은 갈등거리 중의 하나는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어떻게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심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과거 20여 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으나, 진료비의 조정과 관련되어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이해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마저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1998년 각계 대표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 진료비 심사기능과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 결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균형적 역학관계의 형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심사기능은 중립적인 기관의 기능으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고, 이러한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제화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보험자와 독립된 심사기구인 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넘어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독립된 심사기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은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 나. 업무

### 제63조(업무 등)

-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에 관한 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가 건강보험 영역 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④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⑤ 교육·홍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평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특히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①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신고 ②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 ④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설치 취지

요양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법령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등 인정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를 중심으로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비약적인 의약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사직원 심사로 의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하게 되었다.

나. 내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주간 근무일수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요양기관에 근무하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0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다보니 그 규모가 방대하여 운영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바, 심사평가원 정관에서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 및 각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의약학적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합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사례별 심사지침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근 심사위원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발생빈도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내방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17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제87조(이의신청)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8조(심판청구)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이의신청

## 1) 개념 및 성격

이의신청이란 심사평가원 및 공단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평가원 및 공단이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처분청에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이의신청은 그 행정심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행정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기보다 처분청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2)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 처분청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해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여부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떠한 종류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판례는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 있는 날’이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 충분한 것이어서, 처분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관리하는 우편함에 투입 되거나, 동거의 친족·가족·고용원 등에게 전달되어 본인의 세력 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안에 들어간 경우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처분이 있는 날이 됨과 동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므로, ‘처분이 있는 날’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같은 날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도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단서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보다 다소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 즉, 처분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장기간 여행 중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4)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제8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는 민원성 업무인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심판청구

### 1) 개념 및 성격

심판청구란 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재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재결(행정심판제기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본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하게 된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 심판청구를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바,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등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심판법상 행정

심판 절차를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각하하게 될 것이다.

## 2) 내용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공단·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기간 계산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 이의신청에서 기술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했던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요양기관 등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 「의료보험법」에서 심판청구 등은 행정소송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전심(前審)절차였으나, 199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법률에서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신속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등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1조(시효)**

-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가.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권리의 행사가 거부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적 안정성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에 그 취지가 있다.

민법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장기간 지나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이미 행한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건강보험 관련 법률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인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나. 내용**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제48조 규정에 따른 ‘확인요청자의 과다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이 민법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점)부터 진행되는 바, 위 각 권리에 대한 시효 기산점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된 때, 급여가 종료한 때 및 보험급여비용을 납부한 때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요양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달리 보아야 한다.

민법상 일반진료비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비교하여 볼 때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고시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서는 각각의 청구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청구권 시효는 동 고시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은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경우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래진료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기산하고,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외래진료 및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방문일자별(약국의 경우 처방전별)로 작성할 때에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진행이 중단되는 바,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새로이 3년으로 적용된다.

## 20

## 자료제공 요청권

**제96조(자료의 제공)**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를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를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출입국, 과세 관련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3 제2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자료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4항에서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를 산출 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요청 근거 및 사유 등을 명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 제97조(보고와 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가.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서는 건강보험사업 이해당사자인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및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지조사권은 요양기관이 행한 요양급여 및 비용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요양급여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나. 내용

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바, 현지조사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이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우월적·감독적 지위에서 요양급여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 사법 작용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청의 지도·감독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현지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2 업무정지 및 과징금

### 제98조(업무정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99조(과징금)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성격 및 처분권자

업무정지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하는 행정제재이며,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 과징금이다.

보험자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당연요양기관제 도입,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도입과 심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독립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련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요양기관과 보험자는 대등한 당사자라 할 것이다. 이에 구 「의료보험법」에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부여하였던 요양기관 지정·취소권한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장관으로 규정하였다.

## 나. 내용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혹은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외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 또는 사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 5년 이내의 기간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산정한다.

## 다. 처분의 효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행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법령 또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일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진료·조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3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고,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처분의 효과는 요양기관의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3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가. 의의 및 성격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거짓청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거짓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나. 내용

장관은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장관은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을 고려하여 재심의 후 공표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24

### 포상금 등의 지급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감소 및 수급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 나. 내용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내용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포상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자신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혹은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신고하는 경우, 진료를 받은 자가 자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신고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한편, 장려금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게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Ⅲ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 요양급여기준의 의의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호로 정하고 있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절차·범위 등에 대하여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일종의 진료기준이 되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 되는 등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98두17807, 1999.6.22.).

## 2

## 요양급여의 절차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및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입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 1)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의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각계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결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요양기관 입장에는 ‘진료지침’이 되고,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심사기준’이 되므로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주체가 장관에서 장관과 심사평가원장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이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고시 개정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넷째,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섯째, 위 넷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등에 대한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제를 조제할 수 없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제를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중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곱째,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가입자 등의 동일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중복의 범위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덟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아홉째, 요양급여는 연구 또는 시험(제8초의2에 따른 임상연구는 제외한다)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에는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그렇지 않다.

## 4

##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 대상

##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치료 및 같은 호 아목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화의료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가. 요양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위·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며, 약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만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나 요양병원·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 혹은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나.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기준과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탈기코(주사비) 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기형성 등의 비노생식기 질환, 단순 코골음,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둘째,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의 교정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셋째,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국소도포·치면열구전색 등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넷째, 상급병상료,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등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섯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첫째 내지 넷째, 일곱째에 해당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여섯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첫째 내지 셋째, 1인실 병상 이용 등에 해당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일곱째, 한방물리요법, 한방생약제제 등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여덟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다. 임의비급여의 문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거나 사용한 후 임의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임의비급여'란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거나 혹은 합의 없이 요양기관이 법정비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배하여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진료의 시급성,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의학적 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가입자의 동의라는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요양기관이 그 증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0두 27639, 2010두27646(병합), 2012.6.18. 선고)하였다.

###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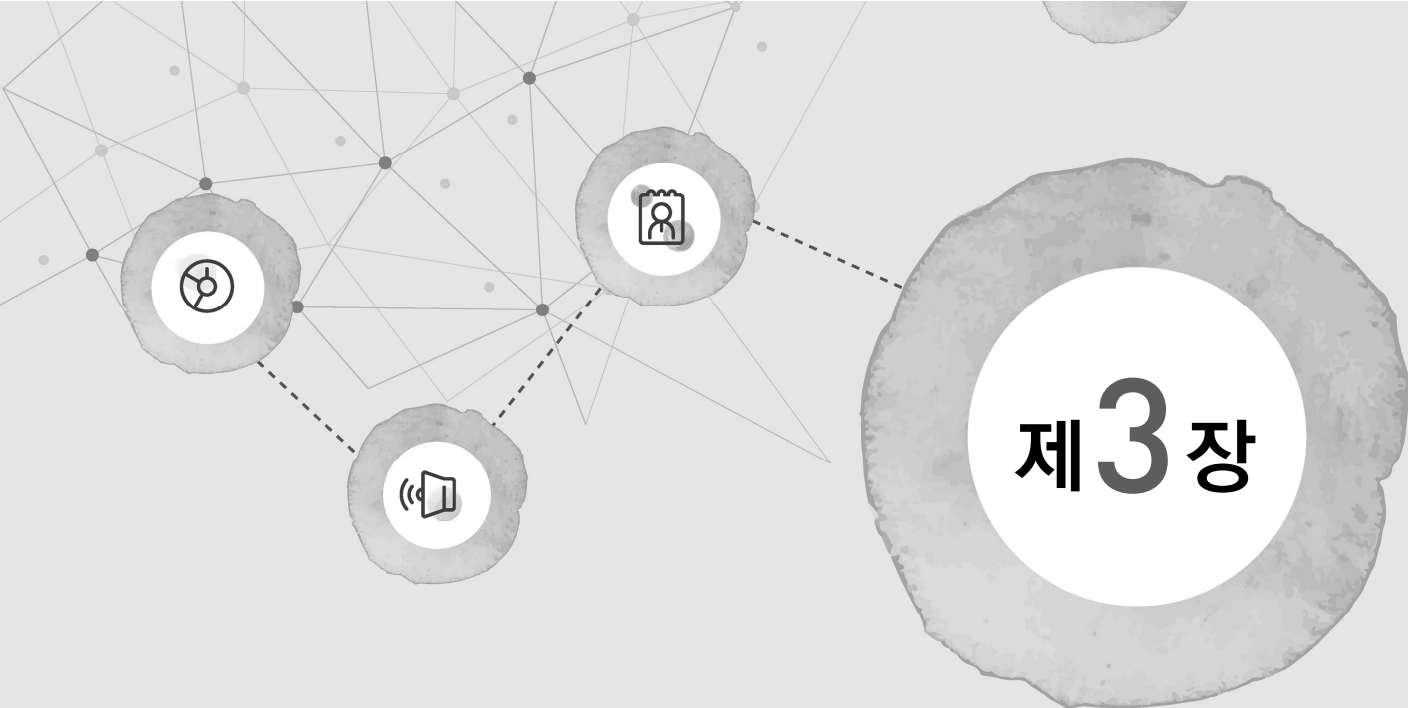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제4항과 제85조제1항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가입자 등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①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②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③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두27639·2010두27646(병합), 2012.6.18. 선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I. 설립과정

II. 주요 기능 및 역할





## 제3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 I

### 설립과정

작성자 : 기획예산부 주 - 문덕현  
부 - 박철규

#### 1

#### 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법률 제2942호)  
- 본격적인 국민의료보장제도 토대 구축(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
- 1977. 1. 13. ‘의료보험협의회’ 설립
- 1977. 7. 1. 의료보험제도 실시(의료보험조합별로 각각 진료비 심사)
- 1977. 11. 28.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법인 등기
-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3081호)
- 1978. 8. 4.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8.11. 법인 등기)
- 1979.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진료비 심사 포함)
- 1979. 7. 1. 의료보험조합 진료비 심사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일원화,  
진료비심사위원회 설치
- 1981. 10. 1.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 설립(전국의료보험협의회 해산)
- 1981. 10. 15.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 설치
- 1982. 1. 1.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2. 4. 13.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탁

- 1988. 1. 1.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진료비 심사기구 일원화(의료보호 포함)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지부 설치
- 1989. 10. 1. 경기·경남 지부 설치
- 1995. 1. 1. 응급의료기금 관리 및 운영 수탁(2003.1.7. 대지급 사업 수탁)
- 1996. 7. 1. 진료비 전산매체(디스켓) 청구 전국 확대
-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 1999. 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추진반 구성
- 1999. 3. 9. 설립위원회 구성
- 1999. 7. 1. EDI 청구서비스 전국 확대
- 2000. 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 진료비 심사기능 승계/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 신설
- 2002. 1. 1.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실시
- 2005. 7. 1. 노숙자, 외국인 등 무료진료환자 진료비 심사 수탁
- 2005. 10. 1.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 심사 수탁
- 2008. 3. 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확대  
(상근 30명 → 50명, 비상근 600명 → 1,000명)
- 2008. 10. 1.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 수탁
- 2010. 12. 1.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전국 확대
- 2011. 6. 29.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13. 7. 1.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 전면 확대
- 2013. 7. 22.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2015. 12. 30. 본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 2016. 2.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확대(상근 50명 → 90명)
- 2016. 3. 1. 의정부·전주 지원 설립
- 2017. 1. 1.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
- 2017. 7. 1. 인천 지원 설립  
한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
- 2018. 1. 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

## 2

## 설립 배경

## 가. 의료보험에서의 심사기구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1977년 7월 1일 본격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사업의 실무적 구심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서 1977년 1월 13일 발족하였다. 전국의료보험협의회는 각 사업장별 조합설립 등 의료보험 시행 전반에 대한 의사조정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시행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486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후 점차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을 위해 1978년 8월 4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교 공단’)이 설립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해당 직영 대상 의료보험사업이 시행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거주 자영자까지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이루었다.

이러한 다(多)보험자 운영 방식 하에서 요양급여비용심사의 변이를 없애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단일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교 공단은 독자적으로 진료비의 심사·지급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각 의료보험조합은 1979년 7월부터 보험자단체로 설립된 ‘전국 의료보험협의회’에 심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의료보험에서 진료비 심사기구는 일원화 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급여기준 등이 동일한 진료비를 각각의 심사기구에서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준 적용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과의 주요 갈등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1981년 10월부터 의료보험연합회와 공·교 공단의 심사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구를 공동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 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심사기준을 표준화 시키는 등 일관된 심사를 위하여 공·교 공단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함으로써 1988년 1월부터 모든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의료보험연합회로 일원화되었다.

## 나.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에서의 주요 쟁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던 20여 년간 진료비 심사의 가장 큰 과제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였다. 주요 쟁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약계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균형적 역학관계를 위하여 심사기구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자 등은 의료보험재정보호 측면에서 심사기능을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계속 위탁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둘째, 진료비 심사가 진찰·검사·처치 및 치료재료 등과 같은 의료자원의 과다이용과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문별로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여 의료의 질적 적정성에 대한 미흡함이 제기되었다.

셋째, 진료비 심사가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은 배제되고 ‘단기적·미시적 비용절감’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랐다.

넷째,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심사기준 제·개정 원칙과 우선순위의 불명확성, 기준 개정의 수동성과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임의비급여로 적용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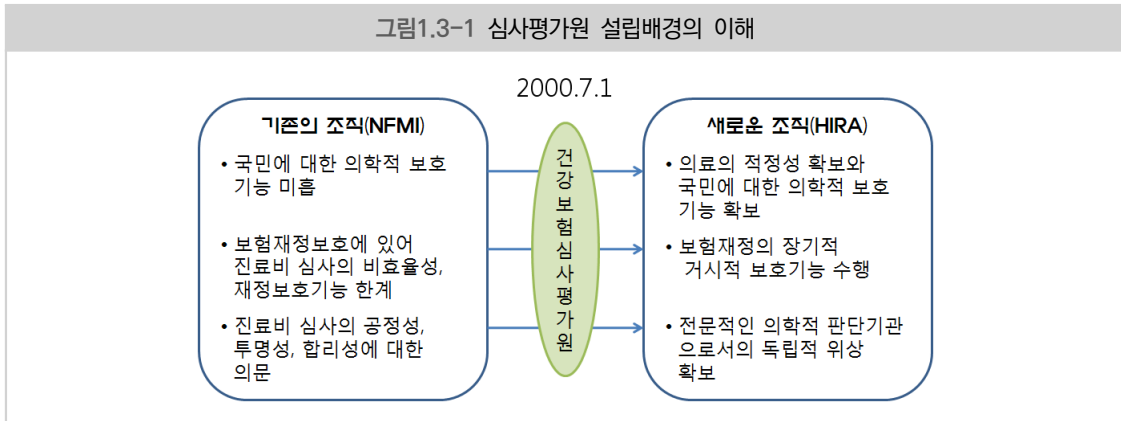
## 다. 심사기구 독립의 필요성

1998년 초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의 전체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의료보험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기능과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었다.

진료비 심사기능을 보험자의 고유권한으로 보험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논쟁 끝에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공법인에 부여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 후 심사기구를 요양기관 및 보험자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진료비 심사와 더불어 그간 제기된 의료의 질적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의 질 평가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건강증진을 꾀하도록 하였다.

그림1.3-1 심사평가원 설립배경의 이해



## 3

## 설립 의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즉, 법에 따른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특수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사평가원을 독립된 전문 심사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확립하여 고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사평가원이 독립된 위치에서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적 적정성을 공정·타당하게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능을 구체화하여, 전문기관으로서 중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받은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설립 전의 진료비 심사처럼 진찰, 검사, 처치, 약품 등과 같은 의료자원의 과다이용, 즉 양적인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의료의 질적인 적정성 평가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게 된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해 미시적 재정보호인 진료비 청구상의 부정행위 방지 기능과 함께 거시적 재정보호의 기능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심사평가원은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직접 국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사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Ⅱ

# 주요 기능 및 역할

### 1

## 법적 기능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 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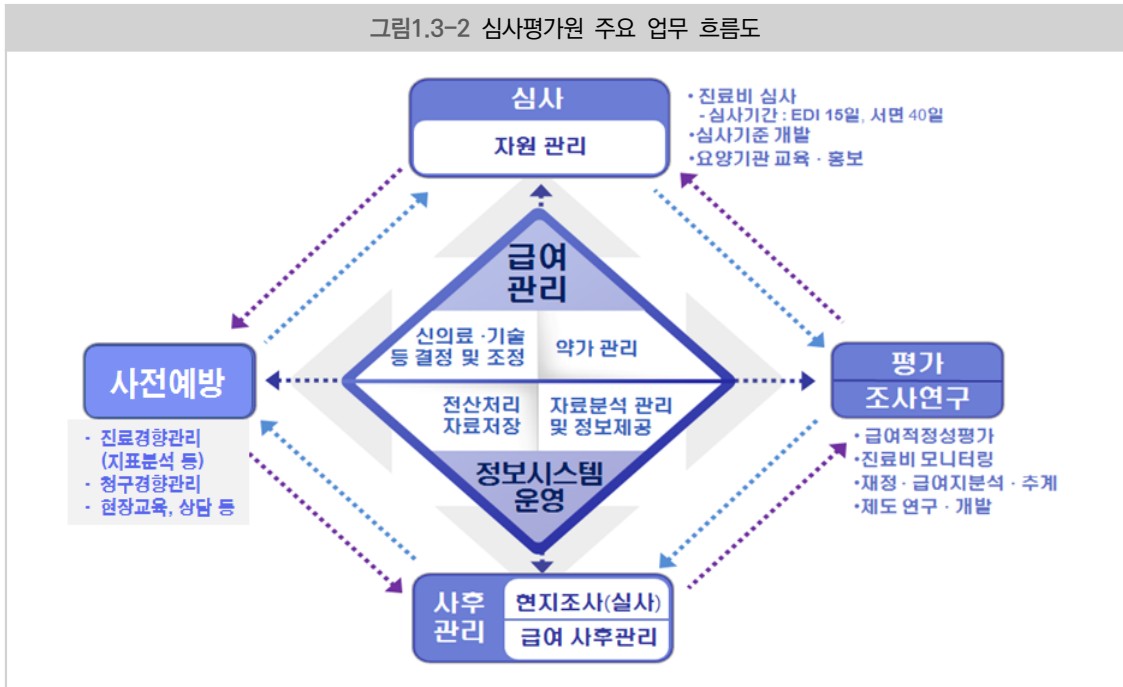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7호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심사평가원의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3-2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흐름도



###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진료비용의 청구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종래의 사전적·예방적 기능의 일부 취약점 보완을 위하여 심사의 효율성·전문성과 심사의 질 향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및 과학화를 통해 심사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자율개선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함과 동시에, ICT 데이터를 융합한 지식심사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체계적 관리를 꾀하고 있다.

둘째, 심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본원(34개 중앙분과위원회)과 지원(32개 지역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지원 증설과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권역별 분과위원회(수도권 29개 분과, 충청·전라권 29개 분과, 경상권 28개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심사일관성 및 운영 효율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요양급여비용 심사기능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현지조사 등 각 제도간 포괄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근거 중심의 심사기준 정비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심사기준의 즉시성 있는 공개로 심사의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란 환자에게 실시한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였는지 여부와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요양기관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적정성 평가의 방향은 우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료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통한 평가대상 도출과 평가를 통한 심사기준의 보완 등 심사와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의 대상은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분야 등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정 기준에의 부합정도, 적정 기준에 대한 기관별 상대적 변이 분석 등을 평가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 사업 및 정부 정책 등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3) 기타 기능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른 의료보장제도 등에서 요구하는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와 더불어 무료진료환자, 보훈환자 및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민의료비 전반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외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심사 후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가 실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적정 수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전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 등 평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시설·인력·장비) 및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국민의 진료비 확인, 심사·평가방법 조사연구,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검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역할

심사평가원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우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국민을 의학적·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진료비 심사라는 측면에서는 의료보험연합회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新) 역할이 부여된 새로운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의 전 영역에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제 2 부

## 급여범위 설정 및 지불제도 운영

제1장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제2장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

제3장 포괄수가제도

제4장 의료분류체계

제5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제 1 장

##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 I. 의료행위

I-1. 의료행위 요양급여 등재 등 관리

I-2. 의료행위 급여비용 관리

I-3. 상대가치점수제

### II. 치료재료

### III. 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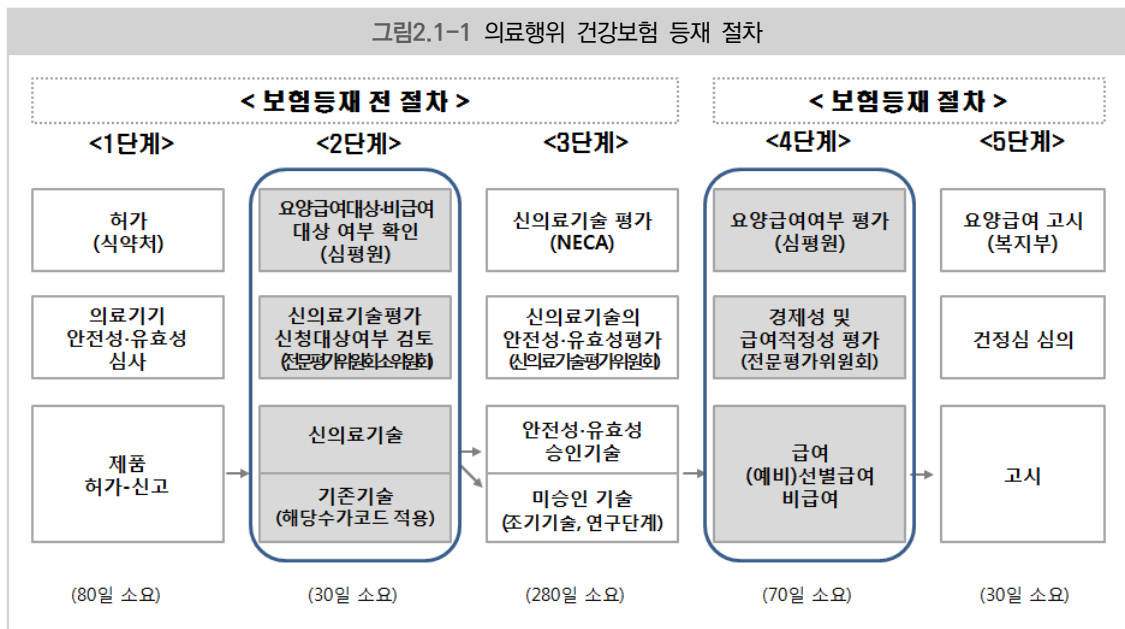
# 제1장

##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 I 의료행위

#### I-1 의료행위 요양급여 등재 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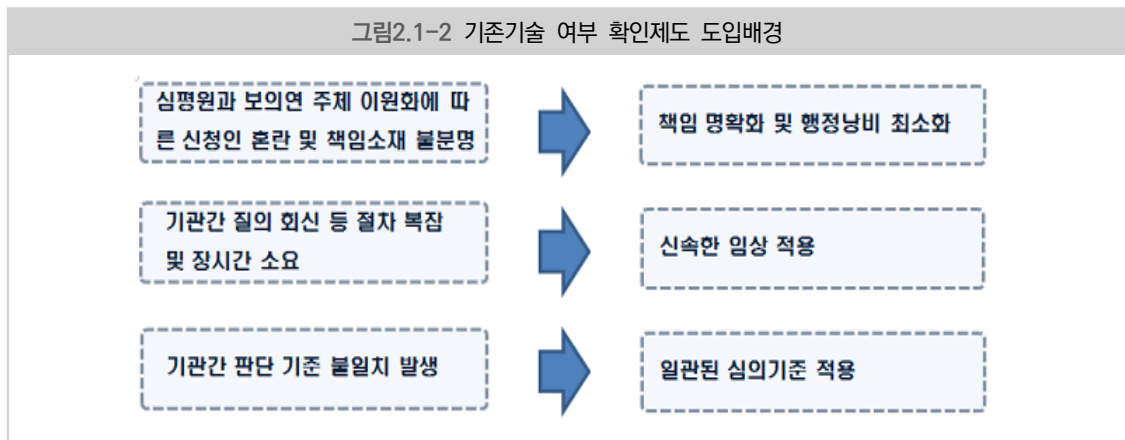
작성자 : 의료행위등재부 주 - 김애련  
부 - 박정해, 이숙희



1 요양급여·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제도

가. 업무 개요

요양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 수입·제조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이 불분명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이하 ‘기존기술’)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확인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법적 근거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기존기술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 있다.

또한 기존기술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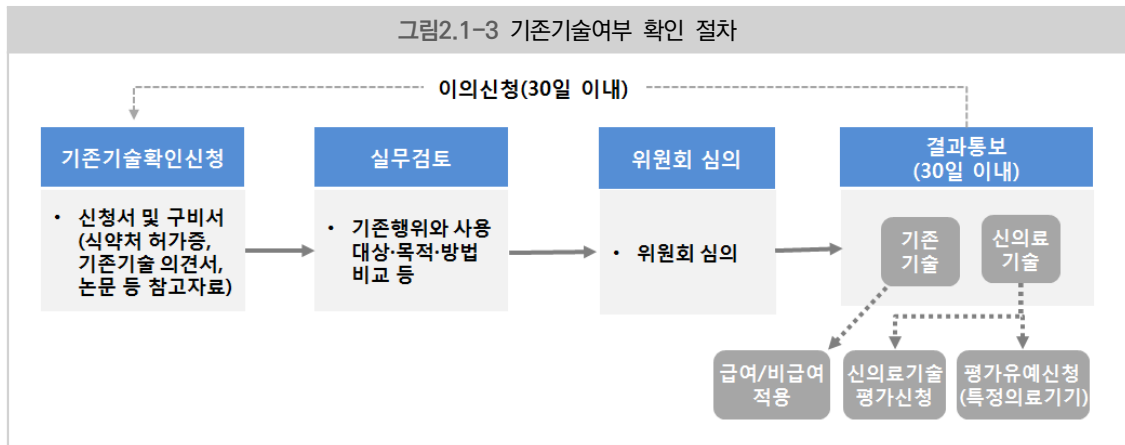
- ※ '17.9.1.이후 전문적 검토 필요시 전문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제5항 신설)



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확인 절차 및 방법



1) 기존기술 확인신청

- 가) 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인체조직의 경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 포함)
- 나) 신청 시기 :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
- 다) 신청 접수기관 : 확인신청자는 심사평가원에 기존기술 여부 확인신청서 등 제출
- 라) 제출서류
  - (1)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
  - (2)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의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 관련 자료(허가증 사본 등)
    - ※ 월스탑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조(수입)허가(인증)신청서 및 접수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심사의뢰서 및 접수증
  - (3)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 (4)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 2) 실무검토

- 가)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보완 요구한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 처리할 수 있다.
  - (1)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2)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3) 신청서 등에 거짓·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 (4) 이미 확인이 완료된 신청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재신청한 경우
- 다) 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신청행위와 기존기술 간의 목적·대상·방법 비교, 기존 결정 사례 등을 검토한다.

## 3) 위원회 검토

- 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실무검토 후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치며, 검토 시에는 신청한 행위의 목적·대상·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8호, 2018.4.1.시행)
- 나) 위원회검토 제외대상  
신청한 행위가 이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이미 고시된 사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1항제1호)

## 4) 확인결과 통보

- 가) 확인결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심층적 검토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허가평가 통합서비스<sup>13</sup>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통보한다.
- 나) 확인결과 기존기술과 유사한 경우로 검토된 경우에는 등재된 코드 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해당 고시를, 신의료기술로 검토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임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 다) 법정기한 30일 내 신속한 결과통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검토결과는 전문평가

<sup>13</sup> 허가평가통합서비스란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를 상호협력하여 통합운영하는 제도

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사후 보고하며, 장관은 보고받은 결과가 기존항목 범주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행위인 경우 필요시 고시한다.

## 5) 이의신청 및 결과통보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2

##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가. 업무 개요

행위·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2.3.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 가)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98조(업무정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다) 제99조(과징금)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을 말함)는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규정된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행위·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해당 전문평가위원

회의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다)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인체조직은행의 장 포함) 또는 가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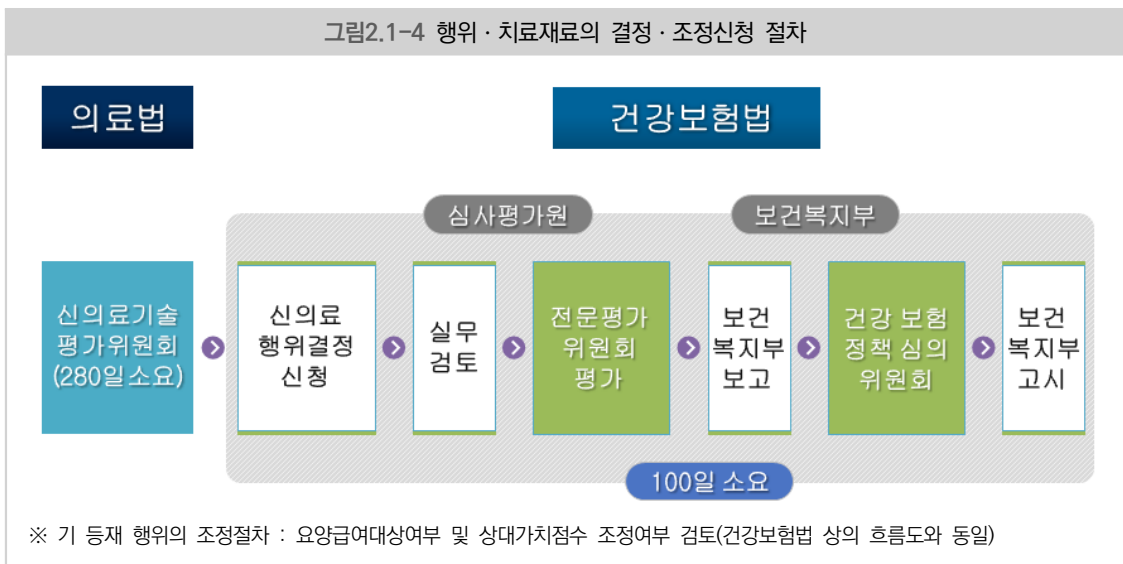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할 수 있다.

3)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결정·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결정·조정 절차 및 방법

1)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가) 결정·조정신청자

- (1) 결정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
- (2) 조정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인체 조직은행의 장 포함) 또는 가입자

나) 결정·조정신청 시기

- (1) 결정신청 : 행위의 경우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sup>14</sup>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를 받은 이후 가입자들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2) 조정신청 : 수시

다) 결정·조정신청 대상

- (1) 결정신청 :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이 아닌 행위 및 치료재료로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인정된 기술 또는 평가 유예를 받은 신의료기술에 한한다.
- (2) 조정신청 : 이미 고시된 행위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가)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또는 자원의 양·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고시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결정·조정신청 처리기한

- (1) 장관은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여야 한다.(처리 기한 150일 → 100일 단축, '17.1.9. 시행)
- (2) 심사평가원장은 결정신청 건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확인과 요양급여 대상여부·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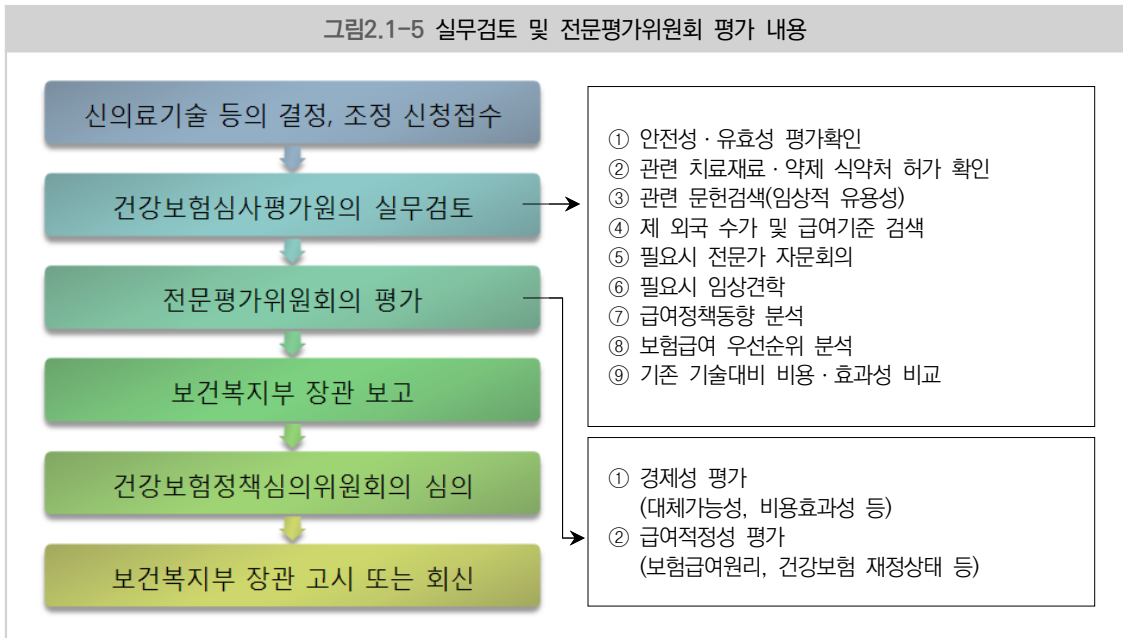
14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특정의료기기)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마) 안전성·유효성 확인 등

- (1) 심사평가원장은 행위의 경우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장관은 결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신의료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바)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평가

- (1) 행위·치료재료의 영양급여 결정신청건은 실무검토를 거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적정성을 고려하여 영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 (2) 경제성은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급여의 적정성은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다.



## 2)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를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결정신청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를 정하여 고시한다.

표2.1-1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신청 비교

구분	결정신청	조정신청
신청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가입자
신청의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유효성있는 신의료기술</li> <li>• 평가유예 신의료기술</li> </ul>	이미 고시된 행위 •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의 양, 가격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한	30일 이내(최초 시행일부터)	수시
처리기한	100일	100일
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의료기술 평가결과</li> <li>2. 상대가치점수 산출근거 자료</li> <li>3.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li> <li>4. 국내·외 실시현황</li> <li>5. 소요장비, 소요재료, 약제 허가(신고) 관련 자료</li> <li>6. 국내·외 연구논문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 신청사유</li> <li>2. 조정 신청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li> <li>3.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산출근거 및 내역</li> <li>4. 기타 참고자료</li> </ol>

## 3)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전·후의 비용기준

### 가)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 신청된 행위·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 2] 에 따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 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3

## 전문평가위원회

## 가. 기능

행위·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요양급여 시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 등을 평가한다.

## 나. 종류

5개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의료행위와 관련된 위원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다.

## 다. 구성 및 운영

## 1) 구성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은 유지하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고정 참석 및 전문가 인력풀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협회, 소비자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은 매 회의 때마다 각 전문평가위원회에 고정 참석하고, 학회 및 학계·전문기관 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22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표2.1-2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단위 : 명)

구분	합계	학회	협회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기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식약처
인력 풀	326	219	31	8	61	4	3
선정 인원	행위, 한방	22	5	6	4	3	2
	질병군	21	4	6	4	3	2
	치료재료, 인체조직	21	5	5	4	3	2

## 2) 임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3) 운영

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 공동운영

심사평가원장은 두 개 이상의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전문평가위원회별로 7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운영한다.

## 5) 소위원회 등 운영

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임상견학, 관련자 의견진술·청취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6)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 일자, 참석위원, 신청구분(결정 또는 조정),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 4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와의 비교

---

### ◇ 보건의료기술평가의 3가지 영역 (Drummond 등)

- Can it work?: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지는 영역으로 그 결과를 효능(efficacy)이라고 정의
- Does it work?: 임상시험의 결과가 실제 환자치료에서 나타나는가를 보는 영역으로 그 결과를 효과(effectiveness)라고 정의, EBM으로 해석
- Is it worth it?: 자원사용의 가치 평가, HTA에 해당 (경제성평가 방법론 사용)

◇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appraisal)

- 협의의 HTA(assessment)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결과와 경제성평가의 결합물
- 광의의 HTA(appraisal)는 보건의료자원사용의 의사결정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즉 제도로서의 HTA는 경제성만이 아닌 예산영향, 기술의 혁신성, 다른 나라의 보험급여정도, 형평성, 필수여부 등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출처 : Bong-min Yang. Technology Assessment, The Past and the Future. J Health Tech Assess 2013;1:3-8

건강보험 적용여부 평가를 위한 요양급여 결정신청 전에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아야 하며, 요양급여 결정신청하기 전까지는 비용 산정을 할 수 없다.

표2.1-3 행위·치료재료의 결정·조정과 신의료기술 평가와의 비교

구분	행위·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10조내지14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대상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 및 치료재료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신청요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인정 받은 이후,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를 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용징수	비급여(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비용징수 불가
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내용	• 경제성 평가(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등) • 급여적정성 평가(보험급여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처리기간	100일	280일
업무관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I-2 의료행위 급여비용 관리

작성자 : 의료수가운영부 주 - 최원희  
의료수가개선부 주 - 김남희  
의료수가개발부 주 - 안유미  
의료수가운영부 부 - 권성희  
의료수가개선부 부 - 김순희  
의료수가개발부 부 - 정선호

### 1 개요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국정과제 및 보건복지부 정책지원을 위해 수가 신설(직권조정), 급여기준 설정, 본인일부부담금 개정 등 수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법적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비용의 본인부담)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3항(요양급여의 범위 등)

## 3

## 의료행위비용 산출 구조 등

## 가. 의료행위비용 산출

수가는 개별 행위마다 점수를 정하고 있는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병·의원 등) 점수당 단가 및 종별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최종 수가는 달라지게 된다.

$$\cdot \text{의료행위비용} = \text{행위별 상대가치점수} \times \text{점수당 단가} \times \text{종별가산율}$$

(단위: 점)                      (단위: 원)                      (단위: %)

표2.1-4 2018년도 적용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구분	환산지수		
	'17년	'18년	인상률(%)
병원	72.3	73.5	1.7
의원	79.0	81.4	3.1
치과	80.9	83.1	2.7
한방	80.0	82.3	2.9
약국	80.1	82.4	2.9
조산원	121.4	125.5	3.4
보건기관	77.1	79.3	2.8
평균(계)			2.28

## 나. 요양급여 비용 체계 및 구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가 체계는 총 제4편 제14부 제2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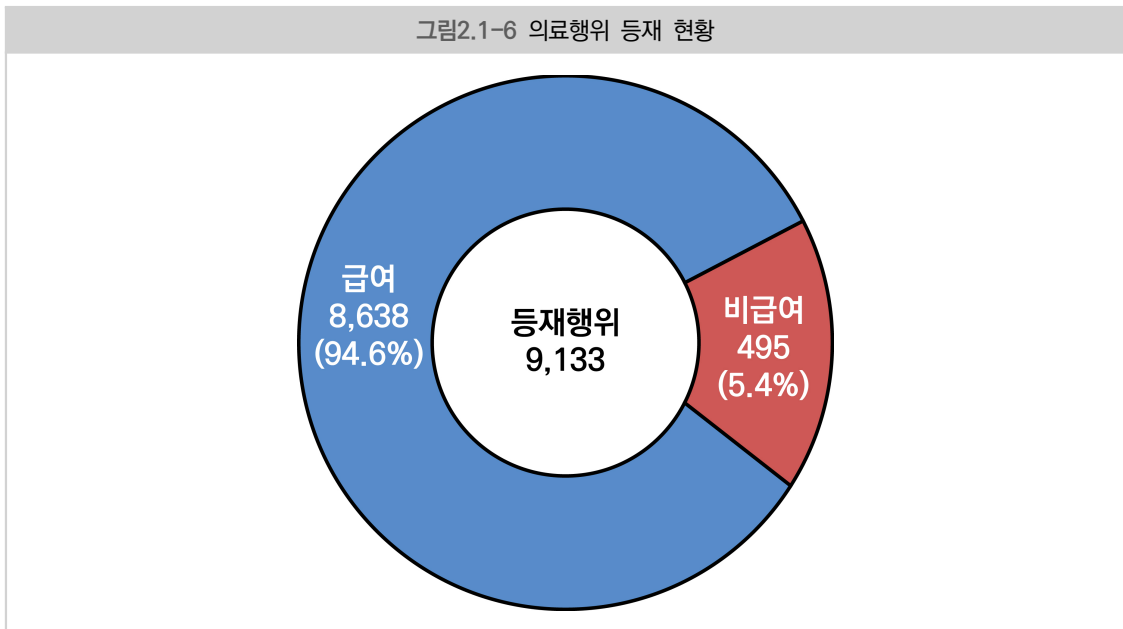
- 구분 : 제1편 행위, 제2편 질병군, 제3편 요양병원 및 제4편 호스피스로 구분
- 구성 : 급여 일반원칙, 급여·비급여 목록 및 산정지침 등

표2.1-5 요양급여비용의 체계 및 구성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1장 조산료
제2장 검사료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3장 한방 검사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5장 주사료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6장 마취료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로
제7장 이학요법료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8장 정신요법료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안과	
제2장 이비인후과	
제3장 외과	
제4장 산부인과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호스피스 급여 일반원칙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부 호스피스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2018년 8월말 기준 의료행위 등재 항목수는 9,133개 항목(EDI 5자리 코드, 2편 질병군 제외)이다.

그림2.1-6 의료행위 등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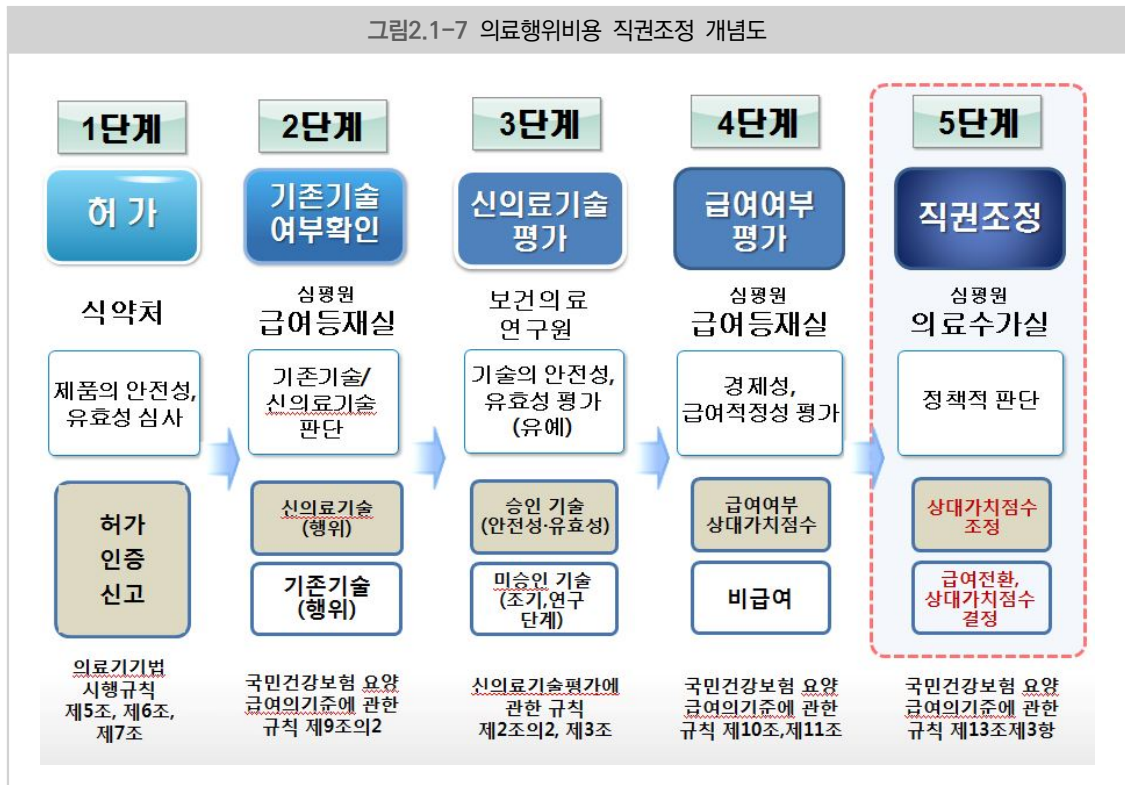
구분	항목수 (5단 코드수)	%	구분	항목수 (5단 코드수)	%
기본진료	747	8.2	약국	38	0.4
검사	1,784	19.5	식대	41	0.5
영상진단	941	10.3	응급	249	2.7
마취	110	1.2	요양병원	1,296	14.2
처치수술	2,588	28.3	호스피스	428	4.7
치과	459	5.0	기타	373	4.1
한방	79	0.9	합계	9,133항목(100.0)	

## 4

## 의료행위비용 검토업무 처리 절차

## 가. 의료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직권조정 검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 중 급여 전환 또는 의료행위비용 조정(인상 등) 등이 필요한 경우 수가 신설·개정 절차에 준한 검토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 나. 의료행위비용 신설·개정 관련 검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한 수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개정,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 사안 등 보건복지부 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학회, 요양기관,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수가 관련 질의 또는 건의 사안에 대하여도 수가를 신설·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토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고시개정을 건의한다.



그림2.1-8 의료행위비용 신설·개정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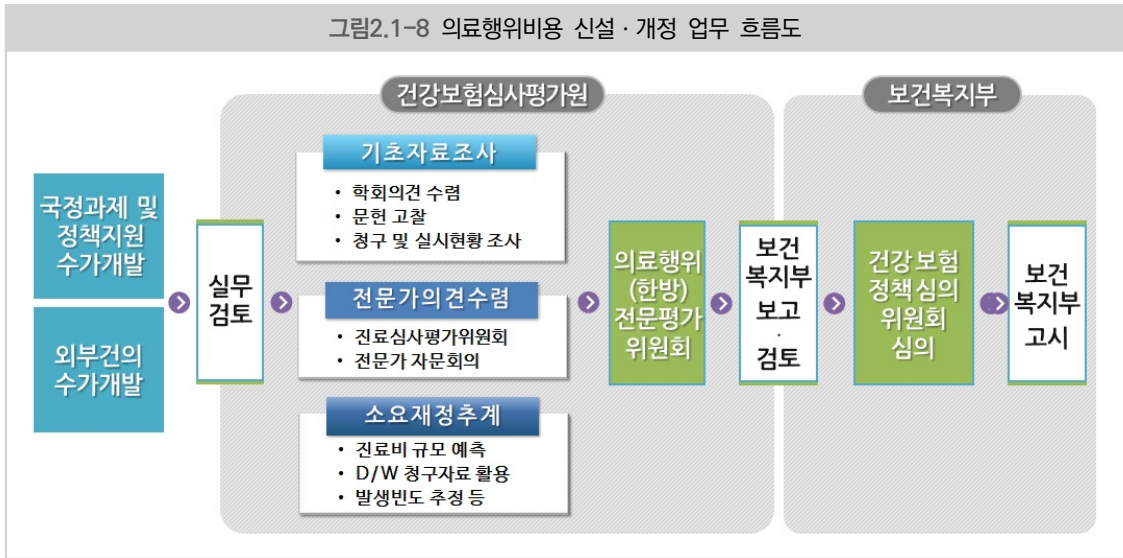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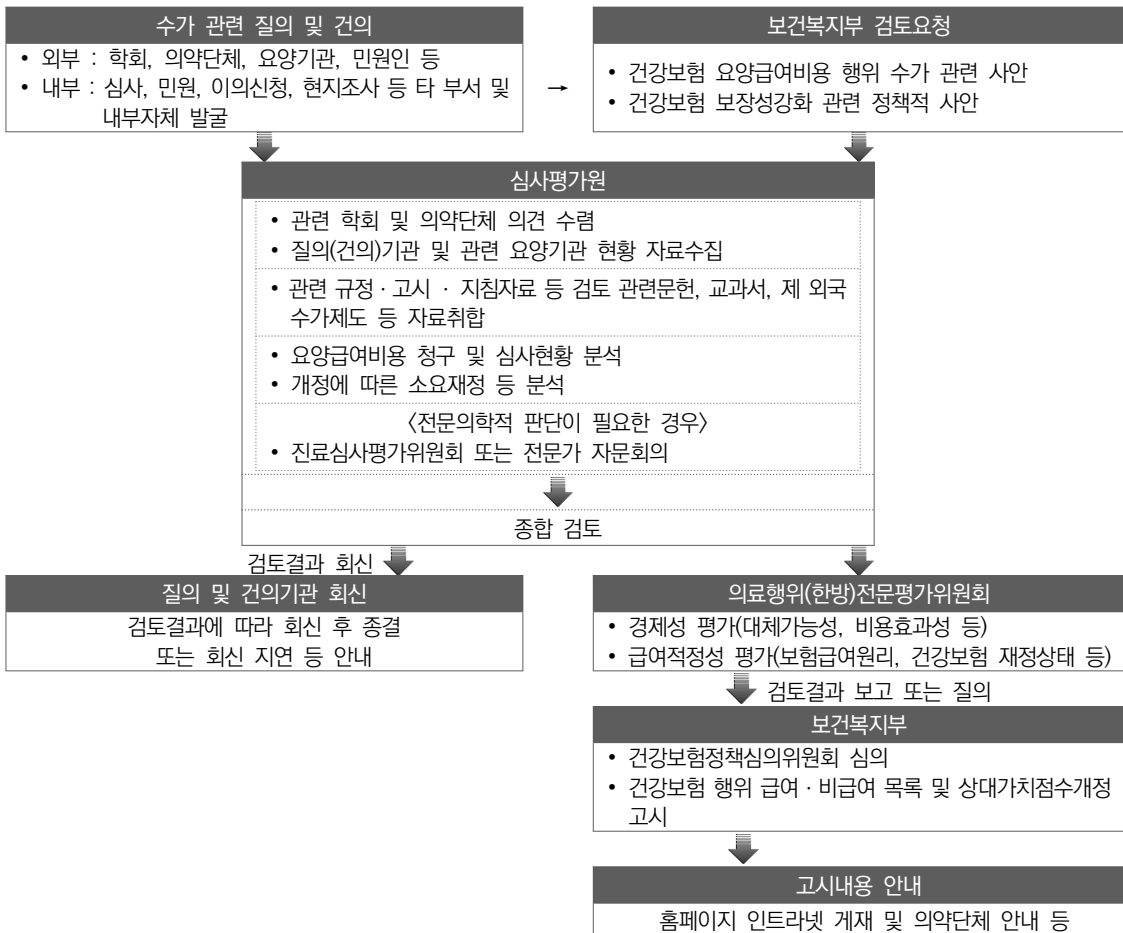


표2.1-6 의료행위비용 개발 상세 업무절차



### 다. 의료행위비용 관련 고시 관리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의 발간

수가 신설·개정 고시가 있는 경우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여,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의 진료, 청구업무 등 문의 시 고시 개정 내용을 바로 적용하여 안내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수록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책자를 매년 발간·배포한다.

### 라. 수가파일 관리 업무

수가가 신설·개정되면 대분류 및 분류번호별로 기본코드(5단)와 산정코드를 부여 또는 변경하고, 이후 심사와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 파일을 내부(인트라넷) 또는 외부 홈페이지에 안내·홍보한다. 수가 파일은 의·치과, 한방, 약국으로 나누어 반영하고 게재한다.

수가 코드가 내부 수가마스터에 적용되면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도 수가코드·분류번호·한글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각 코드별 변경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 마. 진료수가 발자취 제공

수가의 변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가제도 개요, 주제별 수가 이력, 고시 주요개정 내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수가제도 개요
  - 수가제도 개요 및 체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 주제별 수가 이력
  - 기본진료료 : 진찰료, 입원료
  - 가산제도 : 야간·공휴 가산, 연령가산, 전문의 인력 가산
- 고시 주요개정 내용
  - '77년부터 연도별 고시내용 요약 및 관련 근거 등



##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정부정책 지원

표2.1-7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별 추진과제

국정과제	추진과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간호인력 확충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장애인 지원 강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소아재활치료 수가 개선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 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노인 틀니 ·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
	충치치료 보장성 강화
	한약치료 보장성 강화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환자 의뢰 · 회송 체계 강화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일차의료 강화
	동네 의료기관 야간 · 공휴일 가산 개선
	난임시술 급여화

# I-3 상대가치점수제

작성자 : 상대가치개발부 주 - 하구자  
부 - 박은혜, 민인영

## 1 도입 배경

의료보험 도입 시 사용한 수가체계는 기존의 관행수거나 외국의 수가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었고, 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이에, 수가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특정 진료과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건의에 따라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고 2001년 1월부터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제 (RBRVS,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가 도입되었다.

## 2 정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항목사이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투입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2001년부터 도입·사용하고 있다.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실제로 산정되는 금액(진료수가)이 정해진다.

- \* 환산지수 :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에 의해 결정
-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자원의 양(진료비용), 위험도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3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계약의 내용 등)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나.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

### 4 개정 과정

심사평가원에서는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2001년)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03년부터 상대가치 개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가. 상대가치 1차 전면 개정연구 (2003년~2006년)

당초 2001년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변형·도입하여 점수 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점수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신 상대가치체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개편의 주요방향인 ①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② 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③ 진료 위험도의 반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산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등 수가체계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2008년부터 5년 간 20%씩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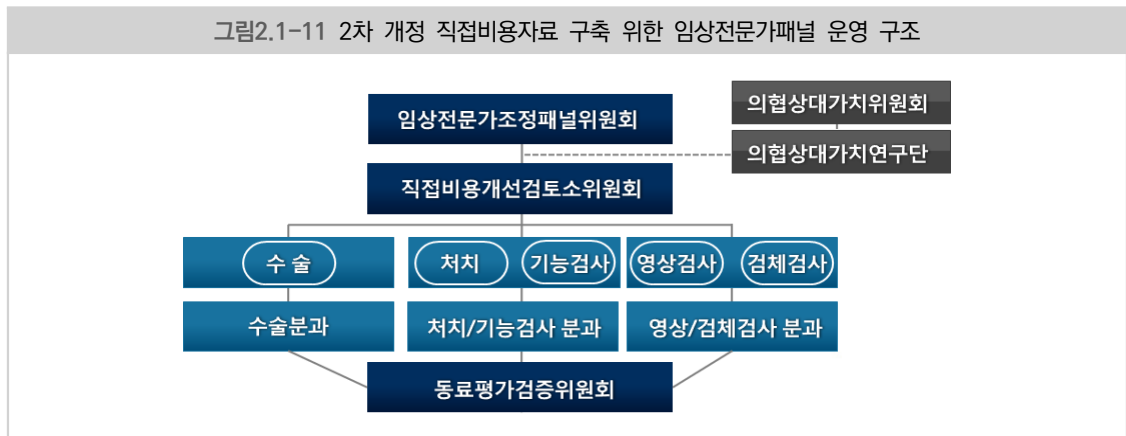
#### 나. 2차 전면 개정연구 (2010년 4월~2016년)

1차 개정 이후 투입된 자원가치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진료과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가치 산출체계를 진료과별에서 행위 유형별(유사 행위별 그룹화)로 전환하여 유형별 동료평가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 행위유형(5개):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5,000여 개 건강보험 적용대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연구는 학계, 의약단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작업이다.

개발대상	개발주체	심사평가원
업무량 개발	의·약사 및 공급자단체	상대가치점수 통합 및 조정
진료비용 개발	임상전문가패널 및 심사평가원 (회계조사: 전문연구기관)	
위험도 개발	의료사고 비용조사(전문연구기관)	



## 5 개정 업무처리절차

개정 업무처리절차는 크게 행위 정의 및 분류 개선 → 구성요소별 상대가치 개발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통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행위정의 및 행위분류 개선

의료행위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위분류와 이에 따른 행위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단체<sup>15</su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행위분류를 정비하고 행위에 대한 설명 자료인 행위정의를 작성한다.

15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 행위정의는 관련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그림2.1-12 행위정의기술서(예시)

보험분류번호	자285	보험EDI코드	Q2850	급여여부	급여
별위명(한글)	출수주위농양절제술				
별위명(영어)	Incision of Periapical Abscess				
연행수가유지 / 비급여건환 여부					
관리전도과	외과, 대장항문	조치	참조별위여부	N	조치
별위유형	수술	조치	준용별위여부	N	조치
재활리	장 및 장간막 수술	조치	세분화별위여부	N	조치
적응증	출수틀거림으로 인하여 출수틀거 주위에 농양이 생긴 경우				
별위설명	1. IV route를 확보한다. 2. 전신마취 또는 척추 마취를 시행한다. 3. 우하복부에서 제요를 시행하고 활격막에서 치골부위이 복부를 열구리까지 소독한 후 소독포로 덮는다. 4. 우하복부(McBourne point)에 칼자로 약 5-10cm 절개를 한 후 차례로 지방층, 근육, 근육층, 복막을 잘 개방 후 농양부위를 찾아(주사기 부위는 복리침) 농양을 흡입하여 본다. 5. 농양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거즈로 덮어본다. 6. 주절개부위의 오른쪽 옆으로 작은 절개하여 복강까지 관통시킨 후 농양까지 drain을 넣는다. 7. 주절개부위는 근육층까지만 봉합하고 drain을 고정시킨다. 8. 거즈로 dressings한다.				
전형적 사례	- 성별/연령 : 남자/5세 - 소요시간 : 시술 60분 - 설명명 : 출수주위 농양 - 시술대상자 구분 : 입원 - 시술장소 : 수술실 - 마취 구분 : 전신마취 - 시술시 필수 인력 : 의사 및 의사보조인력 2명 및 간호 보조인력 2명 - 시술후 환자 상태 : 입원 - 업무유형 : 주시술지만하는 경우 - 시술중 시간 : 40분~60분				

**적응증** : 행위 수행 시 환자의 임상적 상태나 증상

**행위설명** : 행위의 시술방법과 내용 기술 (수술의 경우 술기의 주요방법)

**전형적 사례** : 행위가 수행되는 대표적 환례 (성별, 연령, 상병명/증상, 마취 여부, 시술 후 환자 상태, 시술 소요시간 등)

## 나.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업무량은 주 시술자인 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과 강도(육체적, 기술적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관련 단체에서 개발한다.

관련단체에서 제출한 업무량 검토결과 시술시간, 유사행위 간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재검토를 의뢰하여 업무량을 관리한다.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과 행위분류·행위정의 개발’을 위해 2012년~2013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임상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위별로 적응증, 실시방법, 전형적 사례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작업이었다.

## 다.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

### 1) 직접 진료비용 자료구축

230여 명의 임상전문가패널(CPEP)이 참여하여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진료비용 내역을 인건비(주시술자 제외한 임상인력), 치료재료비, 의료장비비의 3가지 구성요소별로 구축한다.(5,000여 개 행위에 대한 약 41만 record 규모)

• 임상전문가패널(CPEPs: 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s)

-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부문별 진료과목별 의사, 간호사 및 분야별 의료기사 등 230여 명이 진료영역별로 24개 분과패널과 1개의 조정패널을 구성
- 임상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5,000여개 행위별로 임상인력의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근거자료 구축
- 표본기관의 진료비용 상세조사, 치료재료 및 장비 가격조사, 행위별 수술시간 조사 및 의무기록조사, 진료과별 대표행위 관찰 등을 통해 직접비용 자료의 검증 및 보완 역할 수행

표2.1-8 직접 진료비용 자료 구축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records)

구분		인건비 (임상인력 인건비)	재료비 (행위포함 치료재료비)	장비비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자료수	의과	148,010	135,749	124,965
	치과	3,413	2,387	5,564
	한방	598	230	326
	약국	3	110	69
자료구축내용	작성 진료과	작성 진료과	작성 진료과	
	행위 유형	행위 유형	행위 유형	
	행위 코드	행위 코드	행위 코드	
	행위명	행위명	행위명	
	시술전, 중, 후 구분	재료 코드	장비 코드	
	인력명	재료명	장비명	
	참여 인력수	단위	사용 개수	
	참여 시간(분)	사용량	사용 시간	
	업무 기술	반복 사용횟수	필수/선택 구분	
	업무상세기술	반복 사용횟수 반영 사용량	사용률(선택 항목의 경우)	
	분당 인건비	필수/선택 구분	최소 가격	
	임상인력 인건비	사용률(선택 항목의 경우)	최대 가격	
		최소 가격	비용산정 가격	
		최대 가격	감가상각 기간	
		비용산정 가격	장비 가동률	
	치료재료비	장비 감가상각비		



## 2)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산출

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04년 서울대학교, '11~'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대표성 있는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단위 회계비용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임상전문가패널에서 구축한 직접 비용자료를 이용하여 행위별로 배부하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한다.

### 라.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04년, '11년 연세대학교)과 함께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sup>16</sup>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한 후 행위별 위험도를 산출한다.

### 마.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 1) 근거자료(업무량, 직접·간접진료비용, 의료사고 관련 비용 등)에 의해 행위별 구성요소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여 1차 개정연구 시 부문별<sup>17</sup>,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최종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였다.
- 2) 2차 개정연구는 진료과 간 균형성 확보를 위하여 진료과별에서 유사행위 유형별로 점수 산출체계를 전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였다.

#### ※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1단계] 총점 설정 : 의과는 유형별 총점 고정, 치과·한방·약국은 전체 총점 고정. 단, 의과의 경우 회계조사의 원가보상률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총점 이동 고려 가능 (정책적 협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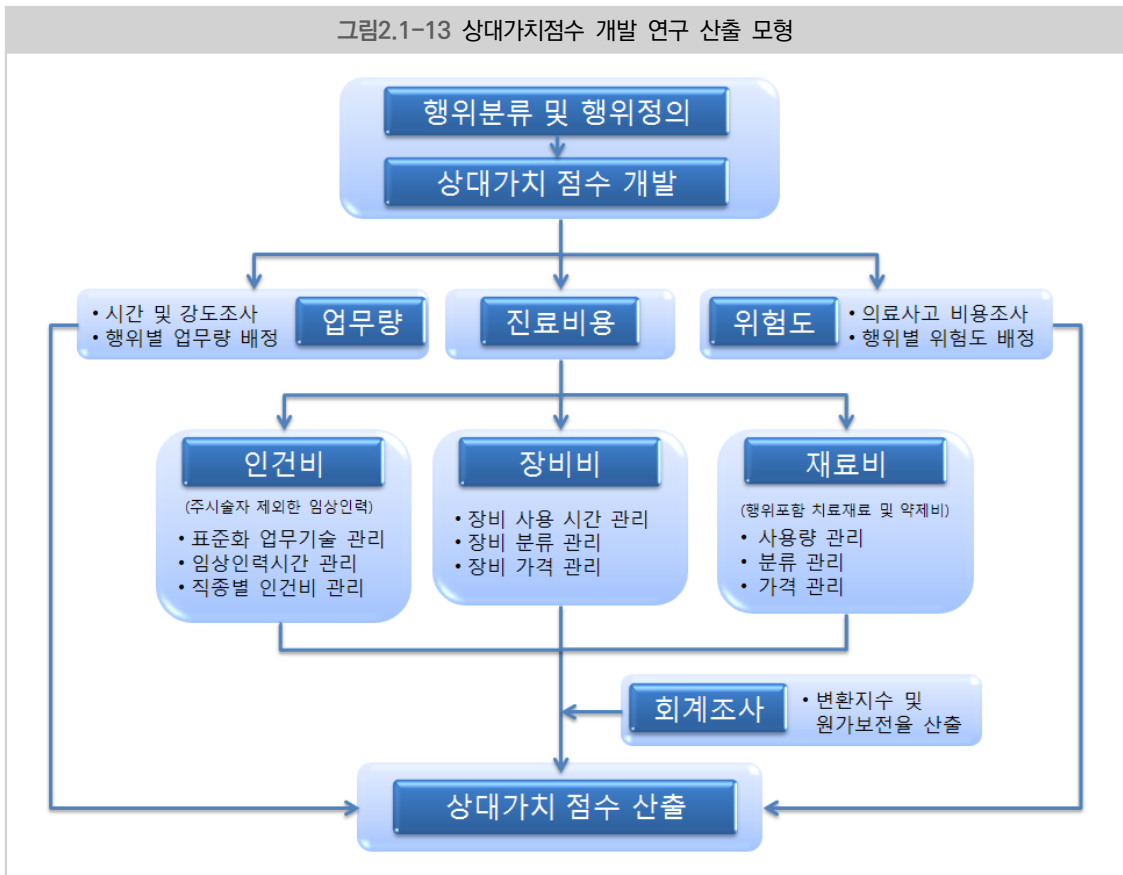
[2단계] 업무량 및 진료비용 총점 설정 : 총비용 중 주시술자의 인건비 및 진료비용 비중으로 업무량 및 진료비용 총점규모 설정 (단, 의과의 경우는 유형별 각각 설정)

[3단계] 행위별 상대가치 산출 : 전문가단체에서 조정한 행위별 업무량 크기에 따라 업무량 상대가치로 전환, 직접진료비용의 크기에 따라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전환 (단, 의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형별 각각 설정)

16 법원소송자료, 소비자보호원 중재자료, 의협공제회 자료, 의료기관 자체해결비용자료 등

17 부문별 : 의과, 치과, 한방, 약국

그림2.1-13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 산출 모형



### 바. 상대가치점수의 단계적 도입

상대가치 개정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아래 [그림2.1-14]와 같이 1차 년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도입<sup>18</sup>하여 4차 년도에 도입 완료 예정이다(2020년 도입완료).

18 2차 개정연구 상대가치점수는 매년 25%씩 확대하여 4년간 적용

그림2.1-14 상대가치점수 개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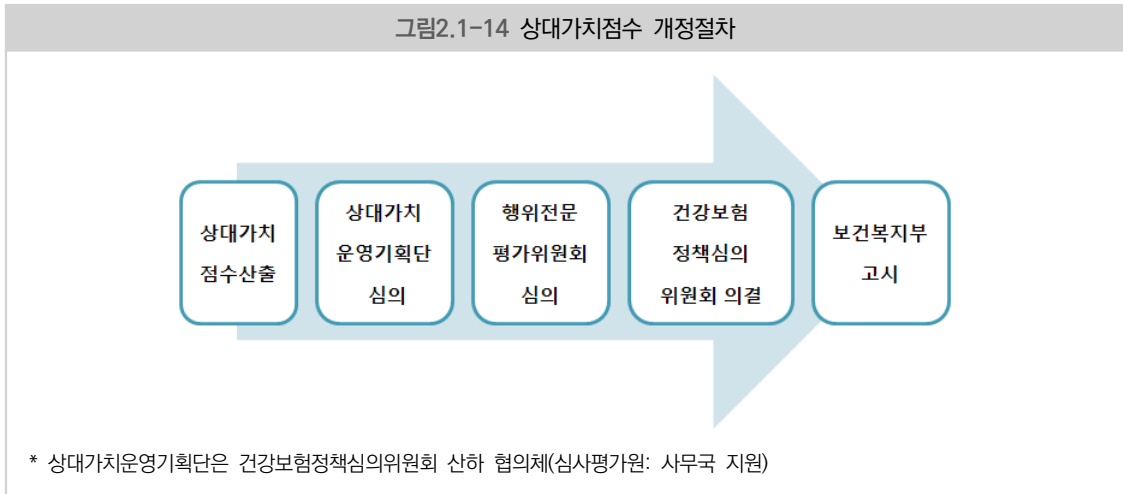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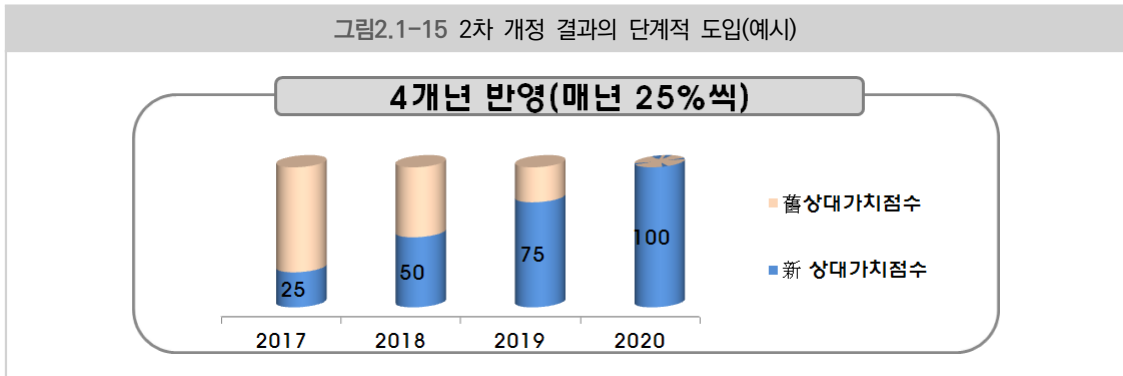


그림2.1-15 2차 개정 결과의 단계적 도입(예시)



6

상대가치 조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상대가치 개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웹-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업무안내 > 정보방 >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조회

그림2.1-16 상대가치 조회 시스템 화면(예시)



**주요 조회 내용**

- 행위별 행위정의
-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의 업무와 참여시간
- 별도 보상되지 않는 치료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 의료장비의 종류와 개수, 사용시간 등 직접 진료비용 구축내용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계산 과정 및 결과

**7**

**행위분류 관리**

의료행위분류는 진료비 지불단위, 보건의료 통계 및 연구 등의 기초로 진료비심사·지불, 의료의 질 평가, 비급여 진료비 파악 등 보건의료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

**가. 국제분류 호환을 위한 행위분류**

국제행위분류체계와 호환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는 행위분류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단체<sup>19</sup>의 연구를 진행('12~'13년) 하였다.

19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 국제의료행위분류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행위정의)에 공개
- ICHI<sup>20</sup> 3개 축(대상 Target, 방법 Means, 행위 Action)

3개 축(axes)	하위 축 (sub-axes)
Target 대상	anatomy (해부학적 부위), Function (기능) 등
Means 방법	approach (접근방법), technique (기법), method (방법)
Action 행위	diagnostic (진단), therapeutic (치료), managing (관리), informing (정보제공), assisting (보조), preventing (예방) 등

## 나. 급여 행위 재분류

### 1) 행위재분류 검토 대상

- 가) (외부요청) 관련단체 행위 재분류 연구 및 학회, 영양기관 등에서 관련단체 논의를 거친 건  
 나) (내부요청) 심사평가원 내부부서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친 재분류 요청건  
 ※ (제외대상) 신설, 신의료기술, 기준개선, 조정신청, 비급여

#### \* 재분류 신청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내용(현행/재분류 신청(안) 비교 포함)
- 신청사유 및 관련 문헌(CPT<sup>21</sup> 등 제 외국 행위분류 포함)
- 신청(안) 상대가치점수 근거자료(행위정의, 업무량, 직접비용, 빈도)
- 기타 참고자료

### 2) 행위재분류 검토 내용

#### 가) 재분류 필요성 검토

- (1) 의학적 타당성, 행위구분 명확성, 상대가치의 차이, 정보로서의 가치, 제외국 행위분류 현황 확인 등
- (2)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 심의사례, 행위 재분류 관련 기 논의사항 검토
- (3)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 행위로 행태 변화할 개연성, 행위 Upcoding 가능성 등
- (4) 유사행위와 비교, 분류 일관성 검토

<sup>20</sup> ICHI(건강행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sup>21</sup>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나) 재정영향 검토

- (1) 재분류 전·후 재정중립가능 행위 우선 반영(해당 행위분류 항목 내 중립)
- (2) 재정변화 검토(재분류에 따른 빈도추이 등)

3) 전문가 자문회의

- 가) (역할) 행위 재분류 요청건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및 재분류 필요성 등 자문
- 나) (대상) 관련학회, 심사평가원 상근위원·자문위원, 심사평가원 관련부서
- 다) (운영) 진료과별 또는 유형별 운영

4) 상대가치점수 산출

- 가) 의협, 학회에서 제출된 업무량, 진료비용(시술 중 시간 등), 예측빈도를 반영하여 산출
- 나) 직접진료비용 구축이 필요한 세분화 행위는 임상전문가패널을 통해 구축

5) 위원회 심의 및 고시

- 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보고
- 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반영

6) 재평가

재분류 도입 후 재정변화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 경과 시점에 재분류 전·후 변화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재평가 예정

## Ⅱ

## 치료재료

작성자 : 치료재료등재부 주 - 김국희  
부 - 윤미선

## 1

##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개념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한 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필한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치료재료의 종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주로 소모성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중 거즈, 붕대 등 일부품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득한 기관에서 취급한 피부, 뼈,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양막, 근막, 연골 등의 인체조직, 기타 공산품 중 일부 품목이 치료재료로 인정되고 있다.

## 2

## 법적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영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위·치료재료의 영양급여 결정신청)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인증)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료재료평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결정신청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영양급여의 결정)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정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대가치점수 등의 조정신청)

이미 고시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의 조정을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또한, 고시된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전문평가위원회

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1)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 300명 내외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개최시마다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5명,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4명,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자 3명, 관련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각 1명,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명 등)

2)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의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평가한다.



## 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 관련 협회의 경우 치료재료와 달리 한국조직은행연합 또는 한국인체조직 기증원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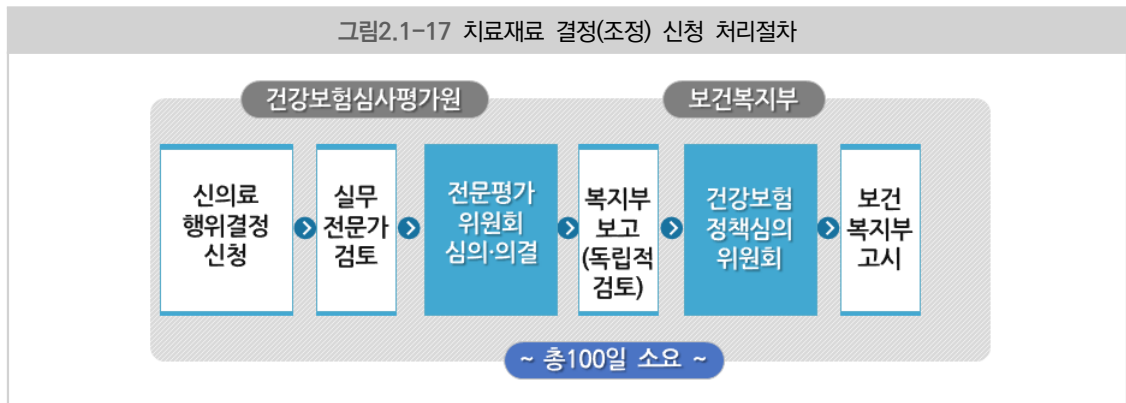
### 4

##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업무

### 가. 처리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나. 치료재료 평가 절차



1) (1단계)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료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또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했는지 여부 확인

※ 인체 조직의 경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득한 기관의 취급 품목인지 여부 확인

2) (2단계) 경제성 평가: 신청 치료재료가 기 등재된 치료재료(인체조직)와 비교하여 대체 가능한지, 비용·효과 및 기능 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등 평가

- 3) (3단계)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 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비급여대상이 아닌 경우는 급여대상)
  - 4) (4단계) 상한금액 검토: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치료재료(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치료재료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거 상한금액은 동일목적 유사재료 유무에 따라, 재평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표2.1-9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신청제품과 동일 목적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B 원가,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하여 산정</li> <li>· 국내 제조 제품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확인한 원가계산 자료 참고 가능</li> </ul>				
신청제품과 동일 목적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분류	비용·효과, 기능 등			
	저하	동등 or 유사		개선
재평가 이전 품목	한 품목 등재	기 등재 품목의 90% 미만	기 등재 품목의 90%	기 등재 품목 군의 <b>10~100% 가산</b> - 가치평가기준표에 의거 개선여부 판단 - 임상문헌에 의한 평가(10-100%) - 기술문서에 의한 평가(10-50%)
	두 품목 이상 등재	기 등재 품목의 최저가 미만	기 등재 품목의 최저가	
재평가 이후 품목	기준 금액의 10% 감산		기준 금액 (동일 품목 군 동일 금액)	

-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거 상한금액은 조직은행마다 차등 적용
  - 조직수입업자와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신청품목 : 상한금액 동일
  - 의료기관의 신청품목 : 상기 상한금액의 70%

표2.1-10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유사한 경우	기 등재품목의 상한금액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개선 또는 저하 평가 된 경우	기 등재품목 상한금액보다 초과 혹은 미만
재질, 형태 등은 동등하나 규격이 다른 경우	기 등재된 품목의 규격과 단위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
신청품 판매예정가가 기 등재품목보다 낮게 신청되는 경우	판매예정가를 상한금액으로 산정

## 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 1) 도입배경

치료재료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급격한 환율상승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진료차질을 우려하여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변동에 연동하여 6개월 마다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2009.4.)

### 2) 조정 주기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

### 3) 적용환율 기준

미국달러 기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

표2.1-11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등급	환율구간(원)	조정율(%)
...	...	...
-4	700이상 ~ 800미만	-8
-3	800이상 ~ 900미만	-6
-2	900이상 ~ 1,000미만	-4
-1	1,000이상 ~ 1,100미만	-2
0(기준등급)	1,100이상 ~ 1,200미만	0
1	1,200이상 ~ 1,300미만	2
2	1,300이상 ~ 1,400미만	4
3	1,400이상 ~ 1,500미만	6
4	1,500이상 ~ 1,600미만	8
5	1,600이상 ~ 1,700미만	10
...	...	...

5

독립적 검토

가. 추진 배경

치료재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및 발효(2012.3.15.)

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적용 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후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 건
- 인체조직은 독립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처리 절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3조
  - 1) 평가결과 통보(제11조제3항) :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독립적 검토 안내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
  - 2) 독립적 검토 신청(제11조제4항) :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3) 독립적 검토 절차 마련(제1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검토 절차를 총괄하는 1명의 책임자와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위촉
  - 4) 독립적 검토 절차(제13조의3)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책임자는 검토자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자는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

- 5) 보고서 제출기간 :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직권결정한 경우에는 100일, 직권조정에 의한 경우는 45일

## 6

## 치료재료 재평가

작성자 : 등재관리부 주 - 김의성  
부 - 임미선

### 가. 목 적

#### 1) 가격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개선

- 동일 품목군은 동일 상한금액을 적용하여 개선된 후발품목이 90%로 등재되는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 개선
- 다만, 특장점이 있는 제품의 경우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함으로써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 품목군 재분류를 통한 가격산정 적정성 확보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중분류) 재정비를 통해 상한금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

#### 3)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표 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다. 재평가 대상 및 범위 등

### 1)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고시된 모든 치료재료(인체조직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일자가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의 품목군(중분류)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재평가 범위

- ①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
- ② 품목군 재분류
- ③ 요양급여대상(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 조정
- ④ 상한금액 조정

### 3) 재평가 주기

재평가는 품목군(중분류)별로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라. 업무처리절차



## 마. 재평가 방법

## 1)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장관은 재평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군(중분류)별로 재평가대상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

3년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식약처 및 관련업체에 허가(신고)사항 확인 후 급여중지 고시할 수 있다.

- 재고량 등 감안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급여중지된 치료재료는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급여재개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중지를 해지한다.

표2.1-12 연도별 재평가 대상 대분류군 공고 현황

연도	대분류군	세부 품목군명
2010년	A, F,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위원소군</li> <li>• 척추고정용군</li> <li>• 일반재료(Ⅰ)군</li> </ul>
2011년	C, D, G, H,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uma용군(C군, D군)</li> <li>• 흉부외과용군</li> <li>• 신경외과용군</li> <li>• 안·이비인후과용군</li> </ul>
2012년	B, E, J, L,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합용군</li> <li>• 인공관절군</li> <li>• 중재적시술용군</li> <li>• 일반재료(Ⅱ,Ⅲ)군</li> </ul>
2013년	B, C, D, E, F, G, H, I, J, K, L, M,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등으로 제외되었던 품목군</li> </ul>

## 3) 품목군 재분류

-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을 감안하여 품목군을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용·효과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
  -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군을 분리하여 재분류
  - 가치평가를 거쳐 기 등재품에 비해 개선이 입증된 경우 또는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도의 품목군으로 분류 가능

## 4)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품목에 대하여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분류된 품목의 재평가 등



### 5) 상한금액 조정

- 품목군 재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동일한 상한금액(기준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동일 품목군의 기준금액은 전년도 품목별 상한금액과 청구량을 감안한 가중평균가로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등이 입증 자료를 통해 개선된 경우에는 '가치평가기준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동일 품목군과 비교하여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에서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기준금액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6)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 심사평가원장은 치료재료 재평가 실무검토 결과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제조·수입업체에게 통지 또는 사전열람 하게 할 수 있다.
- 통지 또는 사전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는 통지 또는 열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업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작성자 : 등재관리부 주 - 김의성  
부 - 김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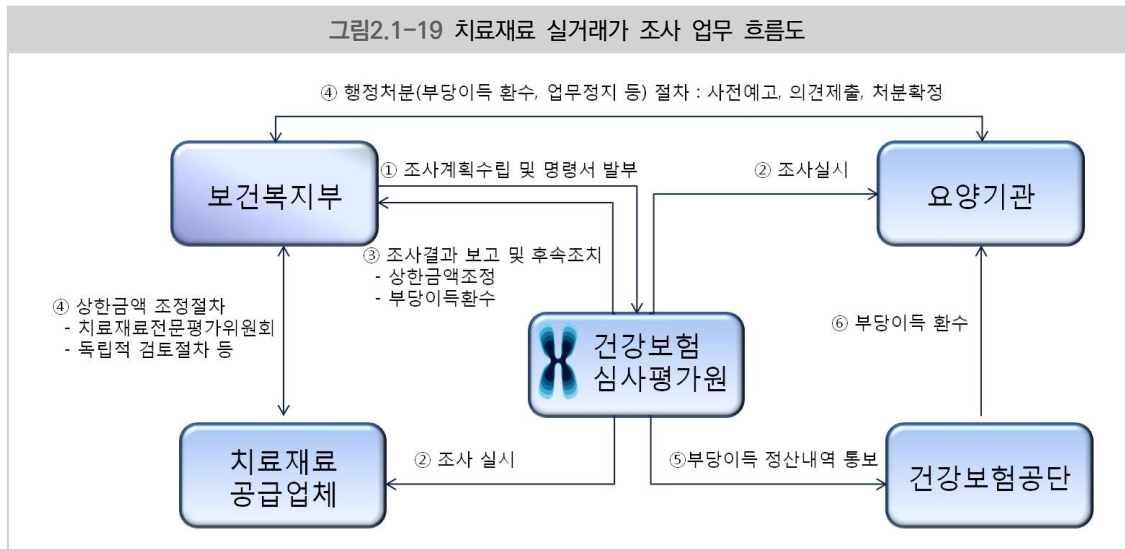
### 가. 개요

치료재료 사용 관련,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실거래가격 및 유통가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치료재료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적정성 유지 및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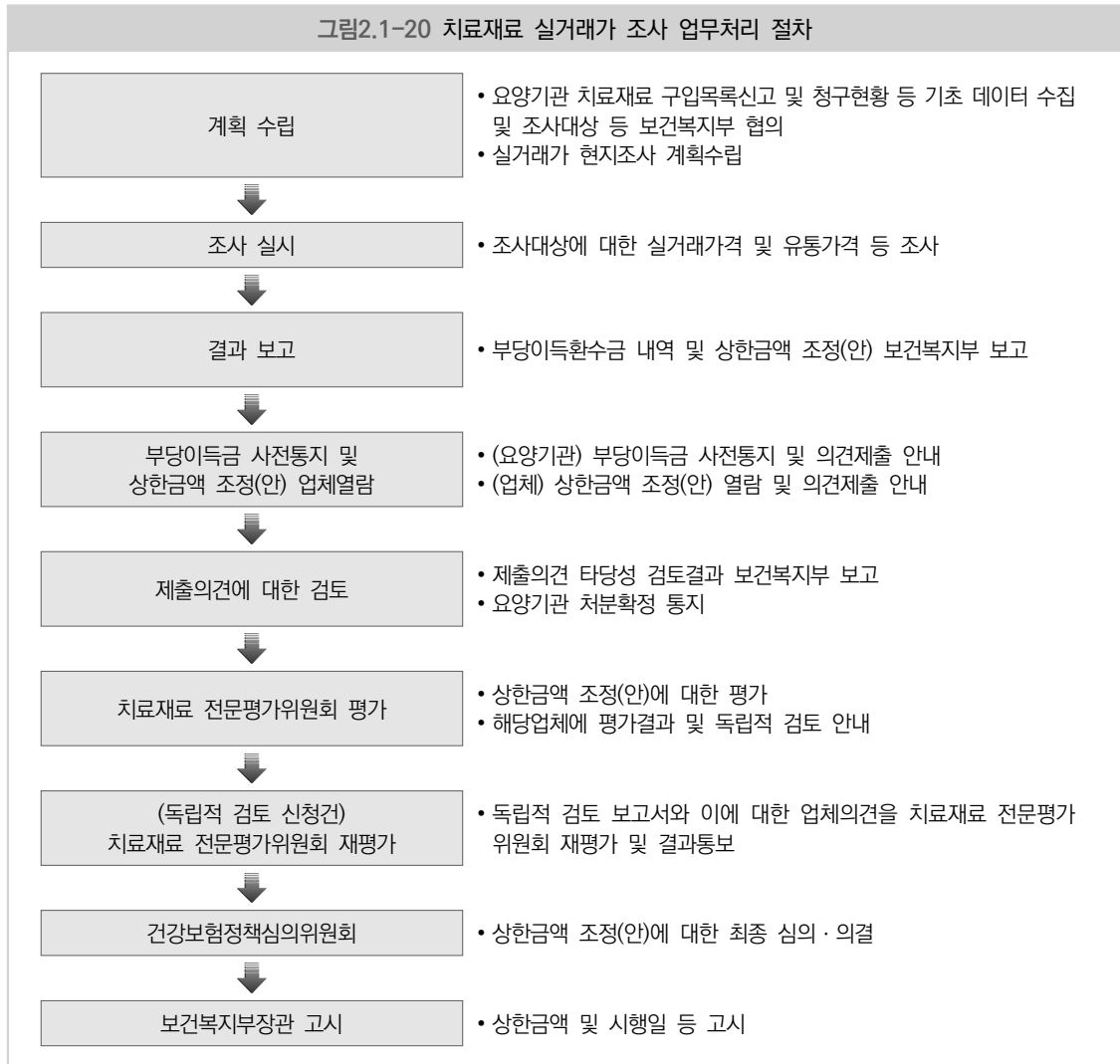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과징금 등), 제29조의 2(제조업자 등의 금재행위 등)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70조(행정처분기준)
-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 5)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4조 내지 제8조(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 6)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0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및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다. 업무 흐름도



## 라. 업무처리 절차



## 1) 조사계획 수립

## 가) 보건복지부

조사대상 품목군, 조사대상 기관, 조사기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평가원에 문서 통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요양기관 치료재료 구입목록신고와 청구현황 등 조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조사일정 등 보건복지부 협의
- (2) 보건복지부장관 문서에 근거하여 조사팀 편성, 조사 일정표 작성 등 세부 계획수립 및 조사자 사전교육 실시 등

다) 조사대상 기관 선정

**선정원칙**

- 조사대상 품목군의 치료재료를 많이 청구하는 요양기관 등을 종별·지역별로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5조(구입 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선정
  - 국·공립, 특수법인, 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등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요양기관과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 실시 기관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실시 기관은 제외
- 유통가격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과 연계된 치료재료 공급업자(수입 또는 제조업체, 대리점)를 선정하여 계통조사를 실시

(1) 정기 사후관리(요양기관, 치료재료 공급업자)

- (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구입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의 자료상 구입가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구입 치료재료 비용의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 (다) 치료재료의 구입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 (라) 위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 공급업자

(2) 수시(기획) 사후관리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
- (나) 치료재료 구입 시 과도한 가격 할인, 구입량 할증,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다)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입 치료재료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기관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라) 위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 공급업자

(마) 위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기관

## 2) 조사과정

### 가) 조사대상 기간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점에서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개월(1년) 진료분 조사

### 나) 주요 확인내용

#### (1)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의 내역

(가)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 등)

(나)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할인·할증 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 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다)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등 수수내역

#### (2) 대체청구 및 재사용 등 부당청구 여부

품목별 구입량 대비 사용·재고량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여부 확인

### 다) 확인서 징구

확인된 부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양기관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

### 라) 조사결과 보고

실거래가 현지조사 확인내역, 부당이득환수금 내역, 상한금액 조정(안), 행정조치 필요기관 등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

### 3) 행정조치

#### 가) 상한금액 조정

##### (1) 품목별로 개별 조정하는 경우

실거래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산출한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인하

※ 가중평균가는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수량으로 나누어 산출

##### (2) 업체열람 및 의견제출

● 조사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전 조정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체에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보

※ 보건복지부는 열람시기, 열람장소,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안), 의견제출 안내 등 열람과 관련된 안내문을 대상 업체들에 통보하고, 자료열람 협조요청 및 의견제출 검토요청 문서를 심사평가원에 통보

##### (3) 대상품목 상한금액 인하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나) 부당이득금 환수

(1) 실제 구입금액보다 높게 치료재료비용의 청구·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재사용·대체청구 등으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청구·지급 금액과 실구입가의 차액 등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

(2) 부당이득금을 확정하기 전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다)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실시

## Ⅲ

## 약제

## 1

## 약제결정 신청에 대한 평가

작성자 : 약제등재부 주 - 김병수  
부 - 공지련

## 가. 정의

약제결정신청이란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업자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제도로서, 2006.12.29.부터 시행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요양급여)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5)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 6)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다. 결정신청 절차

## 1) 제약사의 결정신청

급여목록표로 고시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약제 요양급여의 평가

- 결정신청 받은 날부터 120일(위험분담 제시 건은 15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평가 결과 통보
-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 신청
- 재평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는 독립적 검토 보고서 및 신청자 의견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

## 3)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재평가결과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 4) 약가협상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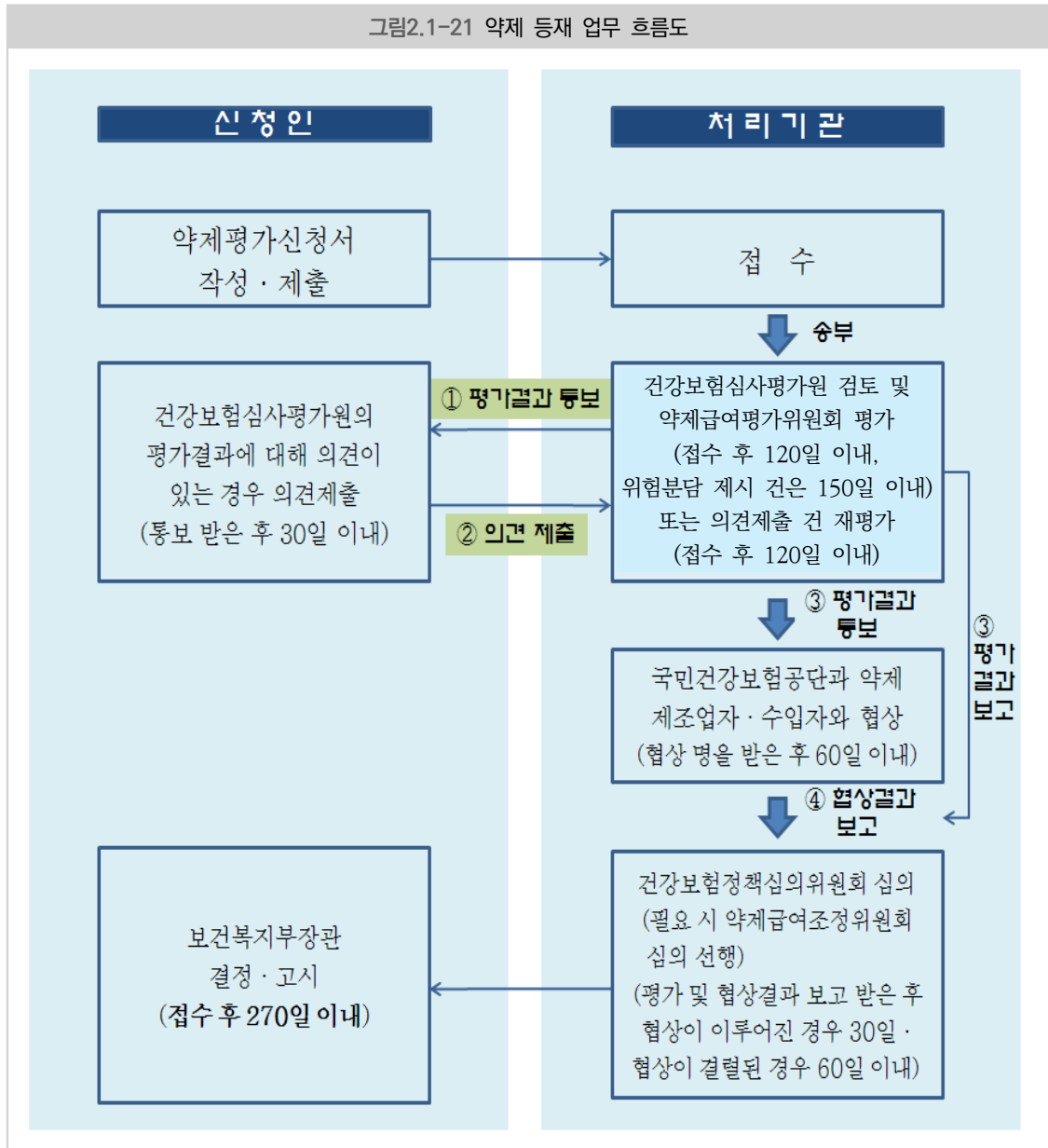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협상대상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 명령. 단, 제약사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 생략 가능
- 공단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수행하고 협상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5)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 또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



라. 약제 등재 절차



2

의약품 경제성 평가

---

작성자 : 약제등재부 주 - 김병수  
부 - 황은주

가.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3항(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 2)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및 제4조)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나. 개 요

1)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정의

-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대안들이 있을 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 것
-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 (예: 신약 vs 기존약/약물치료/수술 등)에 대하여 투입된 비용(Cost)과 성과(Outcome)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
-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급여함으로써 한정된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2) 경제성 평가 유형

- 경제성 평가 방법에는 비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 분석이 있다.

표2.1-13 경제성 평가 유형

분석유형	비용측정	성과 종류	성과측정
비용-최소화 분석	화폐단위	동일한 성과	성과가 동등함이 입증되어야 함
비용-효과 분석	화폐단위	동일 종류의 성과, 서로 다른 수준의 성과 달성	자연단위(예: 연장된 수명, 저하된 혈압치)
비용-효용 분석	화폐단위	단일 혹은 다중성과, 대안 간에 동일할 필요 없음	질보정수명(QALY)
비용-편익 분석	화폐단위	단일 혹은 다중성과, 대안 간에 동일할 필요 없음	화폐단위

QALY : quality-adjusted life year

출처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의약품 경제성 평가(2013). 범문에듀케이션

## 다. 결과의 해석

### 1)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비교대안에 비해 연구대안의 증가된 효과 혹은 효용 한 단위당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ICER = \frac{Cost_2 - Cost_1}{Effect_2 - Effect_1} = \frac{\Delta Cost}{\Delta Effect}$$

### 2) ICER의 해석

- 특정 임계값(threshold)과 비교하여 그 이하일 경우 연구대안이 비교대안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해석
- 임계값이란 비교대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할 경우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효과 및 효용에 대한 사회의 최대 지불의사

## 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활용

###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 약제 급여 평가 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의 등재여부, 등재 가격 및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비용효과성 고려 시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

※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 ① 비용최소화 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 : 신청약이 비교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혹은 비열등)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② 비용효과/효용 분석(Cost-effectiveness/utility analysis) : 신청약이 비교약제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비교약제와의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분석법	비용 효과성 판단 기준
비용-효과(효용) 분석	ICER(비용효과비)
비용-최소화 분석	총 소요비용

- ICER의 임계값 :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하여,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위험분담 제도

작성자 : 약제등재부 주 - 김병수  
부 - 김지혜

가. 개요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1)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8항 및 제13조제4항제14호
-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별표 2)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별첨 1) 및 제3조의3제1항

## 2) 대상

- (1)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 (2)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 다. 유형

- 1) 조건부 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Conditional treatment continuation + money back guarantee) : 일정기간 약제 투여 후 환자별로 반응을 평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기준 이상으로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 보험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2) 총액 제한형(Expenditure cap) : 약제의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하여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3) 환급형(Refund) :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4)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Utilization cap/Fixed cost per patient) : 환자 당 사용 한도를 미리 정하여 놓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그 외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등 신청인(제조사 등)이 제안하는 유형. 다만, 심사평가원의 검토 등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라. 계약기간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으로 하되, 특허만료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5년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작성자 : 약제관리부 주 - 김철수  
부 - 임연규

## 가. 개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국민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험재정의 안정화 및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1. 7. 1. 조제분 부터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 동일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생체이용률이란 약물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함)

## 나. 법적 근거

- 1)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대체조제)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 다. 대체조제 가능 품목

표2.1-14 대체조제가능 품목의 증가 추이

(단위 : 품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3,832	4,898	5,569	6,006	5,316	5,750	5,969	7,059	8,220	9,124	10,275	11,239
인센티브 지급대상	3,832	3,894	3,923	4,001	4,299	4,325	4,592	5,401	7,918	8,918	9,881	10,290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 2007년부터 시행, 제네릭만 포함, 대조약 제외

## 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방법

- 1)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 3)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상의 '상한 금액 범위 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다.
- 4)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 산정 시 단위(규격)당 원 미만은 4사5입 한다.

## 5

##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작성자 : 약제평가부 주 - 유희영  
부 - 서정민

## 가. 개요

- 1) 필수약품 중 사용량이 적거나 생산원가가 맞지 않아 제약업소의 생산기피 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는 업무이다.
- 2) 2000년 3월 도입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 원가를 보전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장려금을 지급하여 필수 의약품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7호(직권결정 및 조정)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1호(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

- 3) 사용장려금(「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3장(사용장려금))
-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지정절차, 관리 및 지급 등

#### 다. 퇴장방지의약품 현황

표2.1-15 퇴장방지의약품 현황<sup>22</sup>

(단위 : 개)

구분	계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금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성분	품목수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2013년	341	656	297	565	7	19	38	72
2014년	352	677	311	589	3	11	38	77
2015년	375	802	334	714	3	12	38	76
2016년	366	789	334	713	3	13	29	63
2017년	389	813	357	748	3	12	29	53

\* 연도별 익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 기준임

#### 라. 퇴장방지의약품의 관리

- 1) 생산원가보전의약품은 원가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5 [별첨 1]에 의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가격을 재산정하여 약가를 인상하고, 약가 사후관리에 의하여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인하하지 아니한다.
- 2) 사용장려금(인센티브)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상약금액의 10%를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에 지급)
- 3) 동일제제 업체 수가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이상인 약제 및 해당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다.
- 4)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은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22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①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②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③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됨.



작성자 : 약제평가부 주 - 유희영  
부 - 박혜경

## 가. 개요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약제 중 협상대상이 아닌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정하고, 기등재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업무이다.

최초등재제품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약제의 급여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후 결정신청한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제제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이 때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산정 및 조정된 약제에 가산을 부여한다.

한편, 「약사법」 개정(2015.3.15.)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히 연계제도 시행 및 효율적인 보험의약품 목록 관리를 위해 2015.8.1.부터 약제급여목록표 등재 시점에 즉시 판매가 가능한 약제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의 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등재(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가 불가능)를 제한하였다.

##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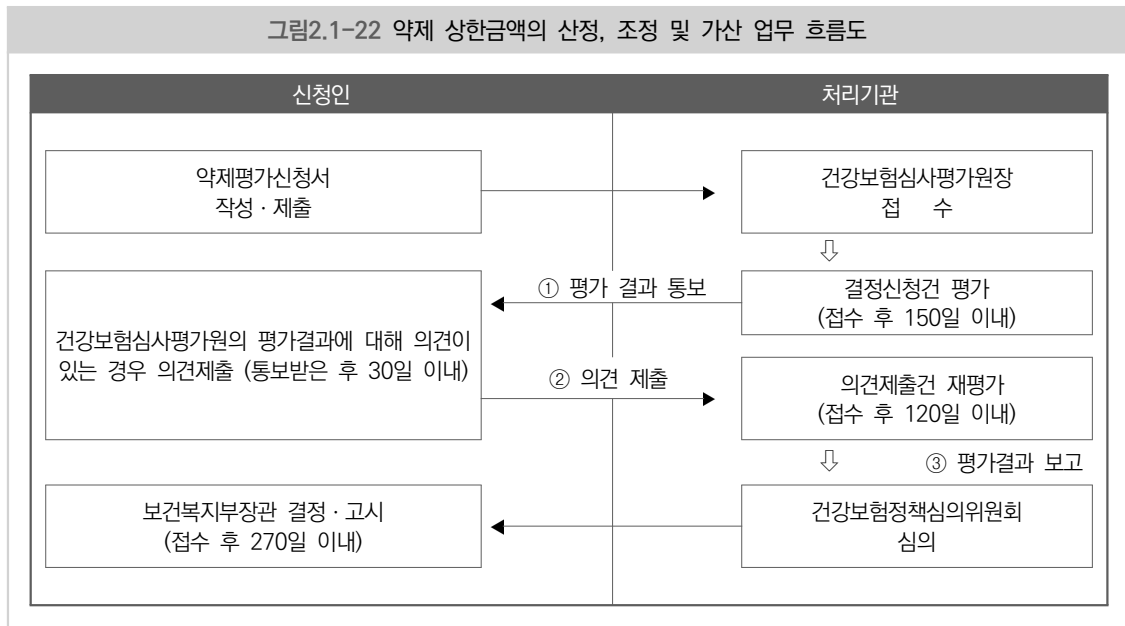
###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46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5호, 2018.9.28. 일부개정) 제11조의2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2018.4.10. 일부개정) 제2조, 제7조, 제8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43호, 개정 2018.2.19.)

## 2) 검토대상

약제급여목록표에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하여지는 약제

### 다. 업무 흐름도



### 라. 세부 검토기준

- 1) 자사제품이 없을 때 동일제제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약가 중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한다.
- 2) 특허만료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제제간의 가격 격차를 동일제제 등재 최초 1년에 한하여 유지(최초등재제품은 70%, 동일제제는 59.5%)하고, 그 이후 동일가(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로 하되,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이 비율을 유지한다.
- 3) 특허만료 전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최초등재제품과 동일가로 산정된 제품에 대하여 최초등재제품 가격조정 시 같이 인하한다.
- 4) 생물의약품 및 마약의 경우 동일제제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인하율을 70%로 조정한다.
- 5)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산소, 아산화질소, 인공관류용제의 경우 동일제제 등재 시 인하하지 않는다.

## 마. 검토 절차

- 1) 약제평가신청서 제출
- 2) 산정, 조정 및 가산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
- 3)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보고
-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5)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의약품허가-특히 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기존 등재 기간보다 약 30일 단축하여 조속히 등재

## 7

##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정지

작성자 : 약제관리부 주 - 김철수  
부 - 임연규

## 가. 도입배경

2009.8.부터 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왔으나 리베이트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더 음성화 되고 있어 리베이트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2014.7.2.부터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급여정지로 인하여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8.9.27부터는 상한금액을 감액 또는 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유통질서 문란 행위(「약사법」 제47조제2항)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종사자 포함)가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15호, '18.3.2.)

#### 다. 상한금액 감액 및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1) 일반기준

-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날 또는 적용 정지된 날부터 5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같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부당금액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500만원 미만	경고	2	15일	1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			2개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4	1개월	3개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	8	2개월	4개월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	12	3개월	5개월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8	16	4개월	6개월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	20	5개월	7개월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2	24	6개월	8개월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4	28	7개월	9개월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16	32	8개월	10개월
9,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	36	9개월	11개월
1억원 이상	20	40	10개월	12개월

※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라. 과징금 부과 기준

### 1) 대상약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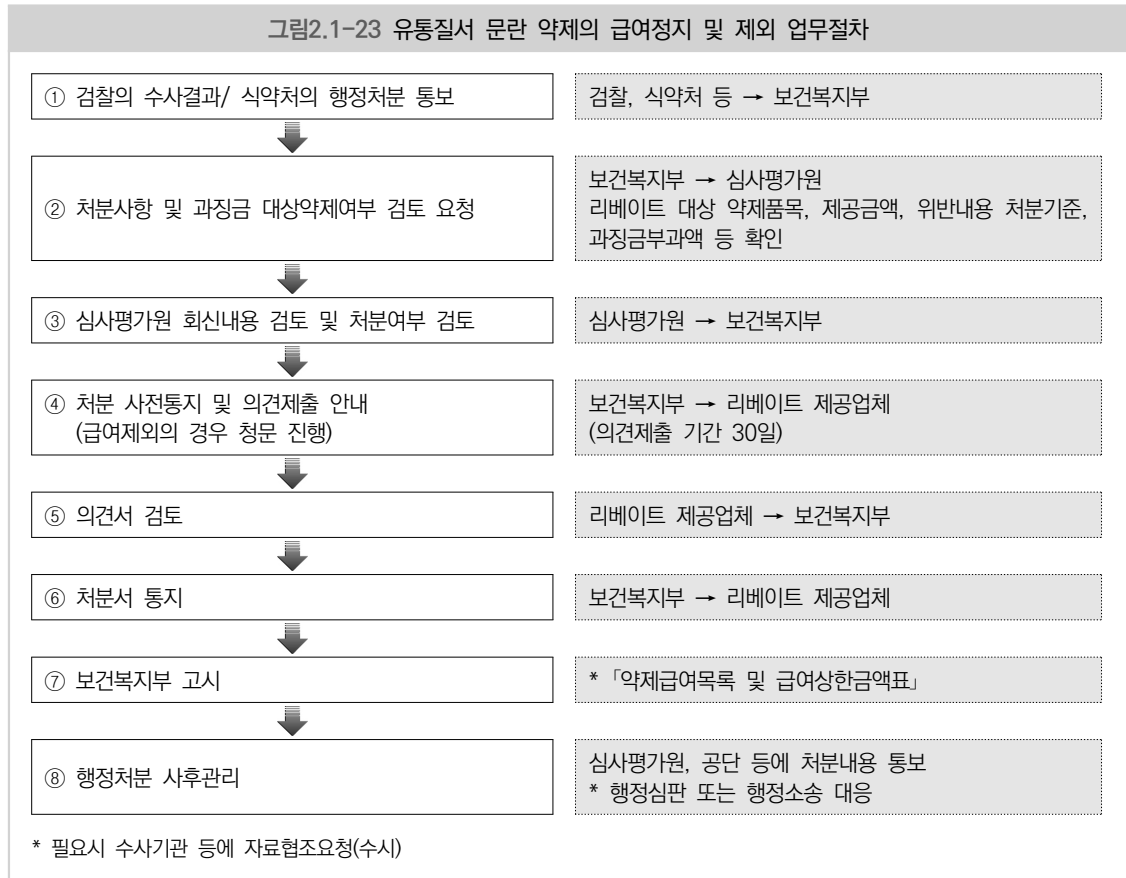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퇴장방지 의약품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희귀의약품
- 다) 영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
-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 2) 부과기준

- 가) 과징금은 약제의 영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영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아래 표에 따른 적용 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적용 정지 기간	부과 비율(%)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15일	11	
1개월	15	55
2개월	19	59
3개월	23	63
4개월	27	67
5개월	31	71
6개월	35	75
7개월	39	79
8개월	43	83
9개월	47	87
10개월	51	91
11개월		95
12개월		97

마. 업무절차



바. 2014. 7. 1.이전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 1) 유통질서 문란행위 기간이 2009.8.1.부터 2014.7.1.까지인 경우,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의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상한금액 인하율 =  $\frac{\text{부당금액}}{\text{결정금액}} \times 100 \leq \text{상한금액의 } 20\%$ 
  - 가) 부당금액 :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
  - 나) 결정금액 :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총액

사. 2014. 7. 2부터 2018.9.26까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 1) 유통질서 문란행위 기간이 2014.7.2.부터 2018.9.26.까지인 경우,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요양급여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 8

##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작성자 : 약제관리부 주 - 김철수  
부 - 임연규

### 가. 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1호
-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2호 및 별표6

### 다. 조사 대상

#### 1) 조사 대상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조사 대상기간 등

-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기준일은 6월 30일로 한다.
- 다만,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 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 조사 대상기간은 조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한다.
-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라. 상한금액 조정 대상 약제

- 1)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산정된 가중평균가격이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당시의 상한금액보다 낮은 약제가 조정 대상이 된다.
-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제외
-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 방사성의약품
- 인공관류용제(「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 340인 약제)

**마. 상한금액 조정 기준**

- 1)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산정된 가중평균가격<sup>23</sup>으로 상한금액을 인하나.
  - 다만, 인하율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당시 상한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 2)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 다만,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 3) 약제급여목록표에 따라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약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 개정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7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실거래가 조사대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업자 (의약품 공급내역)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실거래가 조사주기 (조사기준일)	1년 (1월 31일)	2년 (6월 30일)
약가관리 근거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단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단가

<sup>23</sup> 가중평균가격 :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임





# 제2장

##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

I. 급여기준 및 급여기준 관리(행위, 치료재료)

II. 약제 급여기준 관리

III. 근거기반보건의료(EBH)



## 제2장

#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

### I

## 급여기준 및 급여기준 관리(행위, 치료재료)

작성자 : 급여기준운영부 주 - 도영미  
부 - 최유정

### 1

##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 가. 급여기준

#### 1) 정의

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요양급여 제외대상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3) 세부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성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해 정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위임범위내에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나. 심사기준

### 1)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내용이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에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한 기준

### 2)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3) 세부내역

- 요양급여의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 상대가치점수 고시(행위) 일반원칙, 산정지침, 상대가치점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등

그림2.2-1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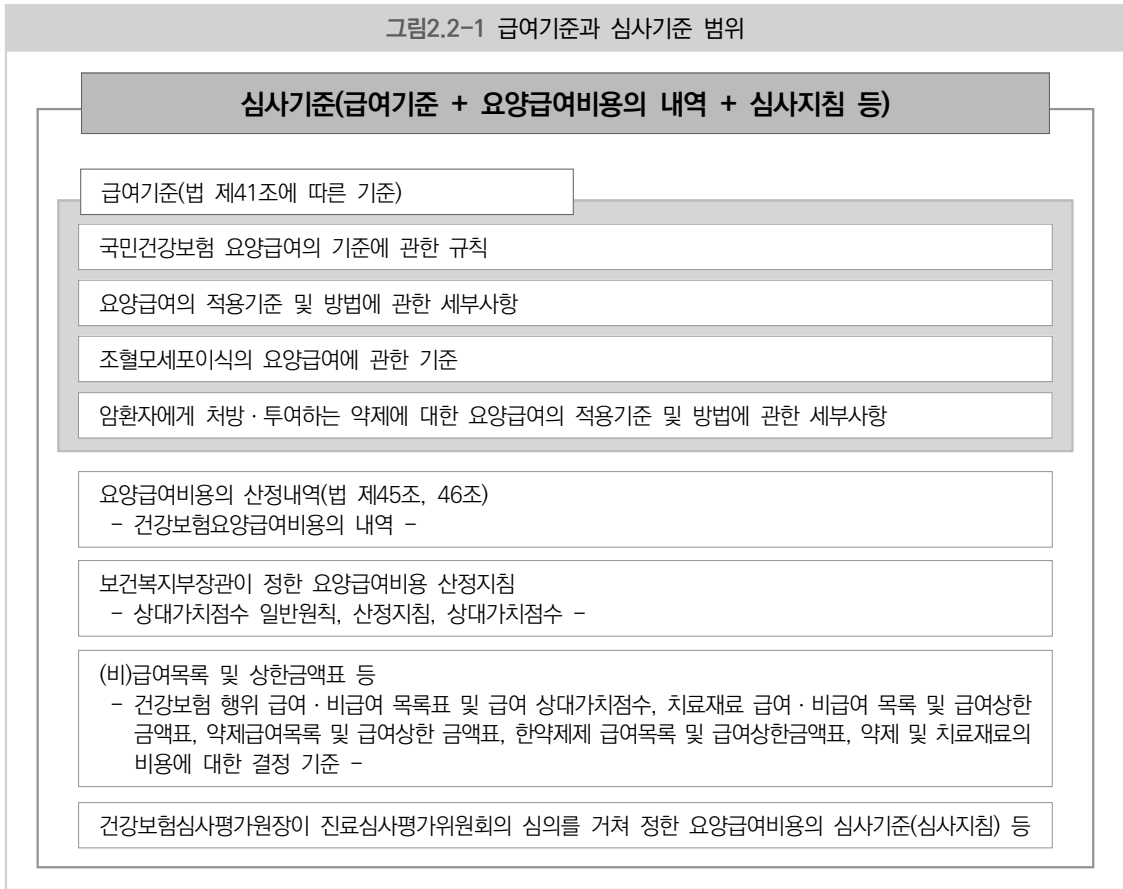


표2.2-1 심사지침·심의사례·심사사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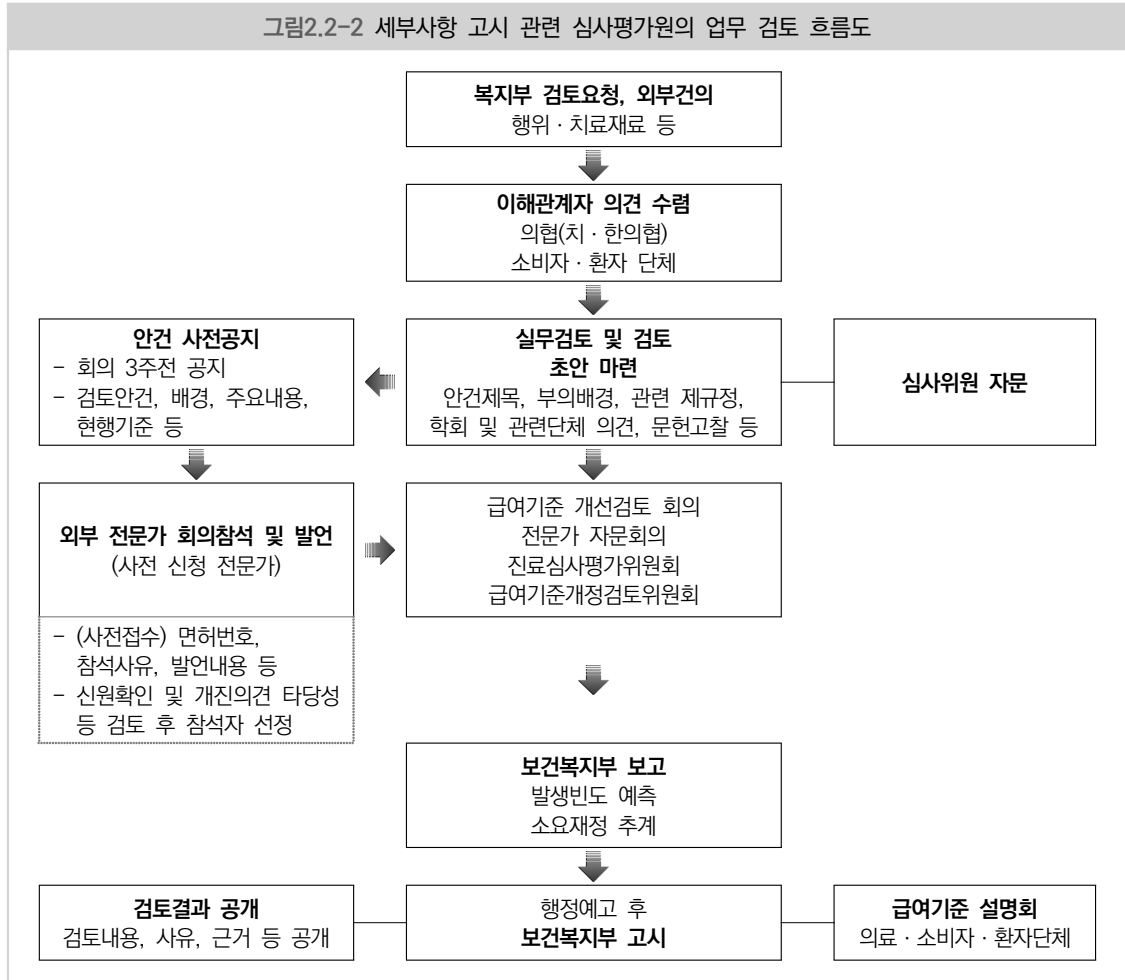
구분	심사지침	심의사례	심사사례
정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의사례 중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개한 지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심사사례
주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공개심의위원회
법적성격	대외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X	
공개의무의 법적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공개의무는 없으나 국민 편익 등을 위해 공개
공개추이	전 지침 공개(비정례적)	(본원) 전건 매월 공개('13~) (지원) 분기별 공개('15~)	'14년부터 유형별 부분 공개(분기별)
심사기준 가능성	세부사항고시의 형태로 공개되고있으며, 법령, 급여기준, 수가에 대한 명료화나 구체적인 해석 등을 통해 심사 시 적용(68지침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심사사례로 특성이 다양하여 동일한 상병에 동일한 처치를 하더라도 임상조건이 달라 심사기준으로 활용 불가	심사개별사례로 특성이 다양하여 동일한 상병에 동일한 처치를 하더라도 임상조건이 달라 심사기준으로 활용 불가

2

급여기준 · 심사지침(행위, 치료재료) 설정 과정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절차

1) 업무흐름도



2) 세부 절차

가) 건의 요청 및 의견 수렴

요양기관 · 학회 · 의약단체 · 정부 · 심사평가원 내부부서 등으로부터 건의된 급여기준 제 · 개정 요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 의약단체와 소비자 · 환자단체로부터 관련 급여기준에 대한 제 · 개정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의한 의견을 요청

## 나) 실무검토

의학적 표준(medical standard)의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의 임상연구문헌, 그 외 참고자료로 외국 보험급여 관련자료, 경제성 평가자료, 제외국 치료재료 허가사항, 종설<sup>24</sup> 등의 참고자료 활용

## 다) 급여기준 개선검토 회의 실시

## ● 급여기준 개선 검토 회의

- 전문가자문회의(의약단체 추천전문가, 심사평가원의 심사위원 구성)
- 분과위원회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관련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

##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제도

- 국민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예정 안건을 사전 공지하여, 회의체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통해 참석대상자로 정해진 전문가는 회의체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라) 보건복지부 보고 및 고시

- 회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급여로 인정하는 범위(횟수, 개수 등)의 급여기준(안) 및 발생빈도 예측에 의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예고를 거쳐 의약계·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급여기준 검토 시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의학적 타당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최적의 방법 여부
- 경제성: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 급여적정성: 보험급여의 원리 및 건강보험 재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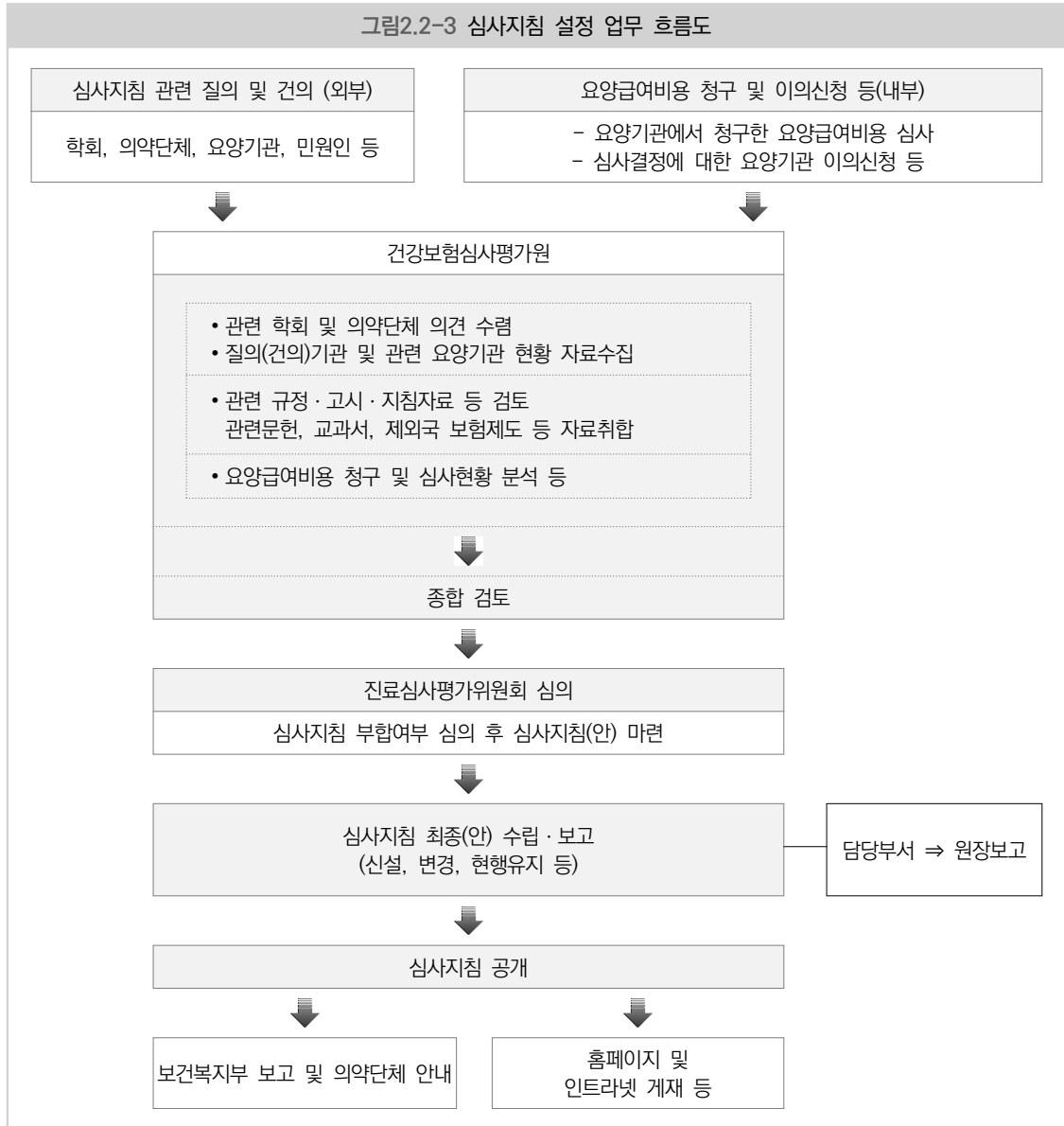
## ○ 추가사항

- 의료의 중대성: 해당의료 미이용 시 위험도 또는 시급성 정도
- 치료효과성: 질병치료를 도움이 되는 정도
-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질병치료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정도
- 사회적 연대성: 주요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 해당여부
- 국민적 수용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도

24 종설(綜說 Review) : 이미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비평이나 논평을 가하여 객관 타당성이 있게 정리한 논문

### 나. 심사지침

심사지침은 법령, 수가·급여기준에 대한 명료화나 구체적인 해석 등 심사 시 적용되는 세부 내용,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참고가능한 심의사례를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 원장이 정하여 공개한다.





## ※ 관련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1항제4호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은 공개하여 심사 적용하여야 함

## ※ 세부사항고시 및 심사지침 현황 (2018.8.)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계	행위	치료재료	약제	요양병원	호스피스	계	행위	치료재료	약제	기타
1,846	899	312	565	52	18	68	50	8	5	5

## 3

## 급여기준 정보 공개

## 가. 목적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국민과 요양기관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급여기준 정보 제공

## 나. 급여기준 정보 공개

## 1) 급여기준 등의 신설·변경 등 제·개정 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의약단체,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문서로 통보
-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내부의 각 실·지원과 외부의 의약단체 등에 문서로 통보

## 2) 공개 방법 및 내용

##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건강정보), 책자 등

## ● 공개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책자 : 현행 급여기준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 책자 :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수록
- 국민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건강정보) : 항목별, 고시별 심사 기준 조회서비스 제공
- 자주 묻는 진료항목 : 진료항목 중 국민 관심 항목(45개)에 대해 수가, 급여기준, 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등 종합정보 제공

※ 급여기준 정보공개

- 국민포털([www.hira.or.kr](http://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분류 / 카테고리별분류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최신&다빈도심사기준 조회
- HIRA+(내부직원)
  - HIRA+ > 심사지식뱅크 > 심사기준자료관리

다. 기대효과

- 1) 급여기준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정 진료 및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 및 관련 업무의 일관성 유지
- 2)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의식전환 도모
- 3) 의료의 알권리 보장에 따른 고객 만족도 제고

## 예-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18 FDG-PET)(보건복지부 고시 2015-196호, 2015.12.1. 시행)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아 래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 (1) 일반원칙 :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과정(병기설정)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서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 (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세부 원칙

(가)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축경부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나) 간세포암

1) 병기설정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간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3) 방사선치료 계획 시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2.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 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급여대상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예-2) 심사지침

■ 당뇨병에 시행하는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인정여부 (시행일: 2018.1.18.)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된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30대 중반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마른 체형 등)

나. 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되어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3~5년)내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등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

## 예-3) 공개심의사례

-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2018.5.29.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 담관의 제자리암종, 만성 담낭염,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없는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주요 청구내역 :  
자722라 간엽절제술-간엽절제 [외과전문의] 1\*1\*1  
자738 담낭절제술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중병이상)] 1\*1\*1

## [심의결과]

이 건은 좌간절제술(Left hemihepatectomy)과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을 함께 시행하여 「자722라 간엽절제」와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을 청구한 건으로,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의 일련의 수술과정으므로 「자722라 간엽절제」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심사평가원 심사지침 「간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해부병리조직검사」에 따라 우간절제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은 우간절제의 일련의 과정으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 건은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후 좌간절제(Left hemihepatectomy)를 시행하여 「자722라 간엽절제」와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을 청구한 건임.
-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간엽절제를 시행하는 경우 담낭과 간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고려, 담낭을 절제해야 간 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간엽절제 시에 담낭절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 관련 교과서에서는 좌간절제술 및 우간절제술의 수술방법으로 간문부 처리 시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미국의 수가지침에서도 간절제술 시 담낭절제술은 별도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음.
- 따라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의 일련의 수술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자722라 간엽절제」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이하 생략)

예-4) 공개심사사례

■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투여한 베를리디정 인정여부(2018.8.31.)

[청구내역]

- 수진자 : 58세/ 남
- 입(내)원일수 : 내원 1일
- 상병명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 주요청구내역  
베를리디정 1×1×30 ▶ 인정 (2018.4.12.)

[진료내역]

- (2018.4.12.) 베를리디정 최초 투여  
- 2018.4.5. HBV DNA 정량(Real time PCR)  $9.21 \times 10^3$  IU/ml  
Anti-HBe (Reactive 0.004)  
SGOT(AST) 147 / SGPT(ALT) 81

[심사결과]

- 동 건은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상병에 베를리디정을 최초 투여한 건임.  
Anti-HBe, HBV DNA 정량(Real time PCR) 및 AST/ALT 검사결과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에 의거 초치료한 베를리디정은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2017.11.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 가) HBeAg(+)로서 HBV-DNA  $\geq 20,000$  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  $\geq 2,000$  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이하 생략)

## Ⅱ

## 약제 급여기준 관리

## 1

## 일반약제에 대한 약제급여기준 관리

작성자 : 약제기준부 주 - 박영미  
부 - 황소정

## 가. 개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새로이 등재되는 신규성분 약제와 기 등재성분 약제 중 허가 사항변경 또는 제형·투여경로 변경 약제, 상대적 고가 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급여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보험급여기준 개발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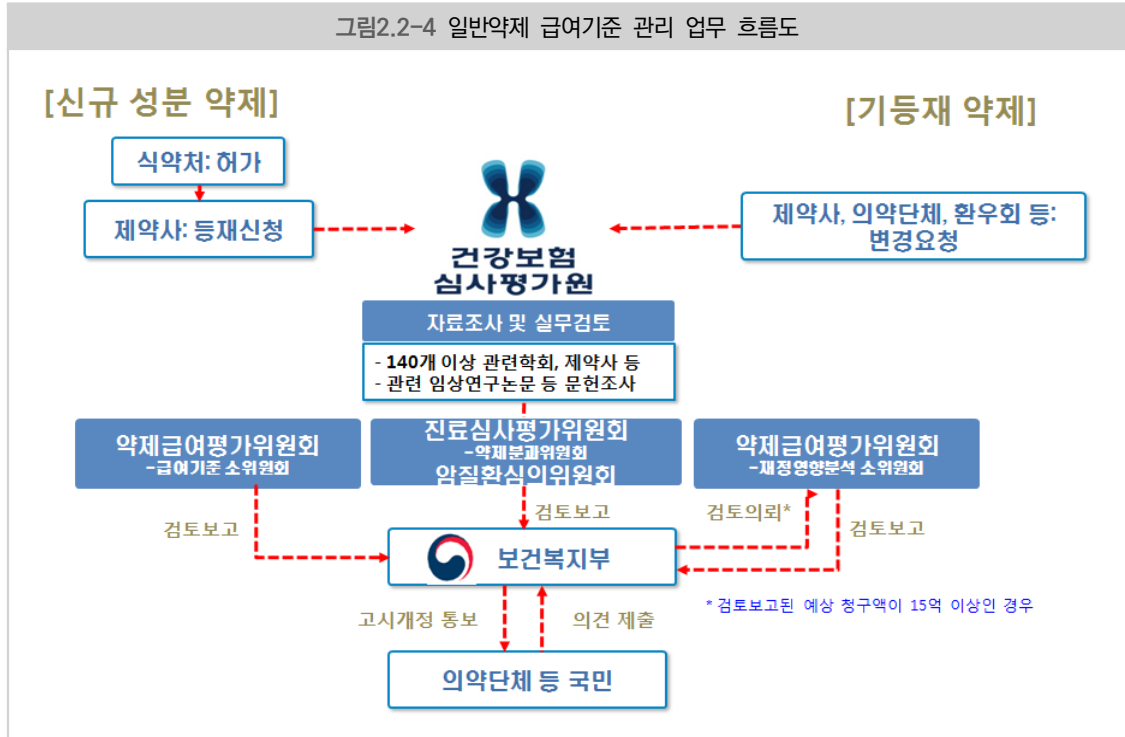
##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2항, 제11조의2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제2항제2호(직권조정)

## 2) 검토대상 : 급여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약제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 신청하는 신규성분약제(신규 등재 신청하는 약제)
- 기등재된 약제(기등재성분) 중 허가사항 또는 제형·투여경로 변경 약제
- 상대적 고가약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다. 업무 흐름도



라. 급여기준 설정 세부검토기준

1) 의학적 타당성

- 가) 약제의 국내·외 허가사항, 외국 의약품집 등재 내역 등
- 나) 국내·외 교과서 수록내용
- 다) 국내·외 임상 진료지침·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 라) 관련 학회 및 임상전문가 의견 등

2) 대체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 가) 대체 가능성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4) 대체 가능한 약제 및 대체 치료법 등 자료수집



## 나) 비용·효과성

동일 또는 유사약제(또는 대체 치료법 등)의 1일 치료비용, 총 치료기간 별 소요비용 비교

## 3)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소요재정 분석

약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평가수준을 객관화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기준 마련  
- 환자수, 시장점유율, 소요약제비, 민감도 등 다양한 변수를 객관적으로 고려한 재정영향 분석 실시

## 마. 검토 절차

- 1) 제약사, 의약단체 및 학회, 요양기관, 환우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급여기준 설정 의뢰
  - 80일 이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안) 설정
- 2) 보건복지부에 급여기준(안) 검토보고
  -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거쳐 급여기준 고시

## 2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일반약제)

작성자 : 약제기준부 주 - 박영미  
부 - 신철호

## 가.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제8호(비급여대상)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2) 검토대상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약제로서 다음의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다. 업무 흐름도



25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라. 세부 검토기준

### 1)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위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

#### 가) 의학적 근거의 범위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으로 한다.

#### 나) 임상연구문헌의 의학적 근거수준의 분류 및 기준

임상연구 문헌은 연구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위해서는 범주 2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희귀질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주 4 까지 인정할 수 있다.

범주 1 :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실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meta-analysis)

범주 2 :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실험 또는 범주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 3 : 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observational, analytic study)

범주 4 :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전/후 비교연구(before/after study), 증례 보고(case report), 환자군 연구(case series), 비분석적 연구(non-analytic study)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 Evidence Based Review Manual) 제5판 2016년

## 마. 검토 절차 및 사후관리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자에게 약제를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신청
- 2)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토 요청
- 3) 해당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심의 및 검토결과를 심사평가원에 송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승인·불승인 여부 통보
- 5) 승인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약제 사용현황제출: 연 2회 제출(3월, 9월)
- 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공조체계 운영
  - 비급여 사용현황 제출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서로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초과 사용약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문제가 있어 사용중지 요청이 된 경우 요양기관에 사용중지 통보

작성자 : 약제기준부 주 - 박영미  
부 - 전미정

## 가. 개요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신청된 항암요법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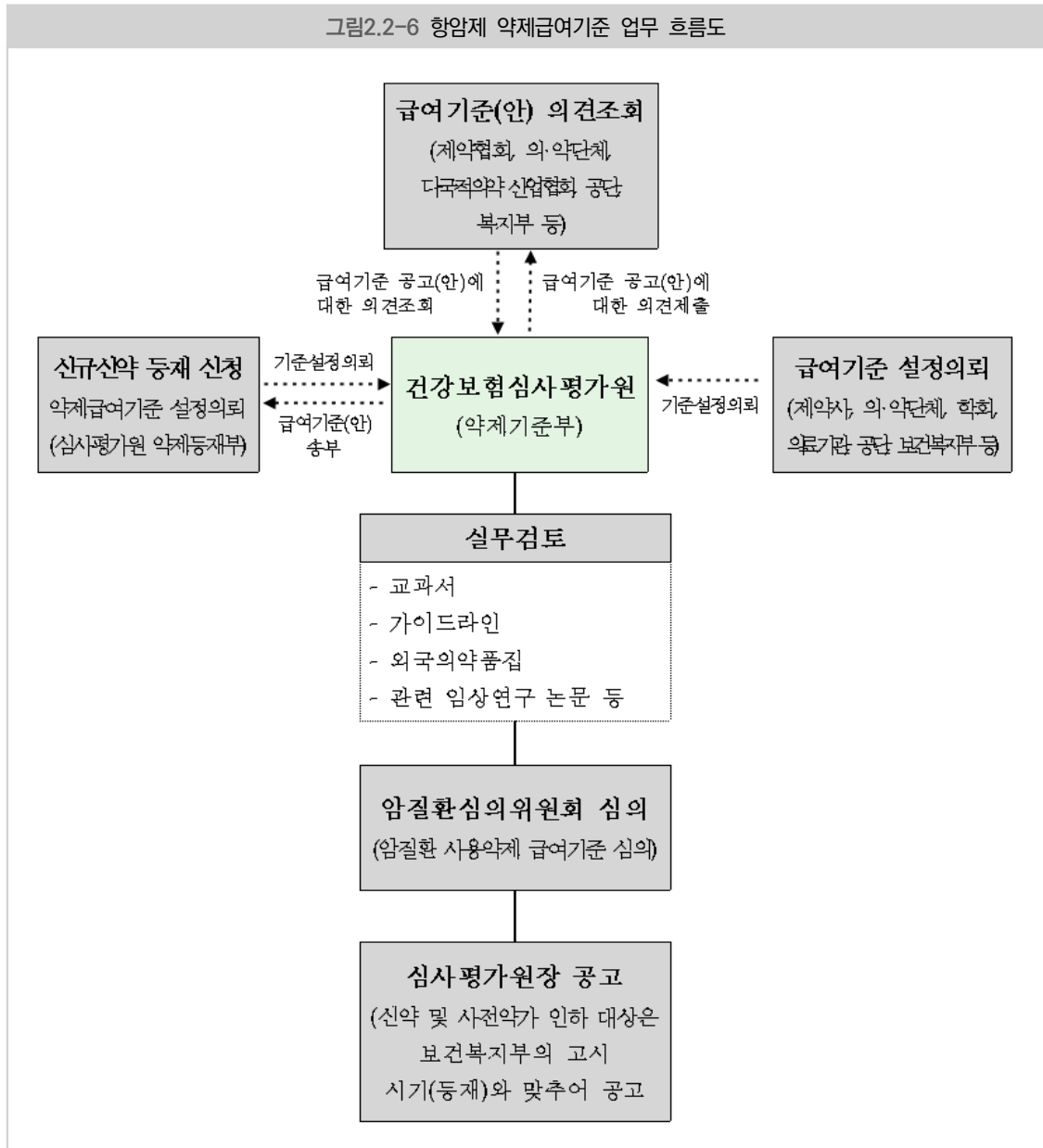
###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가목(2)와 (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심사평가원 정관 제7장 중증질환심의회위원회
- 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회위원회 운영규정

### 2) 검토대상

-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 신청하는 신규성분 약제
  - 급여기준이 설정된 항암제의 허가사항이 추가된 경우

다. 업무 흐름도



## 라. 급여기준 설정 세부 검토기준

### 1) 의학적 타당성 검토

- 가)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외국약품집 등재여부 등
- 나) 국내 및 외국 교과서에 수록내용
- 다) 국내 및 외국 임상 진료 지침·가이드라인, 관련 학회 의견
  - 임상연구논문은 근거수준이 높은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논문 중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가 3년 평균 3.0 이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택 (다만, 희귀암 등의 경우는 암질환심의회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 의학적 근거자료는 초록(abstract)은 변동될 수 있어 제외시키고, publish된 것을 원칙으로 함

### 2) 대체 가능성

-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유무 및 효과 등 판단

### 3) 비용 효과성

- 대체가능한 치료방법(주로 항암화학요법)과 비교 종합적으로 판단
  - 약제 투약비용
  - 추가 소요재정

## 마. 검토 절차

- 1) 제약사, 의약단체 및 학회, 요양기관, 환우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급여기준 설정 의뢰
  - 150일 이내에 암질환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안) 설정
- 2) 급여확대로 인한 재정영향분석 후 사전약가인하 절차 진행
- 3) 급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공고

## 4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사용승인 업무(항암제)

작성자 : 약제기준부 주 - 박영미  
부 - 전미정

## 가.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항암제의 사용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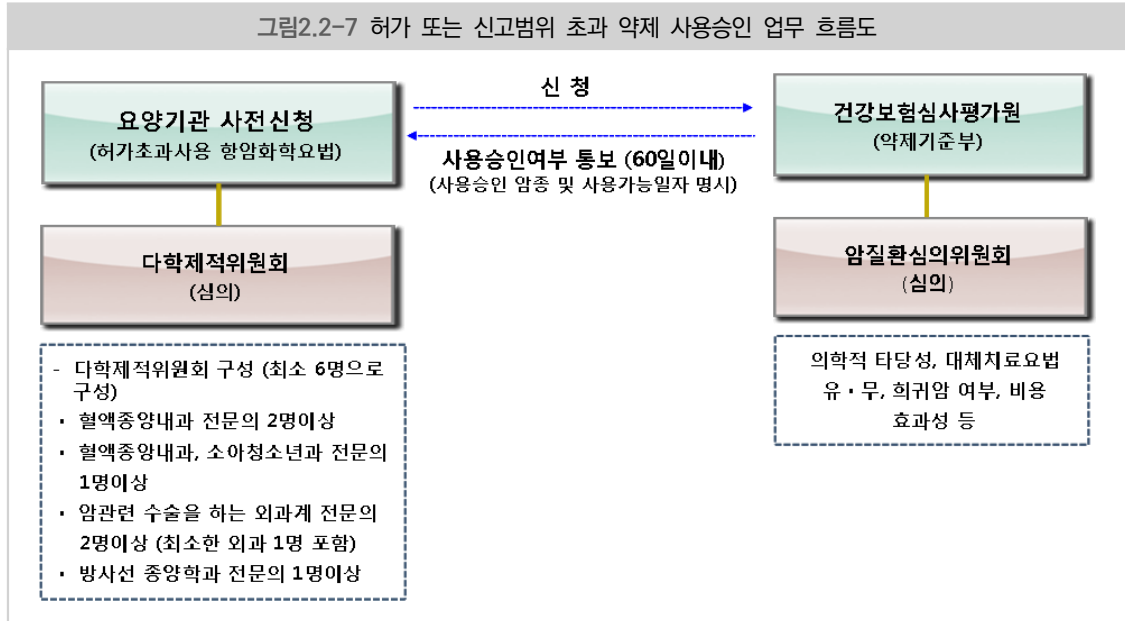
###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가목(2)와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제7장 중증질환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 검토대상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약제

다. 업무 흐름도



라. 세부검토기준

1) 의학적 타당성 검토

- 가)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외국 의약품집 등재여부 등
- 나) 국내 및 외국 교과서에 수록내용
- 다) 국내 및 외국 임상 진료 지침·가이드라인, 관련 학회 의견
  - 임상연구논문은 근거수준이 높은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논문 중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가 3년 평균 3.0 이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택 (다만, 희귀암 등의 경우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 의학적 근거자료는 초록(abstract)은 변동될 수 있어 제외시키고, publish된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체 가능성

-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유무 및 효과 등 판단



### 3) 비용 효과성

-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주로, 항암화학요법)과 비교 종합적으로 판단
  - 약제 투약비용
  - 추가 소요재정

### 마. 검토절차 및 사후관리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신청
  - 신속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 협의 후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사용승인 신청
- 2) 60일 이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여부 통보
- 3) 사용 승인된 약제는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신속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평가원 승인전에 사용한 허가초과 요법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적용일부터 새로운 환자에게는 해당 요법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은 불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지속 사용 결정사실을 심사평가원에 신고
- 4)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용내역제출
- 5) 해당 약제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 통보

### III

## 근거기반보건의료(EBH)

작성자 : 위원회운영부 주 - 조상현  
부 - 박은희

### 1

## 개요

### 가. 정의

근거기반보건의료(Evidence Based Healthcare, EBH)는 근거기반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의 원리를 보건의료분야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근거기반의학은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성실하고 명료하며 현명하게 사용하여 개개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근거기반의학의 실행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최상의 외적 임상근거’를 ‘각 임상가의 전문적 식견’과 통합하여 이루어진다.

#### 근거(Evidence)란?

보건의료 중재(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중심의 임상적으로 타당한 연구 결과로, 임상적으로 최적의 이용 가능한 근거는 치료, 재활 및 예방요법의 효능 및 안전성, 진단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accuracy and precision), 예후 표지자의 검정력(the power of prognostic markers)을 말하며<sup>26</sup> 주로 문헌에 의한 근거를 말한다.

따라서, 근거기반 보건의료는 ‘개별적인 환자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재의 최상의 근거를 성실히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얻은 ‘과학적인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인 가치’, ‘환자의 가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 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 신의료 기술의 확산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26 Sackett DL et al. Evidence based medicine : What it is and what it isn't. British Medical Journal 312[7023], 71-72. 1996.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보건의료분야는 관련정보와 전문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견해에 의한 의사결정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가 직면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로 보건의료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근거 기반보건의료’가 필요하다.

근거기반보건의료에 기초한 의사결정기전의 도입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또는 공공차원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의 제공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성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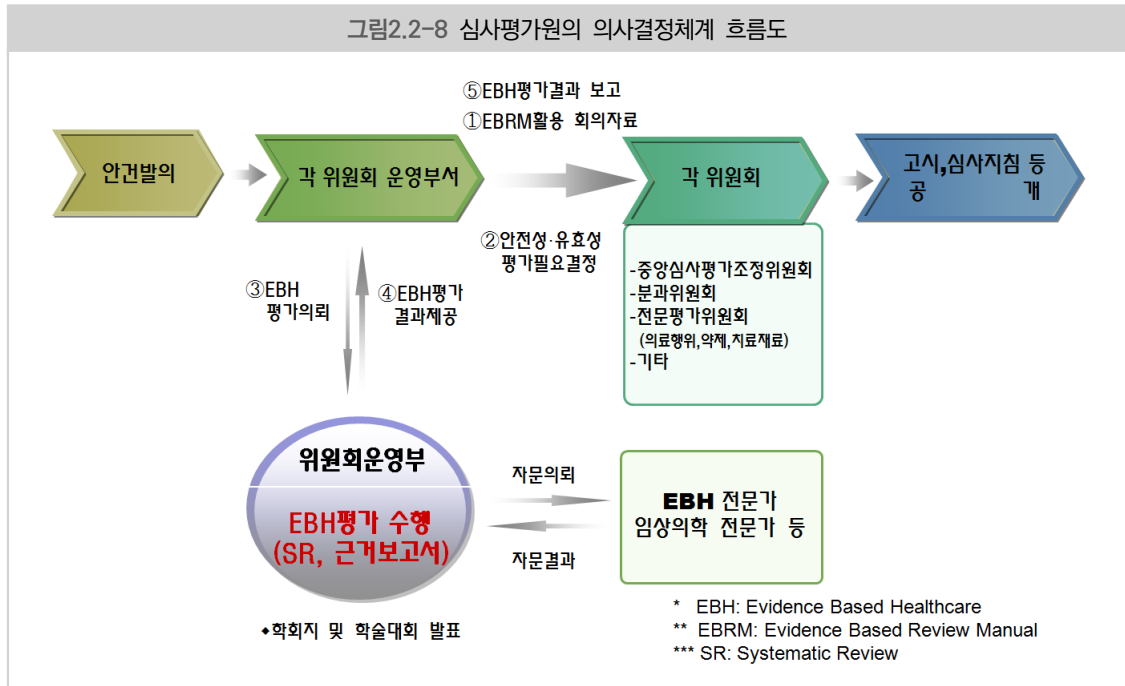
#### 다. 심사평가원의 근거기반보건의료(EBH)

심사평가원은 근거에 기초한 업무 수행을 표방하고 있으며, 급여기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여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의사결정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한 요소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안전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둔 EBH평가를 수행하고 2)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활용지침인 근거문헌 활용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의 개발 및 실무적용으로 근거중심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18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9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6조, 제7조

## 2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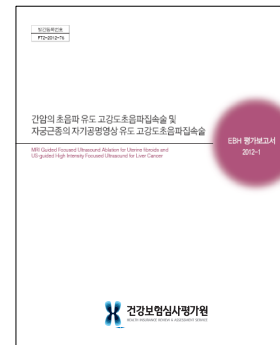


## 3 EBH 평가

### 가. 개요

EBH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합 또는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EBH평가 보고서는 행위, 치료재료 및 약제 등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일차문헌들의 결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통합하여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 표준 평가 방법론으로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문헌고찰은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모가 많고 평가기간이 길어, 근거의 시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평가주제나 평가 진행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단기문헌고찰 형식의 평가가 시도되었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



하여 보다 신속한 형식의 평가(근거) 방법론 개발이 완성 되었다. 현재 생산되는 EBH평가 보고서는 [표2.2-2]와 같다.

표2.2-2 EBH평가 보고서 유형

구분	보고 유형	정의 및 방법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상병, 진단법, 중재법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평가
근거 보고서	근거 요약 보고 (Evidence report)	특정 연구 대상 및 주제에 대한 일차 또는 이차 문헌을 검색하여 검토 및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 ※ 필요시 문헌의 비평적 평가, 전문가 자문 시행
	근거문헌 목록 (Reference list)	연구주제에 대한 근거문헌 목록 제공, 가능하다면 문헌의 전문 제공
문헌의 비평적 평가 보고서	문헌의 비평적 평가 (Critical Appraisal)	표준화된 점검표(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연구 문헌의 신뢰성·타당성 검증

#### 나.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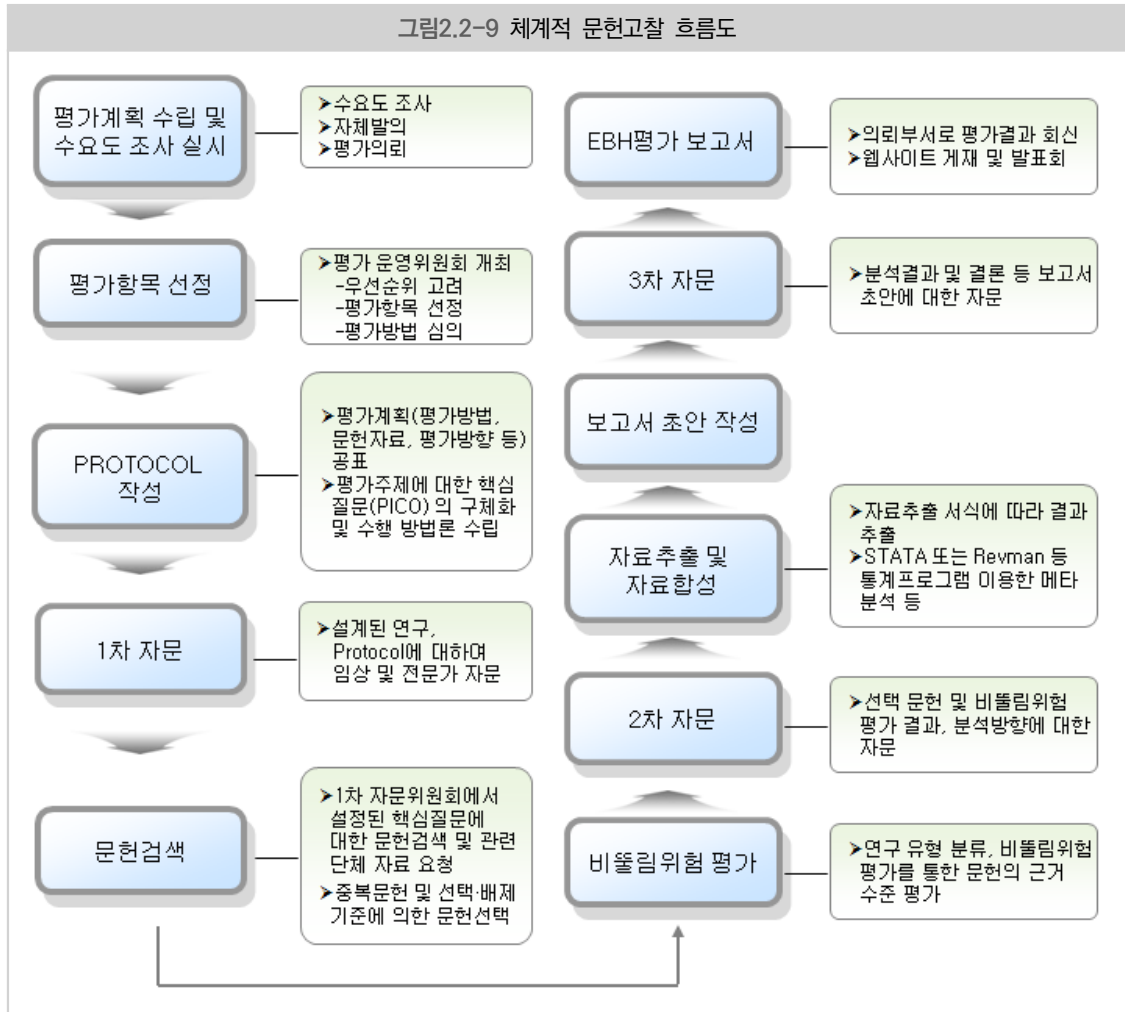
##### 1) 정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논란의 대상이거나 사회적 영향 등의 이유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임상질문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일차연구들을 종합한 문헌 분석방법이다. 평가 주제에 대한 핵심 질문을 설정하여 필수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존하는 모든 근거(문헌)를 찾아내고, 문헌의 비뚤림 평가(Risk of Bias, RoB)를 통해 근거 수준을 평가하고, 각 문헌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비뚤림(Bias)을 최소화한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임상 및 EBH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으로 근거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 2)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EBH평가 유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이 결정되면 주제에 해당하는 중재(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담당직원 2인(이상)으로 이루어진 평가팀을 구성하고 EBH방법론 및 관련 임상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평가팀은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그림2.2-9)에 따라 EBH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 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게 된다. EBH평가 결과는 각 위원회에 제공되어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3) 결과활용

- 가) 근거지원 : 각 위원회 평가결과 제공
- 나) 정보공유 및 확산 : 결과 발표회 개최 및 학회 발표 등

### 4) 평가결과 공개

- 내부망 : HIRA+/심사지식 BANK/기준/EBH 평가보고서 또는 HiraNet/BizNet/관리운영/위원회관리/EBH/평가문헌지원 목록

## 다. 근거보고서

### 1) 개요

근거보고서는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이 근거의 적기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신속하게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EBH평가 방법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이 정책적으로 민감하거나 논쟁이 되고있는 주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임상질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근거보고서는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좁고 구체적인 임상질문으로 빠른시간 내에 근거 확인이 필요한 임상질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체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여 보건의료 의사결정에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보고서이다.

### 2) 업무처리 흐름도

1단계	평가팀 구성 및 요구 사정 : 이해관계자, 의뢰자 등과 함께 연구의 목적과 용도 확인 및 근거 유형 결정
2단계	연구 질문 작성 : PICO/TS* 활용하여 연구 질문 구체화 *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ator, Outcome/Time, Study design
3단계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승인(문헌의 비평적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보고서의 경우)
4단계	문헌 검색 - 주 평가자 1인 수행 - 2~3개 핵심 전자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 - 언어(영어, 한국어), 출판년도(가능한 최근 기간), 문헌 활용범위(초록, 전문) 등으로 제한
5단계	문헌의 선택 및 배제 - 주 평가자 1인 수행 - 연구 유형별 단계적 접근 : 질 높은 근거의 연구(SR, HTA, guideline 등)가 있다면 우선 활용
6단계	문헌의 비평적 평가 - 주평가자와 부평가자 2인 독립 수행(평가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자문) -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 · 1차 연구 : RCT는 Cochrane's ROB/ Non RCT는 RoBANS 이용 · 2차 연구 : AMSTAR 등 이용 ※ 근거 요약 보고 및 근거문헌 목록은 생략
7단계	자료 추출 및 연구 결과 합성 - 주평가자와 부평가자 2인 독립 수행(평가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자문) - 주로 서술적 통합을 실시, 「질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근거 보고」는 필요시 양적 합성(메타분석) 수행 ※ 근거 요약 보고 및 근거문헌 목록은 생략
8단계	보고서 작성 -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근거의 불확실성 사전 공지
9단계	의견 수렴 및 보고서 수정·보완 - 생성 근거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확인 및 반영
10단계	보고서 제공

※ 6단계 및 7단계의 2인 이상 독립수행은 「문헌의 비평적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근거보고서」에 해당

## 가. 개요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각 위원회 근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문헌검색 및 흐름도, 문헌의 분류, 문헌계재방법 등을 실무적용(회의자료에 근거문헌 수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수록지침이다.



### 1) 개발배경

심사평가원의 각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은 진료비 심사, 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곧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들의 의료공급 및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EBH평가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상의 근거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실무부서에서 비교적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할수있는 방법을 요구하였고, 심사평가원 업무에 적용 가능한 EBRM을 개발하였다.

### 2)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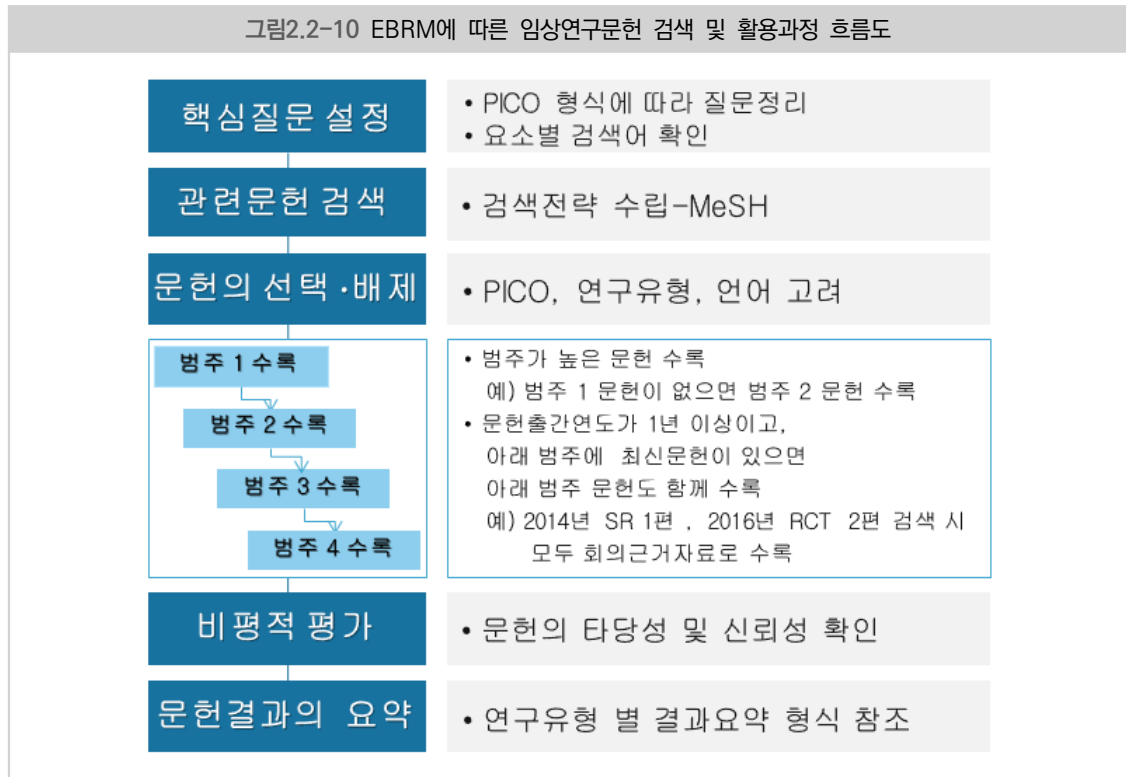
EBRM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합리적인 의학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인 “System to rate the strength of scientific evidence(AHRQ Publication No. 02-E016, April 2002)”와 영국 SIGN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작성을 위한 안내서인 “SIGN 50:A Guideline developer's handbook,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ay, 2004 last updated”를 참고로 초안을 작성하여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과 시범평가를 거친 뒤 2005년 12월 EBRM 초판을 완성하였다.

이후 EBRM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EBRM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인력공단 인정 사내자격인 EBRM 마스터 선발, 질평가 도구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나. EBRM 내용

EBRM은 심사평가원의 각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근거문헌을 수록하기 위해 회의 안건의 핵심질문을 설정하고, 핵심질문에 따라 문헌검색을 하기위한 검색전략 및 전자데이터베이스 활용법, 문헌선택, 문헌분류 및 각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핵심질문 설정

핵심질문의 설정은 근거문헌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핵심질문은 회의주제에 대한 임상질문으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설정하며, 근거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PICO형식으로 구조화하게 된다. 이때 고려되는 중요 요소는 환자(Patient or Problem), 중재법(Intervention, 약, 검사 등 포함), 비교중재법(Comparison Intervention) 및 결과(Outcome)로 이들의 영어 앞자를 따서 PICO라 불린다.

### 2) 문헌검색

임상질문과 관련한 문헌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뿔림이 없는 검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검색전략 수립을 위해 PICO 핵심요소별 개념어를 구명하여, 주제어(MeSH term)과 자유형식 검색어(Text word) 목록을 작성하고 Boolean 연산자 및 각 종 데이터베이스별 기능을 활용하여 문헌을 검색한다.

또한 문헌검색을 위한 전자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은 업무상 활용 편의성이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는 PubMed와 Cochrane library, EMBASE 검색을 권장하며, 국내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KoreaMed, KMBASE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권장하고 있다.

### 3) 문헌선택

검색된 문헌의 상당수는 관련성이 적거나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 문헌 선택은 핵심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문헌을 찾는 과정이다. 문헌선택 과정은 문헌의 PICO를 확인한 후 핵심질문의 PICO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사전에 정한 문헌의 선택·배제 기준에 따라 최종 문헌을 선택하여야 한다.

### 4) EBRM의 문헌의 범주

임상연구는 적용하는 연구설계에 따라 설득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EBRM에서는 실무부서 사용 편의를 위해서 선택 문헌의 연구설계에 따른 설득력(근거수준)을 범주화 하여 다음의 표 2.2-3과 같이 4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임상연구문헌은 근거 수준이 높은 순서(범주 1 → 범주4)에 따라 단계별로 검색하고 활용하게 된다. 이때 EBRM에 따른 임상연구 문헌의 범주는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 설득력의 크기를 연구설계로 단순화해서 범주화 한 것일 뿐이며, 관련 연구문헌의 질 및 결과의 타당성은 그 문헌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5) 선택문헌 비평적 평가

비평적 평가(Critical Appraisal)란 문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로<sup>27</sup> 임상 혹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최적의 근거(Best Evidence)를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문헌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양질의 가장 유용한 근거를 확인하여 활용하기 위함이다.

문헌의 비평적 평가는 선택문헌의 연구유형(study design),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결과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틀림 위험(Risk of Bias)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의 연구유형에 따라 적합한 평가도구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27 Jenicek M, Stachenko S. Evidence-based public health, community medicine, preventive care. Medical Science Monitor 1995;9(2):1-7.

## 6) 임상연구 문헌의 결과요약

임상연구 문헌의 저자 및 출판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연구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약한다.

표2.2-3 EBRM에 따른 임상연구문헌의 범주

구분	연구유형
범주 1	-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메타분석)
범주 2	- 무작위배정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RCT ) 또는 - 범주 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 3	- 준-무작위배정임상시험(quasi-randomized trial, quasi-RCT ) -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observational, analytic study)
범주 4	-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 환자군 연구(case series), 전/후 비교연구(before/after study) - 증례 보고(case report) - 비 분석적 연구(non-analytic study)

## 7) EBRM을 활용한 회의자료 제시방법<sup>28</sup>

1. 제목 - 핵심질문
2. 분안 - 핵심질문과 PICO 도출 배경
3. 관련 제 규정 - PICO에 부합하는 자료 수록  
식약처 허가사항, 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심사사례
4. 학회 및 관련 단체 의견
5. 관련 문헌
  - 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 1) 교과서
    - 2) 임상진료지침
  - 나. 임상연구문헌
    - 1) PICO에 따른 문헌검색 전략(MeSH 위주)

### 28 참고문헌

1.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13
2. 문옥륜,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1
3. 찰스 노만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율김,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2) 문헌선택

- 핵심질문에 해당하는 PICO에 맞는 문헌 선택
- 선택된 문헌의 범주 구분

범주1	무작위배정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2	무작위배정임상시험 또는 범주 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3	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
범주4	단면조사연구, 전·후 비교연구, 증례 보고, 환자군 연구, 비 분석적 연구

\* 임상연구문헌 자료 인용 시, 상기 도표를 항상 먼저 제시한다.

3) 선택 문헌 중 범주가 높은 문헌 수록(범주 1에서 범주 4단계별로 수록)

- 범주 우선순위는 높으나 최근 출판문헌이 아닌 경우, 다음 단계 범주에 해당 문헌 중 최신의 문헌을 함께 수록

4) 문헌의 비평적 평가

- 선택문헌의 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외부에서 제출된 근거문헌은 반드시 비평적 평가를 실시 후 수록

다. 외국보험급여 관련자료

라. 기타 참고자료

- 1) 경제성 평가자료
- 2) 제외국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사항
- 3) 종설(review)

6. 안건요지 - 핵심질문 및 PICO를 바탕으로 논의 요지 기술



# 제3장

## 포괄수가제도

I.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II.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III. 요양병원 수가제도

IV.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제도



# 제3장

## 포괄수가제도

### I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작성자 : 포괄수가운영부 정 - 이영현  
부 - 김세진

#### 1

#### 정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질병군별로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한다.

#### ※ DRG(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

- 일반산업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개념을 병원진료에 도입한 것으로 의료자원 소모나 임상적인 유사성을 고려하여 입원(또는 외래)환자를 분류한 체계이다. 각각의 환자는 진단명, 수술명, 연령 등에 따라 일정 질병군으로 분류된다.
- DRG 분류체계는 진료비를 지불하는 단위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병원의 예산편성 및 원가 통제 등 병원관리 분야와 의료서비스 이용도 조사를 통한 의료의 질 관리 활동, 보건계획 수립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 법적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2호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제 1호자목

라. 기타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제6호
-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3 포괄수가제 도입 및 시행 과정

#### 가. 시범사업('97~'01)

- 1)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인 진료량과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도입을 건의 하였다.
- 2) 1995년 보험자, 의료계, 학계 등 15인으로 DRG 지불제도 도입 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도입·실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의 심의·결정을 담당하였다.
- 3) 1996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1997년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확정하였다.
- 4) 질병군 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은 1997년 2월부터 1년간 실시되었으며, 시범 사업 기간 및 대상 질병군은 아래 표와 같다.

표2.3-1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간 및 대상 질병군

구분	1차 시범 ('97.2.~'98.1.)	2차 시범 ('98.2.~'99.1.)	3차 시범 ('99.2.~'00.1.)	연장(2회) ('00.2.~'01.12.)
대상 질병군	• 4개 진료과, 5개 질병군	• 4개 진료과, 5개 질병군	• 6개 진료과, 9개 질병군	•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
세부 질병군	• 수정체, 편도, 충수,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	• (좌동)	• 좌동 + • (추가, 4개) 항문, 탈장, 자궁·부속기, 단순폐렴·늑막염	• 좌동 • (제외, 1개) 단순폐렴· 늑막염의 내과 질병군



## 나. 선택 참여방식의 본사업 실시 ('02.1. ~ '12.6.)

포괄수가제 실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1월부터 선택적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상 질병군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게 8개 질병군으로 시작하였으나, 2003년 9월 진료비 변이 등의 문제로 질식분만 질병군은 제외되었다.

## 다.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 2012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하고 2012년 6월 포괄수가제 실시의 근거규정 상향입법(영 별표2 → 영 제21조) 및 모든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토록 하였다.
- 병·의원급에 대해서는 2012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 4

## 7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 가. 대상 기관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은 의원, 보건의료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 나. 대상 환자

-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건강보험(보훈포함) 입원환자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총수절제술)
- 산부인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분만

\* '수정체 수술', '기타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은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도 질병군으로 적용(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입원일수가 30일 초과시 31일 진료분부터는 행위별로 청구

○ 질병군 분류(개수)

질병군(83개)		구분내역
수정체수술	12개	단안, 양안, 소절개, 대절개,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4개	연령,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총수절제술	12개	복잡한 주진단, 복강경시술,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21개	편측, 양측, 연령, 복강경시술,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항문수술	11개	단순, 복수, 원형자동문합기 사용,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16개	자궁, 부속기, 복강경시술,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제왕절개분만	7개	단태아, 다태아, 동반상병 및 합병증 동반 유무

다. 요양급여범위

1) 급여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입원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급여에 해당한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당시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이번 입원에 영향을 미친 경우까지 포함한다.

2) 전액본인부담

포괄수가제의 전액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 제한,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치료

3)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서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단순 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 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또는 차액),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등이 해당한다.

#### 4) 초음파검사, MRI 및 PET

- 질병군 진료시 초음파검사는 행위별과 동일하게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급여(별도 산정),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를 적용한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및 PET(양전자단층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도 행위별과 동일하게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급여(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비급여를 적용한다.

#### 라. 포괄수가 산출 모형

포괄 수가는 행위별수가 진료비용 및 비급여 비용을 기초로 산출한다.

##### [ 포괄수가 산출 모형 ]

- (A) 행위별 급여 평균비용(행위별로 청구하는 기관의 질병군별 평균비용)의 100%
- (B) 행위별 비급여 평균 비용(행위별수가에서는 비급여이나 DRG에서는 급여로 포함하는 항목들의 질병군별 평균 비용)의 100%
- (C) 행위별 비보험 평균비용(의학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에서는 근거가 없는 임의 비급여의 질병군별 평균비용) 50%
- (D) 인센티브 : 상급종합병원 수가(A+B+C)에서 해당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가 차액의 50%  
⇒ A+B+C+D를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고시

## 5

### 질병군 분류 및 진료비 심사

#### 가. 질병군 분류 및 진료비의 결정

- 1) 질병군은 진단명, 수술 등 환자의 주요 진료정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 주진단, 외과계시술, 연령, 양측시술, 복강경시술, 합병증 및 동반상병 등
- 2) 질병군이 분류되면 입원일수나 식사 횟수 등에 따라 최종 비용이 정해지며, 질병군 수가와 행위별로 산정했을 때의 비용 차이가 큰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제도로 별도 보상하고 있다.

#####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열외군

질병군으로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행위별수가하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요양기관의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초과비용을 보상하는 제도

즉, 질병군 환자가 합병증이나 기타 특이사항 발생 등으로 약제 또는 진료행위가 많이 제공되어 행위별수가로 계산(질병군 수가에 포함된 비급여까지)한 결과 질병군 수가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초과 금액 별도 보상

## 나. 진료비 심사

- 1) 요양기관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수 사항의 전산점검 실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한다.
- 2) 이후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사실 여부와 포괄수가제도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 확인심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 건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다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 질병군 분류의 정확성, 상향청구, 분리청구, 중복청구 등
  - 요양급여비용외군 비용 산정의 타당성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등

## 6

### 외국의 포괄수가제 사례

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시기 및 분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투약, 수술 및 산과서비스)에서는 '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민간부문에서는 '05년 3월부터 전면 시행.</li> <li>• 향후 재활, 정신과서비스, home hospitalization에도 도입 예정.</li> <li>•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수가를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체계로 일원화하고 있음</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case-mix based 방식 도입: DTC(diagnosis therapeutic combination) 체계개발</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부터 보건의료자원군(Healthcare Resource Groups)을 근거로 결과에 따른 지불(PbR, payment by res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RG는 비슷한 수준의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임상적 유사 치료군을 묶은 표준 집합임. 진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불보상 수단으로 활용</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3년 급성기 병원에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지불제도 도입</li> <li>• 적용 분야 확대: 전문재활시설 '98년 7월, 외래 '00년 8월, 가정간호 '00년 10월, 재활병원 '02년 1월, 장기요양 병원 '02년 10월</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 병원별 목표예산 내에서 혼합방식 적용: 건당 포괄지불, 특별보수, 1일 정액</li> <li>• '00년 호주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방식을 바탕으로 한 G-DRG 체계 도입을 결정함.</li> <li>• '02년부터 자발적 참여를 시작하였으며, '09년 전국적으로 동일한 체계도입을 목표로 함.</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Case Payment '95년~'09년</li> <li>• 2단계 대만 DRG: '10년부터</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부터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도입</li> <li>• 보험자는 포괄수가제를, 의료공급자는 행위별수가제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절충안</li> </ul>

대부분의 국가가 모형은 다양하지만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일본, 대만, 독일과 예산제 방식을 채택한 유럽에서도 효율성, 투명성,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 공급이 민간 위주인 미국에서 '83년에 도입하여 확대 중이며, 공공성이 강한 국가(유럽)에서 포괄수가제 실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Ⅱ

##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작성자 : 포괄수가개발부 주 - 김미영  
부 - 김현아

## 1

## 정의

신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일부 질병군(7개 질병군)에만 적용하는 기존 포괄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대안적 모델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수가)과 행위별 보상방식이 혼합 적용된 지불제도이다.

## 2

## 법적 근거

##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18.1.)

## 3

## 목적

-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모형에 따른 환자분류, 포괄수가 수준,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지불모형으로서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 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의 질,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진료비 청구, 심사 및 관리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4 추진 경과

- 가. ('07.1.) 포괄수가 확대관련 새로운 모형 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결정
- 나. ('09.3.)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 선정(20개) 및 신포괄수가 개발 완료
- 다. ('09.4.20.~'12.6.) 3차에 걸쳐 공단일산병원 건강보험 입원환자 대상 신포괄 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라. ('11.7.~'12.6.) 지역거점 공공병원 건강보험 입원환자 대상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 3개 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의료원, 남원의료원
- 마. ('12.7.~'13.12.) 공단일산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입원 환자 대상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기관(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 ※ '13년 6월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39개 기관(2013. 5. 29. 진주의료원 폐업)
- 바. ('14.1.~현재) 공단일산병원 및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입원 환자 대상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 사. ('15.8.~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아. ('17.1.~현재) 진안군의료원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자. ('18.8.~현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14개 신규기관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표2.3-2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사업년도	'09.4.~	'10.7.~	'11.7.~	'12.7.~	'13.7.~	'14.1.~	'15.8.~	'16.1.~	'17.1.~	'18.8.~
대상기관	공단 일산병원 (1개소)		공단 일산병원	공공 병원 (41개소)	공공 병원 (40개소)	공공병원 (40개소)	공공병원(41개소)		공공병원 (42개소)	공공병원 (44개소)
			부산, 대구, 남원의료원							민간병원 (12개소)
대상 질병군	20개	76개	553개 76개	550개	552개	553개		559개		
대상환자	건강보험			건강보험 · 의료급여						

## 5

## 신포괄수가 모형 주요내용

## 가. 신포괄수가 모형의 특징

- 1) 진료비 지불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였다.  
의료의 과소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 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
- 2) 건당 포괄 방식에 일당수가 개념을 도입하였다.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감안, 일당수가 개념을 도입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방식
-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해 초음파 등 진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였다.  
진단 목적의 초음파, 의사행위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등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
- 4) 모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 가) 비포괄 보상부분에 대한 남용 방지  
별도 보상되는 고가서비스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치료재료 단가의 80%만 별도 보상하고, 20%는 수가 책정 시 포괄수가에 포함한다.

구분	포괄 대상	비포괄 대상
적용수가	포괄수가 (기준수가 + 일당수가)	행위별수가
진료비	포괄 대상 100% + 비포괄 대상 약제·치료재료 단가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일부 약제·치료재료 단가의 80%</li> <li>• 비포괄대상 행위 단가의 100%</li> </ul>

- 나) 일당수가 방식 도입에 따른 입원일수 증가 방지 유도  
일당수를 실제 발생 진료비의 80%로 책정하고 20%는 기준수가에 포함하여 보상함으로써 입원일수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나.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방법

- 1) 입원일수에 따라 환자군을 구분하여 각 군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 가) 하단열외군 : 해당 질병군별로 입원일수가 하위 5percentile 미만인 환자
  - 나) 정상군 : 입원일수가 5~95percentile 사이의 환자
  - 다) 상단열외군 : 입원일수가 상위 95percentile을 초과하는 환자

2)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질병군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 정상군 환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 (1) 포괄수가, 비포괄수가 및 가산수가의 합으로 결정. 포괄수는 기준수와 환자의 입원일수 만큼의 일당수에 의해 정해지며, 비포괄수는 행위별수가로 산정
- (2) 포괄수는 포괄 영역 진료비와 비포괄 영역(약제·치료재료) 진료비의 20%를 합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 조정계수는 시범기관별, 보험자종별, 환자특성별(내과계·외과계·정신건강의학과)로 구분하여 적용
- (3) 가산수는 각 기관의 5개영역(참여, 효율·효과성, 공공성, 의료의질, 비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가산 비율을 포괄수에 곱하여 산정

나) 상단열외군 환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과 행위별 요양(의료)급여비용의 합으로 결정.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까지는 정상군 환자의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상한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위별수가(해당 수가의 100%)로 산정

다) 하단열외군 환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 행위별수가(해당 수가의 100%)로 산정

표2.3-3 각 환자군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방식

환자군	입원일수	환자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일수 미만	정상군 하한~정상군 상한일수	정상군 상한일수 초과
하단열외군		행위별수가 적용	-	-
정상군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 = 포괄수가 + 비포괄수가 + 가산수가 • 포괄수가(포괄대상 및 비포괄대상 약제·치료재료 단가의 20%비용 포함) = 기준수가 + 일당수가 • 비포괄수가 = 항목별로 행위별수가의 100%(행위) 및 80%(약제·치료재료) 산정 • 가산수가 = 기관별로 부여된 가산항목 비율의 합을 포괄수에 곱하여 산정		-
상단열외군		정상군 환자와 동일		행위별수가 적용



표2.3-4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을 구성하는 포괄 및 비포괄의 대상 항목

구분	행위	약제·치료재료
포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포괄 대상을 제외한 항목으로 행위별 수가의 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포괄대상 약제·치료재료 비용의 20%</li> <li>비포괄 대상을 제외한 급여·비급여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100%</li> </ul>
비포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행위 성격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술 및 시술(내시경하시술, 중재적방사선시술)</li> <li>검사 등 : 내시경, 천자, 생검, 혈관조영촬영, 심도자술,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방사선 치료,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응급처치 등</li> </ul> </li> <li>기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응급의료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초빙료, 정신과 특정행위(전기충격요법), 투석 관련 행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식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암제(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투석액, 정신과 특정약제, 제한 항생제 일부 계열, 일부 주성분 단위약제</li> </ul> </li> <li>치료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합용 군 : 자동병합기 류</li> <li>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군(단, 두 개, 악안면 SCREW 류, STAPLE 류 제외)</li> <li>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 군(단, 관절경 CANNULA 류 제외)</li> <li>인공관절군(단, HIP PROSTHESIS &amp; CABLE SYSTEM 류, KNEE PROSTHESIS 류 제외)</li> <li>척추재료 군</li> <li>흉부외과용 군</li> <li>신경외과용 군</li> <li>안·이비인후과용 군(단, 인공수정체 제외)</li> <li>중재적 시술용 군(단, 배액관 고정 류, PORT NEEDLE 류 제외)</li> <li>일반재료 군(I) : 조직(피부 등) 확장 및 수복용 재료 류, 기관내 삽입관 류</li> <li>일반재료 군(II) : MESH 류, H.D &amp; C.A.P.D용 류, PHERESIS용 류</li> <li>일반재료 군(III) : 검사용 류, 외과수술용 선택 품목 류</li> <li>인체조직군</li> </ul> </li> </ul>

## 라) 요양(의료)급여비용 열외군 보상

- 진료비가 상당히 높은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열외군을 설정하여 별도금액 추가 보상
- ‘요양(의료)급여비용 열외군’은 신포괄수가 요양(의료)급여비용이 행위별수가로 계산한 비용보다 작고 그 차이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200만원 초과 금액 전액에 대하여 추가 보상

6

시범기관 진료비 심사

가.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내용

- 1)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는 시범사업 지침 제 I 장 내지 제 II 장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되 처리방법 및 절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 2)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DRG코딩 오류 등 착오 청구 여부
  - 나) 비포괄 항목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 다) 신포괄수가 질병군의 행위별수가 청구, 행위별 대상의 신포괄수가 질병군 청구 등 부적정 청구 여부
  - 라)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및 입원일수 열외군 산정의 타당성 여부
  - 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 바) 의료의 질과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

나. 심사 시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진료비 사전심사는 매 청구시마다 실시하고 사후심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 심사 담당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라. 심사 방법

- 1) 시범요양기관이 청구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은 사전심사(전산점검, 수술의 적정성 여부 등)를 실시하여 지급한 후 진단코딩 오류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한다.
- 2) 심사는 시범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제출받아 청구된 진료비 청구명세서와 대조 확인하는 서면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확인심사는 시범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 건 중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4) 필요한 경우 확인심사 과정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진료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5) 확인심사결과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착오 청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해 시범요양기관의 차기 지급액에서 조정한다.

#### 마. 심사 결과 환류 및 교육 등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후 그 결과를 시범요양기관에 전자교환문서방식(EDI) 등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상호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시범요양기관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1조에 의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발견된 착오 및 오류 등의 시정과 관련하여 시범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병원 내에서 제도 취지에 적합한 제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바. 심사 관련자료 제출

시범요양기관은 심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환자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 Ⅲ

## 요양병원 수가제도

작성자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주 - 임상희  
부 - 박복희, 방찌야

### 1

## 개요

### 가. 요양병원 도입

1994년 1월 7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이 이루어져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신설되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추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 나.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개발 배경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행위별 수가제는 급성기 질환 위주이고 과다진료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여 장기요양환자의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요양병원 환자는 급성기 병원 환자에 비해 의학적 상태가 안정되고 있고 의료적 서비스 부분에서 비급여가 거의 없어 포괄형 수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일정정액인 요양병원수가를 개발하게 되었다.

## 2 법적 근거

- 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 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 3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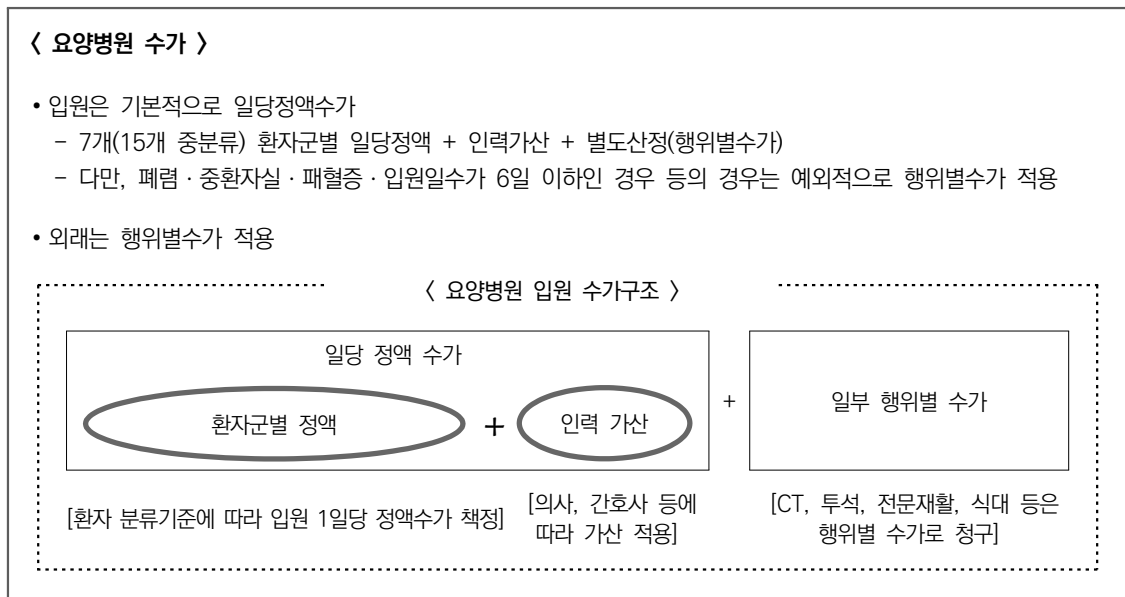
- 가. 1994년 7월 「의료법」에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로 신설
- 나. 시범사업 실시('05.7.~'06.6.)
  - 요양병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질병군, 기능 상태별 일당 정액수가를 개발하여 시범적용
- 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시행('08.1.~)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정 및 일당정액수가를 시행
- 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10.1.~)
  - 의료법에서 요양병원 종별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하고,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적용 시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마. 요양병원 인증신청 의무화('11.1.~)
- 바.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신설('13.1.~)
- 사. 요양병원 의사정원 확대 등('15.5.~)
  - 입원환자 40명당 1인 → 입원환자 80명까지 2인으로 변경하고 시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인을 의무화
- 아. 요양병원 입원대상 제외 규정 명확화('16.12.~)
  -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
- 자.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17.2.~)
  - 신·증축 기관의 경우, 1병실당 최대 6개 병상이내로 설치토록 하고, 병상간 거리는 1.5m로 변경하였고 기존 기관의 병상간 거리는 1m로 개선('18.12.31.까지)
  -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00병상당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의무화

차. 당직의료인 기준 신설(17.6.)

- 의사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하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토록 신설

4 요양병원 수가체계

가. 요양병원 수가 산정원칙



1) (일당 정액제)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장기 환자’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행위별 수가제)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 환자’

-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
- 낮병동 입원환자
- 한의과 입원환자
- 치과 입원환자

## 3) (행위별 수가제)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기간'

- 폐렴 치료기간
- 패혈증 치료기간
- 중환자실 입원기간
-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 나. 정액수가기간 동안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산정 가능한 '특정 항목'

- 1) 식대
- 2) CT, MRI
- 3) 전문재활치료
- 4)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5) 전문의약품
  - (1) 치매치료제
  - (2)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주사제 등
  - (3)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 (4) Riluzole
  - (5) Interferon  $\beta$  -1a
- 6)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중 '07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7) 환자를 진료 중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다. 정액수가 적용 시 입원환자 분류군

분류	산정기준	중분류
	주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이라 한다) 점수 계산은 환자 평가표의 ADL 측정항목 중 4항목(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문항별 점수는 안전자립 1점, 감독필요 2점, 약간의 도움 3점, 상당한 도움 4점, 전적인 도움과 행위발생 안함은 5점을 부여한다.	
의료 최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li>• count는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해당하는 종류의 수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해당 조건이 존재할 경우 1을 더하고, 모두 존재할 경우 2를 더하여 산정한다.</li> </ul>	count 3-6
		count 1-2
의료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li> <li>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li> <li>2. 다발 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ADL이 11점 이상인 경우</li> <li>3.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이 2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거나, 3-4단계 피부 궤양이 1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li> <li>4.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경관영양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li> <li>5. 2도 이상 화상</li> <li>6.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li> <li>7. 경관영양 또는 말초정맥영양</li> <li>8. 흡인(Suction)</li> <li>9. 기관 절개관 관리</li> <li>10. 당뇨환자가 발의 감염 또는 발의 개방성 병변이 있어 dressing을 받고 있는 경우</li> <li>11. 수혈</li> <li>12. 산소요법</li> <li>13. ADL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li> </ul>	ADL 17-20 ADL 9-16 ADL 4- 8
의료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li> <li>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li> <li>2.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의 수가 1개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li> <li>3.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 필요</li> <li>4.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li> <li>5.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li> <li>6. 네블라이저(Nebulizer) 요법</li> <li>7. 수술창상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개방창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드레싱을 받는 경우</li> <li>8. 위루, 요루 또는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li> <li>9.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li> </ul>	ADL 16-20 ADL 9-15 ADL 4- 8
문제 행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세를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인 경우 산정</li> </ul>	ADL 4- 20
인지장애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기능검사(K-MMSE 또는 MMSE-K)결과 0~19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li> </ul>	ADL 4- 20
의료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최고도 내지 인지장애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ADL이 6점 이상이고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는 경우 산정</li> </ul>	ADL 13-20 ADL 6-12
신체기능 저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li> </ul>	ADL 13-20 ADL 6-12 ADL 4-5



## 라. 환자평가표

- 1) 작성시기 : 매월 1~10일 사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2) 대상기간 : 작성일 기준으로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지난 7일간의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
- 3) 작성자 :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의무기록에 근거를 작성하여 비치

## 5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교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연혁	• 1994년 1월	• 2008년 7월
법률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요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의료법 제3조의2)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입원(입소)대상	• 의사의 의료적 판단 (환자 및 보호자 선택)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 3~5등급자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시 입소가능
환자분류체계	• 의료필요도에 따라 입원환자 분류군을 7개군으로 분류	• 요양필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기준병상(입소실)	• 기준병상 : 6인실	• 기준 : 입소실 4인실
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치과 의사, 한의사) 입원환자 80명까지 2인</li> <li>• 간호사 : 환자6명당 1인(2/3까지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li> <li>• 약사 및 한의사 : 1인 이상</li> <li>*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li> <li>• 영양사 : 1인 이상</li> <li>• 의료기사 등 : 필요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장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li> <li>• 의사(한의사)또는 축탁의사 : 1인이상</li> <li>* 축탁의 : 월 2회 방문</li> <li>•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인</li> <li>• 사무국장 : 1인</li> <li>• 사회복지사 : 1인</li> <li>•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li> <li>• 영양사 : 1인</li> </ul>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상당 면적 6.3m<sup>2</sup> 이상</li> <li>• 입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한방요법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적출물처리 시설 등</li> <li>• 휠체어 이동 공간확보, 문턱제거, 침대용 엘리베이터 등 안전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연면적 23.6m<sup>2</sup> 이상</li> <li>• 침실(1실4인이하), 1인당 면적6.6m<sup>2</sup> 이상</li> <li>•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 물건조장 등</li> </ul>

## IV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제도

작성자 : 완화요양기준부 주 - 임상희  
부 - 허은정

### 1

## 개요

### 가. 정의 및 목적<sup>29</sup>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또는 별도의 독립시설)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제공하는 입원진료서비스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해 적극적인 통증 및 신체증상관리, 돌봄계획 수립 및 상담, 임종관리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지지 등의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호스피스의 대상은 말기환자이나,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말기암은 기대여명 예측이 가능하고, 다른 말기질환과 달리 환자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임종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기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며, 입원형 호스피스의 모니터링 및 수가 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공급자 및 수급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 나. 추진 배경

- 1) 암환자 및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의 존엄성 있는 죽음과 사별가족의 부담 및 고통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호스피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sup>30</sup>됨
- 2) 호스피스는 2003년 암관리법 제정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2009년, 2011년 2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

29 김명화 등.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효과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30 이건세 등.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수가 및 평가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설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다. 제도화 원칙

- 1)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
- 2)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 말기암을 진단받은 환자와 호스피스기관의 연계로 환자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도모

## 라. 호스피스 전달체계

### [ 호스피스 전달체계 ]<sup>31)</sup>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호스피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 필요

- 입원형 : 병원 내 호스피스병동(또는 별도의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전담인력과 조직을 두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 가정형 : 「연명의료결정법」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이 말기환자·가족의 가정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하여 말기환자 통증관리 및 전문상담 등 제공
- 자문형 : 「연명의료결정법」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이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 호스피스병동 이외에 있는 말기 환자·가족이 호스피스를 조기에 이용하도록 자문함으로써 호스피스 이용을 활성화

## 2

## 법적 근거

-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차목.
-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
-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1 가정형(2차) 및 자문형(1차)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중(2019.12월 까지)

3

추진 경과

---

- 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및 서비스 모형 개발(2003~2004년)
- 나. 암관리법 제정(2003)
- 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사업 시작(2005)
- 라.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 시행(2009.12. ~ 2011.8.)
- 마.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 시행(2011.9. ~ 2012.12.)
- 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 연장(2012.12. ~ 2015.7.)
- 사. 완화의료전문기관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2012.3.)
- 아. 완화의료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2012.3.)
- 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2013.10.)
- 차.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본 사업) 수가 개발(2014.1.~12.)
- 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2014.12.)
- 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2015.4.)
- 파.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15.5.)
- 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 관련 법령 일부 개정 및 관련 고시 신설(2015.6.)
- 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제도 시행(2015.7.)
- 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2016.2.), (2017.8.시행)
- 더. 연명의료결정법(약칭) 적용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완료(2018.8.)

4

호스피스 수가체계

---

가.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발 배경

호스피스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호스피스서비스가 존재하므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보장강화 및 원활한 호스피스 제공을 위해서 행위별 수가가 아닌 다른 보상방식 필요했음

- 1) 호스피스는 의료와 복지가 복합된 서비스
- 2) 호스피스 서비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의 팀으로서의 접근

- 3) 호스피스는 일반병동보다 간호인력 수준이 높고 상담과 교육 활동 등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이 많지만, 행위별 수가(입원료 등)로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나. 호스피스는 입원기간동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균일하여 일당정액 수가로 개발**

- 1)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진료비 변이가 낮음  
 2)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형태도 일당 정액수가이며, 환자상태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방향**

**1) 양질의 서비스 지향**

- 가) 말기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존엄한 임종을 지원  
 ● 적극적인 통증과 증상관리 관련 약제와 시술 별도 산정  
 ● 임종실 및 임종관리료 별도 산정  
 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팀에 의한 통합적인 돌봄 제공  
 ● 전인적 돌봄 상담료 별도 산정  
 다)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시범사업 수가보다 수가 수준 상향하여 병상수 확대 유도

**2) 환자부담 감소**

- 가) 비급여 부담 최소화  
 ●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비 급여화(병원급 이상 1인실만 비급여)  
 나) 호스피스 보조활동으로 가족부담 감소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조활동 수가 적용

**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의 구조**

일당정액수가		가산		별도 산정
- 종별 - 병실별(4인실, 2~3인실, 1인실, 격리실, 임종실)	+	- 간호사 - 전담 사회복지사	+	- 마약성 진통제 - 신경차단·파괴술 등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임종관리료

- 입원료\* + 행위료 + 약·치료재료 비용 + (호스피스보조활동)

\* 간호1등급, 내과가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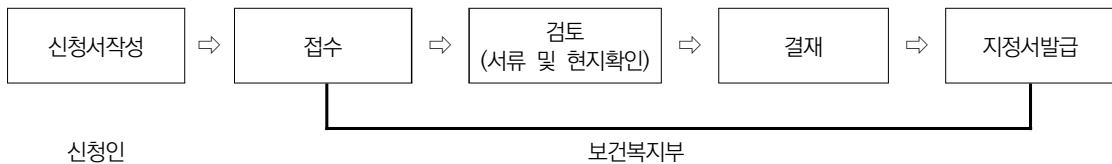
일당정액수가는 입원료, 행위료, 약·치료재료 비용, 특수시설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종별, 병실별로 차등 설계하였다. 호스피스 보조활동비는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제도<sup>32</sup>

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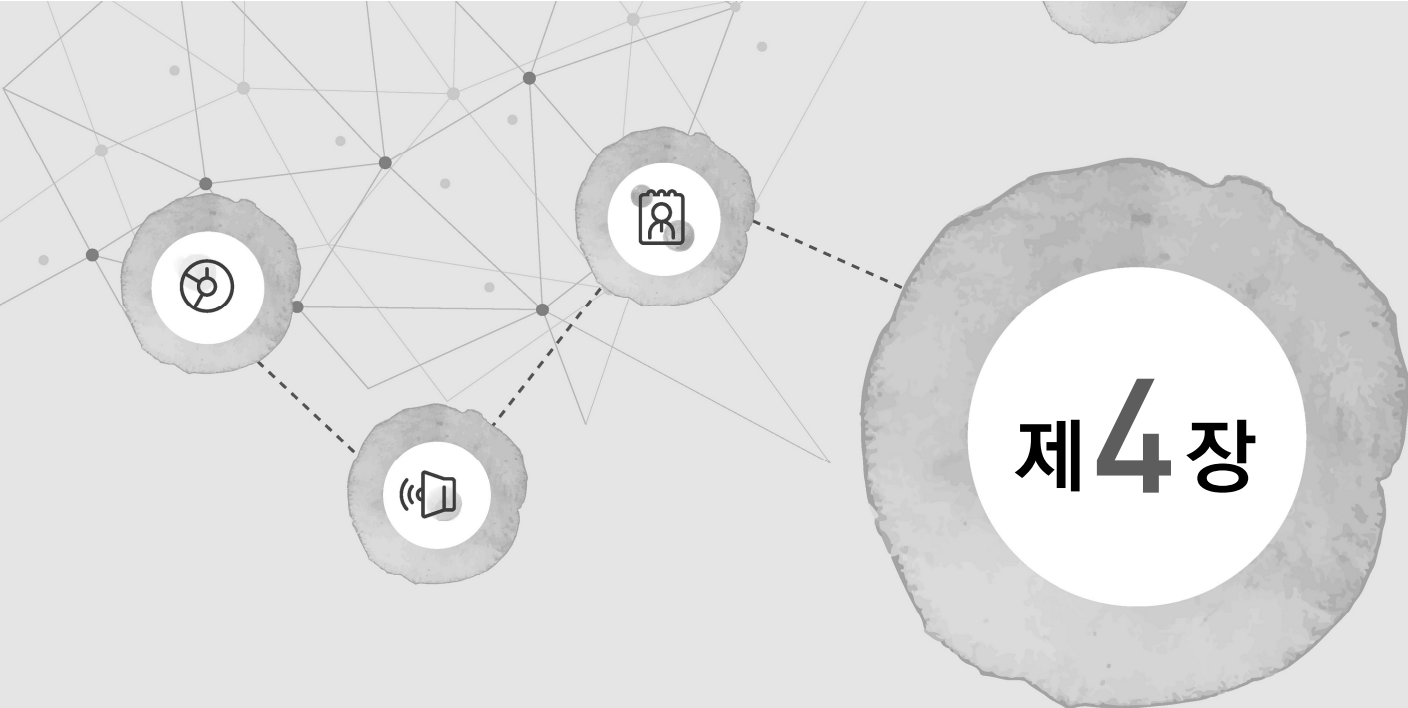
-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기준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 4) 법적 기준인력의 호스피스 관련 법정교육 이수 증명 서류 등



나.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류 검토 후, 현지확인을 실시함

다. (보건복지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함

32 국립암센터, 2018 말기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2018.02



# 의료분류체계

- I. 질병분류체계
- II. 환자분류체계
- III. 분류체계 전산서비스





## 제4장

# 의료분류체계

## I

### 질병분류체계

작성자 : 분류체계개발부 주 - 노승미  
부 - 박은경

#### 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요

##### 가. 연혁

###### 1) 도입 및 제정

###### 가) 도입

국제통계협회에서는 1893년부터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를 설정하였으며, 1946년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를 계승하여 작성하고 있다.

###### 나) 제정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한국전쟁(1950년)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한국 실정을 보완하여 처음으로 한국 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 2) 개정

######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우리나라는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질병 및 사인(死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국제질병분류(ICD)<sup>33</sup> 체계를 근간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sup>34</sup>)를 개정한다.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과정

- (1) 제1차 개정(1973.1.1.) : 제8차 국제질병분류(ICD-8)에 의거 개정
- (2) 제2차 개정(1979.1.1.) : 제9차 국제질병분류(ICD-9)에 의거 개정
- (3) 제3차 개정(1995.1.1.) :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에 의거 개정
- (4) 제4차 개정(2003.1.1.) :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 수정판 반영 및 그간의 한자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질병용어로 변경
- (5) 제5차 개정(2008.1.1.) :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사항('98~'05) 반영 및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기준으로 신생물의 형태분류 작성
- (6) 제6차 개정(2011.1.1.) :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사항('06~'08) 반영 및 국내·외 세분화 동향 및 요구 검토하여 우리나라 고유분류(☯ 표기) 신설, 한의분류를 U 코드로 흡수
- (7) 제7차 개정(2016.1.1.) : 국제질병분류(ICD) 및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 업데이트 사항('09~'14) 반영 및 질병분류 세분화, 희귀질환 추가수록, 의학용어집 개편 등에 따른 한글용어 변경사항 반영

\* 참고) 국제질병분류(ICD) 개정 과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10년 주기의 개정원칙에 따라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1900년 1차 개정, 1992년 10차 개정)
- ICD - 10 이후부터는 매년 업데이트로 개정원칙을 보완
- 현재 ICD - 11 개정 진행 중
  - 2011년 ICD - 11 알파버전 초안을 시작으로, 2013년 베타버전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세계보건총회(WHA) 제출 및 최종 승인 예정

나. 개요

1) 정의 및 목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음

33 ICD :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34 KCD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 2) 필요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을 갖춘 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 3) 분류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은 이환 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 유행성 질환
- 체질적 또는 전신적 질환
-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 발육 질환
- 손상

## 4) 분류 체계 및 구조

### 가) 분류 체계

- 분류표
  - 대·중·소·세·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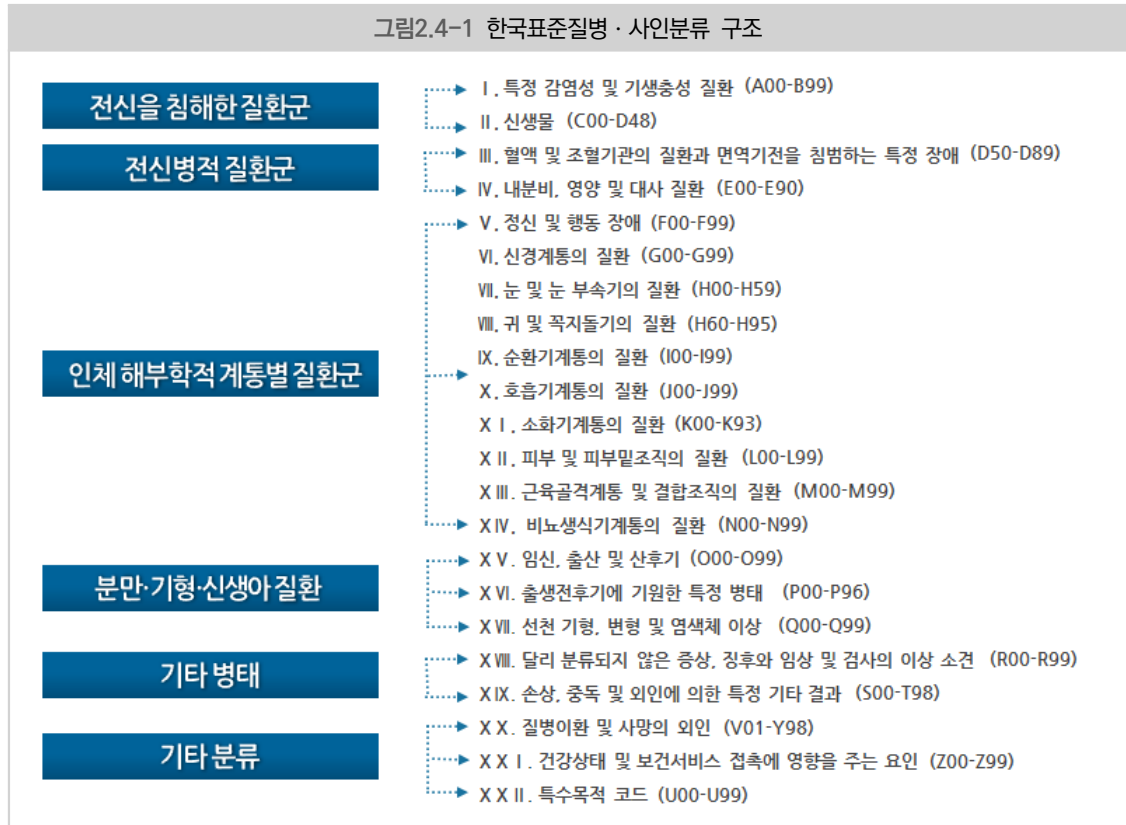
표2.4-1 분류 단계별 항목수

구분	대분류 (장)	중분류 (항목군)	소분류 (3단위분류)	세분류 (4단위분류)	세세분류 (5단위분류)
KCD-7	22개	267개	2,082개	12,505개	6,746개

- 신생물의 형태 분류
  - 분류표 중 신생물(C00~D48)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

나) 분류 구조

제1장에서 제22장까지 이환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 항목으로 구성 (항목 분류표 내 hierarchy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1) 포함 용어(Inclusion terms)

항목 내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 항목에 분류되는 진단적 표현의 사례로 주어진다. 이들은 다른 병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의어일 수도 있으나 그 항목의 하위 분류는 아니다.

2) 제외 용어(Exclusion terms)

분류 항목명으로 보아 병태들이 그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은 다른 곳으로 분류하도록 안내한다.

\* (예시)

포함 용어	제외 용어
K36 기타 총수염 포함 : 총수염 : 만성 재발성	K81 담낭염 제외 : 담석증이 있는(K80.-)

## 2

## 상병마스터 구축 및 관리

## 가. 정의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질병정보 및 질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내부직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및 관리한다.

## 나. 법적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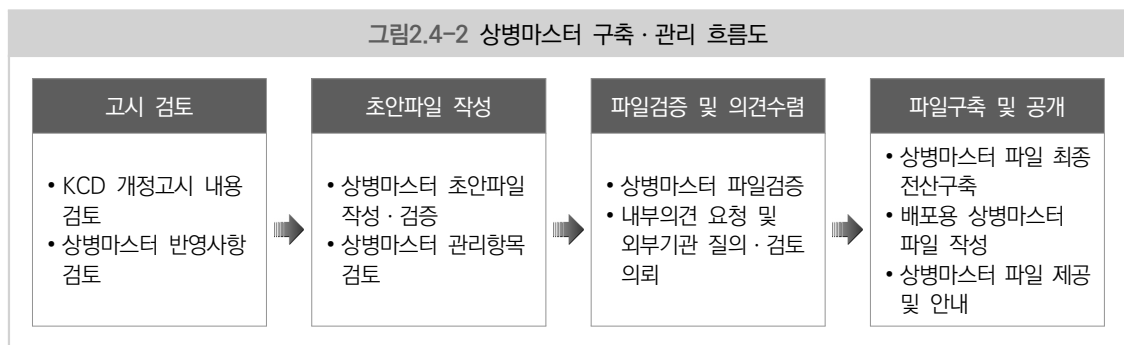
**제23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하는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4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에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며, 분류기호란 앞자리에서부터 기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통계청장 고시 제2015-309호, '15.9.24.)

-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

**다. 상병마스터 구축·관리 절차**



**1) 고시 검토**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고시 내용 및 상병마스터 반영사항 검토

- (검토자료) 개정고시 내용, 개정안 신규 대조표, KCD 제1~3권, 용어변경 내역표
- (검토방법) 통계청 신규 대조표 개정사항 및 KCD 개정판 본분류 비교 확인

**2) 초안 파일 작성**

가) 상병마스터 엑셀 초안 파일 작성 및 검증 (KCD 개정시)

- (파일작성)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신규 내용 작성
- (파일검증) 상병기호 및 명칭에 대해 통계청 KCD 개정판 본분류 파일과 심사평가원 상병마스터 엑셀 초안파일 비교 검증

## 나) 상병마스터 관리항목 검토

## (1) 부가정보

- (검토목적) 상병마스터에 부가정보 관련 항목을 표기하여 심사업무 등에 활용
- (항목별 구성내용)

항목	내용	구분자
불완전코드	KCD의 가장 마지막 단위가 아닌 코드	완전 1, 불완전 2
성별 구분	남자 또는 여자에게만 발생하는 상병 구분	남자 1, 여자 2
법정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1~5군, 지정군
상한 연령	청구 가능한 최대 나이(청구연령≤상한연령)	해당 연령 숫자
하한 연령	청구 가능한 최소 나이(청구연령≥하한연령)	해당 연령 숫자
양·한방 구분	양·한방 공통 사용 또는 한방에서만 사용 구분	양·한방공통, 한방
주상병 사용구분	주상병으로 사용 가능한 상병 구분	주상병 불가코드 N

- (검토내용) 통계청 고시에 따라 개정된 상병분류기호(신설, 삭제, 수정 등)를 중심으로 부가정보 검토
- (작성절차) 부가정보가 표기된 기존 상병기호 중심으로 엑셀 초안 파일 작성 및 수정 → 상병기호 및 명칭에 대해 통계청 KCD 개정판 본분류 파일과 비교 검증

## (2) 특정기호

- (검토목적) 상병마스터의 특정기호코드 관리를 통해 전산점검 및 심사금액 결정업무 등에 활용
- (항목별 구성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1~6] 특정기호
    - [별표1]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5]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관련 장기이식 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기타 특정기호

- (검토내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개정된 특정기호 검토
- (작성절차) 특정기호 개정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및 검토 → 상병마스터 특정기호 관리화면에 고시 개정사항 입력 → 고시 개정사항 최종 반영 및 검증

### 3) 파일 검증 및 의견수렴

#### 가) 상병마스터 파일 검증

- 검증 절차
  - 통계청 KCD 마스터 파일 다운로드 및 심사평가원 상병마스터 엑셀 초안 파일과 형식 동일 후 검증작업 실시
  - 검증작업 후 내·외부 의견 필요시 자문 및 결과 반영

#### 나) 내·외부 의견수렴

##### (1) 내부

삭제코드, 신설 및 세분화 코드, 고시 개정 전·후 상병기호 변경목록 등에 대해 심사위원 자문 의뢰 및 실무부서 의견 요청

##### (2) 외부

- (통계청)
  - 상병마스터 관련 확인 필요한 사항 질의
  - 회신내용은 상병마스터 엑셀 초안 파일에 반영
- (질병관리본부)
  - KCD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상병기호 변경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내용 파악 후 상병마스터에 반영

### 4) 파일 구축 및 공개

#### 가) 상병마스터 파일 최종 전산구축

- 기본사항 구축
  - 데이터 작성 레이아웃에 해당내용 작성 및 검증
- 일부 변경사항 반영
  - KCD 정오표 공개, 관련 고시 개정, 오탈자 등으로 상병마스터 내용의 부분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영



## 나)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작성

- HIRA+ 상병마스터 구축 후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엑셀 작업 실시

## 다) 상병마스터 파일 제공 및 안내

- (내부 공개) 각 실·지원에 결과 안내문서 시행
- (외부 공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 소프트웨어업체 통합 게시판, 관련협회 및 요양기관 안내

## ※ 상병마스터 파일 정보공개

- 국민포털(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분류:청구관련기준자료 > 검색:상병마스터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업무안내 > 정보방 > 청구관련코드조회 > 상병분류기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보건부문 > 표준분류 > 표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자료실 > 최신개정
- HIRA+(내부직원)  
- HIRA+ > 1차심사 > 심사지식뱅크 > 질병 > 질병분류기호(특정기호)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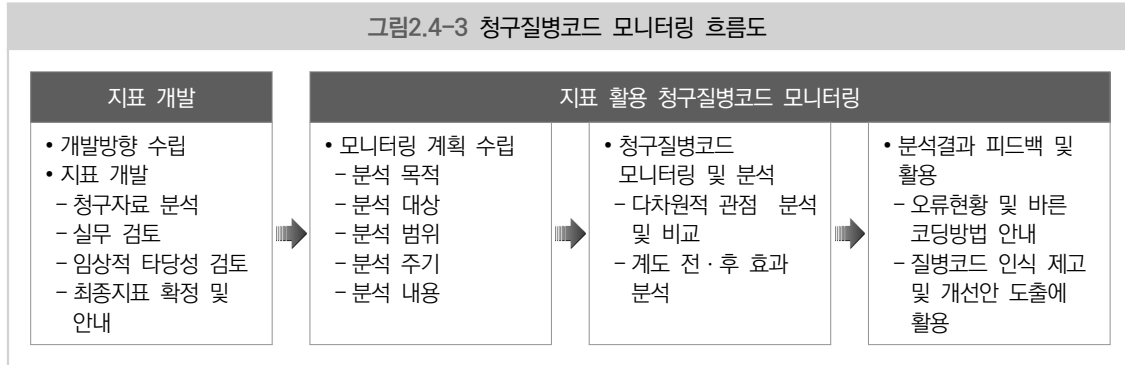
##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 가. 정의

질병코드는 진료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통계 및 정책자료 생성의 기초지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은 질병코딩 원칙에 대한 준수정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 지표를 활용한 질병코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피드백 과정으로 이를 통해 청구질병코드 기재 정확도 향상을 도모한다.

나. 지표 개발 및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절차



1)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개발

가) 지표 개발방향 수립

- 명확한 코딩지침 우선 개발
  - 코딩지침이 명확하여 대상범위와 산출방법의 이해도가 높은 지표
  - 추가 자료수집 없이 청구명세서 정보로 점검이 가능한 지표
  - 요양기관 등의 수용성이 높고, 오류개선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지표

나) 지표 개발과정

- 청구자료 분석
  - 다빈도 청구상병 중심으로 코드기재 오류현황 등 파악
  - 필요시 선행 연구결과 등 활용 개발 필요지표 유형 파악
- 실무 검토
  - KCD 제1~3권, 코딩지침서, 제외국 코딩지침 및 운영 지표 등 전반적 검토를 통해 예비지표 항목 도출
  - 심사기준과의 부합 등 고려 예비지표의 활용 가능성 검토
- 임상적 타당성 검토
  - 심사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지표의 임상적 타당성 등 검토
  - 추가적 분야별 의학적 판단 필요시 학회의견 요청
- 최종지표 확정 및 안내
  - 질병분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지표로 확정
  - ※ 질병분류심의위원회: 통계청 및 질병분류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체

- 개발 지표를 활용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적용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 ※ 각 실, 지원 및 관련협회에 지표 설명 및 모니터링 적용시점, 대상범위 등 안내

표2.4-2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현황

지표명	내용	적용연도
불완전코드 기재율	• KCD 가장 마지막 단위까지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은 코드 개수의 비율	2007년
중복코드 기재율	• 주상병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부상병의 중복 기재 비율 - 동일 중복코드를 중복 기재 또는 명확한 코드와 상세불명 코드를 함께 기재 등	
명세서 평균 질병코드개수	• 청구 명세서의 평균 질병코드 기재 개수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 코딩지침에 의거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질병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건의 비율 - 후유증, 분만의 결과, 가족력, 개인력 등	2016년/2018년 (신규 추가 지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 병용 불가한 코드를 함께 기재한 비율 - 합병증 동반 당뇨병과 미동반 당뇨병 병용 등 - '17년 개발한 감염질환 등 2천여개 코드를 기존 지표와 통합 및 재분류하여 16개 유형으로 정리	

\* 2018년 9월말 기준

## 2)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 가) 계획 수립

- (분석목적) 지표를 활용하여 요양기관별 코딩 오류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피드백 및 개선 안내를 통해 청구질병코드 기재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니터링을 실시
- (분석대상) 최종 개발 완료되어 사전 안내한 지표항목
- (분석범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입원·외래 행위별 명세서
- (분석주기) 지표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 또는 반기별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분석내용) 지표를 활용하여 다차원 관점의 코드기재 오류현황 검토 및 분석

### 나)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다차원 관점 분석 및 비교
  - 반기별 추이, 진료형태(입원·외래)별 현황, 요양기관 종별 현황, 계도효과 분석 등
- 계도 전·후 효과 분석
  - 오류율 상위 등 이전 계도시행 기관 대상으로 계도 전·후 효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마련

다) 분석결과 피드백 및 활용

○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 (방향) 요양기관 특성·계도 효과성·오류 유형 등 고려, 전략적·효과적 피드백 추진
- (내용) 코드기재 오류현황 분석결과 및 바른 코딩방법 안내를 통해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유도
- (계도 대상기관 선정) 지표결과 상위기관
  - \* 지표별 요양기관 분포에 따라 계도대상 선정
- (안내) • 요양기관 : 계도 대상 기관별 안내문 발송
  - 관련협회 : 지표결과 및 다발생 오류코드에 대한 바른 사용 안내
  - 기타 : 심사결과통보서, 청구명세서 접수증 등 활용

○ 교육 및 제도 개선 등 방향설정

- 올바른 코딩방법 제공을 통해 정확한 질병코드 사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문제영역 파악 및 심사기준·코딩지침 관련 개선안 도출 등에 활용

\* 참고)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

- (대상)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
  - \* 불완전·중복코드·질병코드개수 지표,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는 기 개발 및 운영 중
- (내용) 개별 요양기관의 실시간 지표별 코딩 오류현황 점검 및 자율적 개선환경 구현
- (시기) 2018년 12월 구축 완료 및 홍보 예정
- (검색) 심사평가원 '모니터링 지표결과' 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청구경향> 질병코드모니터링

## II

## 환자분류체계

작성자 : 분류체계개발부 주 - 노승미  
부 - 송지영

## 1

## 개요

## 가. 정의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진단, 시술,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서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

## 나. 환자분류의 일반원칙

- 환자분류에 사용되는 정보는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전산화된 자료 이용  
(routinely collected on hospital abstract systems)
- 관리 가능한 범위이내의 분류개수  
(a manageable number of groups)
- 임상적 동질성  
(similar from a clinical perspective or clinically meaningful)
- 자원소모의 동질성  
(similar pattern of resource intensity or economically homogeneous)

\* Fetter RB, Shin Y, Freeman JL, Averill RF. Case mix definition by diagnosis related groups. Medical Care. 1980;18(2):1-53.

## 다. 환자분류에 사용하는 정보

환자분류를 위해 진단 및 시술코드, 기능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진단코드 : 환자의 내원이유(주진단)와 합병증·동반상병(기타진단)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진단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현행 KCD 7차, 통계청 고시 '16.1.1.시행)
- 시술코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시술코드를 이용하여 분류
- 기능평가결과 : 재활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운동·감각기능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환자분류에 활용

2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①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 체계의 개발·관리
  -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 ②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의 절차·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환자분류체계의 종류

- 의(치)과 입원 :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KDRG)
- 의(치)과 외래 : Korean Outpatient Group(KOPG)
- 의과 재활 :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KRPG)
- 한의 입원 :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Korean Medicine(KDRG-KM)
- 한의 외래 : Korean Outpatient Group-Korean Medicine(KOPG-KM)
- 보건기관 : 588 분류체계

표2.4-3 환자분류체계 종류

(질병군 갯수, 2018.9.기준)

구분	명칭	최종버전	질병군 갯수	버전별 적용연도	
의과	입원	KDRG(일반용)	4.2	2,807개	V1.0 1986년, V2.0 1991년, V3.0 2003년, V3.5 2014년, V4.0 2016년, V4.1 2017년, V4.2 2018년
		KDRG(신포괄용)	1.2	1,978개	V1.0 2010년, V1.1 2014년, V1.2 2016년
		KRPG(재활)	1.1	243개	V1.0 2016년, V1.1 2017년
외래	외래	KOPG	2.2	569개	V1.0 2006년, V1.2 2014년, V2.0 2016년, V2.1 2017년, V2.2 2018년
		588분류(보건기관용)	1.1	591개	V1.0 2003년, V1.1 2016년

표2.4-3 환자분류체계 종류(계속)

(질병군 갯수, 2018.9.기준)

구분	명칭	최종버전	질병군 갯수	버전별 적용연도	
한의	입원	KDRG-KM	1.3	201개	V1.0 2015년, V1.1 2016년 V1.2 2017년, V1.3 2018년
	외래	KOPG-KM	2.2	256개	V1.0 2007년, V2.0 2014년 V2.1 2016.1월, V2.2 2016.9월 V2.3 2018년

## 가.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 1) 개발 및 개정 과정

#### 가) KDRG 버전 1.0(1986년)

- 미국 HCFA-DRG를 근간으로 개발

#### 나) KDRG 버전 2.0(1991년)

- 미국 Refined DRG에 근거하여 기존 KDRG에 중증도(기타진단 이용) 분류체계를 접목시켜 전면 개편

#### 다) KDRG 버전 3.0(2003년)

- 23개 전문의학회 참여와 우리나라 진료비 자료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전면 재개발

#### 라) KDRG 버전 3.1(2005년)

- KDRG 버전 3.0 발표 이후, 분류체계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신설 수가 및 100/100 본인부담 코드 반영

#### 마) KDRG 버전 3.2(2006년)

- 장기이식 수가코드 등 신설 수가코드 반영

#### 바) KDRG 버전 3.3(2009년)

-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신설, 일부 질병군별 수가 코드 세분화 등 반영

사) KDRG 버전 3.4(2011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내용 반영

아) KDRG 버전 3.5(2014년)

- KDRG 활용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패널 및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정

자) KDRG 버전 4.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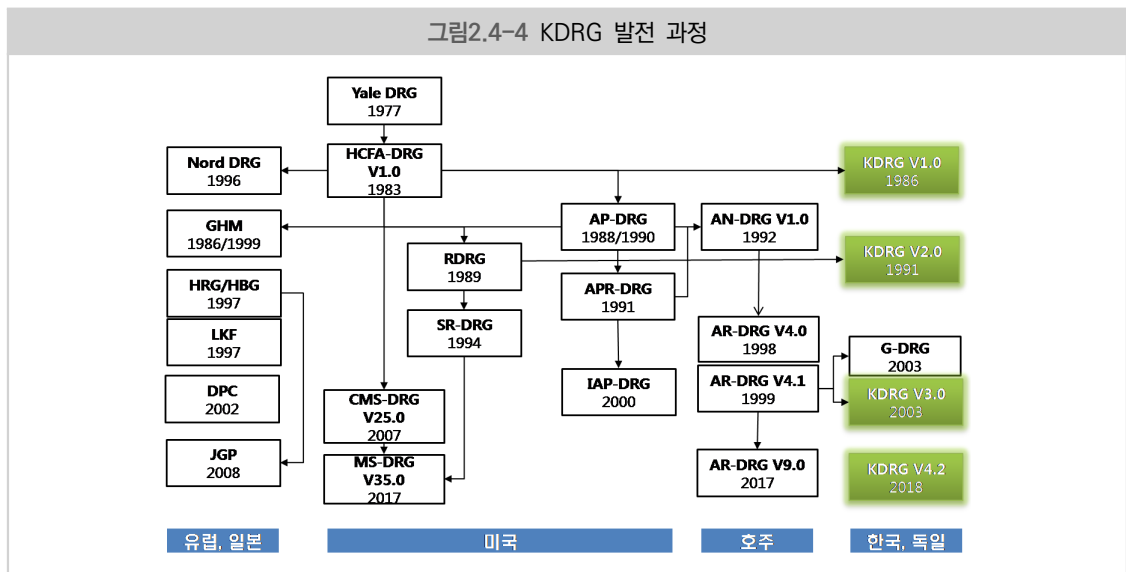
- 임상전문가(세부분과 포함 41개 학회)가 참여한 질병군 구성 및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의 분류기준 설정 등을 통해 KDRG 전면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내용 반영

차) KDRG 버전 4.1(2017년)

- 전면개정 이후, 청구자료 모니터링 및 검토, 대내·외 활용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09건의 항목을 발굴·검토, 63개 ADRG에 반영

카) KDRG 버전 4.2(2018년)

- 복수수술 및 복잡수술 질병군 신설, 내분비관련 진단이동, 새로운 분류변수 구성, 제외국 동향 반영 등(2018년)





## 2) KDRG 분류 과정

- 가) 1단계 : 입원환자를 주진단에 따라서 26개의 주진단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중 하나로 분류
- 나) 2단계 :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질병군, 내과계 시술 질병군, 내과계 질병군으로 구분
- 다) 3단계 : 외과계 질병군과 내과계 시술 질병군은 환자가 받은 수술에 따라 질병군을 결정, 내과계 질병군(조기 사망환자 제외)은 주진단명에 따라서 질병군을 결정, 이 단계까지의 분류를 ADRG(Adjacent DRG)라 한다.
- \* ADRG는 기본 DRG(base DRG)의 개념
- 라) 4단계 : 연령 구분과 기타 진단명을 이용한 중증도 분류를 추가하여 최종 DRG를 결정, 이 단계까지의 분류를 RDRG(Refined DRG)라 한다
- \* RDRG는 기타진단의 중증도가 반영된 최종 DRG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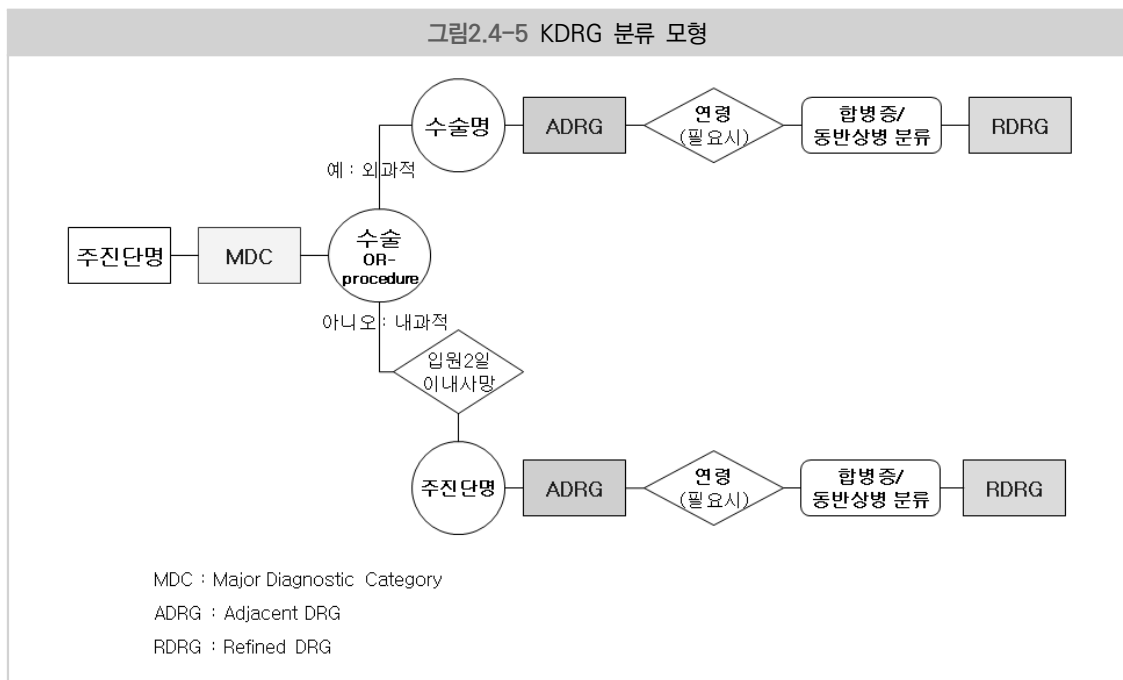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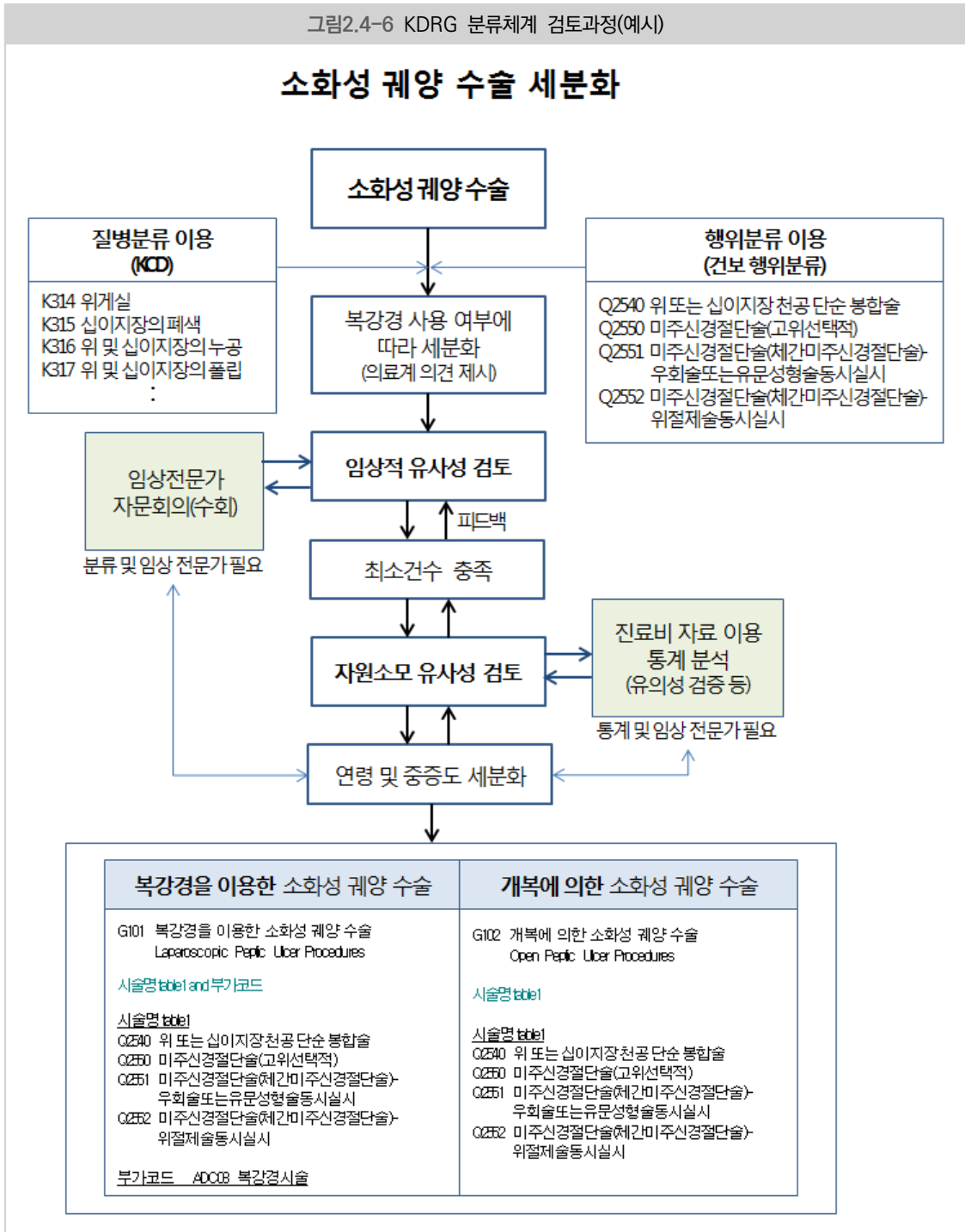


표2.4-4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구분	MDC 명칭
	PreMDC
01	신경계의 질환 및 장애
02	눈의 질환 및 장애
03	이비인후, 구강의 질환 및 장애
04	호흡기계의 질환 및 장애
05	순환기계의 질환 및 장애
06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07	간담도계 및 췌장의 질환 및 장애
08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
09	피부, 피하조직, 유방의 질환 및 장애
10	내분비, 영양, 대사성 질환 및 장애
11	신장 및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장애
12	남성 생식기계의 질환 및 장애
13	여성 생식기계의 질환 및 장애
14	임신, 출산, 산욕
15	신생아
16	혈구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장애
17	신생물 질환(혈액 및 고형암)
18	18-1.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HIV)
	18-2.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19	정신질환 및 장애
20	알콜/약물 남용 및 알콜/약물로 인한 기질적 정신 장애
21	21-1. 다발성 외상
	21-2. 손상, 중독, 약물의 독성 작용
22	화상
23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림2.4-6 KDRG 분류체계 검토과정(예시)

### 소화성 궤양 수술 세분화



### 3) KDRG 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6자리 사용

표2.4-5 KDRG 코드 구조

구분	RDRG				
	ADRG			연령 구분(1자리)	중증도 구분(1자리)
	MDC (1자리)	대분류 (2자리)	소분류 (1자리)		
코드	A~Z	01~99	0~9, A~Z (36진수법)	0~3	0~3
코드 의미	- 주진단 범주 - Error DRG : 알파벳 대신에 숫자로 '9' 표기	- 01~49 : 외과계 그룹 - 50~59 : 내과적 시술그룹 - 60~99 : 내과계 그룹	- 0 : 세분화 없는 경우 - 1~9, A~Z : 시술코드나 진단코드를 임상적 또는 진료비 측면이 유사하도록 세분화 분류 * 알파벳 O와 I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제외	- 0 : 연령구분 없는 경우 - 1~3 : 연령구분 있는 경우ADRG별 연령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	- 0 : 중증도 미동반 - 1~3 : 중증도 동반하는 경우 ADRG별 중증도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

- ※ 주 : 중증도 구분
- 0 :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증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1 : 중등도(moderate)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2 : 중증(severe)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3 : 심각한(catastrophic)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 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 1) 개발 및 개정 과정

가) Korean Ambulatory Patient Groups(KAPG) 개발(2003년)

- 미국 Ambulatory Patient Group(APG) 2.0을 근간으로 함

나) KOPG 버전 1.0(2006년)

- 2003년 개발된 KAPG의 질병군 통합기준 등을 보완, 전산분류프로그램 개발

## 다) KOPG 버전 1.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 신설 및 삭제 행위 항목을 반영하여 주요시술 그룹 2개와 내과계 그룹 1개 신설(2008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을 반영(2011년)

## 라) KOPG 버전 1.2(2014년)

- 외래에서 입원시술 발생 시 오류그룹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임상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시술 그룹으로 이동
- 가정간호 질병군 등 신설

## 마) KOPG 버전 2.0(2016년)

- 임상의학회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항암약물치료 질병군 신설 등 KOPG 전면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내용 반영

## 바) KOPG 버전 2.1(2017년)

- 치과 이학요법 질병군 신설 및 임상 난이도에 따른 시술 이동, 동일 시술이지만 의·치과 질병군의 배정이 상이한 질병군 개정

## 아) KOPG 버전 2.2(2018년)

- 임상의학회의 의견수렴 및 청구자료 모니터링을 토대로 당뇨병, 기타 고혈압성 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 치매 질병군 세분화

**2) KOPG 분류 과정**

가) 1단계 : 외래환자가 주요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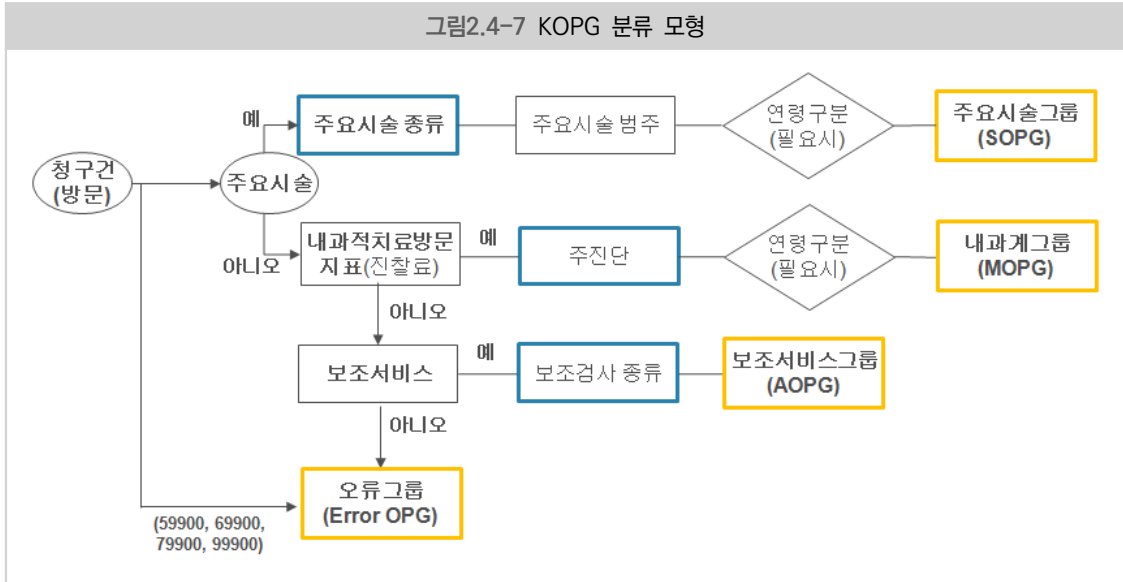
나) 2단계

- 주요시술을 받았다면 시술의 종류에 따라 주요시술 그룹으로 분류(SOPG, Significant Procedure Outpatient Group)
- 주요시술을 받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주진단에 따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MOPG, Medical Outpatient Group)

다) 3단계 : 주요시술 및 내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조서비스만 받은 경우 보조 검사나 처치의 종류에 따라 보조서비스 그룹으로 분류(AOPG, Ancillary Outpatient Group)

라) 4단계 : 보조서비스도 받지 않은 경우는 오류 그룹으로 분류(Error Outpatient Group)

마) 5단계 : 필요에 따라 연령구분 후 최종 KOPG 분류



### 3) KOPG 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 혼용하여 6자리 사용

표2.4-6 KOPG 코드 구조

구분	대분류(2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1자리)	연령 구분(1자리)
	그룹	범주			
코드	S/M/A 5~9	A~Z 9	00~99	0~9	0~3
코드 의미	- S : 주요시술 그룹 - M : 내과계 그룹 - A : 보조서비스 그룹 - 숫자 : 오류 그룹	- A~Z : 각 계열 (S, M, A)별 시술, 검사, 상병의 범주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 - 숫자 : 오류 그룹	- 시술, 검사, 상병의 종류에 따른 중분류 구분을 00~99로 표기	- 0 : 시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1~9 : 시술의 난이도,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구분을 표기	- 0 : 연령 구분 없는 경우 - 1~3 : 질병군별 연령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

## 다.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 1) 개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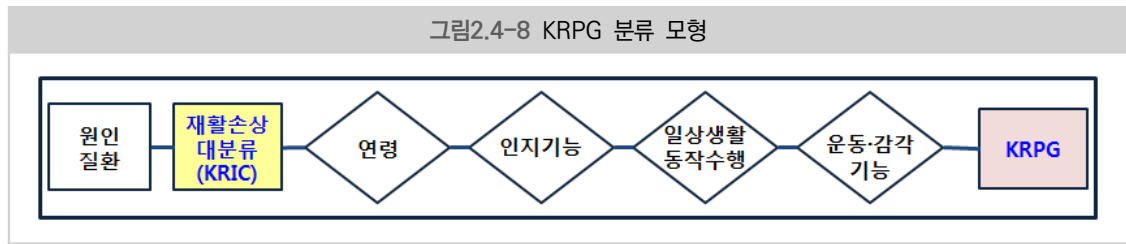
- 가) 급성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활치료 등은 진료의 특성과 이에 소모되는 자원소모가 급성기와는 다른 양상
- 나) KDRG는 급성기 입원환자 대상으로 재활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여 급성기 이후 재활환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 2) 개발 과정

- 가) 재활환자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 개발용 자료 구축(2014.1.~9.)
- 나) KRPG 분류 모형 개발(2014.9.~12.)
  - 임상전문가와 협업으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KRIC) 9개 개발 및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한 재활환자 분류 모형 개발
- 다) 분류 모형 보완(2015.1.~5.)
  - 통계적·임상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분류변수 및 순서 등을 반영하여 최종 204개 질병군 개발
- 라) KRPG 버전1.0 전산 분류프로그램(Groupier) 및 운영시스템 개발(2015.6.~11.)
- 마) 재활환자 분류변수 수집 양식 및 전산시스템 개발(2015.8.~11.)
- 바) KRPG 버전 1.0 개발완료(2015.12.)
  - \* KRPG 버전 1.0은 뇌 및 척수 손상(질환) 재활환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한 환자분류체계임
- 사) KRPG 버전 1.1 개발완료(2017.7.)
  - 재활의료기관에서 입원대상자 구분 및 수가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근골격계 등 15개의 재활손상대분류 정의서 추가
- 아) 환자평가표 전산개발 및 전산그룹퍼 개발완료(2017.9.)
  - 제 외국 평가체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총 43개 환자평가항목 선정
- 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2017.10.~)

### 3) KRPG 분류 과정

- 가) 1단계 : 원인질환에 따라 재활 손상 대분류(KRIC) 분류
- 나) 2단계 : 각 KRIC별로 의미 있는 분류변수(연령,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운동·감각 기능)에 따라 분류
- 다) 3단계: 최종 질병군 배정



#### 4) KRPG 분류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8자리로 표기

표2.4-7 KRPG 코드 구조

분류	한자분류구분 (2자리)	손상분류 (2자리)	연령구분 (1자리)	기능상태 구분		
				인지기능 (1자리)	일상생활 수행능력 (1자리)	운동 또는 감각 (1자리)
코드	KR	00-99	0-9	0-9	0-9	0-9
코드 의미	- 한국형 재활환자분류 체계를 나타내는 기호	- 재활손상대 분류(KRIC)를 숫자 2자리 (00-99)로 표기 - 00: 오류 그룹	- 0 : 연령구분이 없는 경우 - 연령구분이 있는 경우 '1'부터 순서대로 표기	- 0 : 인지기능 (MMSE) 구분이 없는 경우 - 인지기능 구분이 있는 경우 '1'부터 순서대로 표기	- 0 : 일상생활 동작수행능력 (MBI, SCIM) 구분이 없는 경우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구분이 있는 경우 '1'부터 순서대로 표기	- 뇌손상인 경우 운동 기능 (근력, 경직)을 표기 - 척수손상인 경우 AIS 조합을 표기 - 구분이 없는 경우 '0' - 구분이 있는 경우 '1'부터 차례로 표기

#### 라.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 1) 개발 및 개정 과정

가)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개발 기본계획 수립(2013.3.)

나) KDRG-KM 모형(안) 개발(2013.12.)

- 총 4회의 임상전문가 자문회의 및 2회의 임상전문가 패널회의를 통하여 상병그룹, 시술 그룹, 연령세분화

다) KDRG-KM 평가 연구용역(2013.12.~2014.10.)

- 중증도 분류 방안 및 분류 모형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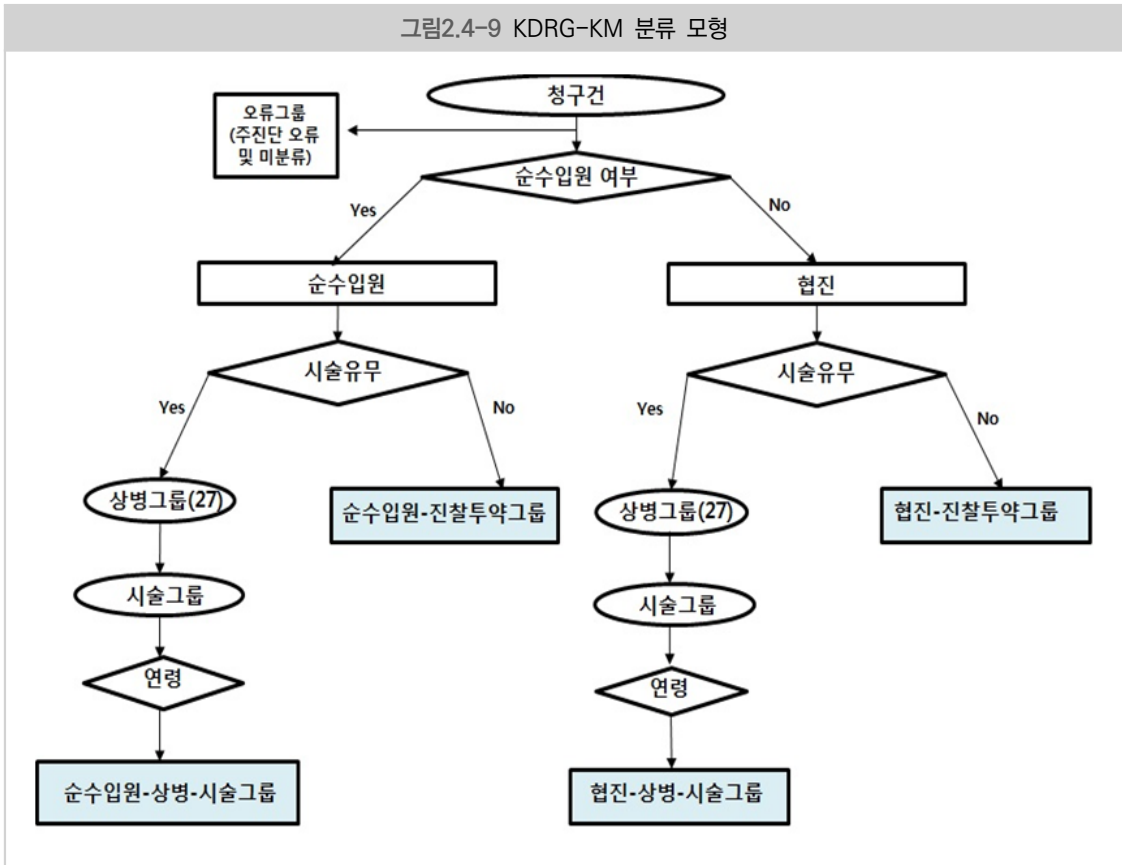


- 라) KDRG-KM 버전 1.0 개발모형 확정 및 전산 분류프로그램 개발(2014.12.)
- 마) KDRG-KM 버전 1.0 적용(2015년)
- 바) KDRG-KM 버전 1.1 (2016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내용 반영
- 사) KDRG-KM 버전 1.2 (2017년)
  - 연령그룹 통합 및 세분화를 반영한 부분개정
- 아) KDRG-KM 버전 1.3 (2018년)
  - 분류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진찰-투약그룹’의 순수입원/협진 분리
  - 모형적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일부 연령·시술그룹 통합 개정

## 2) KDRG-KM 분류 과정

- 가) 1단계 : 순수입원 여부에 따라 순수입원과 협진으로 분류
- 나) 2단계 :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찰투약그룹과 시술그룹으로 분류
- 다) 3단계 : 시술그룹 내에서 주진단에 따라 18개의 대분류로 분류 후 27개의 상병그룹 중 하나로 분류
- 라) 4단계 : 침술, 구술, 부항술 조합에 따라 단순그룹, 침술구술그룹, 침술부항술그룹, 침술구술부항술그룹, 기타그룹으로 분류
- 마) 5단계 : 필요에 따라 연령구분 후 최종 질병군 생성
- 바) 6단계 : 상병-진찰투약그룹, 상병-시술그룹으로 정의되지 않거나 분류되지 못한 경우는 오류그룹(주진단 오류 및 미분류)으로 분류

그림2.4-9 KDRG-KM 분류 모형



3) KDRG-KM 분류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6자리로 표기

표2.4-8 KDRG-KM 코드 구조

분류	대분류 (1자리)	중분류 (1자리)	구분 (1자리)	소분류 (1자리)	연령 구분 (1자리)	중증도 구분 (1자리)
코드	A-R, Z 9	0-6 9	I, C 9	0-4 9	0-3	0
코드 의미	- 대분류그룹표기 - Z : 진찰투약 그룹 - 9 : 오류그룹	- 상병그룹표기 : 세분화 예상하여 3단위씩 증가 (0,3,6) - 9 : 오류그룹	- I : 순수입원 - C : 협진 - 9 : 오류그룹	- 0 : 진찰투약 그룹 - 1-4 : 시술그룹 - 9 : 기타그룹	- 0 : 연령 구분 없는 경우 - 1-3 : 질병군별 연령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	- 중증도 미반영 ※ 추후반영예정

## 마.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KM)

### 1) 개발 및 개정 과정

가) KOPG-OM 버전 1.0(2007년)

- 한의 특성을 반영한 환자구성 보정 도구로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개발

나) KOPG-OM 버전 1.0 임시 환자분류체계(2010년~2013년)

- KOPG-OM 버전 1.0 분류로직을 유지하고, 자원소모 측면은 반영되지 않은 임시환자분류체계 유지
  - 의·치과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2010년), 6차(2011년) 전면 수용
- 진료비 청구자료가 축적되어 전면 개정 연구 용역 실시(2012.6.~2013.3.)

다) KOPG-KM 버전 2.0(2014년)

- 2007년 이후 변화된 한의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 진료비 청구자료의 분석 결과와 임상전문가 패널 및 한의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정
    - \* 2014년부터 한의학계의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KOPG-OM(Oriental Medicine)에서 KOPG-KM(Korean Medicine)으로 변경

라) KOPG-KM 버전 2.1(2016.1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내용 및 청구오류그룹 분류기준 부분개정

마) KOPG-KM 버전 2.2(2016.9월)

- 내원일수 및 산정지침 초과건 등에 대한 청구오류그룹 분류기준 수정 및 개정

바) KOPG-KM 버전 2.3(2018.1월)

- 일부질병군에 대한 65세 전후 연령세분화, 분류코드 첫 번째 자리 'O'(Oriental)에서 'K'(Korean)로 변경

### 2) KOPG-KM 분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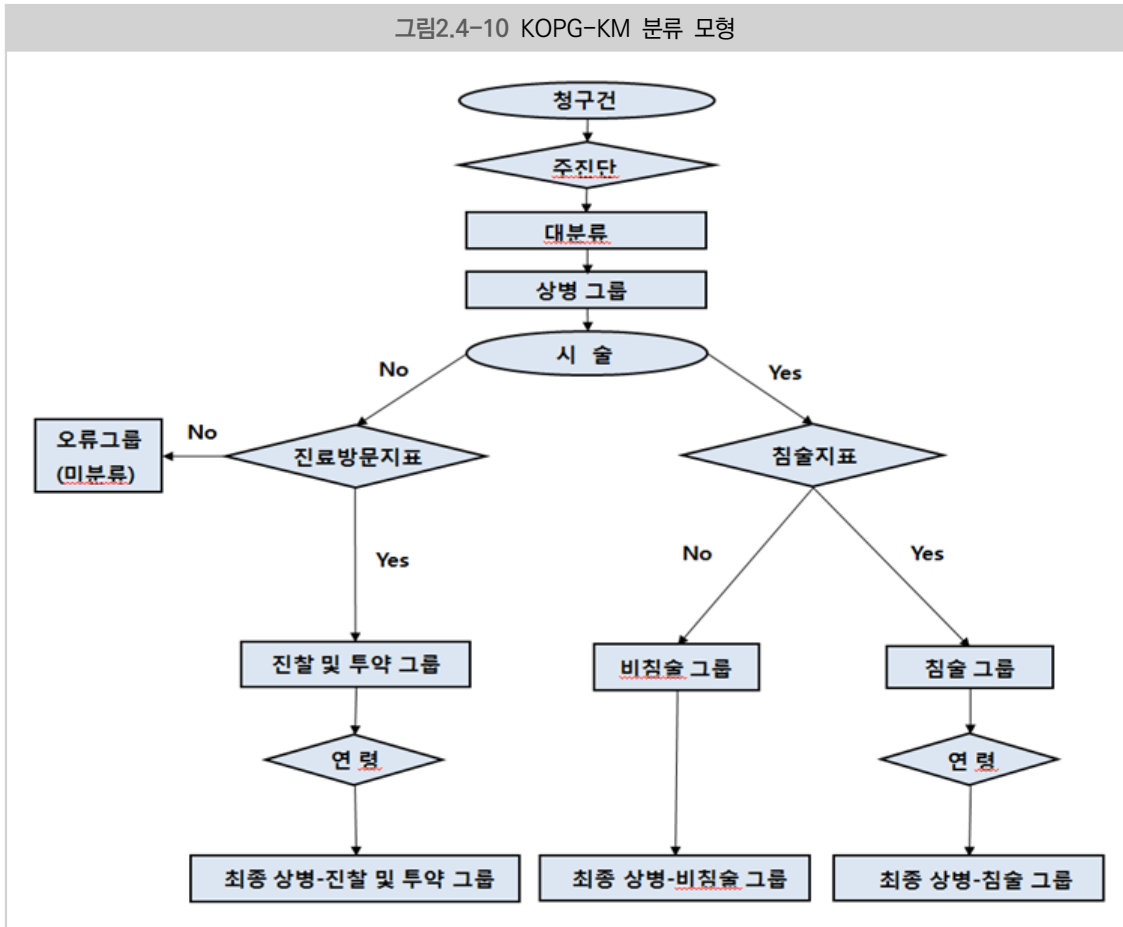
가) 1단계 : 청구건의 주진단에 의해 19개 대분류로 분류한 후 대분류 내에서 주진단의 임상적 유사성에 따라 25개 상병 그룹으로 분류

나) 2단계 : 시술 유·무를 확인하여 시술이 있는 경우는 시술 종류 및 방법에 따라 침술과 비침술그룹으로 분류, 시술이 없는 경우는 진료 방문지표 유·무에 따라 진찰 및 투약 그룹으로 분류

다) 3단계 : 필요에 따라 연령을 구분한 후 최종 KOPG-KM 분류

라) 4단계 : 진료방문지표 및 정의된 시술이 없어 분류되지 못한 경우는 오류그룹 분류

그림2.4-10 KOPG-KM 분류 모형



3) KOPG-KM 분류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6자리로 표기

표2.4-9 KOPG-KM 코드 구조

분류	대분류(2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1자리)	연령분류(1자리)
	구분	범주			
코드	O(영문) 9	A~S 9	00~99	0~8	0,1,2
코드 의미	- O : 한방 분류를 나타내는 기호 - 9 : 오류그룹 표기	- A~S : 상병 대분류 그룹 표기 - 9 : 오류그룹 표기	- 상병 세분화 가능성을 예상하여 5단위씩 증가하는 숫자 '00~99'로 표기	- 0 : 시술이 없는 진찰 및 투약 그룹 표기 - 1~8 : 시술그룹 표기	- 0 : 연령 구분 없는 경우 - 1,2 : 연령 구분 있는 경우

## 바. 588 분류체계

### 1) 개발 및 개정 과정

가) 588 분류체계 버전 1.0 개발(2003년)

- KCD 3단(주진단 첫 3자리) 분류인 557 분류를 임상적 측면에서 상이한 상병들은 세분화하여 588 분류체계 개발(2003년)
- 특수목적 코드(U코드) 신설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 반영, 590개로 증가(2008년)
- 재발성 악성 신생물 신설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반영, 591개로 증가(2011년)

나) 588 분류체계 버전 1.1 개정(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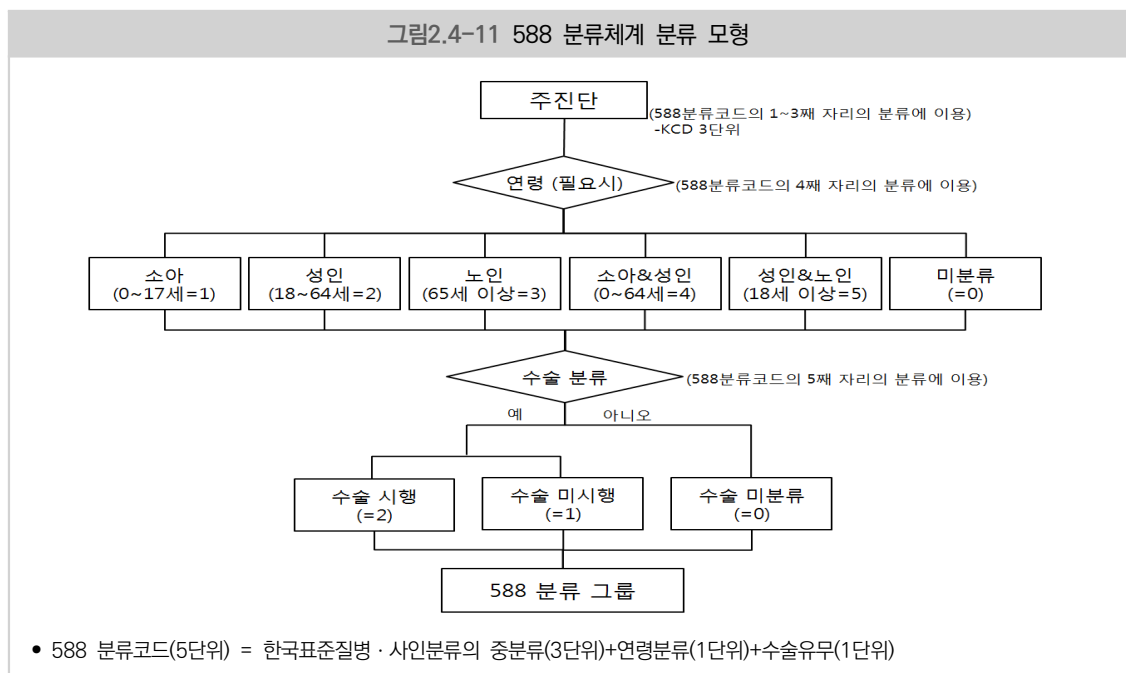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진단 삭제·세분화 및 중분류 변경에 따라 588 분류체계 질병군 명칭 등 전면 개편

### 2) 588 분류체계 분류 과정

가) 1단계 : 외래환자를 주진단에 따라 KCD 3단위 기준으로 질병군 분류

나) 2단계 :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상병이 다르므로 필요시 연령 구분

다) 3단계 : 수술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있어 필요시 수술 유무로 최종 분류



### 3) 588 분류체계 코드 구조

알파벳과 숫자 혼용하여 5자리 사용

표2.4-10 588 분류체계 코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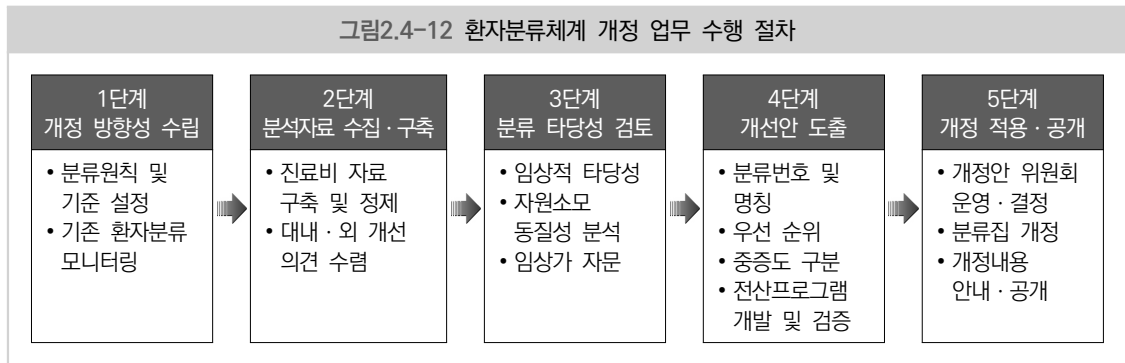
대분류 (상병 분류)	중분류 (연령 구분)		소분류 (수술 구분)	
	코드	의미	코드	의미
▶ 첫째 자리 : KCD 대분류 장에 해당하는 알파벳 ▶ 둘째~셋째 자리 : 상병 그룹 순으로 00~99 숫자 배정	0	미분류	0	미분류
	1	소아 (0-17세)	1	수술 무
	2	성인 (18-64세)	2	수술 유
	3	노인 (65세 이상)		
	4	소아&성인 (0-64세)		
	5	성인&노인 (18세 이상)		

## 4

### 환자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 가. 환자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그림2.4-12 환자분류체계 개정 업무 수행 절차



#### 나. 개정 주기

- 가) Major 개정 : 행위·진단 목록의 전면 개정, 분류모형의 개선 등 분류의 기본 원리가 변경된 경우 Major 개정 추진
- 나) Minor 개정 : 통상 2년 주기 운영
- 다) 수시 반영 : 행위·진단 코드의 신설·변경 등 개정 사항은 수시 반영

## 5

## 환자분류체계 활용

## 가. 병원간 비교(Benchmarking)

진료비용, 재원일수, 사망률, 기타 질 지표 등을 병원 간 비교 시 환자구성 보정 도구로 사용

☞ 의료기관간 진료비나 질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case-mix)이 동일해야 함  
하지만, 환자구성이 의료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함 이러한 보정 도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환자분류체계임

## 나. 진료비 지불(Payment or Financing)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 및 신포괄지불)에서 지불단위로 사용

## 다. 의료기관 기능 평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인정 기준에 사용

## 라. 기타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표2.4-11 환자분류체계 활용 분야

업무	활용분야	환자분류체계			
		KDRG (입원)	KOPG (외래)	KOPG-KM (한의외래)	KRPG (재활)
진료비 지불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신포괄지불제)	○			
심사	심사대상 선정	○	○	○	
	종합정보서비스	○	○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	○	
평가	평가지표 산출	○	○		
약제관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		
의료기관평가	상급종합·전문병원 지정	○			
정부정책지원	재활의료기관 지정				○

## Ⅲ

## 분류체계 전산서비스

## 1

## 개요

분류체계 전산서비스는 분류체계 업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로, 크게 환자분류체계와 질병분류체계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 환자분류체계는 환자분류번호 조회 및 분류집, 프로그램(Group) 다운로드, 재활환자 평가표 접수 및 조회, 질병분류체계는 청구 관련 코드조회 및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요양기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기관 전용 포털사이트

## 2

## 분류체계 전산서비스 내용

## 가. 질병분류체계

- 상병분류코드 조회 및 요양기관별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

항목	내용
청구관련 코드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이 청구명세서 작성 등을 위해 질병분류 관련 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상병분류기호, 특정기호, 중복코드</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업무안내 ⇒ 정보방 ⇒ 청구관련코드조회 ⇒ 상병분류기호</li> </ul> </li> </ul>
질병코드 웹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의 산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불안전코드기재율, 중복코드기재율, 명세서별 평균 질병코드 개수, 3대질병 구성지표, 다빈도질병 프로파일 지표 등</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웹 조회</li> </ul> </li> </ul>



## 나. 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체계 영역\*별로 해당 업무 소개, 자료실, 환자분류조회, 환자분류체계 번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 환자분류체계 영역 : 입원(일반, 포괄, 신포괄), 재활, 외래, 한의입원, 한의외래

항목	내용
안내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념, 개발경과, 분류흐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체계 안내</li> </ul>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분류체계 개정내용, 분류집, 최신 환자분류체계 프로그램 등 환자분류체계 관련 공지사항이나 자료를 사용자가 조회 및 다운로드하는 서비스</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외래/한의입원/한의외래 환자분류체계 중 선택 ⇒ 자료실</li> </ul>
환자분류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화면에 환자의 진단, 시술 등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영역의 환자분류번호 생성 결과를 즉시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외래/한의입원/한의외래 환자분류체계 중 선택 ⇒ 환자분류 조회</li> </ul>
환자분류체계 번호 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이 입력한 심사년월, 심사차수, 접수번호 등 조건에 따라 해당 청구명세서에 생성된 환자분류번호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최근 3년분만 가능)</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외래/한의입원/한의외래 환자분류체계 번호다운로드중 선택</li> </ul>

- 재활환자분류를 위한 환자평가표 접수 및 조회 서비스 제공

항목	내용
재활환자평가표 접수등록 및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재활환자평가표에 대하여 접수목록 조회, 내용 확인 및 파일저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접수등록 및 조회</li> </ul>
재활환자평가표 작성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이 재활환자평가표를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엑셀로 일괄등록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li> <li>☞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작성 및 접수</li> </ul>

다. 웹서비스 화면 예시

그림2.4-13 질병분류체계 관련 화면

서비스	화면
상병분류 기호조회	<p>▶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업무안내 ⇒ 정보방 ⇒ 청구관련코드조회 ⇒ 상병분류기호</p>
불안전코드 기재율조회	<p>▶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모니터링 ⇒ 불안전코드기재율</p>

그림.2.4-14 환자분류체계 관련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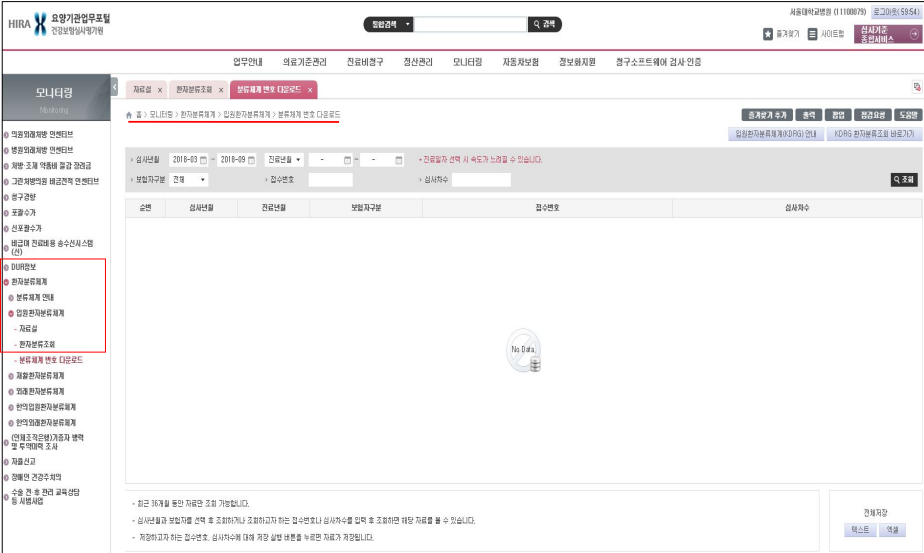
서비스	화면
<p>입원환자 분류조회</p>	<p>▶ 영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 환자분류조회</p> 
<p>입원환자 분류체계 번호 다운로드</p>	<p>▶ 영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 분류체계 번호 다운로드</p> 

그림2.4-15 재활환자분류체계 환자평가표 화면

서비스	화면
<p>▶ <b>접수등록 및 조회</b></p> <p>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 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접수등록 및 조회</p> <p>                     ○ 장애인                      ○ 장애우 복지관련 신청                      ○ 재활환자평가표접수 신청                      ○ 요양병원환자평가표접수 신청                      ○ 접수등록 및 조회                      ○ 계약종료                      ○ 의료기관관리                      ○ 요양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요양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p>	<p>▶ <b>접수등록 및 조회</b></p> <p>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 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접수등록 및 조회</p>
<p>▶ <b>작성 및 제출</b></p> <p>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 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작성 및 제출</p> <p>                     ○ 장애인                      ○ 장애우 복지관련 신청                      ○ 재활환자평가표접수 신청                      ○ 요양병원환자평가표접수 신청                      ○ 접수등록 및 조회                      ○ 계약종료                      ○ 의료기관관리                      ○ 요양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요양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 의료기관간접산과제제출                 </p>	<p>▶ <b>작성 및 제출</b></p> <p>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진료비청구 ⇒ 환자평가표 접수 ⇒ 재활환자평가표 제출 ⇒ 작성 및 제출</p>



# 제5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요
- II.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성과
- III. 2017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제5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I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요

작성자 : 급여혁신부 주 - 조자숙  
부 - 서승희

### 1

#### 개념

세계 모든 나라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이고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를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보편적 의료보장이라 하고 있다.<sup>35</sup>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당연히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므로 대상인구의 포괄성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서비스 범위를 충분히 넓혀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sup>36</sup>

35 정책동향 2016년 01-02월호 인용(심사평가연구소, 이윤택 소장)

36 보건복지포럼 인용(2018.1.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의의 및 필요성<sup>37</sup>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7년 제도도입 이후 국민 건강수준과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는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sup>38</sup>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16년 62.6%) 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흡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주요 OECD 국가들(15년 평균 80%)에 비해 다소 낮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14년 기준)이며 멕시코 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은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8.9.) 인용

38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체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



## 3

## 연도별 보장성 강화 내용

연도	보장성 강화 내용	
2004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액·중증질환환자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li> </ul>
2005년	[제1차] '05~'0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최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 심장 및 뇌혈관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경감(10~20%로 인하)</li> <li>MRI, PET, 내시경·수술재료 등 검사·치료에 건강보험 적용</li> <li>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li> </ul>
2009년	[제2차] '09~'1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부담상한제 대폭 개선(소득수준별 한도액 차등, 1년단위 운영)</li> <li>중증질환(암·심장·중증화상 등) 본인부담 추가 경감(5%~10%로 인하)</li> <li>치과(치석제거, 노인틀니, 치아홈메우기)·한방분야 보험 확대</li> </ul>
2013년	[국정과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약159만명)</li> </ul> </li> <li>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해소대책 마련</li> <li>비용효과성은 떨어지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의료의 '선별급여' 적용</li> </ul>
2015년	[제3차]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 국정과제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32개 보장 프로그램 실행 중</li> </ul>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 국정과제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li> </ul> </li> <li>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li> </ul> </li> <li>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li> </ul> </li> </ul>

## II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성과<sup>39</sup>

## 1

## 2008년 이전 보장성 강화 정책

## 가. 2000 ~ 2004년 보장성 확대 시행

2000~2003년은 건강보험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로 보험재정 안정화가 최대의 목표였으며, 2004년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가 해소되면서부터 보장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2004~2008)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동 계획의 4대 추진과제 중 하나가 '재정건실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1단계(2004~2005)로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재정균형 회복과정에서 재정중립하의 보장성 강화, 2단계(2006~2007)로 필수진료의 범위 정립과 단계적 급여확대, 3단계(2008)로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건강보험급여의 단계적 확대로 보험급여율(보험급여액/총진료비) 수준을 2003년 52%에서 2008년 70%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4년에 암·희귀난치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하였으며, 뇌종양 감마나이프 수술 보험급여, 본인부담 상한제(6개월, 본인부담 300만원 초과 시 상환)를 실시하였다.

## 나. 2005 ~ 2008년 1차 중기보장성 계획

2005년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구체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평균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현황을 진단하고 4~5년 단위로 보장성 강화를 집중해야 할 분야를 발굴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단계(2005~2008)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08년 62.6%로 다소 개선되었고, 주요 정책대상인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2005년 66.1%에서 2008년 69.8%로 정책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39 국민건강보험 40년사(부분사) 보험급여 인용

2005~2008년 사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역사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의 보장성 확대정책이었다. 이 기간에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였고, 본인부담 경감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고액 의료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성과였다.

## 2

## 2009~2013년 2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 가. 2009 ~ 2013년 2차 중기보장성 계획

1차 계획에 이어 2009년 6월에 2차(2009~201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편이며,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고,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약제 등 비급여 부담이 높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장성 목표를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보장 강화’로 정하고, 계획이 종료되는 2013년 목표보장률을 암환자 80%, 5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환자 85%로 설정하였다.

2009~2013년 중기보장성 계획의 특징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치과, 한방, 초음파검사 등 국민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다만 한계점은 신의료기술 등 증가, 비급여 진료 확대 등으로 전체 보장률이 2013년 62.0%로 2008년 62.6% 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 나. 4대 중증질환 보장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2013년 들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 해 2월 핵심과제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수술, 검사, 의약품 등)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2013년 89.8%인 건강보험의 영역을 99.3%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비급여 대상이었던 고가의 품목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여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하여 재난적 의료비에서 환자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 등은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의료는 선별급여로 적용하며, 4대 중증질환은 2013~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그 외의 질환은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3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80.3%로 전년('15년 79.9%) 대비 0.4%p 증가하였고, 이후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평균 78%(2013~2016년)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2014~2018년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

3차 보장성계획은 재정소요가 큰 4대 중증질환(2013.10.), 3대 비급여(2014.3.) 등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우선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중기보장성 계획을 2015년 2월에 발표하였다. 동 계획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강화'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정책으로 나타난 질환간 보장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3차 계획의 목표를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계획의 특징은 건강 위해성,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선별급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또한 의료비 부담 측면 이외의 의료 공급 부족에 따른 접근성 문제, 건강보험 이외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중증외상 의료체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결핵관리 정책 등 종합적으로 접근한 것은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2018년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 및 공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급여 우선 순위 결정기준의 의의, 적용 범위,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근본적 원칙과 6개의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한 것이다. 이는 그간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보장성에 대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 참고 |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sup>40</sup>

### 1. 급여 우선순위 결정 기준의 의의

-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제도의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며 보장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또한,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원칙과 기준에 의거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 2. 적용 범위 및 대상

-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 각 의사결정주체는 이 기준을 활용
  -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과 같은 종합계획 수립
  -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의 신설·조정 등

### 3.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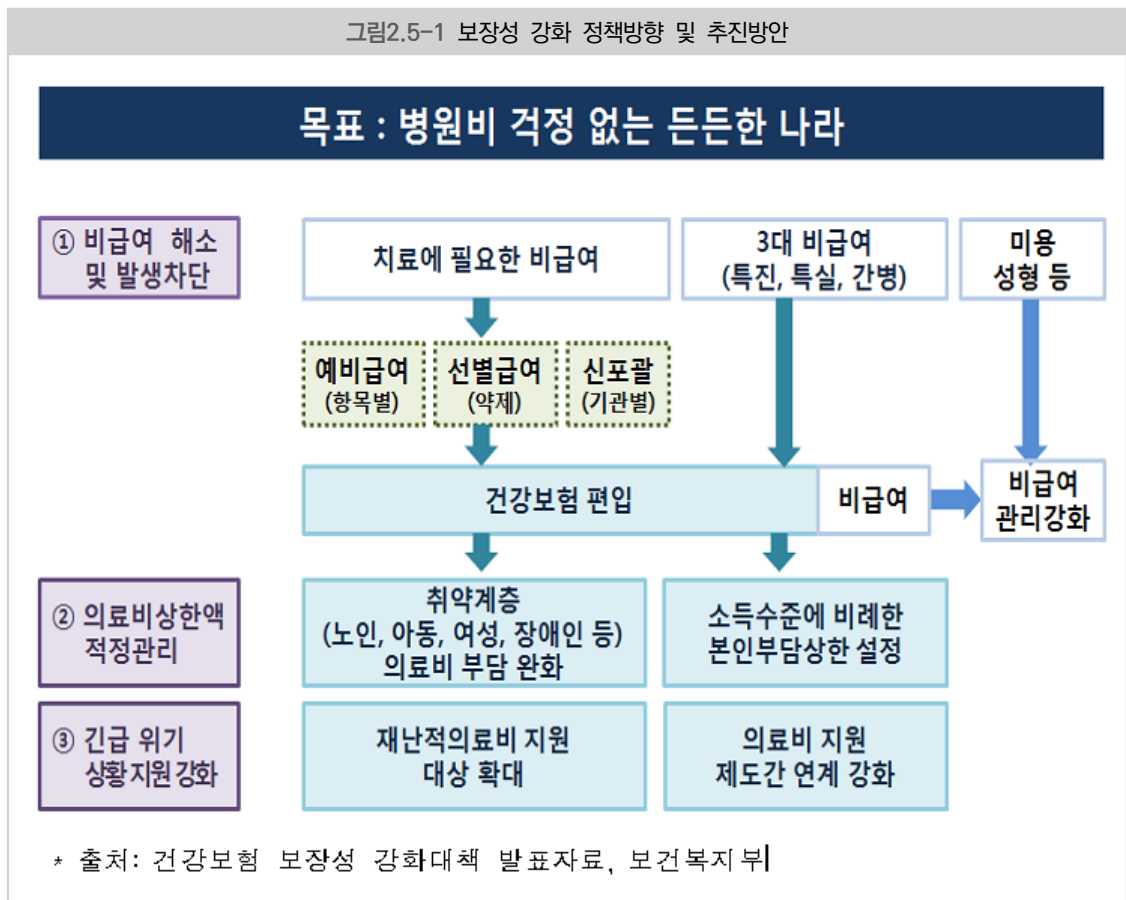
- 1) 근본원칙: 보건의료의 기본이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
    - ① 인간존엄의 원칙 ② 형평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 2) 결정 기준의 구분
    - 급여우선순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를 2개의 그룹으로 제시
- Category I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결정 기준
    - (1) 의료의 중대성(중증도, 긴급성)
    - (2) 치료 효과성(건강수준 향상 정도)
    - (3) 비용 효과성(비용대비 효과, 경제성)
    - (4)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정도, 진료비 규모)
  - Category II :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
    - (1) 사회적 연대성
    - (2) 국민적 수용성

40 2015년 2월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III 2017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sup>41</sup>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7.8.9.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향상(국정과제 44)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은 발표 이후 언론 등에서 ‘문케어’ 또는 ‘문재인 케어’라는 별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4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8.9.) 인용

2

세부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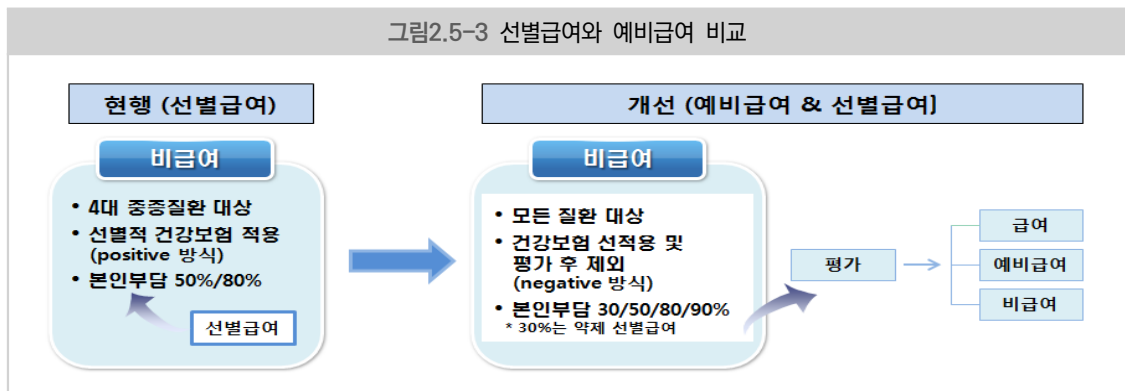
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치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의 필수급여화를 우선으로 하며 필수급여가 어려운 경우 예비급여를 통한 급여적용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단계별 추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존치된다.

그림2.5-2 비급여 유형(기준, 등재 등)

① <b>기준비급여</b>	급여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검사횟수·대상질환이 제한적인 경우 (예시: MRI, 초음파)	치료에 필요 의학적 비급여
② <b>등재비급여</b>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 (예시: 고가 항암제, 다빈치 로봇수술)	
③ <b>치료 무관 비급여</b>	개인의 선호에 따른 의료(미용, 편의 등)	
④ <b>3대 비급여</b>	특진(선택진료), 특실(상급병실), 간병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 추진,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은 항목은 본인부담을 높게 급여적용 (50%~90%)하고 3~5년마다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예비급여를 유지하거나 급여 전환하는 등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는 기존 선별급여와 법적근거 및 기능은 동일하나, 선별급여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 선별급여가 4대 중증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부 병원에 국한되어 활용되었다면, 예비급여는 본인부담 유형을 다양화하고 적용대상 질환을 제한 없이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등재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단계적(~'22년)으로 급여화 추진, 주기적 재평가(3~5년마다)를 통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8년도는 '14~'18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국민참여위원회 실시결과('17.11.19.) ①중증질환 ②의료취약계층 ③만성질환
- ④척추·통증치료 ⑤안·이비인후과질환 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는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비급여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제한적 급여기준(적응증·횟수·갯수 등)을 대상으로 '17년부터 검토하여 단계적(~'22년) 급여 기준 제한을 해소할 예정이다.

MRI·초음파의 경우 높은 비용효과성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재정부담에 따른 기준 제한(적응증, 횟수 등)으로 비급여 규모가 크고,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21년)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 순위를 고려하되, 약제 급여 특성(선별적 등재, 약가 협상필요 등)에 맞는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대 비급여의 해소를 위해 상급병실(2·3인실)을 급여화('18.7.)하고, 선택진료 폐지('18.1.)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신의료기술 제도개선 및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화 추진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증가,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 의료 환경변화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 심사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 나.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 중으로,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17.10.) 및 노인 틀니(50→30%, '17.11.), 노인치과 임플란트(50→30%, '18.7.), 노인외래정액진료비('18.1.) 본인부담이 경감되었으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0~20%→5% 인하, '17.10.) 및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완화 등 아동 의료비도 경감('17.10.)되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건강보험 적용('17.10.)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18.7.)되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여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18.1.)하였다.



####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한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 하여('18.7), 소득 기준 하위 50% 이하 대상은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주요 과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20~60% → 10%)</li> </ul>	'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10~20% →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30~60% →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li> </ul>	'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li> </ul>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시범사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li> </ul>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큐베이터, 고막 절제술 등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상급병실 보험 적용</li> </ul>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li> </ul>	'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성대사질환검사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적용</li> </ul>	

# 제3부

## 심사 및 평가

제1장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제2장 수탁심사

제3장 현지조사

제4장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5장 고객서비스 제공







# 제 1 장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I. 심사의 개요
- II. 심사 방법
- III. 사전 예방 사업
- IV. 권리구제
- V.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제 1 장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I

### 심사의 개요

작성자 : 심사운영부 주 - 박혜정  
부 - 이은주

#### 1

#### 정의 및 필요성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진료량의 증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정 의료제공과 진료비용 청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심사가 필요하다.

####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란?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이 방식을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림3.1-1 보험급여 원칙과 심사의 균형성



2

법적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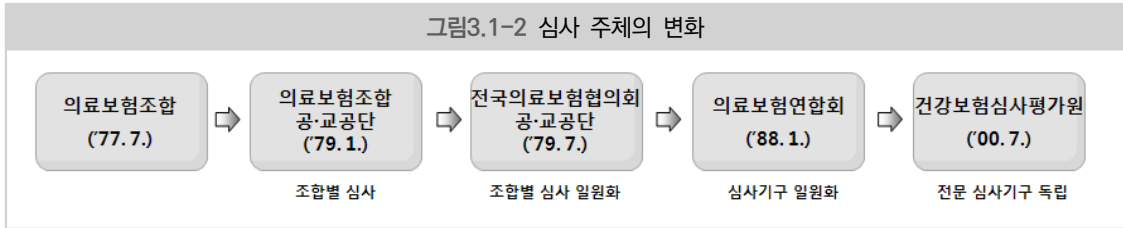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 받은 업무



3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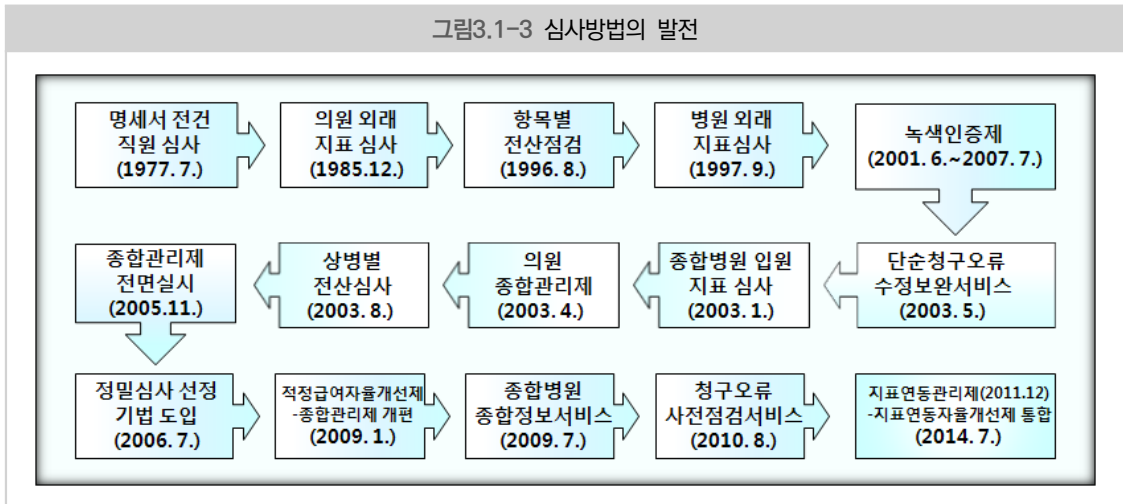
가. 심사 주체



그간 보험자별로 이루어지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구가 1988년 1월에 일원화되었으며, 2000년 7월 전문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설립되어 심사·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나. 심사방법의 발전

심사의 공정성·전문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방법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다.



## 다. 심사 관련 제도 변화

- '96. 7. 진료비 전산매체(디스켓) 청구 전국 확대
- '97. 2. DRG(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
- '99. 7. 진료비 EDI 청구 전국 확대
- '00. 7. 의약분업 실시
- '01. 1. 상대가치점수제(RBRVS) 도입
- '03. 4. 의약단체 대항 청구제 도입
- '05. 1. 약국 청구명세서 처방전별 작성 실시
- '05. 4. 공공기관 의뢰건 진료비 심사
- '05. 7. 노숙자 등 국가부담 무료진료비 심사
- '05. 10.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 심사
- '07. 7. 의원급 외래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 실시
- '08. 1. 요양병원형 수가제도 도입, 신(新)상대가치제 실시
- '08. 10. 보훈환자 5개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 수탁
- '09. 4. 신(新)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
- '10. 12.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실시
- '11. 7.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실시
- '12. 1. 병원급 이상 외래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 실시
- '12. 7.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당연 적용(병원, 의원)
- '13. 7.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당연 적용 확대(종합병원)
- '13. 7. 청구 실명제(청구명세서 의사, 약사 면허번호 등 기재) 도입
- '13. 7.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 '15. 7. 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 진료비 심사

## 4

## 심사의 원칙 및 기준

---

### 가. 심사의 원칙

- 1)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판단을 거쳐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한다.

- 2)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3)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및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관련 각종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의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나. 심사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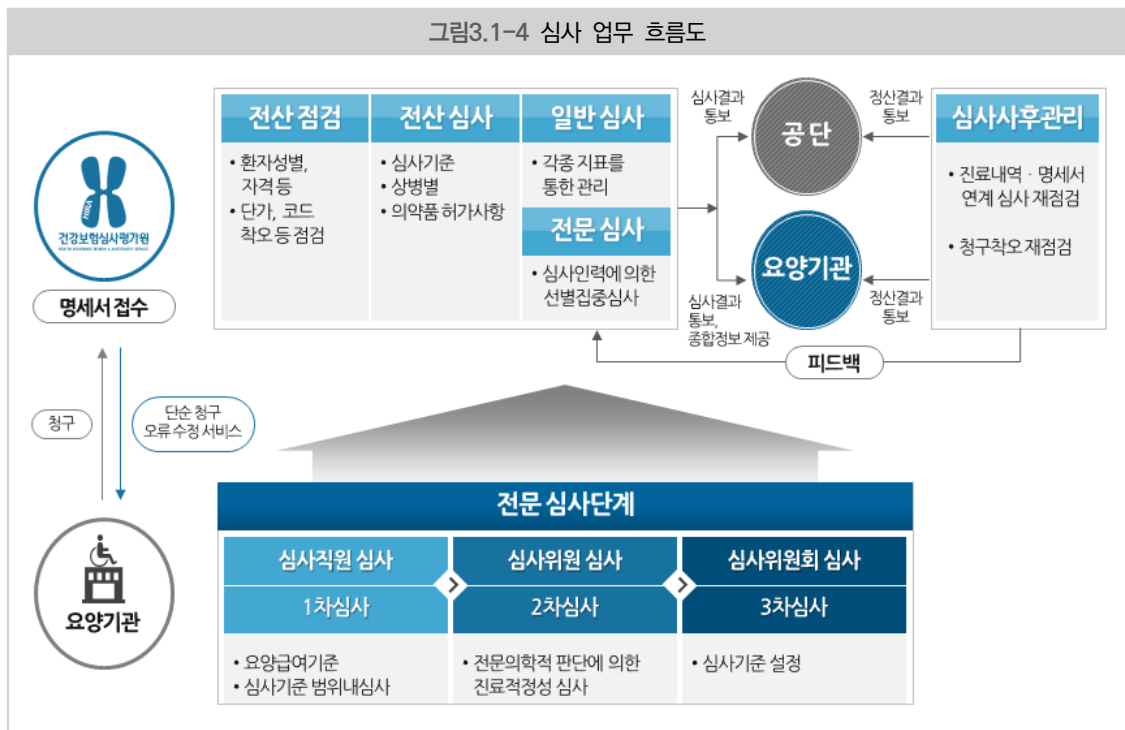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한약제재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각종 행정지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5 심사처리절차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명세서가 ‘접수’되면, 필수기재사항이나 단가, 코드 등의 착오가 있는지 ‘전산점검’을 하고, 인공지능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심사’를 한다. 이 중 전문의학적 판단이나 심사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직원이 집중 검토하는 ‘전문심사’ 단계를 거쳐 심사 결정 된다.

‘심사결과’는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은 심사결정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진료비 지급 후 심사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누적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하여 ‘심사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II

## 심사 방법

작성자 : 청구관리부 주 - 이상호  
부 - 장문주

## 1

## 청구명세서 접수

## 가. 청구명세서 접수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 작성하여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여 방문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구분하여,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매체(디스켓 등), 서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며,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본·지원으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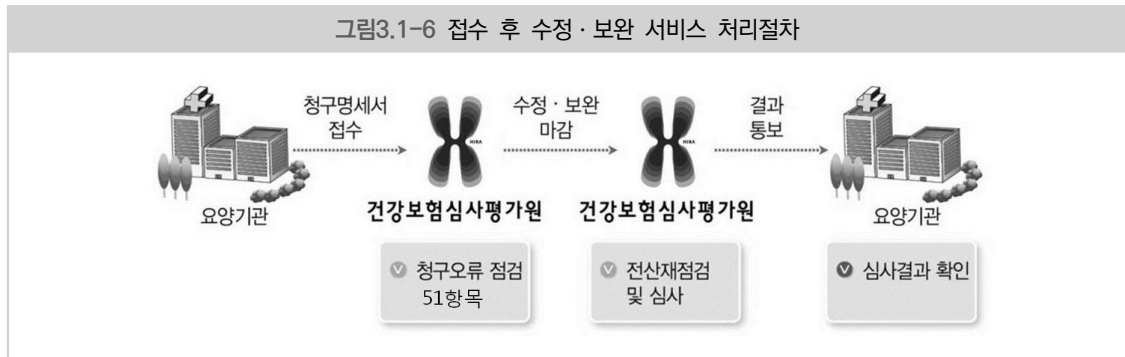
그림3.1-5 진료비심사 지역별 관장

		지원										
<b>구분</b>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b>지역</b>	전국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경기남부	울산 경남	경기북부 강원	전북	인천	
<b>업무 관장</b>	상급종합병원 치대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에 설치) 한의대부속 한방병원 (상급종합에 설치)	<p>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상급종합에 설치된 경우 제외), 치과병원, 한의대부속한방병원(상급종합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p>										

### 나. 정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유도를 위한 접수 후 수정·보완 서비스

‘접수 후 수정·보완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청구명세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재 착오 등 청구오류건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양기관이 스스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접수 후 2일 이내 수정·보완)이다. 이 서비스는 2003년부터 운영 중이며, 청구오류 수정·보완 항목은 총 51항목이다.

※ 관련 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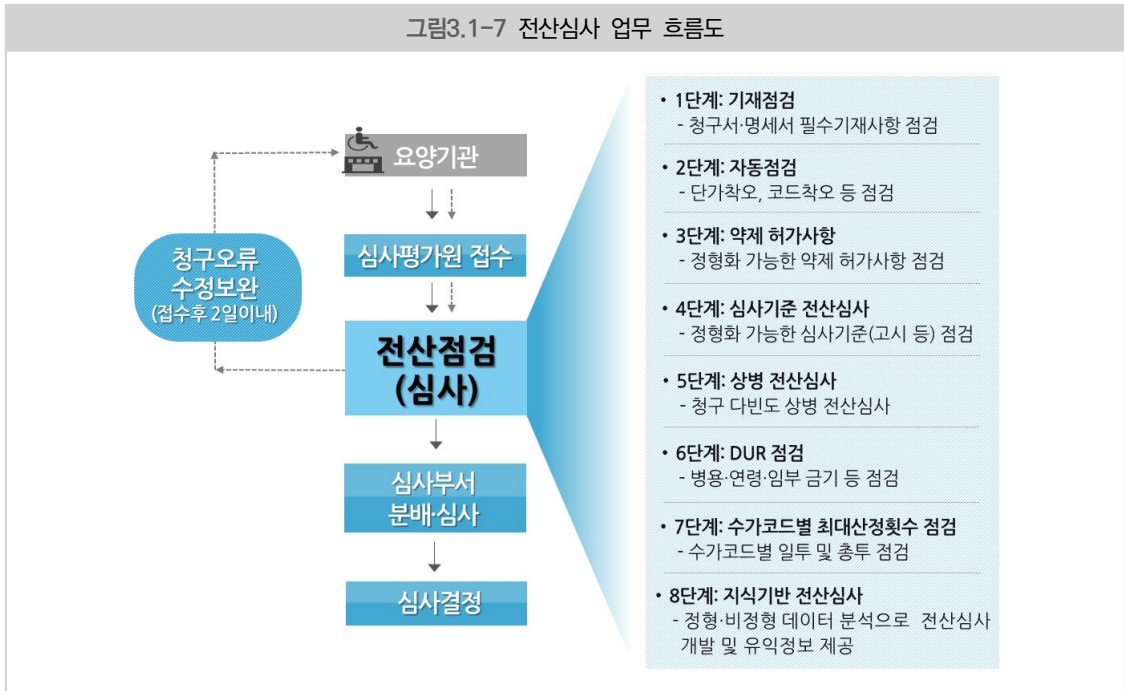
## 2 전산심사

작성자 : 심사개발1부 주 - 황용상  
 부 - 신인숙  
 심사개발2부 주 - 김철수  
 부 - 김호섭

### 가. 전산심사 업무 흐름도

접수된 모든 청구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재점검, 자동점검, 약제 전산심사, 심사 기준 전산심사, 상병전산심사, DUR 점검 등 항목별 점검과 수가코드별 산정횟수 점검, 지식기반 전산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3.1-7 전산심사 업무 흐름도



## 나. 세부내용

### 1) 1단계 : 기재점검

접수단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착오 등을 미리 점검하여 청구서 단위로 반송, 명세서를 심사불능 또는 메시지 처리하는 점검이다(반송 70항목, 심사불능 437항목).

### 2) 2단계 : 자동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 중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각각의 마스터와 연계하여 점검하는 단계이다.

줄 단위로 단가산정착오(A), 삭제코드산정(B), 일투·총투 계산착오(D), 코드 착오(K), 자료 미제출(F), 수탁기관기호 착오(L), 장비 미신고여부 점검(R), 임의직접조제(U) 등 각종 수가 및 의료기관 현황과 관련된 장비와 수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명세서 단위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착오(TD), 비급여대상 진료(TE), 약국의약분업 예외기관 오류점검(TU) 등을 점검한다.

※ 마스터 관련 점검

- (1) 수가, 약가, 치료재료 마스터들과 연계하여 코드존재유무 점검, 급여구분 점검, 예외구분코드 점검, 요양기관 구입내역 및 실거래가 점검
- (2) 의료장비 점검(장비존재 및 부적합여부 점검)
- (3) 요양병원 관련 마스터 점검(별도산정항목, 평가연계, 요양기관 인증조사 미신청)
- (4) 개방병원 계약여부, 공동이용계약유무, 수탁기관 및 위탁진료기관 존재유무 점검

3) 3단계 : 약제전산심사

- 요양기관이 진료·처방한 약제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 세부 내용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등재 약제 중 전산심사 개발 약제 (17.12. 현재 17,561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li> </ul> </li> <li>• 약제 심사기준 인정범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세부인정기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범위 초과 시 심사조정</li> <li>• 심사자 확인 메시지 제공</li> </ul>

- 점검결과(예시)
  - 전산심사 대상: 해열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ibuprofen)제제
  -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
    - 성인 이부프로펜으로서 1회 200~600mg을 1일 3~4회 경구 투여한다. 1일 최고 3,2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 전산심사 결과
    - 1일 최대 투여량 3,200mg을 초과하여 청구 시 초과분을 조정

4) 4단계 : 심사기준 전산심사

- 고시 등 심사기준 중 정형화가 가능한 심사기준을 프로그램화하여 전산점검하는 과정으로 점검결과 전산조정 또는 심사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 세부 내용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분야별로 점검</li> <li>• 정형화가 가능한 고시 등 심사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기준 관련 수가, 치료재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찰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등 수가</li> <li>-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된 급여항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 기준 초과 시 조정</li> <li>• 심사자 확인 필요시 메시지 처리</li> </ul>



○ 점검결과(예시)

- 수가 산정지침 :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진료하고 진찰료 야간가산으로 청구한 경우 가산금 조정
- 치료재료 : 특수 봉합사를 불인정 행위에 산정한 경우 조정(봉합사 산정기준, 고시 제 2007-143호, '08.1.1.)

5) 5단계 : 상병전산심사

외래 청구 단순,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전산심사 개발 상병 범주를 정하여 대상 명세서의 진료비 청구내역 심사패턴, 급여기준 등을 정형화하여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 세부 내용('18. 10. 기준)

개발 분야	적용 항목	적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9개 분야</li> <li>- (주상병수) 277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약제·치료재료 항목별 전산심사 적용기준 초과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준 초과 항목 심사조정</li> <li>• 심사자 확인 메시지 제공</li> </ul>

○ 상병전산심사 적용현황

표3.1-1 분야별 적용 현황

구분	분야	적용년월	비고
의과 외래	①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② 소화계통의 질환, ③ 근골격계통의 질환 ④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15. 12.	
	① 내분비 및 순환계통의 질환 ②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③ 손상에 의한 질환, ④ 관절병증 및 연조직장애	'16. 12.	
	① 호흡계통의 질환 ② 귀 및 유도의 질환, ③ 정신 및 행동장애 ④ 임신·출산 및 산후기	'17. 12.	
의과 입원	급성중수염	'09. 11.	
	질식분만	'10. 12.	
	① 신생아 ② 슬관절치환술 ③ 척추질환	'14. 4.	
치과 외래	구강의 질환	'16. 12.	
한방 외래	한방	'11. 12.	항목별 심사

● 적용결과(예시)

- 알레르기성 질환에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를 청구한 경우
  - 총 횟수 6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특정내역)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심사자 전환하고 진료상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6종 이내로 심사 조정함
  - 다만,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17.12.29.)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이하생략)

6) 6단계 : DUR(Drug Utilization Review)점검

- 식약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 간 병용금지, 특정 연령금지, 임부금지 성분 약제의 투여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 세부 내용

점검대상	점검 항목	점검결과
병용금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 시 조정</li> <li>• 심사직원의 확인 필요시 메시지 제공</li> </ul>
연령금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임부금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 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 점검결과(예시)

- 병용금지
  - 대상약제 : ○○정 600mg과 △△정
  - 점검방법 : 병용금지 약제 간 투약일수를 비교하여 병용 투여일자 산출
  - 점검결과 : 병용금지 약제 중 1종 조정(단,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한 경우 인정)
- 연령금지
  - 대상약제 : □□서방정

- 점검방법 : 연령금기 약제별 투여 가능 연령 계산
- 점검결과 : 금기 연령에 해당 약제 투여시 조정(단,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한 경우 인정)
- 임부금기
  - 대상약제 : △△정 (임부금기 1등급 약제)
  - 점검방법 : 임신 관련 상병 또는 특정내역의 임부 여부 확인
  - 점검결과 : 임부에게 투여 시 조정(단,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한 경우 인정)

### 7) 7단계 : 수가코드별 최대 산정 횟수 점검

요양기관의 전산입력 착오 등 청구착오 가능건의 심사누락 최소화를 위해 수가코드별 최대 일투 및 총투를 정하여 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한 경우 그 초과분을 조정한다.

### 8) 8단계 : 지식기반 전산심사

지식기반 전산심사는 심사결정 데이터 및 요양기관이 청구 시 기재한 텍스트를 포함한 청구자료 등 축적된 정형/비정형 심사정보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종별, 진료 과목별 특성에 맞는 전산 점검을 시행한다.

#### ● 세부 내용

분석 항목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정 자료</li> <li>• 심사사례, 자문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내역(정형/비정형)</li> <li>• 분석 결과에 따른 인정 기준 초과 시 조정</li> </ul>

## 3

## 전문심사

작성자 : 심사운영부 주 - 박혜정  
부 - 이은주

### 가. 정의

청구 명세서를 심사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방법으로 전문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심사 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게 되며, 진료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심사 등을 실시한다.

## 나. 심사직원 심사

심사직원은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을 파악한 후, 청구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한다. 특히, 일일투여량 등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심사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고액 진료비 등은 심사소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다.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Peer Review)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직원이 의뢰한 기관별 또는 사례별 심사 대상 건에 대하여 심사직원의 심사소견, 청구경향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하여 의·약학적 측면에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청구명세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심사, 면담심사, 방문심사 등을 한다.

### ※ 전문심사위원(Peer Review)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별 의료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 제도를 운영한다.

### 1) 보완자료요청 심사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명세서와 관련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및 요양급여 관련서류 등의 보완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후 심사한다.

※ 보완자료 심사결과 진료내용이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청구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진자에게 진료사실 등을 조회한다.

### 2) 면담심사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협조 하에 진료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거나 진료내용에 대하여 협의 등 의견을 청취하는 면담심사를 실시한다.

### 3) 방문(현지확인) 심사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통보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지 방문하여 확인 후 심사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제3항 및 제6조

## 라. 심사위원회 심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나 심사기준 설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심사기준 적용 시 이견이 있는 사항, 기타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중앙 및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한다.

## 4

## 심사금액결정 및 결과통보

작성자 : 청구관리부 주 - 이상호  
부 - 조현경

## 가. 심사금액결정

### 1) 개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에서 심사조정금액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심사결정금액을 생성하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훈공단에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령」 제44조, 제47조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령」 및 국가보훈처 고시
-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기준」

### 3) 심사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특정기호, 공상구분, 종별구분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

## 나. 심사결과 통보

### 1) 개요

수진자 및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심사결정금액과 수진자별 조정금액, 조정사유 등 심사결과를 기재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 및 요양기관에 송부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훈공단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 요양기관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의 심사결과조정내역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하여 요양기관에서 청구 및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해당하는 전자문서(EDI 서식),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서면서식)

### 3) 심사결정내역 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결정내역 조회

-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진행과정 조회 화면에서 심사결정내역에 대한 접수번호별 심사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조정건, 지급불능건, 처방내역조정, 원외처방조정, 심사조정코드별 분류코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조회(결과통보시)조회

홈 > 진료비청구 > 진료과별 > 심사결과조회(결과통보시)조회

결과찾기 추가 출력 편집 검정요청 도도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18-01-04(-) ] 심사자수 [ 20180209 ]

○ 심사기본정보

요양급여 내용총액1	건수	본원 부담금	평균액	보통 본원부담금	보통 부담액	요양급여내역총액 진료내역총액	역제상환 차액총액	수진자요양 급여총액	100/100 본원부담금총액	100/100대만 총액	100/100대만 본원부담금	100/100대만 평균액	100/100대만 보통부담금	차등 지수
평균	126,168,170	262	15,163,300	111,004,870	0	0	126,168,170	0	126,168,170	0	50,620	40,490	10,130	0
심사결정	248	14,286,800	101,227,450	0	0	115,514,250	0	0	50,620	40,490	10,130	0	0	

지급가능사발		응급사발		기타사발										광역제병조항사발		
건수	요양급여 내용총액1	건수	조정금액	역제상환차액 조정금액	본원부담 환급금	본원추가 부담금	보통 본원부담환급금	보통 본원부담추가부담금	심사결정액	보통 심사결정액	100/100대만 본원부담환급금	100/100대만 본원추가부담금	상계 환급금	상계 추가부담금	건수	조정금액
14	10,273,450	35	380,219	0	70,800	0	0	0	0	101,166,780	0	0	0	70,800	0	620,10

○ 심사정보조회

영입원 [ ] ~ [ ] 수진자영입원 [ ]

Q조회 코드별 조정출발 범위 적용자금 출력

심사조정내역 조회 | 지병별내역조회 | 처방내역조회 | 영입처방 | 코드별 조정출발 | 심사조정내역 | 본원부담환급내역 | 처방내역(본원부담환급) | DRG심사별내역 | 영입처방(조정기준)

○ 청구내역

평균건수	평균액	영입처방건수	영입처방조정금액	처방내역건수	처방내역조정금액
262	111,004,870	35	380,219	9	620,101

○ 코드별 조정내역

\* 코드별 내역을 클릭하시면 아래 영입처방으로 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설기장]

분류코드(항)	조정사유코드	조정사유코드명	건수	조정금액	구분
B2011009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1	2,710	영세서
B2021003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2	7,680	영세서
A4057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1	7,250	영세서
C3012003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5	16,250	영세서
69390000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1	144,500	영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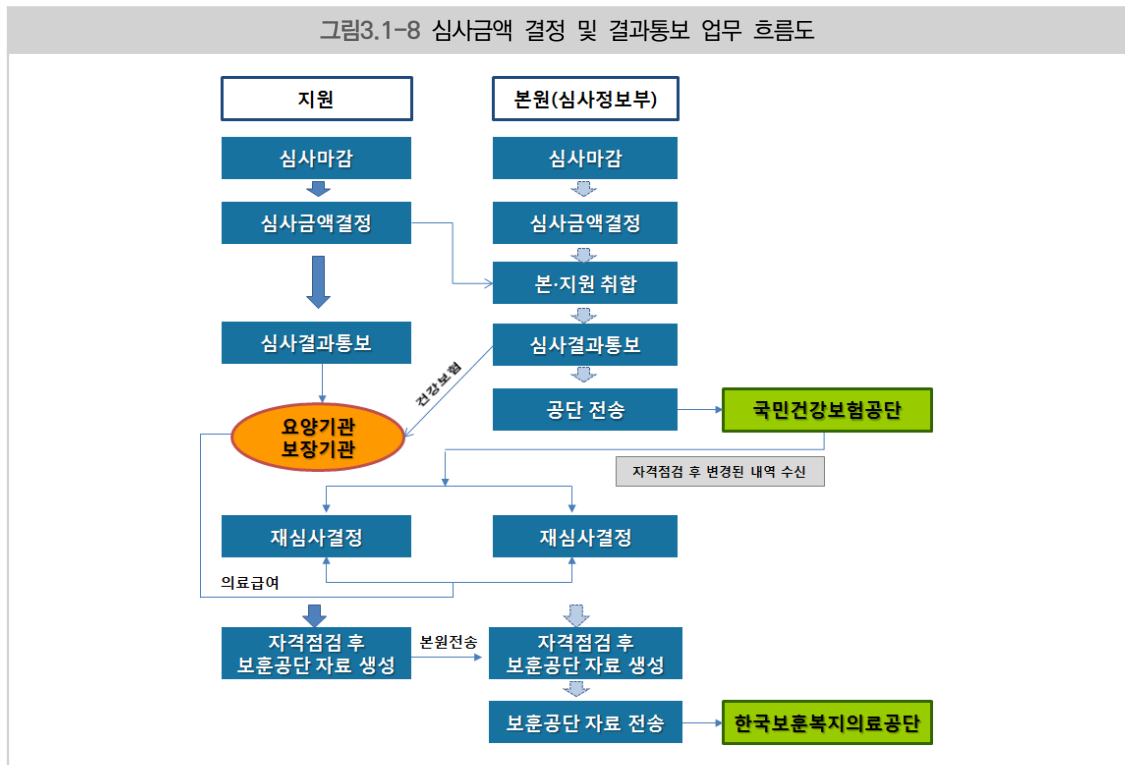
○ 영입처방 조정내역

\* 영입처방 별로 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입원	수진자	조정금액	조정 사유코드	조정사유코드명	출발번호	분류코드(항)	분류코드명	구분
00047	임태지	283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20	K6100002	조정, 영입처방상용 재료 별도 산정 불거고시 제2000	영세서
00048	임태지	283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19	K6100002	조정, 영입처방상용 재료 별도 산정 불거고시 제2000	영세서
00072	장정희	283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21	K6100002	조정, 영입처방상용 재료 별도 산정 불거고시 제2000	영세서

다. 심사결정 업무 흐름도

그림3.1-8 심사금액 결정 및 결과통보 업무 흐름도



작성자 : 심사관리부 주 - 박인실  
부 - 황인숙

## 가. 개요

심사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급여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여 사후 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유도 및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 제41조(요양급여)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제3항제3호

####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심사평가원 심사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 2018.03.07. 규정 제345호)

## 제5조(업무 범위) 등

- ①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
  5.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경우
  6. 기타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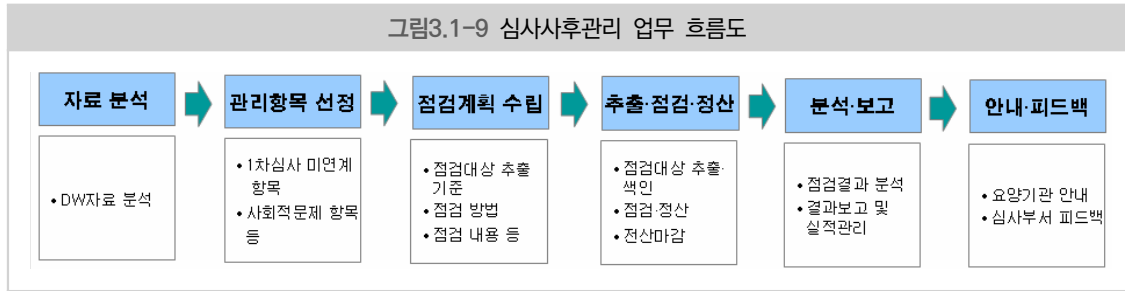
## 다. 사후관리 대상 및 업무 흐름도

## 1) 심사사후관리 주요 대상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명세서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항목 등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후관리 항목으로 선정, 점검·환수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항목으로는

-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 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횟수 등
-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용 중복 청구, 자보·건보 중복청구 등
-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추가연계, 위탁 진료비용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_처방기관·조제기관 등
- 기타 청구오류 점검 항목 :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이 있다.

2) 업무 흐름도



라. 정산심사결정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통보

심사 사후점검 후에는 정산심사결정서와 정산심사내역서(원외처방약제비 정산 심사내역서)를 요양기관에 송부한다.

- 정산심사결정서는 명세서별 정산 발생 사유 및 내역에 대한 문서(전자 또는 서면)이다.
- 정산심사내역서(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는 명세서별 오·정 증감 금액에 대한 내역으로서 공단에 동시 통보한다.

## Ⅲ

## 사전 예방 사업

작성자 : 심사운영부 주 - 박혜정  
부 - 노민양

## 1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가. 개념 및 의의

##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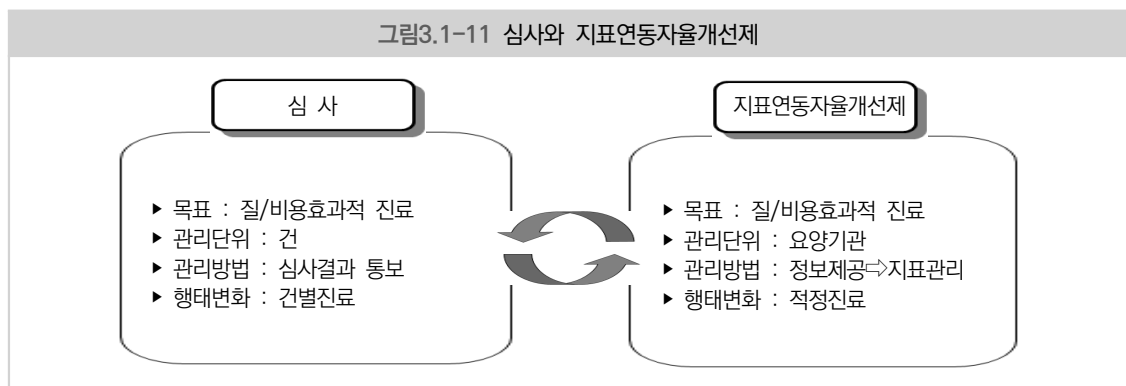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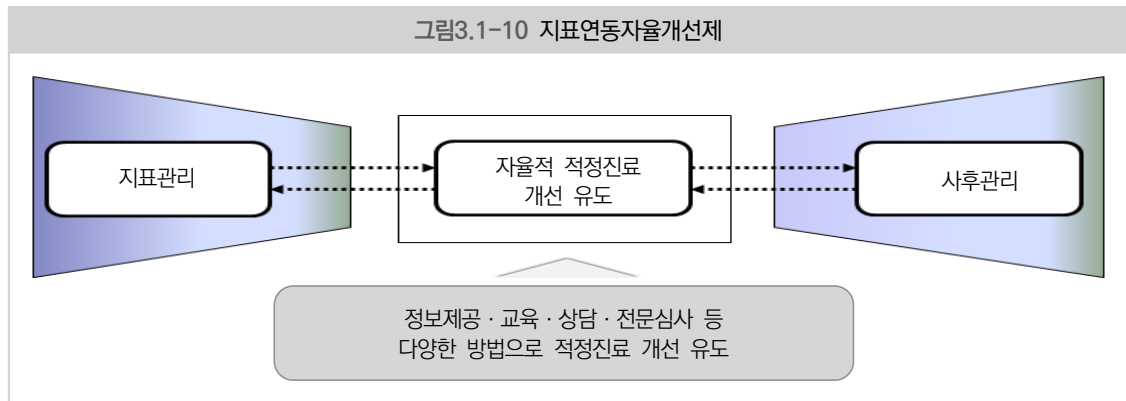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요양기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평가(가감지급)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 등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의의

요양기관이 자발적인 지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표관리·자율개선 유도·사후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실현 및 의료의 질 향상 도모에 그 의의가 있다.

- 관리 필요도가 높은 관리지표를 선정하고, 관리지표 상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
- 의료공급자의 개선실적이 미흡할 경우, 현지조사 및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진료행태 변화 작동기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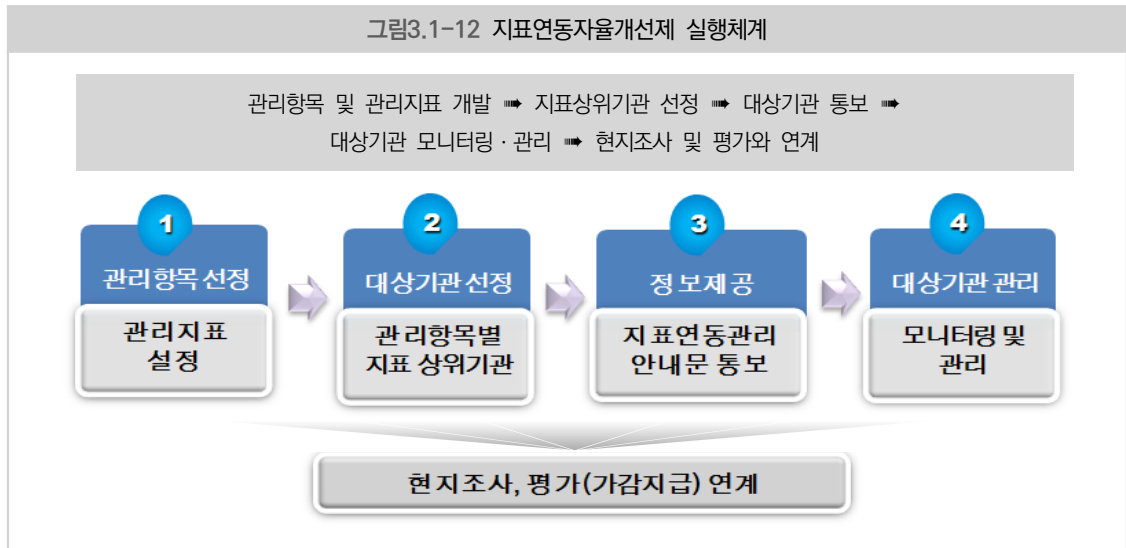


### 나. 주요 추진경과

- 2011. 12. 지표연동관리제 실시(병원급 이하 대상)
- 2012. 6. 관리대상기관 확대(종합병원 이상)
- 2012. 12. 관리항목 확대(병원급 이상 외래처방약품비)
- 2014. 7. 지표연동관리제와 자율시정통보제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 (입원지표 확대)
- 2015. 8. 관리대상기관 확대(보건의료원 외래처방약품비)
- 2016. 6. 관리지표 중 외래처방약품비 제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로 일원화 관리 등) 입원진료비 지표 통보 대상에서 요양병원 제외 (관리기관 수 대폭 감소 및 수가체계 개편 등 감안)
- 2016. 9.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통보 기준 하향 (관리기준 강화)

- 2016. 12. 신규 관리 항목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관리 시행
- 2017. 7.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적정 진료 요양기관 관리 시행

## 다. 실행체계



### 1) 관리항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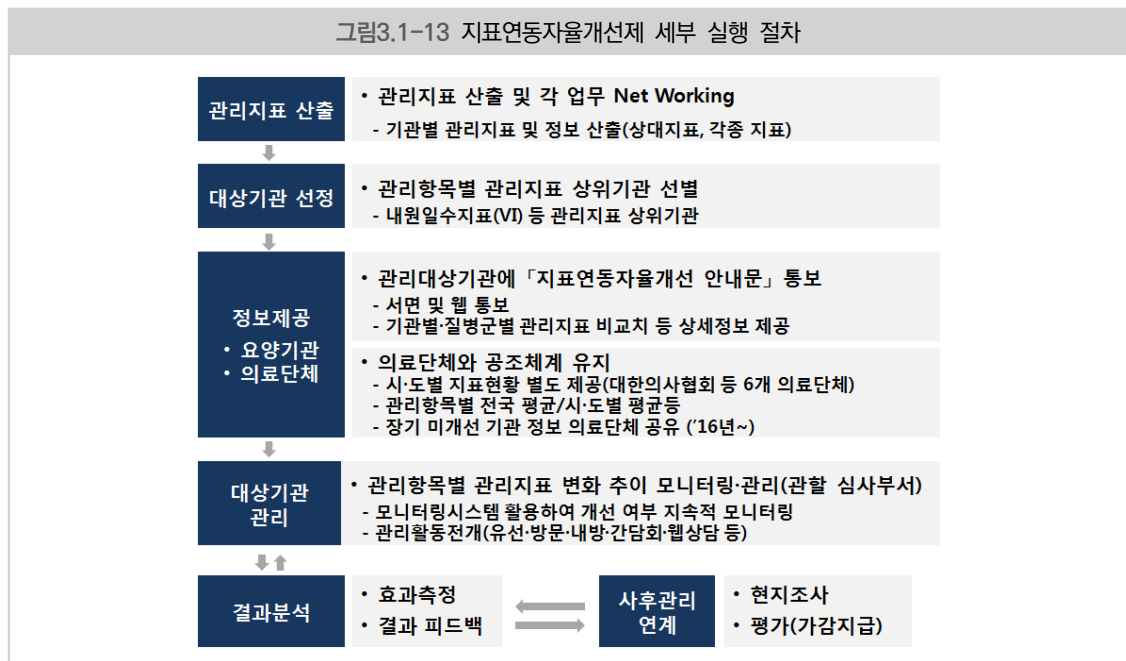
- 관리항목 선정방향
  -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한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항목
  -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거나, 유사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 등
- 관리항목 및 관리지표
  - 비용 관리 ⇨ 내원일수지표(VI), 입원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CI)
  - 의료의 질 관리 ⇨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환자안전 관리 ⇨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 요양기관 종별 관리항목

구분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 처방률	입원진료비
의원		○	○	○	○	○	
치과의원		○					
한의원		○					
병원		○	○	○	○	○	○
요양 병원	의과	○	○	○	○		
	한방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종합병원 이상			○	○	○		○

- 종합병원 이상(약제평가 3항목) : 2012년 6월 시행
- 병원급 이상 외래처방약품비 : 2012년 12월 시행
- 입원진료비 지표 : 2014년 7월 시행
- 보건의료원 외래처방약품비 : 2015년 8월 시행
- 외래처방약품비,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 : 2016년 6월 제의
-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 : 2016년 12월 시행

2) 대상기관 선정·관리 및 사후관리 연계



○ 지표연동자율개선 안내문 통보

- 지표연동자율개선 대상기관에 대하여 심사결정 진료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자료 생성하여 해당기관에 서면(웹)으로 통보

통보분기	대상기간
1/4분기(3월)	10, 11, 12(전년도)
2/4분기(6월)	1, 2, 3
3/4분기(9월)	4, 5, 6
4/4분기(12월)	7, 8, 9

그림3.1-14 지표연동자율개선 (서면)안내문

### 1 지표연동자율개선 안내문

**평가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의정장 귀하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기호

**진료 지표 안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의 질과 진료비에 영향을 큰 항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양 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도록 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항목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용,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이며 각 항목별로 진료지표가 동일 평가군에서 높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원의 분석된 항목에 대한 진료지표를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 원에 안내된 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 <코너버튼> 청구경향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역(☎02-3772-8941,8874,8845)

### 2

**▶ 종합 안내**

- 귀 원의 안내문 제공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 평가군 대비 귀 원 지표값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구분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용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귀 원	1,16	89,16	44,80	57,04	대상아님
동일 평가군	1	26,91	23,08	20,68	

**▶ 내원일수**

- 외래내원일수(VI)란 요양기관의 내원일수를 동일 평가군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환자구성(연령 및 성별)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총합,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분류
- 예) VI지표가 1.30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30% 높음
- 해당 내원일수 : 환자당 월평균 내원일수

평가대상	VI
2018.1분기 심사결정분	1,16

○ 다음은 해당 질병군의 해당 내원일수가 동일 평가군보다 높은 다빈도 5순위의 질병군입니다.

질병군 코드	질병군(NOPG)	VI	연령 내원일수(일)	
			귀 원	동일 평가군
M11100	분태임(임질성) 고환암	1,20	1,52	1,26
M11000	기타 고환암성 질환	1,19	1,49	1,26
ME0860	형 제외 양노반(순환계 합병증 동반)	1,4	1,84	1,31
ME0500	양노반	1,38	1,79	1,3
MMS502	후근관염, 연명 164세	1,4	2,16	1,55

○ 통보 대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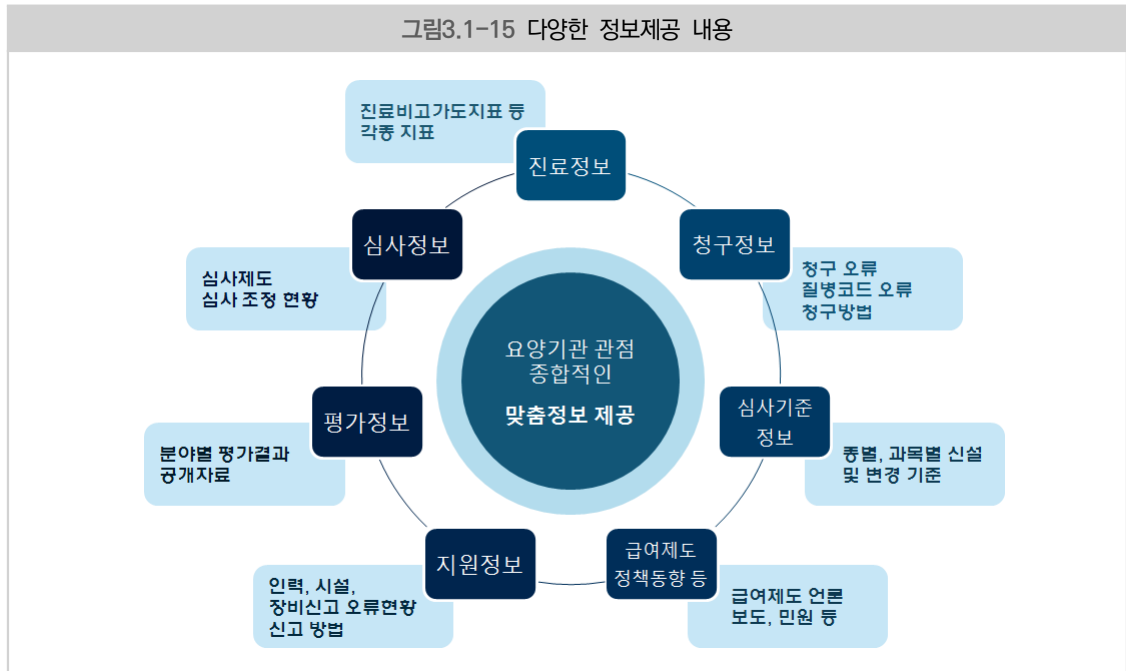
- 관리 필요 기관에 대한 세부분석 후 구체적 개선사항을 발취
- 전화, 문서, 현지방문, 그룹간담회, 교육 등 다양한 관리 방법 활용하여 요양기관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교류

- 개선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및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8분기 연속 장기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 의료단체와 해당 기관 지표 정보를 공유하여 진료행태 개선 독려
- 적정진료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한 최신 심사정보 제공으로 적정 진료행태 유지 독려
- 사후관리
  - 개선여부 파악을 위해 요양기관별 사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선 기관, 미개선 기관 등으로 구분
  -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연계
  - 장기 미개선 기관인 경우 재상담, 전문심사, 방문(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요양기관을 관리

## 라. WEB 서비스 제공

### 1) 제공되는 WEB 서비스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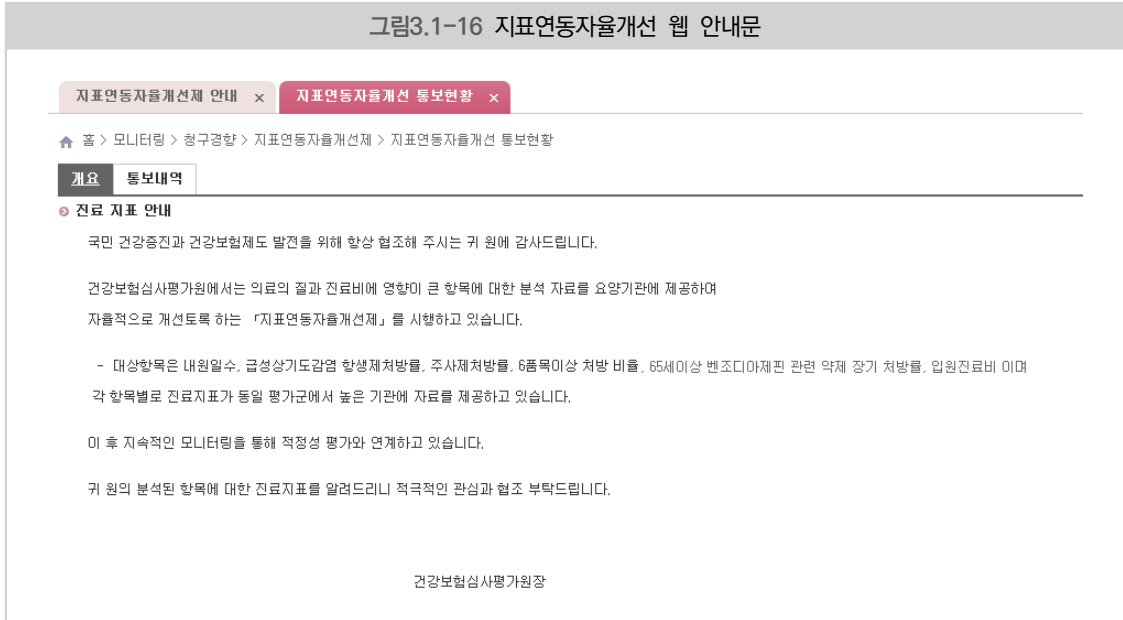
- 접속경로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서비스 내용 : 진료월별 누적 청구현황, 심사조정현황, 각종 지표현황 등





## 2) 지표연동자율개선 대상기관 정보 제공

- 서면으로 통보된 지표연동 자율개선 대상기관 통보현황을 웹을 통해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관리지표별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



- 통보내역은 지표연동 자율개선 대상기관과 동일 평가군에 대한 관리지표 현황(기관별, 다빈도 질병군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관리지표별 상세화면과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

그림3.1-17 지표연동자율개선 안내문의 관리지표 통보내역

홈 > 요양기관포탈 > 심사정보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현황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현황

인쇄 | 도움말 | 즐겨찾기 추가

---

개요 통보내역

· 통보년도

· 보험자

· 통보분기

· 서식

· 종별명칭

·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칭

**내원일수**

- 외래내원일수지표(VI)란 요양기관의 내원일수에 대한 동일 평가군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환자구성(연령 및 질병)을 보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분류합니다.  
예) VI지표가 1.30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30% 높음
- 건당 내원일수: 환자당 촬영건 내원일수

평가대상	VI
2015.2분기 심사결정분	1.14

코드	다빈도 질병군(KOPG)	VI	건당 내원일수(일)	
			귀원	동일 평가군
MJ1000	급성 판도염	1.14	1.52	1.34
MJ0500	급성 부비동염	1.15	1.68	1.46
MH5500	외이의 질환	1.25	1.76	1.41
MJ1500	급성 패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	1.16	1.57	1.35
SL1590	단순 구강 및 인후두 시술	1.17	2.09	1.78

\* 해당 질병군의 건당 내원일수가 동일 평가군 보다 높은 질병군 중 다빈도 5순위임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처방률**

-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분류하여 동일 평가군내 의뢰기관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항생제처방률 = 항생제 총 처방횟수/총 내원횟수 × 100

평가대상	귀원(%)	동일 평가군(%)
2015.2분기 심사결정분	81.45	54.31

**주사제처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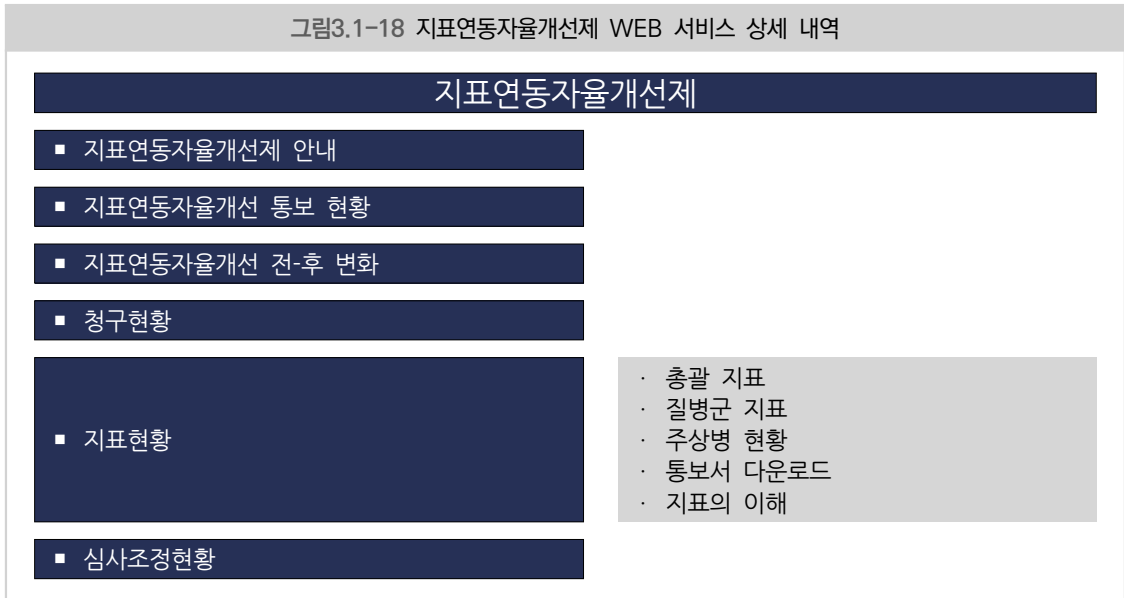
-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분류하여 동일 평가군내 의뢰기관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주사제처방률 = 주사제 총 처방횟수/총 내원횟수 × 100

평가대상	귀원(%)	동일 평가군(%)
2015.2분기 심사결정분	78.16	17.32

상병코드	다빈도 상병	귀원(%)	동일 평가군(%)
J00-J06	급성 상기도감염	83.21	18.04
J30-J39	상기도의 기타 질환	81.02	18.61
H60-H62	외이의 질환	42.42	7.87
R40-R46	인지, 지각, 정서상태 및 행위에 관한 증상 및 징후	52.56	9.72
H65-H75	중이 및 유물의 질환	71.15	12.33

\* 해당 상병의 처방률이 동일평가군 보다 높은 상병 중 다빈도 5순위임.

그림3.1-18 지표연동자율개선제 WEB 서비스 상세 내역



※ 접속경로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공인인증서를 받아 로그인 후 이용

## 마. 주요 진료지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요양기관 종별, 표시과목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크기와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한 환자분류체계 [입원은 KDRG, 외래는 KOPG (한의: KOPG-KM)]를 이용하여 질병군 단위로 해당기관의 각종 지표를 산출하고 비교군 선정 및 상담 관리에 활용한다.

### 1) 절대지표

- 진료비, 건수, 건당 진료비 등 개별 요양기관의 평균값

### 2) 상대지표

- 비교그룹의 평균과 상대 비교한 수치(ECI, DCI, LI, VI, CMI)
  - 건당진료비 고가도 지표(ECI, Episodes-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건당(수진자당) 진료비(원외 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한 해당기관의 비교치

- 내(입)원일당 진료비 고가도 지표(DCI, Days-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내(입)원일당 진료비에 대한 해당기관의 비교치
-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Lengthiness Index):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입원일수에 대한 해당기관의 비교치
- 내원일수 지표 (VI, Visit Index):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내원일수(외래)에 대한 해당기관의 비교치
- 환자구성 지표(CMI, Case-Mix Index):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모니터링하는 지표

## 바. 주요지표 산출식

### 1)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ECI, Episodes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건당진료비(원의 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한 해당기관의 건당진료비를 비교하는 고가도지표

$$ECI_h = \frac{\sum C_{hi} \cdot N_{hi}}{\sum C_i \cdot N_{hi}}$$

$h$  : 대상 요양기관

$N_{hi}$  : 대상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수

$C_{hi}$  : 대상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i$  : 질병군별

$C_i$  : 표시과목별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ECI_h$  : 대상 요양기관의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

- ECI가 1.2인 것은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 하였을 때 기대되는 적정 건당진료비 보다 실제 건당진료비가 20% 높음을 의미

### 2) 내원일수 지표(VI, Visit-Index)

동일 수진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평균 내원일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는 내원일수지표

$$VI_h = \frac{(\sum V_{hi} \cdot N_{hi})}{(\sum V_i \cdot N_{hi})}$$

$h$  : 대상 요양기관

$N_{hi}$  : 대상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수

$V_{hi}$  : 전체 건당진료비

$i$  : 질병군별

$V_i$  : 표시과목별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VI_h$  : 대상 요양기관의 내원일수 지표

- VI가 1.2인 것은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 하였을 때 기대되는 적정 내원일수 보다 실제 내원일수가 20% 높음을 의미

### 3) 환자구성 지표 (CMI, Case-Mix Index)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비교그룹 전국평균에 비하여 고비용 질병군 해당 환자구성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표

$$CMI_h = \frac{(\sum C_i \cdot N_{hi}) / (\sum N_{hi})}{C}$$

$h$  : 대상 요양기관

$i$  : 질병군별

$N_{hi}$  : 대상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수

$C_i$  : 표시과목별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C$  : 전체 건당진료비

$CMI_h$  : 대상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지표

- CMI가 1.2인 것은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할 때 건당진료비는 전체 환자(표시과목별) 건당진료비의 1.2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평균보다 높게 구성되었음을 의미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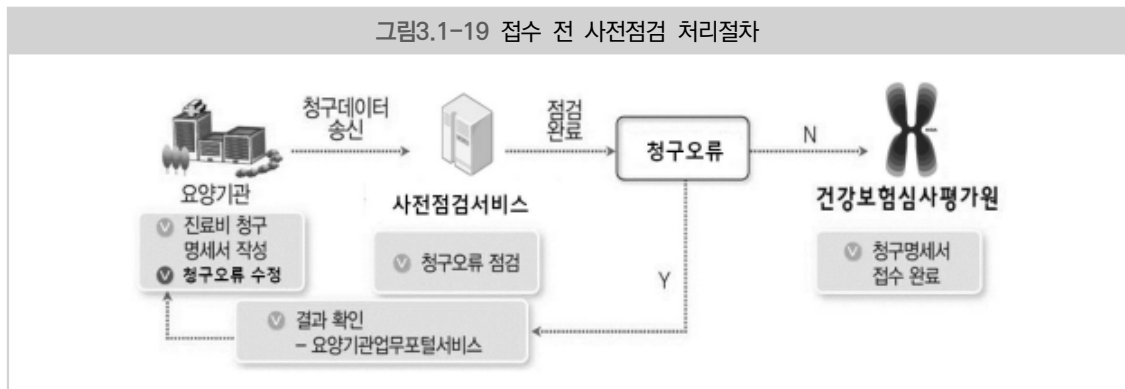
### 사전점검 서비스

작성자 : 청구관리부 주 - 이상호  
부 - 황정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하기 전에 수시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점검 시스템을 통해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실제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10년 8월 병원급 이상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반송 63항목, 심사불능 369항목, 심사조정 460항목 등 총 892항목이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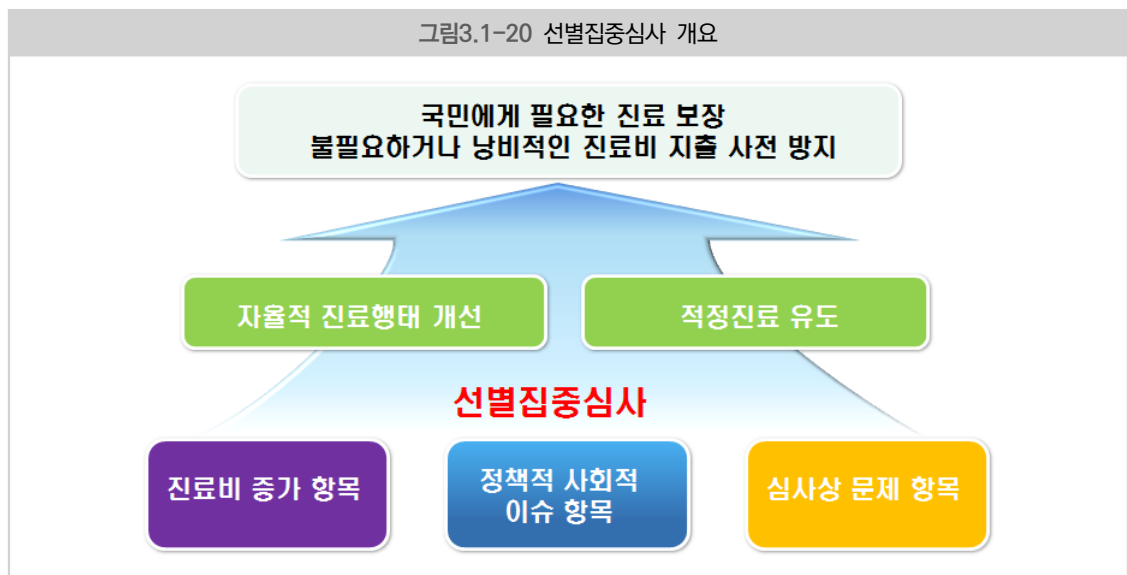
그림3.1-19 접수 전 사전점검 처리절차



작성자 : 심사총괄부 주 - 남길량  
부 - 윤혜정

## 가. 개요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이다. 집중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태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피드백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나. 선정기준

- 1) 요양급여비용 청구양상 변화가 큰 항목(진료비 급증 등)
- 2)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
- 3) 기타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 가) 지속적인 심사에도 진료행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
  - 나)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비 청구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등

그림3.1-21 단계별 관리 내용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8월	~10월	11월	12월	1월~	4월	8월	9월	10월	~12월	~3월	
1단계	예비항목 선정 및 모의운영 →											
2단계	대상항목 선정 및 관리방안 수립 →											
3단계	사전예고 및 홍보 →											
4단계	집중심사 및 모니터링 →											
5단계	중간평가 및 피드백 →											
6단계	최종결과 평가, 피드백 →											

#### 다. 단계별 관리방법

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한 심사방법으로 집중심사하며 사안에 따라 단계별 관리기간 및 관리방법을 조절

- 1) 1단계(전년도 8월~10월) : 차기년도 항목선정을 위한 예비항목 선정 및 모의운영
  - 가)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 참조하여 예비항목 선정
  - 나) 예비항목 선정결과 공유 및 집중심사 모의운영
  - 다) 예비항목에 대한 청구추이 등 모니터링 후 차기년도 항목선정에 반영
- 2) 2단계(전년도 10월~11월) : 대상항목 선정 및 심사 관리방안 수립
  - 가)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 참조하여 진료행태개선이 필요한 항목 추출
  - 나)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상항목 선정
  - 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항목 최종 결정
  - 라) 대상항목별 사례분석, 심사기준정리 및 전문교육 등 실시
- 3) 3단계(전년도 12월) :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 홈페이지 공지, 언론보도, 관련단체 문서발송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홍보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개선 유도

- 4) 4단계(1월~12월) : 관리대상 항목의 집중심사 및 청구내역 분석 등 모니터링
  - 가) 진료기록부 확인, 심사위원 심사의뢰 등 집중심사
  - 나) 관리대상 항목의 청구내역 분석 등 모니터링
- 5) 5단계(4월~10월) : 중간평가 및 피드백
  - 가) 주기적 평가로 문제점 개선여부, 추이 등 변화 점검하여 결과 반영
  - 나) 문제점 미개선 시 사안에 따라 서면계도, 간담회, 방문심사 등 실시
- 6) 6단계(10월~차기년도 3월) : 최종결과 평가, 피드백
  - 가) 관리결과 최종평가, 추후 방향설정(지속관리 여부 등)
  - 나) 관리결과 피드백
    - 필요시 관련부서에 정보제공,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 건의 등 조치
    - 부당내역확인 시 현지조사의뢰 조치

## 라. 집중심사 기간

매년 집중심사 항목이 선정되며 집중심사 기간은 1년 또는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 실시

## 마. 집중심사 방법

- 1) 사전안내 및 홍보로 자율 개선 유도
- 2) 대상 항목별·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 집중심사
- 3) 심사 소회의 개최, 전문심사위원 자문에 의한 적정성 여부 심사
- 4) 심사사례 콘퍼런스 및 심사사례공개와 연계한 집중심사 강화방안 마련 및 공유
- 5) 급여기준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부
- 6) 필요한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요양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방문심사

## 바. 미개선 항목 관리방안

- 1)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강화
  - 서면계도 → 맞춤형 정보제공 → 간담회 → 방문심사
- 2) 미개선시 차기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재선정



## 사. 연도별 집중심사 항목 현황

표3.1-2 연도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현황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 종합병원
항목수	12	9	12	13	14	16	17	18	19	12	26

표3.1-3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계	13	8	5
1	척추수술	○	○	○
2	Cone Beam CT(치과분야)	○	○	○
3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
4	건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
5	세기변조방사선치료	○		
6	자동봉합기	○		
7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		
8	면역관문억제제	○		
9	항반병성치료제	○		
10	2군항암제(대장,유방,폐)	○		
11	양전자단층촬영(PET)	○		
1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13	세포표지검사	○		
14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		
15	항진균제	○		
16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	
17	의료급여장기입원		○	
18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9품목 이상)		○	
19	전산화단층영상진단(2회 이상)		○	
20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

## IV

## 권리구제

작성자 : 이의신청부 주 - 배덕임  
부 - 문강숙

### 1

### 이의신청

#### 가.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 나. 법적 근거

##### 1)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① (생략)
-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 ① (생략)
- ②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업무범위 및 대상

#### 1) 요양기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관련 근거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요구한다.

#### 2) 공단

심사평가원의 인정 처분에 대하여 지급기관인 공단이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급여비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 라. 업무처리

#### 1) 이의신청서 접수 및 분배

가) 이의신청 접수 방법은 서면, 요양기관포털(웹), 진료비청구포털(전자문서)를 통해 접수한다.

※ 진료비청구포털(전자문서)접수방법

- (심사평가원 제공프로그램) 요양기관 업무포털 하단에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후 이의신청서 작성 송신
- (요양기관 자체개발 이의신청프로그램) 이의신청 전자문서 SAM파일 작성 후 송신

나) 접수담당직원은 심사평가원 문서접수처에서 전송한 문서접수대장과 이의신청 접수문서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의신청 접수 시 확인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서식 사용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
- 첨부 자료 누락여부
-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 대상건을 이의신청하였는지 여부

다) 이의신청서 각하

- (1)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다음 사항의 발견 시 각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 각하 결정문을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 (2) 기간 도과건의 경우 각하 예정 통지문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의신청 각하 사유**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경우
-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를 이의신청한 경우

라) 이의신청 보완자료 요청

- (1) 이의신청 기재사항 누락,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기한 문서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 (2) 10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한다.
- (3) 요청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을 포함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되며, 자료의 보완요청 기간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담당차장은 단순심사와 의학적 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담당직원에게 분배한다.

**2) 이의신청 처리**

가) 심사

- (1)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원칙 및 심사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심사한다.

- (2) 원칙적으로 접수일자 순으로 처리하되, 임상에서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처리한다.
- (3)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한다.

#### 나) 자문의뢰 등

- (1) 심사위원 심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일과목 또는 동일진료 분야 담당심사위원과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한다.

#### 다) 이의신청위원회 부의

- (1) 심사·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의 다툼이 있어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의 신청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2) 위원회 의결사항은 안전상정의뢰 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3) 이의신청의 결정

- (1) 이의신청은 관련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부의, 이의신청위원회 부의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결정서에 결정내용(인정, 기각) 및 인정의 경우 인정금액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4) 이의신청의 정산 등

- 인정 결정된 건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고, 정산심사인정금액 등이 기재된 '정산 심사내역서'를 요양기관 및 공단에 송부한다.

### 가. 개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 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다. 법적 성격

이의신청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있더라도 심사평가원에서 별도의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라. 구성 및 임기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25명(위원장을 포함)으로 구성한다.

구성	인원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명

-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마.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3

## 심판청구

작성자 : 심판청구부 주 - 박경숙  
부 - 박신령

## 가.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이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

심판청구는 특수 행정심판으로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 이외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 관련)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동법 시행령 제59조~제61조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5

제30조의2(심판청구)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용어 정의

청구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자
심판청구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청구인 정보, 처분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
인정(일부인정)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하여 전부(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기각	심사 기준과는 다르게 부적절한 청구를 하여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
취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소한 경우
각하	기간도과 등 심판청구 제기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인용(일부인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원이 결정한 결과와는 다르게 청구인의 주장 전부(또는 일부)를 수용한 경우
심판청구재결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심리·의결한 내용을 적은 문서

라. 심판청구 업무절차

1) 심판청구 업무흐름도

	절차	세부내용
청구인 (요양기관)	① 이의신청 기각 ↓ ② 심판청구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 기각 건에 대한 심판청구</li> <li>•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기 * 이의신청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li> </ul>
처분청 (심사평가원)	③ 심판청구서 접수 및 색인 ↓ ④ 사건번호 부여 ↓ ⑤ 심판청구서 및 관련자료 검토 ↓ ⑥ 답변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청구서 내용, 이의신청 결정통보일 및 관련자료 2부 확인</li> <li>• 기간도과 시 청구인 안내 후 반송</li> <li>• 사건번호 부여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통보</li> <li>• 심사 담당자 분배</li> <li>• 심사 담당자는 심판청구서와 처분내용에 대하여 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자문 또는 필요시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li> </ul> </li> <li>• 답변서 제출 지연 시 지연사유 분쟁조정위원회 통보</li> <li>• 재심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할 경우: 청구인 통보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취소 답변서 제출</li> <li>- 불인정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기각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li> </ul> </li> </ul>



	절차	세부내용
재결청 (분쟁조정위원회)	⑦ 분쟁조정위원회 심리·의결 ↓ ⑧ 재결서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조정위원회 심리·의결</li> <li>• 심판청구 결정서(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li> </ul>
처분청 (심사평가원)	⑨ 재결서 확인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결서 확인 및 인용(일부인용)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정산 후 정산내역을 청구인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li> </ul>

## 2) 심판청구 제기기간(「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가능).

## 3) 심판청구서 제출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청구인)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 심판청구서 제출처는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이다.
- 심판청구서 기재내용
  -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처분을 한 자(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함)
  -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첨부서류의 표시
  -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답변서 제출
  -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보완자료 요청 및 심사위원회 안건 부의 등으로 답변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

#### 4) 심판청구 정산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으면 결정내용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된 건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 '정산심사내역서'를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한다.

#### 5) 심판청구 취하

- '취하'란 청구인이 심사를 원치 않아 심사평가원에 취하를 요청하면 심사평가원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 '취하'를 원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직인이 찍힌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를 심사평가원에 송부한다.

## 4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가. 개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립된 위원회이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62조~제67조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2016.2.3.>

## 2)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4조(구성 및 회의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5(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의 정본은 청구인에게, 사본은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한다.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처분을 한 자
  - 결정의 주문(主文)
  - 심판청구의 취지
  - 결정 이유
  - 결정 연월일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5(심판청구 결정기간)

-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V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작성자 : 위원회운영부 주 - 조상현  
부 - 김병관

### 1

### 개요

#### 가. 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이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진료비용의 심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가)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 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가) 심사위원회 자격은 법 제23조 및 제6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의사(치과, 한의과 포함)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2)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 회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 (3)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및 임기)

- 가) 상근심사위원은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 나)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 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 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

### 4)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심사위원의 해임·해촉)

- 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라)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심사위원회 위원장)

- 가)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심사평가원 원장이 임명
-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 회의 등)

- 가) 심사위원회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 나)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제40조(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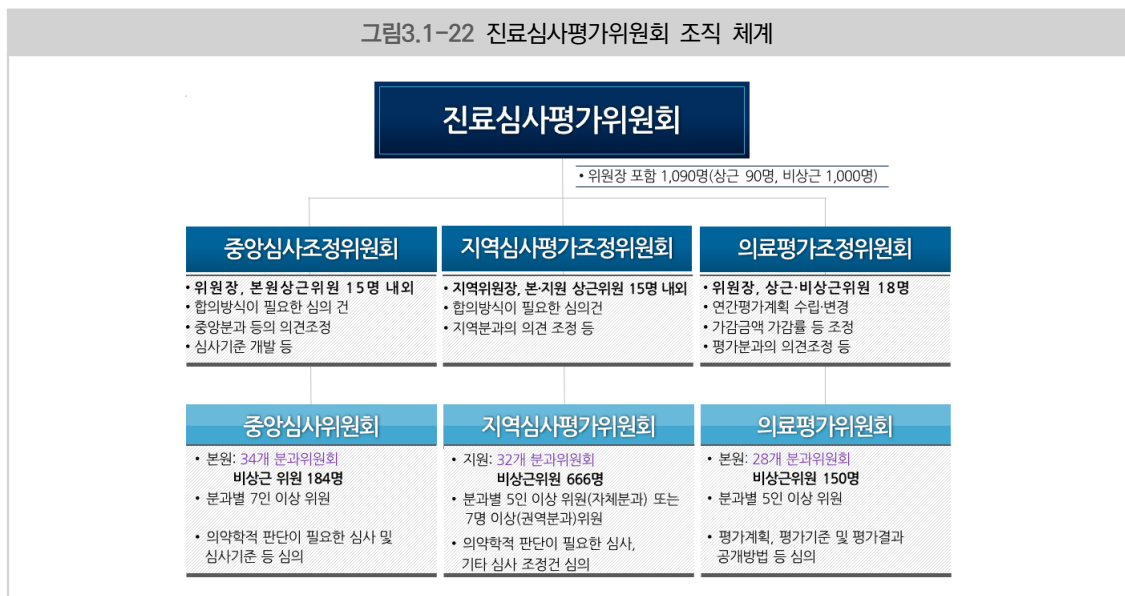
- 가)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의료평가위원회를 두고, 지원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 나)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견의 조정 등을 위하여 본원에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두고,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이하 '지심조')를 둔다.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제41조의 2(심사위원의 업무 등)

- 가) 의학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나누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급여기준 상시·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적정 진료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업무기능별 전문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수석위원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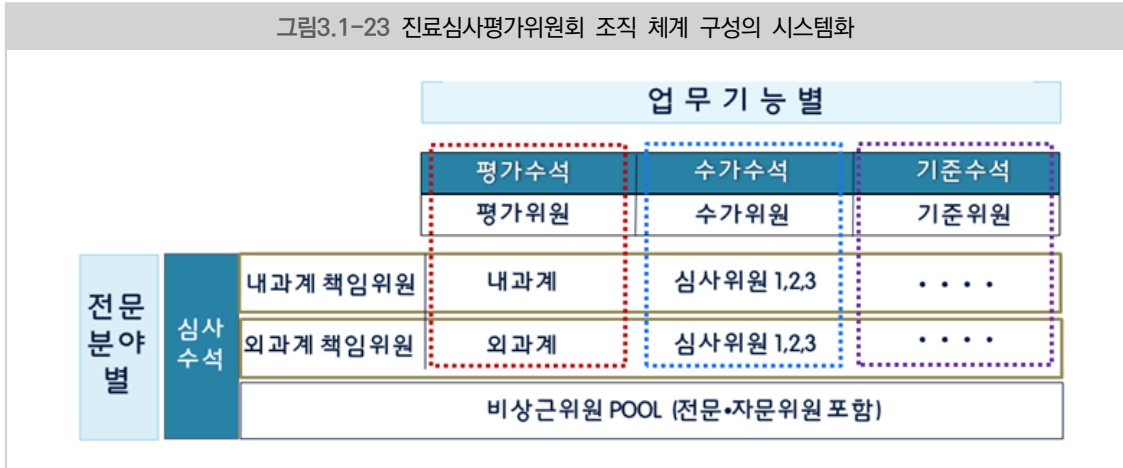
다. 심사위원회 구성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 체계



2) 조직 체계 구성의 시스템화

- 가) 업무기능별로 심사, 평가, 수가, 기준의 구분을 통해 각 업무기능의 수석과 위원으로 운영
- 나) 전문분야별로 심사수석 - 내·외과계 책임위원 - 심사위원의 계선조직화 구조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3)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 가) 중앙심사위원회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구성(32개 분과위원회)

분과명	분과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내과</li> <li>• 순환기내과</li> <li>• 호흡기·알레르기내과</li> <li>• 내분비·대사내과</li> <li>• 신장내과</li> <li>• 혈액종양내과</li> <li>• 감염내과</li> <li>• 류마티스내과</li> <li>• 신경과</li> <li>• 정신건강의학과</li> <li>• 외과</li> <li>• 정형외과</li> <li>• 신경외과</li> <li>• 흉부외과</li> <li>• 성형외과</li> <li>• 마취통증의학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부인과</li> <li>• 소아청소년과</li> <li>• 안과</li> <li>• 이비인후과</li> <li>• 피부과</li> <li>• 비뇨기과</li> <li>• 영상의학과</li> <li>• 방사선종양학과</li> <li>• 병리과</li> <li>• 진단검사의학과</li> <li>• 재활의학과</li> <li>• 핵의학과</li> <li>• 치과</li> <li>• 한방</li> <li>• 약리</li> <li>• 척추</li> </ul>

※ 조혈모 및 솔리리스 분과, 약제분과의 경우 본원 별도 운영  
 ※ 지역심사평가위원회는 자체 또는 권역별(수도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운영

## 나) 의료평가위원회 구성(28개 분과위원회)

### 분과명

- 심뇌질환분야 : 심혈관질환(내과분야),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분야 : 고혈압, 당뇨병
- 호흡기질환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결핵
- 암질환 :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 수술분야 : 7개질병군포괄수가, 진료량, 수술의예방적항생제
- 약제분야 : 약제급여, 유소아중이염
- 기타 : 영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중환자실, 환자경험, 일반질,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

## 라. 전문(자문)위원 운영(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0조)

- 1) 위원장은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 전문 진료분야, 약학 분야별 또는 업무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 2) 세부 전문분야에 위촉할 전문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 3) 전문위원은 비상근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은 비상근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종류 및 기능

### 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 1) 중앙 및 지역 분과위원회의 의견의 조정 및 위원장이 중심조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심의
- 2)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3) 심사건 중 합의 방식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사항 심의
- 4) 심사기준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5) 의평조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의뢰하는 사항 심의

### 나.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 1) 지역분과위원회의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심조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심의
- 2) 심사건 중 합의 방식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사항 심의



**다. 분과위원회 (중앙 및 지역)**

- 1) 심사건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
- 2)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심의
- 3)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중앙분과위원회에 한함)

**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 1) 연간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의 수립 및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2)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과 관련한 사항 심의
  - 가)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
  - 나)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률
  - 다)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등급조정
  - 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산정
- 3)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4) 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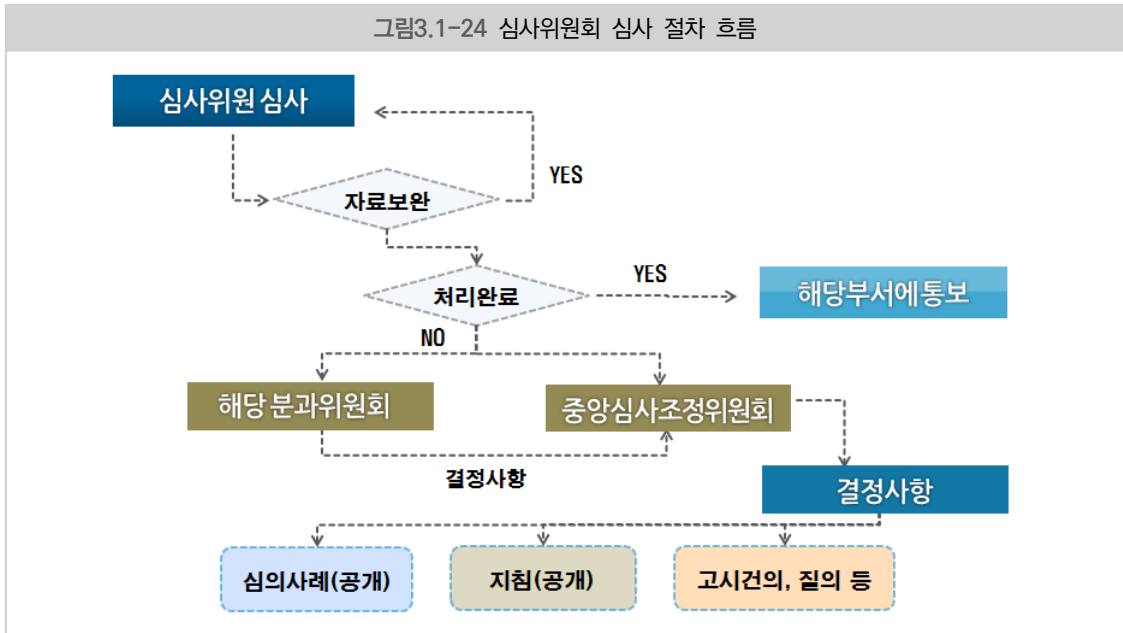
**마. 의료평가위원회**

- 1)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2) 평가기준 설정 및 변경, 평가등급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3)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4) 그밖에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심의

**바. 심사위원회 회의진행**

- 1) 심사 및 심의 시 고려사항
  - 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연구문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명료한 심사기준 안 제시
  - 나) 기 심의결정사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심사 및 심의결정사항의 일관성 유지
- 2)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흐름

그림3.1-24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흐름



## 사. 기타 회의

### 1) 진료분야별 소그룹 전문가회의

- 심사기준의 공정성, 전문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 2) 지역심사평가위원장 회의

- 본·지원 간 및 지원 간 심사 현안 문제와 심사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심사 위원장들이 모여 의견 교환을 통하여 심사의 효율적 운영과 일관성 있는 심사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체

### 3) 지원심의사례 검토위원회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각 지원에서 외부공개 검토를 요청한 건에 대한 공개여부 및 공개 문구 적정성을 논의하는 회의체

## 3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공개

## 가. 공개취지

- 1) 영양급여기준에 의한 의약학적 전문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수용성 제고
- 2) 임상현장의 적정급여 제공 환경 조성

## 나. 공개범위

-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영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
- 2) 영양급여비용 사전신청 건(조혈모세포이식) 중 영양급여 대상자로 승인된 건
  - 유형별 전건 공개

## 다. 공개일정

- 1) 본원 : 2013년 1월부터 매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영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과 영양급여비용 사전승인 건(조혈모세포이식) 중 영양급여대상자로 승인된 건 전건 공개
- 2) 지원 : 2015년 8월부터 분기별 대표 심의사례를 공개하였으나 2018년 7월부터 전건 공개

## 4

## 전임 상근심사위원 심사 실명 공개

## 가. 공개취지

- 1) 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공개
- 2) 의약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 담당

## 나. 공개범위

-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공개

#### 다. 공개방법

-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로 해당 심사분야 담당차장 및 대표직원 성명(전화번호 포함)과 대표위원 성명을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 공개

#### 라. 공개시기

-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



# 제2장

## 수탁심사

- I. 의료급여비용 심사
- II. 보훈진료비 심사
- III.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심사
- IV.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운영
- V.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VI. 입원적정성 심사



## 제2장

# 수탁심사

### I

## 의료급여비용 심사

작성자 : 의료급여운영부 주 - 방기성  
부 - 김현주

### 1

####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및 목적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의료급여법」 제1조),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의료보장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의료급여’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 2

#### 주체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사업기관인 국가(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 수급권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비용지급기관), 의료 급여 기관(의료공급자) 등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원활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가. 국가(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의 관장주체로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동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검사(동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기금의 관리·운영,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보고권(동법 제32조)을 가지고 있다.

## 나. 수급권자

헌법상 사회보장권의 수급주체로서의 국민이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의 수급주체로서 의료혜택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의료급여법」 제3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다.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

수급권자의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즉, 의료급여증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동법 제11조), 의료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변경(동법 제16조), 중지(동법 제17조), 구상권의 행사(동법 제19조), 급여비용의 대지급(동법 제2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권(동법 제23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동법 제26조) 등을 수행한다.

### 라.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곳으로 지정제도가 폐지(1999. 7.)되면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당연히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다.(당연지정제, 「의료급여법」 제9조)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급여비용 심사기관(「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그 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통보한다.(동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 자격관리,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급여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증장기 재정추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료급여법」 제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서 수행한다.

\* 2012.1.1.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운영토록 변경(보건복지부 훈령 제31호, 2011.12.30.)

그림3.2-1 의료급여의 운영체계

구분	담당기관	업무 내용
1. 대상자 선정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자산조사 등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자격 취득</li> <li>* 타법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처의 통보를 받아 수급권자로 선정</li> </ul>
↓		
2. 공단에 자료전송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공단으로 전송</li> </ul>
↓		
3. 진료	의료급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별구분, 본인부담여부, 선택병원원 적용여부 등</li> </ul> </li> <li>• 진찰·검사 등 의료급여 실시</li> <li>• 진료 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상병, 급여일수, 진료형태(입원, 외래) 등 전송 → 진료확인번호 부여받음</li> </ul>
↓		
4. 진료비 심사, 평가	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확인번호 기재</li> </ul> </li> <li>•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통보(의료급여기관, 공단, 보장기관)</li> </ul> </li> </ul>
↓		
5. 진료비 지급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비용 지급(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의함)</li> <li>• 보장기관에 지급결과 통보</li> </ul>
↓		
6.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 보장기관 · 공단 · 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li> </ul> </li> <li>•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출입, 사망 등 수급자 관리</li> <li>-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 실시</li> <li>- 사례관리</li> <li>- 부정수급권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li> </ul> </li> <li>•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 수급 의심자(급여제한 대상 등) 발체</li> <li>- 시군구에 내역 제공 및 부정수급 조사 등</li> </ul> </li> <li>• 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사후관리</li> <li>-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등</li> </ul> </li> </ul>

## 3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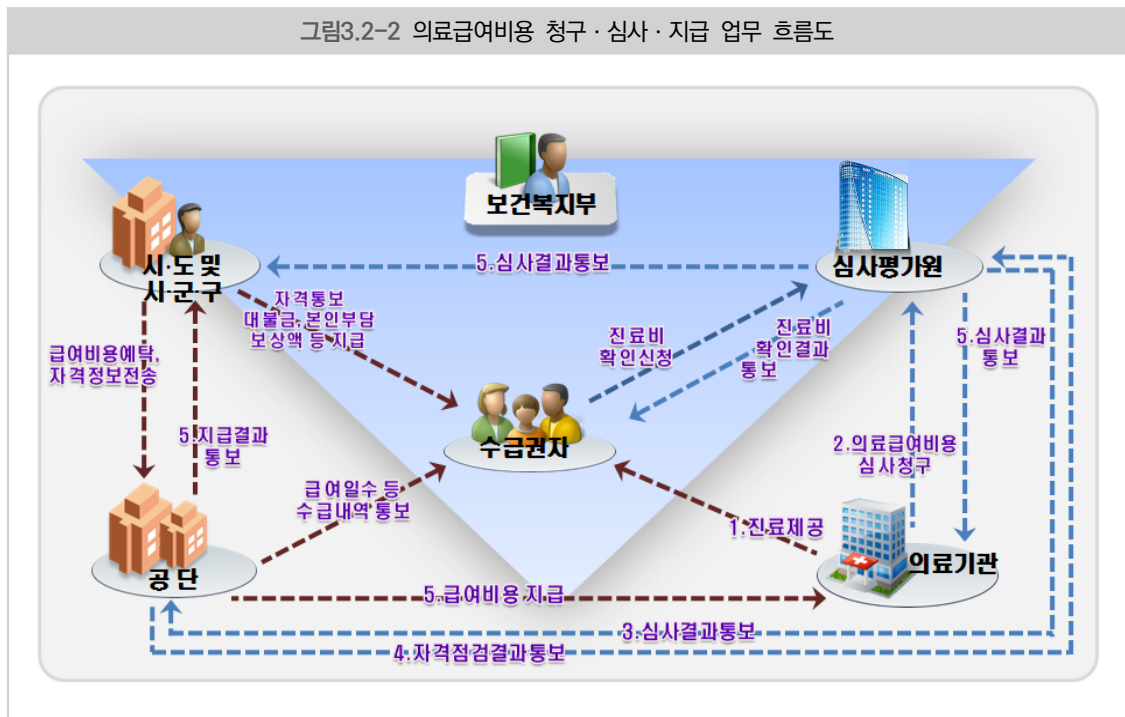
## 가.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장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지급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장기관이 심사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및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업무 중 의료급여비용의 심사,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기준 설정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의료급여비용 지급은 공단에 위탁하였다.

## 나. 심사·지급 절차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절차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의료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의료급여기관, 공단, 심사업무를 위탁한 보장기관에도 통보하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단, 대지급금 및 장애인의료비는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그림3.2-2 의료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 흐름도



## 4

## 건강보험과의 비교

의료급여는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적용대상, 재정부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 관리운영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 5

## 관리운영 및 제도

「의료급여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다르게 운영되는 주요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표3.2-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비교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제도특성	• 공공부조	• 사회보험
적용대상	• 저소득층 등 일부계층 - 149만명('17년도 말 기준)	• 모든 국민 - 5,094만명
보험료	• 없음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근거법령	• 의료급여 법령	• 건강보험 법령
재원	• 조세(국고+지방비)	• 보험료, 국고지원 등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 심사평가원, 공단, 의료급여기관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요양기관
자격증명	• 의료급여증, 신분증 등	•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
진료절차	• 3단계(1차 → 2차 → 3차기관)	• 2단계(종합병원이하 → 상급종합병원)
급여일수상한제	• 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 2006. 1. 폐지
선택병의원제	• 급여일수 초과자(또는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선택병원 이용	-
진료비대불제도	• 2종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대불(보장기관 승인 필요)	-
본인부담보상제	• 1종(2종) 매30일간 2만원(2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 수급권자 종별에 따라 차등 - 1종 : 매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2종 : 1년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80만원~523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 1종 수급권자 1인당 월 6,000원 지급 (본인일부부담 면제자 제외)	-

## 가. 의료급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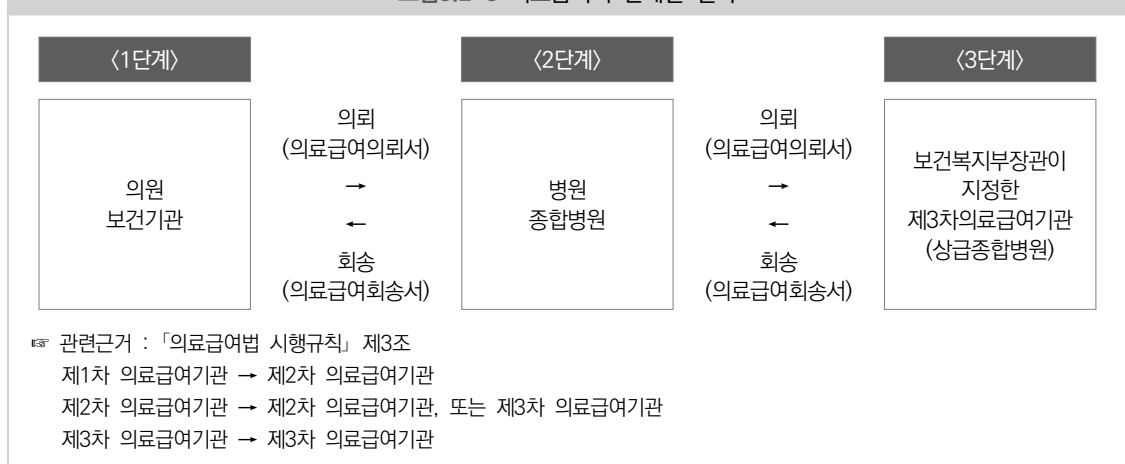
의료급여 절차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부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나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수요자의 욕구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진료가 집중될 소지가 높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와 달리 3단계 급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1) 의료급여의 단계별 절차

의료급여는 1·2·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그림3.2-3 의료급여의 단계별 절차



## 2)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절차 예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② 분만의 경우
-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⑥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⑦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⑧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⑪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⑫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①~⑥은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⑦~⑫는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 1)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범위

- 가)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 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 다)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 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①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②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④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마)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 바) 노숙인 등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 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 기관만 해당)
- 사)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 2)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범위

-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의료급여절차 예외의 경우)
- 나) 노숙인 등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 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 기관만 해당)
- 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라)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마)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 3)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범위

-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의료급여절차 예외의 경우)
- 나)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급여일수 상한제는 수급권자가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다음 10개 고시질환에 대하여는 질환별로 상한일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로 제한(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음)

-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포함)(F00-F99, G40-G41)
-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 고혈압성 질환(I10-I15)
-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B18, B19, K70~K77)
- 당뇨병(E10-E14)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 대뇌혈관질환(I60-I69)
- 두개내손상(S06)
- 갑상선의 장애(E00~E07)
-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 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중복 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 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선택이용제도를 2007. 7. 1. 부터 도입 시행하였다.

###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1·2종 모두 해당)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는 조건부 연장승인자와 자발적 참여자로 구분한다. 조건부 연장 승인자는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危害)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자(질환군별 급여일수 초과자)이며, 자발적 참여자는 급여일수 초과자가 아니더라도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한 자가 대상이다.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란 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해 주는 제도로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및 10개 만성질환(고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 연장승인 90일), 이외 질환(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 + 연장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다.

### 2)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의 재활의학과 진료나 한센병환자, 등록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인 경우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당해 의료급여기관 근무자인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 할 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한 수급권자가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인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하나씩 선택 가능하다.

표3.2-2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 범위

구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1선택	제2선택(심의필요)	제3선택	제4선택
일 반		1차기관	1~2차기관 (6개월 이상 진료 필요자)	한의원	치과의원
진료 절차 예외 대상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3차기관	1~2차기관 (심의 불필요)	(1·2선택 의료급여기관을 한의원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1·2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치과의원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2~3차기관 근무자	2~3차기관 (본인근무)	1~2차기관 (6개월 이상 진료 필요자)		
	한센병 환자, 등록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자	1~2차기관	1~2차기관 (6개월 이상 진료 필요자)	*본인부담 있음	*본인부담 있음

### 3)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의뢰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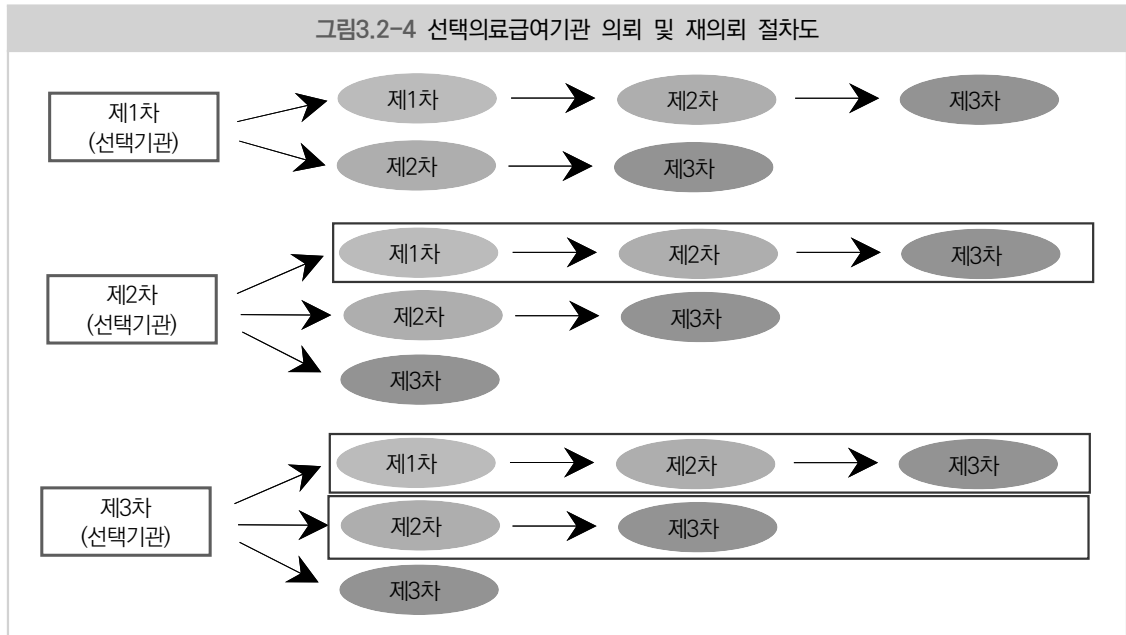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다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고,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다른 의료급여기관(제1차 의료급여기관 등)으로 의뢰할 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상 필요하여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하여 의뢰하고, 의뢰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 후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및 급여일수 등 전송 시 “타 기관 의뢰여부(Y/N)”를 전송 시 보장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같음한다.

### 4)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 재의뢰 범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서는 의뢰할 수 없다.



### 5)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구분 코드 기재방법

의료급여기관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급여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MT018)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 후 청구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 M001~M017, B005~B006 및 B008~B009 까지를 각각 기재하며,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중 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구분코드 B001~B006 또는 B008~B009를 기재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 B007을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표3.2-3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1종	M001
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3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4	임산부 1종	M004
5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9.30 이전 적용 수급권자)	M005
6	〈삭 제〉	삭제
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8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11	행려환자 1종	M011
12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2
13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노숙인 1종	M013
14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4
1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15
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M016
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M017
18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2종	B001
19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20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3
21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2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B005
23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 의뢰된 자(1·2종)	B006
2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
25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2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27	임신부 2종	B010
28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B011
29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29)외의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2종)	B012
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구분8과 구분9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B013

### 마.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6호)

본인부담금 보상제는 1종(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2만원(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지급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5만원, 2종 수급권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보장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로, 입원·외래 및 약국약제비를 포함하며 비급여대상,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65세 이상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는 지급 제외대상이다.

### 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2007. 7. 1.에 시작된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공단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1종 외래 본인부담면제자를 제외하고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을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또는 조제 후 공단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요청하고, 공단은 진료 확인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주1회 이상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보장기관으로 통보하면 보장기관은 잔액을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사. 진료확인번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상병, 급여일수, 처방전교부번호 등을 전송하면 공단은 진료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MT019)란에 진료확인번호(서면청구기관은 진료확인번호개수)를 반드시 기재 후 청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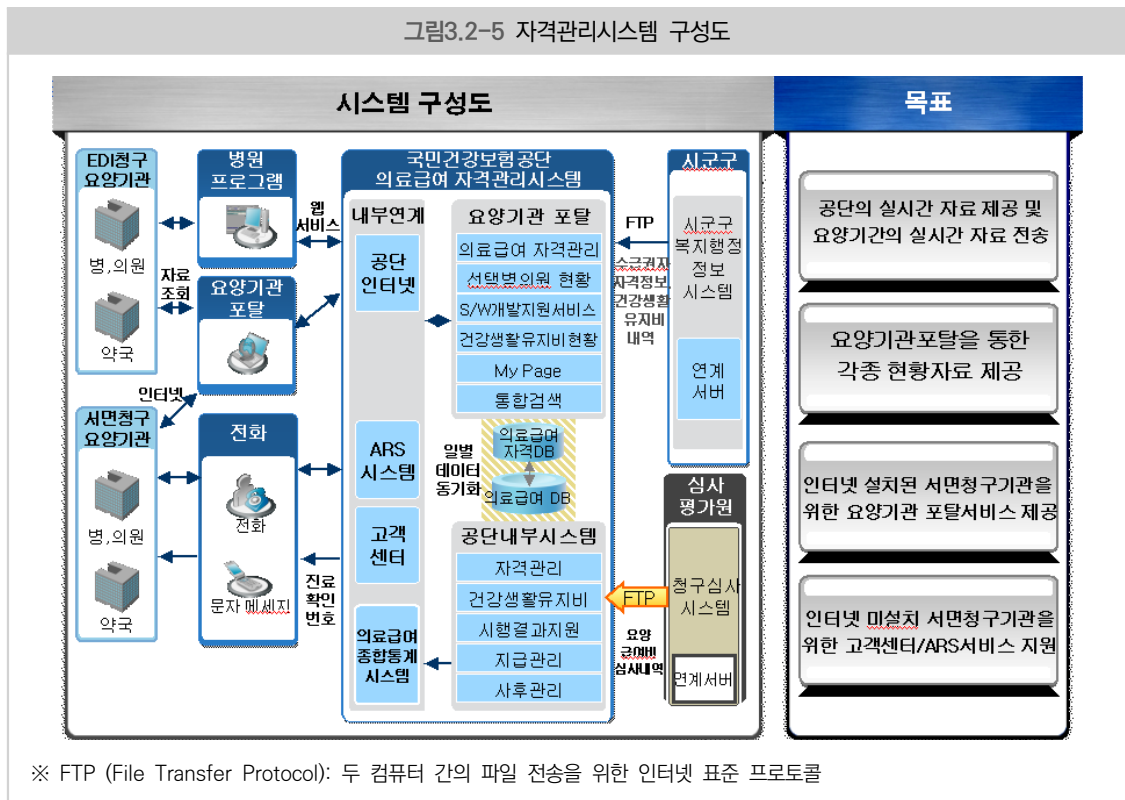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모든 건에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심사불능(코드 90-06) 처리됨

### 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 투약을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건강생활 유지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국민 건강보험공단에 구축)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면제 여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조제)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급여일수,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처방전교부번호, 진료를 의뢰한 선택 의료급여기관 기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하면 진료확인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의료급여기관은 부여받은 진료확인번호를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 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그림3.2-5 자격관리시스템 구성도



6 본인일부부담금

표3.2-4 의료급여종별 본인일부 부담금

의료급여종별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외래 및 약국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원내 직접조제	없음	없음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처방조제	500원 or 3%	500원 or 3% (예외사항 “주2”참조)	작 동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없음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조제	2,000원	총진료비의 15% (예외사항 “주1”참조)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조제	2,500원	총진료비의 15% (중증환자 5%)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없음	총진료비의 10%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 ※ 65세이상 틀니 : 1종 5%, 2종 15%  
- 레진상 완전틀니 '12.7.1.부터, 부분틀니 '13.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15.7.1.부터 시행
- ※ 65세이상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 ※ 식대 : 1·2종 수급권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20%, 중증환자 5%(단, 식대본인부담면제자는 제외)
- ※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 2015.11.1.부터 시행

**1종 수급권자중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자발적 참여자)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임신부,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가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2013.9.30. 이전 적용 수급권자)
- 행려환자,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2종 수급권자 중 입원 본인부담면제**

-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6세미만 아동, 심장 및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인 중증환자

**1·2종 2, 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30%

**1·2종 입원환자 중 식대 본인부담면제자**

- 행려(무연고자),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

**CT, MRI 또는 PET 본인일부부담률**

- 1종 ⇒ 입원 : 면제, 외래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5%
- 2종 ⇒ 입원 : 10%, 외래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  
※ 심장, 뇌혈관질환자인 중증환자는 면제

**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예외사항 '주'**

- 1)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계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 환자가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 받는 당일]의 외래진료인 경우는 그 밖의 외래진료 시 1,000원, 원내 직접조제 시 1,500원을 부담
- 2)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원외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약국약제비 총액의 3%를 부담(500원 미만 시는 500원을 부담)

**7****수가**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별도 고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한다. 별도 고시되어 건강보험수가와 달리 적용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	30%	25%	20%	15%
의료급여	22%	18%	15%	11%

※ 정신과 정액수가,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

## 나. 혈액투석수가

### 1) 수가 산정기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하고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를 산정한다. 단,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 2)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서식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진찰료항(1항)~특수장비항(S항)에 'Z항'이 추가되어 있다.

2014. 9. 1. 진료분부터 'Z'항에는 실제 청구하는 진료비인 혈액투석 정액수가 진료비를 기재하고, 나머지 항(1항~S항)에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내역을 건강보험작성요령에 의거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여 청구한다(청구매체는 EDI 또는 전산매체로만 가능하다).

## 다. 정신질환 정액수가

### 1) 수가 산정기준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08. 10. 1. 진료분부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수가차등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포함)이 그 대상으로 인력 대비 환자 수에 따라 기관등급이 5등급(G1~G5)으로 구분된다.



표3.2-5 정신질환 정액수가 산정기준

진료형태	수가 산정
입원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등급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점수 적용 769.52점(G1)~354.30점(G5)</li> <li>• 입원료 체감적용(1~90일, 91~180일, 181~360일, 361일이상)</li> <li>• 기관등급이 G1, G2인 경우에는 1주일에 정신요법료 4회 이상 실시(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포함), G3인 경우에는 1주일에 정신요법료 3회 이상 실시(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G4, G5인 경우에는 1주일에 정신요법료 2회 이상 실시(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li> <li>• 동일 의료급여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입원 수가를 적용(외박일수 포함)</li> <li>• 입원기간 중 다른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수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별 수가로 적용하여 별도 산정 ※ 정신질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시 행위별수가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E”를 표기</li> </ul>
낮병동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등급에 따라 1일당 정액점수 적용 531.02점(G1)~293.00점(G5)</li> <li>•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며, 1식이 포함된 수가임</li> </ul>
외박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등급에 따라 1일당 정액점수 적용 126.67점(G1)~69.16점(G5)</li> <li>•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산정 ※ 외박수가의 산정은 외박 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산정</li> </ul>
외래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 10% 본인부담</li> <li>• 정신요법 산정기준(개인정신치료 주2회 이내, 개인·집단가족치료 각각 주1회)</li> </ul>

## 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의료급여기관은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기관은 기관등급 G5로 인정)

표3.2-6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및 적용기간

대상분기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기관등급 적용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		
1/4분기	12/15~3/14	1/15, 2/15, 3/15	3.20.	4/1~6/30
2/4분기	3/15~6/14	4/15, 5/15, 6/15	6.20.	7/1~9/30
3/4분기	6/15~9/14	7/15, 8/15, 9/15	9.20.	10/1~12/31
4/4분기	9/15~12/14	10/15, 11/15, 12/15	12.20.	1/1~3/31

###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명세서 서식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 서식 진찰료항(1항)~특수장비항(S항)에 ‘X’항이 추가되어 있다. 2009. 1. 1. 진료분부터 ‘X’항에는 실제 청구하는 진료비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진료비를 기재하고, 나머지 항(1항~S항)에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내역을 건강보험작성요령에 의거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여 청구한다.(청구매체는 EDI 또는 전산매체로만 가능하다)

#### 라. 식대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건강보험과 달리 영양사, 조리사, 직영에 대한 식사가산과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1일 3식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3식을 초과 산정할 수 없고(산모식의 경우에는 1일 4식 이내로 함), 금식(NPO), 경구투여 불가능 등으로 1일 3식 이하를 제공 시에는 실제 제공한 급식횟수로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분유	특수분유		
금액	3,740원 (1식당)	4,420원 (1식당)	14,870원 (1식당)	2,140원 (1일당)	6,040원 (1일당)	5,510원 (1식당)	4,630원 (1식당)

#### 마. 안치(安置)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당 3,750원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중 사망 또는 외래에서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하되, 안치기간은 3일 이내 산정하며, 환자 측 사정으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안치료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Ⅱ

## 보훈진료비 심사

작성자 : 수탁사업부 주 - 정재홍  
부 - 전 연

## 1

## 개념 및 목적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심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기존의 '진료보상금 제도'에 대한 투명성 여부 지적 및 진료비 정산제 실시 등 공신력 있는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05년·2008년·2017년 3회에 걸쳐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업무이며,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중에서 '보훈국비 또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가 위탁되어 있다.

- ※ '보훈국비 또는 감면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 2

## 주체

## 가. 국가(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사업의 관장주체로서, 국가보훈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를 두고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보상수준의 결정,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있다(「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2조). 아울러,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가보훈기본법」 제15조, 제16조)

##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 계약을 맺은 주체이며,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의 교육·훈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비용 심사’와 함께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심사의 일환으로 심사위탁 계약에 따라 보훈병원(5개)과 위탁진료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의 “보훈국비환자(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비 심사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심사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보훈병원(5개), 중앙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위임 수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다.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 전액 국비지원환자(보훈단일자격자, 상이처 또는 승인질환)’를 제외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자격점검 및 통보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또는 의료급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국비환자는 심사위탁 계약에 의한 심사를, 감면환자는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환자로서 심사하고 있다.

# 3 심사

---

## 가. 개요

보훈진료비 심사는 보훈국비 또는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훈국가부담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 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심사위탁 계약은 ‘보훈병원’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위탁 계약(2008.9.29)」에 의해 2008.10.1일을 기준으로 시행(2008.1.1일 진료분 부터 소급심사 적용)되었으며(다만, 보훈감면진료대상자 위탁은 2017.7.1일을 기준으로 2017.7.1진료분부터 적용), ‘위탁병원’은 「위탁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위탁 계약(2005.8.3)」에 의해 2005.10.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 다. 심사의 기준

- 건강보험법령 또는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기준
  - 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표준내용은 ‘요양급여 비용심사 업무편람’ 참조
- 보훈병원 진료비,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

## 라. 심사·지급 절차

보훈진료비 심사절차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하는 ‘보훈부담액’이 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위임 수행 중)에도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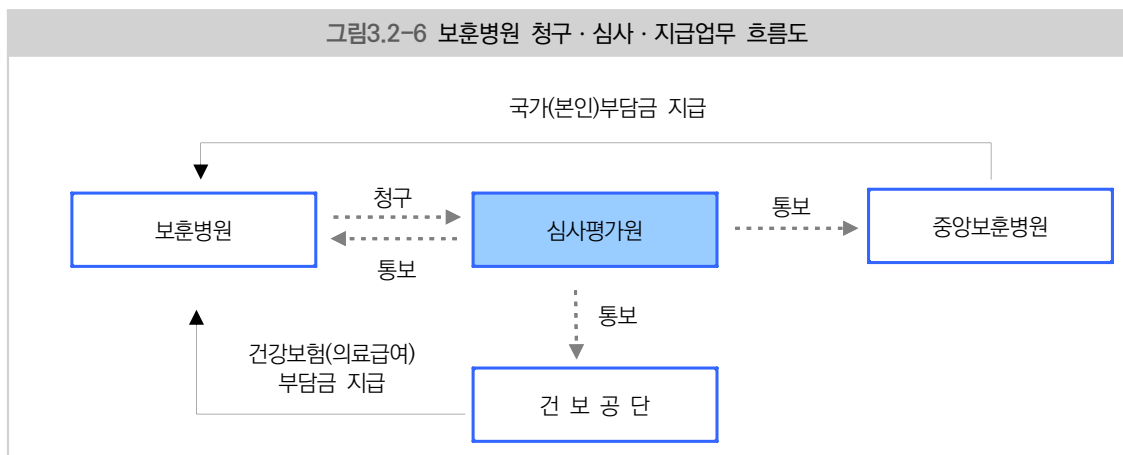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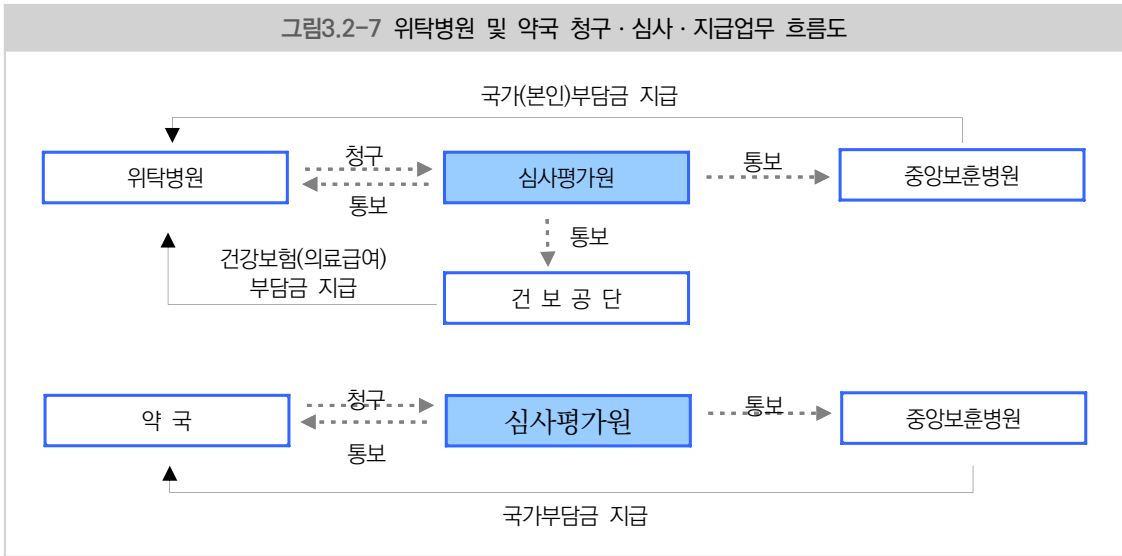


그림3.2-7 위탁병원 및 약국 청구·심사·지급업무 흐름도



4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비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은 심사평가원과의 심사수탁 시기나 그 배경, 진료수가 체계, 적용 심사 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 적용수가는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별도로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과 법정비급여항목(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국가보훈처에서 전액 지원 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이외에 ‘행위료 가산(28%)’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표3.2-7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시행일 (심사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국비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 2008.9.29.</li> <li>- 시행일 : 2008.10.1.</li> <li>- 진료분 : 2008.1월부터</li> </ul> </li> <li>• 보훈감면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 2017.6.29.</li> <li>- 시행일 : 2017.7.1.</li> <li>- 진료분 : 2017.7월부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국비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 2005.8.3.</li> <li>- 시행일 : 2005.10.1.</li> </ul> </li> </ul>

표3.2-7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비교(계속)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심사수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보상금제도에 대한 투명성여부 지적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li> <li>감사원 감사결과(2005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훈의료수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수가</li> </ul> </li> <li>진료비심사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평가원 심사위탁</li> </ul> </li> </ul> </li> <li>정부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인 보훈의료수가 정립</li> <li>진료비 심사·평가 시스템 마련</li> <li>진료비 정산제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분업 이후 위탁진료비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진료비 적정성여부 부각</li> </ul> </li> <li>심사평가원 전문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li> <li>위탁진료비 추경예산 편성시 공신력 있는 전문심사 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 추진(국회지적사항)</li> </ul>
진료수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 적용</li> <li>건강보험수가 + 예외수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적용</li> <li>건강보험수가 + 예외수가</li> </ul> </li> <li>건강보험수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종별 가산율 적용</li> <li>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기준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훈국비진료의 건강보험수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별 가산율(25%) 적용</li> <li>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li> <li>단, 일부 행위료 및 재료대 별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료 체감제(91일째부터 등)</li> <li>내시경 검사시 색소(Lugol 등)</li> <li>사지마비 등에 산모용 PAD</li> <li>자가 처치용 : 산정기준 의함 (거즈, 탄력붕대, 크린조, 증류수)</li> <li>IVUS SONO 단독 시행시 재료</li> </ul> </li> </ul> </li> <li>보훈감면진료의 수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동일 적용</li> </ul> </li> </ul>	
진료수가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훈국비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료 별도 가산 (28%)</li> <li>100/100항목 별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급여(또는 비보험) 수가는 심사 수탁범위 외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간 직접처리 → 비급여 산정기준의 목록에 의함</li> </ul> </li> </ul> </li> <li>보훈감면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제외 : 식대, 치료재료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 제제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외수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100항목 별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파스류 등은 제외로 환자 전액 본인부담 ('09.7.28 진료분부터 적용)</li> </ul> </li> <li>비급여항목(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항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위소화제</li> <li>초음파, MRI(급여대상 및 산정기준 이외 비급여인 경우)</li> </ul> </li> </ul> </li> </ul>
업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 및 심사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 : 각 심사부서 및 수탁사업부</li> <li>심사기준 관리 : 수탁사업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 및 심사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 : 본·지원 심사부서</li> <li>심사기준 관리 : 수탁사업부</li> </ul> </li> </ul>
심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 800원, 외래 248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의 1.58배 수준</li> </ul> </li> <li>약국 66원 (보훈감면진료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 506원, 외래 157원 → 의료급여와 동일</li> <li>약국 66원, 보건기관 55원</li> </ul>

주 : '위탁병원'이란 국가보훈관계법령 중 의료자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을 의미함

### Ⅲ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심사

작성자 : 수탁사업부 주 - 정재홍  
부 - 전 연

### 1

#### 개념 및 목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을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지침」, 2017.3.)

####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 2

#### 주체

##### 가. 국가(보건복지부장관)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주체로서,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하고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동 사업의 간접 시행주체로서, 관할 의료기관에 사업지침 전파,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예산 집행 및 결산,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의료기관 결과보고서 평가, 시·도용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 사업 중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제시, 진료비 심사,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라. 사업시행 의료기관

동 사업의 직접 시행주체로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행정구역상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단,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표3.2-8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방법 및 절차
최초 등록 기관	등록신청 방법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구역상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신청 1) 공공의료 사업(무료진료 등) 실적: 최근 2년간의 연도별 동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실적 * 다만, 개설기간 2년 미만 등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무료진료 실적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장 최근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등급을 반영(‘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등급을 반영할 경우 등급이 ‘보통’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함 가능) 2) 사업계획서
	등록신청 시기 수시신청 가능
	사업시행 의료기관지정 시·도 1)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2) 결과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지정 유효기간 1년(당해연도)
기존 등록 기관	등록신청 방법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에 등록신청 1) 공공의료 사업(무료진료 등) 실적: 최근 2년간(지정일 ~ 당해연도 10.31.)의 실적 2)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등록신청 시기 지정 유효기간 만료 연도 11.1.~11.30.까지 해당 시·도에 등록신청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시·도 1)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부서류 등을 확인 2) 12월말까지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결과를 통보
	지정 유효기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 지정기간 중 허위청구 등 “동 사업 시행지침” 위반사례 시 지정 취소(지정 취소 시 2년간 등록신청에서 제외)

### 3 심사

#### 가. 개요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심사는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동 사업 시행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심사평가원은 동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청구방법 제시,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보건복지부)

#### 다. 심사·지급 절차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가와 「의료급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3.2-9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 10%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li> <li>-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시·도에는 전체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청구</li> </ul> </li> <li>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자체심의(의사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는 사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료비 청구서 제출 시에도 첨부</li> </ul> </li> </ul>	
지원 범위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li> <li>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적용)</li> <li>산전 진찰 지원(2010. 6. 추가)</li> <li>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급병상 입원료</li> <li>선택 진료비</li> <li>전액본인부담</li> <li>선별급여</li> <li>완화의료</li> <li>포괄간호 입원료</li> </ul>
다른 요양기관(3차 의료기관 등) 이송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송범위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예: 중대한 처치·수술 등)를 다른 요양기관(3차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음</li> <li>이송기간 : 중대한 처치·수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처치·수술 후에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원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를 완료한 후 전원 의뢰기관에 진료결과를 회신</li> <li>진료비 청구방법 : 이송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일괄청구하고 진료한 기관과 협의·정산</li> <li>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진료한 기관의 가산율 적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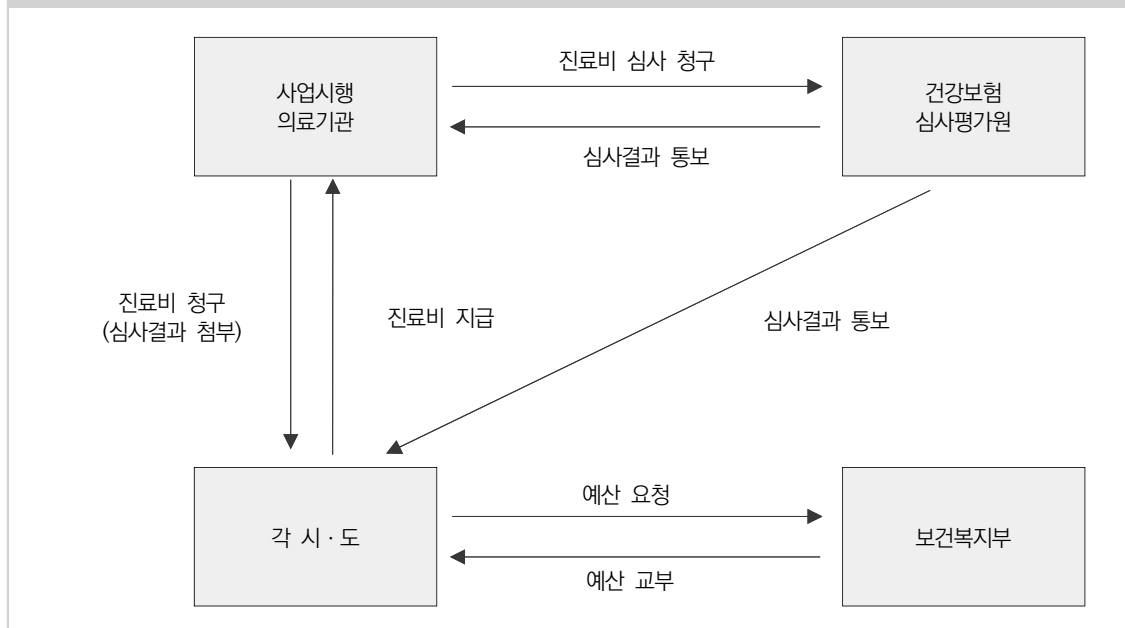
심사절차 및 방법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각 시·도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관할 시·도에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표3.2-10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절차

구분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시·도
2. 진료비 심사 청구	의료기관 → 심사평가원
3.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심사평가원 → 시·도 \ 의료기관
4. 진료비 청구(심사결과 첨부)	의료기관 → 시·도
5. 진료비 지급(지방비 매핑)	시·도 → 의료기관
6. 결산 및 정산	시·도 → 보건복지부
7. 실적보고	의료기관 → 시·도 → 보건복지부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3.2-8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절차도



## IV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운영

작성자 : 수탁사업부 주 - 정재홍  
부 - 이석규

### 1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 가. 개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부담하는 응급의료 비용 등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대신 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로부터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29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3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38호)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9호)

### 다. 권리와 의무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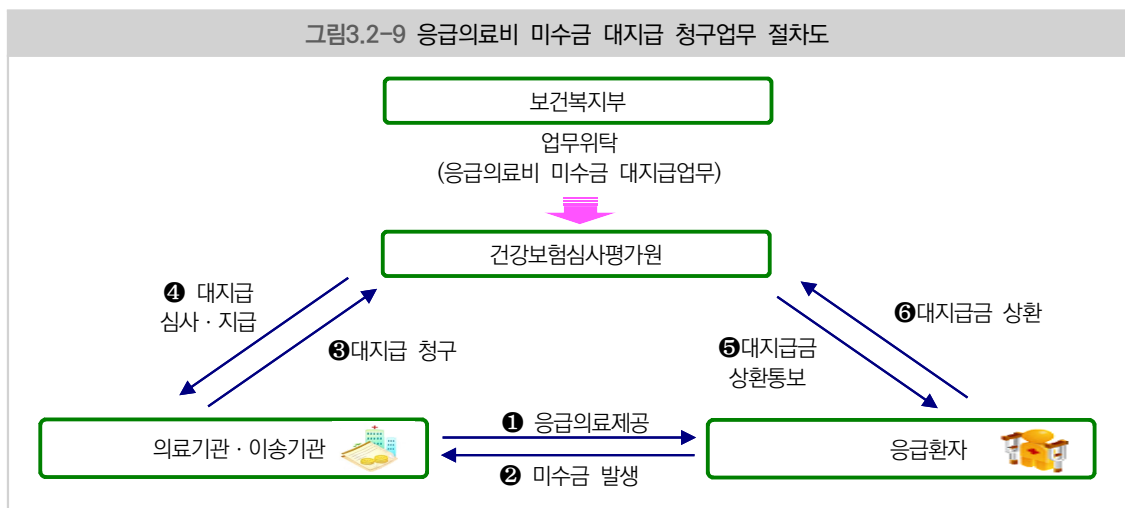
## 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중단의 금지)
  -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절차 및 방법

## 가. 대지급 청구업무 절차



## 나. 대지급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한방·요양), 의원(의원·치과·한방), 조산원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li> <l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ul>

## 다. 대지급 청구 대상 및 범위

### 1) 청구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2) 청구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3) 대지급금 청구범위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한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부담 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시·군·구)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 라. 대지급 산정범위

### 1) 응급의료비

-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미수금

## 2) 이송처치료(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자)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이송 하고 발생된 본인부담 미수금

### 마. 대지급 청구기간

- 1)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지급 받고자 할 경우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2)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의 일부를 응급환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 시기는 진료종료일로부터 3년이다.

### 바. 대지급 청구방법

#### 1) 대지급청구서 제출

- 서면 청구 : 의료기관(이송단체)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할 경우, ‘응급 환자 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청구서’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평가원(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에 제출
  - 웹(Web)/우편청구
    - 홈페이지(www.hira.or.kr) ‘(우측 상단)요양기관업무포털/정산관리/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1차 청구’에 접속
    - 내용작성 및 파일 첨부 후 전송
- ※ 다만,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시 10일 이내에 제출(도착)하여야 한다.

#### 2) 구비서류

응급의료비용	이송처치료 (이송기관용)
①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①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②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②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③ 진료기록부 사본(응급진료내역 표시) 1부 - 응급진료기간의 확인	③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④ 진료비계산서 사본(환자에게 발행) 1부 - 요양개시일로부터 퇴원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④ 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또는 이송기관장의 확인서) - 심사기준 서식 별지 제3, 4호 서식
⑤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또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서) - 심사기준 서식 별지 제3, 4호 서식	⑤ 이송업 허가증(최초 청구시)
	⑥ 대표자의 수납통장 사본(최초 청구시)

3

대지급 심사 및 지급

가. 심사의 일반원칙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심사평가원에 소속된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

2) 응급의료비용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및 의료급여법령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과 대조

나. 심사기준 적용 및 세부 인정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심사기준
- 국민건강보험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포함) 및 관련 고시
- 의료급여법령 및 관련 고시
-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 등

다. 보완자료 요청

- 1) 심사평가원장은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대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누락 등으로 대지급청구금의 심사·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
- 2)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고,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
- 3)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지급 청구서를 반려하고, 대지급 청구서를 반려 받은 의료기관 등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



## 라. 심사·지급결과 통보

- 1) 심사평가원장은 대지급 청구금을 심사·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통보서'를 의료기관 등에 통보
- 2) 심사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로 조정내역이 기재된 심사내역을 통보

## 마. 이의신청

### 1) 대상

- 심사평가원의 대지급청구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
  - ※ 서식: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별지 제1호

### 2) 이의신청기간

- 대지급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은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대지급 심사결과 및 지급통보서」가 당해 의료기관 등에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이의신청결과 통보

- 심사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를 의료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지급 구상절차

가. 상환고지

- 응급의료비용을 청구한 의료(이송)기관에 응급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행정 안전부로부터 응급환자의 주소를 파악한 후 7일 이내에 상환고지서를 송달함.
- 상환고지서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나. 독촉상환고지

- 1차 상환고지서 발송 후 상환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독촉 상환고지서를 송달함.
- 독촉상환고지서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함.

다. 분할상환고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일괄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으로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라. 일괄상환고지

-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일괄상환고지서를 송달함.
- 일괄상환고지서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함.

마.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2018.4.24.까지 지급분 해당)

- 독촉 및 일괄상환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에 대하여 관할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지급 명령 신청
-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계속 미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예금 채권 등 강제집행 신청

**바. 체납처분(2018.4.25.이후 지급분 해당)**

- 독촉상환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강제집행(압류)을 예고하는 납부최고서 송달함.
-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예금채권 등 강제집행 실시

# V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작성자 : 자보심사운영부 주 - 이덕규  
부 - 우영일

### 1 개요

#### 가. 추진배경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허위·과잉진료<sup>42</sup> 발생, 보험금 누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또한 각각의 보험회사(14개)와 공제조합(6개)이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함에 따라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의료기관과의 분쟁 발생<sup>43</su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6개 부처 합동<sup>44</sup>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10.12.)하였으며, 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sup>45</sup>,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 1월 전담부서인 자동차보험심사센터(1센터 5부)를 신설하고, 14개 보험회사(2018년 현재, 13개)와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 1일 진료 분부터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진료비 심사 수탁의 의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까지 수탁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심사와 더불어 제3자 심사라고 하는 객관성과 공공성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overuse)에 대한 일관된 점검, 약물의 안전성

42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보험개발원 자료, 2012)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 우리나라 47.9%(일본 5.5%, 8.7배)

43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 심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현황 : '05년(3,986건)대비 '12년(10,929건)

44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2.2.22.), 시행령('12.8.22.), 시행규칙('12.9.4.)

등에 대한 신속한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청구처의 단일화에 따른 편의성 제고와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도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찰효과로 인한 과잉·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자동차보험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불필요한 분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게됨으로써 국민들의 보험질서 의식 함양과 사회적 기회비용의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국민의료비의 총체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수탁 심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줄임으로써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행하여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다.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 현황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 7,698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2.5% 수준

(진료분야별)					
○ 의과분야	2016년	1조 1,915억원	→	2017년	1조 2,084억원 (1.4% 증가)
○ 치과분야	2016년	73억원	→	2017년	70억원 (4.9% 감소)
○ 한방분야	2016년	4,598억원	→	2017년	5,545억원 (20.6% 증가)
(입원외래별)					
○ 입원	2016년	1조 433억원	→	2017년	1조 887억원 (4.3% 증가)
○ 외래	2016년	6,153억원	→	2017년	6,812억원 (10.7% 증가)

- 2017년 청구건수는 1,588만건으로, 전년 1,553만건 대비 2.3% 증가
-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18,825개소로 개설의료기관의 28% 차지

## 라. 법적 근거

관련규정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12. 2. 22. 신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조정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12. 8. 22. 신설)	• 전문심사기관으로 심사평가원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5 (‘12. 9. 4. 신설)	•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 • 기타 세부사항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13. 5. 8. 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절차 • 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13. 6. 28. 개정)	•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산정방법 등

## 마. 자동차보험 운영 주체별 역할

기관명	주요업무
국토교통부	•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 관련 정책 수립(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규정, 대인·대물사고의 손해배상 보장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본정책 수립(보험업법) •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방법 규정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보험사기 조사 • 보험범죄신고센터, 소비자보호센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분쟁심의회	•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합의하여 만든 민사 자율 조정기구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의 심사·조정 • 진료수가 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제도 개선 연구, 손해보험사 경영통계 및 분석 • 입원환자 부재점검, 차량수리비 실태점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공제분쟁·민원지원 • 보험·공제 정책, 제도 등 연구·개발
보험회사·공제조합	•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 요양급여 검토·지급 및 보험료 부과·징수

## 2

## 자동차보험의 특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 및 자신의 인적 손해와 재물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의 일종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집중된 배상책임을 분산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운영주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표3.2-11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sup>46</sup>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운영 주체	제도의 목적	기본적 보장 (상호위험)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개인위험)	기본적 보장 (피해자 및 개인위험)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개인위험)
	운영주체	국가/공공기관	민간보험사	민간보험사	
	국가부양성	있음	없음	없음	
운영 목표	단기	재정균형 유지	이윤추구	이윤추구	
	장기	사회적 편익	상업적 이윤	상업적 이윤	
운영 원리	수급권	법적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법적·계약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보험가입 대상	강제가입 가입자 비선택 위험배제 없음	임의가입 가입자 선택 위험배제 있음	강제가입 가입자 비선택 위험배제 없음	임의가입 가입자 선택 위험배제 있음
	급여	균등급여	차등급여	균등급여	차등급여
	보험료 산정	집단적 등가성 능력(소득) 비례	개인적 등가성 위험률 비례	개인적 등가성 위험률 비례	개인적 등가성 위험률 비례

## 3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가. 일반사항

## 1) 목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46 심사평가원, 2010,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비교연구 논문

## 2) 적용범위

- 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나) 제1호의 보험금 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 제외
- 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 라)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 나. 용어 정의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나) 교통사고환자: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
- 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 라)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마) 보험회사등: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 다.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산정방법

### 1) 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2)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제외대상

### 가) 인정범위

#### (1) 건강보험 기준 적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3항 및 제34항

(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다) 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2)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정하는 사항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 나) 제외대상

#### (1) 명백히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예외〉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 (2)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예외〉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 (3)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예외〉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 (4)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예외>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통원 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발생한 진료비  
⇒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비는 제외한다.

### 3) 진료수가 산정방법

#### 가) 일반원칙

- (1) 건강보험기준 : 상대가치점수·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는 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 (2) 장애인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별표2], 산재: 그 항목의 점수 및 금액
- (4) 건강보험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별표2], 산재에서 비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
- (5)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실구입가

#### 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별표2], 산재의 각 인정범위 중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 별도로 가산을 인정하는 항목은 제외
  - ※ 종별가산율 인정항목: 어-3 증식치료, 어-4 도수치료 등

### 4) 퇴원·전원

-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은 환자(보호자 포함) 및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한다.
  -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 교통사고환자가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등은 퇴원·전원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 환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 지급 보증증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가. 일반사항

#### 1) 목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규정

#### 2) 적용범위

-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경우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 나. 용어 정의

- 비용산정목록표 :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비급여행위,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결정신청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의 항목 중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
-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건강보험기준에서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실제 구입가격에 대한 목록표

###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절차

#### 1) 진료수가의 청구

- 가) 청구처 :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본원)
- 나) 청구주체 :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
- 다)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구가 원칙,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서면청구 허용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라) 청구단위 : 건강보험과 동일(월 또는 주단위 청구)
- 마) 작성방법 : 건강보험과 동일(입원 통합 작성, 외래 일자별 작성)
- 바)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
  - (1) 의과·치과·한방, 입원과 외래로 구분
  - (2)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환자납부액 세부내역 기재

\* 사고접수번호 :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 등에서 부여한 번호, 보험회사별로 부여방식 및 자릿수 상이  
 \* 지급보증번호 :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의사와 한도를 통지받은 관리번호 (17자리)

사) 세부작성요령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심사 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

아) 필수 제출자료

표3.2-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필수 제출자료

종류	세부항목	비고
원료약, 급여치료재료, 급여 자체 조제(제제)약 구입목록표	건강보험과 동일	건강보험 구입목록 신고분은 제출 생략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비용산정목록표 (비급여행위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및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결정 신청 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의 항목 중 실제 소요 비용, 실구입가 등으로 명시된 수가 예) 한방물리요법, 상급병실료, 팔걸이, 캐스트신발, 한방생약제제 등	1개 코드에 세부명칭·금액이 여러 개인 경우 참조란에 세부명칭 기재 (서면 작성 시 분류명에 괄호를 삽입 하여 표기)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 비급여약제 - 보훈급여약제(건위소화제) 등 상한가가 없는 의약품	※ 거래명세서 등 구입 증빙자료 제출
자체 조제(제제)약 구입목록표	비급여약제를 포함하여 조제(제제)한 경우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복지부 고시 비급여치료재료목록에 있는 재료대 (상한가가 없는 재료대)	

## 2) 접수

- 가)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접수(반송)증 발급, 보험회사 등에 청구사실 통보
- 나) 보험회사 등은 청구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자격점검결과와 심사참고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송부

## 3) 심사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나)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자문단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아 심사

## 4) 심사결과 통보 및 지급

### 가)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에 통보
  - ※ 서면청구 대상기관의 경우 서면으로 통보

### 나) 진료수가 지급

- 보험회사 등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수가 지급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청구요청을 받은 환자납부액(직불진료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또는 정산 가능

### 다) 이의제기

- 주체 :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
- 신청기간 : 진료수가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처리기간 :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업무 흐름도



**5**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가 자문단

가. 일반사항

1) 목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및 심사기준 개발 등과 관련, 대내·외 전문성, 객관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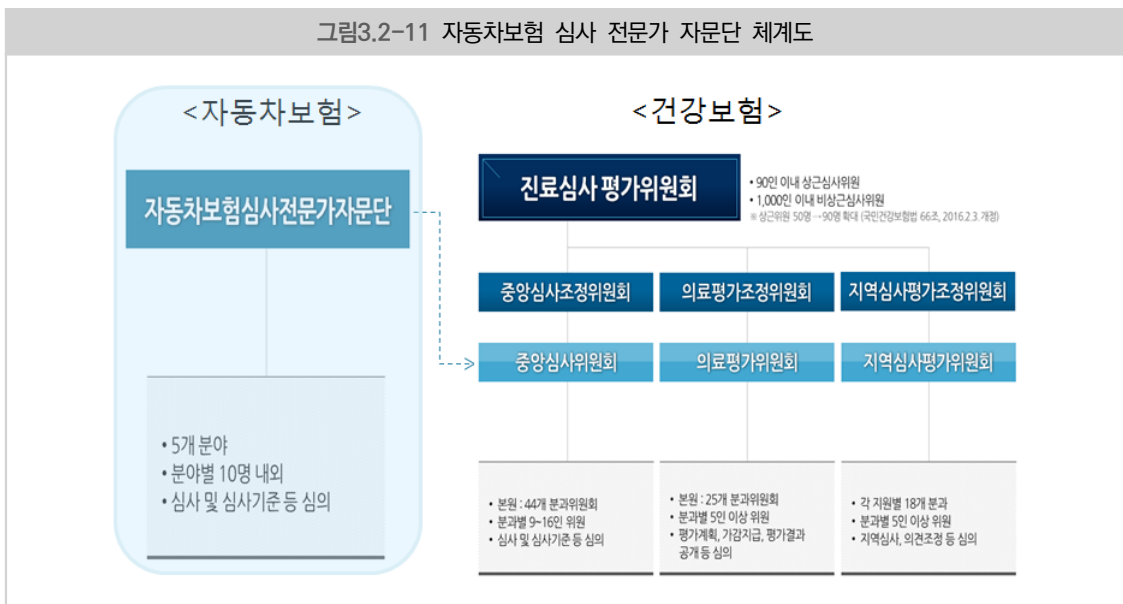
- 심사직원 1차 심사 및 이의제기건 중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자문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심사건 중 합의방식의 심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 심사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2)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위원의 자격)

3) 전문가 자문단 체계도

- 전문가자문단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내에 설치 운영



## VI

# 입원적정성 심사

작성자 : 공공심사부 주 - 조강수  
부 - 채수연

### 1

## 입원적정성 심사 개요

### 가. 정의

입원적정성 심사는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 또는 소송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한 입원필요성 및 적정 입원일수를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그간의 추진경과

- 2003년 이전 : 행정응원 차원의 공공기관 심의의뢰업무 본·지원별 건별처리
- 2003년 5월 : 직제규정시행규칙에 공공기관 심의의뢰관련 업무분장 명시
- 2015년 1월 : 공공기관 심의의뢰 업무 전담부서 신설(공공심사부, 정원 21명)
- 2016년 9월 : 보험사기행위관련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로 명문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 2017년 2월 : 입원적정성 심사업무관련 공공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2

## 법적근거

##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형사소송법」

제179조의 2(감정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조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3

## 입원적정성 심사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차이

구분	입원적정성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
법적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업무정의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 시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요양급여 기준 및 심사지침 등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
접수 및 통보기관	수사기관(경찰, 검찰)	요양기관(의료기관)
심사관점	환자	요양기관(의료기관)
심사단위	의뢰받은 전체 입원(통상 10년) - 공소시효 10년(형법 제347조)	입원 진료당(매월) -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1호)
심사기준	의학적 타당성	요양급여기준, 심사지침, 의학적 타당성 등
심사절차	1단계) 심사위원 심사 2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1단계) 심사직원 심사 2단계) 심사위원 심사 3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자료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요양기관이 작성한 청구명세서 등

구분	입원적정성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범위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의료행위별 수가 및 심사기준의 적합성 등
관리구제 등	<b>【수사단계시】</b> 경찰·검찰에 대하여 자료제출 <b>【소송진행시】</b> 현재 진행중인 법원 소송절차 이용 (형사소송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실조회요청 또는 증인소환, 수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기관에 감정의뢰)	행정청(심사평가원 등)의 관리구제 절차 이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 4 입원적정성 심사 원칙 및 기준

### 가. 심사원칙

- 1)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된 전체 건을 공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다.
- 2) 심사 의뢰된 대상자의 입원건별로 심사한다.
  - 대상자의 전체 입원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순서대로 심사
- 3)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된 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토대로 심사한다.
  - 수사과정에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제출받아 심사
  - 자료 미제출 등으로 환자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검토불가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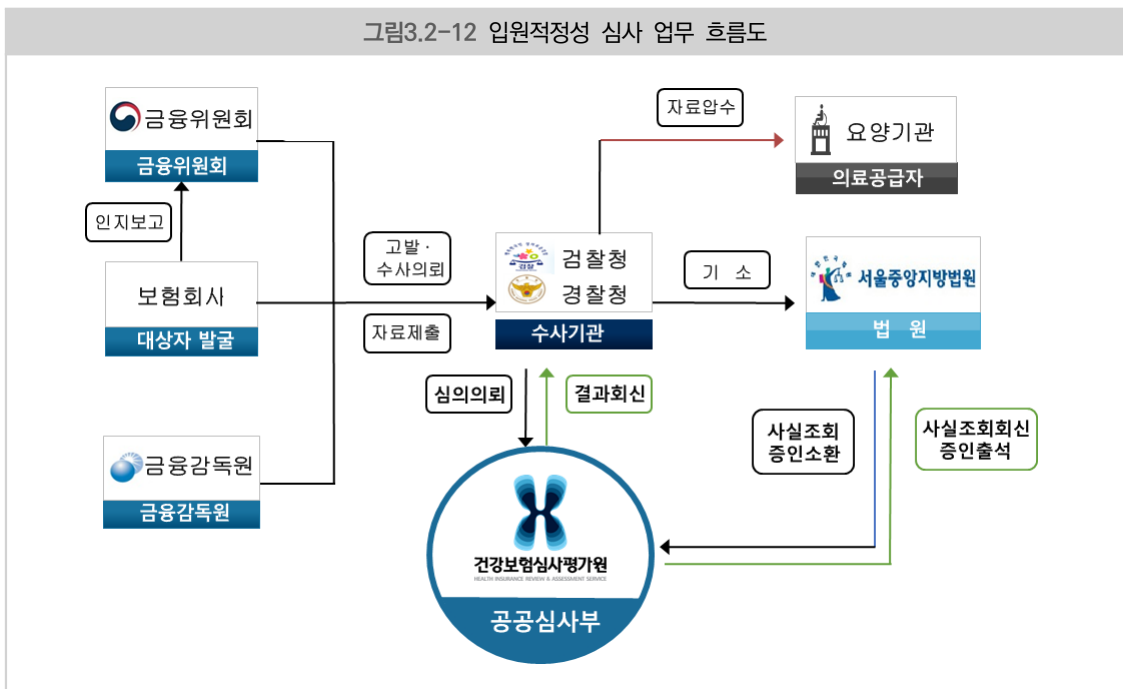
### 나. 심사기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부(의사처방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등), 간호기록부(투약기록, 간호기록 등), 검사(진단)결과지 등을 토대로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한다.

## 5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흐름

- 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수사가 개시되면 혐의병원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압수물(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뢰 공문과 관련 자료(입원일람표,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 나. 심사평가원은 의뢰된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의뢰기관에 통보한다.
- 다. 심사결과 통보받은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보험계약자등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다.
- 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증인소환을 요청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사실조회 답변 또는 증인소환에 응한다.



## 6

##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절차

## 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접수 및 분배

의뢰 공문서와 첨부한 자료(입원일람표,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확인한 후 의뢰기관에 접수 확인 및 처리진행 안내 문서를 시행하고, 실무담당자에게 해당 의뢰 건을 분배한다.

### 나. 분석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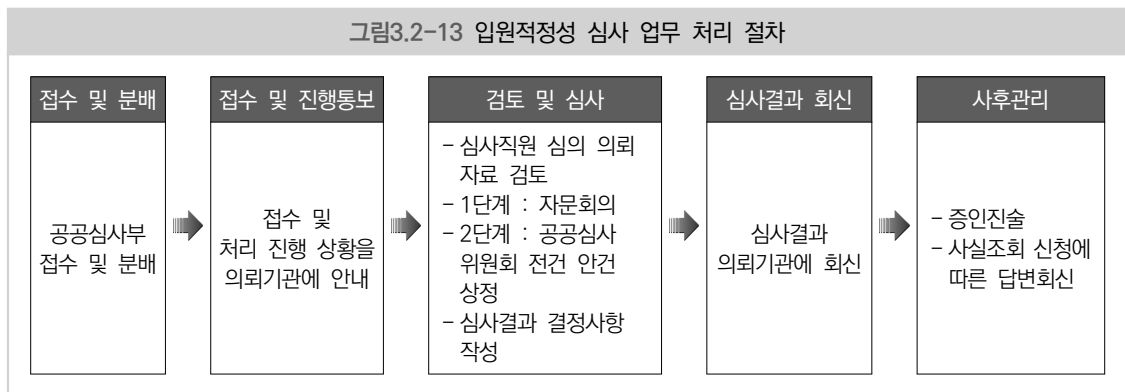
- 1) 실무담당자는 대상자별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정리한다. 이때 입원일람표(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목록표)상의 입원 차수별, 입원·퇴원일/진단명/경과기록 및 간호기록/검사결과 및 X-ray 소견 등을 분석 후 ‘진료기록 분석지’를 작성한다.
- 2) 실무담당자는 공공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분석지를 첨부하여 공공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실무담당자가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지를 토대로 대상자별 적정 입원일수를 결정한다.
- 3) 입원적정성 심사절차는 1단계 심사위원의 자문을 거쳐, 2단계 공공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운영된다.

### 다. 심사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공공심사위원회 회의종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별 입원차수별로 적정 입원일수 및 결정사유 등을 포함하는 회신문을 작성·발송한다.

### 라. 사후관리(사실조회 답변, 증인출석 등)

- 1) 입원적정성 회신관련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때 전문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는 공공심사위원회 위원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자문(회의),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한다.
- 2) 법원의 증인소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한다.



## 7

##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 총 19인**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위원장 포함)
- 2) 외부위원(9인) : 의학단체 추천
  - 대한의학회(2), 대한의사협회(2), 대한병원협회(2), 대한개원의협의회(2), 대한한 의사협회(1)
- 3) 임기 : 2년(위원 변경 위촉시 전임자의 잔여기간)

**나. 운영****1) 합동자문 또는 개별자문(1단계)**

- 가) 자문회의를 통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자문
- 나) 공공심사위원회 위원과 세부전문과목이 다른 분야 건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별도 자문

**2) 공공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2단계)**

- 가) 전체 건에 대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심의 · 결정
- 나) 자문완료 건(보고 안건)은 추인, 이외 건은 심의





# 제3장

## 현지조사

- I. 현지조사 개요
- II. 현지조사 업무절차
- III. 부당·거짓청구 개념 및 사례
- IV. 자율점검





# 제3장

## 현지조사

### I

### 현지조사 개요

작성자 : 조사운영부 주 - 김연숙  
부 - 서동희

#### 1

#### 정의 및 근거

##### 가. 현지조사의 정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대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 현지조사 업무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기관수,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기간 등에 및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를 관장한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상기관 선정, 조사 실시, 정산심사, 행정처분, 의견청취 및 사후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사후관리(자격·인력 확인 등) 등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현지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동법 제99조(과징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등), 동법 제29조(과징금 등)

요양(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으로 요양(의료급여)기관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3) 형사처벌

- 벌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의료급여법」 제35조)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의료급여법」 제37조(과태료)

### 4) 부당금액 환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의료급여의 경우는 시·군·구)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5) 명단공개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건강보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공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2

## 기능

### 가. 거짓·부당청구 예방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거짓·부당내용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파급효과(경찰효과)를 높인다.

### 나. 심사에 대한 보완·확장

심사는 요양기관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신뢰 하에서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청구내용의 사실관계(실제 진료가 존재한 것인지, 실제 행위·약제의 사용과 일치하는지 등) 및 수진자 부담금의 과다징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사후적 심사 영역을 보완·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기능으로서 현지조사제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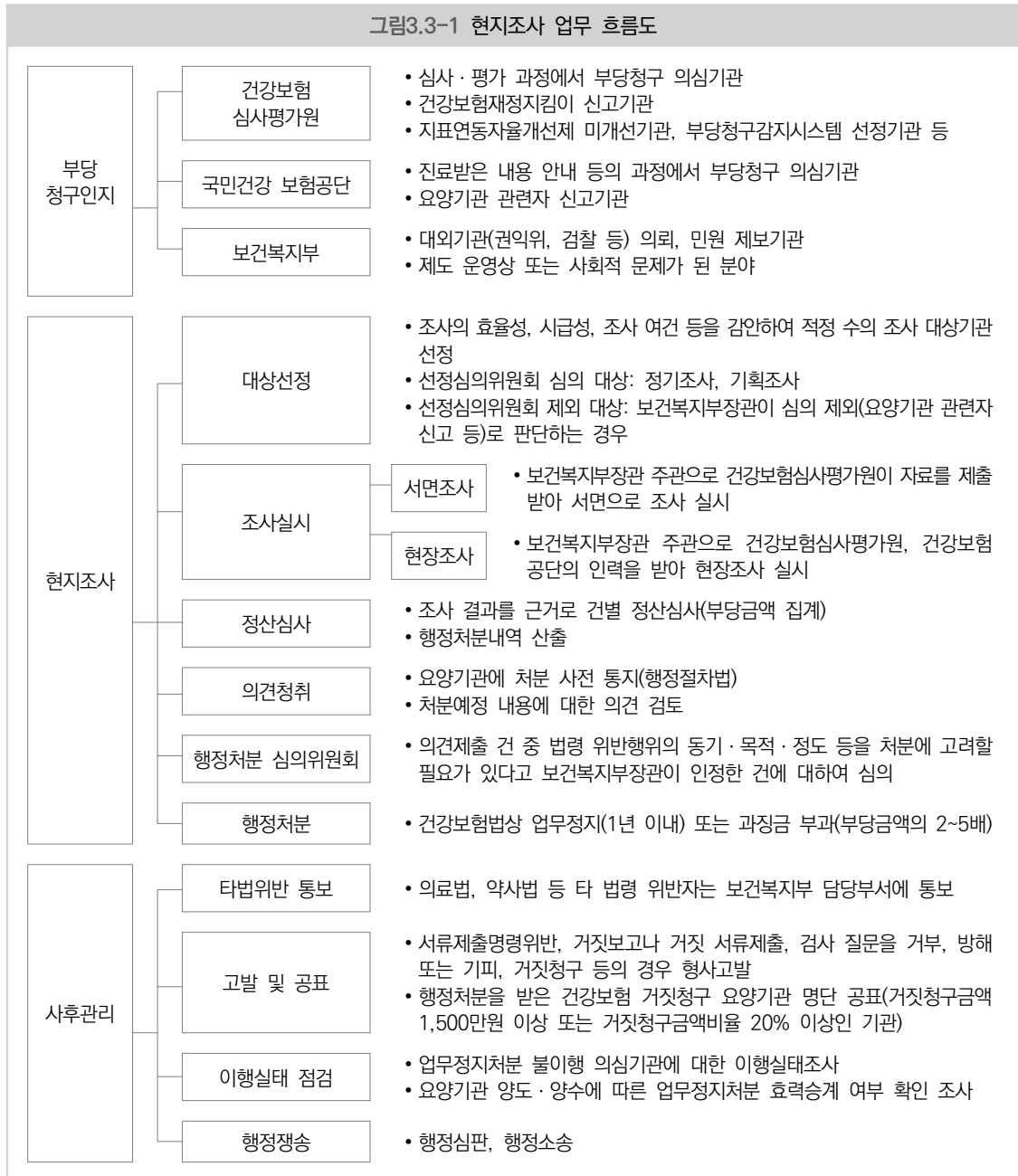
### 다.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와 수급권 보호

이러한 거짓·부당청구 예방, 심사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II

현지조사 업무절차

그림3.3-1 현지조사 업무 흐름도



## 1

## 부당청구 인지

## 가. 인지유형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하는 과정 중 보완자료 검토 등을 통해 부당 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 인지
- 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통한 부당청구 인지
- 다) 의료자원 등의 관리 업무 및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업무를 통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인지
- 라)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진찰료 단독청구, 요양급여비용 지연청구 등을 상시분석·모니터링하여 거짓·부당청구 인지
- 마)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기관 중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실명 제보에 국한)

##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진료내역 통보제의 수진자 회신결과를 통한 부당청구 의심 기관 인지
- 나) 급여사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자동차보험건 이중청구기관, 수진자별 진료내역상 이중 청구 기관
- 다) 공익신고 포상제를 통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인지

## ※ 공익신고 포상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거짓청구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로 확인된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3) 보건복지부

- 검찰, 언론, 제보, 심사평가원 및 공단 의뢰를 통한 부당청구 인지

## 2 현지조사 실시

### 가. 조사대상기관 선정

#### 1) 일반원칙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간 현지조사 계획 및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 선정
- 나)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다만, 사회적 이슈, 부당청구 행태 개선 목적, 조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의 규모·정도와 관계없이 조사 가능
- 다) ‘조사대상 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 제고를 위하여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보건복지부 위원)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1. 공공위원(3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 각 1명
  2. 의약단체위원(5명):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각 1명
  3. 시민단체위원(1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명
  4. 법조계, 전문가 등 위원: 변호사, 교수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 3명
- 임기 :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개정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객관적·합리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 실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심사평가원은 검토결과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심사평가원은 지표 점검기관 또는 기획조사인 경우는 선정기준과 지표 분석 내용을, 그 외 의뢰기관인 경우에는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기준**

- 정기조사(기획조사 포함) 대상기관 중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대상기관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및 보장기관(시·군·구) 및 감사원에서 의뢰하는 기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현지조사대상 제외 기준**

- 부당청구 의뢰(인지) 기간이 기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인 경우. 다만, 새로운 거짓·부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규개설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편법개설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 다만, 거짓청구기관과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기관, 자료제출 거부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기조사**

가) 대외기관에서 조사 의뢰한 기관

검·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행정부처 등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어 조사 의뢰된 기관으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나) 민원제보기관

-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신고된 기관 중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실명의 제보에 한함)
- 다만, 신고된 부당내용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요양기관
  -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가급적 공단으로 안내 또는 이첩하여 포상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타 기관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분쟁 방지

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라)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된 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의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다 발생 요양기관 중, 발생건수·부당건수(비율)·부당금액·부당내용, 본인부담 과다징수 자율개선 정도 등을 검토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의뢰한 기관

- (1) 진료 받은 내역 안내 및 문의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요양기관
- (2) 요양기관 관련자 등에 의해 신고된 요양기관
- (3)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1)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심사·평가’라 함), ‘건강보험재정 지킴이 신고’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요양기관
- (2) 심사·평가상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요양기관 등
- (3)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아) 보장기관에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

연간 급여일수 통보, 의료급여 사례 관리 및 진료받은 내용 문의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요양기관



### 3) 기획조사

가)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진료비 청구행태를 보이는 분야 선정
  - 동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 계도

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

기타 관례적 · 집단적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한 분야

### 4) 긴급조사

-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조사 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거짓 ·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
  - 거짓 · 부당 청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 요양기관  
(예 :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기 등)
  - 조사 대상기관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 등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

### 5) 이행실태조사

건강보험(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당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 또는 해당 처분의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 나. 현지조사과정

### 1) 조사대상 기간

가) 정기조사

- (1) 지표분석 결과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간 3개월과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조사

※ 지표점검기관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또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기관 등 청구경향 및 민원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조사의뢰된 기간과 조사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지급비용 및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지급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지급비용을 조사
- (3) 의뢰기간 직후 3개월 지급비용과 조사명령서 발부일 기준 최근 3개월 지급비용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당해 기간은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한다.(단, 의뢰된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이 타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
- (4) 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여 조사
  -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조제 또는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등)의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의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나)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 (1) 기획조사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진료분 조사
- (2) 긴급조사는 정기조사에 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설정하되, 검·경찰 등에서 의뢰한 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하여 36개월 범위에서 조사
- (3) 기획조사 및 긴급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은 정기조사에 준하여 적용
- (4) 이행실태 조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다.

## 2) 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

### 가) 서면조사

서면조사 대상기관에 조사명령서 및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

### 나) 현장조사

#### (1) 개괄적 사전공개

-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하여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인력 수 및 조사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공개 할 수 있다.

**(2) 사전통지**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전에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 다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 방법으로 통지

**3) 자료제출요구**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진료비용(약제비용)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물리치료 등 각종 검사대장, 의약품구입증빙자료, 일반현황 등 조사자료 제출요구

**4) 질문 및 검사**

요양급여 기준 준수 등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 관련 적법 여부 확인

**(1) 주요 확인 내용**

-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 및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 관계규정 준수 여부 등

**(2) 확인 방법**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진자조회
- 관련자료 거짓작성 여부 확인 등

**5) 확인서 징구**

확인된 부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양기관의 대표자 서명날인

**6) 결과보고**

해당 차수 현지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추정부당금액, 부당사실 확인기관 분석내역, 부당청구 유형, 향후 업무처리 계획 등)

## 다. 정산심사

### 1) 정산심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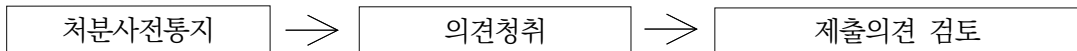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지급받거나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과정에서 징구한 확인서에 의거 진료항목별, 부당청구 유형별, 정산환급 방법별로 세분·집계하여 부당금액을 산출한다.

### 2) 정산심사결과 보고

- 정산심사집계 결과를 기준으로 정산심사결과 및 행정처분산출내역 보고서를 작성한다.
-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 라. 의견청취

### 1) 업무처리절차



### 2) 절차별 업무내용

현지조사결과는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이 따르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 가) 처분의 사전통지

-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2) 통지내용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및 법적근거
  -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 (2) 의견청취 방법
  - 의견제출은 구두, 우편 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의견서 제출

## (3)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 (4) 제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 보험평가과
-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과

※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 제출의견 검토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정산심사, 재처분양정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 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심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운영 : 정기회의는 연 2회(반기별),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포함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한 요양기관 중에서 위반행위 동기
  - 목적·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대상 선정
  - 다만, 거짓청구 내역에 대한 제출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다.

## 바. 처분

### 1) 처분의 종류

-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 의료법령 및 약사법령 등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 2) 처분 세부내역

#### 가) 부당이득금 환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 환수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된 공단 또는 수진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공단에 통보한다.
- 수진자 부담분은 공단이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환급한다.

#### 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2) 업무정지처분

-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계산
-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180일 또는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적용한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적용한다.

(3) 과징금 부과 처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다.
-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 (4) 가중처분

- 법 제98조제1항·제5항 및 제99조제1항·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 (5) 감면처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 업무정지 처분기준(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시행령 제70조제1항)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3.3-1 현지조사 업무정지기간 처분기준

(단위 :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5	25	35	45	55

표3.3-1 현지조사 업무정지기간 처분기준(계속)

(단위 : 일수)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5	35	45	55	65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5	45	55	65	75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5	55	65	75	85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	60	70	80	9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5	65	75	85	95
1억원 이상	60	70	80	90	100

※ 비교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 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 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0일로 보며,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365일로 본다.

※ 업무정지처분승계(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며, 요양급여의 하나인 처방행위도 건강보험으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 ○ 면허자격정지처분

##### - 거짓청구

- 관련근거 : 「의료법」 제66조제1항, 제68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약사법」 제79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8)
- 면허자격정지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한다.

##### - 기타

- 관련근거 : 「의료법」 제66조제1항, 「약사법」 제79조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 면허자격정지내용 : 기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 3

### 사후관리

#### 가. 사후관리의 개념 및 종류

현지조사 사후관리는 현지조사결과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처분 이행여부 및 동일한 부당행위를 계속 행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사후관리를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형사고발 및 명단공표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지 또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여부, 처분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지의 사실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업무를 말한다. 조사결과 실제로 처분 받은 자가 요양기관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전액 환수, 가중처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 다. 형사고발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서류 제출 명령위반, 거짓 보고·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진료비 거짓청구 고발기준(거짓청구금액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제347조 사기)에 의해 형사고발 한다.

#### 라.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업무로 구분된다.

#### 마.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현지조사,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당청구의 사전적 예방과 더불어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 문화 조성 및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거짓청구기관의 명단공표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명단공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등을 공표한다.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 2) 공표대상

-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 3) 공표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2명
- 임기 : 위원(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표여부 결정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 4)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 5) 공표방법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관할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에 추가 공표 가능

### 6) 공표 절차

- 1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2차 심의(재심의) → 대상자 최종 확정 및 공표

### Ⅲ

## 부당·거짓청구 개념 및 사례

### 1

#### 부당청구

#### 가. 개념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

- 법령상 기준 위반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정

#### 나. 유형 및 사례

##### 1)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청구

-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용을 청구한 행위  
예)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청구

##### 2)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및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및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정해져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  
예) 통증자가조절장치(PCA)는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150,000 원을 환자에게 징수

## 2 거짓청구

### 가.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 이러한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

### 나. 유형 및 사례

- 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 관리의사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것으로 진료기록부(전자기록 포함)에 기록하고 원외처방전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약국에 전달 후 진찰료 등을 청구
- 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 및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소청 룡탕)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로,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거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
- 4)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 X-ray 1회 촬영 후, 2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청구
- 5)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병동 전담인력으로 신고하여 입원료 등급을 상향하여 청구
- 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심전도검사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 등이 실시하여 청구한 경우

## IV

# 자율점검

### 1

## 개념 및 법적 근거

### 가. 자율점검제 개념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제4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2 및 제16조의4 별표3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2018-223, 2018.11.1. 시행)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제2018-222, 2018.11.1. 시행)

### 2

## 목적

- 가.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보험재정 누수 방지
- 다.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 라. 자율 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3 자율점검 주기 및 대상

#### 가. 자율점검 주기

##### 1) 정기

항목별 사업추진 연간계획 수립, 해당 자율점검 항목 및 대상자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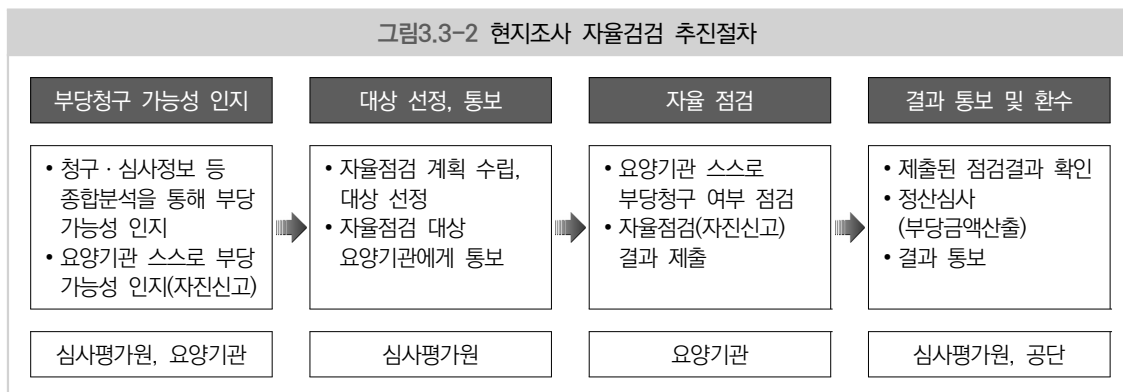
##### 2) 수시

보험급여 정책 변화, 사회적 이슈, 긴급하게 부당청구 실태파악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당의 개연성이 인지되는 경우 수시 시행

#### 나. 자율점검 대상

- 1)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 2) 부당청구 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

### 4 자율점검 추진절차



### 가. 자율점검 계획 수립

- 1) 심사평가원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점검 항목<sup>47</sup> 선정 후 자율점검 계획 수립
  - 가) 부당청구의 가능성 : 인지경로, 증거자료 여부 등
  - 나) 부당청구의 규모와 정도 : 부당유형, 부당금액 등
  - 다) 시급성
- 2) 자율점검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가)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 나) 자율점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 다)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
  - 라) 통보·결과제출·접수·처리 단계별 절차·방법·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 마) 그 밖에 효율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통보대상자 검토 등을 위해 의·약학 전문 분야별 의견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회의 가능

### 나. 자율점검 대상선정

#### 1) 선정 기준

- 가) 정기
  - 전산입력 오류, 수가적용 착오, 신고 누락 등으로 부당청구 가능성이 인지되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우선 선정
- 나) 수시
  - 보험급여 정책변화, 사회적 이슈로 인한 부당청구 가능성이 인지되거나, 긴급하게 부당청구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수시 선정 가능
- 다) 부당청구 내용이 중대한 타법 위반이나 거짓청구 등의 경우 현지조사 확인원칙

47 ① 진찰·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②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 ③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④ 인력·시설·장비 등



## 2) 선정대상 통보기간

분석시점의 최근 지급된 진료분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직전 반기 마지막 월 기준, 최대 36개월 진료분<sup>48</sup>을 통보

## 다. 자율점검 대상통보

### 1) 자율점검 방법, 절차 등 안내사항 통보

- 자율점검 항목
-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의 수진자의 성명·성별·연령, 또는 수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일련번호 등)
- 수진자의 내원일자(또는 당월 요양개시일)별 자율점검 항목의 상세내역
- 업무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 2) 재통보 주기

- 기 통보된 부당감지 대상항목은 통상 1년 주기로 재통보 시행
- 이전 자율점검 통보 결과 실효성 정도(부당적증률, 자진신고율, 환수금액 등), 항목별 모니터링 결과, 수거나 급여기준 변동사항 등 반영

###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통해 안내
- 관련 의약단체 사전 안내 및 의견청취 실시
- 심사평가원 및 관련 의약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 기관별 통보서 수령 및 통보내역 인지 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

### 4) 현장안내

항목별 특성, 부당의 정도, 제도 효과, 자율점검 효과증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현장 안내

<sup>48</sup> 통보대상기간 이후 지급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최근 진료분까지 신고 가능

6

자율점검 실시

가. 자율점검

1) 접수기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점검내용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주요내용, 대상기간 등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내부 자료를 확인하여 부당청구 여부 점검

3) 제출자료

부당여부 상관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소명에 관한 서류 제출

- (부당) 부당청구 내역 및 사실 관계 등 작성, 부당금액 환수 동의서 제출
- (정당) 청구의 정당성 및 사유 등 작성, 증빙자료 첨부

4) 제출방법

직접 방문 하거나 등기우편,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

나. 자료제출 재요청

1) 제출기한 연장 요청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 가능

2) 연장 통보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연장 안내

## 7

## 자율점검 내용 확인

## 가. 확인내용

- 1) 제출한 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 2) 관계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청구 심사정보 등과 자율점검 결과를 비교하여 부당 규모·금액 등 적정 여부 등

## 나. 보완요청

- 1)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서면으로 보완 요청
- 2)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

## 다. 수진자 조회

자율점검대상자의 제출한 자료가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진료받은 내용 확인 가능

## 8

## 자율점검 결과 처리

## 가. 정산(부당금액 산출)

- 1) 자율점검 확인 결과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진료 건 등에 대하여 접수번호별 건별 정산
- 2) 기 조사 및 재심사에 의한 기 정산금액 등 확인 하여 중복 정산 방지

## 나. 자율점검 결과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자율점검 부당금액 정산 결과에 대해 심사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 및 정산심사내역서를 요양기관에 송부

- 2) 자율점검 결과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정산심사내역서를 공단에게 송부

#### 다. 부당이득금 환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 라. 자율점검 처리 결과

##### 1) 성실 자율점검대상자

- 가) 성실하게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내용에 한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면제 가능
- 나) 자율점검 내역과 다른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미 성실하게 자율점검한 내역(항목,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대상범위에서 제외

##### 2)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 가) 처리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sup>49</sup>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성실 자율점검 대상자로 관리
- 나)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

#####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 ① 미신고자 :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연장 통보 기간 포함)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허위자료 제출자 :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시 위·변조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③ 반복 부당청구자 : 동일 자율점검 항목을 2회 이상 부당청구가 확인된 자
- ④ 多 항목 자율점검대상자 : 동시 3항목 이상 점검이 필요한 자

<sup>49</sup>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

## 9

## 자율점검 사후관리

## 가. 자율점검 모니터링 개요

- 1) 자율점검 항목별 요양기관 청구행태<sup>50</sup>등 모니터링 실시
- 2) 자율점검 항목별 모니터링 결과는 6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자율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
- 3)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현장(서면)조사 및 심사·평가 연계, 의약단체 등 관계 기관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

## 나. 항목별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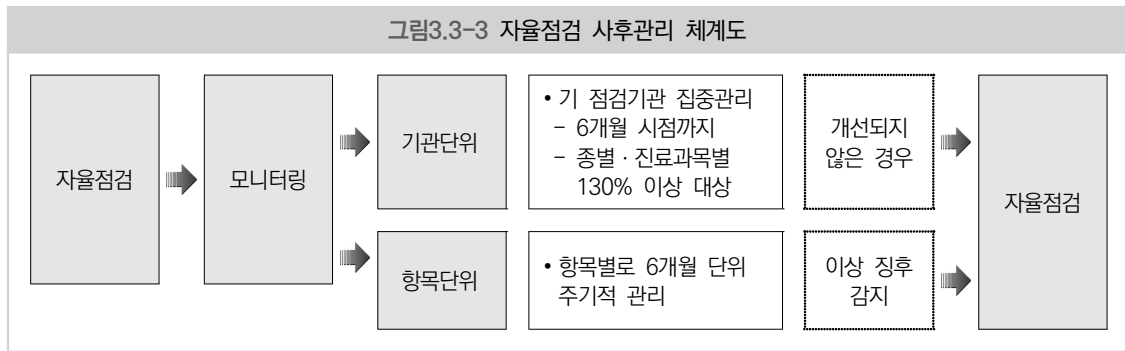
- 1) 착오 청구 등 자율점검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2) 모니터링 항목의 이상 징후 감지 시 자율점검 대상 항목으로 선정

## 다. 기관별 모니터링

- 1) 자율점검 대상기관에 대해 자율점검 이후 개선여부 집중관리
  - 가) 부당금액 환수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 청구현황 비교 분석
  - 나) 종별·진료과목별 동일 그룹 내 평균 대비 130%이상 기관 집중관리
  - 다) 집중관리 기간(6개월) 이후 개선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
- 2) 부당청구가 확인 된 경우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전환
 

기 자율점검 대상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부당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 모니터링 실시

50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부당확인 여부 및 자율점검 전후 청구 추이분석 포함





# 제4장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I. 적정성 평가 개요

II. 평가개념 및 범위

III. 평가의 절차와 방법

IV. 평가결과 활용

IV-1. 가감지급

IV-2.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사업

IV-3. 질 향상(QI) 지원사업

V.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VI.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 제4장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I

### 적정성 평가 개요

작성자 : 평가운영부 주 - 서희숙  
부 - 정태영

#### 1

#### 도입배경

##### 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및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 나.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의료계 관심 대두

1981년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표준화심사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는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료서비스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 질 향상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정부주도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개념 정립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부족하였다.

##### 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질 평가 요구 증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기준과의 부합여부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또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다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일당정액수가제의 경우 과소 서비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 간에도 진료수준의 변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질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로 신설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요양급여)의 질 향상 및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와는 다른 관리기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업무가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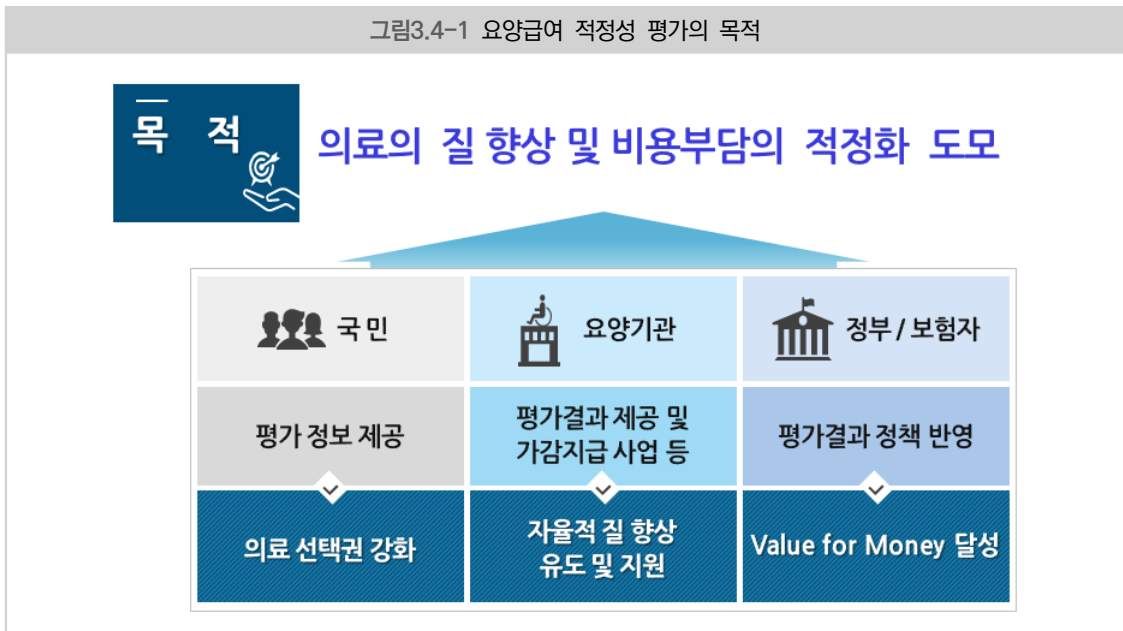
- 서비스 과다·과소제공의 가능성
  - 행위별수가의 경우 불필요한 서비스 과다제공(over-use) 가능성
  - 의료자원의 낭비 및 의원성(醫原性: iatrogenic) 질환 초래 가능성
  - 의료제공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과소제공(under-use) 가능성
  - 일당정액수가, 포괄수가의 경우 서비스 과소제공 가능성
- 서비스 오용(mis-use)의 가능성
  -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의 발생 가능성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
  - 같은 수가를 받는 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 발생

## 2

## 목적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시술·투약·검사 등의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율적인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림3.4-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 3

## 평가 추진 과정

## 가. 변천과정

## 1) 도입기(2000년~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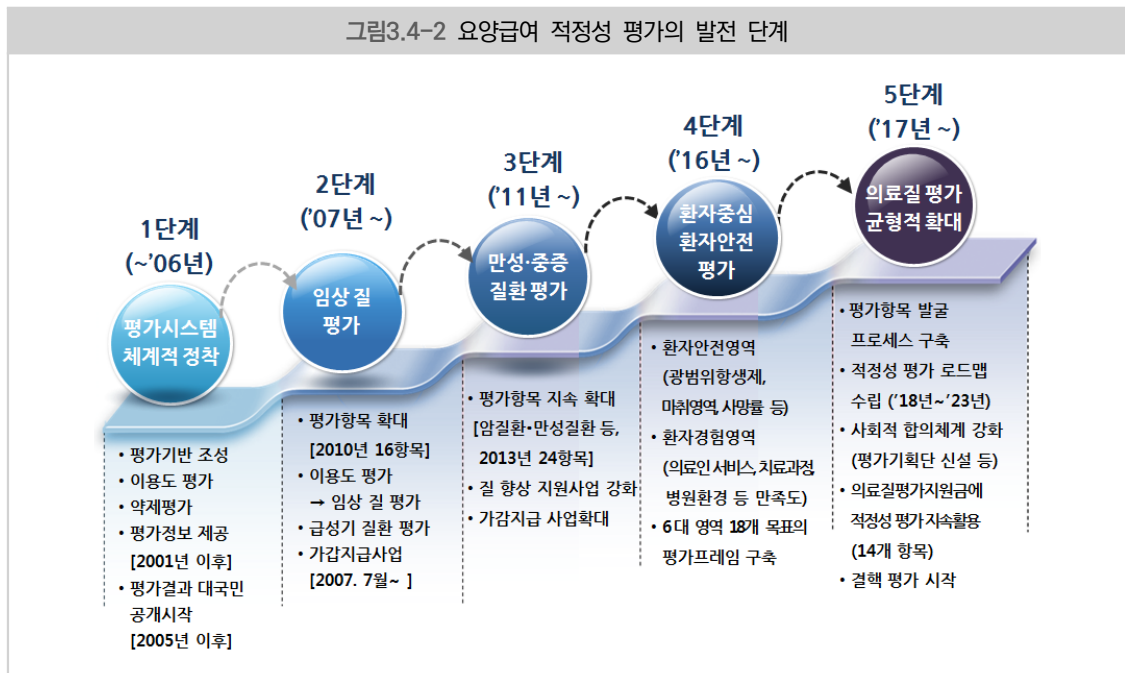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정성 평가기능이 도입되면서 2001년 초년도 평가로 약제급여, 사회복지법인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 2) 발전기(2004년~2006년)

- 가) 2004년 8월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시작으로 이용도중심 평가에서 임상 질 평가로 전환·확대하였으며,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결과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 나) 2005년 주사제처방률 양호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평가결과를 공개, 2006년부터는 평가대상 전체 요양기관으로 공개를 확대하였다.
- 다) 서면으로 수집하던 평가 자료를 2006년 2월부터 전산화하여 웹방식의 평가자료 수집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으며, 2006년 12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기점으로 전향적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3) 확대기(2007년~ )

- 가) 2007년부터 요양기관 질 향상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을 제정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급성기 진료에 국한되었던 평가를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장기 진료부문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진료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질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2011년부터 가감지급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 나) 2011년부터 암질환(대장암, 유방암 등)을 비롯하여 당뇨병, 천식 등의 국민 다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만성질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다) 2015년 이후부터 기관단위 진료결과를 대표하는 일반질에 대한 평가와 환자중심영역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질 평가의 균형적 확대를 위해 환자안전영역에 대한 예비평가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조사표 제출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기록(EMR, OCS)과 자동 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료수집 체계인 평가정보시스템 확대 사업과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고자 행정비용을 기관별로 지급하였다.
- 라) 2017년에는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설정한 6대 영역 18개 목표에 따라 국민·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제안·선정하는 신규항목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26개 평가항목을 발굴하여 6대 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였다.





## 나. 추진경과

### 1) 연도별 추진경과

-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정성 평가기능 도입
- 2001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정(고시 2001.9.)  
사회복지법인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기관, 약제급여 평가 3항목(항생제·주사제 처방률, 투약일당약품비)으로 평가 시작, 총량적 평가
- 2004년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시작으로 임상질 평가로 전환
- 2005년 주사제 처방률 양호기관의 명단 공개 시작
- 2006년 웹방식 평가자료 수집시스템 도입, 전향적인 평가 방식 도입
- 2007년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 제정(고시 2007.6.)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 2008년 가감지급 시범사업 감액기준선 공표  
요양병원 입원급여 등 장기 진료영역으로 평가 확대
- 2009년 요양기관별 종합결과 공개 (starring ★★★★★)  
가감지급 시범사업 1등급 및 질 향상기관에 대한 가산 지급
- 2010년 16항목 평가(12개 항목 공개)  
38개 수술에 대한 병원별 수술진료비 및 입원일수 최초 공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영역 평가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질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소개
- 2011년 19항목 평가(13개 항목 공개)  
대장암, 위암 진료결과 등 중증질환 영역으로 평가 확대  
OECD에서 한국의 보건의로 질 평가보고서 최초 발간
- 2012년 21항목 평가(17개 항목 공개)  
가감지급 항목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병원급 이상)로 확대  
당뇨병, 고혈압 평가결과에 따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기준 제정(고시 2012.8.)  
가감지급사업에서 첫 감산지급 시행(제왕절개분만 평가)  
상급종합병원에 기관단위 종합평가 결과(질 종합지표 및 비용지표 등) 제공
- 2013년 24항목 평가(19개 항목 공개)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첫 인센티브 지급  
폐암, 천식 등 중증·만성 질환영역으로 평가 확대

허혈성심질환 통합 1차 시범평가 실시

가감지급 항목에 약제급여 4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외래처방약품비) 추가

- 2014년 29항목 평가(22개 항목 공개)  
가감지급 대상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 제외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평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조사표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홈페이지 공개 평가등급 표시 개선(  →  )
- 2015년 30항목 평가(26개 항목 공개)  
기관단위 대표지표인 일반질 평가 실시  
실시간 평가자료 수집을 위한 EMR 연계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사업 고도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제언 사항을 반영하여 거버넌스체계 개편  
평가결과를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반영, 정책적 활용 확대
- 2016년 31항목 평가(29개 항목 공개)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 수립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적정성 평가 활용 확대(10 → 14개 항목)  
환자중심 영역의 평가 시작
- 2017년 32항목 평가(29개 항목 공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에 대한 평가 시작  
의료질 평가 균형적 확대 위해 환자 안전영역 예비평가 실시
- 2018년 34항목 평가(29개 항목 공개)  
치과 근관치료 평가, 환자안전 영역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에 대한 평가 시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영역 및 대형병원 중심에서 중소병원 영역으로 확대를 위한 중소병원 예비평가 실시

## 2) 연도별 신규평가 항목

표3.4-1 연도별 신규평가 항목

년도	항목
2001년	사회복지법인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기관, 제왕절개분만 약제급여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투약일당약품비 (총량적 평가)
2002년	전산화단층촬영, 혈액투석, 약제급여(처방건당약품목수 추가) 상병별 평가
2003년	수혈, 슬관절치환술, 집중치료실, 의료급여정신과, 약제급여평가에 고가약 처방비중 추가
2004년	허혈성심장질환
2005년	약제급여평가 골관절염의 진통소염제 중복·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추가
2006년	급성기 뇌졸중
2007년	진료량,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심근경색증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관상동맥우회술
2009년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2010년	고혈압
2011년	당뇨병, 대장암, 위·간암 진료결과
2012년	유방암,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사용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폐암, 천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2014년	위암, 간암 진료결과, 폐렴, 중환자실,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제급여(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추가)
2015년	일반질평가(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016년	환자경험
2017년	결핵
2018년	마취, 치과 근관치료, 신생아중환자실

## 4

## 2018년 평가현황

## 가. 평가 영역의 균형적 확대

- 1) 2018년에는 암질환, 급성질환, 만성질환, 약제급여, 환자경험 평가 등 총 34항목을 평가하였다.
- 2)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평가를 진행하였고 또한 의과영역 평가 중심에서 그간 시행하지 않은 치과영역의 치과 근관치료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3.4-2 2018년 평가항목

분야(34항목수)		세부 항목(61개)	
1	급성질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심근경색증</li> <li>• 관상동맥우회술</li> <li>• 폐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li> <li>• 급성기뇌졸중</li> </ul>
2	만성질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li> <li>• 만성폐쇄성폐질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뇨병</li> <li>• 혈액투석</li> <li>• 천식</li> </ul>
3	암질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암</li> <li>• 위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암</li> <li>• 간암 진료결과</li> <li>• 폐암</li> </ul>
4	약제(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처방률</li> <li>• 주사제처방률</li> <li>• 투약일당 약품비</li> <li>•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9개 수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li> <li>• 처방건당 약품목수</li> <li>• 유소아중이염 항생제</li> </ul>
5	정액수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병원</li> <li>• 질병군 포괄수가(7개 질병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정신과</li> </ul>
6	중환자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환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중환자실</li> </ul>
7	진료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별 진료량(4개 수술)</li> </ul>	
8	환자중심의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경험</li> </ul>	
9	일반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표준화사망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li> </ul>
10	감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li> </ul>	
11	환자안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취</li> </ul>	
12	치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 근관치료</li> </ul>	

나.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사업

- 1)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 이상의 급성기뇌졸중,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의원급에서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평가에서 시행하였다.
- 2) 적절한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요양병원 평가결과 하위 20% 기관에 대하여 수가와 연계한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제외하였다.

가감지급	인센티브	수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기 뇌졸중</li> <li>•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li> <li>•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li> <li>• 혈액투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li> <li>• 당뇨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병원</li> </ul>



### 다. 거버넌스체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1) 28개 평가분과위원회에서 의·약학적 전문적 내용을 토론하고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는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조정 및 주요 정책 심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에는 의약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 2) ‘평가의 중장기 방향성 설정’, ‘신규 평가항목 및 지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는 평가기획단을 구성하여 평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3) 의료계·학계와 협업을 통한 평가기준 개발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켰다.

####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 효율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내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설치
-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건강보험대표를 각 6인씩 총 18인으로 구성
- 연간평가계획,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 평가 주요정책을 심의

#### ■ 평가기획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평가기획단 설치
- 평가 중장기 계획수립 및 변경 등 기획기능과 평가현안문제, 제도개선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필요시 자문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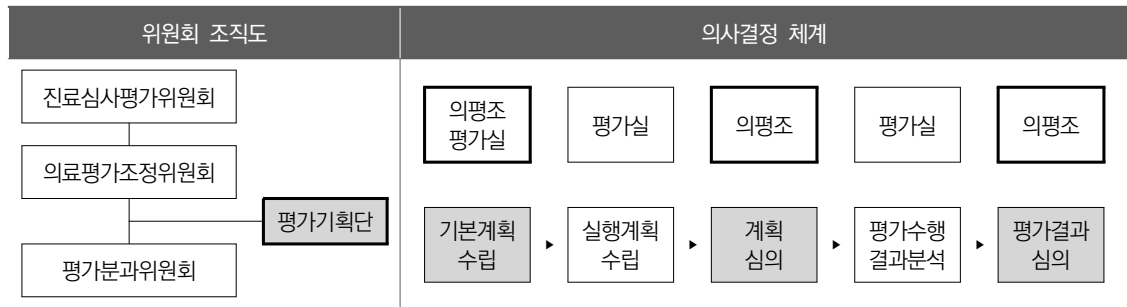
#### ■ 평가분과위원회

-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의·약학적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에 설치
- 전문학회, 특수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항목별(28개)로 운영

#### ■ 온라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s)

- 예비평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3~4주간 의견 수렴 후 검토·보완

표3.4-3 평가 의사결정 시스템



## 라. 평가정보 개방 및 국제 협력 강화

평가결과 공개항목을 29개로 확대하고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공공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회와 공동 연구 논문화를 추진함으로써 학술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질 평가 컨설팅 및 OECD 보건의료 질지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였다.

# 5

## 향후 평가 방향

### 가. 평가 영역의 균형적·포괄적 확대

- 1)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6개영역 18개목표의 평가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 2) 평가영역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 영역은 효과·효율성에서 환자안전·환자중심 영역으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는 성인에서 소아영역으로, 진료영역은 대형 및 전문병원중심에서 중소병원 질 관리 영역, 의과 중심영역에서 치과 영역까지 확대하여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균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3.4-4 6개영역 18개 목표 현황

목적	목표
환자안전 (Safety)	1.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감소
	2.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소
	3. 의료관련감염 이외의 영역에서 환자안전사고의 감소
	4.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향상
효과적인 진료 (Effectiveness)	5. 주요 입원질환에서의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6. 일차진료에서의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7.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
	8. 모성 및 신생아·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9. 노인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10.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중심성 (Patient-centeredness)	11.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경험, 만족도 향상
	12.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의료전달체계 구축 (Health care delivery system)	13.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중심의 진료
	14. 의료기관 간 협진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Equity)	15. 취약계층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질 보장
	16. 필수의료(응급)의 접근성과 질 보장
건강보험의 효율성 (efficiency)	17. 의료이용의 적절성 향상
	18. 의료자원 소모량의 평가를 통한 효율성 향상

#### 나. 가감지급사업 등 성과지불제 확대

지금까지의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우선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투입량이 아닌 진료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 다. 평가결과 활용 강화

의료 질 평가지원금 등 정부정책에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 공개 등 정보 개방을 확대하며 국제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 라. 의료 질 향상 지원 강화

요양기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을 지역단위 네트워크로 활성화하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마.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의료계·학계와 협업을 통한 평가기준 개발 확대 등 파트너십 기반의 평가로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소비자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영역 선정 등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II

## 평가개념 및 범위

## 1

##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제63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적정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제66조)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 위원회를 둔다.

## 4) 자료의 제공(제96조)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5) 이의신청(제87조)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심사평가원의 업무 (제28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 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의 절차·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8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제29조)

-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0호, 2001.9.29.제정, 제2010-13호, 2010.4.14. 개정, 제2013-94호, 2013.6.24. 개정, 제2016-62호, 2016.4.29. 개정, 제2017-73호, 2017.4.24. 개정)

- 평가의 일반원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내용, 평가대상 선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결과 적용,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적정성 평가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 평가의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년 7월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동법 시행규칙에는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영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의료질의 구성 요소로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현행 효과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성, 안전성 영역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3

## 평가의 범위 및 대상 선정

## 가. 영양급여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영양급여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서비스 전반을 의미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영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영양급여를 실시한다. ③ 영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영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영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나. 적정성 평가 대상

## 1) 의료서비스 전체

적정성평가는 ‘영양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 2) 전체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 영양급여는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이다.

### 3) 전 국민

- 우리나라는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적정성평가 대상자는 전 국민이다.
- 심사위탁 계약에 의거 의료급여, 보훈진료비의 적정성 평가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보장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 다. 적정성 평가 대상 선정

- 평가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 의약학적 중요성
  - 사회적 관심의 정도
  - 평가실시로 기대되는 개선효과
  - 평가의 용이성



### III

## 평가의 절차와 방법

### 1

### 평가 절차

#### 가. 평가대상 선정 및 예비평가

- 1) 국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평가후보항목에 대한 평가기획단의 사전검토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후보 항목을 선정한다.
- 2) 후보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근거로 사망률,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중, 사회적 관심 및 요구도, 기대되는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 3) 후보 항목이 선정되면 항목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지표)을 마련하고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그림3.4-3 평가후보항목 선정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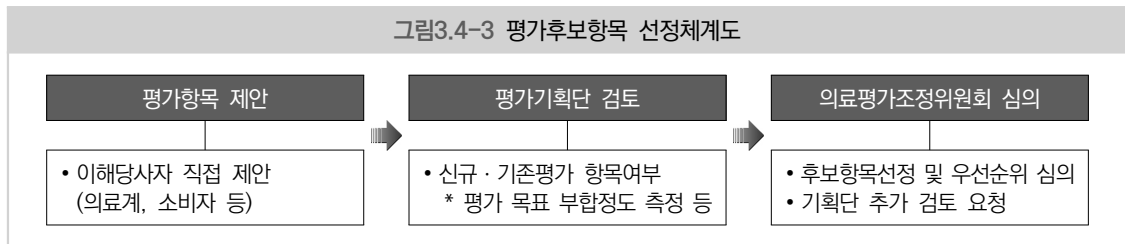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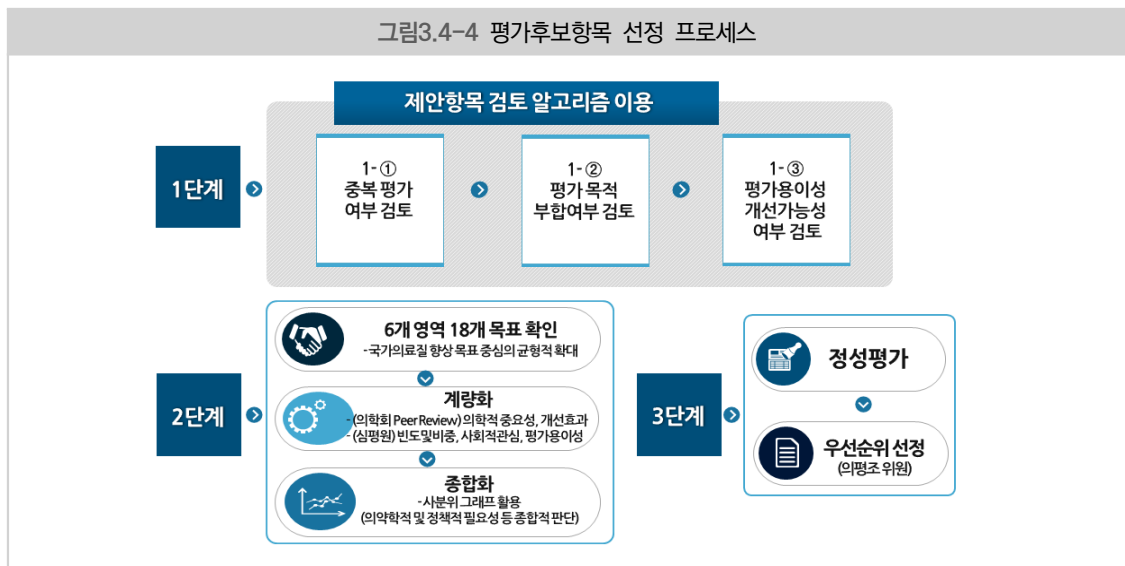


그림3.4-4 평가후보항목 선정 프로세스



## 나. 연간 평가계획 수립

- 1) 적정성 평가 관련 연간 사업은 신규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매년도 말에 다음 해에 추진할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항목과 목적,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 2) 연간평가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 3) 승인된 연간 평가계획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다. 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1)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자료조사 및 평가방법 등을 연간 계획 수립시 보다 구체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 2) 평가기준 적용방법, 자료수집방법 등 세부시행계획은 홈페이지와 설명회를 통해 공지한다.

## 라. 평가계획 등 공개

평가계획은 실시 2개월 전에 요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기관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 마. 평가 의견수렴

평가계획, 평가기준, 공개방법, 공개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의·약학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또한 평가기준은 온라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s)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바. 평가수행

- 1) 평가자료 수집 후 자료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점검을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2) 평가결과는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가감지급 해당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그림3.4-5 평가 수행 절차



## 2

## 평가 방법

## 가. 평가자료

- 1)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는 심사평가원의 영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자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이 있다.
- 2) 평가대상기간 및 자료수집
  - 평가 항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자료 수집 대상으로 전수 또는 표본 조사 및 실제 의무기록과 대조하는 신뢰도 점검을 시행한다.

제3부 심사 및 평가

표3.4-5 2017년도 평가대상기관 및 자료수집 대상 등

평가항목		평가대상기관					평가부문			조사표	대상기간
영역	평가항목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구조	과정	결과		
급성기질환	관상동맥우회술	○	○				○	○	○	○	연간
	급성기 뇌졸중	○	○				○	○	○	○	6개월
	폐렴	○	○	○				○	○	○	3개월
만성질환	고혈압	○	○	○	○	○		○			연간
	당뇨병	○	○	○	○	○		○			연간
	천식	○	○	○	○	○		○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	○	○	○	○		○	○		연간
	혈액투석	○	○	○	○	○	○	○	○	○	3개월
암질환	대장암	○	○	○	○		○	○	○	○	연간
	유방암	○	○	○	○		○	○	○	○	연간
	폐암	○	○	○	○		○	○	○	○	연간
	위암	○	○	○	○		○	○	○	○	연간
	간암 진료결과	○	○	○	○				○		2년
약제	약제급여(6항목)	○	○	○	○	○		○			연간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	○	○	○			○			연간
	수술의예방직항생제	○	○	○				○		○	3개월
정액수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	○	○	○			○	○	○ <sup>51</sup>	3개월
	요양병원 입원급여					○	○	○	○	○ <sup>52</sup>	3개월
	의료급여 정신과	○	○	○	○	○	○	○	○	○ <sup>53</sup>	3개월
중환자실	중환자실	○	○				○	○	○	○	3개월
일반질	병원표준화사망비	○	○ <sup>54</sup>						○		연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	○ <sup>4)</sup>						○		연간
환자중심	환자경험	○	○ <sup>55</sup>							○ <sup>56</sup>	4개월 <sup>57</sup>
감염	결핵	○	○	○	○			○			6개월

51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52 환자평가표

53 기관단위

54 종합병원급 이상

55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6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입원환자 전화조사

57 '17.7~11월 전화조사 실시

## 나. 자료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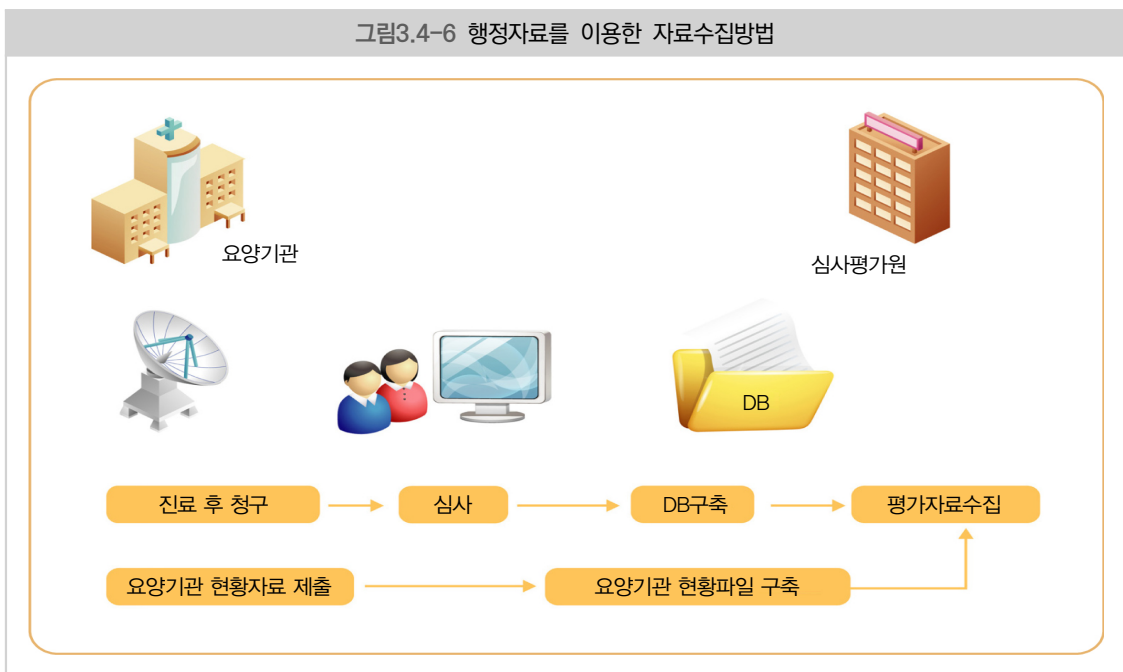
자료수집 방법에는 행정자료 이용방법, 행정자료와 조사표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행정자료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요양기관현황자료, 행정안전부자료

### 1) 행정자료이용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현황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후 각 자료를 통합하여 수집을 완료한다.
- 사망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그림3.4-6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



### 2) 조사표 이용 방법

- 행정자료만으로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진료량은 평가방향 재설정 등 진행 중

- 조사표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자료를 수집한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신뢰도 점검
  - 자료내용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점검을 실시한다.
  - 제출된 평가자료 중 일정 건을 표본 추출하여 요양기관에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주요기능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의 자동연계
- 평가자료 상시 작성·관리로 업무 집중 부담 완화
- 평가지표 즉시 산출이 가능하여 자율적인 의료의 질 개선 가능
-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및 의료진 등 관계자와의 소통기능 추가

그림3.4-7 웹을 이용한 평가자료수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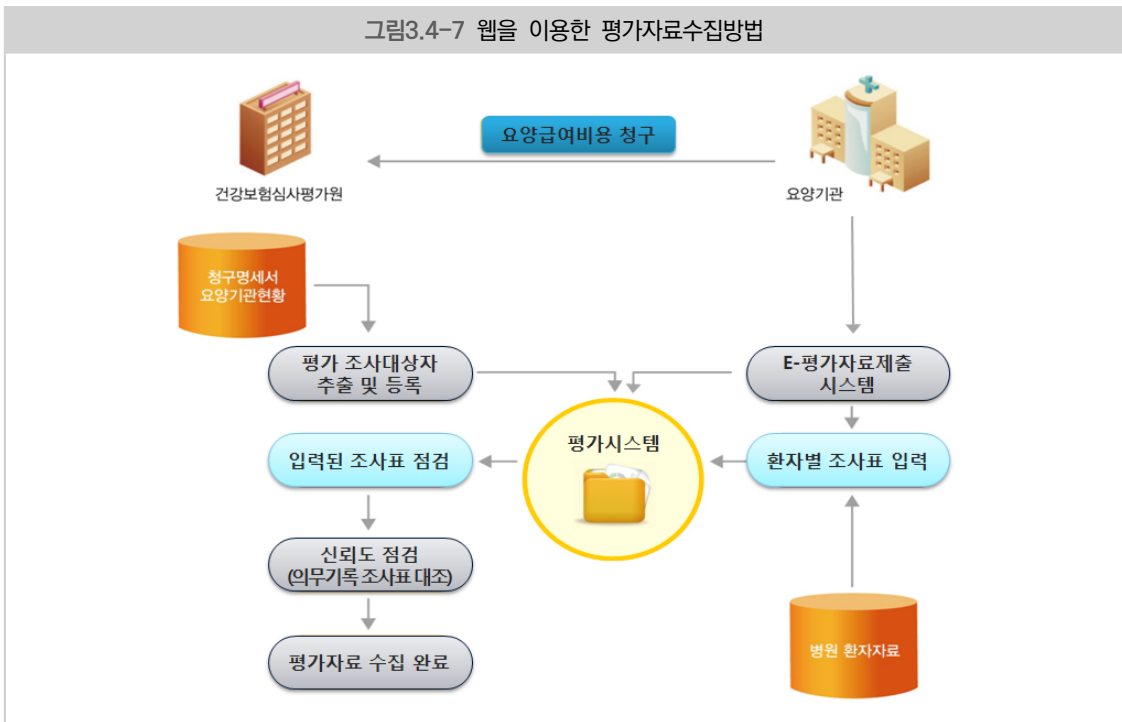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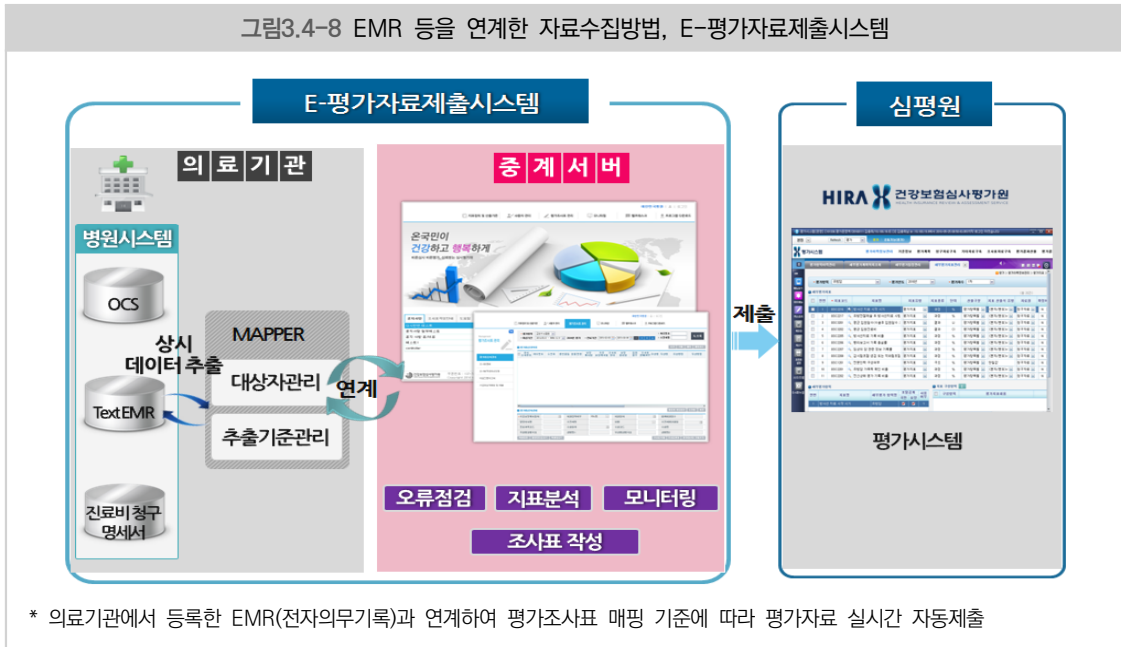


그림.3.4-8 EMR 등을 연계한 자료수집방법,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 다. 행정비용 보상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평가 항목별로 문항수에 따라 보상한다. 제출된 평가 자료 중 신뢰도 점검을 거친 유용한 자료를 보상대상으로 한다.

### 3

#### 평가결과 분석

##### 가. 요양기관단위 평가

- 1) 각 평가지표 별로 개별 의료기관의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의료기관 간의 변이를 파악한다.
- 2) 목표 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지표는 동일 그룹 안에서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 나. 환자 중증도 보정

- 1) 환자의 서로 다른 상태가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후 요양기관 간 평가결과를 비교한다.
- 2) 중증도 보정을 위한 환자 정보는 평가 자료 수집 시 함께 조사한다.

## 다.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화

- 1) 평가지표가 여러 개인 항목은 항목 당 하나의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 2) 종합점수 산출시 지표별 가중치는 평가항목에 따라 다르다.
- 3)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을 등급화 한다.

## 4

### 이의신청

---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련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5

### 결과 활용

---

#### 가. 국민홍보

국민에게는 의료이용 선택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나. 요양기관의 질 향상 지원

요양기관이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를 벤치마킹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질이 낮은 개별 요양기관에는 현장 상담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외에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병원에는 질 향상 컨설팅, QI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질 향상을 지원한다.



### 다. 정책적 활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심뇌혈관센터 지정, 응급의료센터지정 및 평가 등 정부의 타 평가에 활용하고, 소방방재청,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에 의거 진료비를 가감지급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심사평가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전문병원 평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 업무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 6

## 기대 효과

### 가. 국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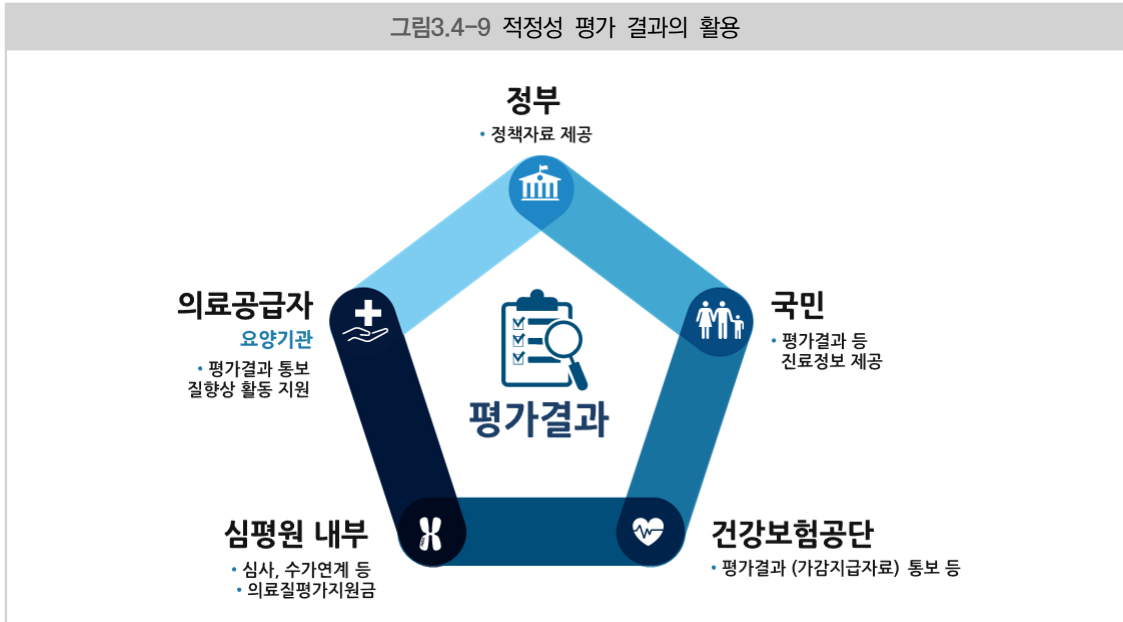
- 1) 다양한 의료이용선택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 2)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 지원
- 3) 평가영역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나. 의료공급자 측면

- 1) 의료제공자 간 서비스 질 차이 감소
- 2) 의료현장의 질 향상 활동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3) 인센티브 확대 적용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분위기 확산

### 다. 정부 측면

- 1) 의료서비스 질에 상응하는 지불보상으로 건강보험재정 합리적 지출
- 2)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IV 평가결과 활용

### IV-1 가감지급

작성자 : 평가보상부 주 - 김상지  
부 - 이세나

#### 1 추진배경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2005년부터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합리적 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공개만으로는 지속적인 의료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감지급 사업 적용에 대해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져 미국 등 선현국의 사례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의 2개 평가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급성기 뇌졸중, 2013년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2014년에는 약제급여, 2015년에는 혈액투석 항목까지 확대하였다.

표3.4-6 가감지급사업 추진경과

연도	추진내용	대상기관	대상항목
2007년	•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10년	• 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 가감지급 시범사업 완료	상동	상동
2011년	•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1차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표3.4-6 가감지급사업 추진경과(계속)

연도	추진내용	대상기관	대상항목
2012년	•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2차년도)	상동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2013년	•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3차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2014년	•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4차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뇌졸중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급	외래약제(3항목)***
2015~2018년	•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5~8차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뇌졸중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의원급	외래약제(3항목)

\* 급성심근경색증 :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 종료  
 \*\* 제왕절개분만 : 2014년(2013년 진료분)부터 적정성평가 종료  
 \*\*\* 외래약제(3항목)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2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
- 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3 가감지급 사업 내용

### 가. 가감지급 시범사업

사업의 틀은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미국 CMS의 Premier HQID(Hospital Quality

Incentive Demonstration)의 모형<sup>58</sup>을 기본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의료 질이 향상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하위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감산)를 적용하는 가감지급 사업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1차년도 감산기준선 공표, 2차·3차년도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인센티브 지급, 3차년도 감산기준선 미달기관에 대한 감산 적용 등 3년에 걸쳐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하였다. 가산율은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평가등급은 상대평가 5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 상한선을 감산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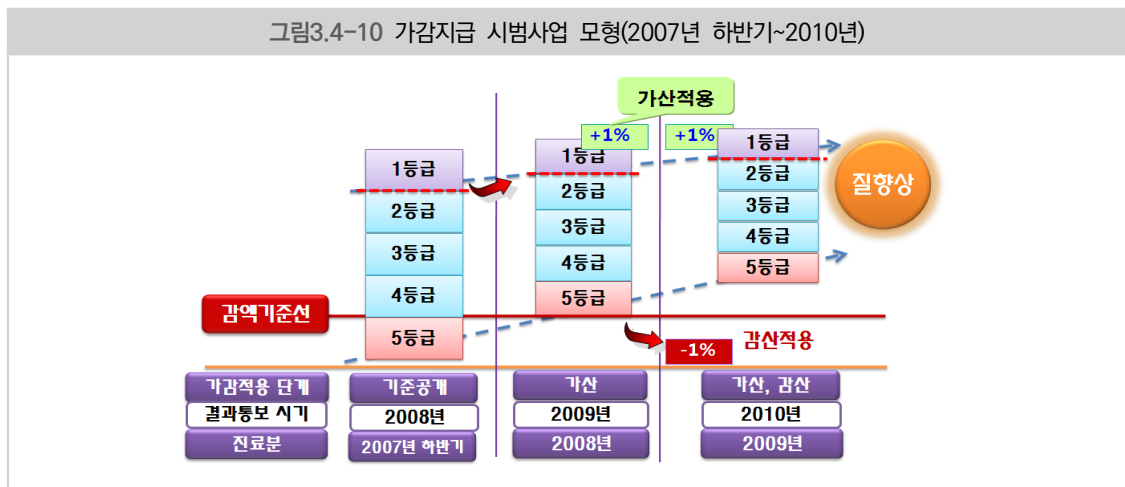


표3.4-7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단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대상진료	2007년 하반기 진료분	2008년 연간 진료분	2009년 연간 진료분
결과통보	2008년	2009년	2010년
공개대상	우수 등급(1~2등급) 공개	전체 대상 공개	전체 대상 공개
평가등급	5등급, 상대평가		
가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액기준선(5등급 상한선) 공표</li> <li>- 급성심근경색증 (86.66점)</li> <li>- 제왕절개분만 (5.632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 적용(1%)</li> <li>-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 적용(1%)</li> <li>-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li> <li>• 감산 적용(-1%)</li> <li>- 감산기준선 이하 5등급 기관</li> </ul>
기관	-	21기관	26기관
금액	-	4억 5천만원	4억 4백만원

※ 감액기준선을 평가대상기관이 모두 초과하여 2010년 실제 감액대상기관은 발생하지 않음

58 미국 HQID사업은 미국 비영리병원연합단체인 Premier Inc.에서 시행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38개주 약 260개 병원이 참여하였다. 2003년 시작된 초기 3년 계획에서 3년 연장하여 2009년까지 6년차 실시되었다.

## 나.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

2011년부터 실시된 가감지급 본 사업은 평가 대상기관을 종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대상항목을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3항목), 혈액투석 등 타 평가항목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가감률도 최저  $\pm 1\%$  내지 최고  $\pm 5\%$ 까지 대폭 확대하여 요양기관 간 질적 차이를 줄이고 모든 기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가감지급 선정 기준은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중 문제크기, 심각성, 실행가능성, 개선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가 예측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표3.4-8 가감지급 항목 추진 현황

평가항목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 (3항목)	혈액투석
대상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의원급	의원급 이상
최초 지급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평가등급	9등급 상대평가 ※ 공개는 5등급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9등급 상대평가 ※ 항생제 처방률 :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표3.4-9 평가항목별 가감 산정 기준

구분	가산	감산
급성기 뇌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기관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점수 상위 20%</li> </ul> </li> <li>질 향상 기관: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 10점 이상 향상 (단, 종합점수 70점 미만 기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산기관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점수 55점 미만 기관</li> </ul> </li> </ul>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기관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결과 97% 이상</li> </ul> </li> <li>질 향상 기관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차수 비교 종합결과 30%p 이상 향상 또는 2회 연속 15%p 이상 향상 (단,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산기관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li> </ul> </li> </ul>

표3.4-9 평가항목별 가감 산정 기준(계속)

구분		가산	감산
외래약제 (3항목)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기관 : 1% (최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분기 연속 1등급 + 전체상위 25%ile 이내 + 외래 PCI 전년도 동일반기·해당반기 연속 0.6 이하</li> </ul> </li> <li>• 질 향상 기관 : 0.5% (최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기 비교 2등급 향상 + 전체상위 50%ile 이내 + 동반기 비교 외래 PCI 감소 + 외래 PCI 2.0 미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산기관 : -1% (최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분기 연속 9등급 + 지표연동 대상기관 + 외래 PCI 전년도 동일반기·해당반기 연속 PCI 1.5 이상</li> </ul> </li> </ul>
	항생제 처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기관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라이딩 스케일 모형에 따른 취득점수 산출 + 외래 PCI 1.0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산기관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70% 이상 + 외래 PCI 1.0 이상</li> </ul> </li> </ul>
혈액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기관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급(종합점수 95점 이상)이면서 상위 10% 기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산기관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점수 67점 미만 기관</li> </ul> </li> </ul>

표3.4-10 평가항목별 가감지급 내역

(단위 : 기관, 천원)

지급연도	평가항목	평가차수	평가대상기간	가산		감산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2015	계			1,423	1,009,397	97	39,482
	급성기 뇌졸중	6차	2014년 6~8월	64	211,183	1	190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6차	2014년 1~3월	125	574,427	46	21,670
	외래약제(3항목)	13차	2014년 하반기	1,234	223,786	50	17,622
2016	계			2,475	445,388	107	37,579
	외래약제(3항목)	4, 5차	2015년 상·하반기	2,475	445,388	107	37,579
2017	계			2,485	1,864,585	191	170,05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7차	2015년 9~11월	152	1,203,310	44	30,119
	외래약제(3항목)	16, 17차	2016년 상·하반기	2,256	430,842	101	40,550
	혈액투석	5차	2015년 10~12월	77	230,433	46	99,388
2018	계			2,731	1,372,194	488	162,705
	급성기뇌졸중	7차	2016년 7~12월	83	909,176	5	1,417
	외래약제(3항목)	8,9차	2017년 상·하반기	2,648	463,018	483	161,2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질적 변이가 더 큰 병원, 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34개 평가항목('18년 기준)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감지급 사업을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량이 아닌 진료성과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IV-2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사업

작성자 : 만성질환평가부 주 - 이태숙  
부 - 김혜경

### 1 가산지급 사업 개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사업’은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국민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노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란?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가. 지속적 동일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2012. 4. 1. 시행)
    - 의원에서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인 건강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 20% 경감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센티브(2012. 7. 1. 시행)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 2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5항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3

가산지급 사업 내용

만성질환에 대한 가산지급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일차 의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경쟁과 부작용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지급모형이 구성 되었다.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가산지급을 실시함에 따라 기본적인 가산대상 선정 및 주기 등은 평가와 동일하다. 다만 평가는 전체 종별을 실시하나 가산지급 사업은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가. 가산지급 대상

- 1) 대상 요양기관 :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 2) 대상 질환 : 고혈압·당뇨병

나.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선정기준 및 주기

- 1)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지급  
※ 고혈압·당뇨병 질환별로 각각 지급

※ 양호기관 선정기준

(고혈압) 평가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 이용 환자가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80% 이상)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

※ 제외 : 처방평가지표 결과가 의원 하위 10% 수준 이하인 기관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 이용 환자가 30명 이상인 의원 중 외래방문(90% 이상), 처방지속성(80% 이상)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

※ 제외 : 처방 및 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의원 하위 10% 수준 이하인 기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미만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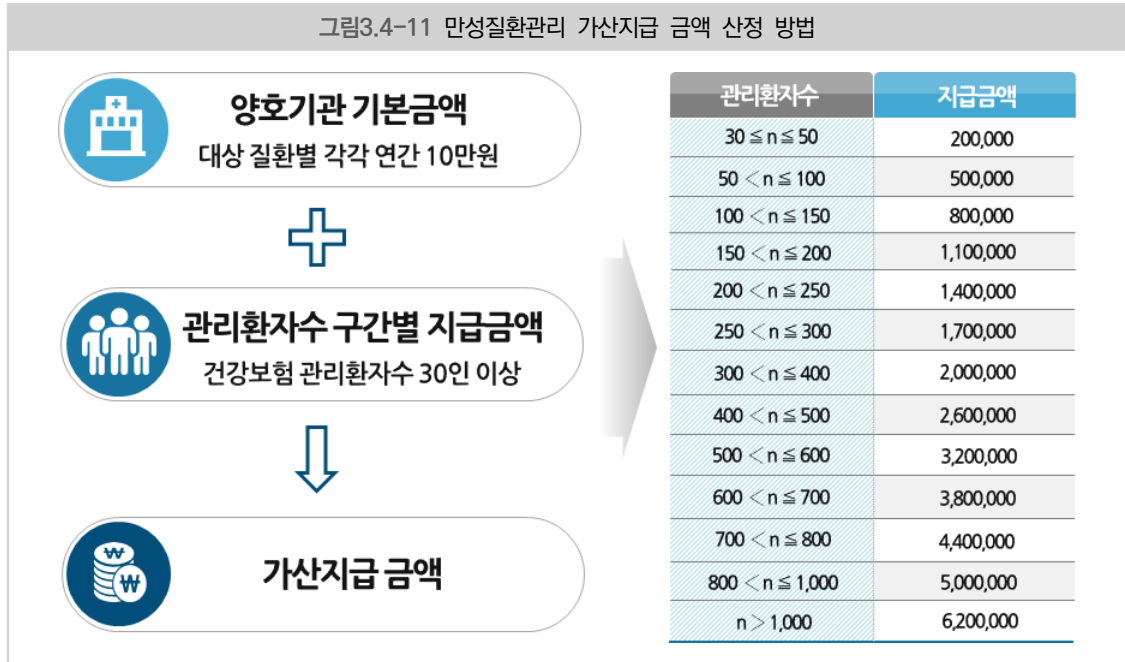
- 2) 가산지급 주기: 연 1회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지급하며, 평가 주기 변경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고혈압 평가주기 2014년 7월부터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다. 가산지급 금액

가산금액은 환자의 지속 관리에 대한 기본 금액과 관리 환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구간별 지급 금액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불필요한 경쟁과 의원 질환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관리 환자 수에 대해서는 구간별 의원 수 분포를 감안하여 적정 환자 수 구간을 정하였다.



## 4

## 향후 방향

향후 일차의료 활성화 및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단계적 발전방안 개발이 이루어져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질병중심이 아닌 복합 상병을 가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환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도 높여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일차의료의 비용 대비 가치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IV-3 질 향상(QI) 지원사업

작성자 : 주 - 이승덕  
부 - 이유진

### 1 질 향상(QI) 지원사업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의 확대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와 더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요양기관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 교육과 자문, 평가결과 모범사례의 확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보·개선 및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으로 비용효과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질 향상(QI)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질 향상(QI) 활동의 주요 사업으로는 요양기관 개별 교육, QI 교육(집합교육), QI 컨설팅, QI 활동 우수사례 포상 및 발표회 개최, QI 뉴스레터 발간 및 커뮤니티 운영이 있다.

그림3.4-12 질 향상(QI) 지원사업 구성



## 2 법적 근거

-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6조
- 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제41조 및 제42조

## 3 질 향상 지원사업 내용

### 가. 개별교육

각 항목별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기관, 질 향상 상담 요청기관, 신규기관, 가감지급 감액적용 예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평가항목별 담당이 평가결과 공개 후 질 향상 지원계획을 세워 그룹 또는 개별 상담, 서면·유선·기관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관별 지표결과 분석자료 제공,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 나. QI 교육(집합교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담당자 또는 QI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질 관리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QI 기본 개념 및 도구, 질 향상 활동사례 및 적정성 평가 지표관리’ 등 QI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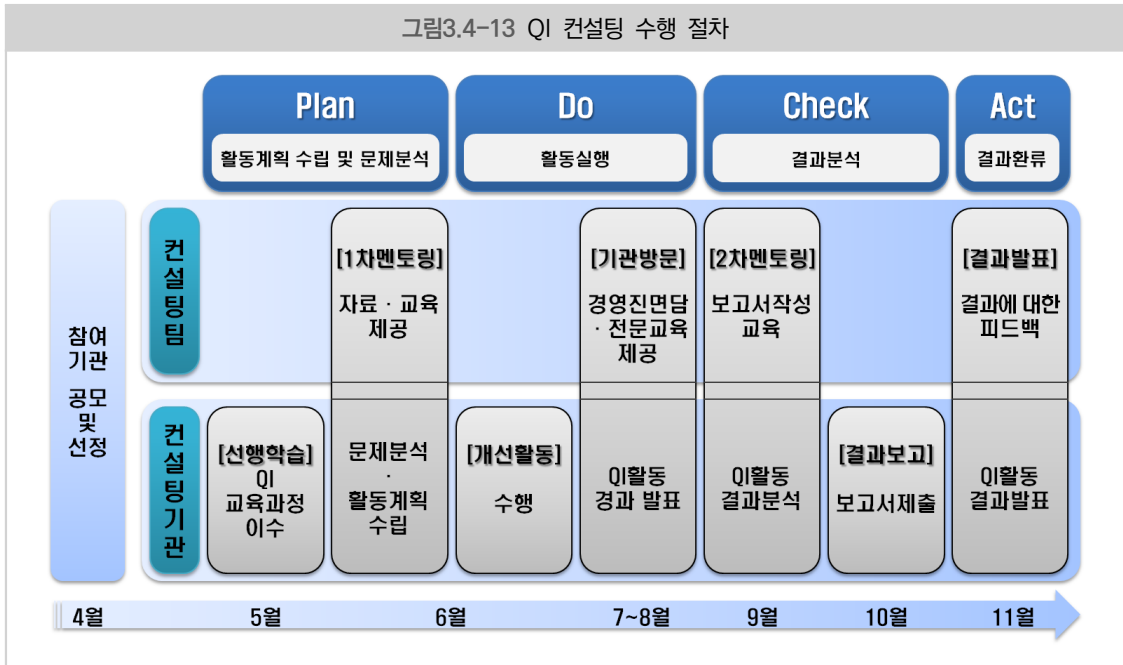
이론교육의 실무활용 강화를 위해 ‘소그룹별 분임토의와 실습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병원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중심 질 향상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다. QI 컨설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에서 실행,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지역사회 내 QI 전문가와 함께 상담, 교육,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질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QI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병원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3.4-13 QI 컨설팅 수행 절차



### 라. QI 뉴스레터 발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소식, 요양기관의 질 향상 활동 사례, QI 이론 및 도구, 국내·외 주요 이슈 등 최신 정보를 제작하여 분기별로 요양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등 구독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간하고 있다.

### 마. QI 커뮤니티 운영

적정성 평가 및 QI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담당자 또는 QI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QI 최신 정보 및 교육자료, QI 컨설팅 운영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바. QI 우수사례 포상 및 발표회 개최

적정성 평가 관련 QI 활동 우수사례의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관련 QI 활동사례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대외홍보 및 다양한 QI 활동사례 발굴을 위해 QI 전문단체 (한국의료질향상 학회)와 공동으로 QI 활동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 포상식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3.4-11 질 향상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구분	QI 교육과정 (이수)	QI 컨설팅 (기관)	QI 뉴스레터 (발간/구독)	QI 커뮤니티	우수 사례
2018년	364명	6	연 4회/ 4,116여명	1,087명	7기관
2017년	369명	8	연 4회/ 3,972여명	1,053명	7기관 <sup>59</sup>
2016년	250명	8	연 6회/ 3,566명	981명	9기관
2015년	226명	7	연 6회/ 3,221명	927명	9기관
2014년	197명	6	연 6회/ 2,800여명	895명	9기관
2013년	168명	6	연 6회/ 2,500여명	796명	9기관
2012년	97명	6	연 6회/ 2,000여명	700명	9기관
2011년	100명	4 (시범운영)	연 6회/ 1,401명	620명	8기관
2010년	200명	-	연 6회/ 1,300명	440명	8기관
2009년	160명	-	연 6회/ 1,240명	274명	6기관
2008년	56명 (6월 개설)	-	연 6회/ 1,195명	109명 (5월 개설)	6기관
2007년	-	-	11월 최초 발간	-	4기관

59 질 향상 전문단체(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공동운영」에 따른 변경 :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 QI활동 컨설팅 우수상 3개 기관

# V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작성자 : 평가보상부 주 - 김상지  
부 - 육상미

### 1

### 의료질평가 개요

#### 가. 도입 배경

##### 1)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대다수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선택'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 비급여 수입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환자 부담이 컸다. 또한 선택진료의 자격 요건인 의사의 경력이 적절한 의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선택 진료비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아닌 병원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형태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 ※ 선택진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제도(2000.9. 도입)

##### 2) 선택진료제 개편 필요성 및 방향성

의사의 자격 요건이 아닌 의료질 평가에 기반한 제도로 변화, 평가기전을 통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역할 수행 장려, 재정적 보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견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 3) 선택진료 축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도입

1단계는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항목별 20~100% 가산에서 15~50% 가산으로 변경, 선택진료 이용비용을 평균 35% 축소하였고, 고도·중증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를 개선하였다('14.8.1.).

2단계는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변경(단, 진료과별로 최대 75%)하여 환자안전수가 개선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15.9.1.)



3단계는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병원별 67%에서 33.4%로 변경(단, 진료과별로 최대 75%)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1,000억원('15년)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16.9.1.). 또한, '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나. 의료질평가 목적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4.11.)에 따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64호, 17.4.11.).

## 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우수 의료기관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 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등급별 차등수가를 입원료(입원), 진찰료(외래)에 추가 산정한다.

표3.4-12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단위 : 원)

등급	평가영역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1등급	가	22,660	12,460	7,500	3,930	1,830	610	1,580	520
	나	18,940	10,420	6,230	3,270				
2등급		17,820	9,800	5,900	3,090	860	280	900	300
3등급		12,400	6,820	4,100	2,150	200	60	230	70
4등급		1,470		480					
5등급		420		14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8-186호, '18.8.29.) - 시행일 '18.9.1.

표3.4-13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수가

(단위 : 원)

등급	평가영역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공공성 · 의료전달체계	
		입원	외래
가등급		9,350	3,090
나등급		6,510	2,150
다등급		1,870	610
라등급		420	140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8-186호, '18.8.29.)  
- 시행일 '18.9.1.

\*\*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공공성 · 의료전달체계'의 평가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별도 수가 산정

## 2

## 의료질평가 수행

## 가.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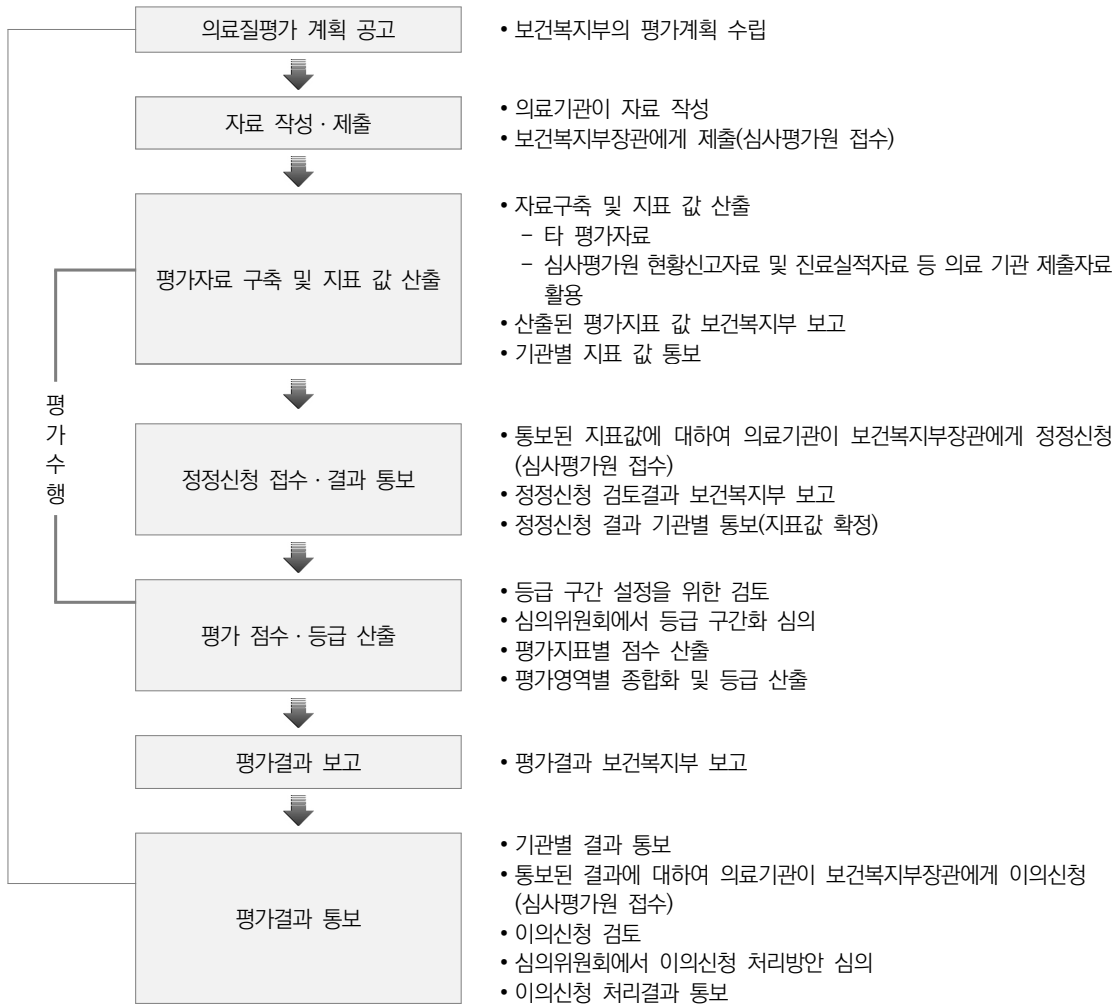
평가계획 공고일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 이상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 변경 시 변경 전 · 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 나. 평가절차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후 의료기관은 자료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타 평가 연계 자료(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 한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16년 평가부터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지표값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표값 통보, 지표값 정정신청 및 검토결과 통보 절차를 추가하고 자료접수 기간을 늘렸다.

표3.4-14 의료질평가 절차



## 다. 2018년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및 지표

### 1) 평가영역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5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2)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영역별 세부영역과 목표를 설정,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18년 59개)

표3.4-15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목표	평가지표	출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환자진료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인증 여부</li> <li>•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li> </ul>	의료기관 인증평가 질병관리본부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환자당 의사 수, 간호사수</li> <li>•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 수, 간호사수</li> <li>•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li> <li>•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li> <li>•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li> </ul>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제출) 의료기관 인증평가	
		정보 및 보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li> <li>•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여부</li> </ul>	의료기관 인증평가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제출)	
	환자안전 강화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li> </ul>	질병관리본부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따른 환자안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li> <li>• 항생제처방률</li> <li>• 주사제처방률</li> <li>•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li> <li>•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li> <li>•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li> </ul>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거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효과성)	중증 입원 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li> <li>• 관상동맥수술, 뇌졸중</li> </ul>	적정성 평가	
		다빈도 외래 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li> </ul>		
		취약인구집단/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중증질환 환자수</li> <li>• 희귀난치질환 구성비</li> <li>•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li> </ul>	심사평가원	
	공공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질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li> <li>•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li> </ul>	응급의료기관평가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내원환자수</li> <li>•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li> <li>•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li> <li>•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li> <li>• 분만실 운영여부</li> <li>•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li> <li>•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li> </ul>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li> </ul>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제출)	
의료전달 체계	올바른 중별 기능 수행	중증질환 입원기능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환자실 운영비율</li> <li>•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li> <li>•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li> <li>•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li> <li>• 외래 경증질환 비율</li> </ul>		

표3.4-15 평가영역별 평가지표(계속)

평가영역	세부영역	목표	평가지표	출처
의료전달 체계	올바른 중별 기능 수행	환자중심 의료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협력센터 설치여부</li> <li>비치료 재전원을</li> </ul>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수련	수련체계	체계적인 수련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li> <li>전공의 확보율</li> <li>전공의수 대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li> <li>진료실적 대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li> <li>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li> <li>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li> </ul>	병원신입평가
	양질의 수련	양질의 수련을 통한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의 학술활동 지원</li> </ul>	
	안전한 근무환경	안전한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련환경 모니터링</li> </ul>	
연구개발	의료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양질의 연구개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li> <li>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li> </ul>	의료기관 제출
		우수한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당 지식재산권수</li> <li>연구비 지출 여부</li> </ul>	

### 3) 평가영역별, 지표별 가중치

가) 의료 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로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영역 내에서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한 가중치 상, 중, 하 그룹을 선정하여 지표별로 차등 적용한다.

표3.4-16 평가 영역 및 지표별 가중치

구분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합계
가중치(%)	영역별	66	10	10	8	6	100
	지표별	1~5	약0.9~1.5	1~2.5	0.2~2.6	1~2	100
지표수(개)		30	10	7	8	4	59

### 4) 평가점수

가) 지표별 점수 :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표별 점수를 산출한다.

※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 각 지표의 범위를 바람직한 상태가 '1'이 되도록 조정

$$Y = (X - X_{min}) / (X_{max} - X_{min})$$

Y : 표준화 값 X: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나) 평가영역별 점수 :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5개 평가영역별 점수를 산출한다.
- 다) 평가점수는 5개 평가영역을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는 각 평가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2) ‘교육수련’, ‘연구개발’은 해당 평가영역별 점수를 평가점수로 한다.
- 라)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하며 그 밖에 보건의료체계 상 중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5) 등급화

- 가) 평가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5개 등급, ‘교육수련’ 3개 등급, ‘연구개발’ 3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는 1등급을 ‘가’, ‘나’ 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표3.4-17 등급화 기준

평가영역	근거	등급		
		가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공공성 · 의료전달체계	평가 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 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 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 전달체계'의 평가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표3.4-18 전문병원 등급화 기준

평가영역	근거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질과 환자안전</li> <li>• 공공성</li> <li>• 의료전달체계</li> </ul>	평가 점수	가 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 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다 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 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다) 등급제외

- (1)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 (2) '교육수련', '연구개발'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 3

### 향후 추진 방향

'18년 선택진료 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성격을 탈피하고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로 전환을 위해 중장기 추진방향을 '17년 11월에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보고한 바 있으며, 평가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 개발을 위해 '의료질 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대상의 확대 및 평가방식의 개선에 대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임기) 2년

(역할) •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VI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작성자 : 평가보상부 주 - 김상지  
부 - 전숙경

### 1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의 개요

### 가. 추진배경

시장형실거래가(10.10.)를 시행하였으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등으로 시장형실거래가를 2년간 유예하였고 '12.4. 약가 일괄인하로 약품비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가구매 인센티브<sup>60</sup>를 재시행하였다.

한편, 보험약가협약체가 대형병원 인센티브 풀림 등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외래처방 인센티브<sup>61</sup>를 통합하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이하 처방·조제 장려금)이 '14.9.부터 추진되었다.

### 나. 목적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를 적정관리하기 위함이다.

### 다. 추진경과

- 1) '10년 10월~'12년 1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 2) '12년 2월~'14년 1월 시장형실거래가 유예
- 3) '14년 2월~8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재시행
- 4) '14년 8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개정
- 5) '14년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시행
- 6) '15년~'18년 1~7차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및 지급

60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 시장형실거래가) : 의약품 저가구매로 절감한 금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61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10.10.~'14.8.) :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



## 2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등의 지급) 제2항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제1항, 제4항

공단은 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2014.8.29.)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3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내용

### 가. 사업내용

- 1)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포함), 의원, 약국으로 전산매체 청구 기관(건강보험)
- 2) 대상약품비 : 병·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전체 처방·조제내역 약품비
  - 가) 저가구매 대상의약품: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에서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원내약품비, 약국에서 발생한 약품비(처방조제, 직접조제)
  - 나) 사용량 감소 대상의약품: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에서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원내·원의 약품비
- 3) 산출주기 : 연 2회 실시

### 나. 산출방법

- 1) 요양기관별 장려금 지급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다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 지급)

표3.4-19 요양기관별 장려금 산출

구분	저가구매 장려금	사용량감소 장려금
산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비고가도지표(PCI)</li> <li>- 의약품 상한금액</li> <li>- 구입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비고가도지표(PCI)</li> <li>- 기대약품비</li> <li>- 실제약품비</li> </ul>
산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구매 절감액이 있는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량 절감액 &amp; 약품비고가도지표(PCI) 감소한 기관</li> </ul>
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 약품비 절감액 × 기관별지급률</li> <li>·약품비 절감액 : ∑약제별(상한가 - 실구입가) × 사용량</li> <li>·기관별지급률 : 해당기관 PCI</li> <li>- 기본지급률 : 20%(PCI 1.0일 때)</li> <li>- 지급률범위 : 최소 10% ~ 최대 30%</li> <li>- 약국장려금 = 저가구매절감액 × 기본지급률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 약품비 절감액 × 기관별지급률</li> <li>·약품비 절감액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li> <li>·기관별지급률 : 해당기관 PCI</li> <li>- 기본지급률 : 35%(PCI 1.0일 때)</li> <li>- 지급률범위 : 최소 10% ~ 최대 50%</li> <li>- 약국제외</li> </ul>
장려금 지급 제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인 요양기관</li> <li>- 장려금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일부제외</li> <li>- 반기 당 장려금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li> </ul>	

## 2) 산출지표

### 가) 약품비고가도지표(Prescribing Costliness Index, PCI)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동일 평가군의 투약일당(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

(1) 동일산출군 : 의원(표시과목별), 병원(보건의료원포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단위

(2) 상병분류 : 입원(KDRG), 병원급외래(KOPG), 의원외래(110분류)

(3) 지표산출식

$$PCI_h = \frac{\sum_i C_{hi} \cdot N_{hi}}{\sum_i C_i \cdot N_{hi}}$$

$PCI_h$  : 사업대상기관의 약품비 고가도지표

$h$  : 사업대상 기관

$i$  : 상병분류

$C_i$  : 동일 사업군 투약일당(환자당) 약품비

$C_{hi}$  : 사업대상기관 투약일당(환자당) 약품비

$N_{hi}$  :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환자수)

☞ 병원급, 의원(입원) : 투약일당약품비, 투약일수, 의원(외래) : 환자당약품비, 환자수

## 나) 기대약품비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당(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대상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수(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 (전년도 약품비는 산출대상기간의 약가로 보정)

## ● 지표산출식

$$E_h = \sum_i C_{t-1, i} \cdot N_{t, i}$$

$E_h$  : 사업대상 기관의 기대약품비

$h$  : 사업대상 기관

$t$  : 사업대상 기간

$i$  : 상병분류

$C_{t-1, i}$  :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당(환자당)약품비

$N_{t, i}$  : 사업대상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수(환자수)

☞ 병원급, 의원(입원) : 투약일당약품비, 투약일수, 의원(외래) : 환자당약품비, 환자수

다) 실제약품비 : 산출대상기간 상병별로 발생한 실제 약품비

## 다. 정보제공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내역, 약품비고가도지표(PCI) 및 약품비 절감여부 등을 공개하여 외부적으로는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 및 저가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요양기관의 종합 정보서비스, 간담회 등에 활용하여 처방행태 개선 등을 유도한다.

- 1) (외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모니터링>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2) (내부) 요양기관프로파일시스템 (사후관리)>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BizNet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그림3.4-1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업무 흐름도

절차	내 용
자료수집	- 반기단위 대상 데이터 적재(심사평가원 DW시스템)
사업수행	- 전산로직 구축 및 SAS 로직 개발 및 보완·수정 - 기준 검증 및 재설정 등 - 대상자료(청구명세서) 산출의 정확성 및 오류검증 - 자료 분석 및 결과 산출
내부보고	- 보고서 작성 및 내부 결과보고
복지부 보고·승인	- 산출 장려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요청
사업 결과 공개	- 건강보험공단에 장려금지급 통보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산출결과 요양기관 통보 - 정보 공개
결과 활용	- 사업 결과 설명회 및 관련 단체 간담회 - 적정 처방행태 개선 지원 활동

4

그린처방의원 선정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가. 목적

약품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나. 관련근거

-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83호(10.9.30.)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 추진방안’
-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25호(15.8.1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161호(17.8.25.),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67호(18.8.22.)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지침 개정 통보’

다.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내용

- 1) 선정주기 : 연 1회
- 2) 선정기준
  - 가) 2개 반기 연속하여 약품비고가도지표(PCI<sup>62</sup>)가 0.6 이하
  - 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 미만이면서, 주사제 처방률 20.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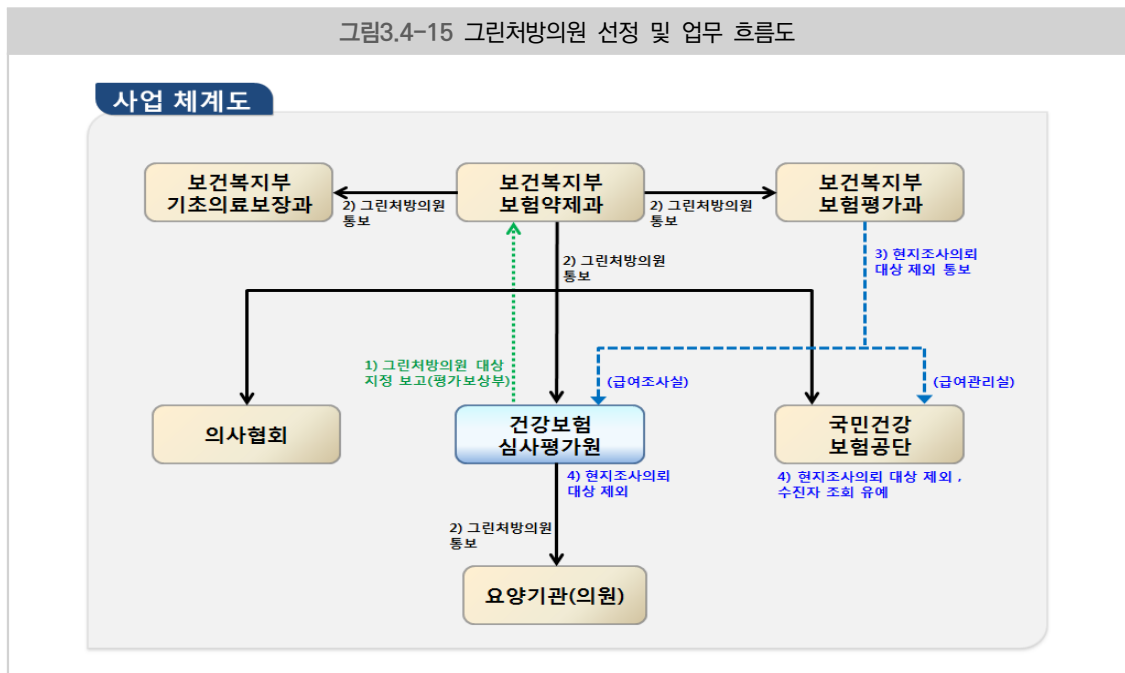
[선정제외]

-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10% 미만인 기관
- DUR 점검 실적이 없거나 점검기관 중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99조에 의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3) 인센티브

- 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뢰 대상 제외
- 나)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의뢰 대상 제외 및 수진자 조회 1년 유예

그림3.4-15 그린처방의원 선정 및 업무 흐름도



62 약품비고가도지표(Prescribing Costliness Index, PCI) :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 라. 인센티브 적용 시기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 마. 그린처방의원의 지정서 제작 및 배포

2016년 3월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의 지정서를 제작·배포,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요양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에 대한 자긍심과 적정처방의 지속적 유지를 장려하고자 한다.

## 바. 그린처방의원 지정취소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센티브 적용기간 중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지표 산출 대상 기간 중 부당이득(정산진료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2)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 그린처방의원 조회 서비스

국민홈페이지에 ‘그린처방의원 조회화면’ 개발로 의약품을 적정 처방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요양기관의 홍보, 국민의 알권리 강화하였다.

- 1)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병원·약국 찾기>분야별>그린처방의원 제공, 의원 위치 정보제공
- 2) 내부 HIRA+ : 1차 심사>요양자료종합>평가결과>그린처방의원 현황관리



# 제5장

## 고객서비스 제공

- I.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신청)
- II. 국민대상서비스
- III. 정보공개제도
- IV. 대국민 통계정보 서비스
- V.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 VI. 의약품 사용정보 공개 및 제공





## 제5장

# 고객서비스 제공

### I

##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신청)

작성자 : 진료비확인부 주 - 소수미  
부 - 강성우

### 1

#### 개념 및 목적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이하 '진료비확인신청')는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더 많이 낸 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사업의 목적은 비급여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고 의료 권익을 보호함에 있으며, 요양기관의 자발적 비급여 행태개선 유도를 통한 전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 2

####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 나.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다. 비급여 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3

추진 경과

- 가. 2002. 12.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확인업무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신설)
- 나. 2007. 3.       진료비확인업무범위 의료급여 확대(의료급여법 제11조의3 신설)
- 다. 2009.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원화 실시하던 진료비확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 라. 2013. 2.       긴급의료지원\* 대상 비급여진료비 확인심사 실시
- 마. 2014. 10.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국민홈페이지 공개
- 바. 2017. 1.       진료비확인심사 종합병원 급 지원 이관
- 사. 2017. 7.       진료비확인심사 한방병원 급 지원 이관

※ 긴급의료지원비란?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2006년부터 실시)중 의료지원이 해당되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에 대해 1회 300만원까지 지원 급여본인부담금 우선지원, 추가 1회 가능,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지원 제외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보장기관(시·군·구)이 지원해준 의료비 중 비급여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환자의 위임을 받아 2013. 2. 이후 지원분부터 보장기관(시·군·구)이 진료비확인 요청

4

진료비확인신청 방법

진료비확인신청은 진료 받은 사람(이하 '환자') 본인, 환자의 가족,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가. 환자 본인
- 나. 환자 가족
  -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2)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제3자

또한,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편 / FAX, 직접방문으로 진료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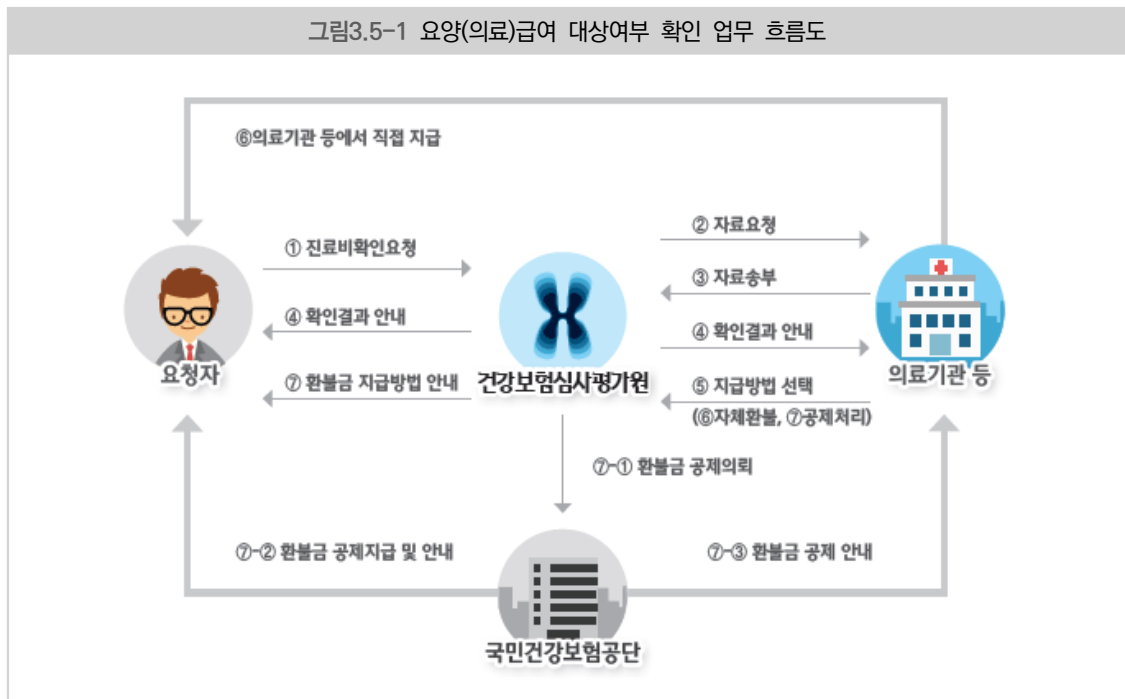
## 5 진료비확인신청 필요서류

기본서류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 가. 환자 본인 : 기본서류
- 나. 환자의 가족 : 기본서류,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다.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 : 기본서류, 접수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우편 / FAX 및 방문상담
  - ※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불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6 업무처리 흐름도

## 가. 기관별 업무처리 흐름도



진료비확인은 민원 요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되며, 요양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 받아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여부를 확인한다.

진료비확인 결과는 민원 요청자와 요양기관에 안내하며, 정당하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정당 건의 경우 종결된다. 과다하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환불 건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환불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금액에서 공제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환불금을 민원 요청자에게 지급한다.

나. 진료비확인신청 처리 절차



## 7

## 진료비확인 세부 업무처리 절차

## 가. 진료비확인신청

## 1) 접수

진료비확인 신청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2) 요양기관 자료요청·회신

접수된 건의 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비급여 관련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 받는다.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추가자료 필요시 요청내역 명기하여 재요청한다.

## 3) 심사·확인 결정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하며, 필요시 의학적 타당성 심사를 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며, 확인심사 후 결정된 결과에 대해 확인 요청자와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한다.

## 4) 환불금 지급

환불 결정이 되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환불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금액에서 공제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환불금을 민원 요청자에게 지급한다.

## [처리 결과]

- 정당 :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료비용 산정 건
- 환불 :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건
- 취하 : 접수 또는 검토과정에서 확인심사 처리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건
- 종결 : 영수증 미제출, 동일 건 중복접수, 자료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검토불가, 비급여비용 확인불가 등으로 확인된 건

## 나. 이의신청

민원인 및 요양기관이 진료비확인 심사 결과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의료급여법」 제3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우편 / FAX,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진료비확인 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양기관은 30일 이내, 민원인은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 다. 심판청구

민원인 및 요양기관 등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의2,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우편/FAX, 직접방문을 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양기관과 민원인 모두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 8

## 진료비확인 사전·사후 관리 체계

### 가. 배경 및 목적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비확인 환불 다발생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비확인 심사 결과를 활용한 사전·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진료비확인 심사 결과를 활용한 환불 발생 정도 및 개선 실태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환불 다발생 요양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 나. 사전·사후관리 현황

구분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기	관리부서
사전관리	민원현황통보	종합병원급 이상	분기별	본·지원
	현지방문(내방) 확인	상급종합병원	수시	본원
		종합병원 이하	수시	관할 지원
사후관리	현지조사의회	전종별	1회/년	본원

### 1) 사전 예방 관리

#### 가) 민원현황통보

민원인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기관의 처리·환불 유형 등을 동일 종별 평균값과 비교한 분기별 처리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 나) 현지방문(내방) 확인

민원발생건수, 처리·환불 유형 등의 민원처리 현황과 주요 환불 다발생 항목 등 진료비확인 심사 관련 문제점 및 개선요청사항, 비급여자료 업무포털제출 유도 등에 대하여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 2) 사후 관리 활동

사후관리 점검체계에 의한 최종점수 하위 10% 미만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의뢰를 실시하여 고의·반복적 환불 발생 요양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표3.5-1 진료비확인 사후관리 점검체계

지표명		개요	측정방법
환불발생 지수	환불건율	2017년 진료비확인 처리건 중 2017년 진료분의 환불건(액)율을 구간별로 점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점 척도로 구성(절대평가)</li> <li>환불건(액)율을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2~10점 부여</li> </ul>
	환불액률		
환불개선 지수	개선건율	2017년 대상건의 2016년 대비 2017년 환불건(액)율 증감에 대한 백분위순위 구간별 점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점 척도로 구성(상대평가)</li> <li>2016년 대비 2017년 환불건(액)율 증감에 대한 백분위 순위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2~10점 부여</li> </ul>
	개선액률		
고의성 지수	급여대상 비급여징수	과다징수금액에서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징수(환불유형1) 및 별도징수 불가(환불유형2)로 환불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간별로 점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점 척도로 구성(절대평가)</li> <li>임의비급여 및 별도징수불가 환불금액 비중을 각각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2~10점 부여</li> </ul>
	별도징수 불가		

## Ⅱ

# 국민대상서비스

작성자 : 고객지원부 주 - 김미정  
부 - 김상균

### 1

##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보건의료의 초점이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요양기관 현황정보, 질병정보, 진료비 가격정보, 의료서비스 평가정보 등 종합적인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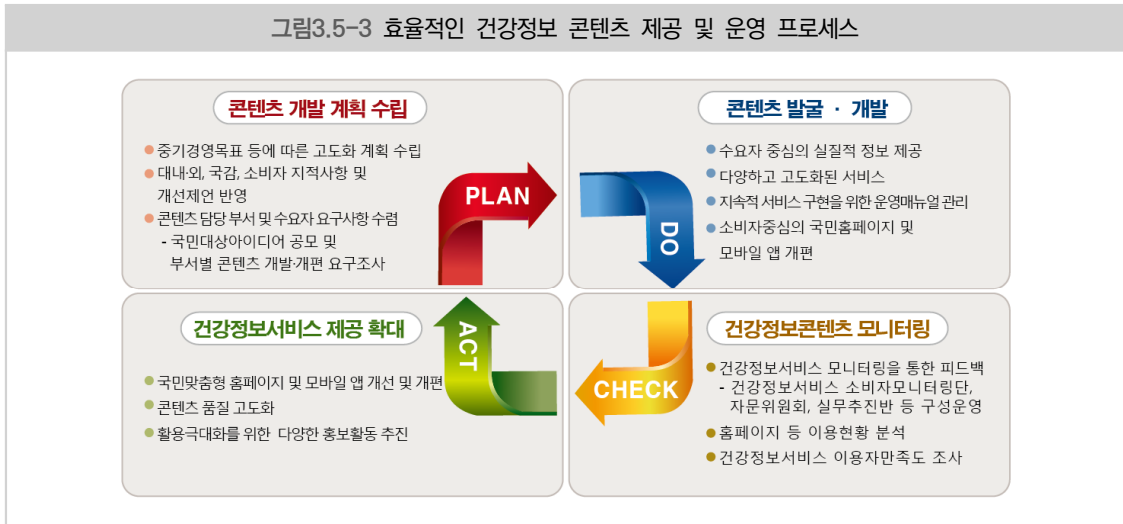
##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가. 개요

국민대상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무이다. 국민과 관련 부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공하며,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하고 있다.



그림3.5-3 효율적인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 및 운영 프로세스



## 나. 업무내용

### 1) 콘텐츠 선정 및 개발

- 국민의료 선택권 제고
  - 국민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진료선택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 의료기관 진료행태 변화 지원
  - 적정청구 및 진료행태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진료지원 정보제공
- 정보제공매체의 다양화
  - Naver, Daum 등 대형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 2) 모니터링 및 평가

- 콘텐츠 환류
  -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 콘텐츠 선정, 대내외 의견수렴 및 콘텐츠 개발에 반영
- 운영위원회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등 위원회 운영
  - 콘텐츠별, 항목별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 및 공유

## 다. 콘텐츠 개발 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의료이용 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건강정보 앱, 병원정보 앱, 진료비 확인 앱을 개발하여 병원선택정보, 의약품정보, 의약품안전사용점검(DUR)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특히 국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153기관(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7개 항목(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 ○○ 수술하는 병원 찾기 등 제공으로 의료선택 지원 및 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높이는 등 국민을 위한 홈페이지로 거듭났다. 2015년에는 자기투약 정보 조회 및 생활 속 질병정보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선보였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환자안전, 환자구성, 비용 정보 등을 반영한 요양병원 종합 정보와 호스피스를 위한 완화의료기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에 병원정보 및 병원평가정보, 진료비정보를 융합하여 맞춤형 병·의원 선택정보를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자기투약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원 약국 찾기를 GPS 기반 지도로 우선 검색하게 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2018년에는 서식개편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설명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홈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 PC 및 우리 원 블로그 등 SNS등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표3.5-2 연도별 콘텐츠 개발현황

연도	콘텐츠명	서비스 제공 채널
2010년	건강통계 모바일 앱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진료비영수증 설명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및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2011년	의료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자기근무이력조회	홈페이지
	약제비계산기	홈페이지
	가정상비약	홈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진료비확인 앱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건강정보 앱 (통합 앱)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병원정보 앱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표3.5-2 연도별 콘텐츠 개발현황(계속)

연도	콘텐츠명	서비스 제공 채널
2012년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홈페이지
	진료비영수증 설명 동영상 제작(서식개편에 따른 기존영상 개편)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및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건강보험 물어보기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진료비 가산정보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2013년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비중 조회	홈페이지
	진료비 가산정보	홈페이지
	건강보험 물어보기	홈페이지
	병원약국찾기 Open API 개발	홈페이지
	보험인정기준(급여기준, 심의사례를 일반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	홈페이지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 카툰	홈페이지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 확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2014년	우수 아이디어 공모 및 공모 진행사항 조회	홈페이지
	안전상비약 24시간 판매 편의점 정보	홈페이지
	손쉬운 병원 찾기 서비스(진료과목, 병원평가정보, 진료비용 등 제공)	홈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실시간 문 연(Open) 병원/약국 종합정보	홈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건강정보 통합 앱 개발(건강정보 앱, 병원정보 앱, 진료비 확인 앱 통합)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2015년	보건의료 주요 동향지표 개발	홈페이지
	자기투약정보 조회 서비스 개발	홈페이지
	생활속 질병정보	홈페이지
	의약품 복약정보	홈페이지
2016년	쉽게 풀어쓰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홈페이지
2017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제공 (자기투약정보 조회 서비스)	모바일
	지도기반 병원 약국 찾기 제공	홈페이지
2018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설명 동영상 제작(서식 개정에 따른 기존 영상 개편)	홈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 홈페이지 개편사업 진행연도 기준

## 가. 개요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건강정보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나. 관리 및 운영

### 1)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홈페이지 운영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항목별 평가, 회원관리, 이용현황 분석, 기타 콘텐츠 별 담당부서 지정 등 콘텐츠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

###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와 이용률 증가에 따라 국민에게 유용한 건강정보와 병원 선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별 이용분석, 다운로드 현황분석, 만족도 조사,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최신성 및 사용자 이용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 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선 및 개편

내부 직원 국민대상으로 발굴한 아이디어와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소비자 모니터링단·소비자단체·운영위원회 의견, 국감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하여 기획, 디자인, 기술, 콘텐츠 분야 등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접근성 향상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3.5-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관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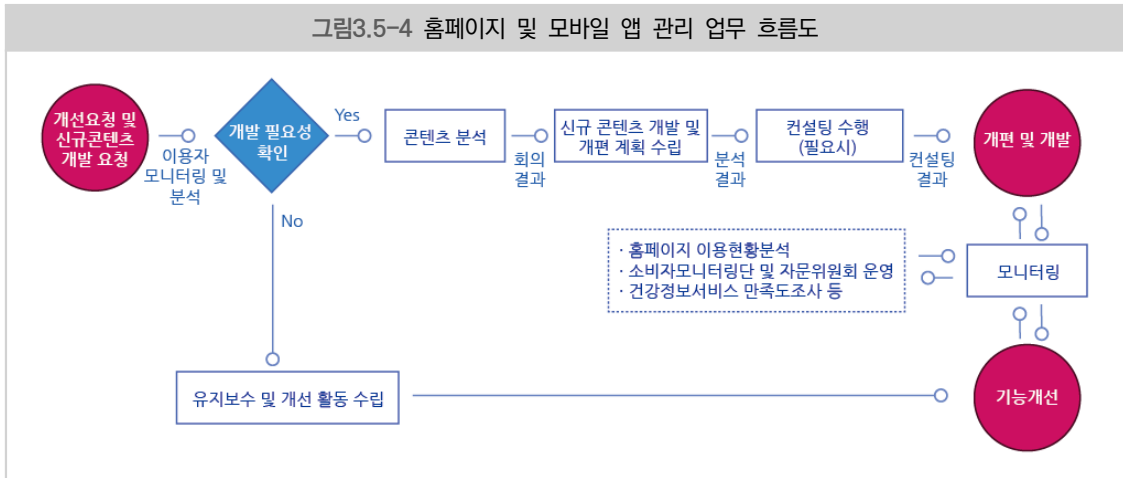


표3.5-3 연도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편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평가원 출범과 함께 <a href="http://www.hira.or.kr">http://www.hira.or.kr</a> 개통</li> <li>심사평가원 소식을 비롯하여 심사평가제도, 요양기관정보 등 구성</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처리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li> <li>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인증기능 마련</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정보제공(약품정보, 민원 방문예약 상담제, 고객 제안 코너 등) 및 사용성 개선으로 고객이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개편</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별 유형분류를 통해 일반국민과 요양기관용으로 구분하여 접속하도록 개편</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편</li> <li>첫 화면 로그인 서비스 및 상위 10개 서비스 전면배치</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및 민원창구의 통합</li> <li>'건강통계' 앱, '건강정보' 앱 개발</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기관홈페이지(biz.hira.or.kr) 국민홈페이지와 분리하여 별도 개통(5월),</li> <li>대국민 중심으로 메뉴체계 개선 및 병원평가정보 제공 방법 개선 등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12월)</li> <li>'병원정보' 앱 및 '진료비확인' 앱 개발</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접근성 품질마크<sup>63</sup> 신규 획득</li> <li>검색, 처방전 등록 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통합 개편</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PC기반 가까운 병원·약국찾기 정보 제공, Open API 방식 도입 등 신규 콘텐츠 15개 개발</li> </ul> </li> <li>모바일 신규 콘텐츠 개발(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및 안전상비약 판매처제공)</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신규콘텐츠 개발(우수 아이디어 공모 및 공모 진행사항 조회 화면 등 3개)</li> <li>정부3.0 추진과제 및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개선 요구에 따른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개편</li> </ul>

63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표3.5-2 연도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편내용(계속)

연도	주요 내용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운 용어, 데이터시각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웹, 앱 접근성 보장을 통한 편리성 제고</li> <li>• 킬러 콘텐츠 고도화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li> <li>• 병원정보 마트 구축 등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서비스 발굴 및 개발</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정보, 병원평가정보, 진료비정보 등의 융합으로 맞춤형 병원 선택 확대 제공</li> <li>•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웹·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인증 획득</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결하고 단순한 메뉴와 페이지 구조 개선으로 이용편의성 강화</li> <li>• 홈페이지의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 중심으로 개편</li> <li>• 국민 활용 관점에서 기존 콘텐츠 기능 강화 및 재구성(병원·약국 찾기 등)</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홈페이지 회원 약관 변경</li> <li>• 굿콘텐츠서비스인증<sup>64</sup>(홈페이지/모바일 앱) 획득</li> <li>• 모바일 앱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화면을 두 개의 탭(국민서비스, 기관소개)으로 분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개선</li> <li>- 비회원도 모바일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본인인증 방법 확대</li> </ul> </li> <li>•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Android/iOS) 획득</li> </ul>

## 라. 보안 및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관련 회원가입 후 2년을 주기로 회원 지속 여부 관련 재동의를 받고 있다.

## 4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작성자 : 비급여정보관리부 주 - 김용경  
부 - 이화정

##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한 이후 '13년 상급종합병원(43기관) 대상 29항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64 굿콘텐츠서비스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하려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규정은 의료공급자 위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마다 명칭이 다르고, 의학용어 사용 등으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쉽게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본조 신설(2015.12.29.), 시행(2016.9.30.), 개정(2016.12.2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제1항, 시행(2016. 9.3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 〈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다.
  - 본조신설(2016.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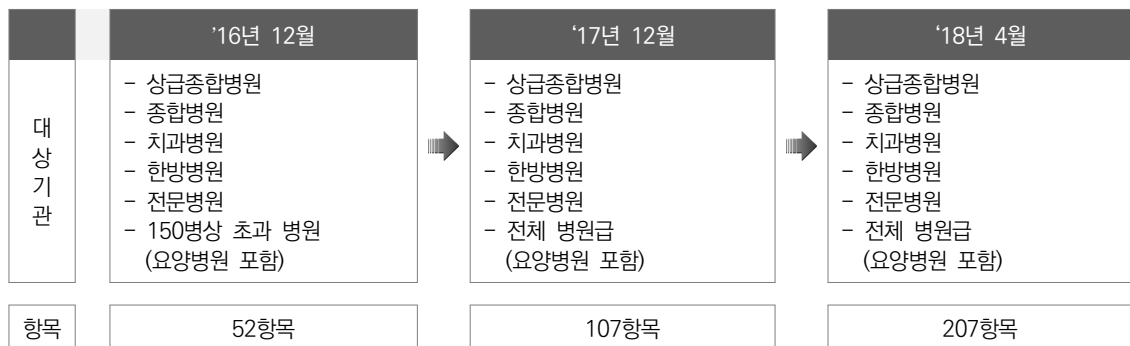
####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 (2016.10.6. 제정·발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 개정)

##### < 주요내용 >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자료의 조사 및 분석, 결과의 공개, 홈페이지 구축·운영, 연구·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7개 항목(비급여 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을 공개 항목으로 정한다.
- 공개는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로 지정하였으며,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다만 2016년도 공개시기는 12월 1일로 함)

#### 다. 대상기관 및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별표 1], 공개항목 표3 참조

표3.5-4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항목(207항목)

구분	세부항목 (207)	
상급병실료차액	(3)	1인실, 2인실, 3인실
교육상담료	(7)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치태조절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검체검사료	(1)	양수염색체검사
	(9)	항물리관호르몬[불임, 폐경], Rubella 항체결합력 검사, HIV항체[현장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항CCP항체[IgG](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검사)
검체검사료	(1)	Helicobacter Pylori검사(내시경하)- CLO Test[Urease Test]



표3.5-4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항목(207항목)(계속)

구분	세부항목 (207)	
기능검사료	(7)	체온열검사료(전신/부분), 한방경피온열검사 (전신/부분) * 동일 진료이나 체온열검사(의과)와 경피온열검사(한의과)로 구분 안구광학단층촬영, 눈의 계측검사,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5)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Ⅰ, Ⅱ, Ⅲ, Ⅳ),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 검사
초음파검사료	(41)	안초음파(안구, 안와, 계측),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비·부비동 초음파, 흉부초음파(유방·액와부 초음파, 유방·액와부 제외), 복부초음파(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반/정밀, 총수, 소장·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항문), 비뇨기계초음파(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초음파(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정밀), 관절초음파(손가락, 발가락, 주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등), 연부조직 초음파(일반/정밀), 하지정맥류, 임산부초음파(제1삼분기-일반/제1삼분기-정밀/제2,3삼분기-일반/제2,3삼분기-정밀)
MRI 진단료	(35)	뇌(뇌, 해마),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근골격계(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천장골관절 등), 흉부(심장, 흉부, 유방), 복부(복부, 골반, 췌장, 간, 담관 등), 혈관(뇌, 경부, 흉부, 복부, 사지, 심장),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지속적 통증 자가조절	(2)	대퇴신경,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이학요법료	(3)	도수치료 증식치료 (사지관절부위/ 척추부위)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5)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동반하지 않는 경우),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동반하지 않는 경우), 레이저정맥폐쇄술
처치 및 수술료 (고강도초음파집속술)	(4)	고강도초음파집속술[전립선암],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9)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일반 체외수정/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해동,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보존
처치 및 수술료	(3)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삼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4)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신경성형술(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시력교정술료	(2)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다빈치 로봇수술료	(2)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갑상선암),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충치치료료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보철료	(1)	골드크라운 (금니)

표3.5-4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항목(207항목)(계속)

구분	세부항목 (207)	
치과 임플란트료	(1)	치과임플란트
한방물리요법료	(5)	추나요법 (단순/전문/특수),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10)	대퇴신경(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5항목,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5항목
하지정맥류수술 (치료재료)	(15)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4항목,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11항목
제증명수수료	(31)	진단서(일반/건강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산(사태)증명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일반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후유장애), 병사용진단서, 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사본(1~5매/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CD/DVD/USB), 입원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상해진단서(3주미만/3주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천만원 이상), 채용신체 검사서(공무원, 일반), 제증명서 사본, 영문진단서(일반)

라. 자료수집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 Biznet시스템/ 대국민포털 관리/ 인터넷업무서비스/ 비급여가격정보관리/ 비급여 업데이트관리(정기)(NEW)

그림3.5-5 BizNet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수집 화면



마. 정보공개

- 홈페이지: [www.hira.or.kr/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http://www.hira.or.kr/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



- 모바일앱 : ‘건강정보’ 앱/메인화면(비급여진료비정보)/사이드 메뉴(메인화면 상단 사이트맵 클릭)/진료비알아보기/비급여진료비정보/비급여진료비알아보기



### 가. 개요

의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요양기관 종별 주요수술 진료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요양기관별 수술진료비용, 평균입원일수 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순구개열, 사지접합술, 화상치료 등 특정수술·시술 실시기관도 공개하여 국민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나.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 다. 주요내용

#### 1) 질병·수술별 요양급여비용 및 평균입원일수 공개

##### 가) 대상항목

- 대내·외 요구도가 높은 국민 관심질환 및 사회적 이슈 항목
- 총 진료비, 총 건수 등이 많은 수술

##### 나)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 제외기관: 연간 수술건수 10건 미만, 해당년도 개·폐업기관 등

##### 다) 대상자료: 건강보험, 의과, 입원 명세서

-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기관

##### 라) 대상기간: 공개연도 전년도 진료분(12개월)

##### 마) 공개내용: 수술항목별, 요양기관별 및 종별 수술진료비용, 평균입원일수, 소재지, 종별구분, 위치 찾기 등

\* 2018년 39개 수술항목(112개 세부수술) 공개

표3.5-5 2018년 수술진료비용 및 평균입원일수 공개항목

구분	수술명
암수술(14)	간암, 갑상선암, 난소암, 신장(콩팥)암, 직장암, 결장암, 방광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심장관련수술(2)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소화기계과(2)	담낭(쓸개)염, 담석증
안·이비인후과(5)	축농증(부비동염), 녹내장, 안외과질환, 안검수술, 고실성형술
비뇨기과(3)	방광·요도의 결석, 신장(콩팥)·요관의 결석, 전립선절제술(암이 아닌 경우)
정형외과(12)	넓적다리골절, 무릎관절, 무릎반월판연골, 무릎십자인대, 발꿈چه, 손·손목골절, 아래다리골절, 어깨골절, 엉덩이관절,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치과(1)	구순구개열

바) 공개주기 : 1회/년

사)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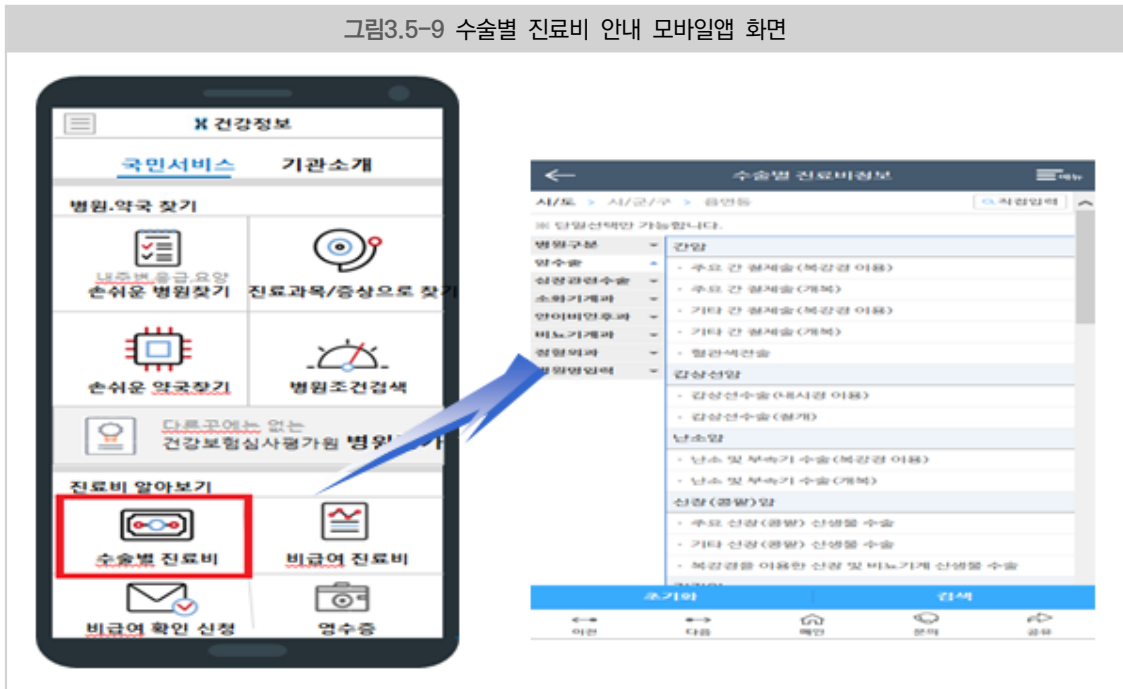
- 국민홈페이지 : 진료비 > 수술별 진료비 정보 > 수술별 진료비 알아보기 / 주제별정보 / 지역별정보

그림3.5-8 수술별 진료비 안내 홈페이지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주제별 정보' (Topic Information) section of the National Home Page. It include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hospital data. The table has columns for '병원명' (Hospital Name), '병원구분' (Hospital Type), '진료비 (만원)' (Treatment Cost in 10,000 KRW), '입원일수 (일)' (Average Hospitalization Days), '상세정보' (Detailed Information), and '소개' (Introduction). The table lists 12 hospitals, such as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and '경희대학교병원', with their respective costs and hospitalization days.

- 모바일 앱 「건강정보」 : 국민서비스 > 진료비 알아보기 > 수술별 진료비

그림3.5-9 수술별 진료비 안내 모바일앱 화면



## 2) 특정 진료 실시기관 공개

### 가) 대상항목

-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있으며 남용의 우려가 없는 수술 또는 시술
-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된 수술 등의 진료
- 사회적인 관심 증가된 수술 또는 시술

### 나) 대상기관 : 명세서 건수 5건 이상 수술·시술 병원

\* 알코올질환 입원치료, 화상치료 병원은 환자 수 기준

### 다) 대상자료 : 건강보험, 의료급여 명세서

-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기관
- 의과 입원 진료 지급 건

\* 단, 각막이식술, 사시수술, 망막수술, 사지접합술, 정맥류 수술은 외래 포함

### 라) 대상기간 : 공개연도 전년도 진료분(12개월)

### 마) 공개내용 : 특정 수술·시술 실시기관 소재지, 종별구분, 위치찾기 등

표3.5-6 2018년 특정진료 실시기관 공개항목(25항목)

구분	공개항목
특정분야(1)	알코올질환 입원치료
특정 수술·시술 (15)	구순구개열, 망막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시수술, 사지접합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안와골절 정복술, 인공심박동기거치술,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정맥류수술, 화상치료병원, 후두악성종양적출술, 인공판막치환술, 악성골종양광범위절제술, 고압산소요법
장기이식술(9)	각막·공막·간·소장·신장·심장·췌장·폐·골수 이식술

바) 공개주기 : 1회/년

사) 정보공개

- 국민홈페이지 : 병원·약국 > 병원·약국찾기 > 세부조건별 찾기 > 특정진료별 > 특정 수술·시술 / 장기이식술

그림3.5-10 특정진료 실시기관 안내 홈페이지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세부 조건별 찾기' (Detailed Search by Condition) interface. It includes search filters for '시도 선택' (Province), '시군구 선택' (City/District), and '병원/동료 선택' (Hospital/Colleague). The main section is titled '특정진료' (Specific Treatment) and shows a list of search results for '특수진료기능분야' (Specialized Treatment Function Areas). A red box highlights the search results for '특수진료기능분야', which includes various medical procedures such as '알코올질환입원치료병원', '사시수술', '인공우이식술', '인공심박동기이식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망막수술', '화상치료병원', '각막이식술', '간이식술', '신장이식술', '심장이식술', '정맥류수술', '골수이식술', '구순구개열', '안와골절정복술', '후두악성종양적출술', and '인공판막치환술'. The page also includes a '검색' (Search) button and a '결과 다운로드' (Download Results) button.

● 모바일 앱 「건강정보」 : 손쉬운 병원찾기 > 증상별

그림3.5-11 특정진료 실시기관 안내 모바일앱 화면





## Ⅲ

## 정보공개제도

작성자 : 의료정보관리부 주 - 김현표  
부 - 박해경

## 1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2 법적 근거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 3 정보공개제도 업무 내용

## 가. 정보공개 서비스 유형

그림3.5-12 정보공개 서비스 유형	
행정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응하여 공개</li> <li>- 홈페이지, 팩스(FAX), 서면 등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제공</li> </ul>
사전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요구가 많은 유형을 분석·모니터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행정적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li> </ul>
원문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문서 정보목록 및 임원급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된 원문정보를 사전에 공개</li> </ul>

## 나. 행정정보공개

### 1) 정보공개 청구

#### 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심사평가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나)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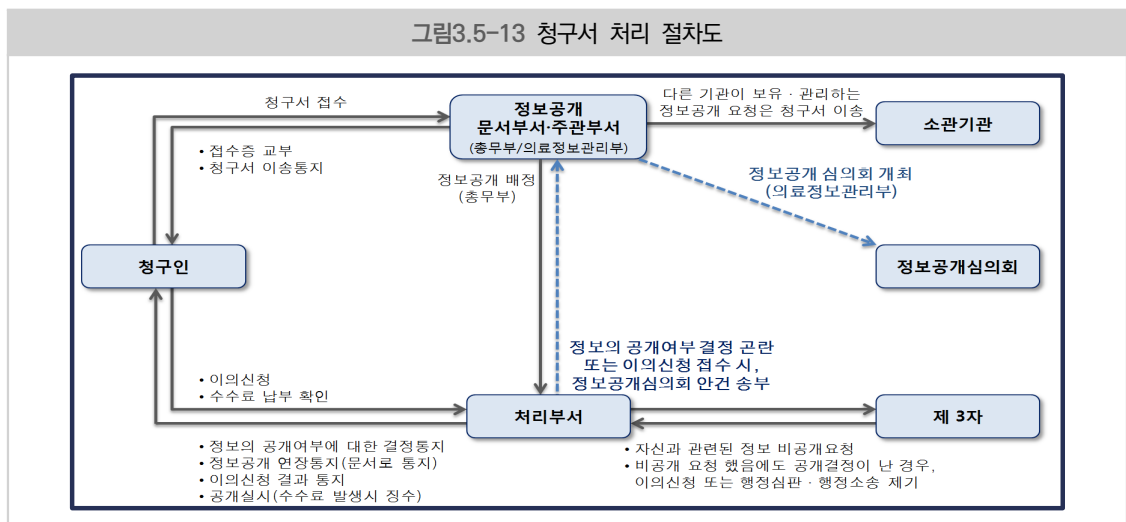
청구방법		설 명
온라인 (인터넷)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청구서 작성
	행안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서 작성
서면	우편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	직접 작성	심사평가원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구술 청구	심사평가원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인은 담당 직원의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2) 정보공개 처리

#### 가) 청구서 처리 절차도



## 나)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심사평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법 제9조제1항 또는 지침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제1항) 〉

- ①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⑤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회에 있는 정보
- ⑥ 개인정보
- ⑦ 경영·영업비밀 정보
- ⑧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다)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에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지침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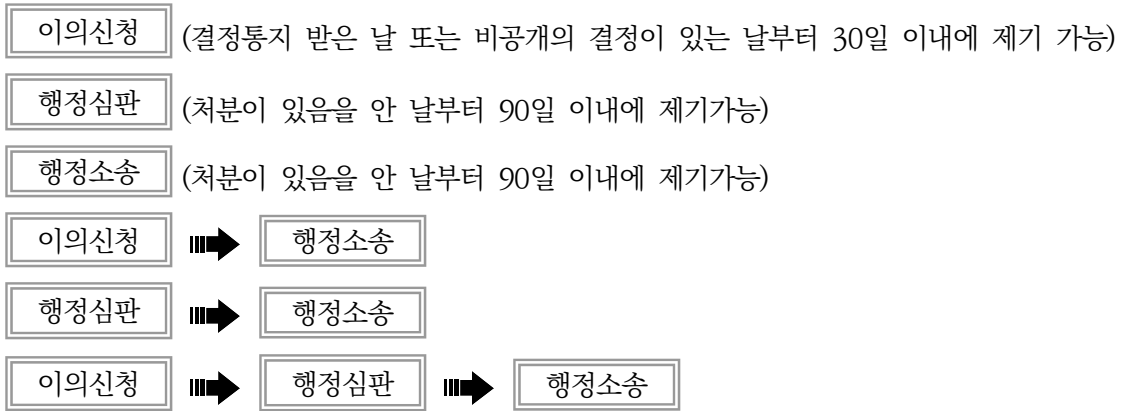
## 3) 정보공개 실시

- 공개 일시의 결정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4) 불복구제 절차

## 가) 절차

- 정보공개 내용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공개여부 결정하며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운영
  - 총 9명으로 구성(외부5명, 내부4명)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 사전정보공개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대상 : 국민일상 관련정보, 기타공공기관 사무 관련정보, 국정감사·행정사무 감사 관련 정보, 국가계약법 관련정보 등 행정안전부 선정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항목 및 심사평가원 선정 항목 등
  - 공개위치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라. 원문정보공개

### 1) 정의

-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문서정보목록(문서제목) 및 원문정보(기안문 및 붙임파일)를 국민에게 사전공개하는 제도이다.

### 2) 원문정보공개대상

- 모든 생산문서의 정보목록 및 임원급(원장, 감사, 상임이사) 결재 문서 중 공개로 설정된 원문정보
  - ※ 준정부기관은 '16.3.1.이후 생산 문서부터 공개

### 3) 공개위치

- 공개위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http://www.open.go.kr))
- 세부메뉴 : [문서정보목록] 공개청구 > 정보목록, [원문정보] 원문공개

## IV

# 대국민 통계정보 서비스

작성자 : 의료정보관리부 주 - 김현표  
부 - 박해경

### 1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관리되는 빅데이터(심사청구정보,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정보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 2 법적 근거

- 가. 「통계법·시행령·시행규칙」
- 나. 「통계관리 운영지침」 제140호(개정 2012.1.30.)

### 3 대국민 통계 서비스 내역

#### 가. 개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한 진료내역,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자원 현황, 의약품 유통 현황 등 많은 보건의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간으로 국회, 언론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대외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매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연구자 및 정부정책 결정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쉽게 보건의료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통계의 품질관리

### 1) 통계 산출 표준 가이드 마련

- 가) 누구나 쉽게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업무 중복요인을 없애기 위해 질병 등 통계 산출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대내외 제공하고 있다.
- '13년 감기 등 50항목에 대한 기준마련을 시작으로 '18년 현재 총 250항목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표준 통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질병·행위 통계 산출내역 표준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 해당 통계를 '국민관심통계'라는 항목으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 ※ 국민관심통계 제공위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 의료통계정보 > 질병/행위별 의료통계 > 국민관심통계(질병통계, 진료행위통계, 질병/행위통계)

### 2)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발굴

- 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심사평가원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심사평가원 작성 통계가 국가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승인통계 항목을 발굴하고 있다.
- 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통계' 등 총 6종의 국가승인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표3.5-7 심사평가원 국가승인통계 현황

통계명	승인번호(승인년월)	공표시기	간행물
건강보험통계	920006(1996.8.5)	9월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	920015(2016.6.30)	10월	의료급여통계연보
의료기관별급여 적정성평가현황	354002(2007.7.19)	수시	평가결과보고서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354003(2011.12.28)	9월	의약품유통정보통계연보
급여의약품청구현황	354004(2016.4.18)	7월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354005(2017.2.27)	6월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지표

※ 공표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심사평가원은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 통계책임관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정·운영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련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계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심사평가원 국가승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 다. 통계 서비스 유형

**그림3.5-14 통계정보제공 서비스 유형**

통계간행물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심사청구통계, 의료자원통계, 의약품통계 등을 지표화, 목록화하여 연속성 있는 통계 생산·제공</li> <li>- 건강보험 및 국민의료행태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li> </ul>
대국민 통계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이용관련 통계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시 제공</li> <li>- 연도별 진료비 추이, 영양기관현황, 질병별/의료행위별 통계</li> </ul>
수시요구 통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언론, 학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 수시 제공</li> </ul>

### 1) 통계간행물 발간

심사평가원은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실적 및 현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발간한다.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를 중심으로 영양기관 심사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용인구, 보험료 등 재정현황 및 가입자 형태별 진료실적 부문을 작성한다.

또한,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심사실적 등의 통계 제공을 위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와 심사실적·평가결과·의약품 통계 등 주요 통계를 수록한 소책자인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연간으로 발간한다.

표3.5-8 주요 통계간행물 현황

구분	건강보험 통계연보	진료비 통계지표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
수록내용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실적, 심사실적, 질병별 실적 등 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발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보험의 주요 심사 통계	의료 인력·시설·장비, 건강보험 심사, 의료급여 심사, 의약품 및 평가통계 등 심사평가원 주요 통계
발간주기	• 연간	• 분기(파일), 반기, 연간	• 연간
공개방법	• 책자, 홈페이지, 국가승인통계포털(KOSIS)	• 책자, 홈페이지	• 책자, 홈페이지, 모바일



## 2) 대국민 통계 서비스 운영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의료통계 및 질병·진료행위 등 통계를 상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가) 통계서비스 내용

- 8부문 144종의 통계 및 그래프 조회 서비스를 무료 제공
  - ① 주요의료통계(58종), ② 국가승인통계(6종), ③ 질병·행위별 의료 통계(33종), ④ 의료 이용 통계(11종), ⑤ 의약품 통계(23종), ⑥ OECD 보건 통계(8종), ⑦ 의료경영 지원정보(3종), ⑧ 의료통계 자료실(2종)

그림3.5-15 의료통계정보 메뉴 화면

공공데이터	의료빅데이터	의료통계정보	고객지원	시스템소개
의료통계정보서비스목록				
주요 의료 통계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총진료비 현황 평가결과 통계	건강보험 진료 통계 의약품 현황 기타	의료급여 진료 통계 치료재료 청구 정보(통계)
국가승인 통계 (KOSIS 바로가기)	건강보험통계(요양기관현황)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의료급여통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의료기관별 적정성평가현황	원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질병/행위별 의료 통계	국민관심질병통계 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 상대가치(관리진료과)통계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통계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	국민관심질병/행위 통계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다빈도질병 통계
의료 이용 통계	진료유형별(입원/외래 등)통계 경증질환 통계	요양기관종별 통계	연령별 통계 시도별 통계	4대 중증질환 통계
의약품 통계	의약품 사용 통계 ATC코드 4단계별 사용(시군구별, 중병, 상병별) 통계	질병별 의약품 통계 ATC코드 3단계별 사용(시군구별, 중병, 상병별) 통계	약효분류군 사용실적 성분 사용실적	
OECD 보건 통계	구성체계	분야별 OECD 통계	참고자료	
의료경영 지원정보	요양기관 개폐업현황	의료수요정보	연령별 다빈도 질환정보	
의료 통계 자료실	통계간행물    관련 통계 연계 서비스			

### 나) 주요 통계서비스

- 질병통계 :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소분류, 세분류)별 환자수, 진료비에 대한 통계를 제공

-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단위로 환자수, 총 사용(실시)량, 진료비에 대한 통계를 제공
-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질병&진료행위통계 : 통계수요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국민 생활밀착형 질병 및 진료행위 항목을 선정하여 통계정보를 제공(당뇨병, 우울증 등 250항목)
- 다빈도 질병: 입원·외래별, 연령별·성별 등에 따라 진료환자가 많은 질병의 환자수, 진료비에 대한 통계 제공

#### 다) 공개위치

- 보건 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의 의료통계 정보

### 3) 대외 통계자료 제공

국회, 정부기관, 언론, 학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생산·제공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보건 의료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가) 자료 요청방법

-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전자, 팩스, 우편, 방문) 제출

#### 나) 자료 제공 근거

- 정부기관 :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및 제8조(행정응원)
- 국회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다) 자료 제공 원칙

- 심사평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유관기관은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를 준용하여 자료 제공 범위 설정

V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작성자 : 빅데이터부 주 - 안미라  
부 - 최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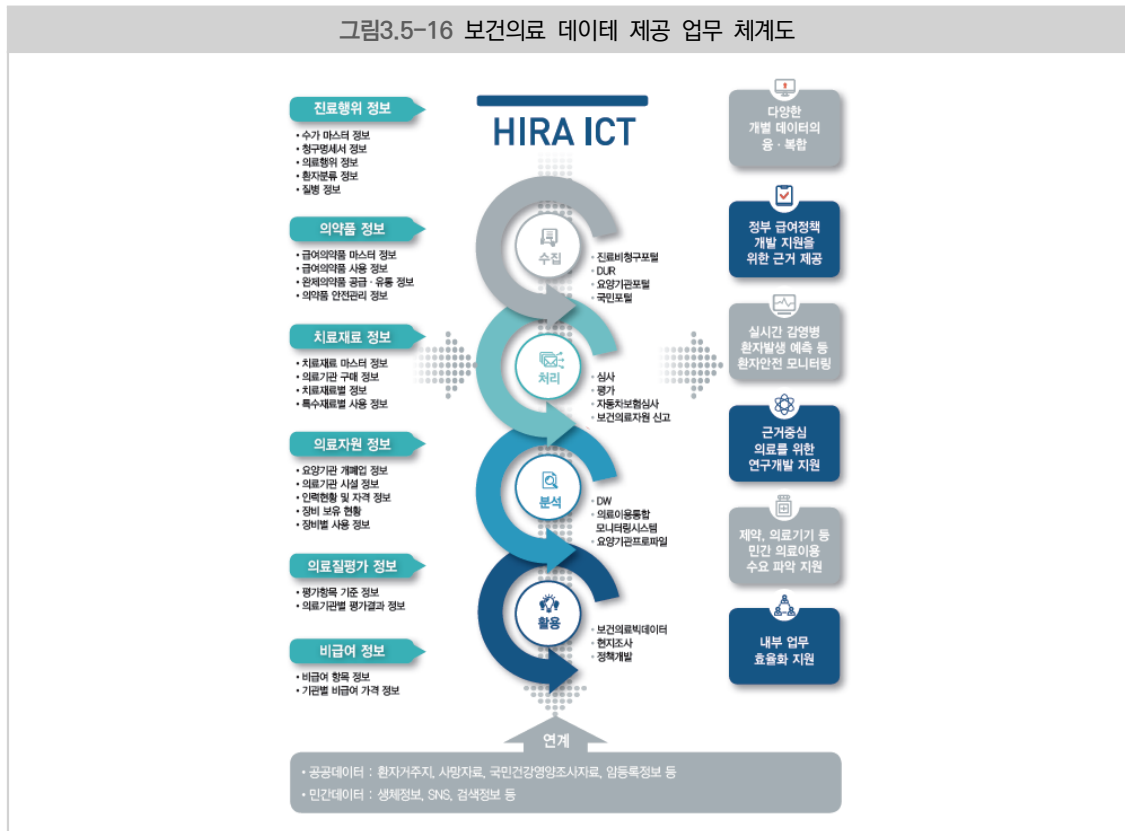
1

## 업무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식약처 등으로부터 실시간 수집·정제한 데이터를 학계, 의약계, 산업계 및 일반국민이 보건의료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여 개방하고 있다.

※ 2017년 연간 26,872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162건의 학계·의약계 보건의료 연구 지원, 2,093건의 산업계 R&D 지원

그림3.5-16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업무 체계도



2

관련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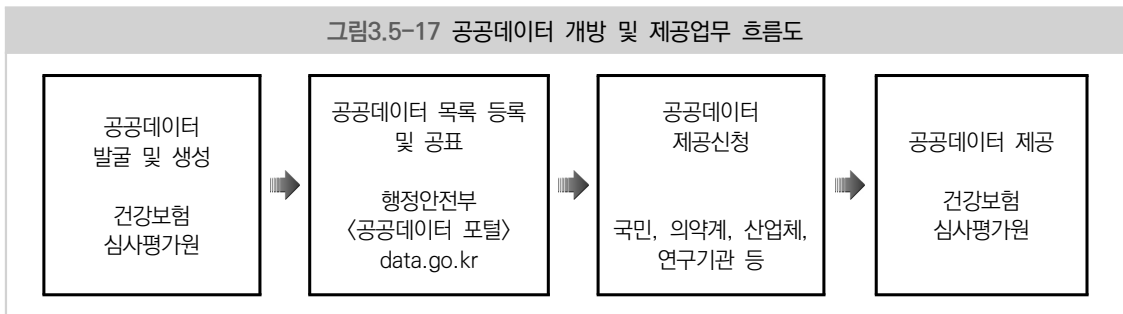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서비스

## 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 1) 개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발굴 및 생성, 등록 및 공표, 제공 등의 전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3.5-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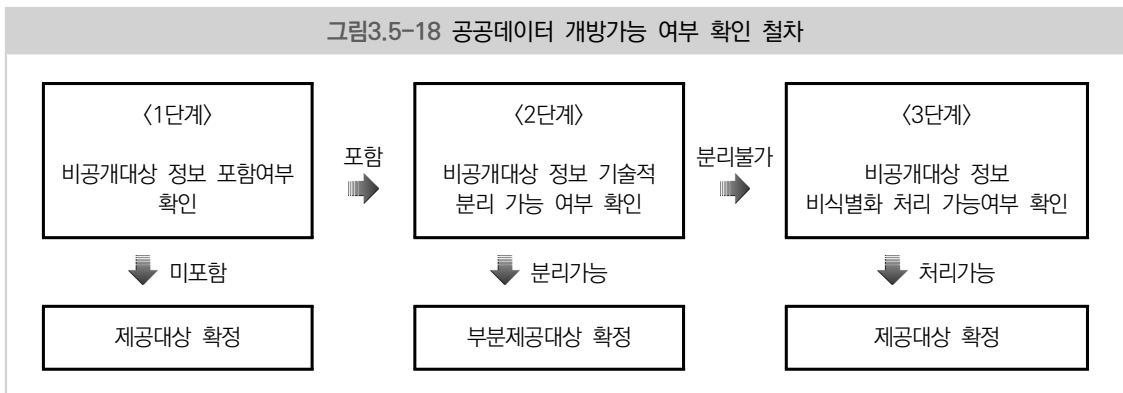


##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절차

## 가) 공공데이터 발굴 및 생성

- 심사평가원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 중 국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정하는 단계

그림3.5-18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여부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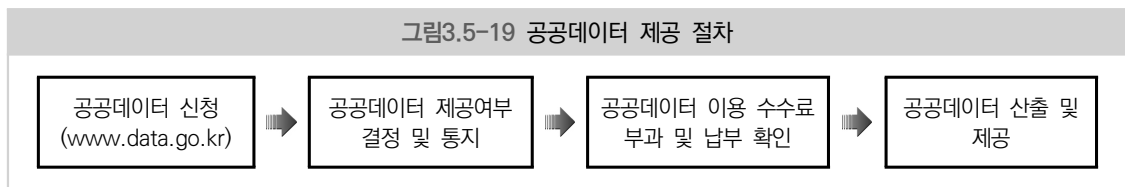


### 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및 공표

심사평가원은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공공데이터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하여야 하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공공데이터법」 제19조)하여야 한다.

### 다) 공공데이터 제공

- (공표·제공대상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공표·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로 신청하며, ‘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의 결정을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함께 안내하며, 공공데이터는 이용 수수료 납부 확인 후 별도 산출하여 제공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한 내용이 담당자에게 SMS와 E-mail로 통보된다.
- 담당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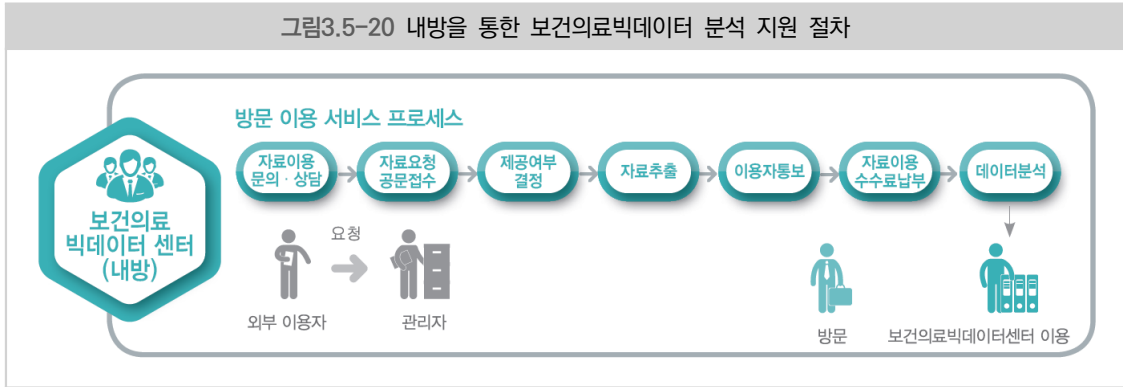
## 나.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지원

### 1) 개요

학계·의약계·산업계 이용자 수요에 맞춰 보건의료연구, R&D,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개방·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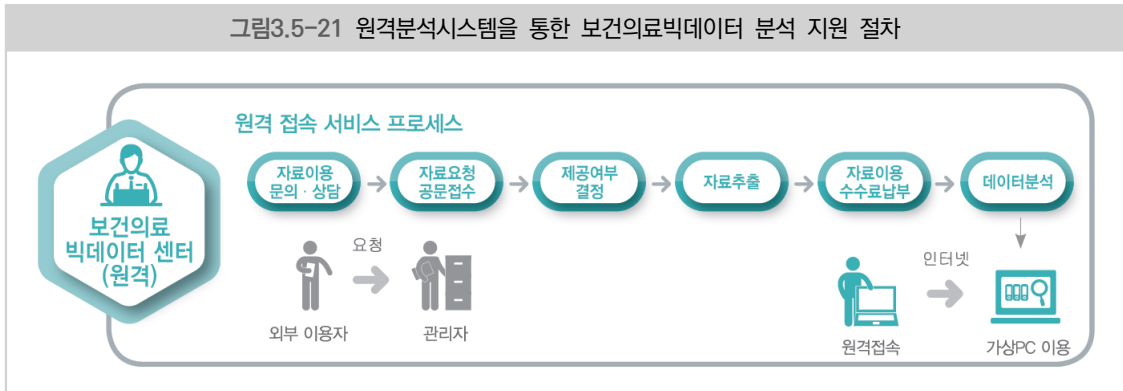
## 2) 이용 방법

### 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방문을 통한 자료 분석



- 이용자가 직접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에 내방하여 PC를 통해 분석시스템 접속 및 데이터 분석  
 ※ 제약사, 컨설팅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 나)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분석



- 이용자가 별도 내방 없이 데스크톱가상화(VDI)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데이터 분석  
 ※ 연구중심병원, 학술연구기관 등

## 3) 데이터 분석결과 반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및 원격통계분석시스템 이용자가 데이터 분석결과 반출 신청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자료형태, 반출자료용량, 반출불가항목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출한다.

## 다.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 1) 운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7조
-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총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위원) 추천자 중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내부 5명 이내, 외부 5명 이내)
- 3) 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 제공 승인에 관한 사항, 제공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 이용 수수료 감면

#### ● 수수료 면제 대상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제1호 및 제2호와의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
4. 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심사평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해당 과제에 한함)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6. 심사평가원 공모전 수상과제를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해당 과제에 한함)
7. 설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생 창업기업
8. 그 밖에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 ● 수수료 감면 대상(50% 감액)

1.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심사평가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학술단체(학회) 및 의약단체(협회)
7.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
8. 그 밖에 수수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 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운영

### 1) 시스템 개요

- 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에 특화된 포털 시스템으로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축하였으며,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통계정보 제공, 의료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융합DB, 개방DB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가고 있다.
  - ※ (인터넷) opendata.hira.or.kr (모바일) opendata.hira.or.kr/home.mo

### 2) 시스템 주요 메뉴

- 가) (공공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환자표본자료 등을 개방
  - 영양기관현황정보, 영양기관 개폐업 정보, 환자표본자료 등 38종
- 나) (의료빅데이터) 전문 분석을 원하는 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센터 및 원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분석 지원
  - 빅데이터센터 소개, 빅데이터분석 이용안내, 이용신청 등
- 다) (의료통계정보) 질병통계·의약품사용통계·의료자원현황 등 고수요·고가치의 보건의료 기초통계지표 제공
  - 총진료비현황, 국민관심질병통계, 영양기관현황정보 등 144종
- 라) (의료이용지도) GIS에 기반한 환자 진료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위치정보, 의료자원 분포, 질병통계 등 5개 메뉴

## VI

# 의약품 사용정보 공개 및 제공

작성자 : 빅데이터부 주 - 안미라  
부 - 최인정

### 1

## 업무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의약품 사용정보를 산출·제공하고 있다.

### 2

## 관련 근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 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

## 4) 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제19조(정보의 가공·제공)

제19조(정보의 가공·제공) ①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보를 신청한 경우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5)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3

##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모델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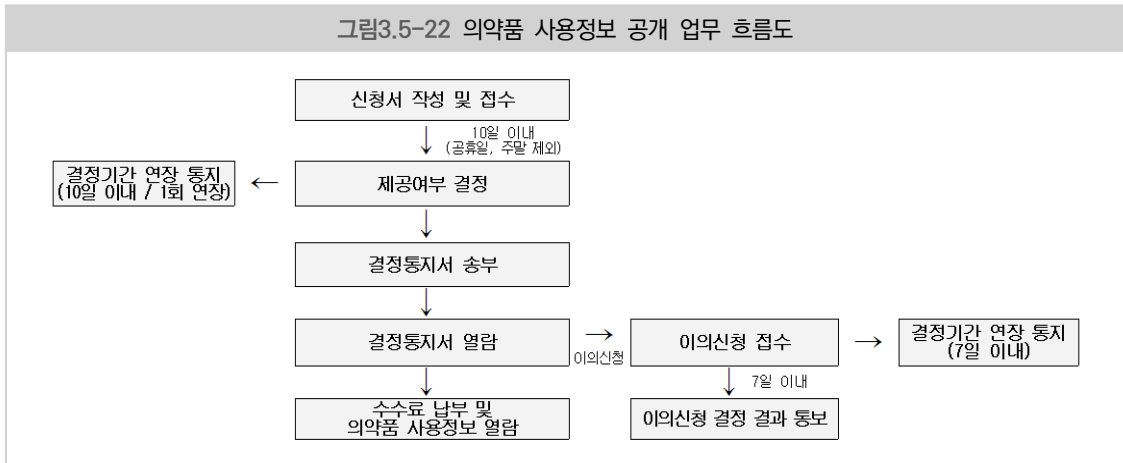
모델번호	모델명
모델1	자사제품의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
모델1-1	자사제품의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2	자사제품의 시도별 사용실적
모델2-1	자사제품의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2-1	자사제품의 시도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3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3-1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3-2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4	자사제품의 상병별 사용실적
모델12	자사제품의 상병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13	자사제품의 상병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5	자사제품의 전체상병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5-1	자사제품의 특정상병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6	자사제품의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모델10	자사제품의 요양기관종별 원내원외 사용실적

제3부 심사 및 평가

모델번호	모델명
모델11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사용실적
모델11-1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11-2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15	자사제품의 원내원외 환자수 사용실적
모델16	자사제품의 요양기관그룹별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16-1	자사제품의 병상규모별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7a	약효분류군의 시도별 사용실적
모델7b	약효분류군의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7c	약효분류군의 시도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7-1a	약효분류군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7-1b	약효분류군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7-1c	약효분류군의 요청지역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7-2	약효분류군의 상병별 사용실적
모델8a	약리기전(ATC코드(4단계))의 시도별 사용실적
모델8b	약리기전(ATC코드(4단계))의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8c	약리기전(ATC코드(4단계))의 시도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8-1a	약리기전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8-1b	약리기전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8-1c	약리기전의 요청지역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8-2	약리기전의 상병별 사용실적
모델9a	성분의 시도별 사용실적
모델9b	성분의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9c	성분의 시도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9-1a	성분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
모델9-1b	성분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모델9-1c	성분의 요청지역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모델9-2	성분의 상병별 사용실적
모델14	약리기전(ATC코드(3단계))의 시도별 사용실적

## 4

## 업무 흐름도



## 5

## 업무 절차

## 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http://biz.kpis.or.kr>)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정보공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나. 제공여부 결정

- 1)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의약품 사용정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 (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제10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결정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2)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정보가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제11조제4항)하여야 한다.
- 3) 신청된 의약품의 제조사 및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타사 의약품인 경우 자료제공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4) 일반정보(약리기전, 성분, 약효분류군)인 경우, 제약조건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 법인 경영·영업상 정보 식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약조건 확인

**〈제약조건〉**

1. 약품목수 또는 업체(제조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2. 산출자료 중 특정제품의 금액이 총 청구금액의 80%를 넘을 경우

\* 위 제약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자료 제공 불가

5) 의약품 사용정보를 산출하고, 신청내역에 맞추어 데이터 가공 및 정합성 검증 절차를 밟는다.

#### 다. 결정통지서 송부

1)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의약품 사용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제공여부, 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통지(의약품 유통 정보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제11조)하여야 한다.

2)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수수료 면제대상

**「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 업무 운영지침」 제17조(정보공개 수수료의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약사법령,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정보센터에 자료 또는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3. 심사평가원이 업무협력을 위하여 MOU 등을 체결한 외국정부 또는 심사평가원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이하 생략)

- 수수료 감면 대상: 동일 제품을 당해년도 내에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구분	감면율	품목별 수수료
최초 요청	-	457,800원
2회 요청	10%	412,000원
3회 요청	20%	366,200원
4회 이상 요청	30%	320,400원

3) 결정통지서 송부 방법은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 내 제약사별로 부여된 메일로 송부로 한다.

## 라. 수수료 납부 및 의약품 사용정보 열람

- 1) 담당자는 수수료 납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납부된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 2) 수수료 납부 당일 청구인은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약품 사용정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마. 이의신청

-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제18조)이 가능하다.
- 2)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결정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제4부

##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관리

제1장 보건의료자원 관리

제2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제3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제4장 ICT 서비스 운영







# 제 1 장

## 보건의료자원 관리

- I. 요양기관 현황 관리
- II. 요양기관 장비 관리
- III.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등 운영
- IV.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V. 전문병원 지정·평가



# 제1장

## 보건의료자원 관리

### I

### 요양기관 현황 관리

작성자 : 자원운영부 주 - 김한정  
부 - 서희정

#### 1

#### 개요

보건의료자원 관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연계 받아 요양기관의 일반사항, 인력·시설·장비현황을 등록·관리하는 업무이다.

#### 2

####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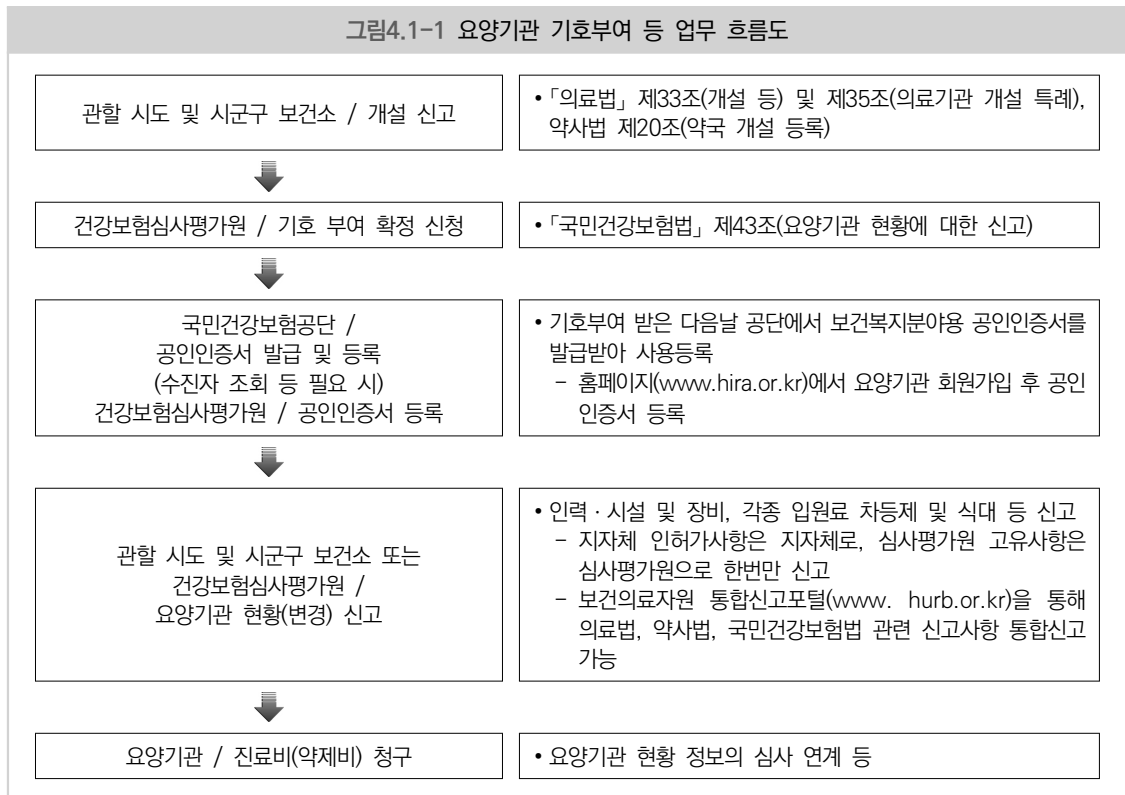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호(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마. 관련 규칙 등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3)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4)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5)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3 업무 절차 및 실무 사례

#### 가. 업무 흐름도



## 나. 신청방법

### 1) 요양기관 기호부여 확정신청

- 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허가)가 완료되면,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을 통해 접수받아 요양기관에 요양기관기호를 임시부여 하고, 요양기관은 이후부터 통합신고포털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신고가 가능해진다.
- 나) 임시 요양기관기호를 부여 받은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에서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계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추가적인 현황신고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에 제출하면 요양기관기호를 확정 받게 된다.
- 다) 요양기관기호 확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요양기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신고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 라) 기호부여 대상

- 신규개설
- 설립형태 변경 : 개인 ↔ 법인
- 공동개설 : 주 ↔ 부
- 종별 변경 : 의원 ↔ 병원(종합)
- 개설자 변경(개인개설) : 갑 ↔ 을
- 기타 : 타 시·도 이전

### 마) 제출자료

구분	의료기관	약국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 현황신고서</li> <li>- 포털신고시는 제출 불필요</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약국 및 한국회귀약품센터용)</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 사본</li> </ul>

바) 제출시기 : 개설 신고(허가)증 및 개설 등록증 교부 후

사) 제출처 : 심사평가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한의과진료과목 8개 모두 설치)	종합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및 보건기관)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원(본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원(관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원(서울)</li> <li>- 대구지원(대구, 경북)</li> <li>- 대전지원(대전, 충남, 충북, 세종)</li> <li>- 수원지원(경기남부)</li> <li>- 의정부지원(경기북부, 강원)</li> <li>- 전주지원(전북)</li> <li>- 부산지원(부산, 제주)</li> <li>- 광주지원(광주, 전남)</li> <li>- 인천지원(인천)</li> <li>- 창원지원(울산, 경남)</li> </ul> </li> </ul>

## 2)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가) 요양기관의 기호를 부여받고 난 후 신고(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시도·시군구 보건소 및 심사평가원에 아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현황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제출처

구분	지자체 인허가 사항				심사평가원 신고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변경</li> <li>• 기관정보(주소 등) 변경</li> <li>• 시설현황 (병상수 합, 면적) 변경</li> <li>• 진료과목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개설자↔공동개설자 변경</li> <li>• 인력상세 변경(대진의, 의료인수 변경 포함)</li> <li>• 시설현황 (인실별 상세현황) 변경</li> <li>• 특수운영현황, 차등제, 식대현황 등</li> </ul>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제16호·제20호서식</li> <li>• (약국)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li> </ul>		
제출기간	사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	구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구분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한의과 진료과목 8개 모두 설치)	종합병원급이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및 보건기관)
	제출처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제출처	

표4.1-1 요양기관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변경사항		첨부서류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2) 소재지	<p>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 외 이전(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하지 않은 경우)</p> <p>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 통장 사본 1부</li> </ul>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5) 법인개원인 경우의 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6)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li> <li>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세부전문직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특수)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li> <li>•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li> </ul>
(7) 병상수 및 병상수		• 없음



표4.1-1 요양기관 변경사항별 첨부서류(계속)

변경사항	첨부서류
(8)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거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함
(10)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12)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13)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14) 참여 병원·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1부
(15)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16)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1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소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1부
(18)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20)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21) 진료과목	• 없음
(22)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1)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1)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 (8)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 (4)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 (11)

### 3) 요양기관의 기호 취소

가) 요양기관의 기호를 부여받고 난 후 의료기관·약국을 폐업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 관할 보건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내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 처리결과를 심사평가원은 그대로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기호를 취소한다).

나) 제출시기 : 사전

다) 사유

- 대표자 사망
- 고령(건강상)
- 학업목적
- 경영상
- 취업
- 무기한 휴업
- 소재지 이전
- 종별변경 I (의원↔병원)
- 면허취소
-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업
- 종별변경 II (병원↔종합병원)
- 기타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17.6.21.부터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1개월 미만의 휴업인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를 한다.

## II

## 요양기관 장비 관리

작성자 : 자원운영부 주 - 김한정  
부 - 류영희

## 1

## 개요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정보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장비별 기능분류 및 시스템 등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장비 현황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비 정보를 대국민 정보 공개, 각종통계(OECD, 통계청, 감사원 등) 산출 등에 활용하고 있다.

## 2

## 의료장비 정의

구분	내용
의료장비	의료기기 중 치료재료 및 의료용품을 제외한 반복 사용되는 내구성 의료기기
일반장비	의료장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유방촬영용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및 사용을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특수 의료장비	보건복지부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 1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중 B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B102* 엑스선촬영·투시장치, B103*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B104* 치과방사선 파노라마장치, B105*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B106* C-arm형 엑스선장치, B107* 혈관조영촬영장치, B108*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B109* 콘빔(Cone beam) CT, B20102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B20301·B20303~B20305·B20309 골밀도검사기, D21201~D21203 체외충격파쇄석기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함(「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보건복지부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 1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중 B30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B108*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B105*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시장·군수·구청장이 20자리 고유번호 부여(고유번호 8·9번째 숫자는 장비 종류 구분자임(01: MRI, 02: CT, 03: Mammography))

구분	내용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56조 및 제61조)
	보건복지부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별표 1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중 B20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B202* 감마카메라, B40100 선형가속기, B40200 후장전치료기, B40300 감마나이프, B40400 사이버나이프, B40500 토모테라피, B40600 중성자치료기, B40700 양성자치료기,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 3 의료장비 관리 주체별 역할

<p style="text-align: center;"><b>심사평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현황을 제출받아 신고·등록관리</li> <li>- 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보건 의료 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및 서면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제출 받아 사전검토, 바코드 요청,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 후 심사평가원 등록(「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12조2)</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의약품안전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시장·군수·구청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의한 장비 설치·사용신고·등록 등 관리</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li> <li>- 특수의료장비(「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검사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안전관리검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li> <li>• 특수의료장비의 품질(영상)관리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요양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장비 구입·사용</li> <li>- 의료장비 구입·사용 시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심사평가원 신고대상 장비는 관련서류 첨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판매업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및 제15조(수입업 허가 등),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등)</li> </ul>

**참고사항) 검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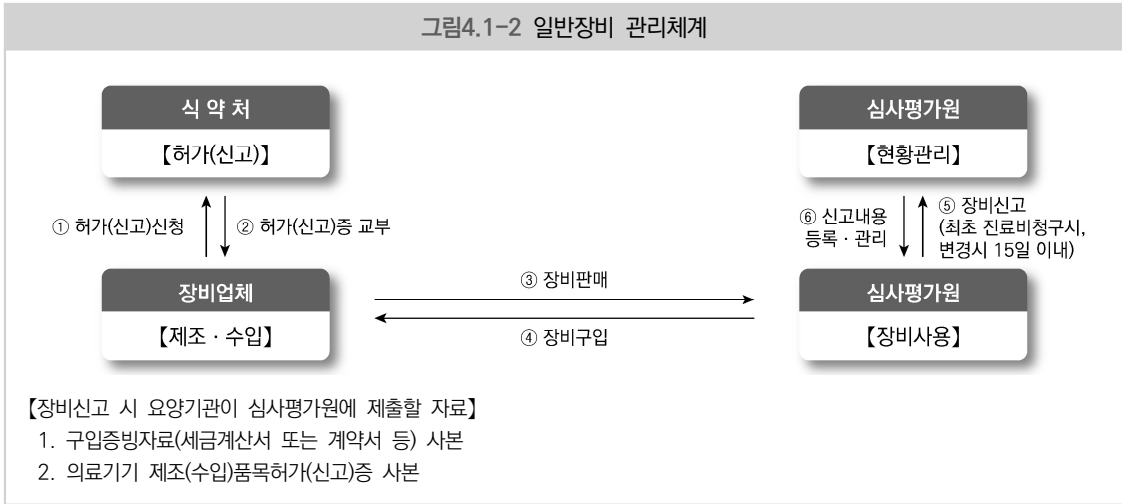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질병관리본부 등록) :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중앙기술검사원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보건복지부 위탁)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 '18.9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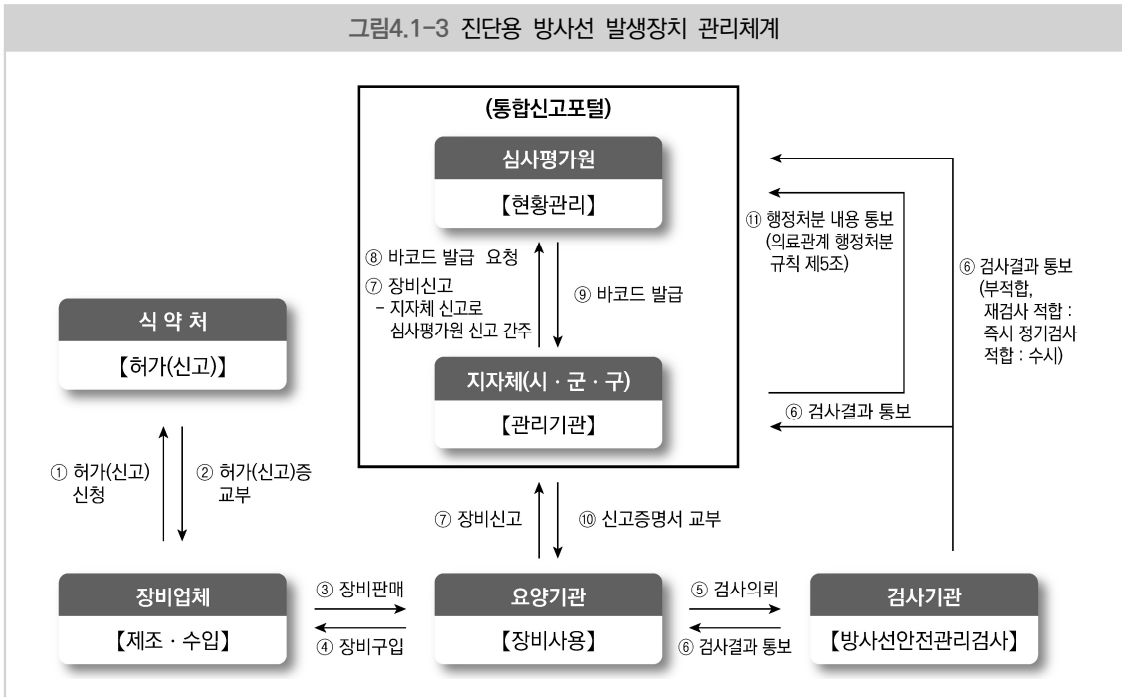
4

의료장비 관리 체계

가. 일반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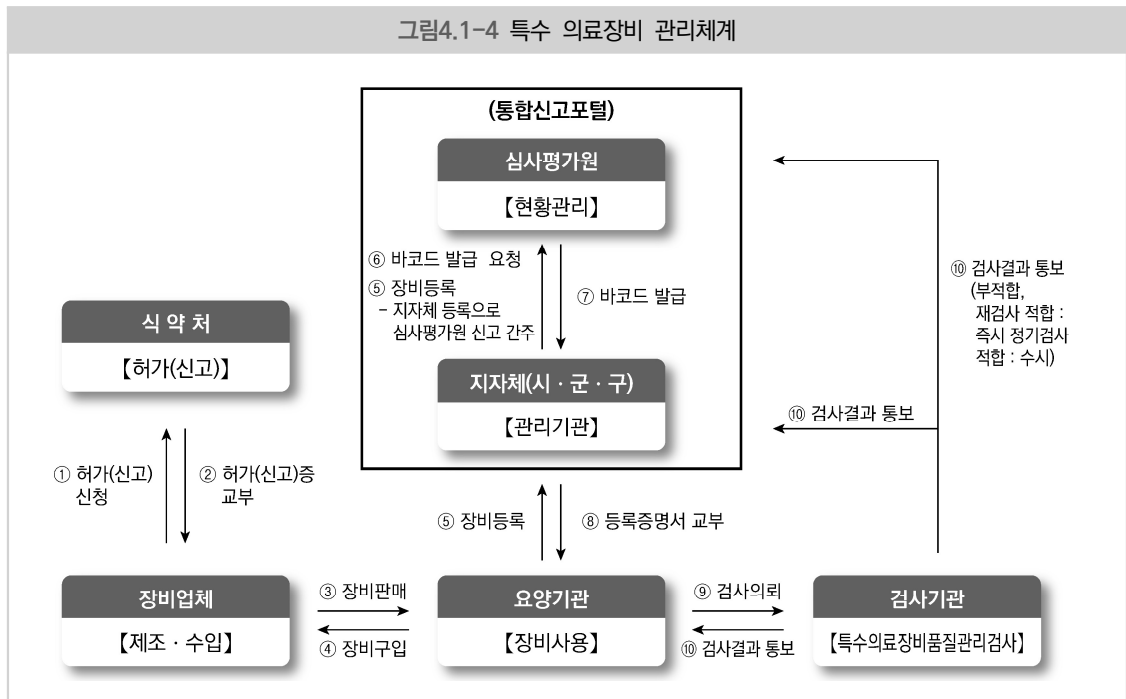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규정】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4조(검사 및 측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부적합 관련 검사기관의 심사평가원 통지 의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결과의 통지 등) 제2항  
 ※ 요양기관에서 시·군·구(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신고기한
-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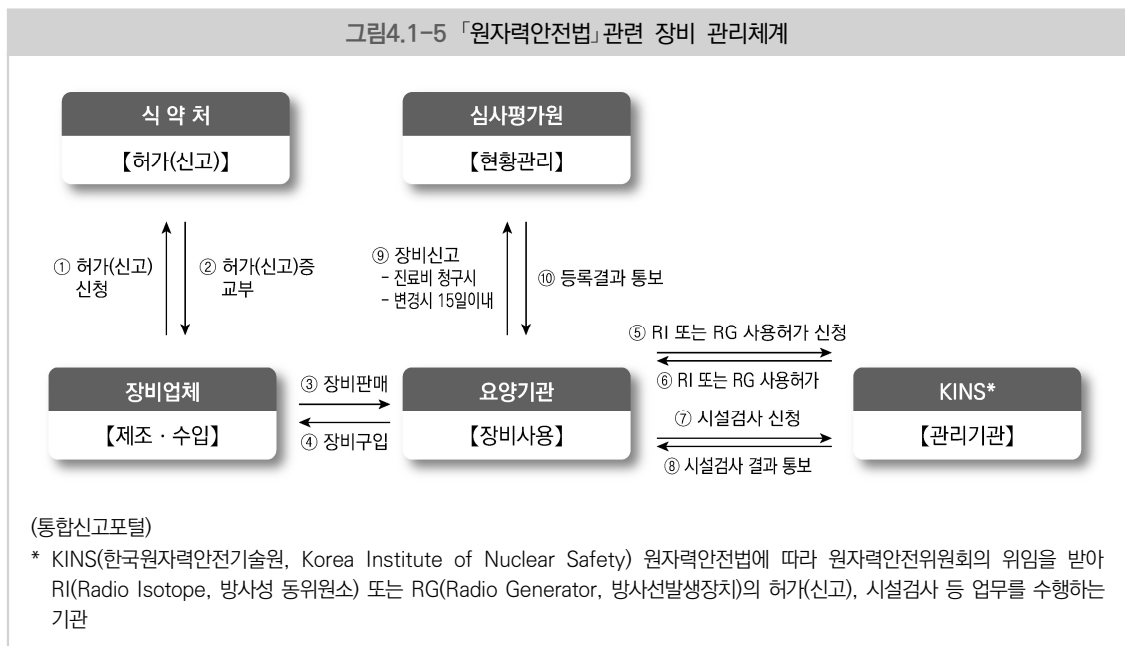
다. 특수 의료장비



【관련규정】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제4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5조(품질관리검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검사기관의 심사평가원 통지의무 :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검사 결과의 통보 등)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장비신고 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자료】

1. 구입증빙자료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KINS에서 시행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결과통보 문서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6조(검사), 제61조(검사) 등

**5** 의료장비 분류체계

가. 분류체계

2012.1.1.부터 장비 속성 및 기능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의료행위 종류)과 장비용도(품목, 기능)에 따라 6자리 확장성 체계 마련

1) 구성

-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한 6자리 체계(12.1.1.부터 적용)

구분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장비종류에 따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품목 대분류	품목 소분류
자리수	알파벳 1자리 (6종)	숫자 1자리 (17종)	숫자 2자리 (193종)	숫자 2자리 (290개)

2) 특성

- 가) 사용목적(의료행위 종류)과 장비종류(품목, 기능)에 따라 장비속성 및 기능을 반영한 확장성 체계
- 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내에서 관련 의료행위 수가체계에 따라 세분류
- 다) 1대의 장비는 한 가지 분류(장비번호)에 신고·등록
  - 여러 기능을 가진 장비나 서로 다른 기능을 융합한 장비도 사용목적이 추가 되는 분류에 한 번만 신고·등록



## 나.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장비 분류체계

구분	대분류	소분류	
A	검사 행위 관련 장비	1	검체 검사장비
		2	기능 검사장비
		3	내시경·천자·생검장비
B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1	방사선진단장비
		2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3	기타 영상진단 등 장비
		4	방사선치료 장비
C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1	기본물리치료장비
		2	단순재활치료장비
		3	전문재활치료장비
		4	기타 이학요법장비
D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1	마취장비
		2	처치·수술장비
E	치과 행위 관련 장비	1	치과검사장비
		2	치과치료장비
F	한방 행위 관련 장비	1	한방검사장비
		2	한방치료장비

## 6

## 의료장비 신고 및 등록

## 가. 신고의무

- 1)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와 기존 신고현황에 변경이 있는 때(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되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및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의거 의료장비 현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현황(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2) 2017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 신고·등록하고 종합병원 이하는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지원에 현황(변경) 신고한다.
- 3) '16.1.1.부로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처리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3항)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제119조(과태료)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1항 [별표 1] 제8호 의료장비
- 3)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등

## 다. 신고·등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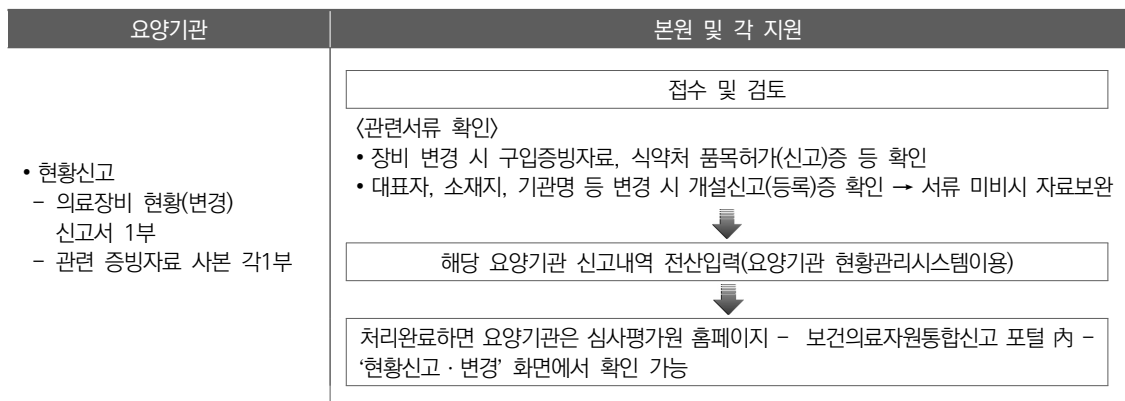
- 서면 또는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 가능

### 1) 일반장비

#### 가) 서면신고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를 작성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 관할 본·지원에 우편 또는 FAX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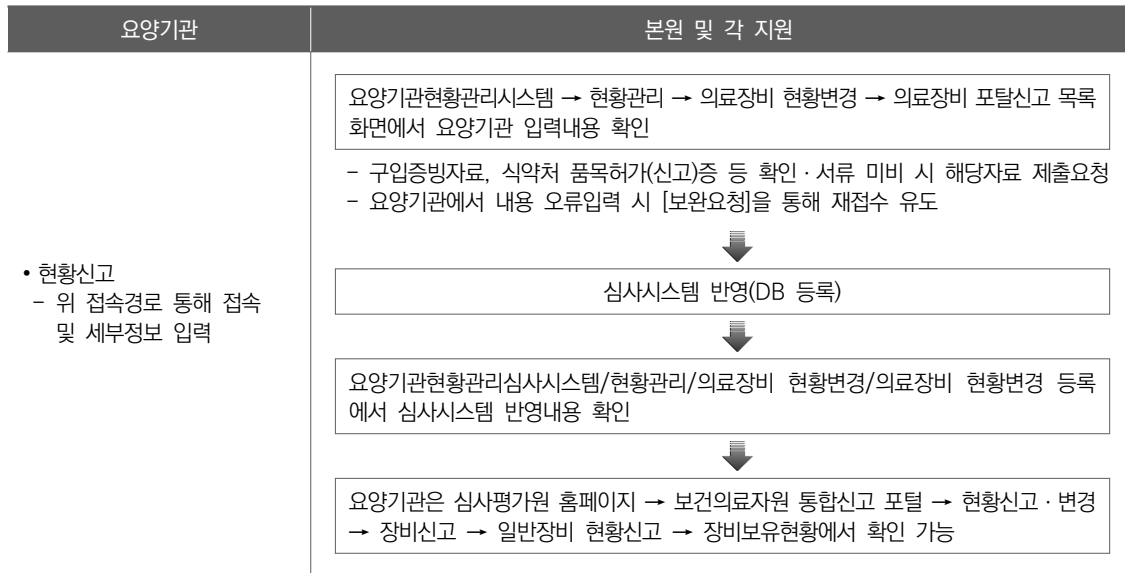
#### 【서면신고 절차】



나) 포털(인터넷) 신고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접속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www.hurb.or.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 · 변경 → 장비신고 → 일반장비 현황신고 화면에서 해당 장비별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심사 관할 본 · 지원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정보마당/의료장비종합 정보조회에 장비 설명, 식약처 정보, 장비 이미지 등 제공 및 전산점검연계 내역과 행위수가 등 안내

【포털(인터넷)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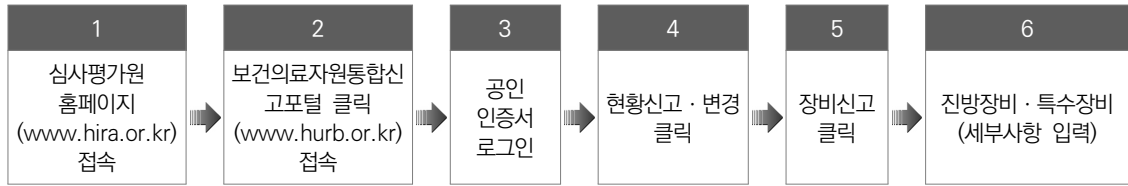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가) 서면신고

진방장치의 설치 및 사용 · 재사용 신고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특수장비 등록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등록

나) 포털(인터넷)신고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별 세부정보 입력 후 관련 증빙 자료(첨부서류)를 파일 첨부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정보마당/의료장비종합정보 조회에 장비설명, 식약처 정보, 장비 이미지 등 제공 및 전산점검연계 내역과 행위수가 등 안내

《바코드 관련》

- >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는 요양기관이 장비 신고는 하였으나, 바코드번호가 없는 경우 서울행정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으로 바코드 요청 후에 후속 업무 실시

7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

가. 목적

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해 의료장비 취급업체, 요양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일원화된 의료장비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관리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제8호 사목
- 2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2017-174호, 2017.09.26. 개정)
- 3 심사평가원 공고 “바코드 부착대상 장비 23종”(’11.11. 15종, ’12.3. 8종)

## 다. 바코드 대상 장비현황(23종)

연번	구분	장비번호	장 비 명	연번	구분	장비번호	장비명
1	진방·특수	B108*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3	진방	D212*	체외충격파쇄석기
2	특수	B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4	진방	B203*	골밀도검사기
3	원자력	B201*	양전자단층촬영장치	15	일반	B302*	초음파영상진단기
4	진방·특수	B105*	유방촬영용장치(Mammo)	16	원자력	B40100	선형가속기
5	진방	B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17	원자력	B40200	후장전치료기
6	진방	B102*	엑스선촬영.투시장치	18	원자력	B40300	감마나이프
7	진방	B107*	혈관조영촬영장치	19	원자력	B40400	사이버나이프
8	진방	B106*	C-Arm형엑스선장치	20	원자력	B40500	토모테라피
9	진방	B103*	치과방사선촬영장치	21	원자력	B40600	중성자치료기
10	진방	B104*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22	원자력	B40700	양성자치료기
11	진방	B109*	콘 빔(Cone beam) CT	23	원자력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12	원자력	B202*	감마카메라				

## 라. 바코드 관리

### 1) 구성체계(31자리)

가) 표준코드에 생산일자와 일련번호를 추가한 GS1(Global Standard No.1)-128 체계

	내용	AI(상품식별코드)	GS1 상품식별코드	AI(생산일자)	YYMMDD	AI(일련번호)	일련번호
바코드	자리수	2	14	2	6	2	5
	부여예	(01)	08800499912349	(11)	110500	(21)	12345

- (1) 응용식별자(AI) : (01), (11), (21)로 바코드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식과 의미를 지정해 주는 역할
- (2) 일련번호 :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 (3) GS1상품식별코드 : 의료장비 표준코드(상품식별 코드로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GS1 체계)

※ 13자리 앞에 0을 붙여 14자리로 구성

표준 코드	내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부여에 (자릿수)	880 (3자리)	00001-04999 (5자리)	0001-9999 (4자리)	0-9 (1자리)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



(01)088004999912349(11)110500(21)123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앱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장비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웹(m.hir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코드 라벨

바코드

### 나) 코드 부여방법

구분		부여 원칙
업체식별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장비업체 코드</li> <li>* 식약처는 제조·수입 업종을 구분해 업체 허가번호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에서 회원 가입 시 부여한 각각의 업체 코드</li> </ul>
품목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장비의 제조·수입을 위해 업체가 식약처에 품목허가신청 시 신고하는 모델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약처에서 허가한 모델명 기준으로 부여</li> <li>* 품목허가번호, 모델명, 식약처 일련번호에 따라 변경</li> </ul>
생산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장비 제조시기</li> <li>* 진방장치와 특수장비의 경우 보건소에서 생산일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연월일 2자리씩 기재(국제적 약속)</li> <li>*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제조연월 정보만 관리하고 있어 일자 2자리는 “00”처리</li> </ul>

## 2) 관리체계

### 가) 진방장치 및 특수장비

- 지자체로부터 신고·등록정보 수신 후, 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바코드를 생성하여 지자체로 재송신, 이후 바코드로 전국단위 이력 관리 가능
- (신장비) 지자체에 신고된 정보를 토대로 심사평가원은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지자체에 바코드 정보 전송

- (중고장비) 바코드 기부여 중고장비는 반드시 바코드 정보를 포함하여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정보 누락여부 등은 지자체에서 확인
- 지자체는 새올시스템에 해당 바코드 정보 등록·관리
- 바코드 미부여 중고장비는 신장비와 동일 절차로 진행

나) 그 외 바코드 부여대상 장비

-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 신고·등록하면 본원에서 바코드 부여

※ 2018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바코드 라벨 출력 가능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 Ⅲ

##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등 운영

작성자 : 자원관리부 주 - 신영순  
부 - 김태수

### 1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가. 개요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대도시 소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중소도시 소재기관, 공공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 2)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7등급 적용(다만, 상급종합병원, 의원급의 경우 6등급 적용)



## 라. 등급산정 기준

### 1) 산정식

가)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기준 적용기관

$$\frac{\text{일반병동 병상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병상 수의 합/3)}}{\text{일반병동 간호사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간호사 수의 합/3)}}$$

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기준 적용기관

$$\frac{\text{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text{일반병동 간호사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간호사 수의 합/3)}}$$

### 2) 병상

- 가) 의료법에 의한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허가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병상으로 적용
- 나) 산정대상 : 일반병상,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 준중환자실, 정신과 개방병동, 정신과 폐쇄병동(요양기관의 신고에 의해 제외할 수 있음)
- 다) 산정제외 :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 치료실, 인공신장실, 낮 병동, 조기진통실, 미숙아실, 집중치료실, 호스피스병실

### 3) 간호사

- 가) 산정대상 :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정맥주사팀(일반병동에서만 순회시)
- 나) 산정제외 :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순환근무간호사, 분만휴가자,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면허발급 이전 간호사

마.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및 입원료 가감산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등급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
1등급	2.0:1 미만	2.5:1 미만
2등급	2.0:1 이상 ~ 2.5:1 미만	2.5:1 이상 ~ 3.0:1 미만
3등급	2.5:1 이상 ~ 3.0:1 미만	3.0:1 이상 ~ 3.5:1 미만
4등급	3.0:1 이상 ~ 3.5:1 미만	3.5:1 이상 ~ 4.0:1 미만
5등급	3.5:1 이상 ~ 4.0:1 미만	4.0:1 이상 ~ 4.5:1 미만
6등급	4.0:1 이상 ~	4.5:1 이상 ~ 6.0:1 미만
7등급	-	6.0:1 이상 ~

2) 입원료 가감산(2018.7.1.부터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상급 종합병원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	-
종합병원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입원료 소정 점수의 5% 또는 2% 감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 2

##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가. 개요

중환자실의 간호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의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본진료료 중 중환자실 입원료)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

## 2) 자료제출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최저 등급 적용

## 라. 등급산정 기준

## 1) 산정식

$$\frac{\text{중환자실 병상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병상수의 합/3)}}{\text{중환자실 간호사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간호사수의 합/3)}}$$

## 2) 병상 수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이며,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적용

### 3) 간호사

- 산정대상 :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 산정제외 :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을 순환·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

### 4) 전담의

중환자실(Unit별)에 1인 이상의 전담의(레지던트, 전문의) 배치,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 인접에 상주(미리 정해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근무 가능, 해당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당직표상의 근무시간대에는 외래·병동환자 진료 병행 불가)

### 5) 전담전문의

- Unit별 30병 상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 배치 시 산정하고, 30병상 초과 시 2인 이상 배치 시 산정 가능
- 근무시간 :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함
- 근무조건 :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등)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 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이상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 대체전문의 :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을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 6) 시설·장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 마. 중환자실 등급(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및 입원료 가감산

### 1) 일반 중환자실 등급

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등급	0.5:1 미만	0.5:1 미만
2등급	0.5:1 이상 ~ 0.63:1 미만	0.5:1 이상 ~ 0.63:1 미만
3등급	0.63:1 이상 ~ 0.77:1 미만	0.63:1 이상 ~ 0.77:1 미만
4등급	0.77:1 이상 ~ 0.88:1 미만	0.77:1 이상 ~ 0.88:1 미만
5등급	0.88:1 이상	0.88:1 이상 ~ 1:1 미만
6등급	-	1:1 이상 ~ 1.25:1 미만
7등급	-	1.25:1 이상 ~ 1.5:1 미만
8등급	-	1.5:1 이상 ~ 2:1 미만
9등급	-	2:1 이상

### 2)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등급별 가감산

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등급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의 25% 가산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의 25% 가산
2등급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의 15% 가산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의 20% 가산
3등급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의 15% 가산
4등급*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또는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의 10% 가산
5등급*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또는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의 10% 가산
6등급	-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의 10% 가산
7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
8등급**	-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또는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9등급**	-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또는 8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 상급종합병원 4등급 및 5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이외 요양기관은 4등급의 경우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5등급의 경우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8등급 및 9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이외 요양기관은 8등급의 경우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9등급의 경우 8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 3) 신생아 중환자실 등급

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등급	0.5:1 미만	0.75:1 미만
2등급	0.5:1 이상 ~ 0.75:1 미만	0.75:1 이상 ~ 1.0:1 미만
3등급	0.75:1 이상 ~ 1.0:1 미만	1.0:1 이상 ~ 1.5:1 미만
4등급	1.0:1 이상 ~ 1.5:1 미만	1.5:1 이상 ~ 2.0:1 미만
5등급	1.5:1 이상 ~ 2.0:1 미만	2.0:1 이상
6등급	2.0:1 이상	-

### 4)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등급별 가감산

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60%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6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

### 5) 소아 중환자실 등급 및 입원료 가감산

등급	병상수: 간호사수	입원료 가감산
1등급	0.5:1 미만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2등급	0.5:1 이상 ~ 0.61:1 미만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3등급	0.61:1 이상 ~ 0.74:1 미만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등급	0.74:1 이상 ~ 0.86:1 미만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5등급*	0.86:1 이상	4등급 산정 또는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 소아 중환자실 5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이외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 3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가. 개요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사 및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의료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흡한 기관은 감산하여 요양병원 입원료를 차등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병원 중 일반사항)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의사 및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

## 2) 자료제출

요양병원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기관은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적용

## 라. 등급산정 기준

## 1) 환자 수

-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
- ※ 산정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ex) 2018년 4분기 : 2018년 6월 15일 ~ 2018년 9월 14일까지

## 2) 의사인력

### ○ 의사인력 수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의사 수(3개월 평균, 각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 산정기간 : 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 산정대상 :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의 상근 의사 수(한의사 포함), 분만 휴가자 및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제외
- 1등급 의사인력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50%이상인 경우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하고, 50%미만인 경우는 10%를 가산한다.

## 3) 간호인력

### ○ 간호인력 수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간호인력 수(3개월 평균, 각월 15일자 간호인력 수의 합/3)}}$$

- 산정대상 :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수
- 산정제외 :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순환근무간호사, 분만휴가자,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면허발급 이전 간호사

## 마. 차등제 등급별 환자수 대 인력수 및 입원료 가감산

### 1) 의사인력

환자수 : 의사수	등급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8개 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35:10이하	1등급	20% 가산	50% 이상
		10% 가산	50% 미만
35:1초과 ~ 40:10이하	2등급	0	
40:1초과 ~ 50:10이하	3등급	15% 감산	
50:1초과 ~ 60:10이하	4등급	30% 감산	
60:1초과 ~	5등급	50% 감산	



## 2) 간호인력

환자수: 간호인력수	등급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환자수: 간호사수 18:1 초과	2,000원 가산 산정
4.5:1미만	1등급	60% 가산	등급 가산율에 관계없이 15% 감산	간호사수 대비 간호인력수가 2/3 이상인 경우
4.5:1이상~5:1미만	2등급	50% 가산		
5:1이상~5.5:1미만	3등급	35% 가산		
5.5:1이상~6:1미만	4등급	20% 가산		
6:1이상~6.5:1미만	5등급	0		
6.5:1이상~7.5:1미만	6등급	20% 감산	30%감산	
7.5:1이상~9:1미만	7등급	35% 감산	45%감산	
9:1이상~	8등급	50% 감산		

## 바. 필요인력 인센티브

## 1) 산정기준

- 약사 상근을 전제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기간동안 필요 인력 중 상근하는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 산정 (단,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 주 16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상근으로 간주)
- 필요인력의 경우,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

## 2) 필요인력

- 상근하는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 4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가. 개요

정신과 인력(의사·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를 5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 나. 관련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의사, 간호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에 따른 각 배점을 합산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다음 분기에 적용

### 2)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G5로 적용

## 라. 등급산정 기준

### 1) 입원환자 수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를 일자 별로 관리
- 나) 낮병동 환자 2인을, 외래환자 3인을 각각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며, 입원초일 및 퇴원일도 각각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
- 다) 정신건강의학과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정신과 낮병동·외래환자 포함되나, 타과에서 협진 의뢰환자·타과병동에 입원환자 및 산재·자보 환자 제외
- 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 까지(90~92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F00-F99, G40, G41)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입원환자의 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

### 2) 의사인력

- 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정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의사 수(3개월, 각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times 0.5$$

- ※ 산정기간: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 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주5일이상·주40시간이상 근무)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 제외  
 다)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인으로 산정

### 3) 간호인력

- 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정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간호인력 수(3개월 평균, 각월 15일자 간호인력 수의 합/3)}} \times 0.35$$

- 나) 산정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다) 산정제외 :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타과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타과병동을 순환·파견 간호인력, 1개월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 등은 산정 제외  
 라) 간호조무사는 산정분기 평균 간호사수의 4분의 3(75%) 범위 내에서 간호사 1인으로 산정

### 4)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전문요원인력 수(3개월 평균, 각 전문요원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times 0.15$$

※ 산정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 제외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변경 (2016.5.29. 전부개정, 2017.5.30. 시행)에 따라 제명, 법 조항 및 용어 반영

마. 기관등급 및 입원료 정액수가

1) 기관등급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G1	5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G2	3점 이상 ~5점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2) 입원료 정액수가 (2018.10. 기준)

기관등급	입원기간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일	입원 후 91-180일	입원 후 181-360일	입원 후 361일 이상
G1		769.52	725.03	679.05	649.80
G2		709.66	667.89	626.26	598.37
G3		557.96	525.99	492.65	471.70
G4	병원급 이상	498.23	468.98	439.73	420.27
	의원	449.88	423.46	397.05	379.48
G5	병원급 이상	464.76	437.01	410.48	392.38
	의원	419.66	394.59	370.64	354.30

## 5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가. 개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 수 대비 적정수준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
- 2)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입원료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라. 등급산정 기준

- 1) 환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산정을 위한 기간 및 등급식
  - 산정기간 : 환자 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급 산정식

$$\frac{\text{환자 수(3개월 평균)}}{\text{간호사, 사회복지사 수(3개월 평균, 각 인력별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3개월 평균, 각 인력별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 2) 환자 수
  - 호스피스병동(시설)에 입원한 3개월 평균 환자 수

3) 간호사

- 산정대상 :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 산정제외 :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근무자,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

4) 사회복지사

- 산정대상 :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 산정제외 :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전담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간호 겸임자, 휴게시간 제외 월평균 주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 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5)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요양보호사)

-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frac{\text{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 수} \times 4.8\text{배수}}{3(\text{배치기준의 보조활동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호스피스병상수의 70%

- 산정대상 :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이수하고,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보조 활동 서비스를 전담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산정제외 : 휴게시간 제외 월평균 주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 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6) 호스피스관련 교육 이수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관련 교육(60시간)을 이수하여야함

마. 등급별 환자수 대 인력수 및 입원료 가산

등급	환자수: 간호사 수	입원료 소정점수의	환자수: 사회복지사 수	산정 상대가치점수		
				상급	중병·병원	의원
1	1:1 이하	20% 가산	12:1 이하	132.26	100.27	94.34
2	1:1 초과~1.5:1 이하	10% 가산	12:1 초과	110.21	83.57	78.63
3	1.5:1 초과	입원료 소정점수		-		

## 6

## 감염예방·관리료

## 가. 개요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허가병상수의 평균 대비 적정수준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감염 예방·관리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본진료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 분기 의사 및 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
- 2)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 라. 등급산정 기준

- 1)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조건
  -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으로 인증결과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 조사항목 전체 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의 참여기관이어야 함.(단, 병원급의 경우 '19년 1월부터 적용)

2) 인력산정 기준

- 전담간호사, 자격 및 경력간호사, 감염관리 의사 등급 산정식

병상 수(3개월 평균, 각월 15일자 병상수의 합/3)

전담간호사 수, 자격 및 경력간호사 수, 의사 수  
(3개월 평균, 각 인력별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 산정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3) 병상 수

- 「의료법」에 의한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허가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병상으로 산정
- 산정대상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

4) 간호인력

- 산정대상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 (감염관리 자격간호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
  - (감염관리 경력간호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관리 3년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산정제외 :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5) 의사인력

- (감염관리 의사)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문의이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이 1년이상이며 감염관리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성을 가진 의사
- (감염관리전담의사) 감염관리 의사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에 근무하는 의사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는 산정 제외



### 마. 등급별 병상수 대 인력수 및 상대가치점수

등급	병상수:감염전담 간호사	병상수:자격 및 경력간호사	병상수:감염관리 의사	상대가치점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	150: 1 이하	500: 1 이하	300: 1 이하	33.52	40.42
2	200: 1 이하	600: 1 이하	300: 1 이하	27.46	34.08

※ 위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급산정 가능함.

## 7

### 집중치료실 입원료

#### 가. 개요

뇌졸중, 고위험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 인력을 확보한 경우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나. 관련 고시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집중치료실 입원료)
-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_집중치료실 입원료)

#### 다. 적용기준 및 자료제출

##### 1) 적용기준

- 집중치료실을 설치하고,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 분기 간호사 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다음 분기에 적용
- 산정 결과에 따른 적용

구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급	비고
뇌졸중	1.25	-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기관
고위험임산부	1.5	1.5	

2)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라. 산정 세부기준

1) 산정식

$$\frac{\text{집중치료실 병상 수(3개월 평균, 각 월 15일자 병상수의 합/3)}}{\text{집중치료실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재직일수의 합/산정기간 일수)}}$$

※ 산정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2) 병상 수

-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신고 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3) 간호사

- 산정대상 : 집중치료실에 배치되어 실제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 산정제외 :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32시간(미만) 단시간 근무자,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산정 가능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함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0.8인으로 산정

4) 의사인력 기준

구분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전문의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각각 1인 이상 상근	산부인과, 소아과 각각 1인 이상 상근

○ 전담의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

-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 전담의는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전담의를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 마. 시설 기준

-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과 일반 입원실 혼합형태의 시설로 의료법 상 일반 입원실을 준용
- 집중치료실 운영기관의 필수 시설

구분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시설 운영	일반 중환자실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 8

## 입원환자 식대

### 가. 개요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식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관련 고시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6. 다목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 식대)
-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입원환자 식대)

### 다. 자료제출

- 1) 기본식사  
요양기관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당월 인력현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인력을 익월 15일 까지 심사평가원에 제출

2) 치료식 영양관리료

매분기 말 16~2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라. 기본식사 산정기준

1) 일반식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

2) 치료식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 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되며, (경관영양 유동식 제외)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3) 특수분유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 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4) 식사가산 산정기준

가) 영양사 가산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수가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 의원급 1명인 경우 1식당 560원(2018년 기준) 가산 산정

나) 조리사 가산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 수가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 의원급 1명인 경우 1식당 510원(2018년 기준) 가산 산정(단,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

☞ 적시급식 :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 ~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다) 직영 가산

-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한하여 산정
- 이때,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라)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일 경우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단, 동 기간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산정이 가능)하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

#### 마. 치료식 영양관리료

- 1) 영양사가 치료식(멸균식)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한 경우 1일당 1,020원(2018년 기준) 산정
- 2)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소속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 당분기 영양관리를 실시한 날에 환자 1인당 1일 1회 산정 가능(치료식을 1일 1식 이상 제공한 환자 대상)
- 3) 영양사 대비 환자 수 산정식

$$\frac{\text{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 수 (3개월 합계)}}{\text{영양사 수(3개월 재직일수)}}$$

## IV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작성자 : 병원지정평가부 주 - 이기신  
부 - 이상훈

### 1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 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9호, 2017.2.10.)
-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제2018-42호, 2018.3.9.)
- 4)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2011.4.20.)

###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목적

- 1) 중증질환자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등의 차별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연구, 교육기능의 수행을 통한 의학발전에 기여
- 2)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인 환자배분을 통해 효율적 요양급여
- 3)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라. 지정 방식

- 1)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보건복지부 고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일괄 평가 실시

- 2)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17년 하반기 평가로 '18년부터 적용되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
- 제1기 상급종합병원 44개소('12년~'14년) → 제2기 상급종합병원 43개소 ('15년~'17년)
  -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소('18년~'20년)

## 2

## 지정 기준

## 가. 진료기능

- 1)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가)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나) 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 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 나. 교육기능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을 것

## 다. 인력·시설·장비 등

- 1)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 2)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 3)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 4)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였을 것
- 5) 4)의 의료장비 중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추어 것
- 7)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 것

**라.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 1)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6% 이하일 것

표4.1-2 상급종합병원 지정\_질병군별 분류기준

구분	분류 기준	KDRG수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462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588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149	

- 2)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 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7% 이하일 것
- 3)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는 1) 및 2)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마. 의료서비스 수준

- 1)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2)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상대평가에만 적용)

### 3

## 상대평가

### 가.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표4.1-3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 및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55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와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10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5
합 계		100

### 나.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 1) 환자구성상태

- 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10.00점
- 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21% 인 경우 6.00점
- 다)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21% 초과 35%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 \times 0.2857$ )+0.0005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2)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표4.1-4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배점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10	4.0명 이하	1.9명 이하	10개과 이상
9	5.5명 이하~4.0명 초과	2.0명 이하~1.9명 초과	9개과
8	7.0명 이하~5.5명 초과	2.1명 이하~2.0명 초과	8개과
7	8.5명 이하~7.0명 초과	2.2명 이하~2.1명 초과	7개과
6	10명 이하~8.5명 초과	2.3명 이하~2.2명 초과	6개과

## 3) 의료서비스 수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 및 별표2(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 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표4.1-5 상급종합병원 지정\_상대평가 기준(의료서비스 수준)

평가 분류	평가항목	평가 항목수	표준등급충족 평가항목 수	배점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3개	3개	2
			2개	1.5
뇌 질환	급성기 뇌졸중	1개	1개	2
암 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5개	5개	2
			4개	1.5
			3개	1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8개	7개 이상	2
			6개	1.5
			5개	1
			4개	0.5
진료량	고관절치환술, 췌장암, 식도암, 조혈모세포이식술	4개	4개	2
			3개	1.5
			2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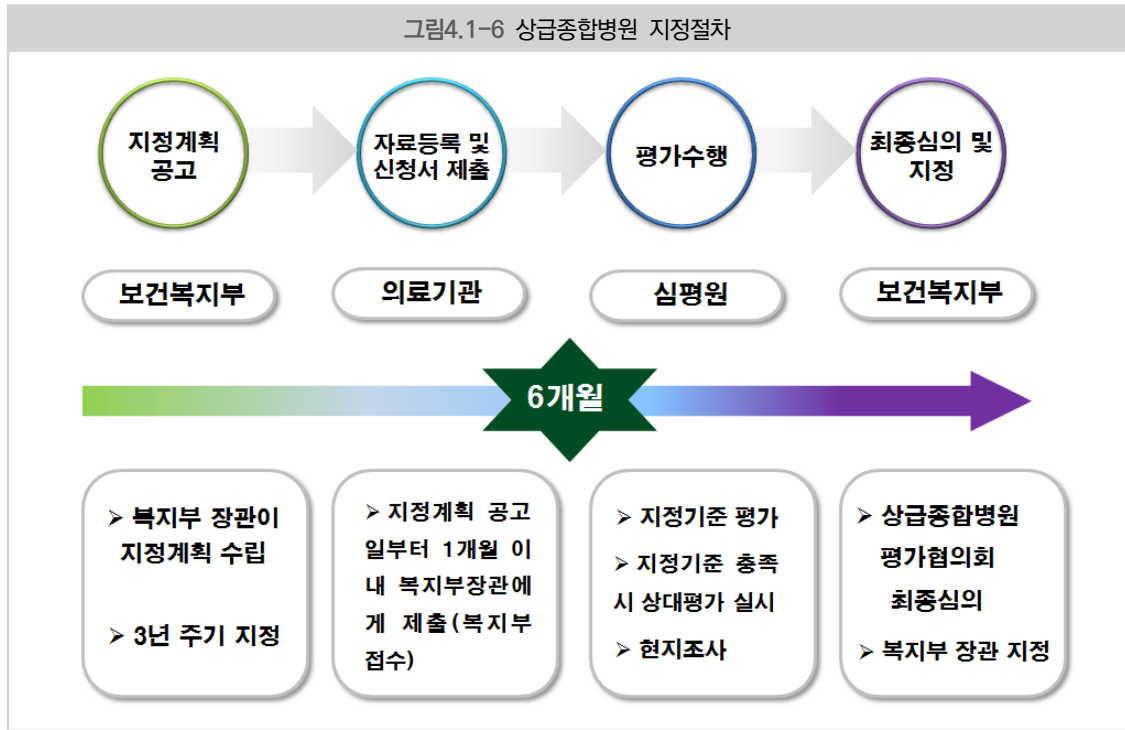
## 나) 점수 산정방법

- (1)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항목별로 표준등급을 충족한 항목수를 산출한다. 표준등급은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산정등급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하며, 5등급 평가항목은 1, 2등급을 2등급 평가항목은 1등급을 표준등급으로 한다.
- (2) 평가분류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표준등급을 충족한 평가항목수가 절반이상일 경우 최소 0.5점 이상에서 최대 2점까지의 점수를 산정한다.
- (3) 평가분류별로 각각 산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최대 10점)를 산출한다.

## 다. 평가방법

- 1)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총점)를 구한다.
- 2) 1)에서 구한 점수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경우 가점 3점
  - 나)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추는 경우 가점 2점
  - 다) 재지정의 경우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병상이 있는 경우, 감점 5점
- 3) 총점이 높은 병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 4) 총점이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수준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4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업무절차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규칙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지정신청(규칙 제3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급종합병원 지정 희망기관은 지정신청서 접수 이전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평가자료 등록
- 2) 평가자료 등록 완료 후 출력되는 평가자료 등록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지정신청서 접수

**다. 평가(규칙 제3조제3항~제5항, 제6조제1항)**

-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
- 2)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고려사항(고시 제5조 내지 제7조)**

- 1)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여 10개 진료권역으로 구분한다.
- 2) 해당 진료권역별로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요를 산출한 후,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 3)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진료권역안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마.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고시 제8조)****1)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기능**

-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둔다.
-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개선
  - (2)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재지정
  -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구성**

-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2)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 4명, 보건 의료 수요자 대표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 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사후 관리

가. 지정취소 요건(규칙 제5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 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나.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고시 제6조제3항, 제4항)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병상 신증설 가능 여부 심사(분기별)
  - 나) 사전협의 결과 이행 여부 및 허가병상 모니터링

## V

## 전문병원 지정·평가

작성자 : 병원지정평가부 주 - 이기신  
부 - 윤기요

## 1

## 전문병원 지정·평가 개요

## 가.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5호, 2017.6.29.)
- 3)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103호, 2017.6.29.)
- 4) 전문병원 평가 위탁사업 계약(2018.2.9.)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3. (생략)

## 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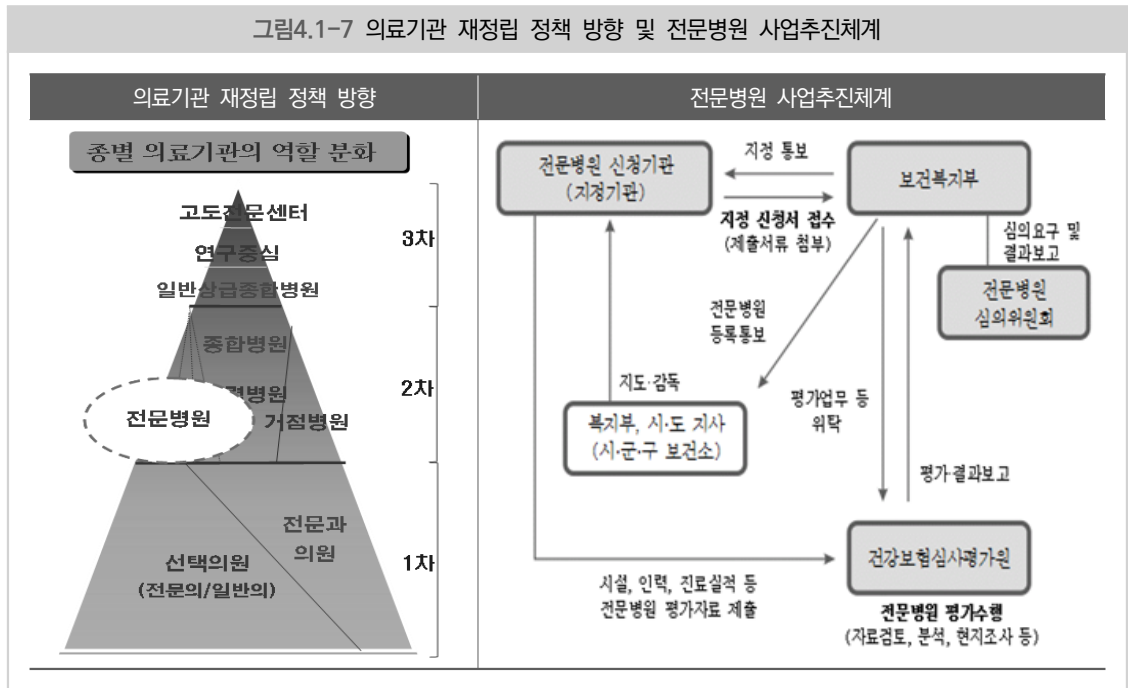
- 1) 특정 질환의 숙달된 치료기술 발전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대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
- 2) 소비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전문화된 치료욕구 수요 충족
- 3)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자원의 활용도 제고

라. 지정 분야

지정 분야	의 과(17)	한 방(3)
질 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마. 지정 방식

- 1)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2)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 3)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3년 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취소한다.





## 2

## 지정 기준

## 가. 환자구성비율

- 1)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범위(MDC)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입원 실환자수로 할 수 있다.
- 나) 다만, 한방부인과 분야는 외래 환자 대상

※ 주요 진단범위(MDC, Major Diagnosis Category)는 KDRG 번호 6자리 중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병인보다는 신체기관에 따라 분류됨

## 나. 진료량

-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percentile 이상이어야 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연환자수를 산정할 때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10명 이하인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 다. 필수진료과목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라. 의료인력

- 1)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각각 해당 인원 이상 두어야 한다.
- 2) 의료인력 완화적용
  - 가)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

나) 분야 :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구분	지역		분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의료인력 (전문의)	8인	30%	5인	30%	5인
	6인	30%	4인	-	-
	4인	-	-	20%	3인

### 마. 병상 수

1)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한방 분야는 병상 대신 시설 및 기구로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80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	60
유방질환,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30

2) 병상 수 완화적용

●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

구분	지역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병상	80병상	56병상
	60병상	42병상

### 바. 의료 질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사.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3

## 상대평가

## 가. 의과

배점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가중치 30%)	환자구성비율 (가중치 30%)				진료량 (가중치 20%)	의료 질 (가중치 20%)
		30% 기준	45% 기준	50% 기준	66% 기준		
10	6명 이하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상위 10퍼센타일 이상	94점 이상
9	8명 이하	60% 이상	75% 이상	80% 이상	85% 이상	상위 15퍼센타일 이상	88점 이상
8	11명 이하	50% 이상	65% 이상	70% 이상	80% 이상	상위 20퍼센타일 이상	82점 이상
7	15명 이하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75% 이상	상위 25퍼센타일 이상	76점 이상
6	16명 이상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66% 이상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70점 이상

## 나. 한방

배점	질환별 또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가중치 30%)	환자구성비율 (가중치 30%)	진료량 (가중치 20%)	의료 질 (가중치 20%)
10	8인 이상	70%이상	상위 10퍼센타일 이상	92.5점 이상
9	6~7인	60%이상	상위 20퍼센타일 이상	85점 이상
8	5인	50%이상	상위 25퍼센타일 이상	77.5점 이상
7	4인	45%이상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70점 이상

4 전문병원 지정·평가 업무절차



가. 지정계획 공고(규칙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지정신청(규칙 제3조제2항)

-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병원 지정 평가 업무 위탁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및 평가 실시

다. 평가(규칙 제3조제3항~제5항)

- 1)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
- 3)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라. 전문병원 지정 시 고려사항(고시 제5조제2항)

- 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별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 재활의학과외의 경우 물리치료·작업치료인력 확보수준
- 3)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 마. 전문병원심의위원회(규칙 제5조)

-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2)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기능
  - 가)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3)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구성
  -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
  - 다)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라) 임기는 3년(연임 가능),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은 그 재직하는 기간

#### 바. 전문병원 지정(규칙 제3조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 지정 기준 평가, 상대평가,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전문병원 지정 현황

가. 운영기간 및 지정기관 수

- 1) 제1기 (2011. 11. 1. ~ 2014. 10. 31.), 99개소
- 2) 제2기 (2015. 1. 1. ~ 2017. 12. 31.), 111개소
- 3) 제3기 (2018. 1. 1. ~ 2020. 12. 31.), 108개소

6

사후 관리

가.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모니터링 수시 실시

- 지정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 변경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제재
  - 가) 매월 :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서비스 수준
  - 나) 연간 : 의료 질,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서비스 수준

※ 전문병원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연차보고서 분석

전문병원 지정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내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역량강화 및 의료질 향상 도모

다. 전문병원에 대한 진료실적, 진료비 추계 등을 분석

전문병원에 대한 경제성 등 효과분석, 의료체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라.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병원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검토

## 7

## 전문병원 명칭 및 광고

## 가. 명칭 사용

## 1) 전문병원 명칭(「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 외의 것을 사용하지 못하나,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명칭 대신 '전문병원'이라고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병원 → ○○○ 전문병원  
○○○ 종합병원 → ○○○ 전문병원

## 2) 명칭 표시(「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가)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관절질환 전문병원  
○○○ 산부인과 전문병원

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이외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병기할 수 있다.

〈예시〉 2015년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질환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 ○○병원

## 나. 의료광고

- 1)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함께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용어를 표방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기관 특성에 따라 홍보할 수 있다.(강연회, 전문 강좌 개설, 홍보지 등).
- 다만, 과대광고 등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기타 법률에서 명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별 법령을 따른다.

- 2)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지정받은 병원명과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보건복지부 지정’ 대장항문 전문병원 강서○○병원  
‘축’ 대전○○병원, 2015년 보건복지부 선정 척추질환전문병원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시 전문병원 지정기관을 구분 표시





# 제2장

## 의약품유통정보관리

- I.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 II.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등 유통정보 관리
- III.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일련번호 제도 운영
- IV.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 V.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
- VI.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 제2장

# 의약품유통정보관리

### I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작성자 : 의약품정보관리부 주 - 양성준  
부 - 강재영

### 1

#### 개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관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표준화와 정보지식화 기반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 의약품바코드 관리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련 연구·교육·홍보사업, 의약품 유통정보 보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제약 산업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행,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지원, 의약품 이력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 2

#### 법적근거

- 가)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 나)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 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시행세칙」

3

연혁

- '07. 10. 8.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 '08. 1. 1. 급여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내역 보고 시작 (분기별)
- '08. 10. 1. 비급여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내역 보고 시작  
공급내역 보고 월별 보고로 변경
- '11. 5. 31.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 '15. 1월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 명문화
- '12. 12. 1.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개시
- '14. 9. 1. 의약품 공급단가 활용 약제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15. 1. 1. 의약품정보조사부 신설
- '15. 5. 14.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제조업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 보고 의무  
규정 마련
- '16. 7. 1.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기반 전문의약품 출하 시 보고 시행(제약)
- '17. 7. 1.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기반 전문의약품 출하 시 보고 시행(유통)

4

용어정리

가. 의약품

- 1) 정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①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 「약사법」 제2조(정의)

## 나. 완제의약품

- (정의)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 다.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

- 정의 :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
- 구성 :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

## 라. 의약품 대표코드

- 정의 : 함량 포함 의약품을 대표하는 코드
- 구성 :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 중 포장단위(12번째 자리수)가 '0'으로 표기된 숫자

## 마. 효능군 코드

- 정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코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13.4.5.)

## 바. ATC코드(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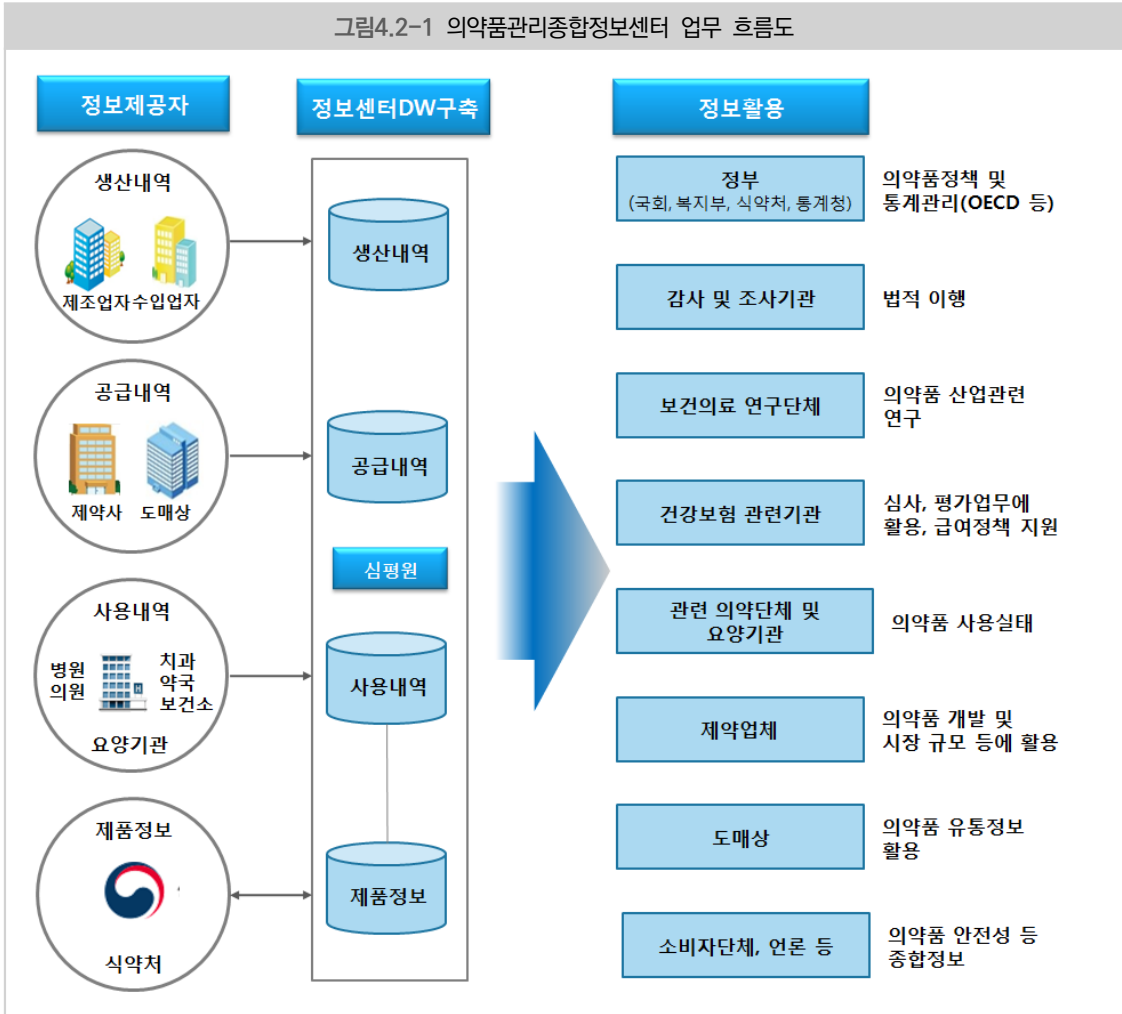
-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치료제군별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
- 구성 : 총 5단계, 7자리의 영문자 및 숫자로 구성

표4.2-1 ATC코드 구분

WHO 의약품 통계협력센터

구분	분류	ATC 분류(예시)	
1단계	Anatomical main group 약이 적용되는 해부학적인 부위에 따른 14개의 대분류군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2단계	Therapeutic subgroup (약효에 따른 세부 분류군)	A10	Drugs used in diabetes
3단계	Pharmacological subgroup (약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A10B	Oral blood glucose lowering drugs
4단계	Chemical subgroup (약의 화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A10BA	Biguanides
5단계	Chemical substance (개별 성분명)	A10BA02	Metformin

그림4.2-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흐름도



## 6

## 의약품 유통관련 주요현황

## 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현황(2017.12.31.누계)

표4.2-2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현황

(단위 : 개, 품목, 개소)

구분	표준코드수	품목수	업체수
전체	146,618	49,271	561
제조품목	133,853	44,186	320
수입품목	12,291	4,719	225
기타	474	366	16

## 나. 연도별 생산·수입 실적 현황

표4.2-3 연도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현황

(단위 : 개, 품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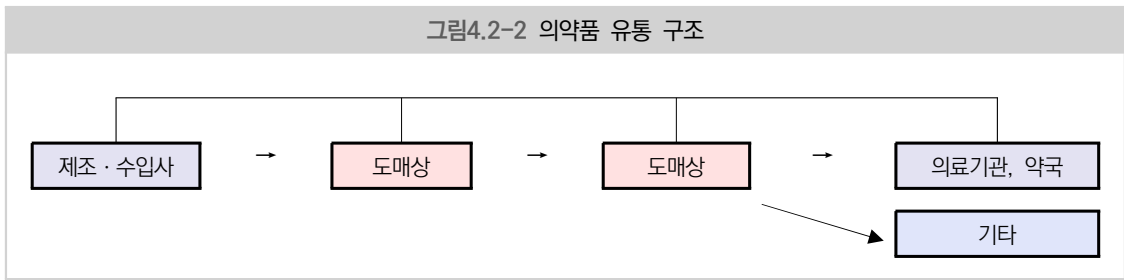
연도	생산			수입		
	업체수	품목수	금액	업체수	품목수	금액
2015년	245	18,315	145,921	224	2,102	36,140
2016년	254	19,494	159,048	238	2,194	43,717
2017년	255	18,958	172,178	235	2,031	42,717

## 다. 연도별 업체별 공급현황

표4.2-4 연도별 의약품 업체별 공급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연도	계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5년	2,445	524,477	262	179,106	195	61,750	1,988	283,621
2016년	2,549	571,005	269	188,684	191	67,805	2,089	314,516
2017년	2,682	599,257	265	199,434	174	70,585	2,243	329,238





## II

##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등 유통정보 관리

작성자 : 의약품정보관리부 주 - 양성준  
부 - 김혜경

## 1

##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관리

## 가. 정의

## 1)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제조·수입사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하며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고, 대표 코드를 기준으로 의약품 포장단위 별로 부여한다.

표4.2-5 의약품 표준코드 구성 체계

자릿수	3	4	5		1
내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부여 예	880	6400-6999 6200-6299 0500-0999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포장단위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의약품 개개의 포장단위 별 바코드로 적용하여 표시

EDI코드로 활용('10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 2) 의약품 바코드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흑백의 평행 막대조합 또는 데이터 매트릭스에 입력하여 스캐너로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 3) 의약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의약품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며,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tag와 RFID tag 판독장치인 RFID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

RFID tag 정보는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에서 검증번호를 제외한 12자리 숫자와 물류식별자,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 나. 법적 근거

- 가)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 나)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4호: 의약품 표준코드의 공고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관리
-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 및 제71조제2호, 제95조 [별표8]
- 라)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
- 마)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 다.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 및 활용

### 1)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업무 흐름도



### 2)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 (<http://biz.kpis.or.kr>)에 등록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등록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품목의 표준코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http://biz.kpis.or.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사는 의약품 품목별·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부여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 (가) 제조·수입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의약품취급 업체를 나타내는 4자리코드(6400~6999, 6200~6299, 0500~0999)를 부여받는다.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규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 기존 제품 중 새로운 포장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예측적 밸리데이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품목허가 이전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에 품목별·포장단위별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한다.
- (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담당자는 제출된 ‘제품정보보고서’ 정보를 토대로 표준코드의 부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http://biz.kpis.or.kr>)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이를 D/B로 관리한다.

※ 공고내역 : 한글제품명, 제약사명, 약품규격, 제품 내 총수량, 제형구분, 대표(표준)코드

### 3) 의약품 표준코드 활용

제조·수입자는 국내에 유통하는 의약품의 바코드 또는 RFID tag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생산·수입 실적 보고시 표준코드 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의약품 바코드 종류 및 구성 체계


의약품 바코드는 국제표준코드체계인 GTIN-13 또는 GS1-128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의약품은 바코드에 표준코드만 표기하여도 되므로 GTIN-13 바코드를 사용하여도 되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GS1-128 체계 바코드에 표준코드, 제조번호, 유효기한(사용기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의약품 중 방사성 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GTIN-13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다.

### 1) GTIN-13 번호체계


국가식별코드 3자리, 업체식별코드 4자리, 품목코드 5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된 13자리 코드체계이다.

그림4.2-5 GTIN-13 번호체계

자리수	3	4	5	1
내 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부여 예	880	6411	12345	9



8 806411 123459



(01)08806411123459

### 2) GS1-128 번호체계

GTIN-13 번호체계에 응용식별자(AI, Application Identifier) 중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체계이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GS1-128번호체계 바코드에 표준코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0ml를 초과하는 수액류, 인공신장관류용제,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제와 X선 조영제, MRI 조영제, 초음파조영제는 일련번호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림4.2-6 GS1-128 번호체계

자리수	2	14	2	6	2	20 이하	2	20 이하
내 용	AI 상품식별 코드	GS1 상품코드	AI 유효기한	YYMMDD	AI 제조 번호	제품이 생산된 라인	AI 일련 번호	제품의 일련번호
부여 예	(01)	08806411123459	(17)	101231	(10)	Q12345	(21)	A213291199

 <p>(01)08806411123459(17)171231(10)Q12345(21)123456789 (01)08806411123459(17)101231</p>	 <p>(10)Q12345(21)A213291199</p>
---	--

### 마.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운영 주요경과

표4.2-6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운영 주요경과

구분	주요 내용
2009년	의약품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2010년	15ml(g)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2012년	지정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GS1-128번호체계 바코드 사용)
2013년	전문의약품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GS1-128번호체계 바코드 사용)
2015년	전문의약품 바코드에 일련번호 표기 의무화
2016년	전문의약품에 대한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일련번호 포함) 시행(2016.7.1.부터 제조·수입사 의무)
2017년	전문의약품에 대한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 (일련번호 포함) 시행(2017.7.1.부터 도매상 의무 시행)

### 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 부착 관련 행정처분 기준

- 관련규정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38.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바코드 등 미표시 자. 바코드 등 오부착, 미인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71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공고

가. 목적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선정·공고하여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나. 법적 근거

- 가) 「약사법」 제38조(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2항
-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 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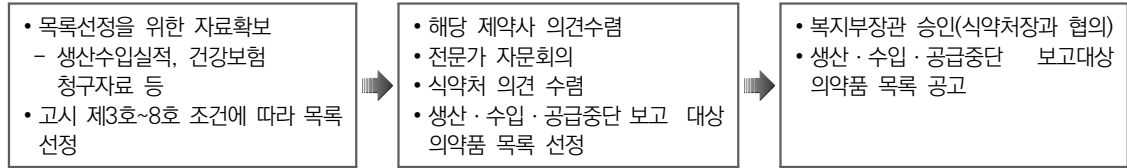
다.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 선정기준

- 1)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 제외)
- 3)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생산·수입업체 3개 이하인 경우)
-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경우)
- 6) WHO 추천 필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경우)
-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 8)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

※ 3), 4)호의 '동일성분'은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코드로 구분

선정기준 제3호~제8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1회/년)

## 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절차



### 3

##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관리

### 가. 정의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해당 연도의 생산·수입실적 중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의 경우 분기별로 생산·수입 실적을 한국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경유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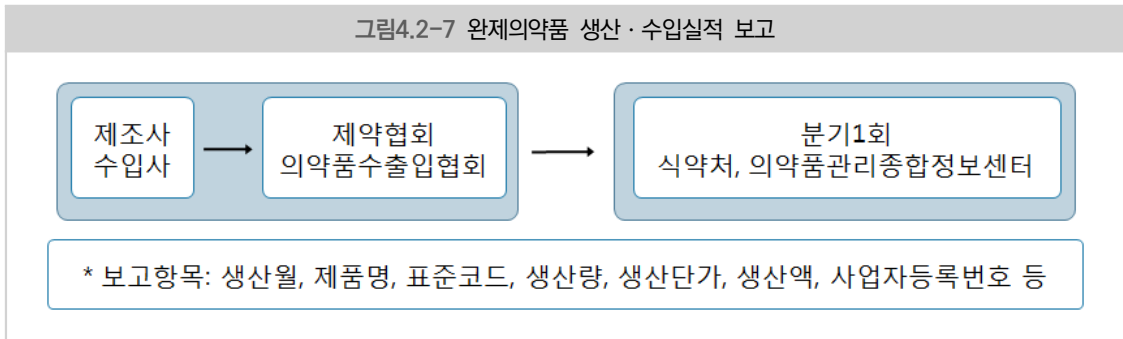
### 나. 법적 근거

- 가)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2항
- 나)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약품등의 생산·수출·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제1항
- 라)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다.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관리 절차 및 업무 흐름도

- 1)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관리 절차
  - 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각 분기별 완제의약품의 제조·수입실적을 분기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수입사로부터 취합하여 다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http://biz.kpi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실적을 D/W System에 축적하여 관리한다.

2) 업무 흐름도





## Ⅲ

##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일련번호 제도 운영

작성자 : 의약품정보관리부 주 - 양성준  
부 - 강재영

## 1

##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 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정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라 함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에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는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여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할 수 있다.

## 나. 법적 근거

- 가)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처분내용별 근거법령】

- ①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약사법」 제76조,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제4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 ② 공급내역 미제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약사법」 제98조제1항제7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제7호의5)

## 다.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절차 및 업무 흐름도

## 1) 국내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관리 절차

- 가) 완제의약품의 제조·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완제의약품 공급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디스켓, CD 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biz.kpis.or.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출된 공급내역을 점검 및 분석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내역 자료를 매월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www.biz.kpis.or.kr)에 공개하고 DW System에 축적하여 관리한다.

2) 업무 흐름도



2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고유번호(일련번호: randomized unique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의 전체 유통단계를 체계적(track and trace)으로 관리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추적(e-pedigree)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법적 근거

- 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나)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제6조(RFID tag 구성체계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4호, 2015. 5. 14.)

## 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업무 흐름도

각 유통주체(제조·수입·도매)가 의약품 공급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고, 이 정보를 통해 의약품 유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주요내용

### 1) 대상기관 및 대상의약품

- 가) (대상기관)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제조사·수입사·도매상)
- 나) (대상의약품) 원칙적으로 모든 완제의약품에는 일련번호를 부착할 수 있으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1) 지정의약품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인화성·폭발성이 있는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 (2)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0호)

- 다만, 일반의약품 및 수액제 등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 제5조제3항 [별표 1의2]에 의한 전문의약품은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의2]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제5조제3항 관련)

1. 수액류 관련
2. 인공관류용제 관련
3.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 관련
4. 조영제 관련

2) 일련번호 등 정보보고

가) (보고시기)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는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일반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할 수 있다.

나) (보고서식) 지정·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별지 제24호의 2서식]에 따라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된 공급내역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의약품인 경우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다.

- 다만,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보고하되, 일련번호를 제외하여 보고할 수 있다.

그림4.2-9 의약품 일련번호 등 정보보고 서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① 연번	② 공급자 영업 형태	③ 계약 방법	④ 공급 구분	⑤ 공급 형태	공급받은 자			⑨ 표준 코드 명칭 (제품명)	⑩ 표준 코드 (제품 코드)	⑪ 포장내 총수량 (규격)	⑫ 공급 수량	⑬ 공급 일자	⑭ 공급 금액 (VAT 포함)	⑮ 공급 단가 (VAT 포함)	⑯ 접수 번호 (재보고 대상)	⑰ 반송사 유코드 (재보고 대상)	⑱ 제조 번호	⑲ 유효 기한 (사용 기한)	⑳ 일련 번호	㉑ 목록 번호	㉒ RFID tag 코드	㉓ 비고
					⑥ 명칭	⑦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요양 기관 기호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① 연번	② 공급자 영업 형태	③ 계약 방법	④ 공급 구분	⑤ 공급 형태	공급받은 자			⑨ 표준 코드 명칭 (제품명)	⑩ 표준 코드 (제품 코드)	⑪ 포장내 총수량 (규격)	⑫ 공급 수량	⑬ 공급 일자	⑭ 공급 금액 (VAT 포함)	⑮ 공급 단가 (VAT 포함)	⑯ 비고
					⑥ 명칭	⑦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요양 기관 기호								

다) (적용시기) 일련번호 등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다만, 제조·수입업체(이하 ‘제약사’라 한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매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제조번호, 유통기한, 일련번호는 제외하고 보고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 이에 따라 제약사는 2016년 12월31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고 있으며, 도매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시사점

- 1) (유통관점의 변화)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가 ‘공급총량’ 중심에서 개별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일련번호)’ 관점으로 변화
- 2) (실시간 정보보고 체계) 기존 ‘익월 말 보고 방식’에서 유통단계별 ‘실시간(real time) 정보 보고 체계’로 변경
- 3) (보고시점 변화)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업체 2,500여 기관)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

# IV

##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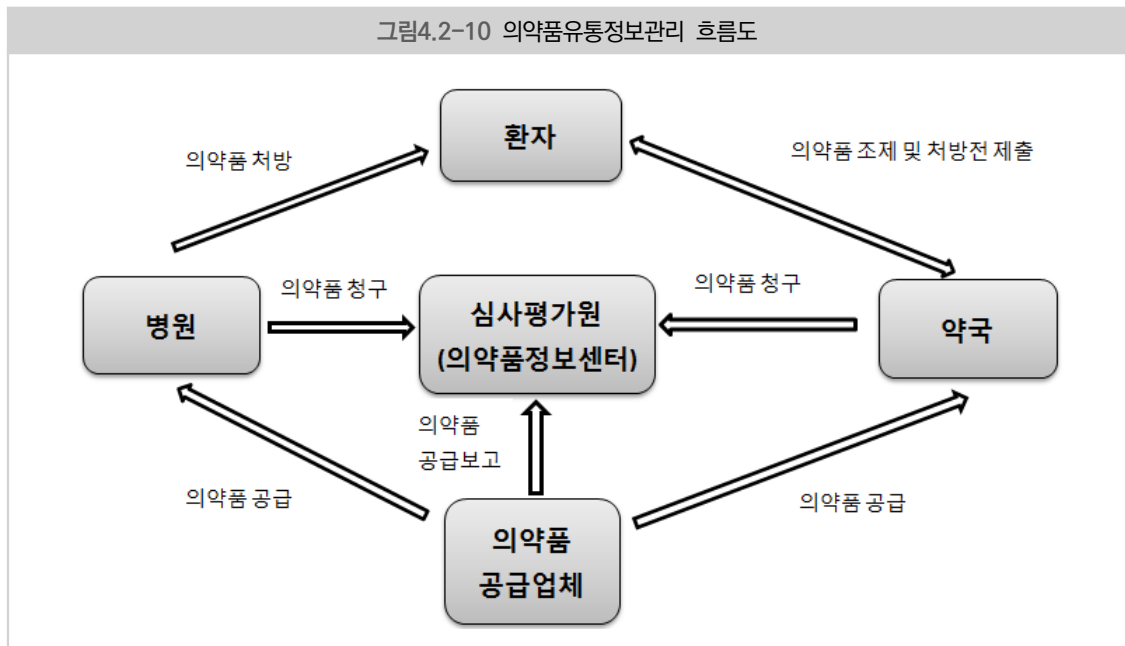
작성자 : 의약품정보개발부 주 - 박근석  
부 - 임현정

### 1

### 개요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하여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확인하고 약제비용에 대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그림4.2-10 의약품유통정보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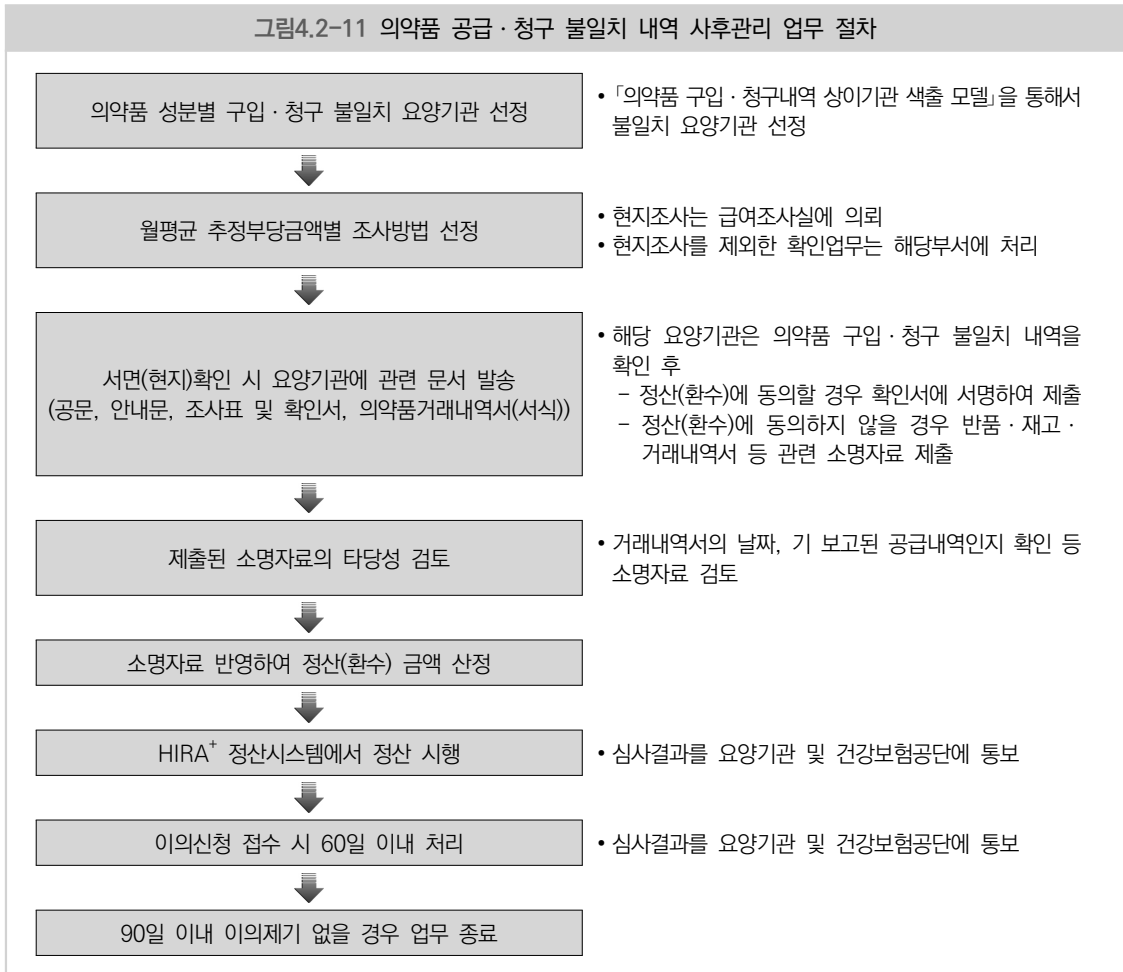


## 2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3항(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3 업무 절차

그림4.2-11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업무 절차



### 가. 업무수행 목적

동일 성분 의약품의 구입·청구내역을 비교해서 의약품의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투명한 의약품 사용과 정확한 청구 유도

### 나. 대상기관 : 모든 요양기관

### 다. 확인방법

- 1) '의약품 구입·청구내역 상이기관 색출 모델'을 통해서 의약품의 구입·청구가 불일치되는 요양기관을 선정
- 2) 조사 및 확인방법

조사방법	처리기준	해당부서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추정부당금액 15만원 이상 &amp; 추정부당비율 2% 이상</li> <li>• 월평균 추정부당금액 25만원 이상 &amp; 추정부당비율 1% 이상</li> <li>• 월평균 추정부당금액 40만원 이상 &amp; 추정부당비율 0.5% 이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li> </ul>	급여조사실에 의뢰
서면확인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제외한 월평균 추정부당금액 6만원 이상 기관 (필요시, 현지확인 실시)</li> </ul>	의약품정보개발부
주의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추정부당금액 6만원 미만 기관</li> </ul>	의약품정보개발부

가) 현지조사 : 급여조사실에 의뢰

나) 서면확인(필요시 현지확인) : 요양기관으로 공문, 안내문, 조사표 및 확인서, 의약품거래 내역서(서식)를 우편발송하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입·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정산(환수)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에 서명 후 회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품·재고·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현지확인 :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자료의 확인, 질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지확인 대상은 요양기관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민원·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다) 주의통보 : 요양기관에 주의통보 공문,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문의 시 우선으로 확인

### 3) 증빙자료의 종류

거래내역서(거래일자, 약제품명, 약제단가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재고량 확인서, 의약품 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 의약품의 구입·청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4) 제출된 소명자료의 타당성 검토

추가 구입 자료가 기 보고된 공급내역인지 확인, 확인서의 날짜 및 직인·날인 등 여부 확인, 조사표 및 확인서 상에 요양기관에서 입력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입력 여부 등을 확인

**라.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 정산심사**

-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약제비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혹은 차액을 정산(환수)하여 심사결과를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

**마.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 이의신청**

- 요양기관이 정산내역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함

# V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

작성자 : 의약품정보조사부 주 - 김무성  
부 - 지선옥

### 1 개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는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및 미보고·거짓보고 여부를 현지에 출장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의뢰 또는 주의통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2 법적근거

- 가)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 나)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 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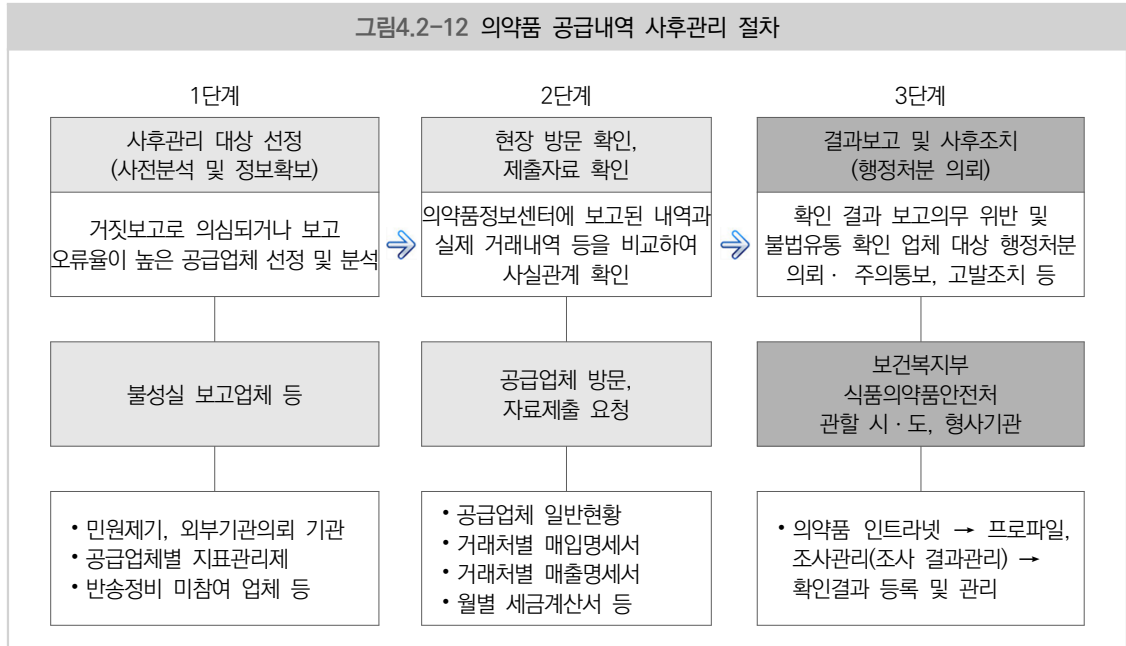
#### 【처분내용별 근거법령】

- ①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또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약사법」 제76조,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제36호)
- ② 공급내역 미제출 : 100만원의 과태료(「약사법」 제9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 처분 세부내용 후단에 별도 설명

## 3

##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현지·서면확인) 업무절차

## 가. 사후관리 절차 개요



## 나.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대상업체의 선정

- 1)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불성실 공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업체 수,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간, 중점조사 항목이나 착안사항, 규모·지역·금액·조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 계획 수립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도 그 내용을 보고한다.
  - 2) 사후관리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 규모·지역·금액·조사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대상선정 점수표를 작성하여 상위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아래와 같은 업체는 현지확인 대상업체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 가) 민원, 대외기관 등에서 조사 의뢰된 공급업체
  - 나)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가 의심되는 공급업체
  - 다) 의약품 공급업체별 지표관리제에서 나타난 성실보고 미개선 공급업체

- 라) 공급내역 반송건에 대한 재보고 미참여 공급업체
- 마) 민원 다발생기관 등 '이상'등급으로 추출된 공급업체
- 바)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공급내역 보고 착오 다발생 공급업체
- 3) 현지확인 은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선정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동일 순서인 경우에는 현지확인 결과 실익이 큰 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 4) 공급내역 조사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폐업·휴업된 업체
  - 나) 신규 개업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체
  -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다만, 고의적 또는 지속적 거짓보고가 확인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현지확인 절차

- 1) 의약품 공급업체 방문 시 먼저 신분증과 현지확인 통보서를 제시하고, 방문 취지·목적 및 미보고나 거짓 보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기간이 된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한 다음,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등을 설명한다.
- 2) 현지확인 은 당해 공급업체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장소 등이 협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업체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3) 공급업체에서는 현지확인 과정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지확인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의약품정보센터에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가능하다.
- 4)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각종 서류를 확인한다.
  - 가) 자료제출요구
    - (1) 공급업체 일반현황 및 의약품 매출신고 현황
    - (2) 의약품 수불대장, 세금계산서, 매입·매출거래명세서 등
  - 나) 질문과 검사
    - (1)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사실관계 확인
    - (2) 불법유통 사실 확인 시 관련 업체 및 요양기관 등 유선·방문 확인
- 5)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발사항 정리 및 매입·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다.
  - 품목별로 적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누락 및 거짓보고 내역)
- 6) 확인사실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서 작성하고 대표자(또는 수입자)의 확인을 받는다.

- 7) 현지확인 종료 후 확인사실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미보고·거짓보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처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 8) 불법유통 등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은 관할 보건소 및 형사기관에 조사의뢰 및 고발조치한다.

## 라. 현지확인의 연기

- 1) 현지확인 착수 이전 혹은 현지확인 중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곤란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 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나) 타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 다)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 라)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현지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2) 현지확인 연기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현지확인을 재개한다.

## 마. 처분

- 1) 공급내역 미보고: 100만원의 과태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또는 2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
- 2) 공급내역 거짓보고: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또는 2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

표4.2-7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약사법」)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41.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표4.2-8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2(「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26.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 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법 제42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3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7조의2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 4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위반에 대한 조치

## 가.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와 더불어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공급업체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미보고·거짓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제조·수입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 나. 행정처분 의뢰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행정처분을 의뢰한 해당 공급업체가 약사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현지 확인 시에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그 후에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 점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점검결과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분만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현지확인 때에 우선적으로 재선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의약품 관련 행정조사 유사 업무

구분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구입약가 사후관리 현지확인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 공급(유통)내역투명성·신뢰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기관 올바른 청구유도</li> <li>건보 재정 누수방지</li> <li>의약품거래 투명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가 상한금액 조정 (건보 재정보호)</li> </ul>
현지확인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사법</li> <li>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li> <li>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li> <li>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 공급업체 (제조·수입사, 도매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기관(병원급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기관</li> <li>※ 요양기관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확인·조사</li> </ul>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의약품 공급업체 현장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입약가(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 현장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별 상한금액이 적정한지 요양기관에 현장 조사하여 확인·상한금액 조정</li> </ul>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li> <li>- 행정처분(업무정지 혹은 과징금)</li> </ul> </li> <li>거짓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업무정지 혹은 과징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기관의 약제비 초과 청구분 환수(정산)</li> <li>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행정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가 상한금액 조정</li> </ul>
담당부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 ※ &lt;참고자료&gt;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현지확인) 대상선정 점수표

(단위 : 점)

구분	세부기준		대상선정 점수
① 조사 실적·적정성	보고위반 의심 상위업체 (보고위반 의심금액 비율*)	10% 이상	40
		5% 이상	20
		3% 이상	10
② 보고위반 수준 (매출 상위업체 쏠림현상 방지)	위반품목 수	200개 이상	20
		100개 이상	10
		50개 이상	5
	위반금액	10억 이상	20
		5억 이상	10
		1억 이상	5
③ 현지조사의 효율성	동일권역** 소재지	3개소 이상	20
		2개소	10
		1개소	5
④ 조사 시급성	민원 제기 및 외부기관 의뢰		50(+α)
		계	총 100(+α)

\* 보고위반 의심금액 비율 : (보고위반 의심금액/전년도 총 매출액) × 100

\*\* 동일권역 : 서울(경기 성남 포함), 5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VI

#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작성자 : 의약품정보조사부 주 - 김무성  
부 - 유선아

### 1

## 도입배경 및 개요

### 가. 도입배경

1999년 11월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약제비 지급전에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근거로 전산심사하였으나, 2010년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사후관리체계로 전환(사전심사 → 사후심사)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나. 개요

의약품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약품비)을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공급 가중평균가)과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하여 구입약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제비용에 대하여 차액 정산(환수) 및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업무이다.

### 2

## 법적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 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3항(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3

## 구입약가 확인

## 가. 목적

구입약가 확인업무는 구입약가를 착오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산(환수)을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급보고 내역과 비교를 통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를 유도함이 목적이다.

## 나. 개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약품비)을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공급 가중평균가)과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점검 후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는 업무

## 다. 대상기관 :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 라. 적용 및 제외 대상

- 1) 적용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 2) 적용제외 대상
  - 가)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약제
  - 나) 방문당수가 적용대상(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다) 정액수가 적용 대상(요양병원, DRG, 호스피스 적용기관)
  - 라) 100/100 본인부담, 비급여 및 보훈국비환자 등
  - 마) 한약제제

## 마. 확인 방법

- 1) 각 요양기관에 지급된 약품비를 3개월 진료분 단위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제 등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며,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에 구축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내역을 점검 및 확인 후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2) 증빙자료의 종류

- 거래계약서(계약일자, 계약 약제품명, 계약단가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재고량 확인서, 의약품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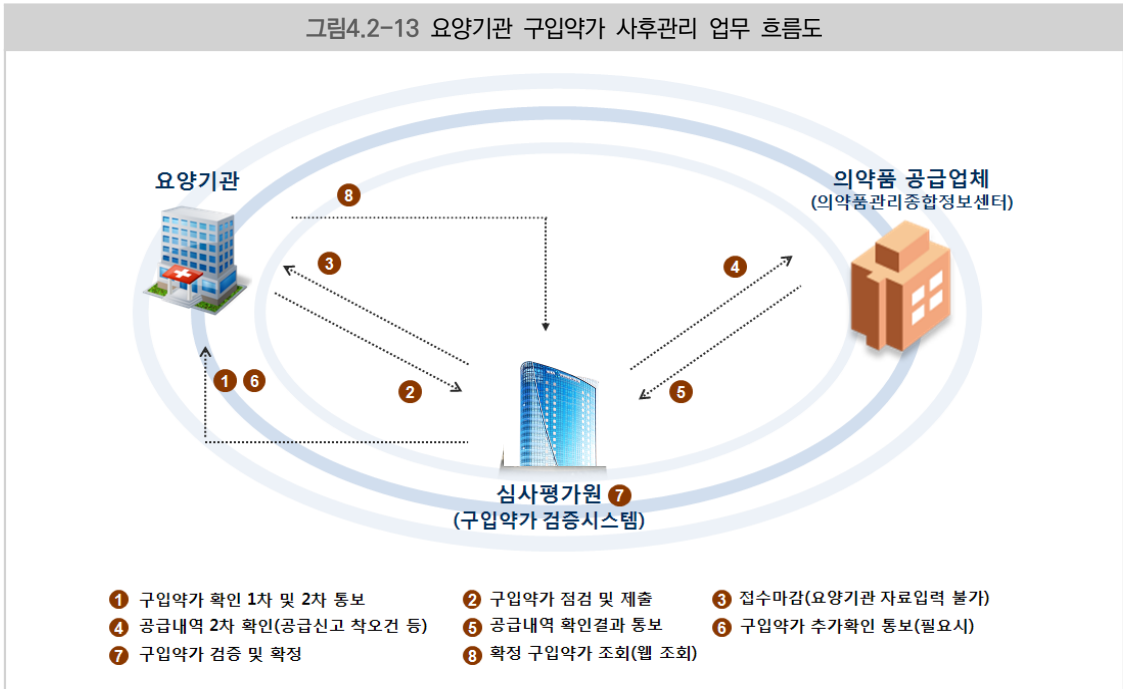
3) 증빙자료 첨부기준(필수)

-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 최초 구입약제, 분기 가중평균가가 없는 약제 및 추가확인 요청 약제 등

4) 확인 방법

- 가) 서면확인: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 나) 현지확인: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자료의 확인, 질문 등의 방법으로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관 실시
  - (1) 현지확인 대상은 요양기관이 정기확인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민원·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 (3)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그림4.2-13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 4

## 구입약가 정산심사

## 가. 개념

구입약가 확인결과,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제비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액을 정산(환수)하는 업무

## 나. 대상

구입약가 확인결과, 청구단가와 최종 확정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약제 중에 요양기관 청구단가가 확정단가보다 큰 경우 및 요양기관의 구입내역이 없는데 청구가 발생한 경우(약가코드 착오 청구 등 해당

## 다. 방법

심사시스템에 구축된 정산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를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5

## 구입약가 이의신청

## 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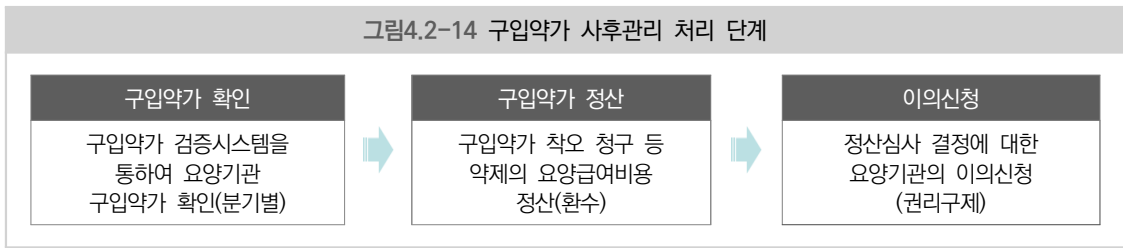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정산내역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리방법

심사시스템에 구축된 이의신청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며 심사결과를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그림4.2-14 구입약가 사후관리 처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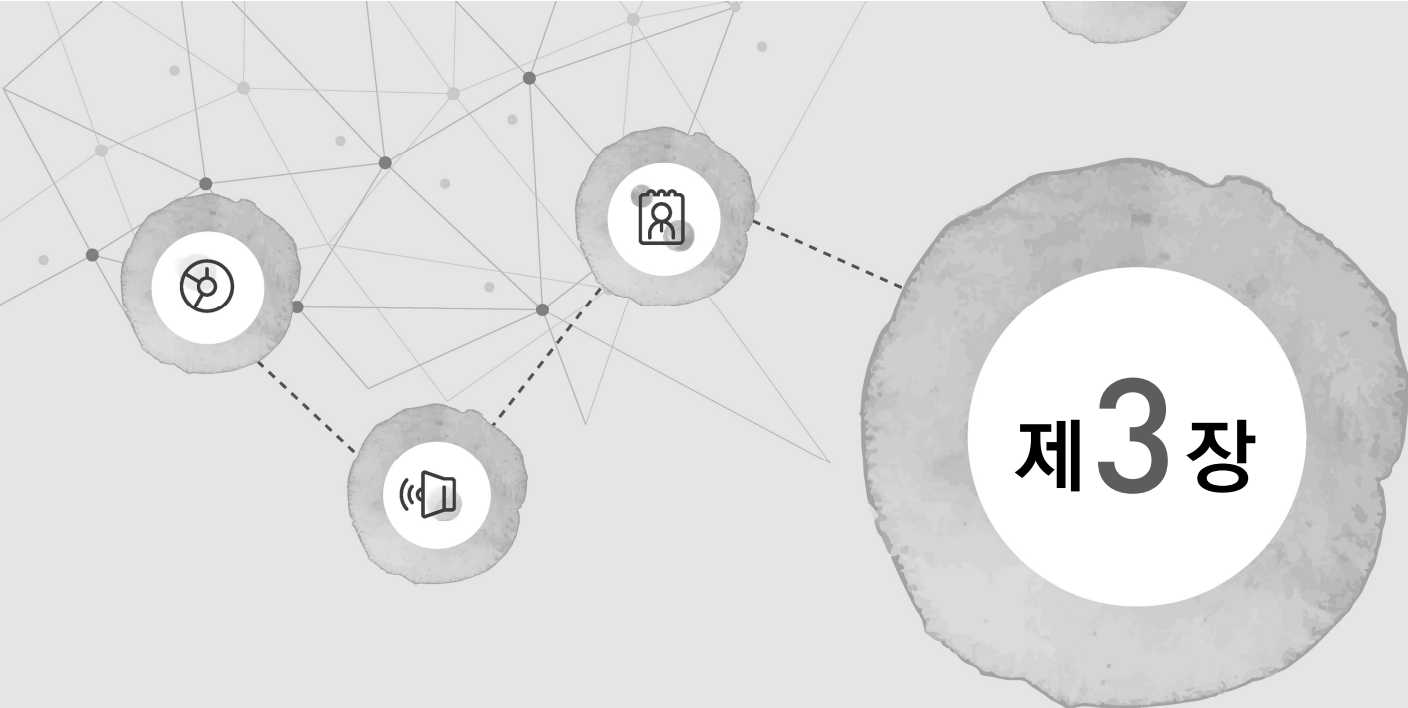
※ <참고자료> 그간의 약제비관리 제도 변화

- 그간 약제비관리 제도는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14.9.1. 부터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폐지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간의 제도 변화>

- '77. 7. 1. 고시가 상환제(실제 구매 가격과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상환) 시행
- '99. 11. 15. 실거래가 상환제(상한금액내에서 실 구매 가격으로 상환) 시행
- '10. 10. 1.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10. 2.)」에 따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 조정(인하) 목적
  -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상한가-구입가)\*70%} 지급
- '11. 2. 28. 저가필수의약품 등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해당
- '12. 2. 1.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유예(2년간)
  - '12. 4. 1. 약가일괄인하로 '12. 2. ~ '14. 1.까지 유예
- '14. 2. 1.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재시행
- '14. 9. 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시행
  - 입원 약품비를 포함한 총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개선
  -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활용도록 제도 변화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일부개정 예정(안), 2016. 9. 입법예고안  
 - (조사대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제3장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I.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개요

II.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 제3장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I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개요

작성자 : DUR관리부 주 - 김정기  
부 - 곽미숙

#### 1

#### 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정의

DUR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할 때 또는 약사가 조제 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현재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제18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
- 나. 「약사법」 제23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심사평가원에 위탁
- 라.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 의약품정보의 대상·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등

- 마. 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병용·연령·임부금지 의약품 성분 고시
- 바. 영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병용·연령·임부금지 의약품 영양급여 기준
  - 영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학적 사유 등으로 처방 조제 시 예외
  -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하여 비용 청구, 심사평가원장이 적절성 판단
- 사. 영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팝업 제공 등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규정

3

추진 경과

- 가. 병용·연령 금지 의약품 최초 고시('04. 1.)
- 나. 금지 의약품에 대한 심사 점검 시스템 구축('04. 8.~ )
  - 진료비 청구 후 사후점검
- 다.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DUR 시스템 구축 운영('08. 4.~ )
  - 처방·조제시 실시간 금지 등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 라. 다른 처방전 간 DUR 시범사업 실시
  - 1) 경기도 고양시('09. 5.~'10. 11.)
  - 2) 제주도('09. 11.~'10. 11.)
    - ※ 약국 판매약 DUR 시범사업('10. 5.~'10. 11.)
- 마. 다른 처방전 간 DUR 전국 확대('10. 12.~ )
- 바.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DUR 적용('12. 7.~ )
- 사. 보건진료소 DUR 적용('13. 1.~ )
- 아. 치료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DUR 적용('14. 9.~)
- 자. 분할주의 의약품 DUR 적용('15. 9.~)
- 차.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적용('15. 10.~)
- 카. 처방·조제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및 DUR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의료법·약사법」 개정 ('16. 12. 30. 시행)
- 타. DUR 관련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16. 12.~)
- 파.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DUR 적용('18. 7.~)



## 4

## DUR 업무 주체별 역할

기관	소속	역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R 관련 정책추진 총괄</li> <li>•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율</li> <li>• 관련 법, 규정 등 마련</li> </ul>
	보험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R 보험급여 연계(금기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및 고시)</li> </ul>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기의약품 고시 및 공고</li> <li>•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li> </ul>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의약품 안전사용정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기 및 주의정보 개발</li> </ul>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DUR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R 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DUR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용</li> <li>• 의약품 안전정보 DUR 적용 및 대상 의약품 관리</li> <li>• DUR 운영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li> <li>• DUR 관련 고객지원 업무 등</li> </ul>

## 5

## DUR 대상 의약품

DUR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는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주의, 용량·투여기간 주의, 동일성분 중복 및 효능군 중복, 분할주의, 노인주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이며, 비용효과적인 합량 사용대상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고합량 약제가 있음에도 저합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을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4부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관리

표4.3-1 DUR 대상 의약품 현황

(단위 : 개, 품목, '18. 9월 기준)

항목	성분수	품목수		
		계	급여	비급여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전체			
	4,812	35,819	21,230	14,589
소 계	2,640	43,602	32,557	11,045
비용 금기	946 (조합)	7,447 (468,651)	5,510 (293,647)	1,937 (175,004)
연령 금기	160	2,897	1,759	1,138
임부 금기	700	13,467	9,934	3,533
효능군 중복	328	6,564	5,285	1,279
용량 주의	240	5,739	3,729	2,010
투여기간 주의	17	100	69	31
노인 주의	20	50	37	13
분할 주의	-	1,698	1,304	394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227	2,817	2,179	638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	242	173	69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2	8	5	3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	2,573	2,573	-

\* 동일성분 중복 성분수는 주성분코드 4자리수임

\*\*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품목 허가취소 등 반영한 품목수임(안전성 속보 등 배포당시 적용 품목수)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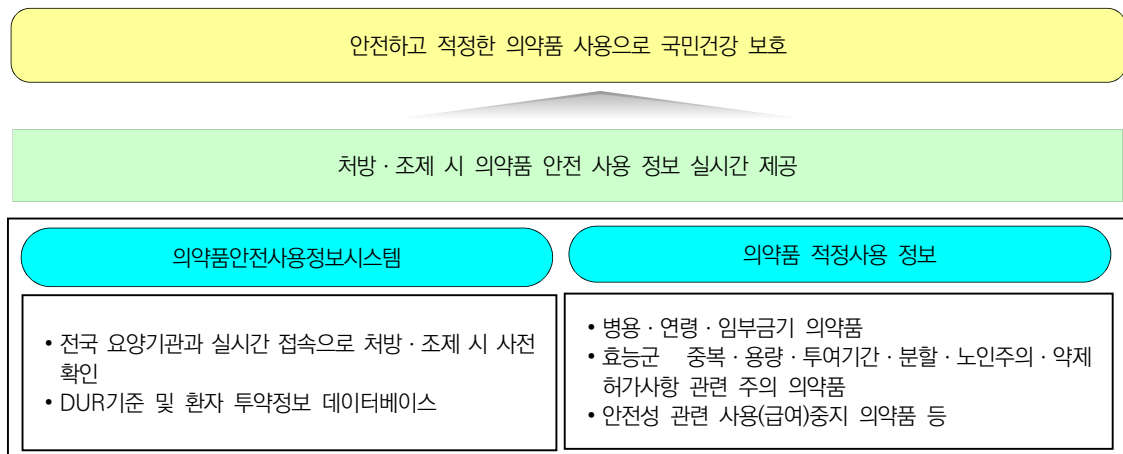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 1

## 추진체계

DUR은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 간 실시간 처방·조제 정보를 전송하고 환자별 복용약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점검이 필요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DUR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꼭 필요한 의약품 안전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을 때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현재, DUR 점검은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전송하여 실시간 의약품 안전 점검을 이중으로 하고 있으며, 처방·조제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및 중복 처방 등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DUR의 특성을 활용하여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정보, 헌혈 및 인체조직 이식·분배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 2 DUR 점검대상 및 범위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DUR 점검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대상 기관: 전체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 나. 점검 대상: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 및 비급여)
- 다. 점검 내용
  - 처방전 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주의 의약품,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분할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품, 약제 허가 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비용효과적인 합량 사용 대상 의약품
  - 처방전 간 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효능군 중복의약품

## 3 DUR 점검 및 처리절차

표4.3-2 DUR 점검절차

구분	점검절차
처방단계	•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전송
	• 심사평가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처방의사에게 제공
	• 처방의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처방·조제사유 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을 심사평가원으로 전송
조제단계	• 약사 조제단계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전송
	• 심사평가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약사에게 제공
	• 약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조제 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처방·조제사유 기재 후 최종 조제내역을 심사평가원으로 전송

그림4.3-1 DUR 점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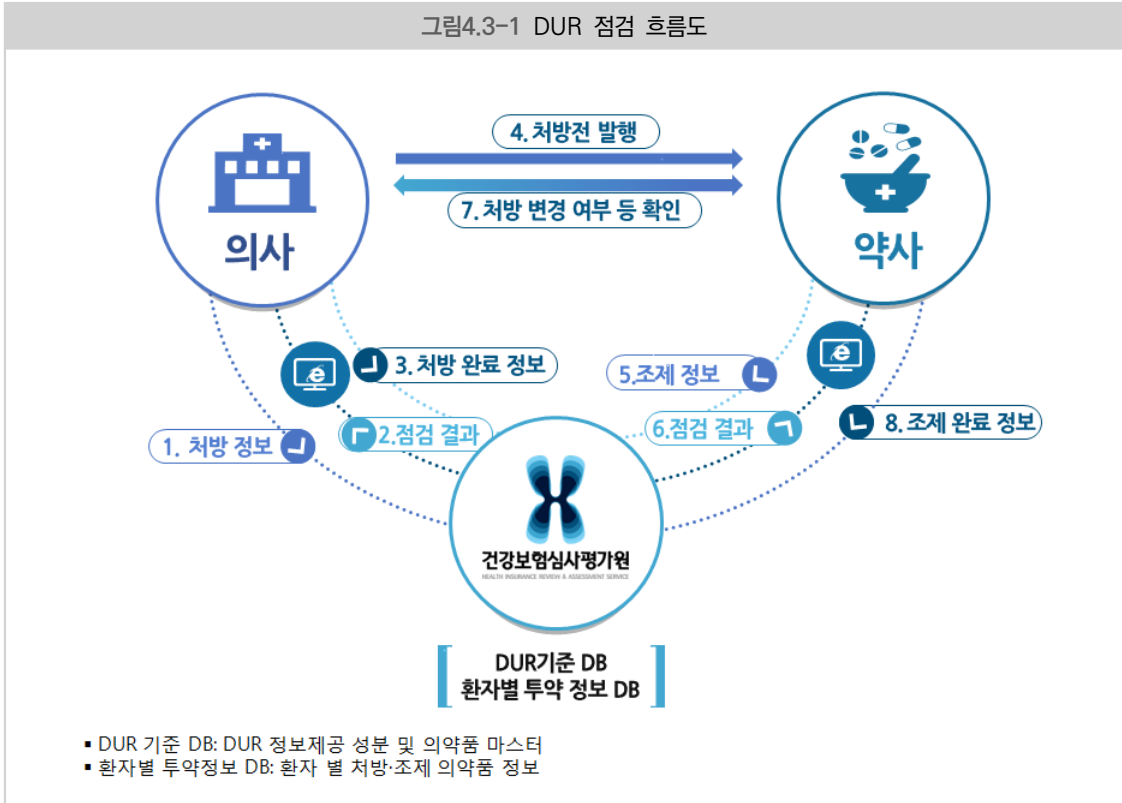


그림4.3-2 DUR 업무처리 절차 (DUR Business Processing Proced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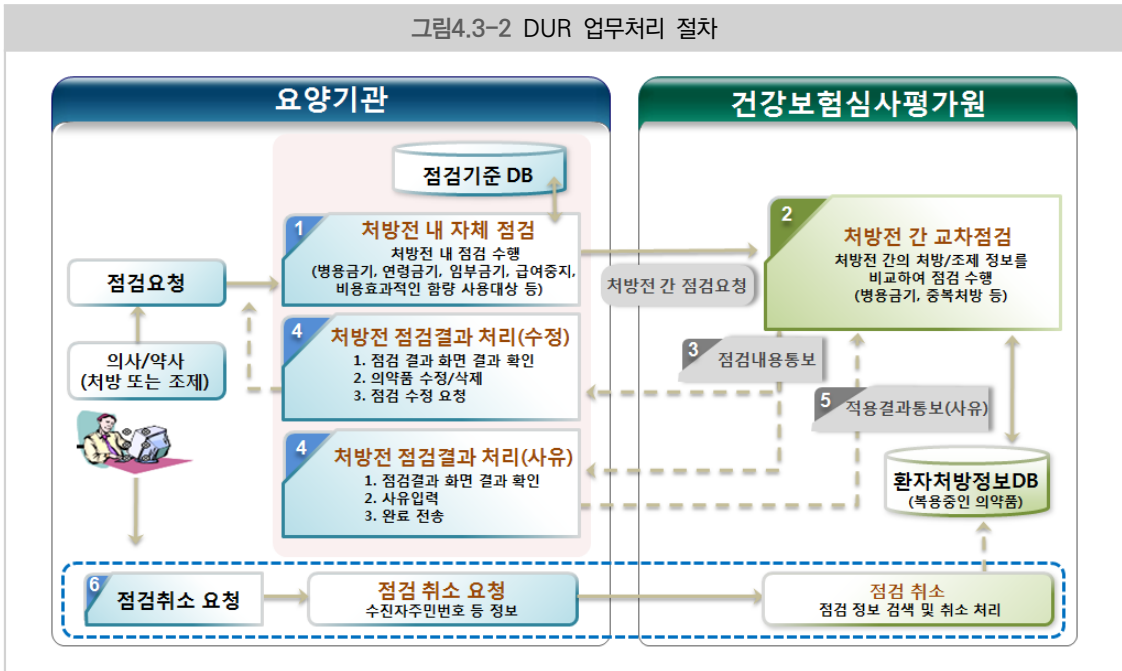


그림4.3-3 DUR 표준 팝업창 화면

그림4.3-3 DUR 표준 팝업창 화면

점검 결과

 사용증지(처방·조제불가)
  금기·중복의약품(사유기재)
  주의의약품(정보확인, 임부금기 2등급포함)
  약품상세정보(상행)확인필요

정보	구분	DUR점검내역	입력약품	복용약품	해외사유코드	해외사유내용
처방전내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아마릴염정2/500밀리그램(수혈 용니파큐300주(이오핵술)_(64 T				
처방전내	18세 미만 연령금기	레비트라정10밀리그램(염산배			T	
조제비고	3일 병용금기	클래리징(클래리트로마이신)_				
조제비고	7일 병용금기	스포라녹스캡슐(이트라코나졸				
조제비고	3일 병용금기	조코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				

일괄 사유 사용(Text입력시)
  기존DUR점검결과에 따른 사유보기
 +사유입력 필요시 해당 줄 선택
사유관리

+복용약품 : 구분이 처방전내인 경우에는 입력약품을 말합니다.  
 +안전성서한 관련 의약품은 좌측 체크박스 선택시 오늘 하루 경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검결과 상세내용**

DUR점검내역	병용금기	
입 력 약 품	조코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_(20mg/1정)	성분명
복 용 약 품	클래리징(클래리트로마이신)_(0.25g/1정)	성분명
1일투여량	2,000 총투여일수	3 처방일자
약관상세정보	근병증, 황문근용해의 위험증가	
처방기관종별	연락처	처방의료인(병명규이상)
조제기관종별	연락처	전송시각
해외사유코드	Text입력	부가서비스 DUR 약품조회
해외사유내용		서비스선행

고객지원센터 : 1644-2000

현재 버전은 030090, 최신 버전입니다.

Update check
취소
완료(전송)

표4.3-3 처방·조제 사유 내용별 코드

구분	내용	코드
중복처방	•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A
	• 특정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powder 등)	B
	• 약제가 소실·변질 된 경우(항암제 투여, 소아환자의 구토에 한함)	C
중복·병용금기 (처방전간)	• 복용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F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복용하는 약제	G
	• 용법·용량을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H
	• 투여일수를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I
	• 기존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거나,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	L
	•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 입원환자의 기존 외래 처방·조제된 약과 처방전간 점검이 발생하는 경우	R
	• 용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W
	• 기존 처방전을 조제하지 않은 경우	X

표4.3-3 처방·조제 사유 내용별 코드(계속)

구분	내용	코드
임부금기	• 절박 유·조산 또는 습관성 유·조산 치료 시 투여	M
	• 분만 시(분만유도, 분만촉진, 출혈방지 등)에 투여	N
	• 유산유도(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	O
	• 임신중 검사(용모막채취검사(CVS), 양수검사, 수축자극검사(CST) 등)	Q
	•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S
	• 임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 후 투여, 폐경 등)	V
text 기재	•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DUR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처방변경 없이 처방·조제 하는 경우 기재

## 4

## 세부적용 기준

## 가. 병용금기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 2) 금기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해당 사유를 기재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AS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DUR 팝업창 제공 예외사항〉

-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와 입원의 퇴원약 처방·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나.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3) 금기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해당 사유를 기재

#### 다. 임부금기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처방·조제 사유 기재
  - 2등급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기재
  - M등급: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처방·조제 사유 기재

#### 라.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를 공표한 의약품(해당 제조번호)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단, 위해등급 2·3등급의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인 경우 점검 제외('DUR 알리미'를 통해 정보제공)
- 3) 처방·조제 사유 기재 불필요(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4) 사용(급여)중지 사유 메시지 제공

#### 마.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바.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 1)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의 DUR 점검은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끼리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 '유효성분'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으로서 주성분을 말함
  - \*\* DUR성분코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및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고
- 2)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의 경우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개별성분에 대하여 각각 점검 실시



- ※ 예시 : 511600ATB(주성분코드)→D000152, D000485(DUR성분코드로 점검됨)
- 단, 4성분 이상 복합제의 경우 단일코드로 점검(기존 성분의 조합 및 함량에 따른 점검)
- 3) 의약품 처방·조제의 목적이 처치 및 진단검사 등인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
  - ※ 예시 : 생리식염주사액 등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동일성분 중복 제외 의약품 선정 세부 기준’ 참고
- 4)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처방·조제 사유 기재
  - 단,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 ※ “마약류 의약품”이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말함

〈DUR 팝업창 제공 및 제공 예외사항〉

-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 간 점검결과는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 제공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 \*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제공 제외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와 해당 입원의 퇴원약 처방·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사. 효능군 중복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 동일 효능(또는 약물) 계열 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호흡기계용제, 정신신경용제
- 2)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DUR 팝업창 제공 및 제공 예외사항〉

-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 제공
  - \*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제공 제외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와 해당 입원의 퇴원약 처방·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아.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고한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3)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 자.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처방 당 총 투여일수가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 차. 노인주의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2) 수진자 나이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
- 3)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 카. 분할주의 의약품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분할 투여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처방·조제 사유 기재 생략

#### 타.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 1)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고한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2) 처방·조제 사유 기재 불필요

#### 파.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약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상의 연령, 성별, 1일 최대용량 등을 기준으로 함

#### 하.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발행 기관기호, 처방전 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 가. 점검 제외 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2000년 이후 출생자 기준

## 5

## 운영현황

### 가. 참여현황

'18.8월 기준, DUR 대상기관의 99.7%(74,067개소)가 DUR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8월 한달간 DUR 점검기관은 대상기관의 97.7%인 72,542개소이다.

표4.3-4 DUR 참여 현황(1개월)

('18.8월 기준, 단위 : 기관, %)

구분	대상기관수	참여기관수	비율
계	74,265	72,542	97.7
병원급 이상	3,651	3,437	94.1
의원	46,542	45,359	97.5
보건기관	3,459	3,433	99.2
약국	20,613	20,313	98.5

### 나. 시스템 운영

DUR 점검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 이루어지므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요양기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DUR 전용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처리속도를 최소화하고, DUR 서버 이중화로 장애 발생에 대비하였다.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통신구간의 전송 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였고 요양기관이 DUR 서버 접속 시 공인 인증서로 접속 자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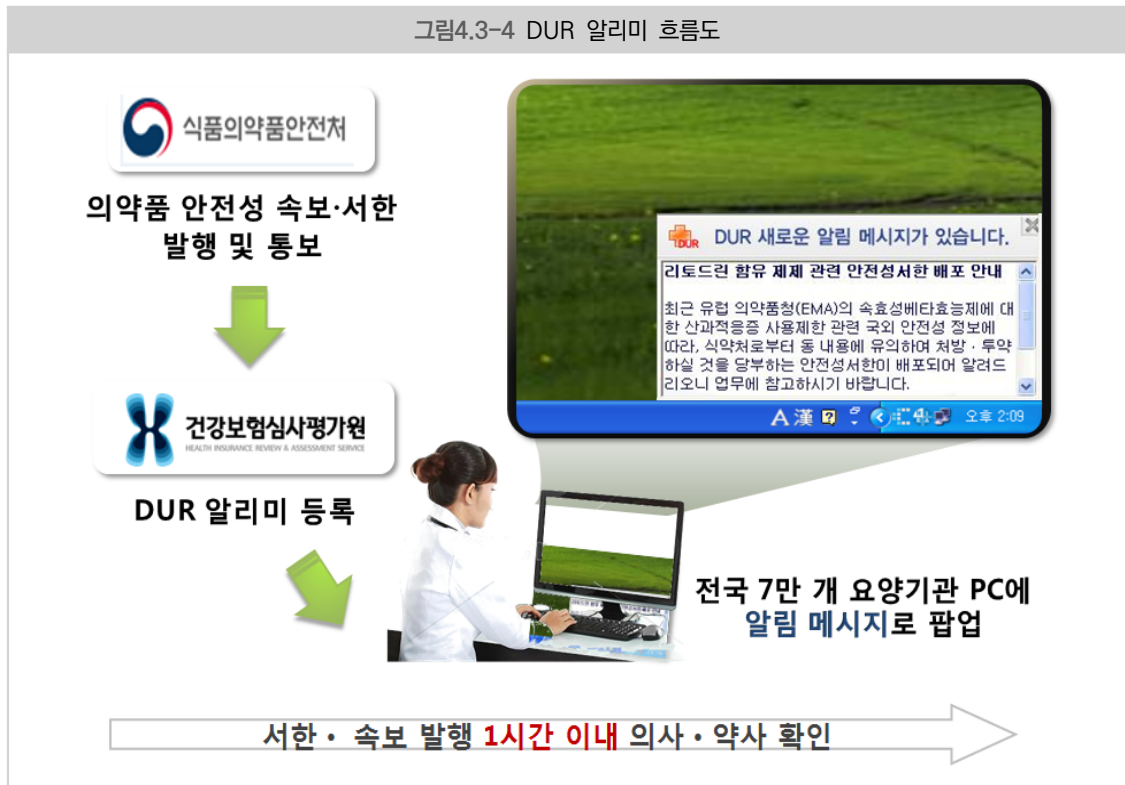
또한,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인가자의 경우도 접근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시 원격지원 및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

## 6 DUR을 활용한 부가서비스 운영

DUR은 의약품 안전 정보 및 요양기관과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국민과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DUR 알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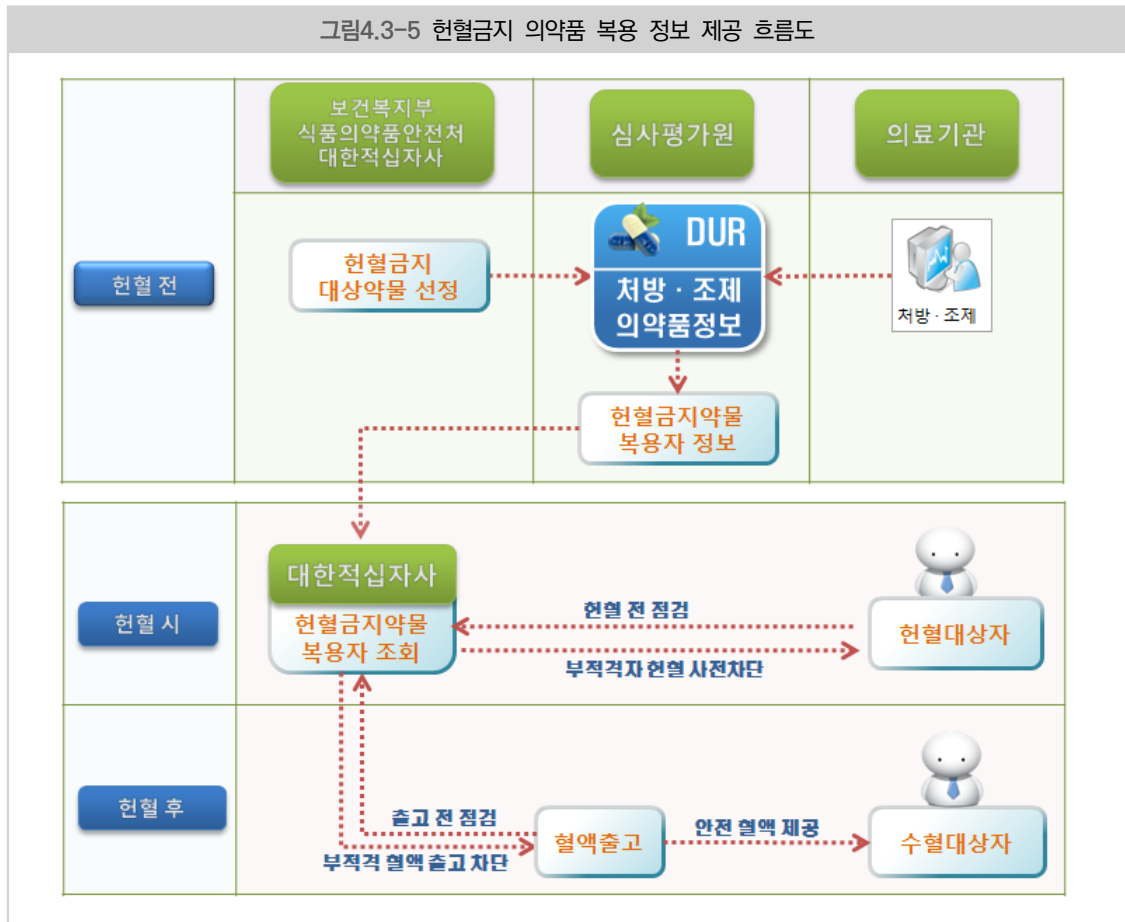
- DUR 시스템에 탑재된 전국 요양기관 대상 공지사항 안내 프로그램
  - 심사평가원에서 안내사항 입력 시 전국 의·약사 PC화면에 공지화면 발생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속보, 서한 발행 시 즉시 안내



나.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 서비스

- DUR을 통해 실시간 확보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토대로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를 추출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매일 제공
  -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자의 헌혈 사전 차단 및 혈액 출고 전 조회를 통한 부적절 혈액 유통방지로 수혈자의 안전성 대폭 강화
  - \* 수혈을 통해 태아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선치료제, 여드름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 8개 성분 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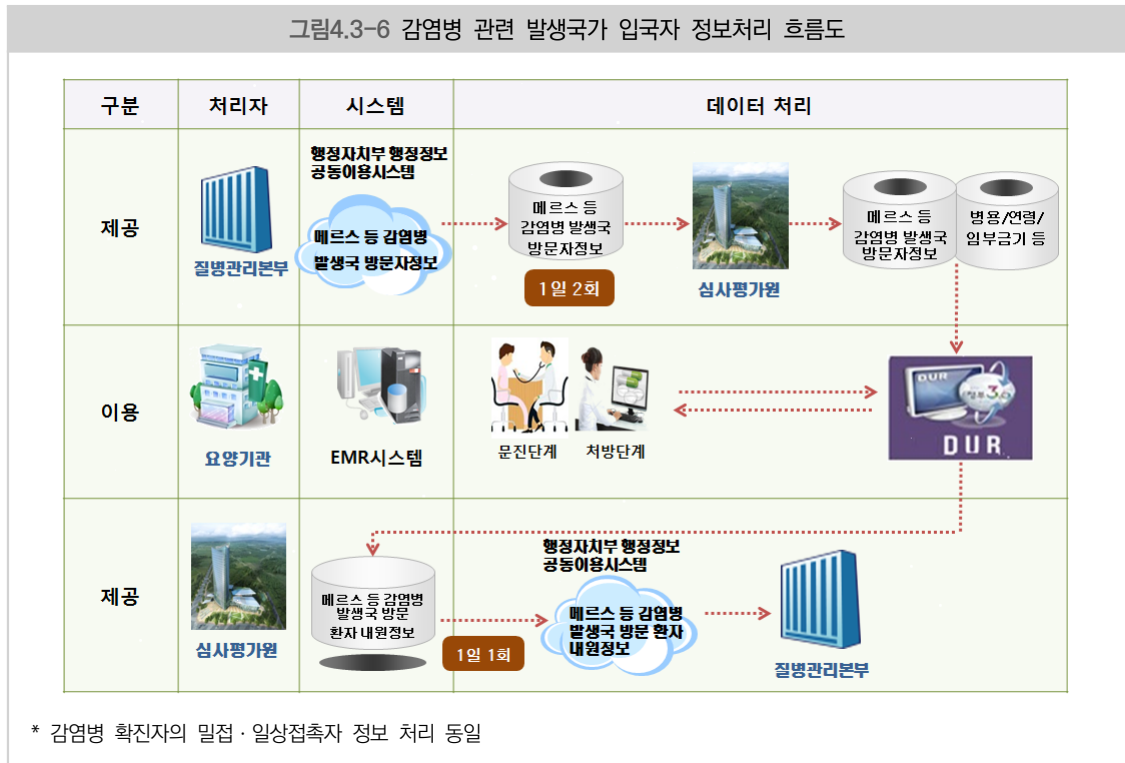
그림4.3-5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 흐름도



### 다.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 질병관리본부와 시스템 자동 연계를 통해 감염병 관련 발생국 입국자\* 및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밀접·일상접촉자가 요양기관 방문·진료·조제 시 해당정보 제공(팝업창)
    - 환자 진료(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조제 시 즉시 확인·조치로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 활용
- \* 메르스(중동), 에볼라(콩고북부지역), 라싸열(나이지리아), 페스트(마다가스카르) 등

그림4.3-6 감염병 관련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처리 흐름도



### 라. 개인 투약이력 조회(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 DUR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활용하여 최근 1년간의 개인 투약이력 제공
  - 개인 건강관리 및 요양기관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 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코드, 약품명, 성분명, 함량, 1회 투약량, 1일 투약일수, 투약일수 등 9개 항목
    - (요양기관) 조제기관 제외 8개 항목(본인 확인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제공)

그림4.3-7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국민 이용방법

홈페이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국민안전정보 제3호 및 국민안전정보 제4호(의료급여법 제41조)에 따라 고위·중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 목적에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주민등록번호
  - 선택: 병원 정보(내과/외과/응급, 환약 등 복용정보, 휴대전화번호)
  - 서비스 이용 중 생성정보: 의사 및 약사가 본인정보 조회시 생성(의약품)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및 약사 정보 제공 등의 위하여 필요하게끔 정보 공유합니다. 약국 정보(제3자에게)의 수집 목적, 활용 목적(제3자에게) 등 목적 정보가 변경·보유되며, 제3자 정보(제3자에게)는 동종목 및 약제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병행 개인인증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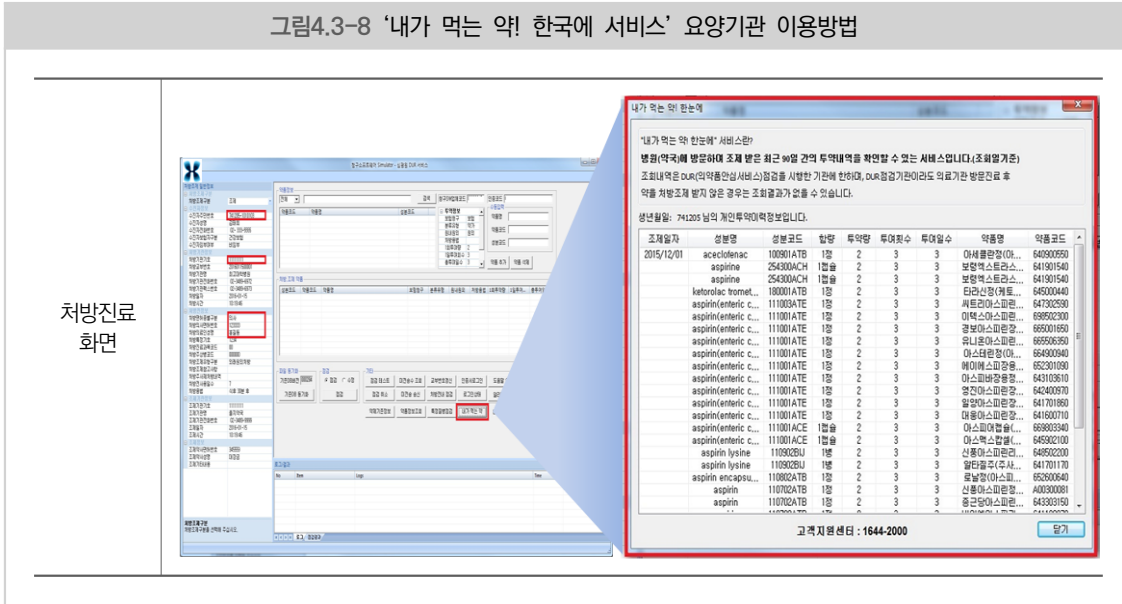
모바일 앱

**병원(약국)에 방문하여 조제 받은 최근 90일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일 기준)**

- 투약이력조회 >
- 알러지·부작용 조회 및 작성 >
- 한약 등 조회 및 작성 >
- 열람이력조회 >

이전    다음    메인    문의    공유

그림.4.3-8 '내가 먹는 약! 한국에 서비스' 요양기관 이용방법



마. 인체조직 이식·분배 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 서비스

- DUR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활용하여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이식·분배 금지 의약품 복용 정보 실시간 제공
  -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백신, 성장호르몬 등 비급여 의약품 투약이력 실시간 조회로 불필요한 인체조직 채취 예방 및 안전한 인체조직 관리 환경 제공

**AS-IS**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이후 인체조직 적합성 판정 확인으로 적절한 이식·분배 지연
- 조직기증자의 백신, 성장호르몬 등 비급여 의약품 및 이식 금지 의약품 투약이력 파악 불가

**TO-BE**

-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이식·분배 금지 투약이력 실시간 제공
- 불필요한 조직 채취 예방 및 안전한 인체조직 관리 환경 지원





# 제4장

## ICT 서비스 운영

- I. 정보시스템 소개
- II. 심사시스템 운영
- III. 포털시스템 운영
- IV. 업무시스템 운영
- V.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 VI.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VII. 정보자원 운영
- VIII. 정보보호 운영



# 제4장

## ICT 서비스 운영

### I

### 정보시스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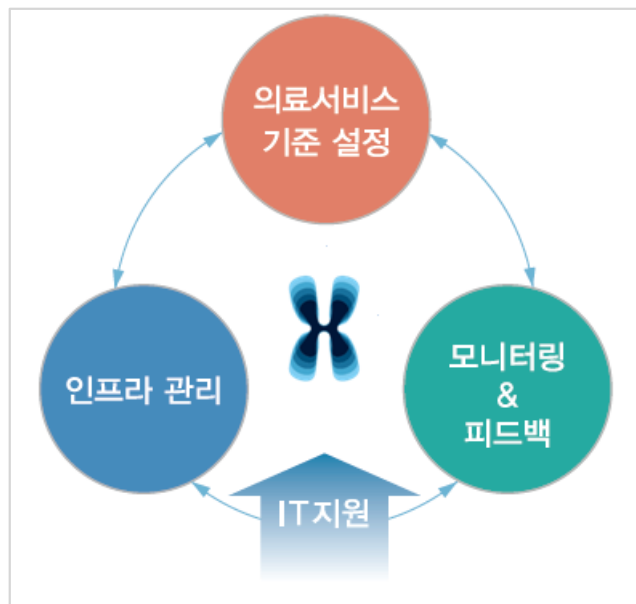
작성자 : 정보관리부 주 - 최동진  
부 - 윤정원

#### 1

#### 개요

#### 가. 정보시스템(HIRA시스템)의 개념과 기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은 ‘HIRA시스템’이라고 통칭 하기도 하며, HIRA시스템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가치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실현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HIRA시스템은 급여기준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기준 설정’, 진료비용을 청구·심사·평가하는 ‘모니터링&피드백’, 의료자원 및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관리하는 ‘인프라 관리’ 기능으로 구성 되어있다.



### 1) 의료서비스 기준 설정

세부기능	설명
급여기준 (행위, 약, 치료재료) 관리	행위별수가제도상의 상대가치점수 책정, 의약품가격결정, 치료재료 가격산정 및 code 관리, 질병군 포괄수가를 관리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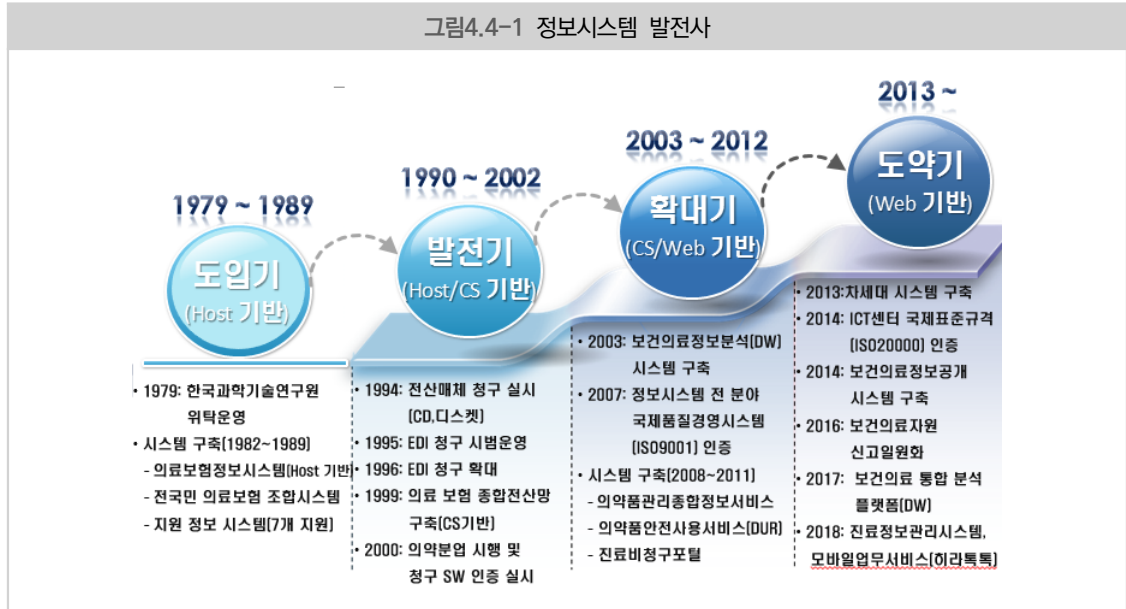
### 2) 모니터링&피드백

세부기능	설명
진료비 청구 운영	의료공급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진료비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송신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수신하는 시스템
진료비 심사 운영	의료공급자가 청구한 진료비 내역이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스템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의료의 질 평가 운영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진료·의약품서비스의 의·약학적,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의료의 질 향상, 의료선택권 보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의사 혹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부적절한약물사용을 사전 차단)
현지조사	진료비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확인·조사하는 시스템(사전예방 및 자율개선 유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3) 인프라 관리

세부기능	설명
의료자원관리	의료공급자의 인력현황, 시설현황, 의료장비 보유현황 등을 수집하여 심사·평가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를 통해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 수입,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의약품유통 투명화)
환자분류체계 개발	질병 및 시술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건강보험제도 운영교육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운영절차 및 성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건 의료 Big Data 분석	진료정보, 급여기준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신속·정확한 국가단위 통계 산출 및 보건 의료정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ata Warehouse + Data Mining 등)

## 나. 정보시스템의 발전 과정



### 1) 도입기

1979년은 HIRA시스템의 원년이 되는 시기로 최초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선보인 해이다. 최초의 정보시스템은 당시의 열악한 시대상황에 따라 IT전문 인력과 기술이 미흡하였으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당시의 시스템은 기본적인 보험료 징수, 관리, 심사, 지급 등의 업무를 포함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증가하는 진료비심사청구건 처리와 의료기관 자원관리(인력, 시설, 장비), 진료행위, 약가분석 등 상세한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기반이 마련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산매체청구(디스켓, MT: Magnetic Tape)를 유도하여 수작업업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서류송부, 보관, 관리인력 등 관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료비심사업무를 단계별로 전산화하였다.

### 2) 발전기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발전된 IT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을 실시하였다. 1995년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99년 전체 의료기관의 약 50%인 2만여개 소가 EDI를 이용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의 EDI추진은 병원의 정보화 및 진료 분야에서 IT활용도 확산의 동력

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의료보험EDI는 연간 3억건이 넘는 진료비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통계생산’, ‘국민의료비 절감 및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비 청구와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기여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전자청구시대를 실현하였고 컴퓨터로 수가·약가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전산화면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의료기관과 직접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진료비청구 접수부터 이의신청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14억 건의 진료비 명세서 중 99.9%가 EDI와 포털을 통해 자료가 송수신되었다.

### 3) 확대기

2003년, 증가하는 심사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산심사<sup>65</sup>를 도입하여 심사인력을 대체하고 심사인력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여 심사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국민진료 정보를 집약하고, 맞춤형정보의 실시간 생산으로 근거기반 보건 의료정책수립이 가능한 정보분석시스템인 DW(Data Warehouse) 시스템 및 DM(Data Mining)을 구축하였다.

2003년 7월에는 국민포털과 업무포털을 포함한 내·외부 의료정보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여 심사평가원 최초의 포털시스템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에게 양방향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5년, ISO9001 인증과 2006년 ‘진료비전자심사방법’의 국내·외 특허등록으로 보유기술의 자산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아이치현 치과의사회에 ‘EDI 전자청구심사시스템’ 컨설팅을 수행하여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08년부터 국가 의약품통계 인프라와 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위해 KPIS(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PIS를 통해 제조·수입·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모든 의약품에 국제표준에 따른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부여하여 의약품 불공정거래를 사전차단하고 있다.

2010년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병용금지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 전이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 전에, 기존에 복용중인 약과 성분이 동일한 약 또는 같이 먹으면 안되는 병용금지약 등을 미리

65 인공지능 전산심사 : 진료내역이 단순하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병을 중심으로 청구내역의 심사기준 적합성여부를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진료비 심사를 처리하는 시스템

점검하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문제의약품 처방감소) 및 약제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 4) 도약기

2013년에는 급변하는 환경을 수용하고 심사·평가업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평가시스템(HIRA+)’을 구축하여 오픈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CS<sup>66</sup> 방식의 시스템을 WEB 기반으로 전환하였으며, 본·지원의 DB와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였다.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화면, 데이터, 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2017년에 이르러 수년 간 누적된 데이터와 다양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 기존 DW시스템의 성능에 한계를 느끼고 보건 의료 통합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을 통해 환자단위별 진료DB를 구축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의료쇼핑 등 진료비 특이패턴 판별, 요양기관 환자 진료 패턴 분석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2018년에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인 ‘건강정보’ 앱을 업그레이드하고 내부 직원용 ‘히라톡톡’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비급여정보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하였으며, 내부 ICT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여 2019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 2

### 정보기술아키텍처(EA)

#### 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개념과 근거

##### 1)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일반적 정의

EA의 활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이해해야 하는데 학계에서 말하는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비즈니스(Business)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66 CS(Client Server) 방식 : 서버에서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 단말기에서는 그래픽 등 사용자 환경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식. 서버와 사용자 단말기의 컴퓨팅 자원(CPU, 메모리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ICT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결합을 뜻하는 Enterprise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청사진 또는 설계도를 뜻하는 Architecture의 의미로 ‘기관(Enterprise)을 위한 업무와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설계도(Architecture)’로 정리할 수 있다.

## 2)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 3)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 제2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의”
  -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6조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 “정보전략운영지침”
  - 제30조 「아키텍처시스템 관리운영」

## 나.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배경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심사평가원에서도 정보화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증가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차원의 정보화 기준 미비, 조직의 전략과 정보기술 전략의 연계 미흡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 다.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활용

### 1) EA 사용자

사용자	설명
정보화계획 담당	정보화 계획 수립 담당자, 마스터플랜 및 장기정보화계획의 수립을 위해 EA정보를 활용
정보화사업 및 예산 사전심의 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타당성 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담당을 의미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EA정보를 활용
EA업무 담당	EA정보를 수립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고 EA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EA현행화 등의 업무를 추진
정보자원 담당	정보자산(하드웨어, 통신장비 등)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정보자산의 도입에서 폐기까지를 진행하는 업무 추진 시에 EA정보를 활용
사업수행 업체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의미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현황파악과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EA현행화를 추진

### 2) EA 활용 업무

업무 구분	EA 활용정보
정보화계획 수립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중복성 및 상호운영상 검토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자체사업수행관리	정보화사업, 계약정보,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정보시스템운영성과측정	성과지표
업무 인수인계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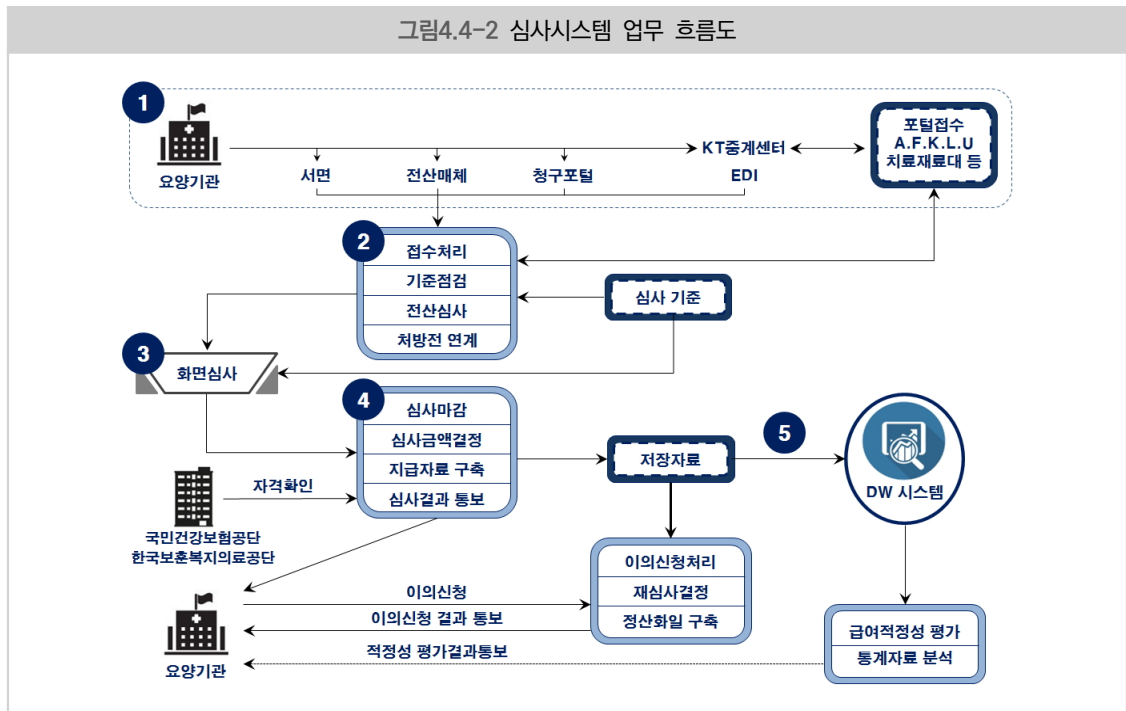
# Ⅱ 심사시스템 운영

작성자 : 심사정보부 주 - 신윤기  
부 - 김기근

## 1 개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각종 필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심사와 전문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요양기관과 진료비지급기관에 통보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정보시스템이다. 요양기관 또는 진료비 지급기관의 이의신청, 심사 재점검 등 정산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심사기준 마스터관리’, ‘신의료 기술 관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응급 의료비 대지급’ 등 여러 가지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심사시스템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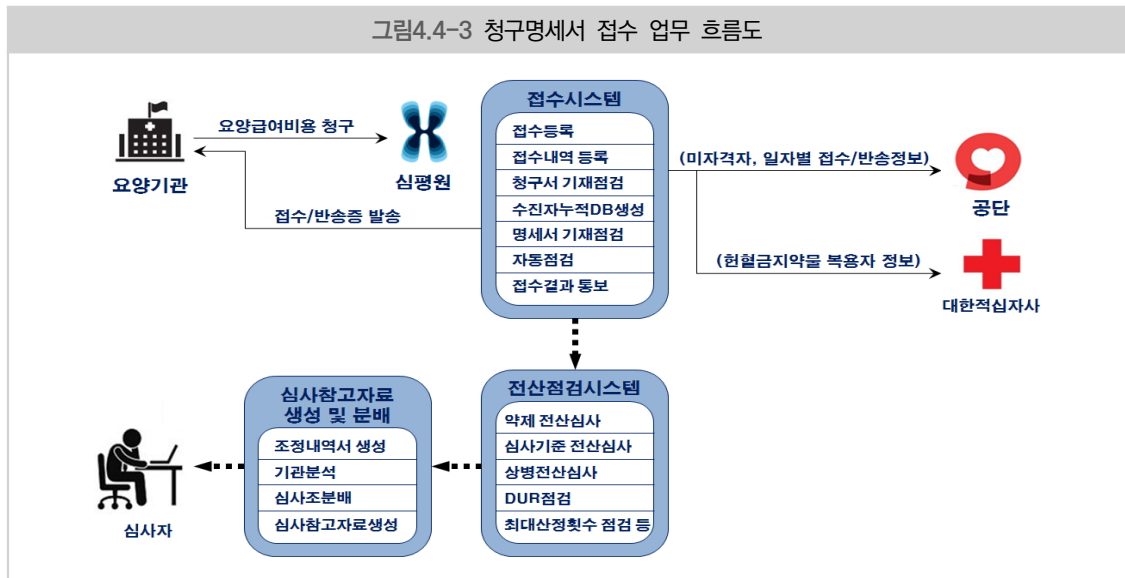


## 3

## 청구명세서 접수

## 가.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제2장 제6조 제1항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또는 처방전만을 발행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에 따라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대해 접수점검(결과통보), 전산심사, 심사 참고자료 생성, 심사부서 인계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을 ‘청구명세서 접수’라 한다.



##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요양기관은 서면 또는 전산매체, 정보통신망(EDI, 진료비청구포털 등)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1) 서면 청구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인쇄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오면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사항을 입력하여 접수처리 한 다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별지 제3호 서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접수증’(이하 접수증)을 발급하여 직접 인계(인편)하거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 2) 전산매체 청구

진료비 청구명세서 파일을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에 수록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오면, 접수 담당자는 PC에서 전산매체를 읽어서 심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배치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다음, 각종 점검을 수행한다. 점검이 종료되면 접수증을 발급하여 직접 인계(인편)하거나 우편으로 통보하고 청구명세서 데이터는 심사부서에 인계한다.

## 3) EDI 청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정보교환이 필요한 기관 상호간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고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KT-EDI 중계센터를 통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파일을 수신하거나 접수증,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EDI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생성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변환 과정 및 복호화 과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청구업무가 가능해졌으나, 중계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다.(※ 서비스 개시: 1996. 10.)

## 4)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EDI 청구 방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요양기관 PC에서 청구파일을 점검하고 데이터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청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문서 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였고,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해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전자문서를 직접 주고받음으로써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서비스 개시 : 2011.6.29.)

## 다. 접수(전산점검) 처리 단계

청구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착오여부, 진료내역 항목별 단가·코드 착오, 산정기준 적용착오 등 전산점검을 수행한 후 접수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약제·심사기준·상병·DUR 및 수가코드별 최대산정횟수·지식기반 전산심사를 수행한다.

### 1) 접수등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청구서,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특정내역, 처방내역을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시스템에 등록한다.

- 화면심사, 심사금액결정 등에 필요한 각종 명세서 부가항목 데이터 생성

### 2) 청구서 기재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대상으로 명세서를 참고하여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착오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반송 처리한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청구서 단위의 필수 기재사항 등	반송	청구서 반송

### 3) 수진자 누적 DB생성

청구명세서 중복 점검, 동일한 수진자의 이전 진료정보를 참고한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명세서 누적정보를 생성한다.

### 4) 명세서 기재점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착오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명세서는 심사불능 및 메시지를 생성한다.

- 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 총 건수가 11건 이상이고, 심사불능이 30%이상 발생 시 청구서 전체 반송처리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명세서 단위의 필수 기재사항 등	명세서 심사불능	명세서 심사불능

### 5) 자동점검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을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마스터파일과 연계하여 코드착오, 급여여부, 단가산정착오, 치료재료대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청구금액 계산착오, 약제상한차액 산정착오 등을 점검하여 심사조정하거나 메시지를 생성한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수가, 약가, 치료재료대 등	코드, 단가, 급여, 구입증빙자료 제출여부, 계산착오 등 점검	해당 명세서 조정

### 6) 접수결과 통보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자동점검 수행 후 접수증을 생성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SMS 부가서비스 신청기관에는 접수증이 발송되었음을 안내한다.

### 7) 약제 허가사항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의 범위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심사방법으로, 범위초과 시 진료 내역을 조정하거나 심사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생성한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요양급여 의약품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위 초과 시 조정</li> <li>심사자 확인 필요시 메시지 처리</li> </ul>

### 8) 심사기준 전산심사

고시, 심사기준 등 정형화가 가능한 심사기준을 프로그램화하여 전산으로 점검하는 심사방법으로, 조정 또는 심사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생성한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분야별로 점검</li> <li>정형화가 가능한 고시 및 심사기준</li> </ul>	심사기준 관련 항목 (진찰료 야간가산, 치료재료 봉합사, 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 초과 시 조정</li> <li>심사자 확인 필요시 메시지 처리</li> </ul>

### 9) 상병 전산심사

청구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진료비청구 내역과 심사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등과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심사방법으로 점검 결과 부적합 시 조정하거나 심사참고용 메시지를 생성한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급성호흡기감염, 고혈압 및 당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시 및 행정해석 등 정형화가 가능한 심사기준</li> <li>식약처 허가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정 후 전산심사마감</li> <li>조정 및 전문심사 전환</li> </ul>

### 10)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

의약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제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을 점검한다.

### 11) 수가코드별 최대 산정 횟수 점검

수가 코드별 산정 가능 최대 일투 및 총투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한 경우 초과분을 조정한다.

### 12) 지식기반 전산심사

심사결정 데이터 및 요양기관이 청구 시 기재한 텍스트를 포함한 청구자료 등 축적된 정형·비정형 심사정보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특성에 맞는 전산 점검을 수행한다.

## 라. 심사 참고자료 생성 및 분배

전산심사를 마친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들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추출하고 각 접수건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를 생성한다. 또한 각종 내부 업무기준에 따라 청구·명세서를 담당 부서로 분배한다.

#### 1) 조정내역서 생성

각 전산점검 단계에서 발생한 명세서, 진료내역, 처방내역 조정 등에 대한 발생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하기 위한 조정내역서 생성

#### 2) 기관분석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접수지표 생성, 정기분류·수시분류 기준에 따른 명세서의 심사방법(전문·일반심사) 분류, 각종 심사참고자료 등을 생성

#### 3) 심사조 분배

접수점검 및 전산심사가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심사부서별 분배 기준에 따라 각 심사부·조로 분배한다.

#### 4) 심사참고자료 생성

심사대상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접수번호별 심사록 정보, 착오청구 사전점검 데이터 등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

## 바. 대외 자료 연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부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일자별 접수 및 반송 정보	매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경우에 사용
건강보험 미자격자 접수 정보	매일	건강보험 미자격자 명세서 정보 및 급여제한자 명세서 정보 전송

####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	매일	부적절한 혈액의 유통을 막기 위해 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수진자의 정보를 전송

### 2) 외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수급자격정보	매일	수급자 자격 및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정보 수신
산정특례 등 자격정보	매일	암환자, 노인틀니, 임플란트 자격정보 및 , 틀니유지관리, 치석제거관리 등 이력관리가 필요한 정보 수신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수급자격정보	매일	수급자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수신

#### ○ 질병관리본부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결핵환자 자격정보	매일	결핵환자 유무 확인을 위한 정보 수신

#### ○ 행정안전부

파일 내역	전송 주기	비고
수진자 주민등록정보	매일	수진자 거주지 및 사망 정보 수신



## 사.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실제 청구 전 수시로 청구파일을 전송하여 오류사항 점검이 끝나면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점검결과 파일 수신을 통해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청구파일을 보완한 다음 실제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접수점검의 필수 항목을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항목 확대를 통해 청구오류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 4

## 화면심사 시스템

전산점검이 완료된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자가 각종 심사참고 자료의 조회, 심사조정 및 심사완료 처리 후 심사마감, 전산마감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다.

### 가. 분배

본·지원 심사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심사대상 명세서를 심사조별, 심사직원에게 분배하며, 심사조와 직원은 별도 화면에서 등록·관리 한다.

### 나. 심사 전 조회

심사자에게 분배된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경향 및 전산점검내역 등을 조회한다.

### 다. 심사처리

심사대상 명세서를 전산점검(AI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시스템 화면을 통해 심사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고 마감 처리한다.

### 라. 전산마감

심사 완료된 명세서를 심사결정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이관하고, 전산부서 인계내역 생성, 심사보류건 가청구서 등록, 조정내역 집계 생성,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연계점검조정, 차등지수 산출 등 작업을 실시하여 심사금액결정 프로세스에 연계한다.

진료비결정 시스템은 심사 마감 처리된 청구명세서의 심사결과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로써,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환급금과 요양기관 지급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심사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심사처리계획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위한 심사결과 전산파일을 진료비지급기관 별로 생성한 후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하며, 요양기관에는 서면, EDI,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웹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가. 심사금액결정

각 지원 진료비결정 담당자는 전산마감 이후 전산마감 차수 단위로 심사금액결정을 수행하며, 업무처리 과정과 기준을 관리하는 「심사결정 분류체계」에 따라 117종의 심사불능 점검과 63종의 심사금액, 13종의 심사항목을 최종 결정한다.

#### 1) 심사결정 업무처리 절차

처리 절차		처리 내용
1	정보 수집	금액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2	조정내역 반영	금액결정을 위해 심사조정내역 반영
3	본인부담률 결정	본인부담분류코드 별 본인부담률 설정
4	본인부담금 결정	정액, 정률, 산정특례 등 유형별 본인부담금 계산
5	보험자부담금 결정	청구액에 대한 보험자 부담액 계산
6	환급금 결정	비환급 조정 등에 따른 환급 및 추가부담금 계산
7	보훈 심사결정	보훈 및 2중 자격 명세서의 금액결정
8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본인부담상한액 및 차액 계산
9	지원금 결정	지원금 유형 별 지원금 계산
10	실지금액 결정	최종 요양기관 지급액 결정

## 2) 심사결정분류체계 구성내역

- 본인부담 마스터 DB 3종(정액, 정률, 산정특례)
- 본인부담분류코드

심사결정 분류코드			심사결정 분류코드		
1	YN001	일반진료금액	21	YX021	치료재료대
2	YY002	특수장비금액	22	YX026	치과장애인가산진찰료
3	YY003	특수재료금액	23	YX027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4	YY004	식대기본금액	24	YX028	외래정신치료
5	YY005	식대가산금액	25	YN022	장기지속형주사제
6	YY006	초진진찰금액	26	YN023	어린이공공센터 입원관리료(5%)
7	YY007	재진진찰금액	27	YN024	어린이공공센터 입원관리료(0%)
8	YY008	선택진료금액	28	YN025	가정형 호스피스 교통비
9	YY009	가산진찰료금액	29	YN029	상급병실료(2인실)
10	YY010	치과장애인가산금액	30	YN030	상급병실료(3인실)
11	YY011	원내외래약제비	31	SY001	선별A항금액
12	YY012	상급종합병원4인실금액	32	SY002	선별B항금액
13	YY013	약제상한차액	33	SY003	선별D항금액
14	YY014	신포괄금액	34	SY004	선별E항금액
15	YY015	신포괄초과금액	35	SY005	선별A60항금액
16	YY016	신포괄인센티브금액	34	JY001	100분의100 총액
17	YY017	장기입원료(16일~30일)	35	JY002	보훈100분의100 총액
16	YY016	신포괄인센티브금액	36	JY003	비급여금액
19	YY019	격리실입원료	37	JY002	보훈100분의100 총액
20	YX020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38	JY003	비급여금액

## 나. 심사결과 통보

### 1) 진료비지급기관

심사처리 계획에 따라 심사금액 결정이 완료된 청구명세서에 대해 심사차수를 부여하며, 진료비 지급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청명(청구명세서)파일, 우선지급 파일 등을 심사차수 단위로 생성하여 해당기관에 전송한다.

가) 건강보험공단 인계

파일 내용	주기	비 고
심사불능 대상 파일	일	
청명파일	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기관 우선지급 통보 및 반송내역	일	15일 내 미처리 건
본인부담상한제 선지급 통보 및 반송내역	일	
희귀난치성지원금 통보 및 반송내역	일	
특별재난 선통보 및 반송내역	일	
격리관리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통보내역	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통보내역	일	
처방전교부 내역	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원외처방약제비조정 내역	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탁검사 내역	일	
투여기간 관리의약품 투여내역	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일	
전산매체(청구서, 명세서, 진료내역 등)	일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계

파일 내용	주기	비 고
청명파일	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산매체(청구서,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내역, 처방전교부내역상세, 심사조정항별합계)	일	

2) 요양기관 및 보장기관

진료비지급기관에 전산파일 전송 후 요양기관 및 보장기관(의료급여)에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생성하여 청구매체에 따라 서면, 웹메일, EDI,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는 공단자격점검 이후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 심사결과통보서 종류

구분	서식	EDI	웹메일 요양기관/보장기관	서면 요양기관/보장기관
건강보험 /보훈	심사결과통보서	○	○/=	○/=
	심사결과통보서_수탁검사	=	≠/=	○/=
	원외처방 심사결과통보서	○	○/=	○/=
	심사내역통보서	○	○/=	○/=
	중봉투	=	≠/=	○/=
	중봉투(원외처방)	=	≠/=	○/=
의료급여	심사결과통보서	○	○/○	○/○
	원외처방 심사결과통보서	○	○/○	○/○
	심사내역통보서	○	○/=	○/=
	대봉투	=	≠/=	○/○
	중봉투	=	≠/=	○/○
	중봉투(원외처방)	=	≠/=	○/○

## 다. 통계 및 이력(DB) 구축

심사금액결정 처리 현황 등 통계 정보와 수진자 누적데이터, 평생 누적데이터 등과 같이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이력 정보를 구축한다.

## 6

## 사후관리 시스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이나 또는 요양기관의 청구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연계 점검 과정에 누락된 명세서에 대하여 재점검 및 현지 확인 심사와 이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이다.

## 가.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기능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한 문서 출력기능, 업무 담당자의 정산처리와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된 업무시스템이다.

## 나. 심사재점검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주제별, 항목별 정산 또는 확인 대상 건을 추출하여 재심사(색인, 정산, 통보) 처리하는 업무로써, 청구 시점 차로 인하여 연계점검이 안된 명세서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 ● 심사재점검 유형

코드	업무명	추출영역	비고
0100	원외처방조정 사후연계	DW	3년 자료
0200	원외처방조정 보류건 사후연계	DW	
0300	원외처방조정 추가연계	DW	10년 자료
0500	처방전 중복	DW	
0600	의과 재점검	심사시스템	
0700	처방조제 점검	DW	
1000	동일성분 중복처방	DW	
1100	항목별 재점검	DW	
1200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DW	
1300	차등지수 관리	심사시스템	
1400	의과·한의과 협진중복	DW	
1500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점검	DW	
1600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점검	DW	
1700	자보·건보 중복점검	DW	
A000	사용자 선택 재점검	심사시스템	
A020	감사 지적사항 사후점검	심사시스템	

## 다.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요양기관에서 웹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 심판청구 명세서를 접수하고 해당 내역을 색인, 정산, 통보 등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의 일부이다.

- 1) 심판청구(건강보험), 행정심판(의료급여)으로 구분되나 프로세스는 동일
- 2) 모든 심판청구 사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재결되기 때문에 사건 접수정보 및 답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보건복지부로 전송
- 3) 복지부에서 사건에 대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리·의결 완료정보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심사평가원으로 전송

## 라. 공공기관 의뢰 건 심사

공공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의 쟁송, 사건수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요양기관 진료내용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 진료(청구) 내역조회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접수처리를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처리, 통계관리 등 처리 업무시스템이다.

## 마. 구입약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요양기관의 청구단가와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하여 실구입가와 차액이 발생한 약제에 대하여 재심사 및 정산처리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이다.

- 1) 가중치 자료 생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급내역 신고자료 근거
- 2) 불일치 명세서 추출: 심사시스템에서 가중치 자료와 청구내역과 비교
- 3) 정산 처리: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 최종 확인 작업을 거쳐 정산

## 바.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치료재료 구입내역에 대하여 치료재료의 비용청구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실제 구입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건에 대하여 환수처리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이다.

## 사. 정산결과 통보

### 1) 요양기관

구분	서식	EDI	웹메일 요양기관/보장기관	서면 요양기관/보장기관
건강보험/ 보훈	정산심사내역서	○	○/-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	○/-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	○/-	○/-
	이의신청결정서	○	○/-	-/-
	중봉투(정산, 원외, 원외추가)	-	-/-	○/-
의료급여	정산심사내역서	○	○/○	○/○
	정산심사내역서(무료진료)	-	-/-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	○/○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	○/○	○/○
	이의신청결정서	○	○/-	-/-
	중봉투(정산, 무료, 원외, 원외추가)	-	-/-	○/○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 : 전산 파일로 전송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할 때 진료내역과 처방내역 등의 적합성 점검 업무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가, 약제 및 치료재료 심사마스터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심사수행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심사지식뱅크 시스템과 신의료기술(행위)의 요양급여등재 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있다.

## 가. 마스터 관리

### 1) 수가 관리

수가 고시를 통해 의료행위(코드)가 신설, 변경, 삭제된 경우 심사와 요양기관의 청구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코드를 반영 및 관리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이다. 수가에 대한 대량의 변경 작업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수가의 코드, 명칭, 금액, 수술여부, 초·재진여부,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와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외부 공개용 파일 생성을 지원한다.

### 2) 약가 관리

고시에 의해 신설·변경 및 삭제되는 약제 품목의 목록을 정비하고 약제의 평가, 약가 조정, 퇴장의약품 방지 등의 업무를 단계별로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한다. 또한 고시자료, 약제 처리 이력, 식약처 정보 연계를 통한 허가/신고사항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원 신청부터 결정고시까지 전산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3) 치료재료 관리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보상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이다. 치료재료 이미지, 품목군 정보, 업체 정보, 치료재료 결정(조정) 및 요양기관 구입내역을 접수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나. 신의료기술 관리 시스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를 서면·요양기관포털을 통해 행위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 및 변경사유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다.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스템

의료행위 가치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3가지 요소에 대한 기준정보와 근거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다.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방대한 근거자료를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전산화하여 점수 산출 시 오류발생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변동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개편이 있을 때마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라. 심사지식뱅크

심사에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시스템을 통해 청구명세서 심사수행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자료와 질병정보, 심사기준정보, 심사사례, 행위·약제·치료재료와 경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생성·구축·관리하여 심사에 관한 모든 지식정보의 경로를 단일화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 마. 요양급여 적용 자료관리 시스템

조건부 선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및 솔리리스 사전심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접수 및 추적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 가. 의료급여 적정관리 시스템

의료급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업무로써, 심사시스템을 통해서 심사결정 완료된 의료급여 명세서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의료급여 현황, 의약품 급여내역과 입원 내역 등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에 대한 의료이용 현황을 생성하여 수급권자 해당 보장기관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 나. 청구명세서 대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존기간 만료에 따라 삭제된 명세서 정보를 심사시스템에 다시 적재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사용자가 대출시스템에 필요한 명세서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신청정보에 따라 미리 생성되어 있는 백업자료에서 해당 명세서 정보를 찾아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다. 단, 심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3년 보존)하는 명세서는 신청할 수 없다.

### 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시스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신청하면,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지급 청구내역을 관리하고 상환의무자 정보 확인을 위한 대외기관 연계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 가능하며, 응급의료비 대지급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상환고지서 발행, 가상 상환계좌 관리, 결손관리, 소송압류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 라.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관리 시스템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지불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액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신청을 하면, 접수관리, 담당자 배정, 처리 관리(자료요청 등), 정산심사, 결과 회신, 환불관리, 이의신청, 심판청구(행정심판) 처리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이다.

## Ⅲ

## 포털시스템 운영

작성자 : 정보화지원부 주 - 김병기  
부 - 송규섭

## 1

##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 가. 개요

## 1) 정의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인터넷 망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새로운 방식의 청구방법

## 2)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2항 및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3조 및 제7조(보건복지부 고시)

## 3) 배경 및 목적

- 건강보험 진료비청구 EDI서비스 운용성 보장을 위한 협정만료('11.6.28.)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새로운 청구방식의 도입으로 전자청구 연속성 확보가 시급
- 대·내외적(국회, 요양기관 등) 청구비용 무료화 요구 증가(EDI서비스 유료)
- 요양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
  - 청구 전 오류점검 등을 통한 심사반송 감소로 재청구 업무 등 행정비용 절감
  -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무료화에 따른 EDI사용료 절감(2010년 기준 184억)으로 경제적 비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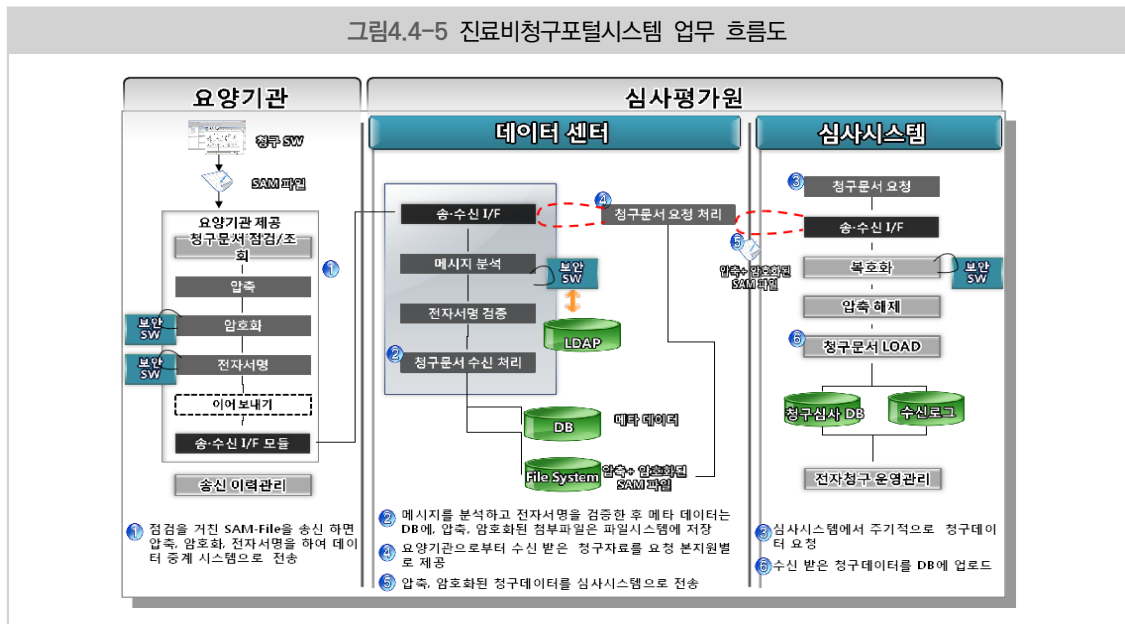
나. 현황

1) 연혁

- 2009.1.~12.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 2010.7.~2011.6.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
  - 2010년 정보화사업으로 진행
  - 사업기간: 2010.7.21.~2011.11.21.(16개월)
- 2011.6.29.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시



다.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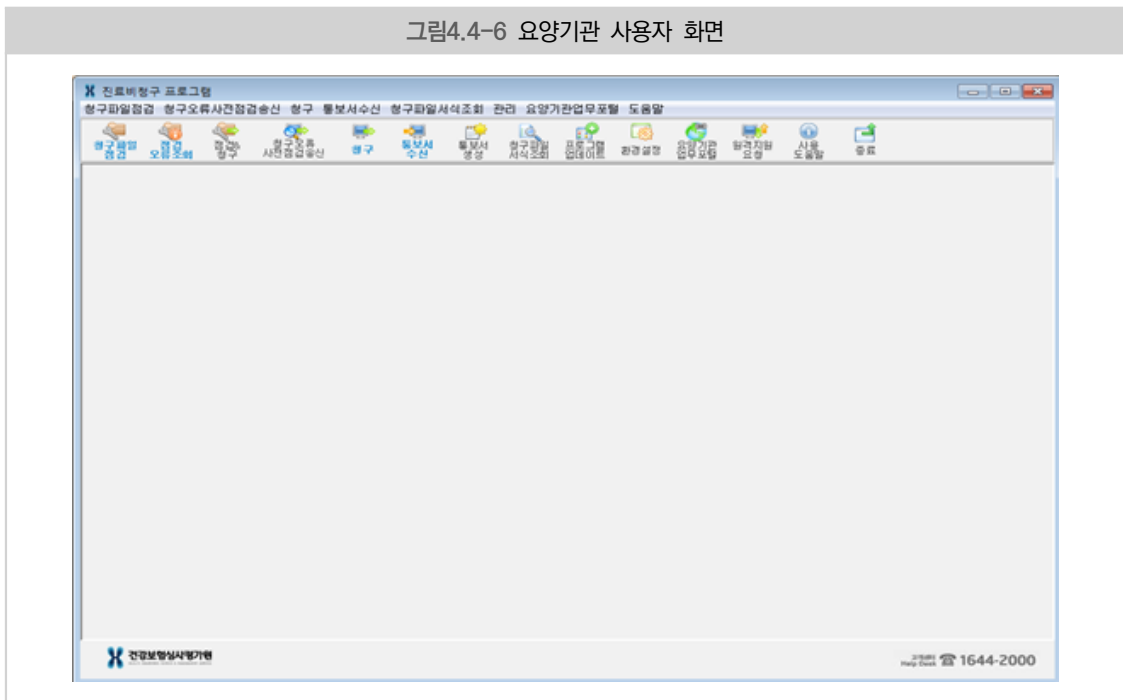


## 라. 기능과 역할

### 1)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파일을 송신하거나 각종 통보파일을 수신 받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양기관 청구담당자의 PC에 설치되어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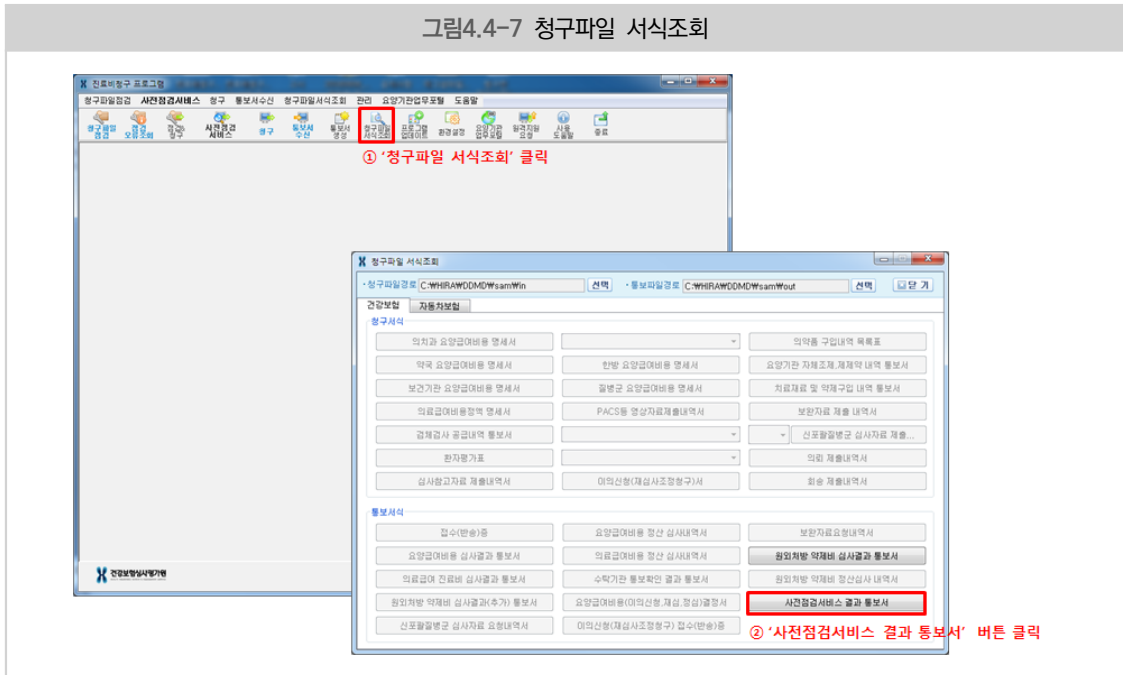
그림4.4-6 요양기관 사용자 화면



#### ● 주요기능

- 청구파일 점검(청구 전 오류 점검)
  - 청구 전 청구파일의 오류 존재 여부를 요양기관 PC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 점검 DB를 요양기관에 맞춤 배포하여 기재점검 및 심사불능 점검
- 청구
  - 청구파일 점검이 성공적으로 끝난 청구파일을 심사평가원으로 송신
- 점검 및 청구(청구파일 점검 + 청구)
  - 청구파일 점검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청구까지 수행
- 통보서 수신(청구오류 사전점검내역 포함)
  -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 발송한 각종 통보서 조회 및 수신

그림4.4-7 청구파일 서식조회



- 부가기능

- 점검오류 조회, 청구오류사전점검 송신, 청구파일 서식조회, 미청구자료 조회, 환경설정, 프로그램 업데이트, 청구관련 파일 암호화 기능, 사용도움말 등

2) 데이터 센터

요양기관이 송신한 청구파일을 심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종 통보자료를 요양기관으로 송신하는 중계 시스템

○ 주요기능

- 데이터 중계
  - 요양기관의 청구파일 및 심사평가원의 각종 통보자료 송·수신
- 전자서명 검증
  - 요양기관 청구파일 송신 과정에서 위·변조 및 부인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의 전자서명을 검증
- 외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 요양기관업무포털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필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

- 부가 기능
  -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리, 송·수신 현황 관리, 청구소프트웨어 부가서비스 제공 등

### 3) 심사시스템 연계서버

데이터센터에서 청구파일을 수신 받아 심사시스템에 연계하고 심사시스템의 각종 통보자료를 생성하여 데이터센터로 송신하는 시스템

####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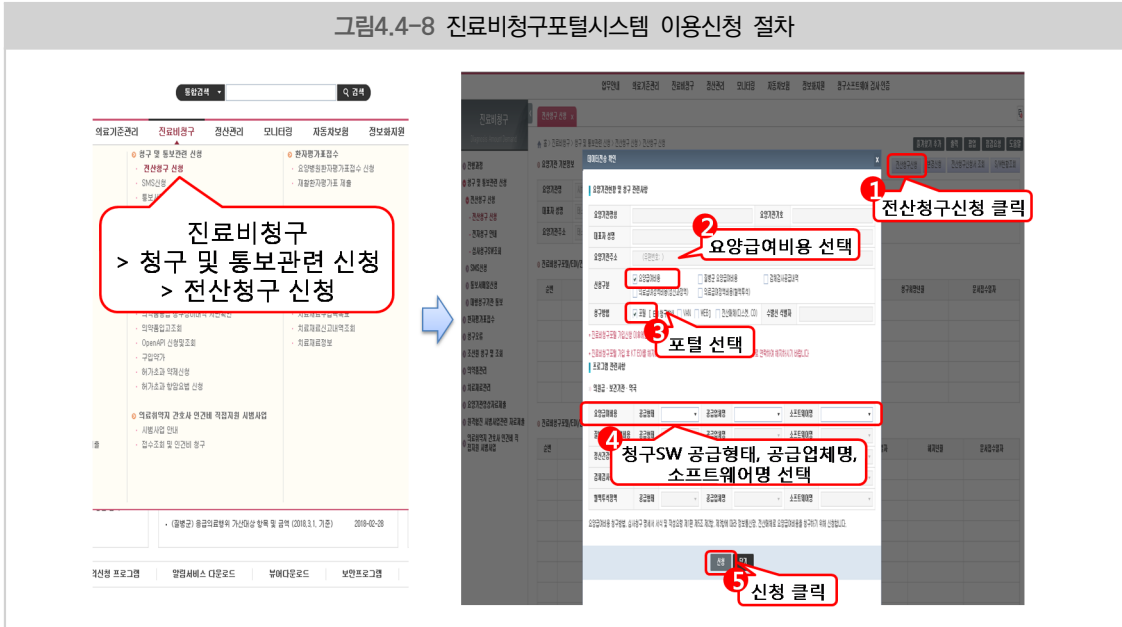
- 청구파일 수신
  -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요양기관의 청구파일을 수신하여 암호 해제
- 청구파일 심사시스템 연계
  - 수신 받은 청구파일을 심사시스템 DB에 저장(접수 대기상태)
- 통보서 파일 생성
  - 심사시스템 DB에 저장된 각종 통보자료를 통보서 파일로 생성 후 암호화
- 통보서 파일 송신
  - 통보서 파일로 생성된 통보용 자료를 데이터 센터로 송신
- 부가 기능
  - 청구오류사전점검 수신, 청구오류사전점검 결과 통보 등

## 마. 이용신청 및 설치방법

### 1) 이용신청 절차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화면 접속하여 다음 그림 순서대로 이용신청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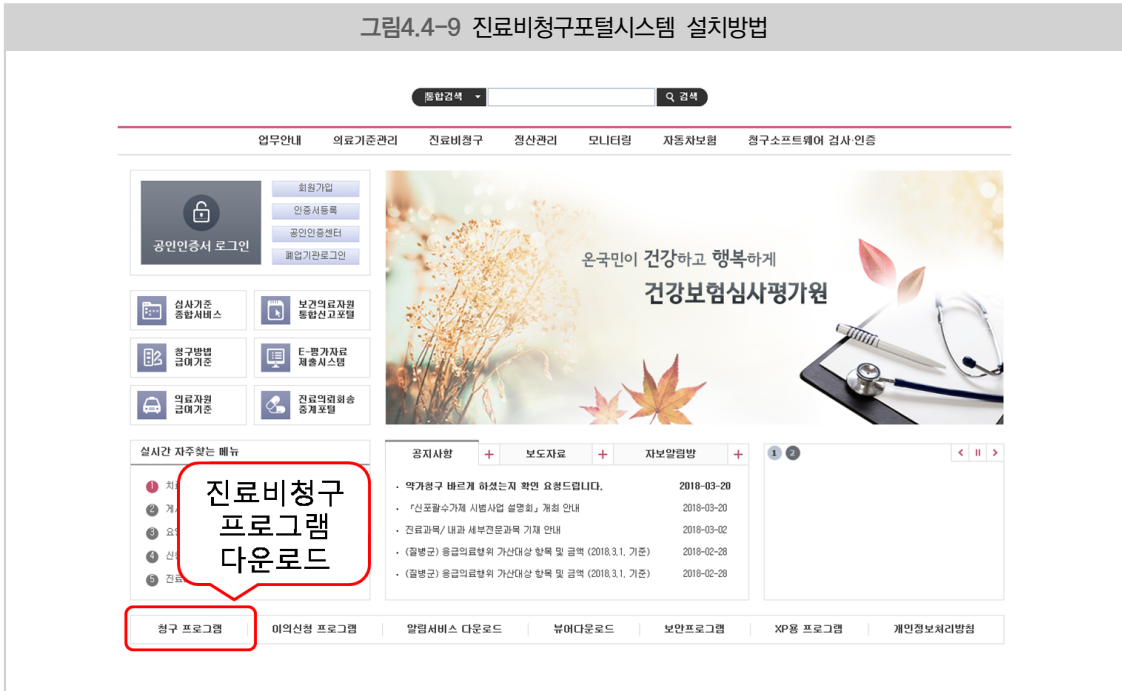
그림4.4-8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이용신청 절차



2) 설치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에서 진료비청구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요양기관 PC에 설치

그림4.4-9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설치방법





## 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장점

- 1)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직접 전송하므로 청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서비스
- 2) 청구 전 오류점검 기능으로 심사반송 건이 적어지므로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
- 3)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로 청구데이터에 대한 높은 보안성 보장
- 4)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전송함으로 EDI변환에 걸리는 시간 등 청구시간 단축
- 5) 심사영상자료 등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하므로 청구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2

##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가. 소개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은 요양기관의 업무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요양기관 대상 서비스 등을 통합 구축하여 2011년 5월부터 서비스 개시한 정보시스템이다.

2018년 3월부터는 보안상의 잠재적 위험 및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표준기술 제거하고 HTML5기반으로 재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나. 연혁

- 2003.5<sup>67</sup> 의료정보포털시스템 최초 오픈(현 요양기관업무포털과 국민포털의 전신)
- 2011.5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오픈(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국민포털과 분리·개편)
- 2013.7 자동차보험관련 서비스 개시
- 2016.1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재 관련 서비스 이관( → 요양기관 업무포털)  
요양기관 현황신고 관련 서비스 이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2016.10 평가 관련 서비스 이관( → E평가 자료제출 시스템)
- 2018.3 심사참고자료, 재심/이의신청 보완자료제출 업무이관( → 영상자료제출시스템)  
진료의뢰/회송 중계서비스 이관( → 진료의뢰회송중계포털)  
HTML5 기반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개시(\*ActiveX 제거)

67 심사평가원 최초의 내·외부 포털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로, 현재의 요양기관업무포털·국민포털의 전신인 외부포털과 현재의 히라넷·ihiranet·비즈넷을 전신인 내부포털의 구축 원년이 되는 시기임

\* ActiveX(액티브 엑스) - 윈도우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이나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한정)가 인터넷을 통해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표준 기술

## 다. 주요 특징

### 1) 기관회원을 위한 업무전용 포털시스템

각종 신청 및 자료제출, 진료비 청구 진행과정 및 이의신청,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업무 및 보험사 정보제공, 정보화지원 등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제약사, 보험사 등 기관회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업무 전용 포털

### 2)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구성

업무분야별로 8개의 메뉴로 구성되었고 회원유형별 맞춤형 메뉴 구성, 다빈도 메뉴의 TOP5 바로가기, 기관정보에 따른 개별 팝업, 사용자별 즐겨찾기 등 특화된 기능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 되도록 콘텐츠 구성

### 3)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업무별 산재되어 있는 수가, 약가, 치료재료등 주요 급여기준을 한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팝업화면으로 구성하고, 전용 통합검색기능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 4) 점검요청 서비스(원격지원 서비스)

해당 기관의 보안정책 등에 의해 원격지원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화면을 업무담당자가 심사평가원 외부PC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라. 메뉴 구성

### 1) 업무 안내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평가, 영상자료제출 사이트에 대한 안내와 청구관련 자료실, 상대가치점수, 공개심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2) 의료기준 관리

행위, 약제, 치료재료, 영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등 의료기준에 관한 결정, 조정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및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신청 및 정보 제공

## 3)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이 진료한 비용 관련 사항을 청구하고 진행과정 및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메뉴로서 청구한 진료비의 진행과정 조회, 청구 오류내역 확인,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기능과 환자평가표,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

## 4) 정산 관리

요양기관의 심사결정내역에 대한 재심사/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과 진료비 확인요청, 응급 의료비에 대한 대지급 청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

## 5) 모니터링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관련 평가 정보, 지표연동자율 개선제 관련 청구경향 정보, DUR, 환자분류체계 등 각 종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제공

## 6)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관련 전용 메뉴로서 신청 및 자료제출,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 처리 및 심사 안내, 급여기준, 알림방, 정보방, 우리병원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

## 7) 정보화지원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기능과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자가점검, 요양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등 요양기관의 정보화지원을 위한 기능 제공

## 8)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자체 개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영양급여비용 관련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여부 정보 및 검사 신청 등의 기능 제공

그림4.4-10 요양기관업무포털 메뉴구성도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li> <li>• 자료방</li> <li>• 정보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평가신청</li> <li>• 약제평가신청</li> <li>• 치료재료평가신청</li> <li>• 조건부급여</li> <li>• 전문병원지정평가</li> <li>•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과정</li> <li>•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li> <li>• 환자평가표접수</li> <li>• 청구오류</li> <li>• 의약품관리</li> <li>• 치료재료관리 등</li> </ul>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이의신청/정산/환수</li> <li>• 심판청구</li> <li>•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li> <li>• 진료비확인요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li> <li>• 청구경향</li> <li>• 포괄수가·신포괄수가</li> <li>•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li> <li>• DUR정보</li> <li>• 환자분류체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li> <li>• 급여기준</li> <li>• 알림방</li> <li>• 정보방</li> <li>• 신청및자료제출</li> <li>• 진료비청구 등</li> </ul>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자동차보험(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홈페이지제공서비스</li> <li>• 홈페이지 노출진단 서비스</li> <l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li> <li>• 기타 상세정보 신고</li> <li>• 교육신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li> <li>• 기초정보관리</li> <li>• 검사신청관리</li> <li>• 품질관리</li> <li>• DUR 전송내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li> <li>• 급여기준</li> <li>• 알림방</li> <li>• 진행과정조회</li> <li>• 이의제기 신청</li> <li>• 정보자료실 등</li> </ul>

### 마. 관련 시스템 정보

비즈넷, 요양기관 현황관리, 자동차보험, 평가, DUR 등

## 3

### 영상정보관리시스템

#### 가. 배경

- 1) 요양기관은 심사보완자료를 CD 등 우편으로 제출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제출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CD제작 및 발송에 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2)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영상정보의 보관비용 발생과 비전자화로 인해 심사, 이의신청 등 영상정보 활용 측면에서 연계체계가 미흡함.

#### 나. 목적

- 1)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편의성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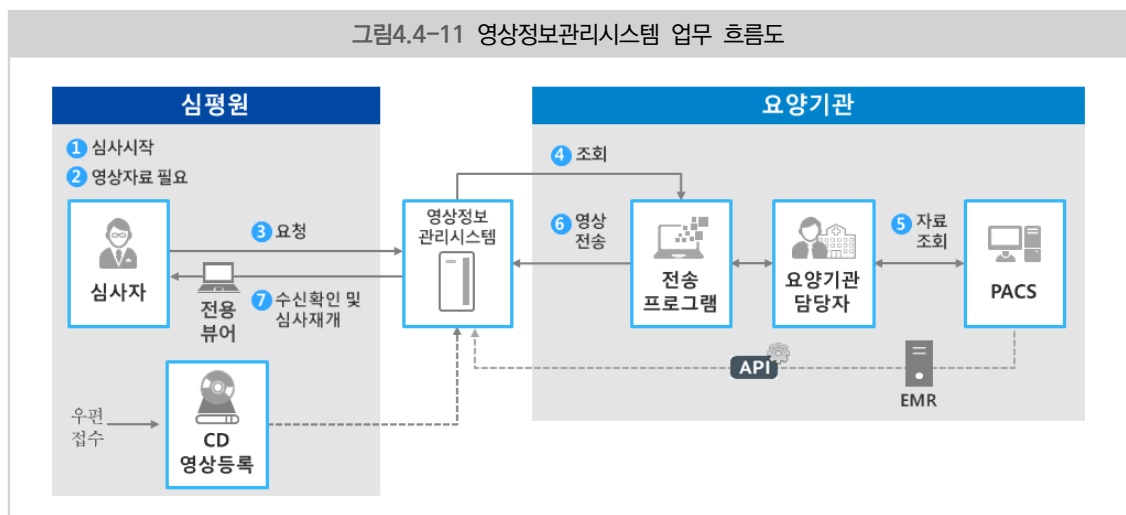
- 2) 심사평가원 심사평가 업무 활용강화로 업무간 연계 등 효율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영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강화로 보건의료체계 선도

### 다. 법적 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 라. 업무 흐름도 및 주요 서비스

#### 1) 업무 흐름도



#### 2) 주요 서비스 개요

##### 가)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 요양기관이 심사보완, 이의신청 등을 위한 심사보완자료(의료영상, 진료기록지 등)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하는 온라인 서비스

##### 나) CD 매니저

- 요양기관이 제출한 CD(심사보완자료)를 내부 직원이 등록(DB화)하는 서비스

##### 다) 영상 뷰어(Viewvine)

- CT, MRI 등 DICOM 의료영상을 조회하는 서비스

※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관련 정보는 <http://wiki.hira.or.kr/portal/en/IPacs> 참조

## 마. 기대효과

### 1) 요양기관 측면

- 가) 대용량 심사보완자료(의료영상 등)의 신속·안전한 전송 가능
- 나) 전송 중 다른 업무 수행, 예약전송, 자동재전송 등 편의성 향상
- 다) CD제작 및 우편발송, 중복제출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 2) 심사평가원 측면

- 가) 제출된 심사보완자료의 실시간 심사연계로 심사기간 단축
- 나) 심사보완자료의 전자화로 1차심사, 이의신청 등 업무연계성 강화 및 재활용가능
- 다) 국제표준(DICOM\*)을 준수한 영상 빅데이터 축적으로 영상판독 등 활용기반 마련

\*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의료영상 통신표준

## IV

## 업무시스템 운영

작성자 : 경영정보부 주 - 신성균  
부 - 이정숙

## 1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 가. 개요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이하 DW)는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써, 조직 내에서 분산 운영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저장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요양기관 평가정보, 의약품 유통정보, DUR 정보 등을 DW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직접 신속·정확한 보건의료 통계를 산출하고, 심사평가 업무 및 정부정책 지원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업무 등)

④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생략)

## 2)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 자격 검정지침

### 다. 그간의 DW 구축경과

그림4.4-12 그간의 DW 구축 경과

구분	2003 (최초 개시)	2010 (시스템 보강)	2017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평가분석시스템(DW)</li> <li>- 5년치 데이터</li> <li>데이터 마이닝 개발</li> <li>- 부당청구 기관 선정</li> <li>- 종합관리제 성과측정</li> <li>통계보고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W 자원보강 및 성능개선</li> <li>- 5년치 데이터</li> <li>사용자 분석환경 개편</li> <li>평가분석시스템 구축</li> <li>주민번호대체키(HPIN) 도입</li> <li>표준화시스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W통합 및 분석영역 확대</li> <li>- 10년 이상 데이터</li> <li>통합 분석환경 개발</li> <li>환자 진료DB 및 이상감지</li> <li>- 의약품 오남용 관리 등</li> <li>DW 포탈 개편</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P 슈퍼돔 2대(36코어)</li> <li>SAP ASIQ(12 Ver)</li> <li>40TB(HDD)</li> <li>OLAP(BO 35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P 슈퍼돔 2대(67코어)</li> <li>SAP ASIQ(15 Ver)</li> <li>80TB(HDD)</li> <li>OLAP(MSTR 800개)</li> <li>SAS 분석서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플라이언스 8대(568코어)</li> <li>Oracle Exadata</li> <li>160TB(메모리)</li> <li>OLAP(MSTR 1800개)</li> <li>R 분석서버 도입</li> <li>개발·교육용 장비 도입</li> </ul>

- 1) '03.07. : 보건의료분석시스템(DW : Data Warehouse) 최초 도입
- 2) '04.05. :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자격 도입('10.02. : 산업인력공단 인증)
- 3) '10.05. : DW시스템 성능보강 및 구조개선
- 4) '17.08. :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통합분석플랫폼' 구축

### 라.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특성

- 1) 주제 지향성(subject-orientation)
  - 데이터를 주제별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서비스
- 2) 통합성(Integration)
  - 데이터가 일관적인 형태(이름, 속성, 구조 등)로 변환되어 통합성 유지
- 3) 비휘발성(Non-Volatility)
  - DW에 데이터 적재되면 수정·변경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만 추가
- 4) 시계열성(Time Variant Historical)
  - 통합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정확성을 유지



## 마. DW 구축 정보

- 1) 운용 데이터 저장소(ODS : Operational Data Store)
  - 변환·가공 등이 필요한 EDW 데이터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HIRA+, 의료자원, DUR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시 공간
- 2) 전사적 데이터웨어하우스(EDW : Enterprise Data Warehouse)
  -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통합한 전사적 관점의 데이터
- 3) 요약(Summary)
  - 빠른 분석을 위해 EDW 자료 중 분석관점별(요양기관별, 기관별, 상병별, 수가/약가/치료재료대별 등)로 정형화한 요약정보
- 4) 마트(Mart)
  - 특정 업무·주제(평가결과, 처방전연계, 자율시정, 요양기관 프로파일 등) 별로 EDW 데이터를 재구성한 정보
- 5) 디멘전(Dimension)
  - 분석 관점으로 쓰이는 기준정보(요양기호, 상병, 수가/약가/치료재료 및 각종 공통코드 등)로 변환·정제하여 실시간 구축

## 바. 심사평가원 통합DW 시스템의 특성

### 1) 플랫폼 구성

- 대용량 데이터를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 운영 (H/W 및 데이터베이스 일체형, 160TB 메모리)
  - 플랫폼 메모리 디스크 기반의 대용량 어플라이언스 DW 운영
  - 분석시스템(OLAP) 라이선스 1,800개 및 전문 통계분석 도구(R) 운영
  - 실시간 데이터 복제 솔루션(CDC, Call Directing code) 운영

### 2) 분석관점별 DB 구조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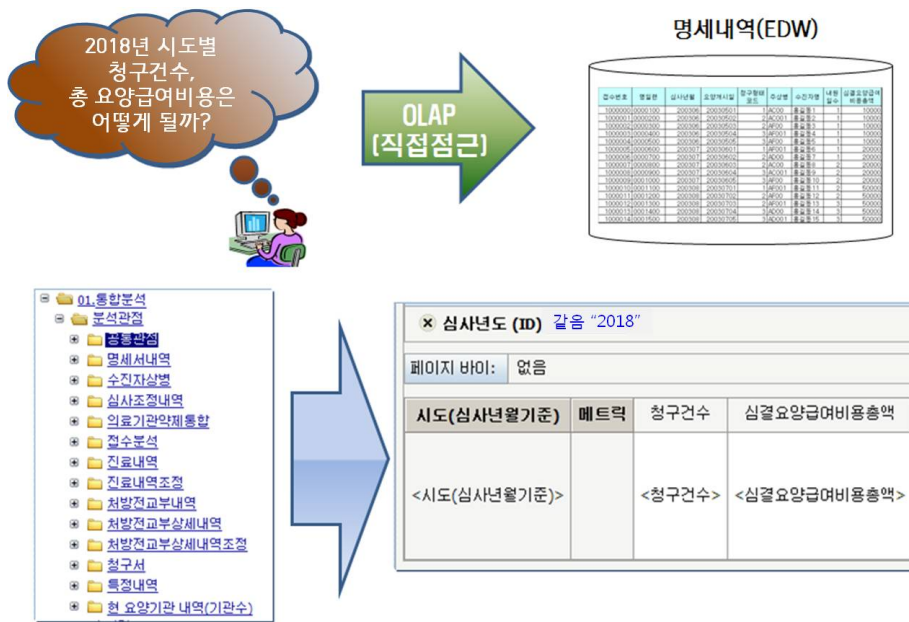
- 가) 청구명세서 접수 다음날 분석이 가능하도록 DW에 복제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에 대하여 청구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약 3개월 보관)
- 나) 심사평가·DUR·의약품유통정보 통합 및 자동차보험·비급여 등 다양한 분석정보 수집·연계하여 데이터 분석
- 다) 환자단위별 상병,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정보 등 누적관리

### 3) Data Dictionary 검색 서비스 제공

- 가) 구글(Google) 방식의 데이터 속성 검색 서비스(Dictionary 서비스) 제공
- 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점검 자동화 시스템 적용

### 4) OLAP 관리

- 가)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은 사용자가 직접 DW에 접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환경



#### 나) OLAP의 특성

- 직접접근 : 사용자가 정보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
- 대화식 분석 :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
- 의사결정에 활용: 사용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의사결정 지원

#### 다) OLAP 사용자 관리

- OLAP사용권한 신청 : Hiranet → DW포털 → 권한신청
- 권한 회수
  - 3개월 간 미사용 계정에 대한 자동 계정 및 권한 회수

- 계정 공유, 개인정보 검색 등 부적절한 사용 시 계정 및 권한 회수
- 권한부여(회수)에 대한 이력은 별도 시스템에 저장 관리 운영

### 5) DW 포털 관리

가) DW 활용에 필요한 콘텐츠(계정관리, 커뮤니티, 교육관리, 개인식별번호 신청 등)를 모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포털이다.

나) 주요 업무



- OLAP분석 시스템 : SSO 기반에 사용자가 OLAP 분석 시스템에 LOGIN
- 개인식별번호 변환요청 및 승인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난수표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대체키)
  -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식별번호 대체키 간의 변환이 필요할 시 사용
- DW, OLAP 교육 및 보건의료정보분석사 관리 등

## 6) OLAP 사용자 교육

### 가) 온라인 교육

- DW포털 → 교육 및 시험 → 온라인교육(교육 신청 후 자동 승인)
- 교육과정 : 초급(3차수), 중급(5차수), 고급(6차수)로 구성
  - 초급(3차수) : OLAP 개요 및 데이터구조, 기본 리포트 작성
  - 중급(5차수) : DW 데이터 구조, OLAP 주요기능 및 활용사례
  - 고급(6차수) : 매트릭, 대시보드, SQL 추출

### 나) 오프라인 교육

- DW포털 → 교육 및 시험 → 오프라인교육
- 연중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일정에 신청하여 수강
- 신청인원은 부서 정원에 따라 비례하여 지정하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음

## 7) 보건의료정보분석사

### 가) 개요

“보건의료정보분석사”란 DW의 자료를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 자로서 자격 검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사내 자격이다. 2004년 최초로 도입하여'18.9월 현재 693 명의 분석사를 배출하였다. 2010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 내 자격인증을 취득하였다.

### 나)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지침 관리

- 검정기준 : 응시자격, 시험출제 방법, 합격기준 등
- 검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 소위원회(출제, 감독, 채점) 구성 등
- 시험시행 및 자격취득자 관리
  - 1급 및 2급으로 구성되며 년 중 계획에 의해 각 1회 시험 실시
  - 자격취득자는 5년간 자격 유지(보수교육 실시)
-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자격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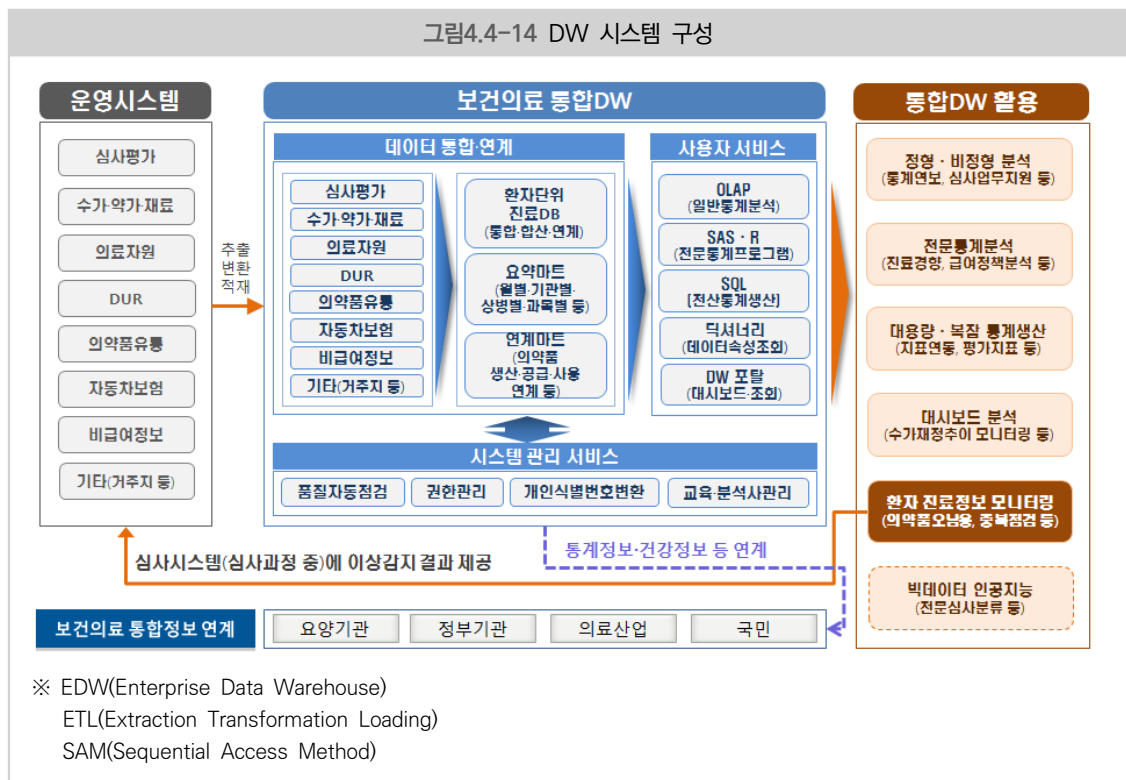


### 사. 시스템 구성

심사시스템(HIRA+)에서 심사결정 자료와 기준정보(상병, 수가, 약가 등)를 추출해서 변환, 정제한 후 데이터를 적재하여 EDW 및 디멘전을 구축하고, EDW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트 및 요약데이터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자원, 자동차보험심사, DUR, 의약품유통, 비급여정보 등 관련 사업부서에서 데이터의 특성, 주기 등을 고려하여 ETL을 통해 EDW가 구축한다.

사용자는 OLAP, 통계분석 툴(SAS, R)을 통해 EDW와 마트 및 디멘전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2 히라넷(HiraNet) 시스템

### 가. 개요

HiraNet 시스템은 내부 직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된 심사평가원 인트라넷으로 게시판, 전자결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인트라넷(Intranet): 인터넷(inter-net)의 웹(Web)기술을 이용, 기업 및 특정 단체의 내부 정보시스템을 구축, 기업 및 특정 단체의 내부(Intra) 관련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 나. 법적 근거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 2) 기록물관리규정 제2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 4)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제5조의4(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5) 정보보안지침 제18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다. 주요 기능



- 1) LNB(Local Navigation Bar)
  - 사이트 내 대메뉴 역할을 수행
    - HiraNet의 대메뉴 역할을 수행
- 2) 마이데스크
  - 결재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 본인에게 배정된 각종 업무 건수 등 표시
- 3) 공지사항(게시판, 전자결재함, 알림창)
  - 공지사항 : 알림게시판 내용을 최신순으로 표시
  - 문서목록 : 전자결재시스템의 결재대기문서 및 공람문서 목록 표시
  - 오늘의 경조사 : 전자결재, 경조사, 알림정보 등 게시
- 4) 바로가기 서비스
  - 내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일정관리 공간
  - 자주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의 링크(Link) 제공
- 5) OTHER SYSTEM
  - 각종 공통 솔루션 또는 사이트의 링크(Link) 제공

## 라. 세부 내용

### 1) LNB(Local Navigation Bar)

- (1) 게시판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파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간
- (2) 전자결재
  - 정부의 기록물 관리법 및 사무 관리 규정에 의거 문서처리의 전자화, 기록물 관리의 효율화 및 문서사무 처리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고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전자문서 시스템
- (3) 고객의 소리
  - 심사평가원 민원서비스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하며 민원인에게 피드백 하기 위한 바로가기
- (4) 성과관리
  - 조직 및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여 구축한 시스템
- (5) 智Zone(지존)
  - 조직 내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 2) 바로가기 서비스

- (1) 원장님과의 만남
  - 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 비전 제시, 개선해야 될 사항,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
- (2) 윤리규범
  - 심사평가원의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시한 공간
- (3) 청렴신고
  - 내·외부 부패척결을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실천의 장
- (4) 고충상담
  - 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 성희롱, 보수, 복지후생 등 고충상담
- (5) 사무실안내
  - 본·지원 사무실 층, 실(단)명, 부(팀)명 안내
- (6) HIRA<sup>+</sup>(건강보험심사시스템)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모아놓은 시스템
- (7) 평가시스템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모아놓은 시스템
- (8) BizNet시스템
  - 요양기관 업무 서비스를 별도로 구성하여 내부직원들의 업무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
- (9) 기관운영시스템
  - 인사, 교육, 법무, 회계 등 원을 운영하는 업무를 모아놓은 시스템
- (10)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
  - 요양기관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 (11) DW포털시스템
  -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 별로 통합하여 운영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별도의 장소에 저장해 놓은 시스템
- (12) 보안포털시스템
  - 보안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며, 내부 IT자원을 인가된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3) (구)고객의 소리
  -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과 요양급여에 관련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 사이버 상담, 민원상담 예약,



진료비 확인 요청 등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을 접수·배정·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피드백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14) 영양기관프로파일시스템

- 영양기관 종합분석, 기관분석, 사후관리, 급여성정성평가, 포괄수가 등 영양기관프로파일 시스템

(15) 규정관리시스템

- 심사평가원 정관, 규정, 세칙, 지침, 강령, 폐지 등 규정관리 시스템

(16) 웹팩스

- 팩스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

(17) 사내방송

- 사내 교육 또는 행사/회의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

### 3) OTHER SYSTEM(Link 서비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 조직 전체 관점에서 정보화에 필요한 업무, 응용, 데이터, 정보기술 등 정보화 구성 요소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정립, 표준화하기 위한 기관의 정보화 종합설계도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3) 의약품통계

-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급추이 등 총괄적 통계관리

(4) 진료경향모니터링

- 진료비에 대한 추이나 경향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시스템

(5) 데이터품질관리

- 데이터 모델 및 표준, DB계정 및 권한 등을 관리하는 심사시스템

(6) 기록관리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장기보존이 필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솔루션

(7)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PIAS)

-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활동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

(8) ITSM시스템

- IT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9) 자동차보험심사시스템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청구명세서에 대하여 각종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심사와 전문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결과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마. 주요 기술요소

- HIRA 표준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2.0기반, Spring 3.0.5.Release
  - WAS : WEBLOGIC 10.3.2
  - DBMS : ORACLE 11g
  - J2SE : JDK 1.6.0\_20
  - Servlet : 2.5

바. 연계시스템 현황

1)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서비스

구분	송신	수신
중계서비스	심사평가원 ↔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 행정·공공기관	
연계대상	전자결재시스템內 문서 원문·첨부파일	
연계주기	실시간	
연계방식	행정전자서명(GPKI) 및 중계모듈(표준 API)	

2) 원문정보공개시스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된 문서를 제공
- 공개대상

심사평가원 생산·등록된 모든 문서 목록	원장, 감사, 상임이사 결재문서 중 공개 문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모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문서 : 문서제목, 기안문, 첨부파일</li> <li>• 부분공개문서 : 문서제목, 기안문</li> </ul>

## - 원문정보 연계

구분	정보목록 연계	원문정보 실시간 연계
제공대상	심사평가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연계대상	전자결재시스템內 문서 목록	전자결재시스템內 문서 원문 · 첨부파일
연계주기	1일1회 제공	실시간
연계방식	대용량 연계 서버 활용 (행정전자서명 및 표준API 모듈)	웹(Web) 화면 제공 www.open.go.kr

## 3) 국민신문고

## - 국민신문고에 통합운영 중인 민원시스템과 전자결재를 연계

구분	송신	수신
연계서비스	심사평가원 ↔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 국민신문고	
연계대상	전자결재 ↔ 신문고 전자문서	
연계주기	실시간	
연계방식	행정전자서명(GPKI) 및 연계모듈(표준 API)	

## 4) 내부시스템

## - 비즈넷(BizNet)시스템, 기관운영시스템, HIRA+(건강보험심사시스템), 평가시스템, OTHER SYSTEM 등 다양한 내부업무시스템과 연동

구분	전자결재 시스템	내부업무 시스템
처리내역	기안문작성→결재완료→결과리턴	문서작성→전자결재호출→결과확인
연계대상	전자결재 기안문서 상태 값 리턴	문서정보(XML, HTML, HWP 등)
연계주기	실시간	
연계방식	연동테이블 연계방식(공동모듈)	

### 가. 개요

심사평가원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인사, 보수, 회계, 감사, 교육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관운영시스템은 각 단위업무별로 자료를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나. 법적 근거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 2) 감사 : 감사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 3) 인사 : 인사규정, 보수규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제규정
- 4) 교육 : 교육운영세칙
- 5) 법무 :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지침
- 6) 회계 : 회계규정
- 7) 사옥관리 :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사옥관리운영지침
- 8) 성과관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경영실적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14조

### 다. 주요기능

- 1) 인사관리 : 인사기본, 인사발령, 근태관리, 근무평정, 채용관리, 직원 복리
- 2) 보수관리 : 보수기준, 월보수관리, 사회보험, 기타수당, 연말정산, 퇴직정산
- 3) 예산·회계·자산관리 : 예산, 재무회계, 지출·결산·세무·자금관리, 자산취득·운용, 계약관리
- 4) 감사관리 : 감사계획, 일상감사, 감사처분, 이의신청, 청렴신고, 상시모니터링
- 5) 성과관리 : 경영평가, 조직성과, 개인성과 지표 및 실적 관리

그림.4-16 기관운영 시스템 구성도



## 라. 세부기능

### 1) 인사 관리

임·직원의 인사 기록과 직제 정보를 기반으로 직원채용 및 발령, 인사, 근태, 근무평정, 직원 복리 등을 관리한다.

- 인사기본관리 : 개인별 인사기록을 관리하며 신규직원의 채용, 직원의 발령 및 승진, 포상, 인사 관련 증명서 신청·발급, 조직의 직제 정보 변경이력을 관리한다.
- 근태관리 : 연가 및 휴직, 유연근무제와 선택근무제, 휴무 또는 복지성 근태(가정의 날) 등 개인 근태 관리, 시간외수당 등 특·근태 내역관리 등을 지원하며 월 보수 및 각종 수당,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수시스템과 연동한다.
- 근무평정 : 직원 및 상근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의 기준정보 관리, 상급자평정 및 다면평정 수행, 평정과정에 따른 각종 통계정보를 서비스한다.

### 2) 보수 관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조건표(호봉금액표, 직급금액표 등) 및 직원 급여와 관련한 인사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월 보수 및 각종 수당 산출, 사회보험처리, 대여금 및 학자보조금 등 복리후생 자료관리, 연말 및 퇴직정산자료를 산출하고 관리한다.

- 복리신청 : 직원의 대여금과 학자보조금을 관리하고 가족수당과 같은 복지와 관련한 각종 수당을 신청·처리한다.
- 4대 보험 관리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내역 자료 산출·관리 및 관련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 보수 계산 : 월 보수 및 상여금,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 시간외(휴일·야간근무 포함) 수당 등을 인사 기본 자료와 연계하여 개인별 보수를 산정하며, 지급액은 은행별로 연계 처리되고 직원 개인에게 보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 연말 및 퇴직정산 : 1년 동안 지급할 총지급액과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내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금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작업과 세무서 신고 작업, 직원의 중간·퇴직정산 처리, 계정별 집계 처리내역을 회계시스템에 연계한다.

### 3) 예산·회계 관리

연도별 회계별 예산을 수립, 편성, 배정, 집행하는 예산관리 및 수입·지출 시 발생하는 전표 처리와 장부관리, 분기 및 회기 말 결산작업, 세무서 신고 자료 생성 등의 재무회계관리와 각 부서별 관리운영비 및 보험급여지급 비용 등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예산관리 : 심사평가원 예산을 연도별 사업회계별로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배정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한다.
- 재무회계 : 수입과 지출시 발생하는 전표처리를 근거로 원장을 생성 관리하며, 분기 및 회기 말 결산처리를 지원한다.
- 자금관리 : 자금 배정 시 거래되는 보통예금계좌, 당좌예금계좌, 유가증권 및 현금 등에 관한 잔액관리와 예치자금을 관리하여 가용상태를 파악, 각 부서의 자금신청 및 배정에 대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금 운용 상태를 제공한다.
- 자산관리 : 신규자산 및 기증품, 관리전환자산, 미 사용자산, 불용결정처분 관리 등 자산의 취득 및 폐기내역을 관리하며 기 등록된 자산품목에 대한 자산의 변동사항 및 감가상각을 처리한다.
- 세무관리 : 결의서 및 수입 지출처리에서 기 등록된 결의서 또는 전표의 부가세, 원천세 및 법인세를 처리하며 세무서에 제공할 각종 서식자료를 제공한다.

### 4) 감사 관리

- 감사관리 : 연간 감사계획 및 일정관리, 정기 및 일상내부감사, 대외감사 등에 대한 수감 결과를 관리한다.

- 상시모니터링 : 예산, 계약, 회계, 계좌, 인사, 고객지원, 요양급여 비용심사, 근태관리, 보안 집행에 대한 기준과 발생 사항을 관리한다.
- 통계 및 기타조회 : 연도별 감사실적을 관리하고 각종 감사에 대한 데이터관리 및 조치이력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한다.
- 기준관리 : 감사관련 기록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수감부서 : 심사평가원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 종합 감사자료 제출, 조치이행결과를 등록하고 대외감사에 대한 수감일보를 등록하고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청렴신고센터 : 임직원의 행동강령위반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활동 사항을 등록·관리한다.
- 청렴활동 : 청렴활동과 관련하여 청렴마일리지 및 실적을 관리한다.
- 친인척 의료인업체 종사자관리 : 직원의 친인척 의료인 및 업체종사자 등이 근무하는 현황을 자율등록하고 부서별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5) 성과 관리

기관의 경영평가와 내부성과평가(조직성과, 개인성과)를 통합 관리·운영하며 성과결과를 인사, 보수시스템과 연계한다.

- 경영평가 : 기관의 대외 평가지표를 관리하고 지표실적을 등록한다.
- 조직성과 : 조직의 내부 평가지표를 관리하고 지표실적을 등록한다.
- 개인성과 : 개인의 내부 평가지표를 관리하고 지표실적 등록 및 코칭 관리 등을 운영한다.

## 6) 교육 관리

직원 및 외부인에 대한 교육관련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 직원 교육 관리 : 직원별 멘토링 활동, 역량진단, 직무교육 및 타 기관 위탁교육 실적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각종 통계정보를 서비스한다.
  - 대·내외 교육 운영 : 대·내외 교육을 대상으로 추진일정과 내용, 정원, 설문항목 등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직원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한 내역(일시, 목적, 장소, 강의로 등)을 등록 관리한다.
- ※ 외부강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는 “외부강의·회의 신고 등록” 화면에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7) 법무 관리

고발 내역관리 및 법무질의 관리, 송무 정보관리 등 법무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 고발관리 : 고발내역을 등록 조회하며 해당 연도별현황, 부당유형별 현황 등의 통계를 산출하고 출력한다.
- 송무관리 : 사건등록 및 사건정보 조회, 개별사건에 대한 병합처리 등 송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별 내역, 소송내역 등의 통계를 산출하고 출력한다.

### 8) 사옥 관리

사옥의 일반사항, 사진, 면적, 부속장비 등의 기본마스터 항목을 관리하며 사옥별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내역 및 용역사원 관리, 임대차에 계약내역, 월임대료 등 관리, 사옥보수에 필요한 자재 입·출고내역 및 재고 관리 등을 관리한다.

### 마. 주요 기술요소

- 적용 소프트웨어 목록

구분	제품명	기능 및 성능
WEB서버	WebTier 11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웹서버의 기능을 제공</li> <li>• 기업에서 상용되는 WAS와 연동 가능</li> <li>• 클러스터링 지원</li> </ul>
WAS서버	WebLogic 11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va SE 6, Java EE 5 이상의 규약을 지원</li> <li>• 기업용 상용 웹 서버, 현재 운영중인 텍시도와 연동 가능</li> <li>• Java Web Service 관련 규약(확장포함) 지원</li> <li>• 로드밸런싱, 클러스터링 기능 및 분산 트랜잭션 지원</li> </ul>
DB	Oracle 11g R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acle single instance로 구성</li> <li>※ 현재 평가DB2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li> </ul>
UI Platform	Xplatform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WindowOS(window98이상)환경에서 구동</li> <li>• IE 및 FireFox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전용브라우저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li> <li>• 표준프레임워크와 연계를 위한 Adaptor 제공.</li> </ul>
Reporting Tool	Rexpert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에서 작동</li> <li>• WSDL/SOAP/XML을 기반으로 하는 Web Service지원기능을 제공</li> <li>• 다양한 보고서 형태 및 출력/저장 옵션 제공</li> </ul>



## 바. 주요 연계시스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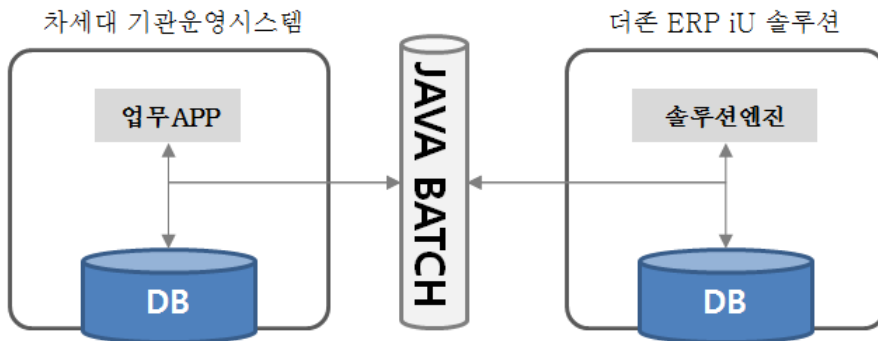
### 1) 주거래 은행과 정보 연계

- 연계시스템명 : 하나은행(하나빅넷)
- 연계방식 : EAI DBtoDB방식, 실시간 소켓 통신
- 연계정보

구분	인터페이스명	요청	응답
실시간	거래처휴폐업조회	회계	하나빅넷
실시간	예금주유효성체크	회계	하나빅넷
배치(DB)	수입관리입금내역연계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신용카드승인내역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신용카드청구내역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신용카드매입정보연계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자금이체내역연계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지급내역	회계	하나빅넷
배치(DB)	개인법인카드기준정보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전자세금계산서내역	하나빅넷	회계
배치(DB)	전자세금계산서품목 상세내역	하나빅넷	회계

### 2) 보수솔루션(더존ERP iU) 연계

- 연계방식 : JAVA배치



구분	인터페이스명	요청	응답
배치(JAVA)	부서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기초코드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직원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가족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인사발령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인사발령정보(상세)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근태정보(일단위)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근태정보(월단위)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복리지급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공제항목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직원징계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배치(JAVA)	직원자격증 정보	더존 ERP	기관운영

## 4 비즈넷(BizNet) 시스템

### 가. 개요

비즈넷시스템은 군소단위의 시스템들을 올려놓은 일종의 ‘플랫폼’이다. 비즈넷 내부에는 크게 내부업무지원 용도의 시스템들과 외부포털관리 기능의 업무화면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작은 시스템 단위로 업무담당자와 사용자 그리고 전산직원이 협업하는 데 사용된다.

### 나. 주요기능

#### 1) 내부업무지원 기능

내부업무 가운데 ‘업무정보화관리시스템’은 비즈넷의 대표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2014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심사평가원 업무의 정보화를 이뤄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2017년에는 6천 건 이상의 업무정보화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은 구축 이후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 민원 약 2만 3천 건 해소하는데 쓰였고, ‘국회업무처리시스템’은 대한민국 입법부와 정당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약 1만 5천 건 (2018.9.기준)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 2) 외부포털관리 역할

외부포털관리 측면에서 비즈넷은 심사평가원 ‘대국민포털’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업무적으로 지탱해주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심사평가원 온라인 서비스를 업무담당자들이 비즈넷(인트라넷) 안에서 각 포털의 콘텐츠를 관리한다. 이를 통하여 비즈넷은 업무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심사평가원 정보를 지키는 시스템으로도 기능한다. 이처럼 비즈넷시스템은 내부업무지원 기능과 외부포털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플랫폼으로써 우리직원들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3) 비즈넷 시스템구성도



다. 세부기능

1) 내부업무지원

가) 업무정보화관리시스템

(1) 업무흐름

- 요청서 작성 : 정보화를 요구(요청)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결재를 득하면 처리부서로 요청서가 발신된다.
- 요청서 접수 : 요청서를 수신한 처리부의 사전 협의자가 처리자로서 해당 요청서를 받는다.
- 계획서 작성 : 처리자는 개발처리유형<sup>68</sup> 및 개발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안한다.
- 개발·검증 : 처리자가 본인이 수립한 일정에 따라 개발처리유형 바탕의 분석, 설계, 개발, 검증, 적용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 개발완료 통보 : 마지막 통보단계는 검증과 적용을 끝낸 후, 처리자가 개발완료임을 요구부서에 알리는 단계에 해당하며 통보 후 해당 건은 '개발완료'상태가 된다.



(2) 주요변화

- 개발의 처리유형과 개선 -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개발요청처리유형이 7유형에서→11유형으로 변경 및 개선되었다.

현행	개선·추가	비고
신규개발	현행 유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요청
기능오류		프로그램 오류발생 시 보완 요청
기능추가/변경	*권한/계정신청(변경)	프로그램 기능 추가(서식, 코드 등 포함) /변경 등
권한신청		서버, 교육계정, DB Update 등 관련 권한/계정 신청
자료요청	현행 유지	업무관련 자료(통계) 요청
모델변경		DB관련 모델 변경 요청
기타	*자료처리(신규)	기타 업무관련 정보화 요청
자체개선		부서별 자체개선 사항 관리
-	*서버작업(신규)	데이터 변경(CRUD) 업무 요청
-	*프레임워크(신규)	업무(전산점검 등) 관련 서버작업 요청
-		Hira 표준 Framework 관련 작업 요청

68 개발처리유형별로 진행단계의 필수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

## (3) 개발처리유형별 주요 활용사례

- 기능추가/변경 - 정보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에 따라 업무추진 부서들은 업무정보화를 통하여 기능의 추가, 변경에 대한 니즈를 피력하고 전산직들은 그것을 구체화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기능추가/변경 유형은 약 1,183건이 처리되었다.
- 자료요청 - 계속해서 시스템 화면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통계 요구조건과 기준이 항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간단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조건으로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려는 시도를 업무정보화시스템의 '자료요청'이란 유형으로 접수받고 있다. 대개 전산직 인력이 자료요청 조건에 따라 SQL을 활용해 2016년부터 매년 1천 건 이상의 자료를 작성해오고 있다.
- 자체개선 - 업무정보화 요청이 없어도 전산직들은 선제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체개발 확정'<sup>69</sup>과 다르게 개발처리유형을 '자체개선'으로 설정하고 업무정보화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자체개선 유형은 2016년(534 건)에서 2017년(978 건) 약 45%증가하였다.

## 나) 행정정보공개시스템

## (1) 업무흐름



- 요청·접수 - 담당부서에서 국민포털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요청받은 정보공개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DB와 심사평가원 행정정보공개 DB가 솔루션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돼 있다. 그 밖의 민원 건은 시스템 내부에서 '서면등록'을 통해 이뤄진다.
- 처리 - 정보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정보공개의 범위에는 ①전부공개, ②부분공개, ③비공개, ④정보부존재가 있으며 ②,③,④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이 때 발송되는 통지서를 '결정통지서'라고 하며 시스템내 기반SW가운데 레포팅 툴인 Repert 3.0으로 관계된 통지문서들을 리포트로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69 '요청자=처리자' 상태에서 개발요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로직 : 요청서를 작성단계에서 요청자가 처리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자체개발 확정' 버튼이 노출되어 요청단계에서 별도의 로직이 수행된다.

- 종결 - 이첩, 취하, 내부종결, 일반종결 4가지 유형으로 종결을 설정한다. 이첩은 다른 기관으로의 민원이전과 전달을 의미한다.
- 이의신청 - 결정통지에 관하여 민원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으로 민원 처리가 이뤄진다. TABLE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Row데이터를 상태 값만 변경 후 복제하여 적재하고 구분하고 있다.

(2) 정보보호 노력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인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개인진료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심사평가원 표준화 및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정보공개 테이블(TBGCE010)은 암호화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 등록시점에서 주민번호 등을"\*"처리하고 있다.
-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분리 구축 - 2018년 9월부터 경영정보부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분리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분리 작업을 시작했다. 개인진료정보 등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요청과 접수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회업무처리시스템

- 업무흐름도
  -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정당 의원실에서 심사평가원의 정보·자료를 요구하며 우리직원들은 이를 접수받아 처리 후 제출하고 있다.
- 활용사례
  - 국정감사 대비 : 국감에 대비하여 의원실별로 다양한 요구자료를 접수받고 처리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정보화를 구현한다. 매년 있는 국감을 대비하는 데 첨부파일의 정보화는 업무 담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전임자들이 작성한 요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담당자나 직제 변경이 있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지난 국회업무 자료 양식 등을 찾아 볼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4) 기타

- 급여기준관리시스템 -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한 개별안건의 처리절차를 관리한다. 한편으로 행위업무와 치료재료업무의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 위원회관리시스템 - 전문평가위원과 급여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핵심은 ‘위원선정로직’이며 직전 선정 위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비복원 추출을 기본으로 공정한 위원 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 ‘연구과제’와 ‘위탁연구’크게 두 종류의 심사평가원 연구 과업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과제 관련 내용을 정보화 처리하고 변경이력 등을 확인한다.
- 전문평원평가시스템 - 매년 의료질 조사를 통하여 전문병원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지정신청분야별로 기관과 환자조사표를 작성해 표출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병원현황, 필수 진료과목 등을 관리한다.
- 그 외 시스템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 관리, 허가초과약제 관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 홍보관리, DUR관리 등

## 2) 외부포털관리

### 가) 대국민포털시스템 콘텐츠 관리

- 공지사항·팝업 등 관리 : 진료비, 의료정보, 제도정책, 국민참여, 정보공개 등의 주제영역별로 외부에 공개하고 전달할 내용을 국민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200여 화면이 운영 및 사용되고 있다.

### 나)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 게시판 관리

- 공지사항·팝업 등 관리 :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정산관리, 모니터링, 정보화지원 등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각 주제별 신청절차 및 업무결과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때 사용되는 업무화면들이 70여 본 있다.

## 라. 주요기술요소

### 1) 개발환경

J2SE	JAVA	프레임워크	WAS	DBMS	UI Platform	Reporting Tool
JDK 1.6.0_20	JAVA EE 4이상	HIRA표준프레임워크 3.0.0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2.0)	WEB LOGIC 10.3.6	ORACLE 11g	Xplatform 9.2	Rexpert 3.0

2) 연계 현황

업무명	연계 시스템
행정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DB
보건의료빅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
업무포털관리	요양기관업무포털
대국민포털관리	대국민포털

3) 기반SW 현황

SW명	설명	단위	수량
easykeytect	키보드 보안	서버	1식
FSS	화면캡처방지	서버	1식
X-platform	UI플랫폼	서버*CORE	1식
Repert3.0	리포팅 툴	서버*CORE	1식
DEXTUploadNX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도메인	1식
DSFileCipher2	문서보안(DRM)	업무	2식
xKSignToolkit	통합로그인	업무	2식
PKI	웹구간암호화	업무	2식
BizWeaver	정보공개DB연계	업무	1식

5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히라톡톡’)

가. 개요

심사평가원(본원) 원주이전에 따른 출장, 사무실 외 근무증가로 내부 행정업무 이용 불편 및 임직원 간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모바일 등 최신 ICT를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내부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생산성을 강화하고 부서 및 직원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 ※ ‘히라톡톡’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심사평가원을 지칭하는 약어 ‘HIRA’와 스마트폰을 가볍게 두드릴 때 나는 소리 ‘톡!톡!’이라는 의성어를 조합하여 만든 시스템 명칭임



### 1) 배경

- 업무협약, 출장, 장기휴직 등에 따른 모바일 오피스 환경요구 증가
- 모바일을 통한 직원 간 소통강화 및 업무처리 등 편의성 증진

### 2) 목적

- 임직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소통체계 마련
- 내부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업무수행기반 마련

### 3) 그 간의 추진경과

- 2017년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정보화사업 內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추진
-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17.8~12월)
-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17.8~11월), 모의운영 실시('17.12월)
-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 의뢰 및 결과 적용('18.1~3월)
- 웹메일 연계, IOS(아이폰) 추가개발 및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실시('18.3~5월)
  - 사업기간 : '17.8월 ~ '18.6월(11개월)
- 모바일 그룹웨어 ‘히라톡톡’ 서비스 개시('18.6.1.~)

## 나. 주요 기능

- 1)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직원 간 소통체계 마련
  - 메신저, 웹메일, 주요 게시판 열람 등
- 2) 이동형 업무처리 및 편의기능 제공
  - 근태관리, 회의실관리, 배차신청, 조직도 조회 등

## 다. 세부 기능

### 1) 기능(서비스) 상세내용

그림4.4-18 히라톡톡 메뉴 구성

서비스항목	서비스 내용
계시판	계시판 목록 / 게시물 목록 / 게시판 상세내역 / 의견쓰기
조직도	조직도 / 부서목록 / 직원정보 / 전화결기 / 1:1 메신저 / SMS
배차	배차정보 / 배차신청 / 배차신청 수정,삭제
통근버스	나의통근버스정보 / 수시통근버스신청 / 고정통근버스 신청
회의실	나의 예약정보 / 회의실 신청 / 공용자원정보
근태	나의 연가정보 / 근태정보 / 일일근태신청(연가,출장,휴무,교육)
급여	급여명세서 / 연간급여명세서 / 연봉명세서
메신저	1:1대화, 1:N대화, 대화방관리, 조직도, 공지사항
메일	인터넷 메일 편지함 목록 / 메일 목록 조회 / 메일 보내기

### 2) 서비스 이용방법

(가) 대상기종 : 안드로이드 및 IOS(아이폰)

(나) 히라톡톡 앱 설치

- 심사평가원 자체 배포 서버를 구성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배포
- 안드로이드 및 IOS(아이폰) 별도 URL 제공

(다) 보안모듈 설치

- 앱 사용 권한 허용, 백신, SSL-VPN 등 설치

(라) 휴대전화번호 인증

- 휴대전화번호 인증 후 인증코드 요청, 인증 실시

(마) 인증서 전송(PC ⇄ 스마트폰)

- 인증서 복사 프로그램 설치,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

※ 스마트폰 제조회사, 기종(OS)별 자세한 설치사항은 사용자 매뉴얼 참조

## 라. 주요 기술요소

### 1) 네트워크 구성방식

- 모바일 전용 DMZ를 분리하여 네트워크 보안 강화
  - ※ DMZ : 인트라 네트워크의 구성 중에서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망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지대를 지칭
- SSL-VPN 통신채널 제공, 통신정보 암호화

### 2) 데이터 처리방식

-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시스템(WAS) 직접 접속 차단

### 3) 소프트웨어 적용방식

- 단말기 보안기능 별도 구현으로 사용자 편리성 대폭 향상
  - 화면캡처방지, 단말기 내 파일저장 차단 등
- 응용개발 영역 보안
  - 시큐어 코딩 : 국내·외 주요 보안취약점 목록에 대해 소스코드 점검 실시
  -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 4) 기반SW 세부현황

모바일 그룹웨어(1호기)		모바일 그룹웨어(2호기)	
OS		OS	
WEB		WEB	
WAS		WAS	
DBMS		DBMS	
통합접근제어	서버보안	통합접근제어	서버보안
종합관제	서버로그수집	종합관제	서버로그수집
OS백업	서버백신	OS백업	서버백신
시스템 SW		시스템 SW	
모바일백신	화면캡처방지	모바일백신	화면캡처방지
모바일인증서이동	모바일키보드보안	모바일인증서이동	모바일키보드보안
모바일메신저	암호인증/전자서명	모바일메신저	암호인증/전자서명
앱위변조방지	이중화	앱위변조방지	이중화
응용 SW		응용 SW	

## 5) 서비스 개발방식

### ● 하이브리드 앱(App) 적용

- ※ 하이브리드 앱 : 모바일 웹앱과 네이티브 앱을 결합한 형태를 말하며, 모바일 웹앱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티브 앱으로 모바일 웹앱을 포장하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함
- (장점) 개발과 수정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다수의 플랫폼에 적용 가능
- (단점) 네이티브 앱에 비해 동작속도가 다소 느림

## 마. 보안 사항

모바일 그룹웨어 ‘히라톡톡’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심의를 토대로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 1) 기술적 보안대책

- (콘텐츠 보안) 보안위험도가 낮은 단순 내부 행정업무서비스 구성
  - 주요 콘텐츠 : 웹메일, 메신저, 조직도, 게시판, 배차, 근태관리 등 9종
- (보안SW 도입) SSL-VPN, 모바일키패드, PKI, 화면캡처방지 등 10종
- (응용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등
- (기타 보안) 접속 및 사용자 관리, 단말기 분실대책 마련 등
  - (사용자) 심사평가원 내부직원으로 한정(용역직원 등 제외)
  - (접속) 직원용 공공인증서 사용, 인사정보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화 일치하는 단말기만 접속 가능
  - (분실대책) 단말기 분실 시 해당 핸드폰 번호로의 접속 차단

### 2) 물리적 보안대책

- 시스템 설치장소는 본원 5층 ICT센터로 하며, 심사평가원 “정보보안 지침” 및 “정보전략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3) 관리적 보안대책

-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안업무운영세칙」,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가이드」

## V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작성자 : 정보화지원부 주 - 김병기  
부 - 조명남

## 1

## 개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평가원에서 검사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검사신청인(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또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은 검사신청서와 제반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적정 소프트웨어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적정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 최소화로 청구업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는 올바른 진료비용 청구 질서를 조성하고 청구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함

## 2

## 법적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7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등)
  -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운영규정」

3

검사 업무

가. 검사의 대상 및 범위

1) 검사의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자료처리에 관한 보안기능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이다.

2) 검사의 범위

-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기능
-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 5.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능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 7. 자료처리에 관한 보안 기능
- ※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대상은 제5호(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가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 제5호와 제7호로 한정

나. 검사의 종류 및 신청

- 1) 신규검사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 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 3) 재검사 :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4) 갱신검사 :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 다. 적정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항목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여부 결정을 위한 검사항목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데이터,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보안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환자 내역에 대한 청구데이터의 송·수신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라. 심사심의위원회 운영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청구소프트웨어 심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주요 심의사항
  -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의약단체, 학계, 공익기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약5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문가 각 1명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관련 학계 추천위원 6명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정보통신 관련 책임자 1명
    -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 2명
    - 심사평가원의 직원 중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1명

## 마. 검사절차 및 결과통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고시변경 등에 따른 기존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검사인 경우 30일)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검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적정 청구소프트웨어로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및 홍보하고 있다.

## 바. 이의신청

대표자는 심사평가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 사. 사후관리

### 1) 반송 할 수 있는 경우

-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
-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 검사신청이 반려된 청구소프트웨어
-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

### 2)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방문

- 적정결정 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사용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아. 적정결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 재검사 및 갱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재검사 및 갱신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 보안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구소프트웨어

## 4

## 업무 수행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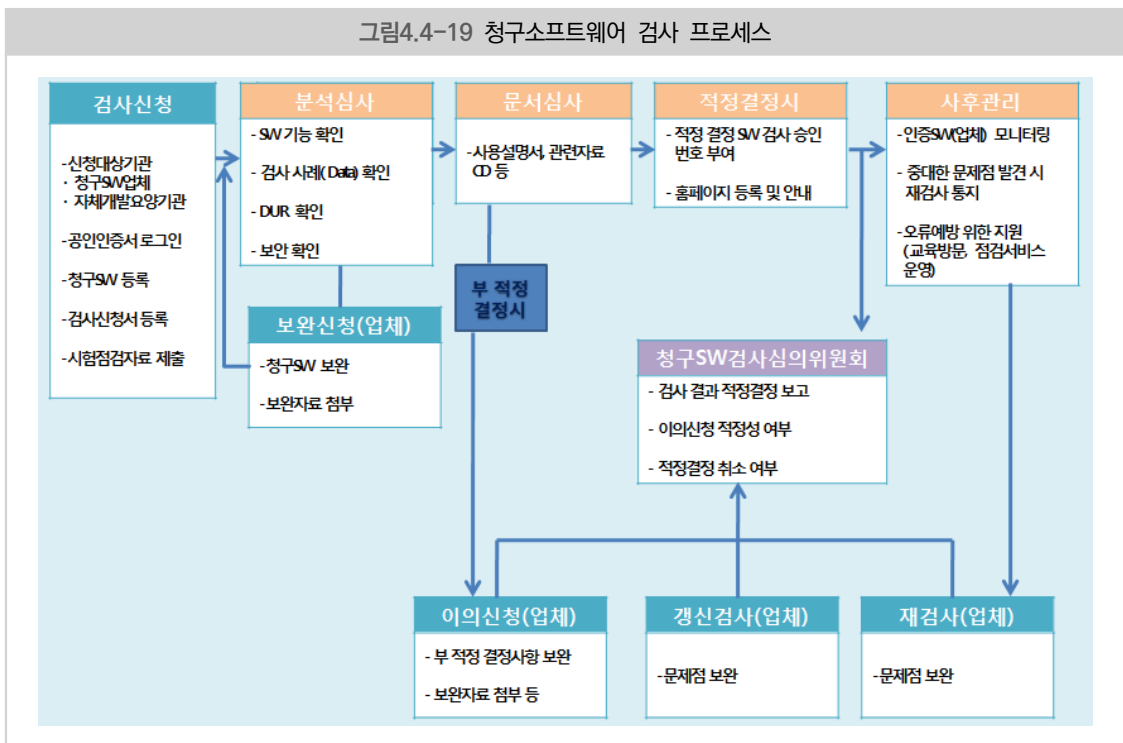
### 가. 업무 프로세스

- 1)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검사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기본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제 통하여 청구소프트웨어 등록



- 2)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검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안내 및 활용 동의 및 이행서약서 제출
- 3)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고시 목록 확인 후 공지사항에 게재된 사례 데이터 입력
- 4)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검사신청 전 단계로 사전 점검하는 상시점검 실시(선택)
- 5)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시험자료 제출 및 자가점검 실시
- 6) (심사평가원) 검사 신청 정보 확인 후 검사 업무담당자 배정
- 7) (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웨어 기능확인 및 데이터(시험자료) 점검
- 8)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 설치CD, 매뉴얼, 송신Log 제출
- 9) (심사평가원) 제출자료 확인 후 적정소프트웨어의 경우 결재 후 승인
- 10) (심사평가원) 검사승인번호 자동생성 부여하고 승인내역 홈페이지 게재
- 11)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검사승인번호 기재하여 청구소프트웨어 배포
- 12) (심사평가원) 검사승인결과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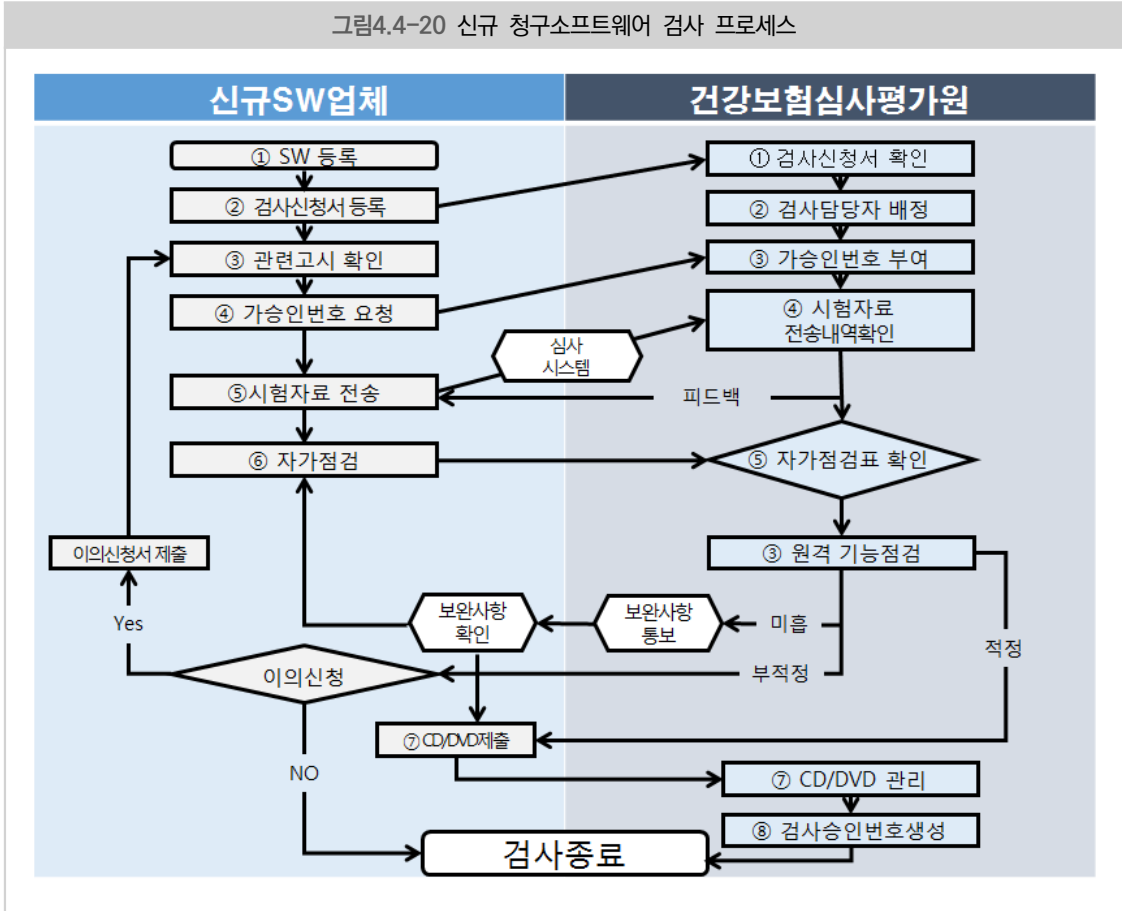
그림4.4-19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나. 상세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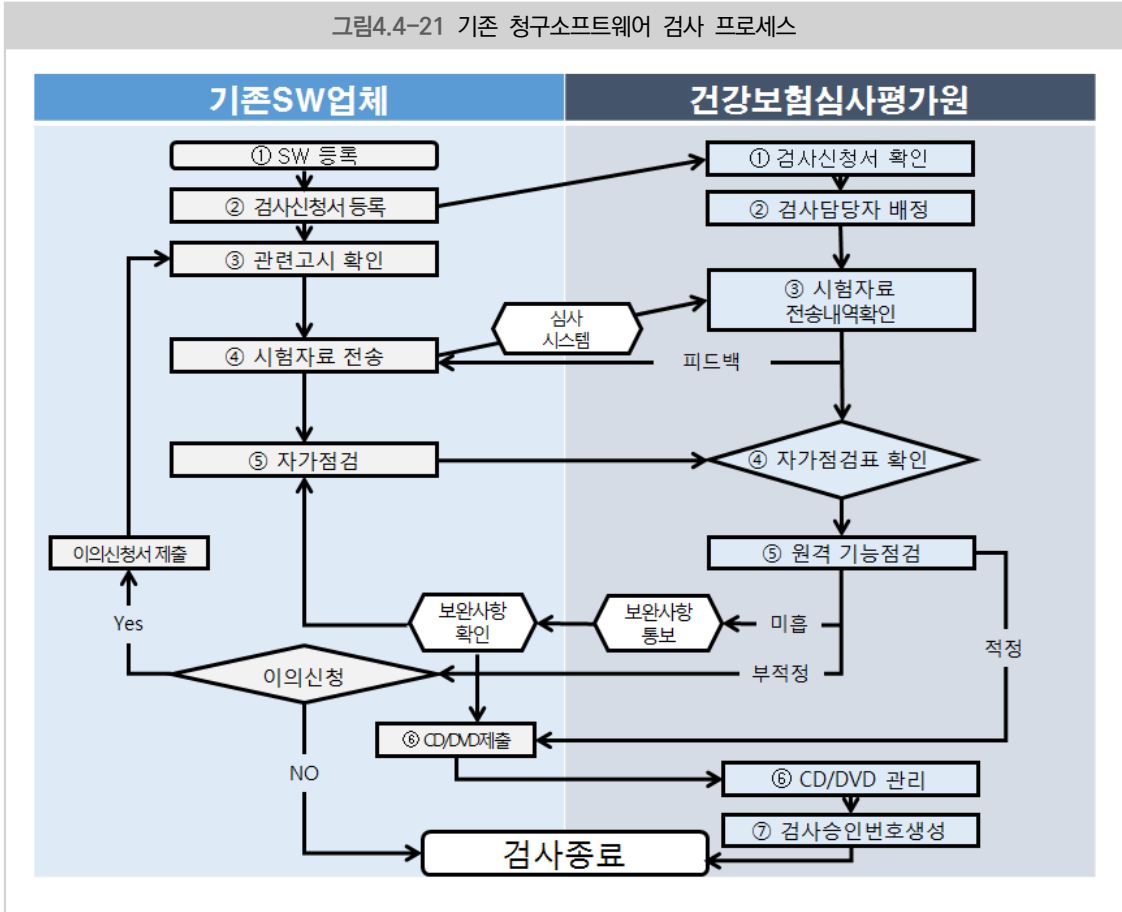
1) 신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그림4.4-20 신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2) 기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자체개발 요양기관 DUR 검사 포함)

그림4.4-21 기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프로세스



- DUR 검사의 경우 약제 안전성 점검에 따른 시험데이터를 DUR 인증서버에 직접 송신하며, 기능구현 여부를 자가 점검항목으로 제공한다.

5

검사제 시행 경과

---

- 1) 2001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 신설
- 2) 2002년 4월 : 의원급이하 소프트웨어공급업자 임의신청 실시
- 3) 2005년 6월 :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
- 4) 2007년 4월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확대 적용
- 5) 2008년 4월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기능 검사조항 추가
- 6) 2010년 8월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7) 2010년 10월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설정 및 검사기준 개선
- 8) 2012년 9월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관련 고시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
- 9) 2014년 6월 : 청구소프트웨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 10) 2018년 8월 : 개인정보안전성 확보 위한 보안 검사 추가

## VI

##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작성자 : 정보화지원부 주 - 김병기  
부 - 허지혜

## 1

## 개요

## 가. 개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진료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협력하여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업무로, 전국민 개인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나. 현황 및 필요성

의료정보기술발달로 개인의료정보 관련 범죄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진료정보 7억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의료분야 보안사고가 연평균 41%씩 증가<sup>70</sup>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범죄 중 의료분야가 최대(2위인 금융서비스 분야의 2배)<sup>71</sup>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의료정보 거래 가치가 카드사 개인정보의 50배(10~1,000달러)<sup>72</sup>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하여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지식·인력·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전국 9만여 요양기관의 개인진료정보 관리실태를 일일이 점검 및 조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용어의 어려움, 의료현장의 특수성은 요양기관이나 정부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보건 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개인의료정보보호 활동을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국민의료정보 안전관리 문화구축 및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7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 체계 확대·강화 계획”,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 발표 자료(2016. 11. 03.)와 MPIS 2017 발표 자료(삼성 SDS, 2017. 05. 18.)에서 재인용

71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2018. 5.)”

72 삼성SDS, “머신러닝에 기반한 차세대 위협 감지/분석 기술(2018. 5. 18.)”

## 2

### 법적 근거

---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1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다. 행정안전부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 지정
  - 1)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 심사평가원
  - 2)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 3

### 주요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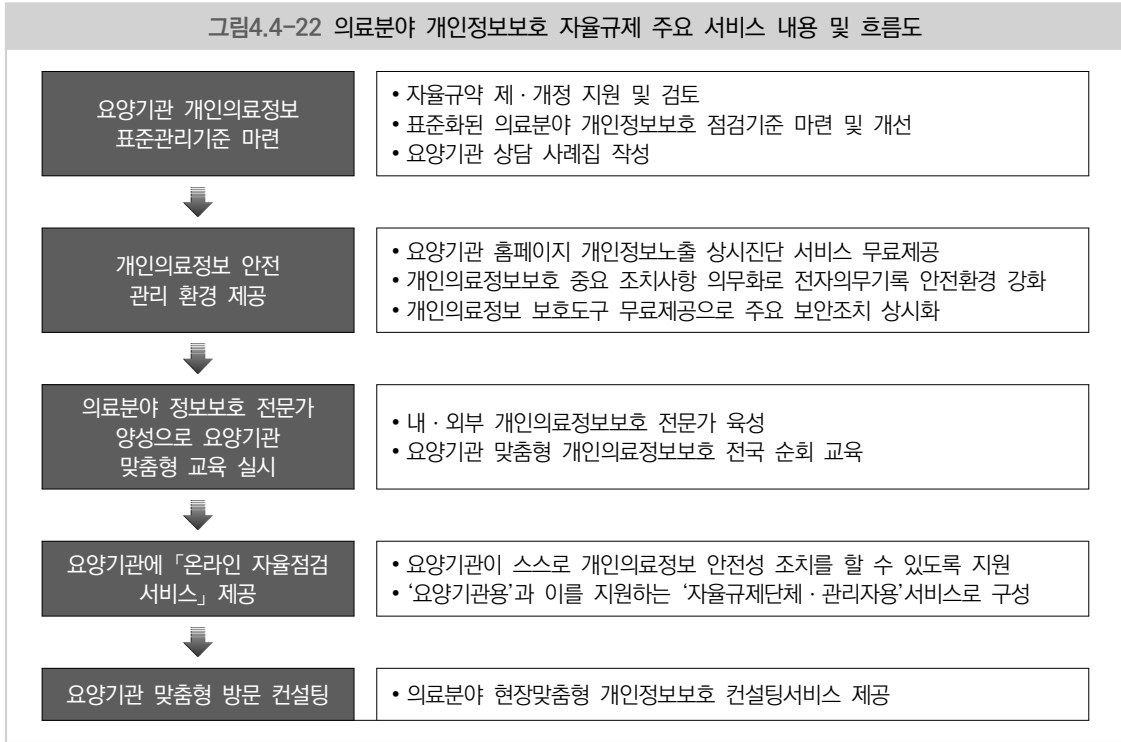
---

- 2014년
  - 자율점검지원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자율점검 시범 서비스 실시
- 2015년
  - 의약단체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추진단 구성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의 전 기관 확대 실시
  - 현장지원컨설팅 최초 제공(56기관)
- 2016년
  - 의료분야 맞춤형 점검기준 마련 및 내외부 담당자 교육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정비 및 실시
  - 현장지원 컨설팅 확대(92기관)
- 2017년
  -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 지정(행정안전부)
  - 단체별 자율규제규약 제정 및 동의절차 마련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및 현장지원 컨설팅 확대(118기관)
- 2018년
  - 전국순회 요양기관 설명회 및 상담사례집 배포
  - 내외부 전문가육성 및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정비·실시
  - 내외부 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지원 컨설팅 확대(150기관)

## 4

## 주요 서비스

그림4.4-22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주요 서비스 내용 및 흐름도



## 가. 요양기관 개인정보정보 표준관리기준 마련

요양기관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료분야에 맞게 표준화 및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주로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약 제·개정 지원 및 검토,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 마련, 쉽게 풀어쓴 조치가이드 작성, 요양기관 상담사례집 제작 등을 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CCTV 영상관리대장 등 각종 서식 및 작성 샘플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정보화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실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나. 개인의료정보 안전 관리 환경 제공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개인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상시적으로 갖추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있다.

예를들어 개인고유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바이러스 진단 백신 프로그램 등의 개인의료정보 보호도구나, 요양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상시진단 서비스를 요양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에는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 접근권한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의 개인의료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관련 주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18.8.1.)하면서 요양기관의 전자 의무기록 안전환경을 강화하기도 했다.

## 다. 의료분야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으로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외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매년, 심사평가원 내부의 본·지원 담당자와 자율규제단체의 중앙·지역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점검기준, 행정처분사례, 의료 현장 적용가이드 등을 교육시키며, 관련 전문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 전국 요양기관 순회교육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리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능한 많은 요양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료 외 시간인 저녁이나 주말에, 또는 의약단체 집합교육 등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정보화지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에서 확인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증빙할 수 있다.

## 라. 요양기관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의료분야 맞춤형 점검 기준 및 가이드에 따라 개인의료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보호조치를 직접 수행하며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요양기관은 관할 자율규제단체의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 기간에 해당 단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하고 개인진료정보 보유현황 등을 입력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는 매년 일정한 기간동안 제공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완료한 요양기관에게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면제 또는 처분감경 등을 제공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름).

#### 마. 요양기관 맞춤형 방문컨설팅 제공

요양기관 맞춤형 방문컨설팅은 심사평가원과 자율규제단체가 한 팀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개인진료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조치 방법을 맞춤형으로 가이드하는 컨설팅 서비스이다.

요양기관은 동 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의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의료현장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자율규제단체를 통하여 고령자 운영기관, 자율점검 취약기관 등 현장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신청 및 선정받고 있다.

#### 바. 기타 서비스

그 밖에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제고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사례집 제작, 보도자료 배포, 문자전송, 리플렛 제작, 정기간행물 기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고 있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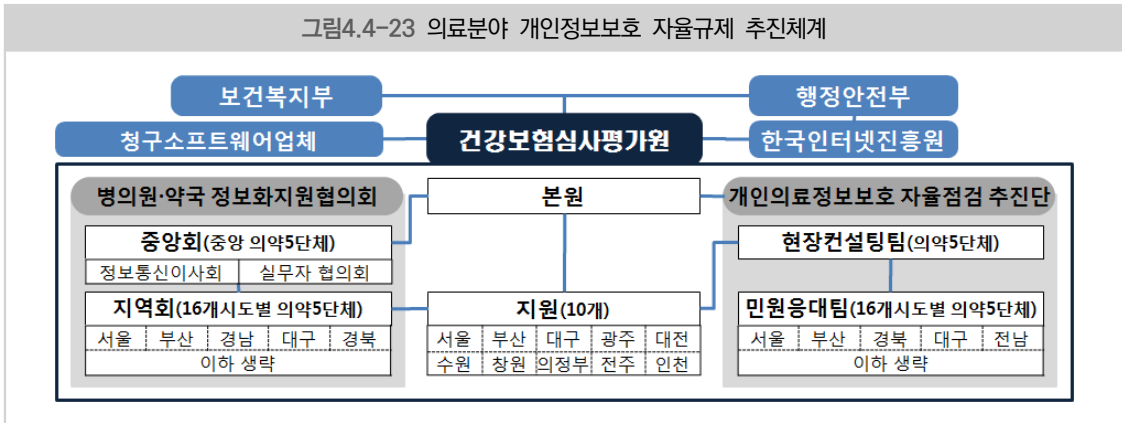
### 추진 체계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개인 의료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추진단은 심사평가원 본·지원 및 의약단체 실무자로 구성되어 요양기관 맞춤형 방문컨설팅 및 자율점검 관련 민원응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개인진료정보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확산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 청구소프트웨어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 정부정책 확산 및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림4.4-23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6

기대 효과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자율규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상생협력 및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 가. 요양기관의 개인진료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 나. 국민의 진료정보 유출위험을 감소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 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성공적으로 확산·정착시키는 등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

## VII

## 정보자원 운영

작성자 : 정보자원부 주 - 장동수  
부 - 김남기

## 1

## 개요

## 가. 용어 정의

## 1) ICT (Information &amp;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
-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 2) WAS (Web Application Server)

인터넷 상에서 HTTP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나 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해 주는 미들웨어(소프트웨어 엔진)로서, Server 단에서 Application을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 서버 콘텐츠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웹 서버와 구별이 되며, 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이 수행이 된다.

## 3)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 4)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장치로써, 평상시 안정된 전원 공급과 정전 발생 시 축전지를 이용하여 무 정전 상태로 유지해 주는 시설이다.

5) OOM (Out Of Memory)

메모리 부족 오류로써,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순간적으로 서버 메모리를 과점유하여 서비스 중단 발생하는 에러를 말한다.

6) DQC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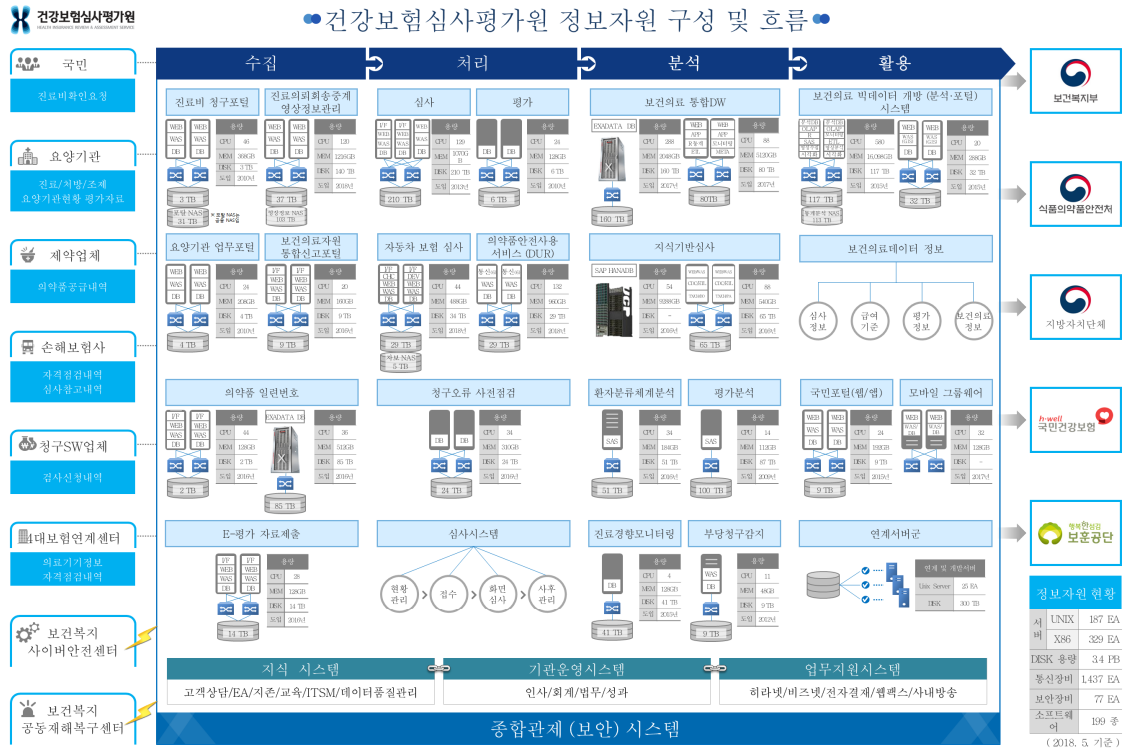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도메인, 업무규칙을 기준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요소 전반을 심사·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7) APM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정보자원 구성 및 흐름

그림 4.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자원 구성 및 흐름



## 다. 정보자원 운영 업무

### 1)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 서버 : 장애/운영, 성능, 보안/계정관리
- DBMS : 자료정비, 보안관리, 계정관리
- 네트워크 : 서비스제공, 점검관리, 성능분석
- WEB/WAS : 모니터링, 예방활동, 장애처리
- 백업 : 대상별(파일시스템, DB, OS)로 증분백업 및 전체백업 수행

### 2) ICT센터 운영

- ICT센터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ICT센터 접근통제, 부대설비 관리
- 재해복구센터 :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 장애대응센터: 고장 등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 3) 정보자원 품질관리

- ICT 서비스 관리 체계(ISO20000 및 ITSM) 운영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HIRA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관리

## 2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 가. 서버

#### 1) 개요

서버(Server)란 조직의 응용 업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시스템 자원을 말한다.

## 2) 운영관리

- 서버운영관리는 장애/운영, 성능, 보안/계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장애/운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 여부를 관찰, 진단, 보고, 제어, 처리한다. 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 성능 :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현재의 구성으로 서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스템 자원을 추가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 보안/계정 :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호활동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한다. 내, 외부의 무단사용자에 의한 데이터의 불법 유출, 파괴, 변경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점검 구분	점검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S/W의 상태를 확인
시스템 로그	로그 점검표에 의한 각종 시스템 로그를 확인
백업 상태 점검	백업업무 관리대장 및 백업 로그
디스크 사용을 점검	파일 시스템 사용을 점검

## 나. DBMS

### 1) 개요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는 조직의 응용 업무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 데이터와 데이터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목적에 맞추어 운영하며, 중복 없는 데이터의 집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2) 운영관리

- DBMS운영관리는 자료정비, 보안관리, 계정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 자료정비 : DBMS의 사전 장애 예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Oracle Process 점검 및 모니터링, 가용 공간 확보를 위해 매월 자료정비(Data Reorganization)를 실시한다.
  - 보안관리 : DBMS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및 정보의 불법 유출, 파괴, 변경 방지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설정 반영과 접근내역 로그를 분석한다.
  - 계정관리 : DBMS 보안 접근 허용을 위해 계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계정의 권한 요청 및 부여는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 다. 네트워크

### 1) 개요

두 대 이상의 단말기가 랜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무선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네트워크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전송매체(라우터(Router), 스위치 등) 관리 및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매체와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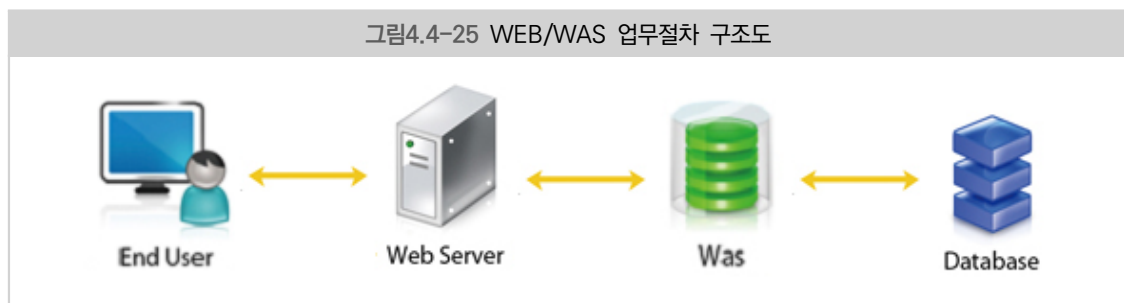
### 2) 운영관리

- 네트워크운영관리는 서비스제공, 점검관리, 성능분석 등을 하고 있다.
  - 서비스제공 : 라우터, 스위치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네트워크 자원의 가용성,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 및 정보보안을 고려하여 구축, 관리·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점검관리 : 종합관제시스템과 트래픽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전용회선, 장비별 트래픽 (Traffic)량, 상태 및 용량을 일일 점검하고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점검과 용량분석 등을 매일 실시한다.
  - 성능분석 : 성능분석을 통해 전용회선 및 장비의 성능을 측정,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라. WEB/WAS

### 1) 개요

WEB/WAS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WEB Application 형태의 업무 서비스를 일반 국민, 요양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내부 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Web Server :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정적인 콘텐츠(HTML)로 된 사진, Text) 등을 제공하는 서버
- Was : WEB과 DB 사이에서 동적인 콘텐츠(JSP, ASP등으로 작성 되어 Data의 조회/수정을 하는 콘텐츠를)를 처리하고, 요청을 분산 처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 Database : 실제 처리할 Data 가 모여 있는 저장소
- End User : WEB으로 된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실사용자 (일반 국민, 요양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내부 직원)

## 2) 운영관리

- WEB/WAS운영관리는 모니터링, 예방활동, 장애처리 등을 하고 있다.
  - 모니터링 : WEB/WAS 모니터링은 주로 APM을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평가원은 제니퍼 (JENNIFER)를 사용한다.
  - 예방활동 : WEB/WAS 위험 관리는 메모리 과점유로 인한 OOM, 웹서비스 응답 지연 최소화 등 웹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에는 제니퍼 모니터링, 쓰레드 덤프 분석, 로그 분석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장애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마. 백업관리

### 1) 개요

백업(Backup)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나 화재와 같은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별도의 매체(디스크 혹은 테이프 등)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사고로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백업시스템은 이러한 백업을 구성하는 장비나 장치를 의미한다.

### 2) 백업종류

대상별 종류		운영방법	보관기간
파일시스템 백업		매일 증분백업, 매주 전체백업	4주
데이터 베이스	HOT	업무 중요도에 따라 매일 1~3회 전체백업	4주
	COLD	매주 1회 전체백업	4주
	Archive	수시로 전체백업	4주
운영체제 백업		매월 전체백업	3개월



## 3

## ICT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

## 가. ICT센터 운영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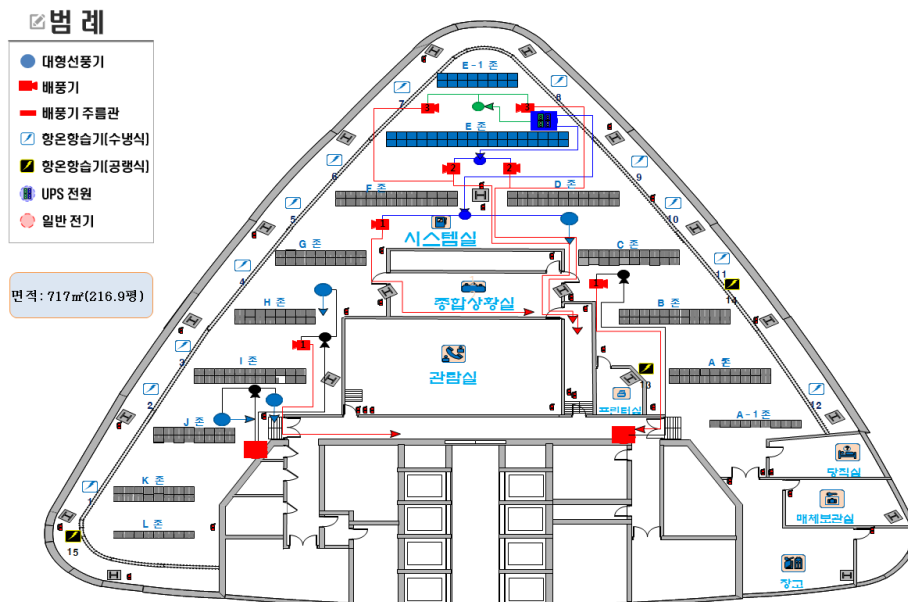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관 내 업무 편의증진과 고객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시스템을 장애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설립근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5376호(개정 2018.02.21.)
- 「보안업무 운영세칙」 세칙 제122호(전면개정 2018.01.25.)
- 「정보전략운영지침」 지침 제238호(개정 2017.09.27.)
- 「정보보안지침」 지침 제251호(일부개정 2018.02.19.)

## 3) ICT센터 구성

## ● 상면도



#### 4) ICT센터 수행업무

##### 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 유지관리

- 장애처리 :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 정기점검 : 일일점검 및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다.
-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을 보수 한다.

###### ● 종합관제

- 시스템 관제: 정보시스템, WAS, DB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관리
- 보안 관제: 통합보안관리, DDoS,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보호 모니터링 수행

##### 나) ICT센터 접근통제

###### ● ICT센터 접근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ICT 센터 내에 설치된 주요 장비 및 시설들에 대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통제구역 : ICT센터는 출입통제가 필요한 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표시
- 출입통제 : ICT센터 내에 비인가 출입자에 대한 제한 및 관리
- 출입기록 : 출입자의 신원, 출입일시, 목적 등 출입에 대한 기록관리

##### 다) 부대설비 관리

###### ● ICT센터 근무자는 ICT센터 설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ICT센터 안전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CTV 작동 및 출입문 장치이상 유무
- 화재진압장비(소화기, 소화설비 가스 등) 및 화재감지 장비
- 향온향습기 이상 유무
- 누수탐지기 이상 유무
- 비상조명 상태
- 전원 공급 장치(UPS 및 비상발전기 등) 이상 유무
- 케이블보안 상태(전력 및 통신회선 상호 분리, 매설 보호조치 등)
- 기타 ICT센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항목

## 나. 재해복구(DR)센터 운영

### 1) 개요

전쟁, 화재, 정전 등 예기치 않은 재난 발생 시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시스템(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설치된 ICT센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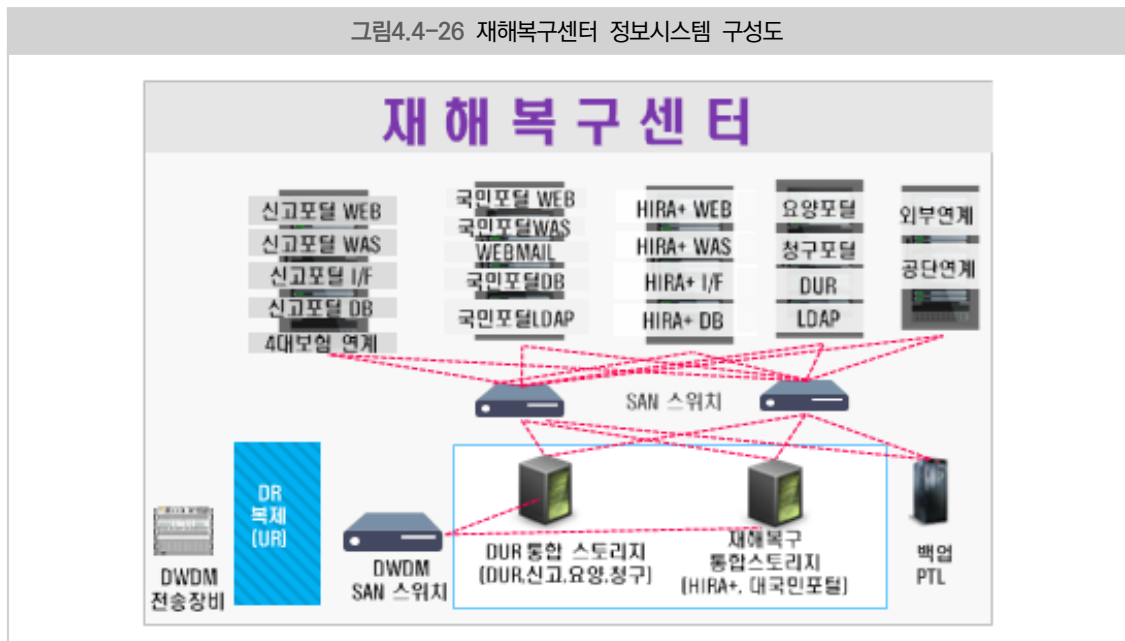
### 2) 설립근거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재난방지)
- 보건복지부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규정(2015.07. 개정)

### 3) 대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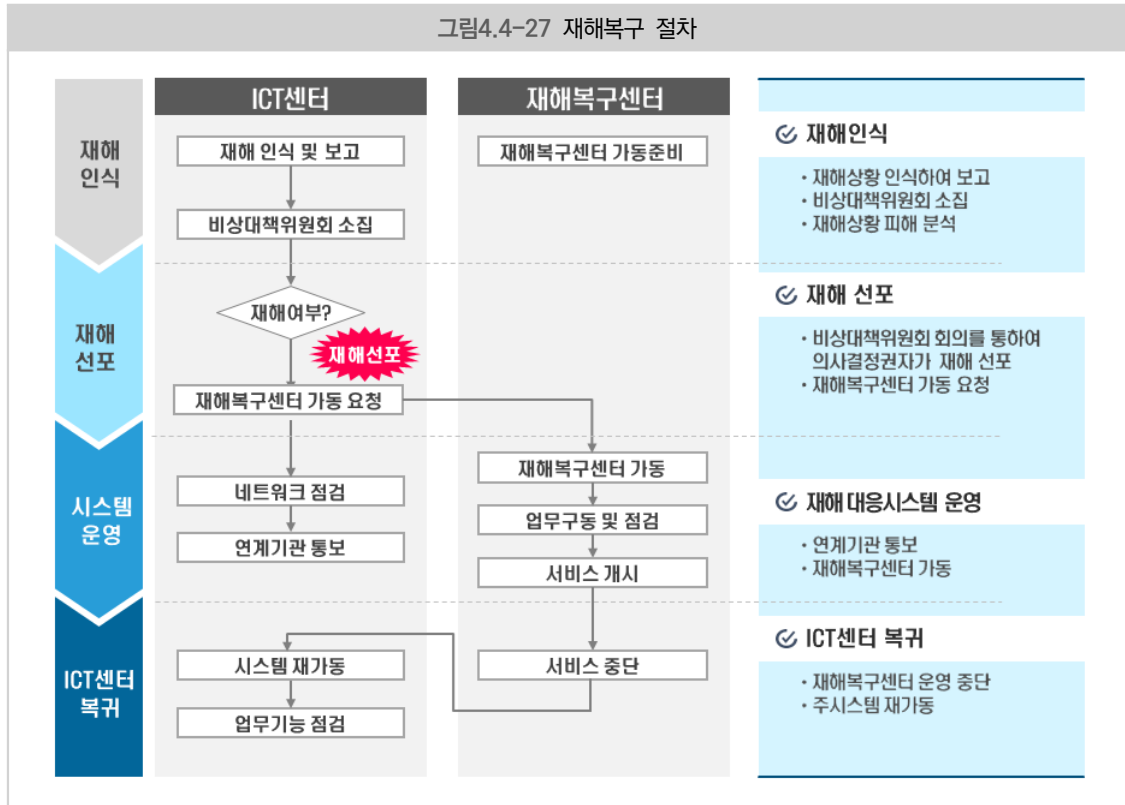
- HIRA+ (심사시스템)
- 의약품안심서비스(DUR)
-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 국민포털홈페이지
-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서비스

그림4.4-26 재해복구센터 정보시스템 구성도



#### 4) 재해복구 절차

- 재해 인식(1단계): 재해상황 인식 및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 재해 선포(2단계): 재해 선포 및 재해복구센터 기동 요청
- 재해대응시스템 운영(3단계): 연계기관 통보 및 재해복구센터 기동
- ICT센터 복귀(4단계): 재해복구센터 운영중단 및 주시스템 재기동



#### 다. 장애대응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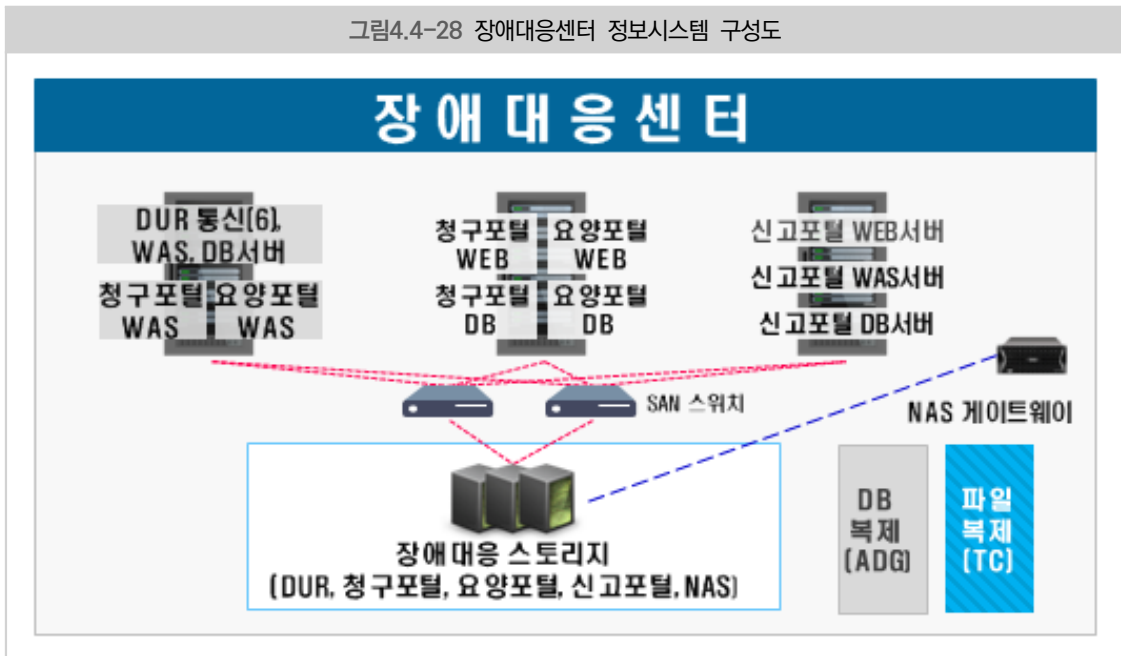
##### 1) 개요

정보시스템의 고장, 서비스 불능 상태 등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통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대상시스템

- 의약품안심서비스(DUR)
-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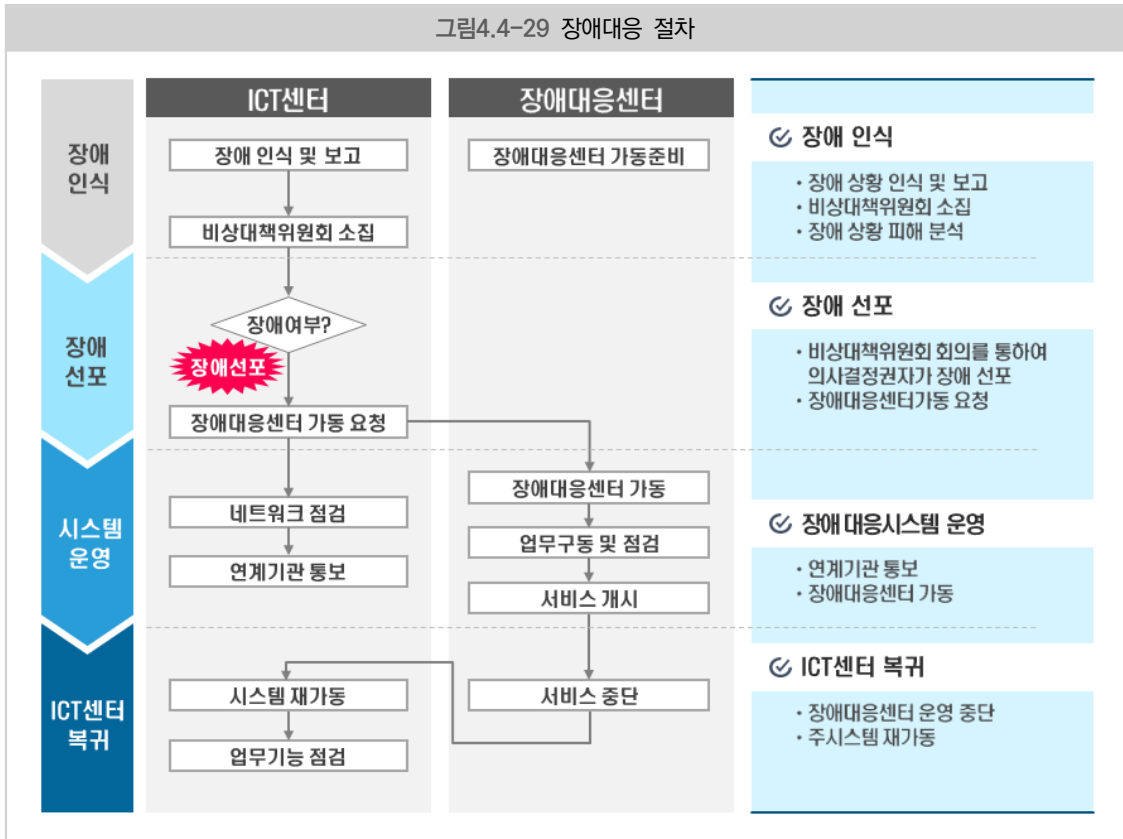
그림4.4-28 장애대응센터 정보시스템 구성도



## 3) 장애대응 절차

- 장애 인식(1단계): 장애상황 인식 및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 장애 선포(2단계): 장애 선포 및 장애복구센터 기동 요청
- 장애대응시스템 운영(3단계): 연계기관 통보 및 재해복구센터 기동
- ICT센터 복귀(4단계): 장애복구센터 운영중단 및 주시스템 재기동

그림4.4-29 장애대응 절차



4

정보자원 품질관리

가. ICT 서비스 관리 체계

1) ISO20000

가) 개요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수준과 장애처리, 변경관리 등 IT 운영 관리 체계가 국제표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인증 규격

나) 목표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IT서비스 제공
- IT서비스의 지속성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업무 효율 향상

### 다) 적용범위

심사 및 평가시스템 등 정보자원 영역의 IT서비스관리에 대하여 ISO20000 국제표준 규격 인증 적용

### 라) 기대효과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IT서비스의 가용성, 신뢰성 및 보안성 향상
-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 및 역할 정의 및 인식
- 주요 IT 프로세스 통합 및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 활용 가능

## 2) IT 서비스 관리(ITSM)

### 가) 개요

ISO20000을 시스템화 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고객중심의 서비스 관점으로 관리하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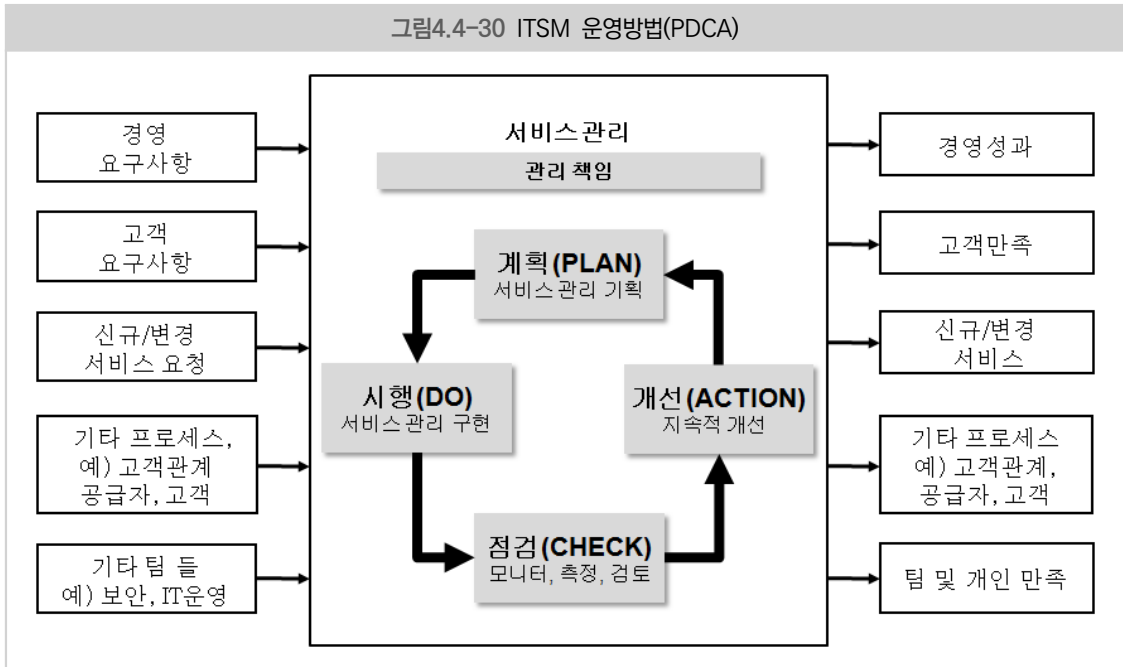
### 나) 도입목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정비보수 프로세스 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데이터 확보와 통계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사전 예방활동

### 다) 서비스 품질 관리기법(PDCA Cycle)

- IT서비스 품질에 대해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시행- 점검-개선 (Plan-Do-Check-Action; PDCA)의 관리과정을 사용
  - 계획 : 고객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관리를 위한 목적과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
  - 실행 : 서비스관리 계획을 적용하고 정의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수행
  - 점검 : 서비스관리 목표와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 및 검토
  - 개선 : 서비스와 서비스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그림4.4-30 ITSM 운영방법(PDCA)



라) ITSM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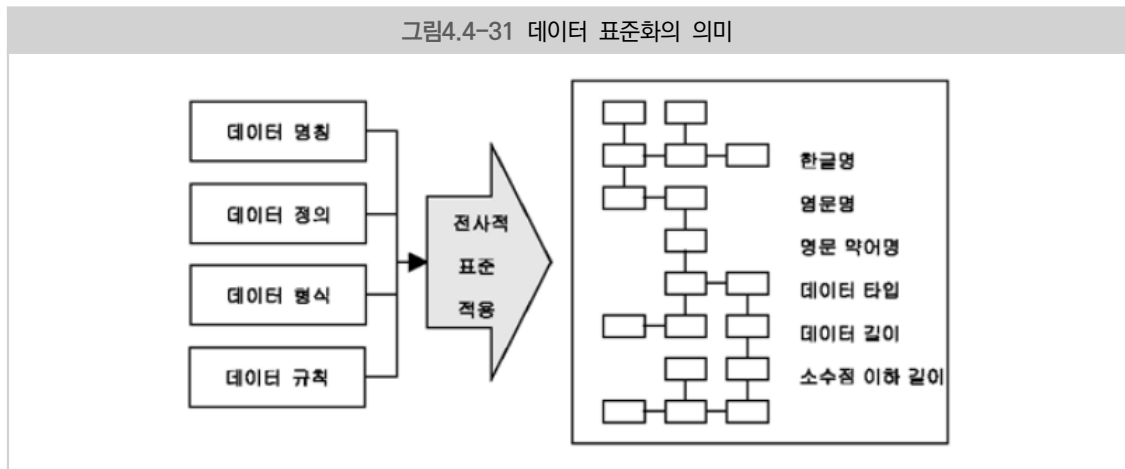
구분	프로세스명	내용
해결 프로세스 (Resolution)	서비스요청 / 장애관리	IT 서비스에 대한 가장 신속한 복구 및 관리
	문제관리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재발생 방지
통제 프로세스 (Control)	변경 / 배포관리	서비스요청에 대한 변경 계획, 변경 수행 및 배포 관리
	구성관리	구성정보 정확성 유지를 위한 기록과 관리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Service Delivery)	서비스수준협약(SLA) / 서비스보고	IT 서비스 개선 목적의 합의된 서비스 수준관리
	용량관리	정보시스템 용량대비 효율성 관리
	연속성관리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제반활동 관리
	가용성관리	합의된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한 가용성 유지관리
	보안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관계 프로세스 (Relationship)	IT예산관리	IT 서비스 운영비용에 대한 관리
	비즈니스관계관리	IT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고객/사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
	공급자관리	IT서비스 요구수준에 부합한 공급자 선정 및 정기적인 평가, 모니터링 등의 관리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서비스관리계획	ISO20000 요구 규격에 적합한 IT 서비스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정관리
	문서관리	각종 절차서 및 계획의 문서 표준관리
	위험관리	IT서비스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신규서비스 설계/전환	IT 서비스 신규도입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승인/관련 활동의 관리



## 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1) 개요

- 데이터 표준화는 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형식에 규칙을 정해 의사소통의 혼란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및 개선 활동을 말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데이터, 저품질 데이터를 측정하고 통제를 통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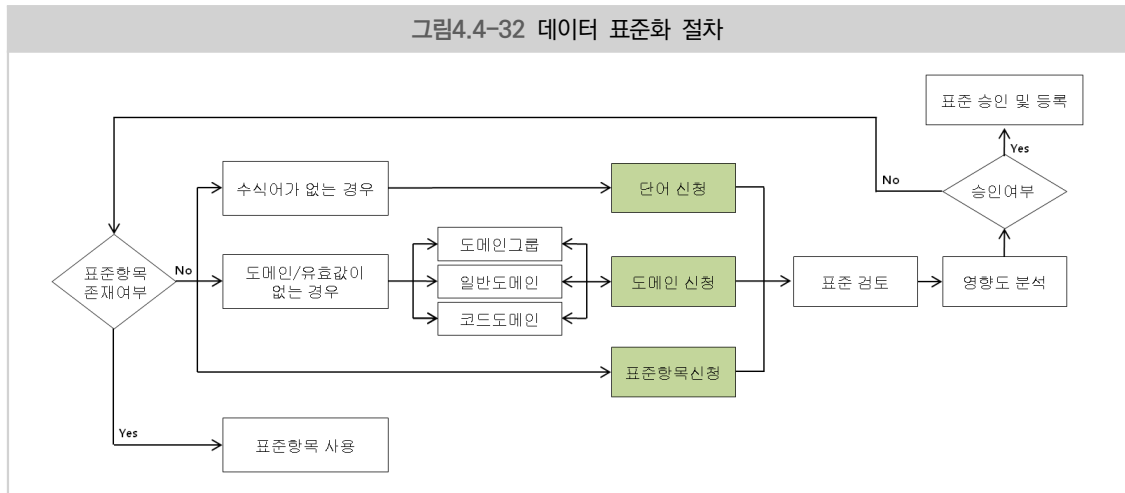
### 2) 목적

- 명칭의 통일로 명확한 의사소통 가능
  -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층 간에 명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
-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 파악 용이
  - 새로운 정보 요건 발생 시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의미,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보 활용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

- 일관된 데이터 형식 및 규칙 적용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 형식 및 규칙을 데이터 표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입력 오류 방지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 활용 시 표준에 근거한 활용으로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임
-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 데이터 변환, 정제 비용 감소
  -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나 개별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환이나 정제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처리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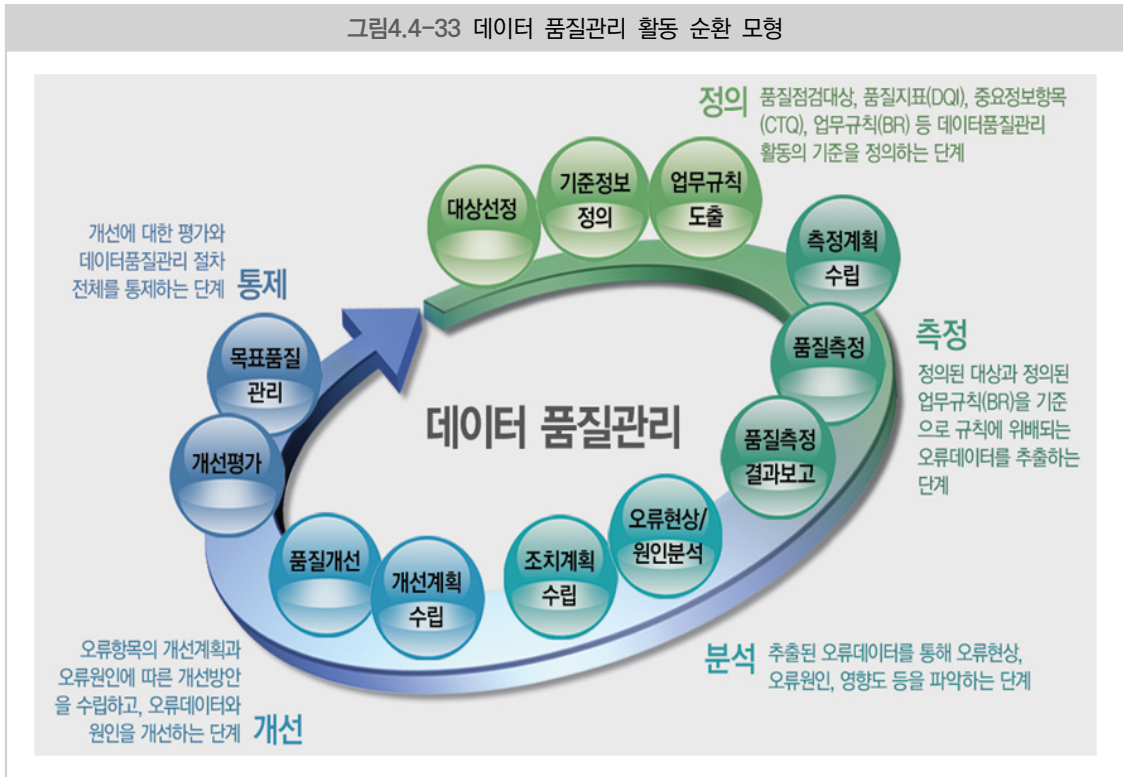
### 3) 업무 처리절차

- 데이터 표준화 절차
  - 표준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존재할 경우 표준항목을 사용한다. 표준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식어가 없다면 단어를 생성하고, 도메인이 없다면 도메인을 생성한다. 도메인은 타입이 다를 경우도 신규로 생성한다. 도메인이 존재하지만 유효값을 추가해야 할 경우 (코드 도메인) 유효값을 생성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 데이터 품질관리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로 그 역할을 나눌 수 있다.

그림4.4-33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순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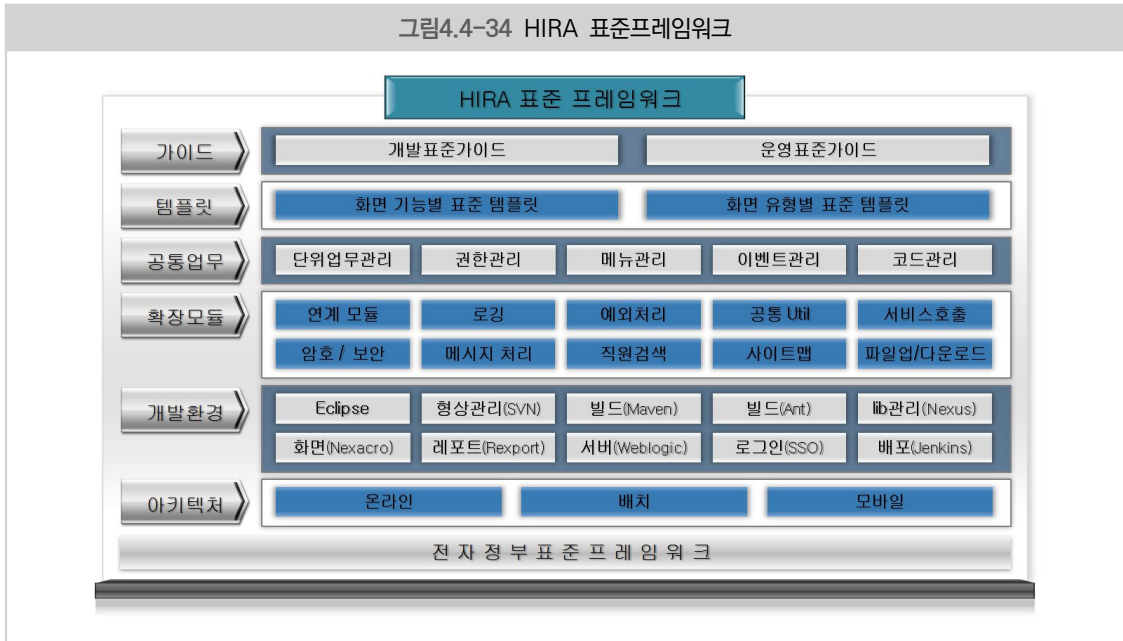
## 다. HIRA 표준프레임워크

### 1) HIRA 표준프레임워크

#### 가) 개요

HIRA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모태로 심사평가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된 기준을 제공하며, IT기술표준과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여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다양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표준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소스와 배포방안을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나) HIRA 표준프레임워크 구성



다) 도입 효과

- 어플리케이션 개발 표준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자체 기술력 확보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절차 표준화 실현으로 단일 운영 체계 마련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용이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환경 마련
- 시스템 운영의 위험요소 감소 및 개발품질의 향상, 예산 절감 등

라) 적용시스템 현황

연도	시스템명	프레임워크버전	기타(UI 등)
2010	의약품안심서비스(DUR)	1.0	X-Platform 9.1, C/S
2011	진료비청구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2013	HIRA+, 평가시스템, 기관운영시스템, 권한관리시스템	2.0	X-Platform 9.2
2014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2.0	X-Platform 9.2, JSP
2015	국민포털, 비즈넷,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히라넷, 아이히라넷,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2.0	X-Platform 9.2, JSP, Websquare
2016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의약품인트라넷, 의약품일련번호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2.0	X-Platform 9.2
2017	자보심사시스템,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의뢰회송시스템	3.6	Nexacro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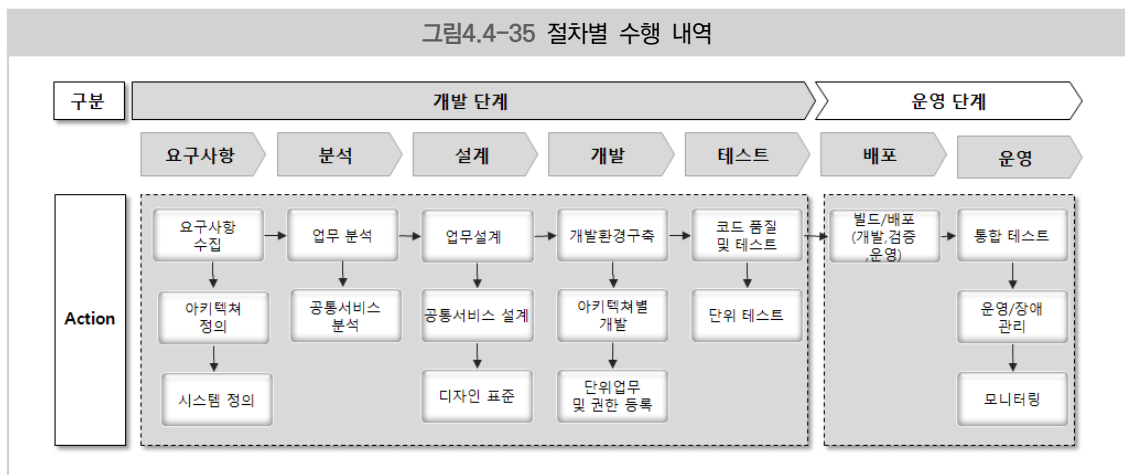
## 2) 개발 및 운영 표준 절차

### 가) 개요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따른 단계별 수행 내역을 정의하고, 참조 가이드를 제시하여 IT기술 표준화를 유지한다.

### 나) 절차별 수행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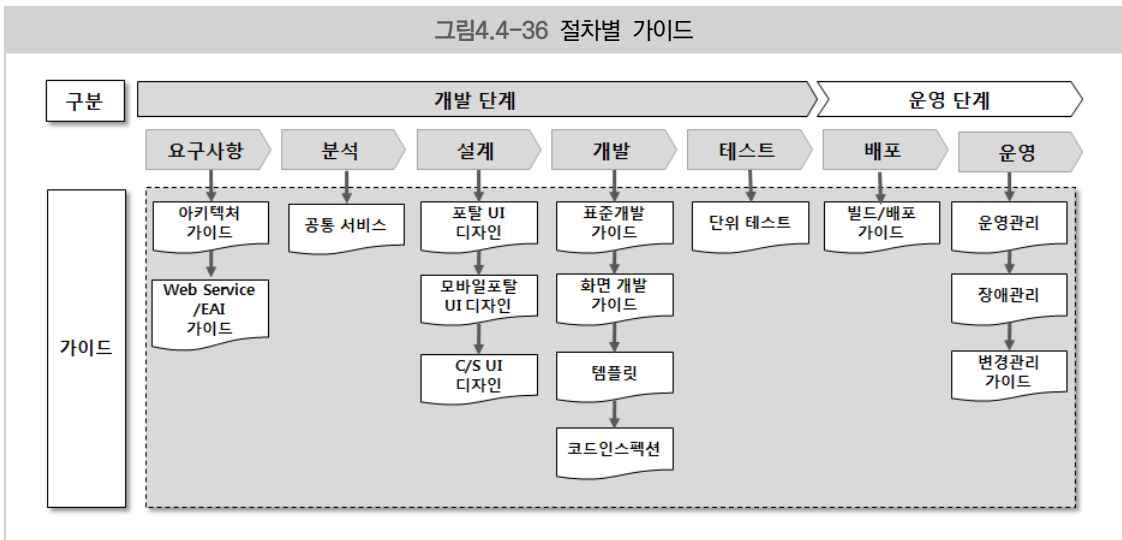
개발자가 시스템 구축 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내역을 정의하여 개발 및 운영 절차를 표준화한다.



### 다) 절차별 가이드

개발 및 운영 절차별 가이드를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표준을 적용한다. 절차별 가이드는 개발자 센터(HIRA WIKI) 사이트에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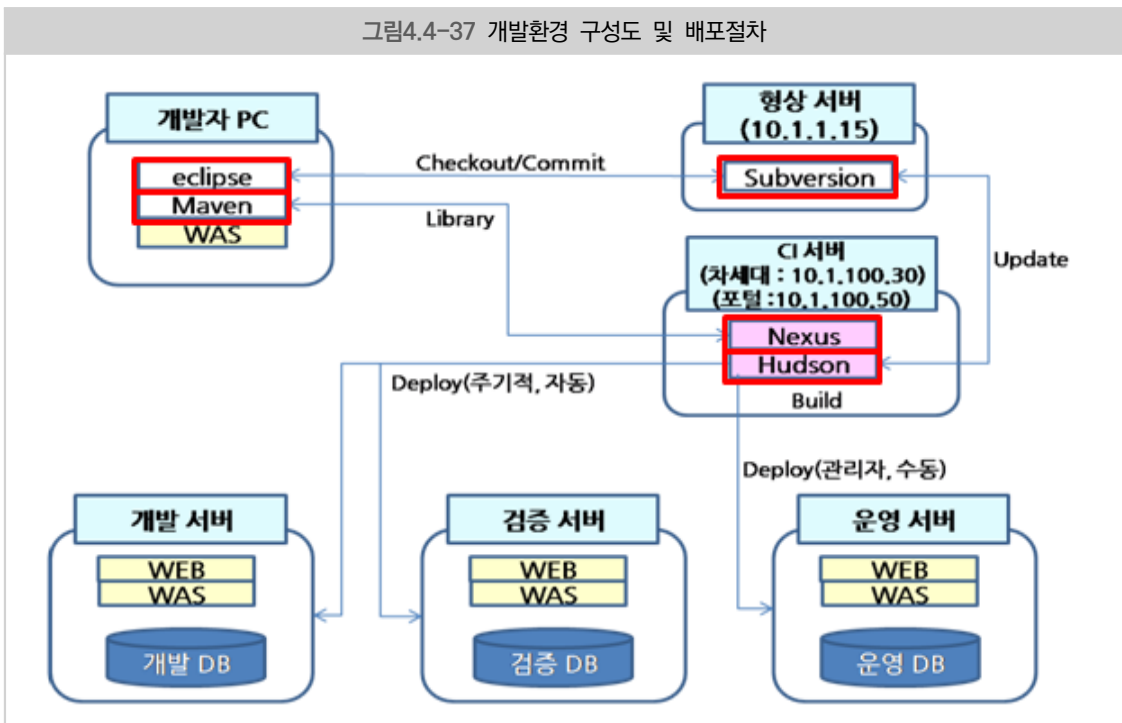
그림4.4-36 절차별 가이드



라) 개발환경 구성

개발환경은 개발자 PC, 개발서버, 검증서버, 운영서버에 구성되며 개발자 PC에서 개발 후 테스트가 완료된 소스를 형상관리서버(SVN)에서 서버별로 관리한다.

그림4.4-37 개발환경 구성도 및 배포절차



- ① Eclipse :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개발환경)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구
- ② Maven : POM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도구
- ③ WEB : 사용자에게 웹(WEB)을 제공하기 위한 서버
- ④ WAS :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트랜잭션 처리 및 관리와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서버
- ⑤ Subversion : 소스 형상관리 도구
- ⑥ Nexus : Maven의 외부 라이브러리 저장소(Repository) 전용 관리도구
- ⑦ Hudson/Jenkins : 자동빌드 및 빌드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통합 빌드도구

# VIII

## 정보보호 운영

작성자 : 정보보호부 주 - 박기수  
부 - 이상갑

### 1

### 정보보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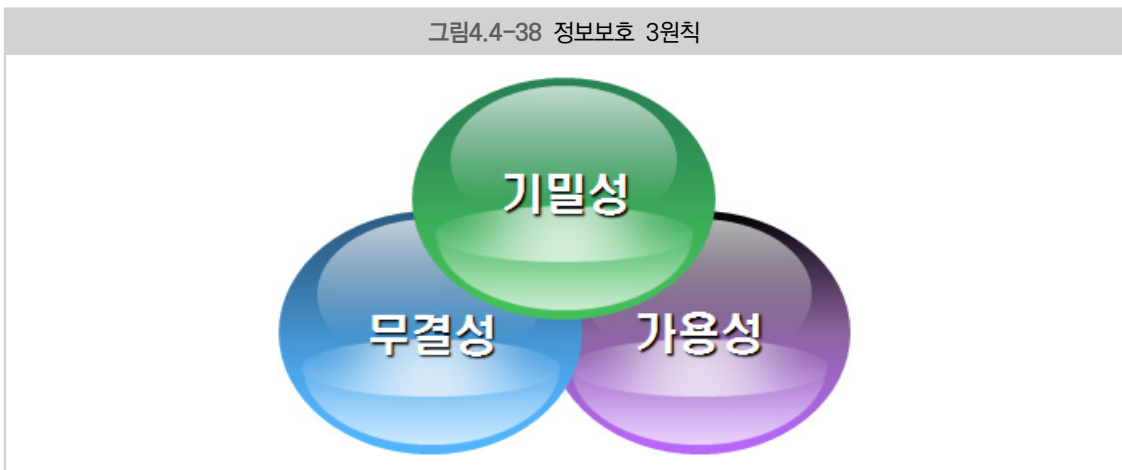
#### 가. 정보보호 개요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및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 1) 관리적 보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정책, 절차, 보안인식 교육, 위험평가 등 지켜야 할 행정적 절차
- 2) 물리적 보안 :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CCTV 등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
- 3) 기술적 보안 :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DB, PC 등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기술적 통제

#### 나. 정보보호 3원칙

그림4.4-38 정보보호 3원칙





- 1) 기밀성(Confidentiality) :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원칙
- 2) 무결성(Integrity) : 정보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악의적 또는 비악의적 접근에 의해 변질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원칙
- 3) 가용성(Availability) :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원칙

## 2

## 사이버 테러

## 가. 사이버 범죄

- 1) 정의 :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
  - 가) 일반형 사이버 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프로그램 불법복제 등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
  - 나) 테러형 사이버 범죄: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등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악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
- 2) 특징
  - 가)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침
  - 나) 범죄자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 및 수정이 쉬움
  - 다) 지역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발생(국내·외 동시 발생 가능)

## 나. 사이버 테러 유형

## 1) 해킹(Hacking)

- 가)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불법침입, 중요 정보를 빼내거나 자료를 변조, 삭제, 이상 작동을 일으키는 행위
- 나) 호기심적 해킹 → 범죄적인 해킹 → 기업간, 국가간 정보 쟁탈전

## 2)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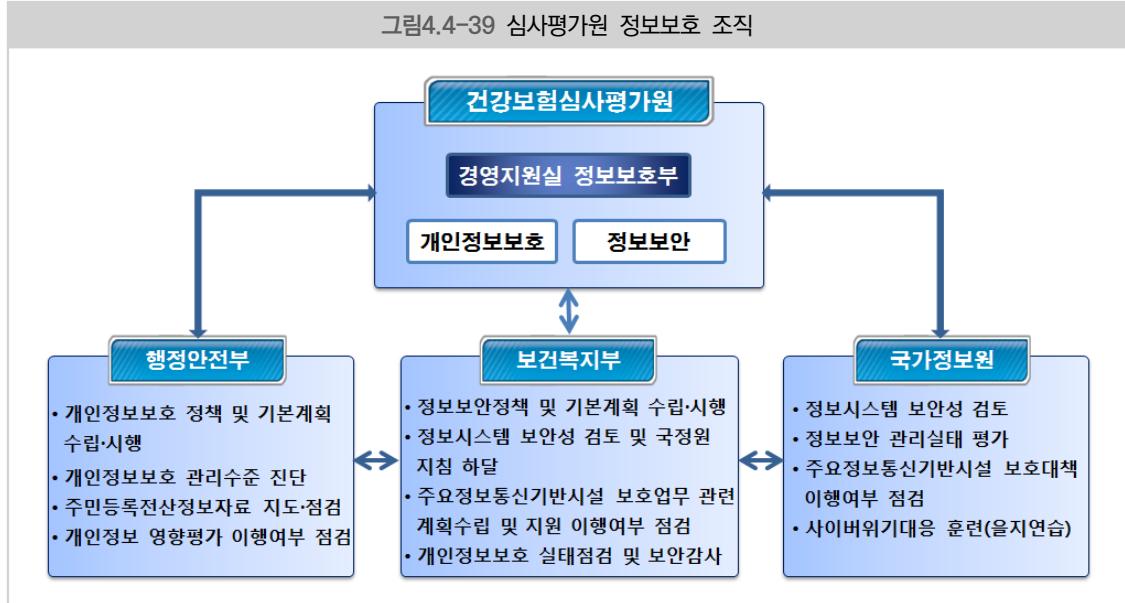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 요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 방법

### 3) 악성프로그램 배포

- 가)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메일이나 웹 게시판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
- 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도 악성프로그램의 종류임
- 4)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개인 해커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정부 또는 특정 회사의 중요 정보 획득, 정치적 목적, 사이버 테러 등을 목적으로 범죄그룹에 의해 사이트, 기업, 개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해킹하는 공격 방법

## 3 심사평가원 정보보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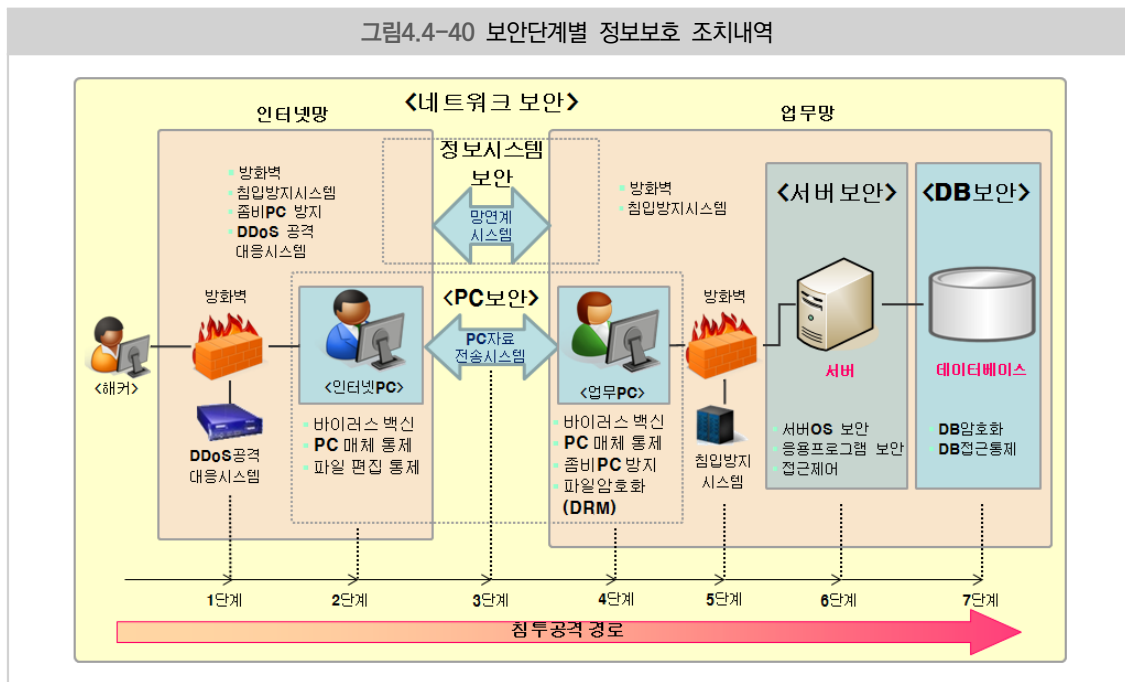
### 가. 정보보호 조직



나. 주기별 정보보호 활동

실행 주기	세부 활동 내역
일일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운영직원 일일보안 점검, 사이버 침해사고 등 전파체계 유지 등
매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운영업체 보안 실태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업무용 PC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등
분기	악성메일 훈련,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용역사업 보안 이행 점검 등
반기	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 비인가 무선랜(AP) 점검,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등
연간	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점검 등
수시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절차 정비, 보안성 검토 등

다.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내역



1) 인터넷망 네트워크보안(1단계)

- 가) 침입방지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 나) DDoS 차단, 웹방화벽, 좀비PC 방지시스템 운영
- 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network access control) 운영
- 라)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및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등

## 2) 인터넷망 PC보안(2단계)

- 가) 상용 이메일 및 메신저 차단, P2P 등 파일공유프로그램 차단
- 나)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운영
- 다) 문서자료 삭제프로그램 운영
- 라) PC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장매체 및 보안USB메모리 제어 등
- 마) PC 비밀번호 설정(숫자+문자+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 변경 운영

## 3) 인터넷망 및 업무망 간 네트워크보안(3단계)

- 가) 정보시스템 망연계시스템 운영
- 나) PC자료 전송시스템 운영

## 4) 업무망 PC보안(4단계)

- 가)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운영
- 나) DRM(문서보안시스템)을 이용한 파일 암호화
- 다) PC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장매체 및 보안USB메모리 제어 등
- 라) PC 비밀번호 설정(숫자+문자+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 변경 운영

## 5) 업무망 네트워크보안(5단계)

- 가) 침입방지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 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운영
- 다) DDoS 차단 및 웹방화벽 운영 등

## 6) 업무망 서버보안(6단계)

- 가) SecureOS(보안서버) 및 로그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나) 통합계정관리 및 접근통제 실시
- 다) 중요정보 화면 캡처 방지 및 암호화 통신 등

## 7) 업무망 DB보안(7단계)

- 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 나)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DB 접근 통제 및 접속 내역 기록 등